2019

법무 연감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2020

국 가 비 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 정 목 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법무행정비전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법무부 기(旗)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 전경



법무부 간부 일동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법무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검찰·범죄예방·인권옹호·교정분야 및 출입국관리 등 법무정책의 주요 활동과 실적, 성과 등을 상세히 담은 서른 두 번째 법무연감을 발간합니다.

지난 한 해 법무부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질서를 만들고 법무부의 역할 재정립과 혁신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여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위해 검찰의 기능을 재편하였습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기존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일선 검찰청에 인권감독관 배치를 확대하여 인권보호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검찰상을 확립하였습니다.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문을 열었고, 전국의 모든 무변촌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증원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법률홈닥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복지를 한층 높였습니다.

특히, '조두순법'이라고 불리는 「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성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관이 24시간 내내 일대일로 집중관리 하도록 하고,



MINISTRY OF JUSTICE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관찰 중인 학생을 중점 지도하는 '학생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심각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을 신·증축하고 수용공간을 확충하여 수용자 인권보호 및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시키는 한편,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 및 산업제 맞춤형 직업훈련을 도입하여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성명을 병기하도록 하여 재외동포의 사회적 차별감을 해소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법무연감이 지난 한 해 법무행정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법무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법무행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법무부는 국민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법대로 하면 불리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깨고 법대로 하면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는 새로운 법무행정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는 법무부의 끊임없는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법무부장관

2019 법무행정일지

1월

- 1. 2. • 법무부 시무식
- 1. 7. •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 위촉 및 해촉식
- 1.14. • 장관, 제48기 사법연수원생 수료식 참석
- 1.16. • 한국(법무부)-우즈베키스탄(대검찰청), 법무협력 업무협약 체결
- 1.18. • 한국-카자흐스탄, 법무협력 업무협약 체결
- 1.21. • 국적증서 수여식
- 1.23. • 차관, 설맞이 전통시장(박달시장) 및 사회복지시설(안양의 집) 방문
- 1.24. • 장관, 사회복지시설(평화의 집) 방문
- 1.29. • 장관, 제8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참석
- 1.30. • 주한 동티모르 대사 예방
  • 유엔난민기구 부대표 예방
- 1.31. • 난민위원회 개최

2월

2.11.
- 신임검사 임관식
- 장관, 세계일보 창간 30주년 기념식 참석

2.13.
- 장관, CBS 라디오 생방송 출연 및 인터뷰
- 장관, 부장검사 대상 강화(講話)

2.14.
- 장관, 대통령 주재 자영업계 간담회 참석

2.18.
- 장관, '2019년도 법무부 주요 정책' 관련 「대담」 소식지 인터뷰
-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법무부·경찰청 공동 합동단속 시행

2.19.
- 차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위원회 참석

2.20.
-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나눔의 숲 캠프' 시행

2.21.
- 소방관 소송지원 업무협약 체결
-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수기, 사진, 동영상 공모전 개최

2.22.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고려인 및 동포지원단체 관계자 간담회

2.25.
- 신임 자녀안심재단 이사장 예방
-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여덟 번째 나눔 실시

2.26.
- 3·1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

2.27.
- 3·1절 100주년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
- 차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화성외국인보호소 정책현장 방문

2.28.
- 법사랑연합회 정기총회 및 오찬간담회
- 3·1절 100주년 기념, 가석방 및 특별사면 실시
- 법무부-국립무형유산원, 수형자 대상 무형유산 교육 및 전통기술 전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 법무행정일지

3월

- 3. 1.
  - 장·차관, 3·1절 기념식 참석
  -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 개선 시행
  - 소년원학교 '여성 고등학교 과정' 신설(안양소년원)
- 3. 5.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독립기념관 탐방 교육(3.5.~3.29.)
- 3. 6.
  - 신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예방
  - 청주여자교도소, 여성수형자를 위한 전담 심리치료센터 개원
- 3. 7.
  - 신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 예방
  -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 개최
- 3.11.
  - 장·차관, 교정시설 설계표준 연구결과 발표회 참석
- 3.13.
  - 정부업무보고 관련 브리핑
  - 해양경찰청 차장 예방
- 3.14.
  - 사법정책연구원장 예방
  - 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최
- 3.15.
  - 장관, TBS 교통방송(라디오) 인터뷰
  - 장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면담
- 3.19.
  - 장관,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관련 브리핑
- 3.20.
  - 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 훈련
- 3.21.
  - 장관,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비전 선포식 참석
  - 장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출연 및 인터뷰
  - 법무부 국민참여단, 집중토론회 개최
- 3.22.
  - 난민위원회 개최
- 3.25.
  - 국가정황정보 자문위원 위촉
  -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신속·공정 수사 권고
- 3.26.
  - 장관, KTV 인터뷰 촬영
- 3.28.
  - 정책성과 우수 공무원 포상식
  -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 시행
- 3.29.
  - 장관, 인권경영포럼 참석
  - 장관, 매일경제 인터뷰

4월

- 4. 1.
  - 신임검사 임관식
  - 베트남 법무부장관 예방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개소 11주년, 고품질 상담서비스 강화
- 4. 2.
  - 장관,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참석
- 4. 5.
  - 장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석
  - 차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참석
  -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제정
  -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개최
- 4. 8.
  - 차관, 제11차 형사정책연구협의회 참석
- 4.10.
  -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 개최
- 4.11.
  - 장·차관 제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 참석
  - 법무부-신용회복위원회,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4.16.
  - 차관, 국민안전다짐대회 참석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에도 24시간 집중관리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법무부-이화여대, 보호관찰 업무협약 체결
- 4.18.
  - 장관, 안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 방문
- 4.19.
  - 소년원 교육지원 유공자 감사패 수여식
- 4.22.
  - 전자비자센터, 외국인 비자 연장 및 각종 신고 시스템 구축
  - 법무부-신용회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소예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4.24.
  - 캄보디아 법무차관 예방
- 4.25.
  - 장관, 법의 날 기념식 참석
- 4.26.
  - 차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형사집행 부국장 면담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 4.29.
  - 신임 감찰관 임명장 전수식
- 4.30.
  -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위촉식
  - 차관, 혁신금융 민간 합동 T/F회의 참석
  - 법무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발족

2019 법무행정일지

5월

- 5. 1. •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 5. 2. •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 5. 3. •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
- 5. 7. • 한-중 형사사법 실무회의
- 5. 8. • 신임검사 임관식
- 5. 9. • 장관, 한국일보 인터뷰
  •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 개최
- 5.10. • 2019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시행
- 5.14. • 차관,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 참석
- 5.16. • 장관,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
- 5.17. • 난민위원회 개최
  • 한국소년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 5.20. •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 장관,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참석
- 5.22. • 차관,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안양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 5.23. • 경력검사 리더십과정 강화(講話)
  • 한-중 형사사법공조 관련 업무협약 체결
- 5.24. • 장관, 제주지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 5.29. • 서울소년원,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 인권정책과장 임명장 전수식
- 5.31. • 장관, 형사정책연구원 30주년기념 학술대회 참석

6월

- 6. 5. •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 6. 5. • 장관, 현충일 추념식 참석
- 6.10. • 법무부-서울시립대 보호관찰 업무협약 체결
  • 장관, 한인검사협회(KPA) 회장 면담
- 6. 14. •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 6.15. • 차관, 제6회 다링(나눔걷기)행사 참석
- 6.17. • 을지태극연습 자체강평 보고 회의
- 6.19. • 법무부-부산시 교정시설 통합 이전 업무협약 체결
- 6.20. • 장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 6.24. • 검찰과거사위원회 감사패 전달
  • 장관,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단 면담
- 6.25. • 적극행정 유공 포상식
  • 차관, 법무부·통일부·국회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 참석
- 6.27. •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 종합대책 추진
  • 법무부-한국마사회, 보호관찰 청소년 힐링승마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6.28. • 제54회 교도관 무도대회

7월

- 7. 1. •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행사
- 7. 2. •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포상식
- 7. 4.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 7. 8. • 장관, 제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참석
- 7.10. • 외국인관광객 출국 시, 사전등록 없이 자동심사대 이용 실시
  • 결혼이민자 사증발급·체류관리 및 국적취득제도에 대한 간담회 개최
- 7.17. • 장관, 제71주년 제헌절 경축 행사 참석
- 7.19. • 난민위원회 개최
  •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 포상식
- 7.22. •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 업무협약 체결
- 7.23. • 장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참석
- 7.24. •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식
  • 전국소년보호기관장 영상회의
  • 차관, UN 특별 보고관 면담
  • 교정시설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및 시범실시
- 7.29.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8월

- 8. 1. • 신임검사 임관식
- 8. 5. • 카자흐스탄 법무부장관 예방
- 8. 6. • 차관, 싱가포르 협약 서명식 및 컨퍼런스 참석(8.6.~8.8)
- 8.12. • 교정본부 대표 캐릭터 '보라미' 리뉴얼 및 새로운 여성 캐릭터 '보드미' 개발
- 8.14. • 명예보호관찰관(배우 김원희) 위촉
  • 차관, 태백시 교정시설 신축 후보지 정책현장방문
- 8.21. •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제도 개선안」 마련
- 8.22. •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에 대한 제1회 공청회 개최
- 8.26. • 차관,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참석
- 8.28. • 제5회 국제인권 심포지엄 개최
  • 법무부, 을지태극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 8.29. • 교정작품 쇼핑몰 운영 시행

2019 법무행정일지

9월

- 9. 1. • 전국 4개 소년원기관 교육·수용 전담제 실시
- 9. 2. • 재외동포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지원을 위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 의무 시행
- 9. 4. • 장관,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안양의 집) 방문
- 9. 5. • 차관,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평화의 집) 방문
- 9. 9. • 65대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임식
  • 66대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식
- 9.10. • 장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 한·중 형사사법협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및 인터넷도박 사범 5명 국내로 강제송환
- 9.11. • 장관, '청년전태일' 단체 회원들과의 만남
- 9.12. • 장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정책현장 방문
- 9.16. • 장관, 전자증권제도 전면시행 기념식 참석
- 9.17. •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 법무부-대한변협 '제8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강 행사
- 9.18. • 장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참석
  • 본부배상심의회 개최
  • 제10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 9.20. • 장관, 의정부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장관, 의정부지방검찰청 정책현장 방문
  • 차관, 제8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참석
- 9.24. •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개시
- 9.25. • 한국-홍콩 법무협력 업무협약 체결
- 9.26. • 법무부-산하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 발족
  •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에 대한 제2회 공청회 개최
- 9.27. • 장관, 법무부 산하 단체장 접견
  • 법무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1회 아태 지식재산권 법률워크숍 개최
- 9.30.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

10월

- 10. 1.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첫 번째 권고안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발표
- 10. 7.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 마련' 권고안 발표
- 10. 8. • 장관, 검찰개혁 추진방안 브리핑
- 10.10. •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 개최
  • 차관, 외국인정책실무협의회 참석
- 10.11. • 난민위원회 개최
- 10.12. • 법무부·대검찰청 검찰개혁 방안 협의
- 10.15. • 법무부 국정감사
- 10.18.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대해 권고
- 10.21. • 법무부 종합감사
  • 자신출국 외국인에 대한 '사전 신고제' 시행
  •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시행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배당절차 투명화) 방안'에 대해 권고안 발표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과 관련하여 권고안 발표
- 10.23.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직장 교육 실시
- 10.24. • 상소권회복·형사재심 청구 시 변호사 접견기회 확대 시행
- 10.25. • 법무부-태백시 신축 교정시설 업무협약 체결
- 10.28.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관련 권고안 발표
  • 제7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 10.30. • 장관직무대행, 국제형사재판소(ICC) 사무국장 면담

2019 법무행정일지

11월

- 11. 1.
  -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 법무부-관계기관, 지진에 따른 화재발생 등 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 진행
- 11. 6.
  - 제7회 전국 교도관 응급처치 경연대회 개최
- 11. 8.
  - 장관직무대행,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 개최
  -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위한 '법조계 전관특혜 T/F' 구성·운영
  -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완료 및 연내 추진할 검찰개혁 중점과제 대통령 보고
- 11.11.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 관련 권고
- 11.14.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회의 및 위원 위촉
  - 법무부-서울대, '외국인정책 연구 및 이민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부설 법정신의학연구소 설립
- 11.15.
  -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한국소년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 11.18.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 폐지' 관련 권고
- 11.20.
  - '귀화자 62년 만에 20만 명 돌파기념'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 11.22.
  - 장관직무대행, 이민정책연구원 10주년 기념행사 참석
- 11.25.
  - UN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기념,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마련(11.25.~12.1.)
  - 법무부-태국 노동부, 우리나라 내 태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11.26.
  -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 11.27.
  - 제12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 한-방글라데시, 기술창업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 11.28.
  - 태국 방콕에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 개최
- 11.29.
  - 2019년 기업환경 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12월

- 12. 2.
  - 장관직무대행, 춘천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 장관직무대행, 국군장병 위문행사(육군 제7보병사단)
- 12. 3.
  - 법무부-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 12. 6.
  - 공익신탁자문위원회 개최 및 위원 위촉
  - 난민위원회 개최
  - 법무부-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회, '수형자 심리치료 정책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12. 9.
  - 우수 인권 법무·검찰공무원 표창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국회의원 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 및 열람·등사범위 확대' 관련 권고
- 12.10.
  - '사회적 기업 법인격 도입방안'의 주제로 선진법제포럼 개최
  -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운영위원회 개최
- 12.11.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개최
  - 법무부-영월군 교정시설관련 업무협약
- 12.12.
  - 장관직무대행, 국가 관광전략회의 참석
- 12.16.
  - 법무부-농식품부·해수부, '계절근로 박람회' 개최
- 12.17.
  - 장관직무대행, 연말 성금모금행사 참여(KBS)
- 12.18.
  -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
  -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개최
  - 2019년 법무부 범죄예방 수기 공모전 시상식 및 범죄예방 우수 공무원 포상
- 12.19.
  - 경남 창원시에 14번째 스마일센터 설치
- 12.20.
  - 법조협회, 제18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개최
- 12.23.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검찰옴부즈만 수용,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등 수사상 인권보호조치' 관련 권고
- 12.24.
  -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장기체류자격(E-8)' 신설
- 12.31.
  -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

2019년 법무부가 만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

2019년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정의를 지켜온 법무부의 2019년 활동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2019. 01.



1월 2일 2019년 법무부 시무식



1월 7일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해단식·위촉식



1월 14일 제48회 사법연수생 수료식



1월 21일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1월 22일 2018년 SNS 홍보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포상



1월 24일
평화의 집 방문



1월 29일 검찰업무유공 포상



1월 29일 우수공무원 포상



1월 30일 아달지자 지메네스 주한 동티모르 대사 예방

2019. 02.



2월 11일 신임검사 임관식



2월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2월 26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브리핑



2월 26일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



2월 27일 신임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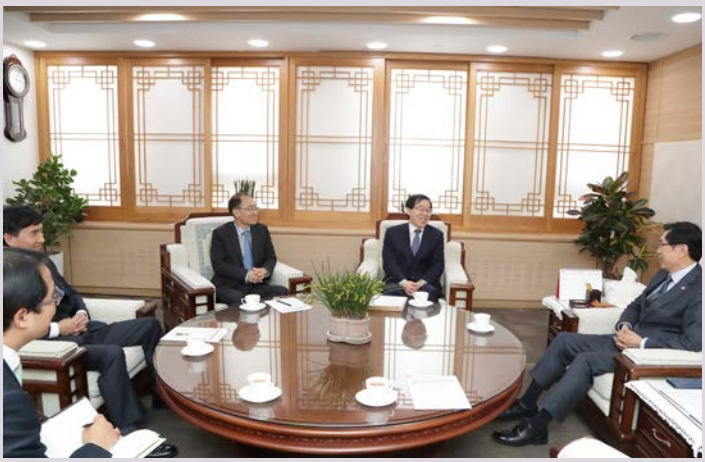


2월 28일 2019년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2019. 03.



3월 13일 2019년 정부업무보고 브리핑



3월 15일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면담



3월 19일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관련 브리핑



3월 25일 법무부 국가정황정보 자문위원 위촉



3월 26일 장도연의 롱-터뷰



3월 28일 자체평가위원회

2019. 04.



4월 1일
레 타잉 롱
베트남 법무부장관 면담



4월 1일 신임검사 임관식



4월 5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4월 18일 안산보호관찰소 나눔농장 사회봉사명령 현장 방문



4월 19일 이강에류(주), 소년원학교 교육기부 감사패 증정식



4월 25일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



4월 26일
리차드 파워스 미국 반독점국 형사집행 부국장 면담



4월 29일 마광열 법무부 감찰관 임명장 전수



4월 30일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위촉식

2019. 05.



5월 2일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5월 3일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



5월 8일 신임검사 임관식



5월 9일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5월 15일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면담



5월 15일 제15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이화여대 아령당 방문



5월 20일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5월 20일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5월 23일
경력검사 리더십 강화(講話)



5월 29일 2019년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5월 30일 김수아 인권정책과장 임명장 전수

2019. 06.



6월 5일 법무자문위원회 위촉식



6월 10일
엘리자베스 김
한인검사협회(KPA) 회장 면담



6월 17일
을지태극연습
자체강평보고회의



6월 19일 부산광역시 소재 교정시설 통합 이전 양해각서



6월 24일 검찰과거사위원회 감사장 전달



6월 24일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단 면담



6월 25일
적극행정 유공 포상

2019. 07.



7월 1일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



7월 2일 2019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포상



7월 4일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7월 19일 2019년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정부포상 전수



7월 24일 제31기 공익법무관 임용장 수여



7월 2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면담



7월 30일
검찰 고위간부 보직 신고

2019. 08.



8월 1일 신임 검사 임관식



8월 5일 마랏 베케타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무부 장관 간담회



8월 6일 전입 검사 보직 변경 신고



8월 14일
배우 김원희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장 수여



8월 19일 김기수 국가송무과장 임명장 및 5급 임기제 공무원 임명장 전수

2019. 09.



9월 4일 안양의 집 방문



9월 9일 제65대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임식



9월 9일
제66대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식



9월 10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9월 10일
7급이하 직원 오찬 간담회



9월 11일 청년전태일 단체 회원들과 면담



9월 12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9월 20일 의정부교도소 방문



9월 20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방문



9월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방문



9월 27일 장관 주재 기획조정실
오찬 간담회



9월 30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

2019. 10.



10월 4일 장관 주재 법무실 오찬 간담회



10월 7일 복두규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 임명장 전수



10월 8일
검찰개혁 브리핑



10월 10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



10월 14일
검찰개혁 브리핑



10월 18일 한동수 신임 대검 감찰부장 임명장 전수



10월 25일 법무부-태백시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



10월 30일 피터루이스 ICC 사무국장 면담

2019. 11.



11월 6일
제15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11월 14일 2019년 제1차 법무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11월 14일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11월 15일 2019년 제2차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11월 15일 이형재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위촉



11월 22일 이민정책연구원 10주년 기념행사



11월 26일 11월 26일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11월 27일
제12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2019. 12.



12월 2일
육군 제7보병사단
3연대 위문



12월 2일 춘천소년원 방문



12월 6일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



12월 9일
2019년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



12월 11일 법무부·영월군 교정시설관련 업무 협약



12월 17일 '나눔은 행복입니다' 연말 성금 전달



12월 18일 2019년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



12월 18일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12월 18일
지도감독 우수사례
공모전 및 우수직원 시상식

2019
법무연감

CONTENTS

제1장 총 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56
제2절 기구·인원 63
제3절 예산·시설 82

제2장 업무실적

제1절 기획조정업무 94
1.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탈검찰화 추진 94
2.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97
3.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100
4. 법무행정개선 추진 104
5.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107
6. 규제혁신 적극 추진 109
7.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110
8.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117
9.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118
10. 스마트 법무정보화 추진 122
11. 법무부 양성평등 전담부서 설치 132
12. 법무연수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133

제2절 정책 홍보 활동 151
1. 기관장 소통 강화 151
2. 언론을 활용한 소통 154
3. 허위 조작 정보 대응 155
4. 디지털소통 강화 157
5. 국민 참여 이벤트 159
6. 부처 협업 홍보 161
7. 캠페인 및 광고 164
8. 국민 참여 홍보 165
9. 홍보 교육 166
10. 법무부 정책홍보전략 실무협의회 166

제3절 법무업무 167

1.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법제 정비 167
2. 인권과 민생을 위한 법제 정비 및 법령자문 기능 강화 168
3.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171
4.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173
5.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177
6. 국제법무 협력 및 교류 179
7. 국제규범 형성과정 참여 183
8. 국제법무 역량 강화 185
9. 국가송무행정의 효율적 수행 190
10.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및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강화 198
11.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201
12.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203
13.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205
14.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206
15. 전자어음제도 운영 207
16. 전자증권제도 시행 209
17. 중재산업 활성화 211
18.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212
19. 파산 면제재산 한도 상향 214
20.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215
21. 선진법제포럼 개최 216
22.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도모 217

제4절 검찰업무 222

1. 검찰 역량의 강화 222
2. 검찰업무의 추진방향 226
3.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231
4. 국민의 권익 보호 241
5.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244
6. 테러 등 국가안보위해 세력 엄정대처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263
7.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및 침해된 인권 회복 노력 264
8.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265
9.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 266
10.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268
11. 국제공조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엄정 확립 269
12.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275
13.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276
14.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변호인 변론권 강화 277
15.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 추진 278

제5절 범죄예방업무 280
1.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280
2.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 290
3. 감호제도 개선 295
4.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300
5.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302
6. 소년재비행방지 역량 강화 310
7.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전개 315
8.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320
9. 출소자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추진 325

제6절 감찰·감사업무 333
1. 감찰업무 333
2. 감사업무 335

제7절 인권업무 339
1.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339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 343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351
4.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365
5.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368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371

제8절 교정업무 373
1.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 373
2. 국민 중심 교정행정 서비스 제공 380
3. 미래를 지향하는 교정행정 구현 386
4. 재범방지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정정책 추진 393

제9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399
1.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399
2.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408
3.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422
4.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428
5.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행정 개선 435
6.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443
7.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449

제10절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 업무 457
1.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 배경 및 운영 경과 457
2.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사건 조사 결과 457

제11절 법무·검찰개혁 업무 460
1.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운영 460
2. 진행상황 460

제3장 법령정비

제1절 개관 464
제2절 법률 465
제3절 대통령령 475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497

제4장 국회업무

513

제5장 통 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522
제2절 검찰업무 통계 536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557
제4절 인권업무 통계 593
제5절 교정업무 통계 595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617

자 료

제1절 직제 636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665
제3절 장관 연설문 681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737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754
제6절 인사 801
제7절 국외훈련·출장 802
제8절 국제교류 현황 803
제9절 상훈 815
제10절 위원회 현황 827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832

부 록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法務年鑑

01



총 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제2절 기구·인원
제3절 예산·시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1. 국정방향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권호연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및 '더불어 잘사는 경제' 등을 5대 국정목표로 정하고, 국가비전 및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였으며, 국정전략별로 핵심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정과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487개 실천과제를 세분류하고, 각 실천과제별로 연차별 이행목표와 이행계획 설정 등 새로운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정부 출범 3년차인 2019년에는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및 100대 국정과제의 지속적 추진을 토대로 '함께 잘 사는 나라', '창의와 혁신 선도' 및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등을 이루기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와 관련한 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및 우리 부에서 추진한 2019년도 국정과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1-1 |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①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①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②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②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②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②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	②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③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③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③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③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③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④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④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④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⑤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⑤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100대 국정과제 (489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64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4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 표 1-2 | 2019년 법무부 국정과제 현황

국정 목표	국정 전략	국정과제 (주관 4개, 협조 5개)	주관 (협조)	실천과제 (16개)
국민이 주인인 정부	①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권익위 문체부)	1. 국정농단의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2.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등 후속조치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 법무부	2.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의 방지 3.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 5. 공익법인의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민공익위원회(가칭)'의 설치
	②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 행안부 인권위	1. 국민 인권 보호 강화 2.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3.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④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 경찰청	1.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2.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협조)	경찰청 (법무부)	8.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및 생활안전분야 역량 강화
더불어 잘사는 경제	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협조)	금융위 (법무부)	4.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대출채권 관리 강화
	②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협조)	공정위 (법무부)	1.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법적기반 구축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협조)	공정위 (법무부)	4. 집단소송제 등 도입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협조)	여성가족부 (법무부)	5. 젠더폭력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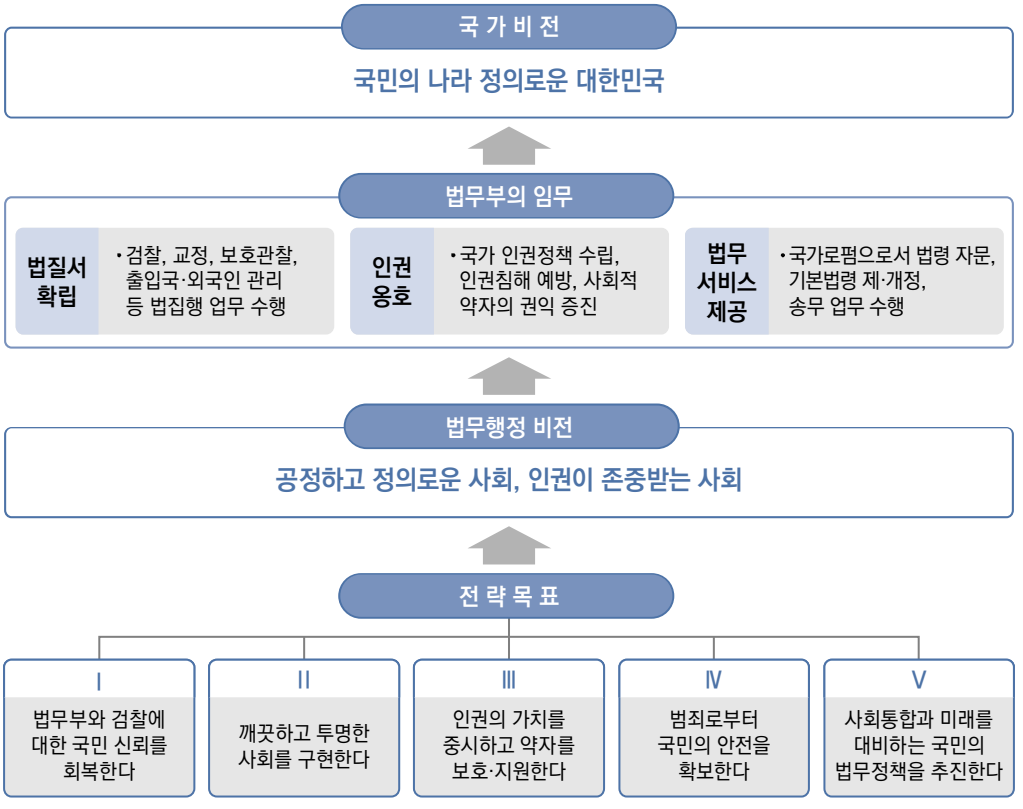
2. 법무행정의 지표

혁신행정담당관실 주무관 안지혜

법무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및 국정목표 등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 등 법무부 3대 임무를 기본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법무행정 비전으로 삼아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등 국정기조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 등을 반영하여 2019년도 법무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본부 각 부서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등 5대 전략목표 아래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등 13개 성과목표 및 '경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등 67개의 관리과제를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2019년도 우리 부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체계 및 전략목표에 따른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는 다음과 같다.

| 표 1-3 | 201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체계



| 표 1-4 | 201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Ⅰ.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1.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와 적폐청산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①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공소유지 철저	•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실형선고율 제고
		②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회 논의 지원 •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연계법안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 지원
		③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등 •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2.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①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	•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지위·권력관계를 이용한 비리 수사 추진
		②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벌칙해설서 및 선거사건 처리기준 발간·배포를 통해 선거사건 처리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③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송무 제도 정착	• 상소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적정상소권 행사 방안 추진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 향상을 위해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포털 구현
		④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한 부정축재사범 엄단 등 법집행 공정성 강화	• 집중 송환 추진 및 국외도피사범 조기 송환을 위한 여권무효화, 출국금지 강화 등 • 형사사법공조망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등
		⑤ 감찰·감사활동 강화를 통한 내부 비위근절 및 예방	• 본부 및 소속·산하공공기관 감찰·감사를 강화하고 감찰·감사인력 전문화 추진
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한다	1.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사회 실현에 기여한다	① 5대 중대 부패범죄 엄단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 집중 단속 등
		② 토착 세력과 결탁한 비위 행위 등 지역 토착비리 척결	• 유관기관 협력으로 부정수급 자료 분석, 공기업 등의 구조적·고질적 비리 적발 등
		③ 법조 비리 제재 강화 및 변호사 제도 개선	• 변호사징계위원회 확대 개최, 변호사 업무정지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법조 비리 제재 강화
		④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 공익법인의 총괄 관리·감독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설치를 위한 법률안 마련
		⑤ 부패, 비리 등 범죄로 인한 국고손실 환수 철저	• 입찰담합 및 부패·비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유기적 대응으로 국고손실 환수 노력
		⑥ 국민소송제도 도입 추진	• 국민이 직접 감시·감독할 수 있는 참여수단을 위한 법안 마련
	2. 경제질서 저해사범을 단속한다	① 금융·증권·조세 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 자본시장교란행위, 횡령·배임 등 기업 활동 저해사범 집중 단속 • 역외범죄 합동단속 협의체,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협력 강화
		②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엄단	• 지식재산권 전담 검사실 중심으로 유관기관 특사경과 협력하여 지속 단속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Ⅲ.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지원한다	1. 인권 보호 체계 및 국제인권 대응체계 강화 등 법무행정의 인권수준을 향상한다	① 인권보호체계 구축 및 국제인권 대응	• 「인권기본법」,「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유족지원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인권정책체계 마련
		② 인권침해 자체예방 및 조사·구제시스템 강화	• 구금·보호시설 실태점검·개선조치 등 인권침해 자체예방 및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③ 통신 및 안보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마련 •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심 대응 매뉴얼' 개정 및 배포
		④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	• 교정시설 신축, 수용동 증·개축, 리모델링 등을 통한 수용환경개선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법률 복지를 강화 한다	①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 법률구조공단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법률홈닥터 운영과 법률구조법 개정 추진
		② 여성·아동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에 적합한 진술조력인 추가 양성 및 확대 배치 등
		③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관련 법률개정 및 마을변호사 제도의 발전적 정착
		④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회봉사 집행 강화	• 영세·고령농가 일손돕기 등 취약계층 관련 봉사활동 확대 추진
		⑤ 상가·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
		⑥ 집합건물 분쟁해결을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공백 방지 등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
		⑦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채권추심법 개정 및 개정 내용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
		⑧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 활성화	• 변호사조력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 무료 법률상담 및 비용 지원
		⑨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활성화 추진	• 집단소송절차 및 소송허가요건 개선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등
Ⅳ.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1.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한다	① 공공수사 분야의 전문성 강화	• 국가안보 수사 역량 강화 및 노동·집단·산업안전 수사의 전문성 강화
		②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 처벌 강화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설치 확대, 개정 성폭력 범죄 수사매뉴얼 배포 등
		③ 마약범죄 및 강력범죄 대응역량 강화	• 중대·조직적 마약류범죄 수사역량 집중 •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해 국제공조 지속 추진
		④ 서민생활안전·대형안전사고·교통안전 관련 범죄 엄단	•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등 서민 상대 갈취 사범 등에 대한 특별단속 및 처벌 강화
	2. 범죄예방 활동 및 준법문화 조성으로 안전한	①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방지 대책 강화	•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확대 설치 및 고위험사범 개별심리치료 확대와 성범죄자 신상등록시스템 고도화
		②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전담인력 증원 추진 및 상시적 정부합동단속 실시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사회를 구현한다	③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학교폭력 및 초기비행 예방교육 강화, 초기 비행소년 보호자 교육 강화 및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④ 참여형·맞춤형 법교육을 통한 준법의식 함양	• 북한이탈 청소년, 이민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법교육 및 생활법률특강 법교육 콘텐츠 개발
	3. 실질적인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①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구축, 다양한 수용자 교정·교화 방송콘텐츠 개편 및 개발
		②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 취업유망 직업훈련 종목 확충 및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③ 모범수형자 등 조기 사회복귀 정착을 위한 가석방 확대	• 취업조건부 가석방, 필요적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기준 운영 확대 등 가석방 확대
		④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고위험군 특정범죄 수용자에 대한 전문적 심리치료 실시 • 전문 인력 양성 및 직원 역량 강화와 표준화된 상담 매뉴얼 개발
		⑤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 내실화	• 원격의료 확대 운영 및 예방의료 활동 강화
		⑥ 소년원 재범방지 맞춤형 교육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와 체계적인 교정교육 실시 등
		⑦ 치료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감호 내실화	• 의사 채용방법 다양화 및 정신과의료 인력 확보,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추진 등
		⑧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전문처우 프로그램 강화	• 맞춤형 보호관찰 프로그램 및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실시
		⑨ 출소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 추진	• 출소자 채용약정 고용협력기업 지속 발굴 및 무주택 출소자 주거지원사업 등 취업연계 활성화
V. 사회통합과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의 법무정책을 추진한다	1. 사회통합의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①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 외국인 자동심사대 대상 확대 및 입국심사증 도입 등 입국심사 절차 간소화
		②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 재외동포 처우개선 및 체류편의 제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등
		③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이민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④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및 중도입국자녀 공교육진입 지원 등
		⑤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설계 및 추진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19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⑥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 제도개선 및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식 실시, 귀화 민간면접관 교육 및 전문성 강화
		⑦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 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 부적격결정제도 도입 등 선진 심사체제 구축 및 제2차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 사업의 정규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검토
	2. 미래지향적 법무정책을	① 법률시장 개방 대비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찾아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실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운영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명	주요내용
	추진한다	②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	• 변화된 남북 관계에 상응하는 법제도 연구 및 법적 기반 구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강화
		③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	• 스토킹처벌법 제정, 성폭력 범죄 처벌규정·불법사찰 관련 법령 개선 추진
		④ 공증제도 활성화 및 선진화 방안	• 화상공증제도 적극 홍보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⑤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개선	•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 및 변호사시험 5대 권역 확대 실시
	3. 국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①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정보공개 담당자 역량강화 및 사전공개 확대
		②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정책블로그 기자단 선발, SNS채널을 통한 소통, 영상콘텐츠 제작 등
		③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제고	•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기능 개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④ 교정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성화	• 스마트접견 활성화 및 수용(출소)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행
		⑤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	• 직업체험, 보라미준법교실 운영 등 교정정책 홍보
		⑥ 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 강화	• 미담사례 및 규제개혁 홍보강화, 출입국 현장투어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만족도 조사 실시
	4. 법무행정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① 전자민원서비스 및 행정효율 제고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체계 강화 등
		② 국가 비상대비 및 재난 안전 관리 역량 강화	• 자연재해 및 대형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
		③ 이용고객 만족을 위한 법무시설 신·증축	• 환경 친화적이고 편리한 법무시설 조성, 법무시설의 편리한 기능유지 및 개선 등

다. 국정과제 등 관리체계

법무부는 국정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주기적 이행점검회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자체평가 등을 통해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2절 기구·인원

제1항 본 부

1. 기구

본부 기구는 2019. 12. 31. 현재 2실 3국 2본부 9관 48과로 편성되어 있다.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을 두고 있으며 법무부 주요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당정협의, 국회업무, 부내 행정개선 총괄·지원 및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사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법무시설 조성, 법무행정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 비상사태 대비업무,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법무실

법무실은 법무심의관, 법무과, 국제법무과, 국가송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에 대한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국내외 법무자료의 조사 연구와 국제법무 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및 공증인 업무의 감독, 공익법무관의 관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국가배상·헌법재판 관련업무, 국고손실 환수송무 업무, 남북대화·교류협력 관련 법적지원, 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의 관장·실시, 법조인 양성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다. 검찰국

검찰국은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를 두고 있으며,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검찰공무원의 인사, 검찰청 정원 배정,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범죄정보의 수집·분석 및 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대책 수립, 형 집행의 지휘·감독,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마약류보상금 및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심의 및 결정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무,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의한 재판관할권 행사문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집행 및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사후관리, 형사관계법령 입안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라.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예방기획과, 보호정책과, 치료처우과, 보호관찰과, 소년보호과, 특정범죄자관리과를 두고 있으며, 범죄예방 기획·조직·인사·예산·복무관리 등 범죄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질서 준수의식 고양을 위한 캠페인 전개, '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법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법교육 교재·프로그램 보급,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지원, 법질서 실천운동 등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치료감호 정책 기획 및 집행 감독,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및 결정 집행,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위치추적 전자감독·성충동 약물치료·성폭력범죄자의 등록·관리 및 임시퇴원·가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원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원생에 대한 적정한 분류처우와 교과교육, 인성교육 및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소년범 사회 내 처우 전담, 소년 보호관찰·조사·수강·사회봉사 등 청소년 비행예방대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출소자·보호관찰대상자·퇴원생에 대한 숙식제공·주거지원·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사회복귀를 돕는 갱생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 감찰관실

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감찰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사정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무부 소속기관·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바. 인권국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를 두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업무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등을 수행 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관리·감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무행정 수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법무부 공무원의 인권 교육, 검찰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 산하기관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평가,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여성·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 교정본부

교정본부는 교정정책단에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를 두고 있으며, 보안정책단에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를 두고 있다.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기획, 조직·인사·예산·복무 감독·상훈·홍보·국제관계업무, 교정관련 법령정비, 교도작업 운영, 취업·창업 지원, 수용자 교육 기획, 출소예정자 사회 적응 지원, 수용자 수용·처우·석방·접견, 참관, 이송, 가석방, 분류처우, 수용자 보건위생, 의료 및 약제, 질병예방, 수용자 청원, 인권 및 소송, 수용자 심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정책단과 국적·통합정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정책단은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적·통합정책단은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출입국관리 조직·인사·예산·복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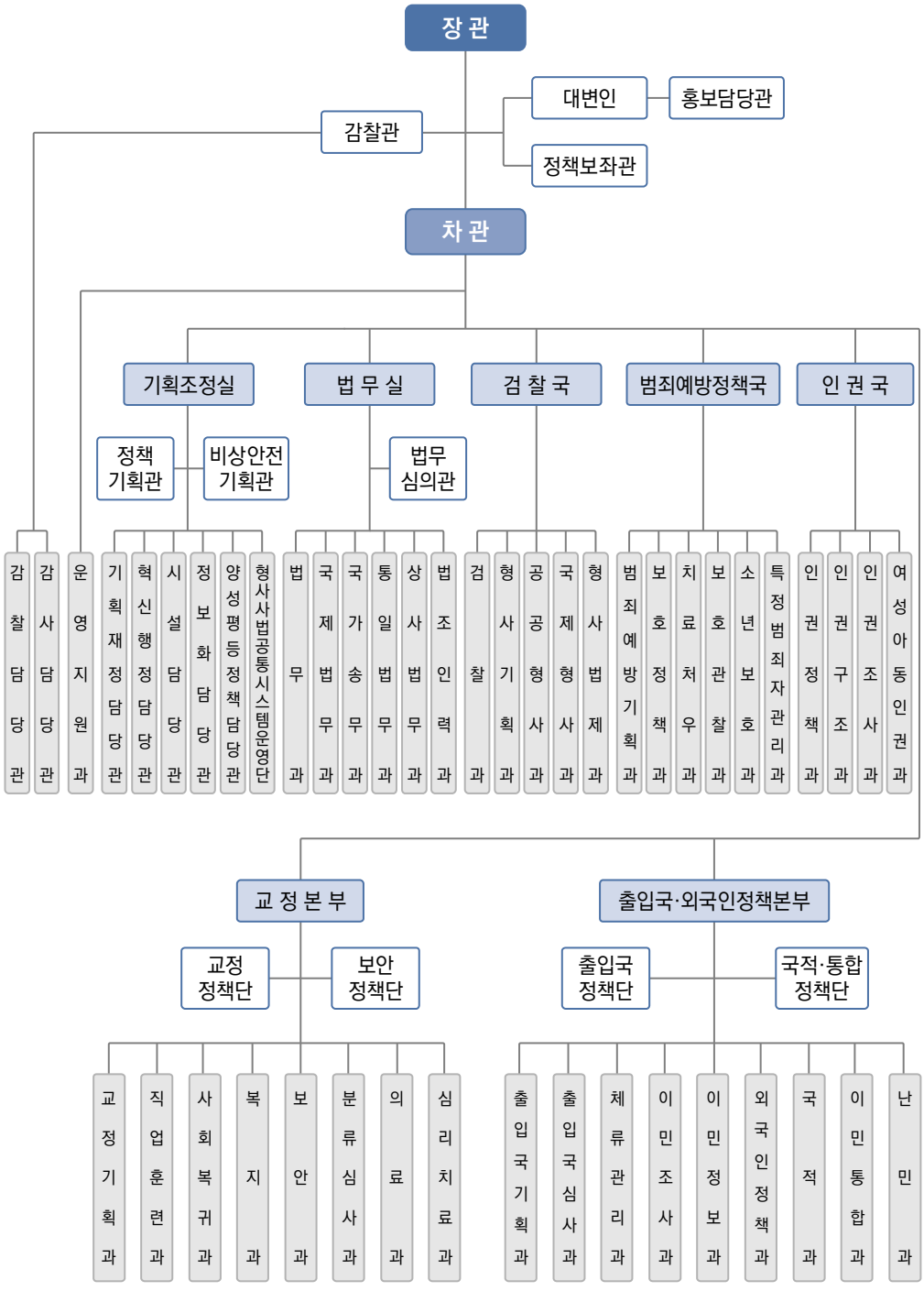
소관법령의 입안 및 외국인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 왕래자의 출입심사, 사증 및 사증발급 인정서의 발급심사, 출입국 규제,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등록,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관련 조사, 외국인 동향조사, 귀화·국적회복·국적판정 등 국적취득, 국적상실 및 이탈, 난민인정심사 업무 및 출입국항 난민신청 회부심사 업무, 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및 국내 정착지원,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 등 난민의 처우 관련 정책, 재한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 총괄,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정책, 외국 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부여에 관한 정책 총괄, 외국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담당기관과 협력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외국인정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 기 타

그밖에 대변인실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법무정책에 관한 각종 홍보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운영지원과는 보안, 기록물 관리,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 국유재산과 물품관리, 자금의 운용 및 회계, 정보공개업무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2019. 12. 31. 현재 법무부 기구는 〈표 1-5〉와 같다.

| 표 1-5 | 본부 조직도


장관
감찰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정책보좌관
차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법무과
국제법무과
국가송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범죄예방기획과
보호정책과
치료처우과
보호관찰과
소년보호과
특정범죄자관리과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교정정책단
보안정책단
출입국정책단
국적·통합정책단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과

2. 인원

정보보호·공공데이터 전담,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 관리 인력, 외국인 생활불편 제도 개선 인력, 난민심사 담당인력 등 18명을 증원하여 2019. 12. 31. 현재 본부 정원 697명 및 현원 691명으로 직종별 정원 및 현원은 〈표 1-6〉과 같다.

| 표 1-6 | 본부 직종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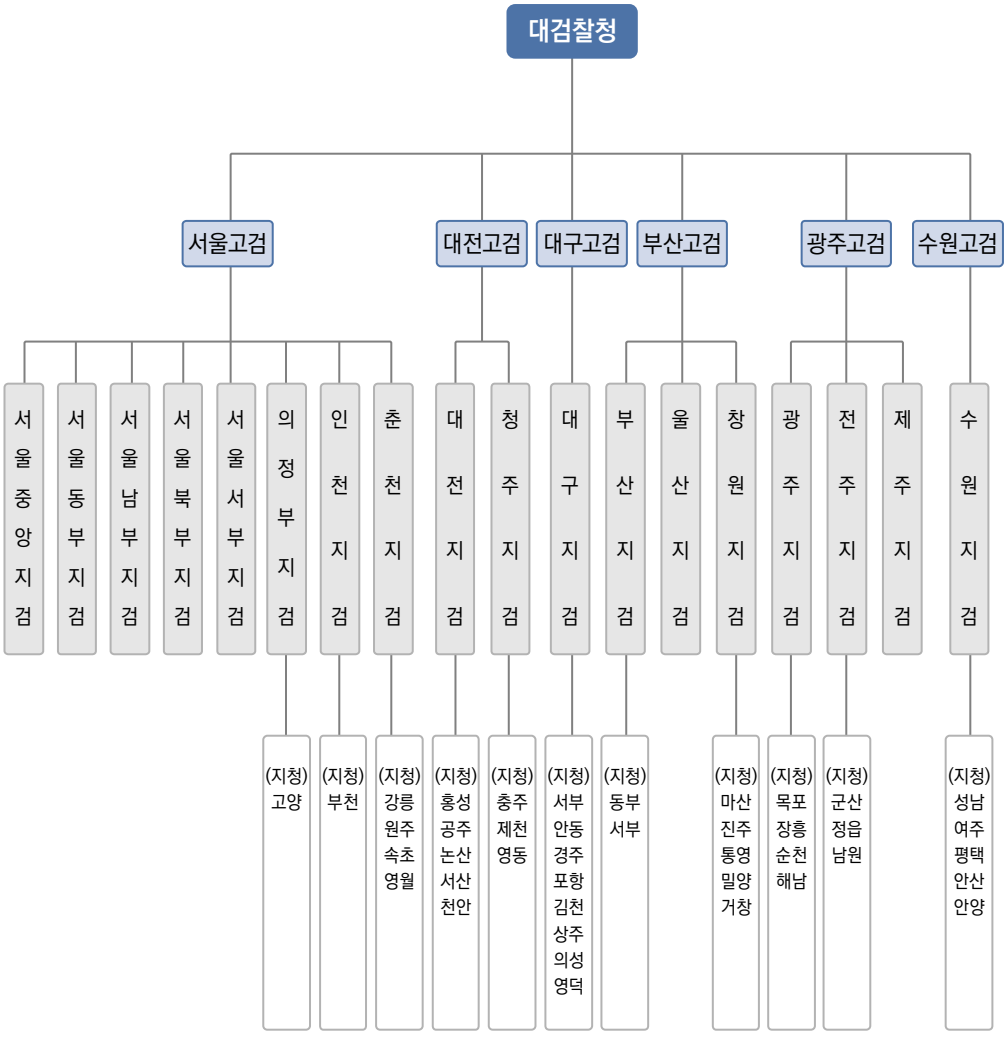
구 분	계	정무직	검사	일반직	별정직
정원	697	2	25	666	4
현원	691	2	34	653	2

제2항 소속기관

1. 검찰청

검찰기구는 2019. 12. 31. 현재 대검찰청과 6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41개 지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청 조직 정원 및 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7 | 검찰청 조직도



| 표 1-8 |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단위 : 명)

구 분	계	검 사	일반직
인 원	10,785	2,292	8,493

| 표 1-9 | 검사의 직위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위	정 원	현 원
계	2,292	2,078
검찰총장	1	1
고등검사장급	7	4
대검검사급	32	30
검사	2,252	2,043

| 표 1-10 | 검사 외의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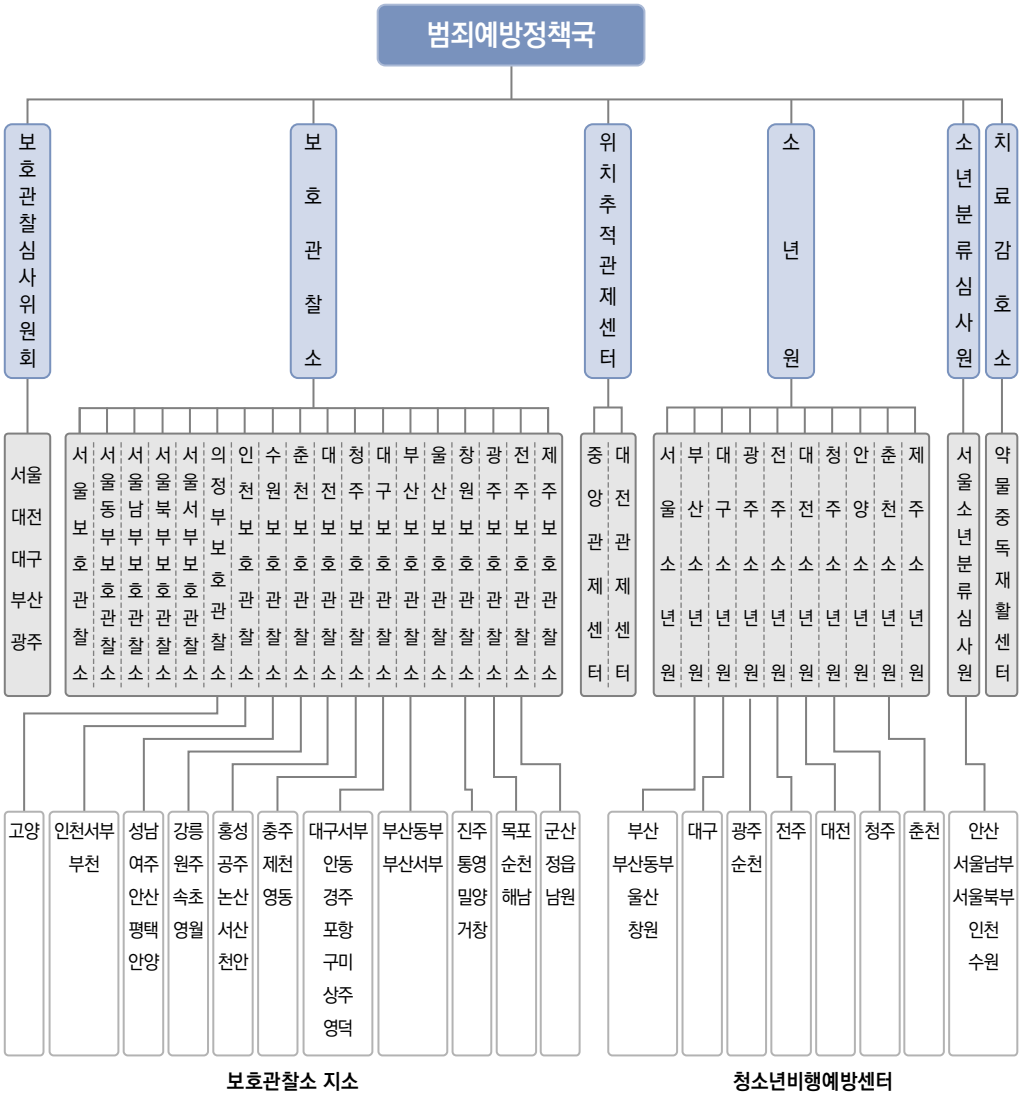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8,493	8,433
고위공무원단	26	24
검찰부이사관	17	15
검찰수사서기관	183	160
임기제서기관	1	1
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	459	426
검찰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	22	20
검찰주사	1,465	1,446
검찰주사보	1,858	1,886
검찰주사보(속기사)	28	26
검찰서기	1,100	1,104
검찰서기보	864	802
마약수사직	272	254
통계직	1	1
전산직	233	217
시설·공업직	91	89
사서직	4	4
임업직	2	2
운전직	275	270
방호직	158	153
위생직	1	1
관리운영직	1,360	1,463
연구직	68	65
전문경력관	5	4
별정직	0	0

2. 보호기관

보호기관은 2019. 12. 31. 현재 18개 보호관찰소, 39개 보호관찰지소, 2개 위치추적 관제센터,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0개 소년원, 1개 소년분류심사원, 16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개 치료감호소, 1개 약물중독재활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표 1-11〉 내지 〈표 1-14〉와 같다.

| 표 1-11 |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조직도



| 표 1-12 |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1,711	1,704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임기제)	2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3
서기관	29	29
서기관(임기제)	3	3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6	6
보호사무관	189	187
보호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	1	1
보호주사	279	271
전산주사	2	2
보호주사보	374	371
보호주사보또는전산주사보	4	4
운전주사보	0	2
보호서기	377	376
보호서기또는전산서기	1	1
공업서기	4	4
운전서기	2	17
보호서기보	351	349
보호서기보또는전산서기보	1	1
공업서기보	1	2
운전서기보	61	43
방호서기보	15	17
관리운영직군	4	13

| 표 1-13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920	902
고위공무원단	2	2
서기관	16	16
기술서기관	9	8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9	9
보호사무관	44	44
의무사무관	13	9
보호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2	0
보호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1
보호주사	100	94
공업주사	3	3
시설주사	1	1
간호주사	3	3
보호주사보	176	177
공업주사보	3	4
의료기술주사보	1	0
간호주사보	12	12
보호서기	178	171
보호서기 또는 간호서기	1	1
공업서기	5	5
간호서기	4	4
시설서기	2	2
식품위생서기	7	7
보호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2	2
조리서기	1	1
방호서기	1	1
보호서기보	159	159
공업서기보	11	10
식품위생서기보	4	4
보호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3	4
운전서기보	23	23
조리서기보	56	55
방호서기보	19	19
관리운영직군	14	16
전문경력관나군(직업훈련담당)	21	21
전문경력관나군(교과교육담당)	13	13
전문경력관나군(특수교육담당)	1	1

| 표 1-14 | 치료감호소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419	388
고위공무원단	2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	1	1
서기관	1	1
기술서기관	16	7
보호사무관	2	2
보호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의무사무관	2	2
약무사무관	1	1
간호사무관	2	2
보건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	1	1
보호주사	3	3
보호주사 또는 행정주사	5	5
약무주사	2	0
간호주사	22	21
간호조무주사	2	2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4	4
의료기술주사	1	1
방호주사	1	1
보호주사보	5	5
보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4	4
약무주사보	3	3
간호주사보	51	44
간호조무주사보	6	6
보건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2	2
의료기술주사보	2	2
시설주사보	1	1
전산주사보	1	1
공업주사보	1	1
방송통신주사보	1	1
조리주사보	1	1

직 급	정 원	현 원
기계운영주사보	1	1
보호서기	4	6
보호서기 또는 행정서기	5	5
공업서기	2	3
간호서기	53	47
의료기술서기	3	3
간호조무서기	15	15
전기운영서기	1	1
기계운영서기	2	2
보호서기보	2	2
보호서기보 또는 행정서기보	2	0
간호서기보	0	1
식품위생서기보	1	1
시설서기보	1	1
공업서기보	1	0
운전서기보	3	3
간호조무서기보	124	118
조리서기보	17	17
방호서기보	12	11
관리운영직군	4	6
전문경력관가군(의료시설담당)	1	1
전문경력관나군(작업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나군(사회사업담당)	4	4
전문경력관나군(재활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나군(직업훈련담당)	5	5
전문경력관다군(작업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다군(사회사업담당)	1	1
전문경력관다군(특수치료담당)	1	1
전문경력관다군(직업훈련담당)	2	0

3. 교정기관

2019. 12. 31. 현재 법무부 산하 전국의 교정기관은 중간 감독기관인 4개의 지방 교정청과 38개의 교도소, 11개의 구치소, 3개의 지소 등 총 56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0. 12. 1. 개청한 국내 최초 민영 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정원은 16,101명이며, 2019. 12. 31. 현재 16,176명의 교정공무원이 수용관리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19년 소속 교정기관 및 교정공무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표 1-15 | 교정기관 조직도



| 표 1-16 | 교정기관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 직 렬	정원	현원	고위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록연구사	전문경력관
계	16,101	16,176	19	11	122	65	386	1,532	1,929	5,616	6,298	4	119
교정	15,000	15,134	19	7	63	34	340	1,427	1,758	5,446	5,906		
의무	116	88	·	4	58	29	25	·	·	·	·		
약무	16	10	·	·	·	·	13	3	·	·	·		
간호	111	106	·	·	·	·	1	24	37	49	·		
의료기술	34	32	·	·	·	·	·	15	14	5	·		
식품위생	64	62	·	·	·	·	·	12	25	15	12		
행정	13	13	·	·	1	·	3	·	1	5	3		
시설	69	66	·	·	·	2	3	29	21	11	3		
전산	11	11	·	·	·	·	1	2	5	3	·		
공업	190	183	·	·	·	·	·	16	56	61	57		
농업	1	1	·	·	·	·	·	1	·	·	·		
방송통신	4	4	·	·	·	·	·	3	·	1	·		
운전	261	257	·	·	·	·	·	·	5	4	252		
보건	1	1	·	·	·	·	·	·	·	1	·		
관리운영	87	92	·	·	·	·	·	·	7	15	65		
기록연구사	4	4										4	
전문경력관(가군)	10	7											10
전문경력관(나군)	109	105											109

4. 출입국기관

2019. 12. 31. 현재 법무부 소속 출입국기관은 6개 출입국·외국인청, 13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개 외국인보호소, 1개 센터 및 24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2,439명이며, 현원은 2,399명이고,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 표 1-17 | 출입국기관 조직도



(6개 청, 13개 사무소, 2개 보호소, 1개 센터, 24개 출장소)

| 표 1-18 | 출입국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2,439	2,399
고 위 공 무 원	3	3
부 이 사 관	3	3
서 기 관	26	23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111	103
출 입 국 관 리 주 사	384	368
출 입 국 관 리 주 사 보	654	652
출 입 국 관 리 서 기	659	659
출 입 국 관 리 서 기 보	484	480
전 산 직	44	41
의 무 직	3	3
간 호 직	3	2
관 리 운 영 직 군 등	65	62

5.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보호·출입국관리직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획부, 교정직 공무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정연수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위원, 원내 일반 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과, 신임검사 교육, 로스쿨 지원, 국제교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국가송무수행자 등의 교육을 맡고 있는 용인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 12. 31. 현재 직급별 정·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19 | 법무연수원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130	171
검 사	14	26
고 위 공 무 원	6	4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등	7	8
행정사무관·교정관 등	19	25
행정주사·교감 등	26	30
행정주사보·교위 등	22	36
검찰서기·교사 등	26	38
행정서기보·운전서기보 등	10	4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등을 수행하며, 2019. 12. 31. 현재 직급별 정·현원은 아래와 같다.

| 표 1-20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12	11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1	1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검사	3	2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	2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2	3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2	1
전산주사보	1	1
기록연구사	1	1

제3절 예산·시설

1. 예 산

가. 개 요

2019년도 법무부 예산은 법무행정의 비전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개선과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 정신질환 범죄로부터 국민불안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이 전년보다 14.8% 감액된 1조 7,411억 8,000만 원, 세출이 6.5% 증액된 3조 9,231억 9,800만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1,011억 200만 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표 1-21〉과 같다.

| 표 1-21 | 2019년도 예산 및 기금

◦ 총 규 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8 예산		2019 예산 (B)	2018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예산	세 입	2,044,397	2,044,397	1,741,229	△303,168	△14.8
	세 출	3,684,535	3,684,535	3,923,198	238,663	6.5
기금	수 입	101,145	101,145	101,102	△43	△0.0
	지 출	101,145	101,145	101,102	△43	△0.0

◦ 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8 예산		2019 예산 (B)	2018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세 입	1,914,472	1,914,472	1,614,363	△300,109	△15.7
세 출	3,554,610	3,554,610	3,796,381	241,771	6.8

◦ 교도작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8 예산		2019 예산 (B)	2018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B-A)	%
세 입	129,925	129,925	126,817	△3,108	△2.4
세 출	129,925	129,925	126,817	△3,108	△2.4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8 기금		2019 기금 (B)	2018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B-A)	%
수 입	101,145	101,145	101,102	△43	△0.0
지 출	101,145	101,145	101,102	△43	△0.0

나. 일반회계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이 전년보다 15.7% 감액된 1조 6,144억 원, 세출이 전년보다 6.8% 증액된 3조 7,964억 원으로 정부 일반회계 예산 331조 7,770억 원에 대한 점유율은 세입이 0.5%, 세출이 1.1%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 7,964억 원을 프로그램별로 보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된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이 66.3%인 2조 126억 원, 법무활동이 8.4%인 3,177억 원, 교정활동이 8.2%인 3,095억 원, 검찰활동이 8.1%인 3,066억 원이며, 기타 인권활동·출입국관리·범죄예방활동·법무교육훈련 등 6개 프로그램이 9.1%인 3,458억 원이다. 주요 경비별·사업비별·프로그램별 예산 내역은 〈표 1-22〉 내지 〈표 1-23〉과 같다.

| 표 1-22 |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8 예산		2019 예산 (B)	2018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3,554,610	3,554,610	3,796,381	241,771	6.8
인 건 비	2,223,896	2,223,896	2,311,606	87,710	3.9
기 본 경 비	142,804	142,804	146,200	3,396	2.4
사 업 비	1,107,800	1,107,800	1,256,135	148,335	13.4
기금전출금	80,110	80,110	82,440	2,330	2.9

| 표 1-23 | 사업비 예산내역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18 예산		2019 예산 (B)	2018 대비	
	본예산 (A)	추경		증△감 (B-A)	%
계	1,107,800	1,107,800	1,256,135	148,335	13.4
•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운영	2,273	2,273	2,879	606	26.7
• 국가배상금지급	200,000	200,000	300,000	100,000	50.0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416	416	395	△21	△5.0
•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1,138	1,138	1,096	△42	△3.7
• 개발도상국법제정비지원(ODA)	167	167	161	△6	△3.6
• 기업환경지수개선	298	298	298	-	-
•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및대응	-	-	3,017	3,017	순증
•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1,157	1,157	1,041	△116	△10.0
• 성장동력확충을위한기업법제선진화	4,596	4,596	3,459	△1,137	△24.7
• 공증제도운영및활성화	572	572	714	142	24.8
• 변호사제도의선진화	2,378	2,378	925	△1,453	△61.1
• 변호사시험및법조윤리시험관리	3,190	3,190	3,199	9	0.3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503	503	504	1	0.2
• 법률구조	53,607	53,607	54,761	1,154	2.2
• 서민법률보호를위한법률홈닥터	4,227	4,227	4,418	191	4.5
• 인권교육	219	219	219	-	-
• 법무검찰조직문화개선을위한양성평등교육	150	150	100	△50	△33.3
• 아동인권증진	180	180	171	△9	△5.0
• 국제인권역량강화및국제인권DB구축	129	129	133	4	3.1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운영	269	269	257	△12	△4.5
• 이민정책개발지원	410	410	411	1	0.2
• 이민정책연구원운영	1,417	1,417	1,796	379	26.7
•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41,311	41,311	42,061	750	1.8
•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4,116	4,116	4,190	74	1.8
• 외국인보호관리	12,487	12,487	14,474	1,987	15.9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1,610	11,610	12,337	727	6.3
• 외국인체류질서확립	7,037	7,037	8,700	1,663	23.6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6,852	6,852	7,388	536	7.8
• 검찰청시설운영	53,809	53,809	65,695	11,886	22.1
• 검찰국외훈련및국제형사협력지원	6,450	6,450	6,413	△37	△0.6

사 업 명	2018 예산		2019 예산 (B)	2018 대비	
	본예산 (A)	추경		증△감 (B-A)	%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6,712	6,712	6,905	193	2.9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782	782	743	△39	△5.0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31,945	31,945	30,585	△1,360	△4.3
•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	13,117	13,117	12,439	△678	△5.2
• 검찰수사지원	20,074	20,074	26,794	6,720	33.5
• 수사일반	77,515	77,515	86,059	8,544	11.0
• 공공수사	5,601	5,601	5,264	△337	△6.0
•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13,354	13,354	13,191	△163	△1.2
• 마약수사	4,760	4,760	4,474	△286	△6.0
• 성범죄등사회적약자대상범죄단속	4,561	4,561	3,306	△1,255	△27.5
• 민관유착비리등사회공정성저해사범단속	8,350	8,350	7,741	△609	△7.3
• 공소유지	1,461	1,461	1,867	406	27.8
• 형집행및범죄수익환수	1,285	1,285	1,481	196	15.3
• 형사보상	33,213	33,213	33,213	-	-
• 형사법정비	439	439	438	△1	△0.2
• 교도소행정지원	27,116	27,116	30,178	3,062	11.3
• 교정시설장비운용및현대화	67,062	67,062	65,915	△1,147	△1.7
• 교정시설수용관리및공공요금	197,038	197,038	205,740	8,702	4.4
• 교정교화	7,358	7,358	7,675	317	4.3
•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6,084	6,084	7,545	1,461	24.0
• 소년원생수용	18,360	18,360	18,807	447	2.4
• 청소년비행예방	5,277	5,277	5,057	△220	△4.2
• 갱생보호활동	28,110	28,110	29,110	1,000	3.6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7,307	7,307	7,432	125	1.7
• 보호관찰활동	10,832	10,832	11,689	857	7.9
• 특정범죄관리	17,072	17,072	17,500	428	2.5
• 법질서준수및법교육활동	4,632	4,632	6,079	1,447	31.2
• 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	3,872	3,872	4,375	503	13.0
• 법무검찰공무원등교육운영및개선	1,483	1,483	1,413	△70	△4.7
• 법무연수원수입대체경비	486	486	460	△26	△5.3
• 신임검사양성및교육지원	843	843	941	98	11.6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681	681	613	△68	△10.0
• 국민불편해소를위한민원정책피드백	135	135	122	△13	△9.6

사 업 명	2018 예산		2019 예산 (B)	2018 대비	
	본예산 (A)	추경		증△감 (B-A)	%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4,943	4,943	5,557	614	12.4
• 정보기획지원	35	35	36	36	순증
• 정책연구개발사업(R&D)	48	48	48	-	-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31,217	31,217	30,595	△622	△2.0
• 서민사회적약자지원법무정책홍보	919	919	1,036	117	12.7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	9,118	9,118	10,024	906	9.9
• 기타법무시설개보수및확충	12,631	12,631	9,260	△3,371	△26.7
• 법무시설행정지원	-	-	2,697	2,697	순증
• 특별감찰활동	1,039	1,039	519	△520	△50.0

| 표 1-24 | 프로그램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8 예산		2019 예산 (B)	2018 대비	
	계	추경		증△감 (B-A)	%
	3,554,610	3,554,610	3,796,381	241,771	6.8
• 법무활동	216,688	216,688	317,688	101,000	46.6
• 인권활동	58,781	58,781	60,059	1,278	2.2
• 출입국관리	85,240	85,240	91,357	6,117	7.2
• 검찰활동	283,428	283,428	306,608	23,180	8.2
• 교정활동	298,574	298,574	309,508	10,934	3.7
• 범죄예방활동	97,674	97,674	103,219	5,545	5.7
• 특별감찰관활동	2,232	2,232	1,682	△550	△24.6
• 법무교육훈련	6,684	6,684	7,189	505	7.6
• 행정지원	2,425,199	2,425,199	2,516,631	91,432	3.8
• 기금전출금	80,110	80,110	82,440	2,330	2.9

다. 교도작업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1,268억 1,7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작업생산품 판매수익 748억 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72억 6,800만 원, 작업부산물 판매수입 등 잡수입 3억 3,800만 원, 기금예탁원금회수 420억 원, 기금예탁이자수입 24억 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5억 6,800만 원, 교도작업 535억 1,700만 원, 직업훈련 54억 2,600만 원, 시설보완 109억 3,000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563억 7,600만 원으로 〈표 1-25〉와 같다.

| 표 1-25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부내역

가. 세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8 예산		2019 예산 (B)	2018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129,925	129,925	126,817	△3,108	△2.4
교도작업수입	75,966	75,966	74,809	△1,157	△1.5
잡수입	338	338	338	-	-
전년도이월금	8,000	8,000	7,268	△732	△9.2
기금예탁원금회수	43,642	43,642	42,000	△1,642	△3.8
기금예탁이자수입	1,979	1,979	2,402	423	21.4

나. 세 출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18 예산		2019 예산 (B)	2018 대비		내 역	
	본예산 (A)	추경		증△감 (B-A)	%		
계	129,925	129,925	126,817	△3,108	△2.4		
기본경비	586	586	568	△18	△3.1	• 운영비 등	568
교도작업	52,881	52,881	53,517	636	1.2	• 작업재료비 • 보 전 금 • 일반수용비 등	25,050 21,760 6,707
직업훈련	5,826	5,826	5,426	△400	△6.9	• 훈련재료비 • 자산취득비 • 일반수용비 등	1,739 1,105 2,582
시설보완	7,297	7,297	10,930	3,633	49.8	• 작업장 신축 등 • 작업장비구입비	8,536 2,394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63,335	63,335	56,376	△6,959	△11.0		

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19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동일하게 1,011억 200만 원이며, 수입은 변상금 12억 8,1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50억 6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824억 4,000만 원, 지출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416억 8,400만 원,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보호 270억 1,800만 원,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 225억 원, 운영비 5,100만 원, 여유자금 54억 5,9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표 1-26〉과 같다.

| 표 1-26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세부내역

가. 수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8 기금		2019 기금 (B)	2018 대비	
	본예산(A)	추경		증△감 (B-A)	%
계	101,145	101,145	101,102	△43	△0.0
기 타 재 산 수 입	-	-	426	426	순증
변 상 금	1,075	1,075	1,281	206	19.2
기타경상이전수입	-	-	1,949	1,949	순증
통 화 금 융 기 관 예 치 금 회 수	19,960	19,960	15,006	△4,954	△24.8
일 반 회 계 전 입 금	80,110	80,110	82,440	2,330	2.9

나. 세 출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18 기금		2019 기금 (B)	2018 대비		내 역
	본예산 (A)	추경		증△감 (B-A)	%	
계	101,145	101,145	101,102	△43	△0.0	
법 무 부 범 죄 피 해 자 보 호	41,684	41,684	41,747	63	0.2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범죄피해 구조금 등 6개 사업
여 가 부 범 죄 피 해 자 보 호	27,018	27,018	31,345	4,327	16.0	• 성폭력 피해자 지원
보 건 복 지 부 범 죄 피 해 자 보 호	19,302	19,302	22,500	3,198	16.6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운 영 비	56	56	51	△5	△8.9	
여 유 자 금	13,085	13,085	5,459	△7,626	△58.3	

2. 시 설

시설담당관실 주무관 박진성

가. 개 요

법무시설이란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청사시설로 검찰청과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연수원 등을 말하며 법무부에는 검찰청사 66개, 보호관찰소 64개, 소년원 및 비행예방센터 30개, 교정시설 5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46개 등 총 265개의 법무시설이 있다.

법무부에서는 5년 단위 중기사업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기관과 노후하고 협소한 법무시설을 우선으로 확충하여 매년 5~6개 정도의 법무시설을 개청해 나가고 있다.

나.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시설 조성

법무시설 조성 시 지역주민 및 수요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법무시설 청사 외곽 담장 낮추기, 체육시설 주민개방, 교정시설의 청사 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주벽과 녹지 가꾸기 등으로 주민친화형 법무시설을 조성하였고, 그 결과 2019년 법무시설(수원고지검 등 3개 기관) 사용자 및 외부전문가 '만족도 조사'에서 90.78점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또한, 지열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고효율 에너지기기 적용 등 에너지 1등급의 친환경 법무시설을 조성하였다.

다. 법무시설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상황

2019년 준공사업은 전주지검 신축, 서울남부지검 별관 증축, 순천지청 증축, 김천소년교도소 수용동 증축공사, 원주준법지원센터 증축, 전주소년원 증축 총 6개 사업으로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수원보호관찰소 증축, 대전소년원 리모델링, 전주출입국 군산출장소 신축, 광주솔로몬로파크 신축, 경북북부3교도소 수용동 증축, 포항보호관찰소 증축, 춘천지검 속초지청 신축 총 7개 사업을 착공하였다. 계속사업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신축, 인천지검 부천지청 별관 증축, 대구교도소 신축, 거창구치소 신축, 속초교도소 신축, 광주청소년비행예방

센터 신축 총 6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법무시설 조성사업에 투입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비는 총 1,920억 원으로 검찰시설에 714억 원(37.2%), 보호시설에 173억 원(9.0%), 교정시설에 907억 원(47.2%), 출입국관리시설에 115억 원(6.0%), 기타 시설에 11억 원(0.6%)을 집행하였다.

2019년도에 시행한 주요 법무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실적은 아래와 같다.

| 표 1-27 | 2019년도 주요 법무시설 조성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공 사 명	규모(㎡)		소요예산 (총사업비)	공사기간
		부지	건물		
준공 (6)	원주준법지원센터 증축	5,383	1.901	41	'18. 4월 ~ '19. 4월
	서울남부지검 별관 신축	13,818	8,357	189	'17. 8월 ~ '19. 11월
	전주지검 신축	33,235	26,266	772	'16. 12월 ~ '19. 10월
	순천지청 증축	13,307	734	19	'18. 11월 ~ '19. 7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동 증축	105,926	944	29	'18. 4월 ~ '19. 5월
	전주소년원 신축	34,756	9,013	272	'16. 12월 ~ '19. 4월
신규 (7)	수원보호관찰소 증축	3,496	1,067	23	'19. 8월 ~ '20. 7월
	대전소년원 리모델링	12,018	5,183	86	'19. 9월 ~ '20. 8월
	전주출입국 군산출장소 신축	1,874	1,496	39	'19. 9월 ~ '20. 12월
	광주솔로몬로파크 신축	18,946	7,492	187	'19. 12월 ~ '22. 3월
	경북북부3교도소 수용동 증축	396,631	2,128	95	'19. 12월 ~ '20. 12월
	포항보호관찰소 증축	1,297	1,143	14	'19. 12월 ~ '20. 7월
	춘천지검 속초지청 신축	11,091	6,612	213.3	'19. 12월 ~ '22. 5월
계속 (6)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신축	11,570	9,917	608	'17. 12월 ~ '20. 2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별관 증축	20,000	6,314	137	'17. 12월 ~ '20. 1월
	대구교도소 신축	285,418	60,760	1,883	'16. 11월 ~ '20. 10월
	거창구치소 신축	160,818	19,844	836	'15. 11월 ~ '22. 10월
	속초교도소 신축	141,543	19,492	673	'16. 7월 ~ '20. 4월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축	18,759	4,347	88	'18. 3월 ~ '20. 2월

法務年鑑

02



업무실적

제1절 기획조정업무
제2절 정책 홍보 활동
제3절 법무업무
제4절 검찰업무
제5절 범죄예방업무
제6절 감찰·감사업무
제7절 인권업무
제8절 교정업무
제9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제10절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 업무
제11절 법무·검찰개혁 업무

제1절 기획조정업무

1.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탈검찰화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주무관 박지수

가. 추진 배경

그 동안 법무부는 검찰 외에 교정, 출입국·외국인 정책,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다양한 법무행정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실·국·본부장 7개 중 6개 직위에 모두 검사를 보임하는 등 주요 직위에 직제 상으로 검사만 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검사를 보임하여 왔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주요 법무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1년 내지 3년의 짧은 인사 주기에 따라 이동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고, 검찰 외에 다양한 법무행정 사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 선정되었고, 그 세부과제로 법무부 탈검찰화도 포함되었다.

'17년 8월 법무부가 법무·검찰의 개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추진하기 위하여 외부위원들을 위촉하여 발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 한인섭)에서는 제1차 권고안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7년 8월부터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주요 실·국·본부장 모두 외부 인사 또는 검사가 아닌 내부 공무원 출신으로 임명하는 등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나. 추진 경과

'17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직제 개정으로 법무부 검사 직위 61개 중 69%인 42개 직위를 비(非)검사도 보임이 가능하도록 복수직제화 하였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제13차 권고안('18. 6월)을 수용하여 '18. 12월에는 검찰국 2개 과장 직위에도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였다.

직제 개정에 따라 2017년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등 4개 직위, 2018년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심의관, 상사법무 과장·인권구조과장 등 23개 직위, 2019년 감찰관, 국가송무과장 등 10개 직위 등 주요 보직의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9.12.31. 기준으로 4개 실·국·본부장, 2개 국장급, 9개 과장급, 22개 평검사 등 총 37개 직위에 비(非)검사를 임용하였다.

| 그림 2-1 | 주요직위 비검사 임명



마광열 감찰관 임명(2019. 4.29.)



김기수 국가송무과장 임명(2019. 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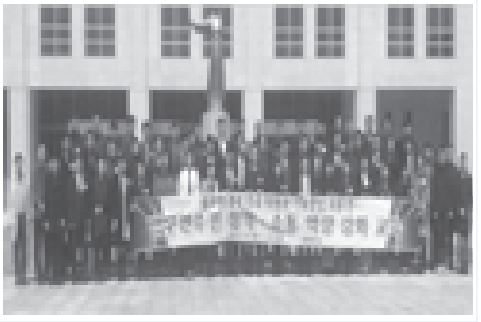
| 표 2-1 | 법무부 검사 보임직위의 비(非)검사 보임 내역

구 분	소속(직위)	직 급	임용일	비 고
실·국·본부장 (4개)	법무실장	고위공무원(가등급)	'17. 08. 22.	외부 전문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고위공무원(가등급)	'17. 09. 04.	외부 전문가
	인권국장	고위공무원(나등급)	'17. 09. 29.	외부 전문가
	범죄예방정책국장	고위공무원(나등급)	'18. 04. 02.	내부 공무원
국장급(2개)	법무심의관	고위공무원(나등급)	'18. 10. 01.	외부 전문가
	감찰관	고위공무원(나등급)	'19. 04. 29.	외부 전문가
과장급(9개)	인권정책과장	부이사관	'17. 11. 16.	내부 공무원
	보호정책과장	서기관	'18. 04. 02.	외부 전문가
	여성아동인권과장	서기관	'18. 04. 02.	외부 전문가
	국제법무과장	부이사관	'18. 04. 09.	외부 전문가
	상사법무과장	부이사관	'18. 07. 23.	외부 전문가
	범죄예방기획과장	부이사관	'18. 08. 27.	내부 공무원
	치료처우과장	서기관	'18. 08. 27.	내부 공무원
	인권구조과장	서기관	'18. 09. 03.	외부 전문가
	국가송무과장	서기관	'19. 08.19.	외부 전문가
평검사(22개)	법무심의관실 5개 직위	서기관 2, 행정사무관 3	'19. 03. 11.	외부 전문가
	법무과 2개 직위	서기관, 행정사무관	'19. 05. 13.	외부 전문가
	국가송무과 2개 직위	행정사무관 2	'19. 08. 06.	외부 전문가
	국제법무과 2개 직위	행정사무관 2	'19. 08. 07.	외부 전문가
	통일법무과 2개 직위	서기관, 행정사무관	'19. 02. 11.	외부 전문가 내부 공무원
	인권구조과 1개 직위	행정사무관	'18. 02. 05.	외부 전문가
	범죄예방기획과 1개 직위	서기관	'18. 02. 05.	내부 공무원
	상사법무과 2개 직위	서기관, 행정사무관	'19. 08. 26.	외부 전문가
	보호정책과 2개 직위	서기관, 보호사무관	'18. 08. 27.	내부 공무원
	치료처우과 1개 직위	서기관	'18. 08. 27.	내부 공무원
	기획조정실 1개 직위	서기관	'19. 02. 11.	내부 공무원
	법조인력과 1개 직위	서기관	'19. 02. 11.	내부 공무원

또한, 탈검찰화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등 신규근무자의 조직이해도와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직무간담회('19. 2.21.), 정책·소통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교육('19. 3.25. ~ 29.) 및 공직가치 및 직무관련 교육('19. 8.23., 8.26.)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 그림 2-2 | 역량강화 교육

▶ **정책·소통 역량강화 교육(3. 25.~29.)**
- 참석 : 신규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각 부서 기획담당 사무관 등 총 67명
- 내용 : 실·국·본부 업무 및 주요 추진정책, 조직·인사·예산 등 공통업무, 분임별 토의 등

▶ **신규채용자 교육(2. 21., 8. 23., 8. 26.)**
- 참석 : 본부 신규임용자, 본부 전입 소속기관 공무원
- 내용 : 신규자 서약, 복무 유의사항 안내, 최근 공직사회 주요 강조분야(적극행정, 갑질근절,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탁금지법 등) 설명 등




다. 향후 계획

앞으로도 법무부는 탈검찰화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법무행정 영역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함은 물론 국민의 시각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법무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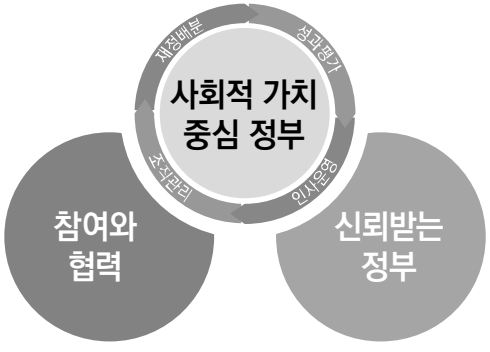
혁신행정담당관실 주무관 이기성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8. 3월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사회적가치', '참여협력', '신뢰받는 정부' 등 정부혁신의 3대 전략에 따른 법무부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혁신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9. 3월 각 실·국·본부와 협력하여 법무부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정책기획관을 정부혁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실·국·본부 실무진이 참여하는 '정부혁신 추진 실무단'을 구성·운영토록 하였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고 실·국·본부 주무과장이 참석하는 '정부혁신 추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 정부혁신 추진현황 전체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에 노력하였다.

| 그림 2-3 | 정부혁신 3대 전략 및 정부혁신 추진 현황 점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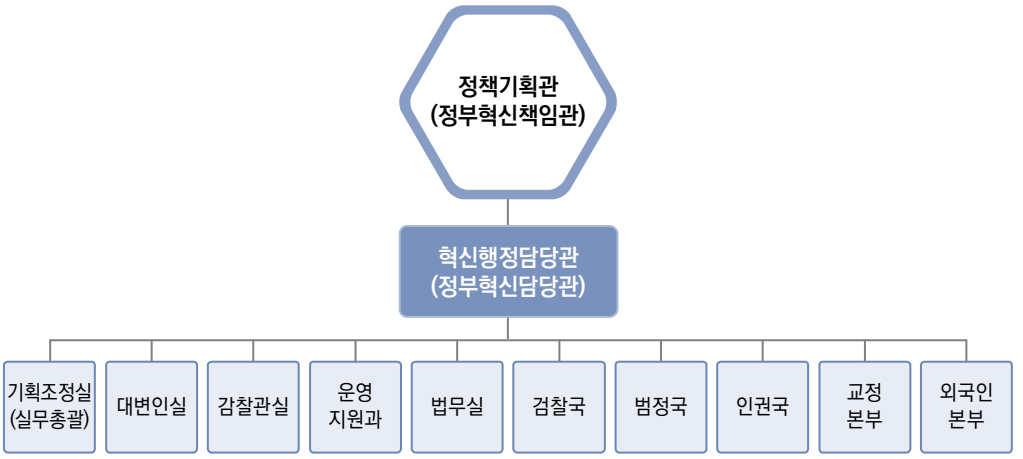


정부혁신 3대 전략



정부혁신 추진 현황 점검회의

| 그림 2-4 | 정부혁신 추진 실무단 구성도



나. 주요 혁신 성과

법무부는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광역CCTV 통합시스템 연계 사업'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재산파악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체납금의 강제징수가 불가능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건강보험 체납사실과 비자연장 허가를 연계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제도를 실시('19. 8월)하여, 시행 4개월 만에 약 58억 원 이상의 체납액을 환수하였다. 또한 앞으로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체납액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서 24시간 위치추적 하는 전자감독 제도의 경우 전자발찌 대상자의 동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 광역CCTV 통합시스템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광역자치단체 스마트시티센터' 간 협업을 통해 연계망을 구축하고 강력범죄 긴급 상황 발생 시 CCTV 영상정보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규를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를 신속하게 검거하여 국민 안전 확보 및 범죄피해 사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혁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자증권제 시행',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확대', '쌍방향 범죄 피해자 보호서비스'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주식·사채 등 증권을 전자등록 함으로써 권리행사와 발행·유통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자증권제'의 전면 시행('19.9월)을 통해 증권 발행·유통·관리의 비용경감 효과를

창출하고, 권리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회사 및 관련 기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ICT 활용을 통한 법률·금융서비스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의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심사 지원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출입국심사대 설치 확대 및 노후 장비 교체 등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여 제도 시행 초기인 '15년 전체 출입국자의 19.8%에 불과하던 이용자수가 '19년 54.8%까지 증가하였고, 현재까지 이용 누적 인원이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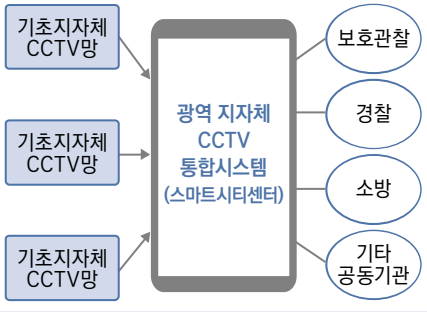
더불어, 현행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피해자 접근금지' 집행 방식은 피해자가 이동 중이거나 주거지 이외 장소에 체류할 경우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도 부담 없이 소지가 가능한 장치(스마트워치)를 개발,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에 접근 시 경보 발생,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출동하여 접촉을 차단하도록 하는 '쌍방향 범죄 피해자 보호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피해자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20. 2월 시행)

이러한 법무부의 혁신 추진 노력과 성과들은 그 효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및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 표 2-2 | 2019년 주요 수상내역

시 기	주관부처	평가 항목	결 과
'19.10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 표창「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광역 CCTV 통합시스템 연계사업」
'19.11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행안부 장관상「쌍방향 범죄 피해자 보호서비스」

| 표 2-3 | 2019년 수상 제도 주요 내용

제 도	내 용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광역 CCTV 통합 시스템	  • 광역지자체 CCTV 통합시스템 : 기존 기초지자체별로 운영하던 CCTV망을 광역자치단체에서 통합·관리하여, 치안 기관 등에 필요 정보 제공

<table>
<tr><th>제 도</th><th colspan="2">내 용</th></tr>
<tr><td rowspan="3">쌍방향 범죄 피해자 보호 서비스</td><td colspan="2">  </td></tr>
<tr><td>(기존)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이내 접근 시 경보 발생</td><td>(개선) 장소와 상관없이 피해자로부터 1km 이내 접근 시 경보 발생</td></tr>
<tr><td>  </td><td>  </td></tr>
</table>

다.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법무부는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신뢰받는 법무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정부혁신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3.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주무관 이재욱

가. 추진배경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소속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적극행정은 장려, 소극행정은 타파"라는 정부의 적극행정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내부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통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공무원이 움직여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온다"는 인식을 소속직원들에게 확산시키는 등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법무부 적극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전담부서를 지정하였다. 또한 '2019년 법무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전 중앙행정기관에 배포하는 등 정부차원의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에도 일조하였다.

| 그림 2-5 |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갈등 해결 등의 사례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법무부 내 적극행정 확산에 노력하였다.

| 표 2-4 | 2019년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6개 사례)

구분	순위	우수사례명	기관(부서)
상반기	최우수상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 확대	이민정보과
	우수상	위치추적시스템 – CCTV 연계 사업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서울시 희망광고를 통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무료 홍보	법률구조공단(서울중앙)
	장려상	울산항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한적 상륙허가서 발급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부자원 유치를 통한 소년원 치료환경 조성 및 시설 개선	대전소년원
		(교정시설 내) 수용거실 절수기 설치	서울구치소

| 표 2-5 |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기준

분 야	필수 인센티브	선택 인센티브	비고
최우수	• 성과상여금 우대,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중 택 1	• 특별승진	
		• 특별승급	
	• 장관표창	•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 선발	
우 수	• 포상휴가	•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 장관표창	• 근속승진기간 단축	
		• 승진명부 가점	
장 려	• 장관표창, 포상금 지급	-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① 사전적 의사결정 지원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감사기관에 관련 규정 해석 등 의견을 구하는 제도인 '사전컨설팅 제도' 또는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통해 업무담당자 또는 기관(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받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업무수행의 결과로 인한 징계 등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② 사후 책임부담 완화

적극행정의 결과로 인해 징계, 민사상 소송 또는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을 지원하고자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적극행정공무원 징계 및 소송절차 법률지원' 등을 도입하여 "적극행정은 보호된다."라는 믿음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표 2-6 |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 및 소송절차 법률지원 기준

지원내용	징계절차 소명 지원	고소·고발 및 소송 등 지원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 지원	200만원 이하 지원	• 500만원 이하(기소이전 수사과정에 한함)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보수액 범위 내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 관할 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 자문변호사	• 관할 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 자문변호사 •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 소송에 한함)

4)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사례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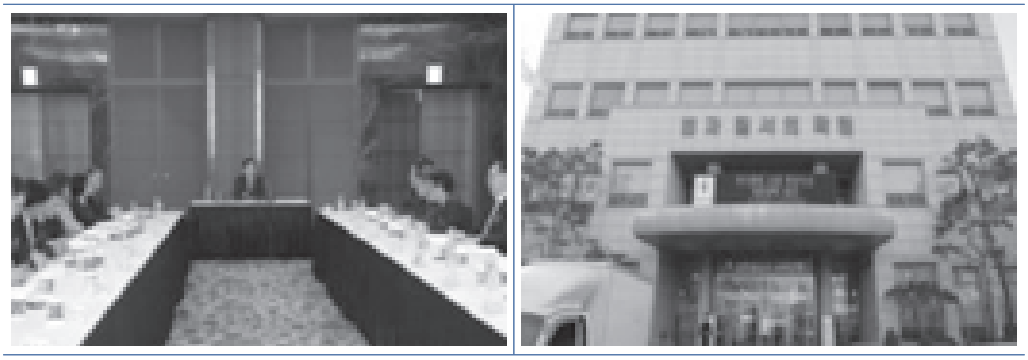
① 적극행정 체감 확산

적극행정 우수사례·성과 등을 공유하여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전국 소속기관장회의 시 '국민 접점 현장에서의 적극행정'을 주문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노력하였다.

② 적극행정의 저변 확대

보호·교정·출입국 등 소속기관 청사에 설치된 전광판 및 자체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적극행정 사례 등을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 그림 2-6 |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



5) 소극행정 혁파

소속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엄정조치하고,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극·소극 민원답변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민원 접점에서의 적극행정'을 독려하여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적극행정 추진노력을 인정받아 법무부는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다.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법무부에서는 2019년에 마련된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법무행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4. 법무행정개선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주무관 김미선, 이재욱

가. 추진배경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실현 지원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기틀을 마련하고자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국민눈높이를 충족하고 조직의 변화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 '소통·조화·배려의 조직문화 조성' 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창의 및 직무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법무 행정능력 강화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 변화관리 교육과정을 '창의 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 '직무역량 강화' 3개 분야 14개 교육과정으로 개설·운영하여 5,799명의 직원이 참여하였다.

| 표 2-7 | 2019년도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3개 분야 14개 과정, 5,799명 참여)

구 분		과 정 명	대 상	인원	시기	비고
창의역량 강화		① 솔루션 역량강화[1]	솔루션 6팀	75	5~9월	3회
		② 독서증진	전 직원	1,000	5~10월	6회
조직문화 향상 (활성화)		③ 갑질 예방 및 소통	소속기관	206	7~10월	10회
		④ 재충전 감성소통	장기재직자	40	6월	1회
		⑤ 워라밸	본부/소속기관	80	6~10월	4회
직무 역량 강화	교육	⑥ 전화외국어	전 직원	240	5~10월	3회
	워크숍	⑦ 인권내부강사	내부강사	50	3월	
		⑧ 임기제 및 기획담당	신규 및 업무담당	67	3월	
		⑨ 지식행정리더	지식활동 우수직원	74	4월	
		⑩ 청렴업무	업무 담당자	125	6월	
		⑪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102	8월	
		⑫ 약물사범 전담직원	업무 담당자	45	10월	
		⑬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35	11월	
	연구모임	⑭ 학습동아리지원	우수 학습동아리(8팀)[2]	3,660	11월	
합계		14개 과정		5,799		

2)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및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① 행정제도개선 활성화

현장직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하여 자체 '행정개선 관리시스템'을 운영, 전 직원이 자유롭고 손쉬운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2019년 957건의 행정개선 제안을 접수하여 '재외국민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요건 완화' 등 총 225건을 채택하였으며, 채택제안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안자의 소속기관 행정개선 마일리지 부여 등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관심과 지지 유도를 통한 행정제도개선 활성화에 성과를 거두었다.

② 행정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창의적 분위기 조성

2019. 4월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과 광역CCTV 통합시스템 연계 제도',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특히 2019. 11월 전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과 광역CCTV 통합시스템 연계 제도'가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이를 공유·확산함으로써 지속적인 행정제도 개선 추진력 확보 및 조직 내 창의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 표 2-8 | 자체 우수사례 내용

순위	우수사례명	기관(부서)	포상등급
1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과 광역 CCTV 통합시스템 연계	특정범죄자관리과	최우수상
2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제도 도입	국적과	우수상
3	교도작업 제품 인터넷 쇼핑몰 구축	직업훈련과	
4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외출제한명령 감독	범죄예방기획과	
5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근무처변경허가 온라인서비스 시행	체류관리과	장려상
6	화재신호 연동 자동개폐형 스마트 소화전 개발	공주치료감호소	
7	수용자 취사장 음식물 쓰레기의 합리적 운용에 따른 예산 절감	부산구치소	
8	제주공항 입국 외국인 대상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제주출입국·외국인청	
9	울산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한적 상륙허가제 시행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10	이주배경청소년의 비행 예방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지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1) 업무현장의 문제점을 과제로 선정, 과제별 팀을 구성한 후 팀원 간 토론과 협업, 문제해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Solution을 찾는 행정개선 기법

2) 우수학습동아리 활동회원(3,660명)
- 바른급식사랑방: 423명, 보호관찰정책연구모임: 474명, 전자감독: 650명, 임상심리 심리치료: 11명, KCSP(Korea Correction Special Judicial Police): 965명, 분류업무 도움방: 989명, 심리치료 연구회: 114명, 수요중국어 34명

| 그림 2-7 |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2019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





3)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

조직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및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문화개선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관방문, 갑질 예방 및 소통교육', '워라밸 교육과정 운영', '육아시간 등 가족친화제도 적극 활용', '연가사용 활성화로 쉼표 있는 삶 추구', '전통시장 가는 날', '청사시설 개방', '사랑의 손잡기',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 등이 있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조직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구성원의 창의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 등 지속적인 변화관리 추진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5.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주무관 이선화

가. 추진배경

최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개인 권익보호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민원서비스로는 국민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요구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해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 개개인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민신문고 민원 등 신속하고 내실있는 민원 처리

법무부에 접수·처리 된 민원은 총 25,326건으로, 그 중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된 민원이 전체 민원의 70.1%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표 2-9 | 법무부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2019. 1. 1. ~ 2019.12.31. 기준)

구분	계	국민신문고 접수·처리	우편, FAX, 방문접수 접수·처리	장관과의 대화 접수·처리
건수	25,326	17,765	6,702	859

법무부는 민원의 접수·배부·이송·처리 등 전 단계마다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는 한편, 처리기간 준수 여부 등 민원처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민원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2)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

지역사회단체·대학교 등 민원사무와 관련된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민원 제도 및 정책을 발굴하고,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개선 가능한 민원을 찾아 해결하는 '민원 끝까지 챙기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6건의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였다.

| 표 2-10 | 국민불편 주요 개선사례

연번	발굴경로	개선사항
1	국민신문고	법무부 홈페이지 본인 인증 방식에 핸드폰 인증 추가
2	지도·점검	외국인등록사항(여권정보) 변경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선
3	지도·점검	사실증명 발급신청 서식 중국어 지원
4	현장방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체류자격별 필요 서류 안내 명확화 및 매뉴얼 개선
5	현장방문	외국인유학생이 완전 출국, 여권정보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외국인유학생 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

3) 국민제안 활성화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및 의견을 법무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계절근로자 근로기간 추가 연장' 등 총 3,766건의 국민제안 중 27건을 채택하여 20건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였고, 국민제안 공모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우수제안 및 제안활성화 경진대회」에서 '수용증명서 온라인 발급' 과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법무부는 2019년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제안을 추진·정책에 반영한 직원은 제안활성화 유공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4) 법무부 민원행정서비스 점검

본부 및 소속기관의 민원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피드백을 위해 '2019년도 법무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및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법무부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79점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일반민원에서는 신청편리성(8.83점)이, 인터넷민원에서는 신속정확성(7.67점)이 가장 낮게 나와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민원응대 친절도는 100점 만점 기준 87.1점으로 전년도 대비 0.6점 하락하였으며, 차원별 친절도는 수신단계 94.1점, 응대단계 87.7점, 종료단계 78.4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미흡한 기관은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우수사례 및 미흡사례에 대해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전파하여 벤치마킹 및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민원·정책현장 방문을 확대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국민신문고·국민제안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한 국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국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6. 규제혁신 적극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주무관 이근영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 및 국민 개개인 삶의 질 향상' 원칙에 따라 경제 활성화 지원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대 등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과 성과

1) 상가임대차법, 주택임대차법, 집합건물법 등의 법령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

주요 내용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 시기 변경, 집합건물 구분점포 성립요건 완화,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요건 완화, 서면 또는 전자적 결의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2) 출입국·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불편 해소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기업투자 비자 규제 개선, 동남아 국가, 인도 관광객 비자 완화, 고액 투자자 조건부 영주 자격(F-5) 취득 범위 확대, 국내 스타트업 업체의 외국인 고용 시 국내 매출 실적 요건 완화, 외국인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 유학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국민 일자리 창출,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인원 및 신청 대상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3) 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불편·부담 해소

자동출입국심사대 국민 이용 대상자 확대, 외교부(재외공관)와 전산 연계를 통한 국적 관련 민원 처리기간 단축, 결혼이민제도 개선,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 등을 통해 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불편·부담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4)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자체 개선

재외공관 국적이탈신고 개선,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기재 방식 변경, 재입국허가 기간 내 미 입국한 결혼이민자(F-6) 사증발급 및 자격 변경 서류 간소화, 외국인 여권정보 변경신고 간소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사항 란에 국내 가족 표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에 재입국허가 추가, 외국인 선원의 어획물 건조·포장 연계 작업 허용, 국적업무 심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전자증권제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 전면 시행 등으로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과제를 자체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법령, 제도 등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혁신성장 新산업 지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 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불편·부담해소 등 규제 혁신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7.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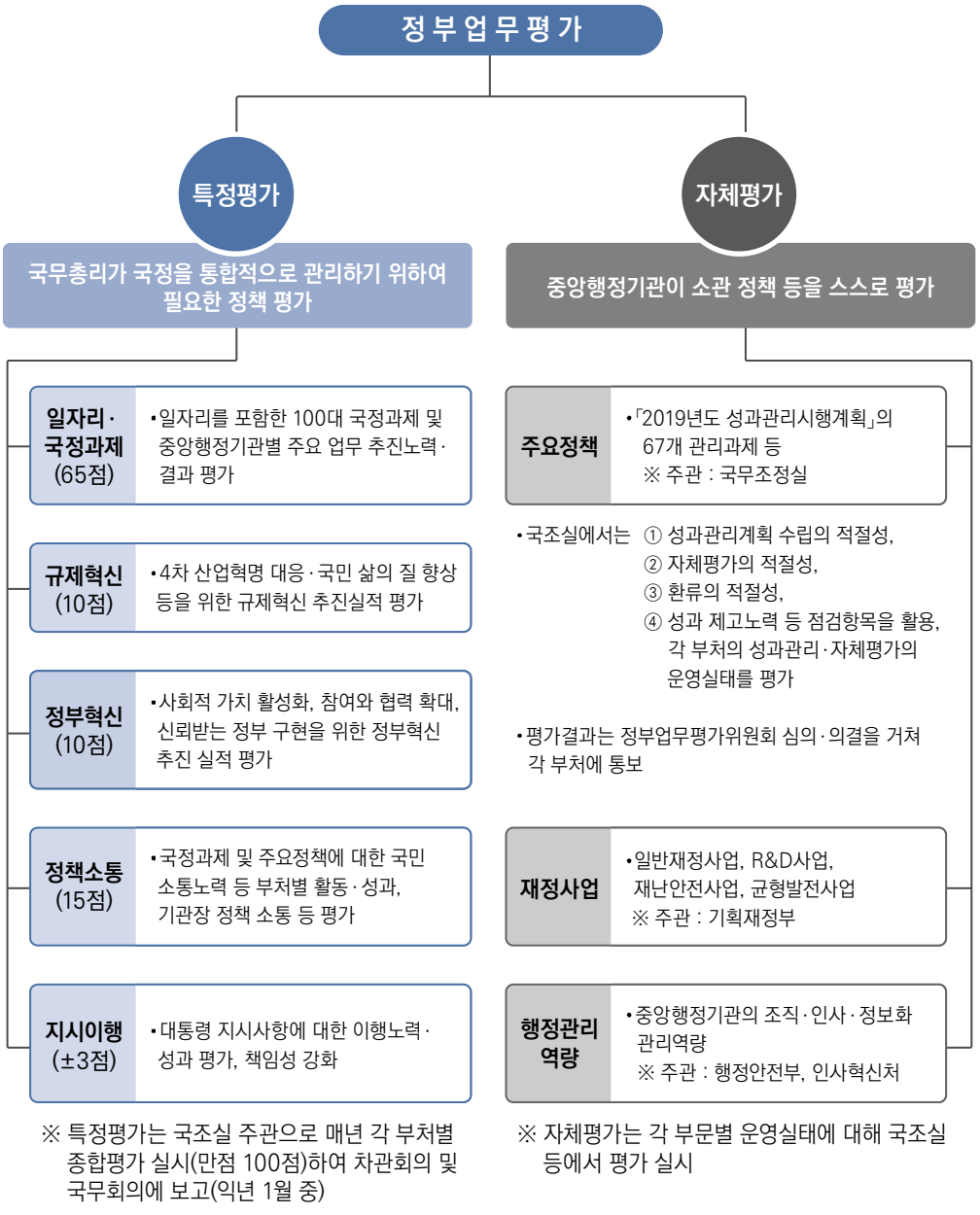
혁신행정담당관실 사무관 권호연

가. 정부업무평가

국무조정실에서는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등 주요업무 분야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관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는 특정평가와 기관이 소관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부문으로 구분되며, 평가부문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그림 2-8 |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특정평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2019년도 평가부문 등을 확정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였고, 이에 법무부에서는 평가방향, 부문별 평가방법 등을 검토한 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실시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개혁입법 지연 등으로 인해 '미흡'평가를 받았다.

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주관과제)

과제명	주요성과	보완사항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유지 철저** •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을 동결하고, 2심 선고액 수준의 공탁금 확보** •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제도 장치 강화**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19. 4월) 및「부패재산몰수법」(2019. 8월) 개정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지역토착형 비리, 금융비리 등 중대 부패범죄에 상향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엄정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추진**	•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공익법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연** ※ 시민공익위원회의 소속 및 위상 등에 관한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국가의 통신 감청 등을 제한하는「통신비밀보호법」 개정(2019. 12월)** • **국선변호제도를 수사단계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추진** ※「형사소송법」,「법률구조법」 개정안 국회 제출(2019. 11월) • **지속적 제도 개선으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실적 상승 및 심리적 지원 확대** ※ 창원 스마일센터 신설(2019. 12월)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 조속 마련 필요** ※ 인권위·법무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가 인권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인권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19. 12월)** • **검찰개혁 추진** - 특수부 축소 등 검찰 조직 개편 ※ 형사·공판 기능 강화, 검사 외부파견 제한을 위한 규정 제·개정(2019. 10월) - 검사 징계의 실효성 확보, 검찰에 대한 법무부 직접감찰 확대 등 검찰 중립성·공정성 제고 ※「검사징계법」 개정(2019. 4월)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2019. 10월) -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 방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및「인권보호 수사규칙」 제·개정(2019. 10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필요**
(주요정책과제) 47. 출소자 취업지원 강화	•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추진** - 6,091명 참여, 수료자 2,307명 중 1,667명 취업(취업률 80.4%) • **금융 우대조치 신설(2019. 1월) 및 고용우수기업 지정 확대(2019. 9.월) 등 출소자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취업성공수당 지급 및 지속적 사후관리로 출소자 장기근속을 통한 사회정착 유도** • **출소자 허그 후원의 날 개최(2019. 11월) 등 출소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국민 친화적 홍보활동 전개**	• **출소자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부족** • **기술교육원 수료자의 취업연계 활성화 필요**

나) 규제혁신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른 규제개혁과제 16건 중 15건 완료 • 총 13건의 재검토형 일몰규제 중 8건 개선 • 재외공관 국적이탈신고 개선 등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자체 개선 과제 10건 정비 • 규제혁신 국민소통 실적 관련 정·부 기관장 현장행보 실적 8건, 대언론 소통 총 119건 등	•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 과제 발굴 노력 필요 • 일자리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 필요

다) 정부혁신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국민의 참여와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 -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광역 CCTV 통합시스템 연계사업(국무총리상, 2019. 10월) - 쌍방향 범죄 피해자 보호서비스(행안부장관상, 2019. 11월)	• 법무행정 전반에 걸친 국민 체감 정책 발굴 필요 • 부처 내, 부처 간 협업 추진체계 강화 필요

라) 정책소통 부문

주요성과	보완사항
• (언론 홍보)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정책현장에 기자들 및 문화콘텐츠 작가들을 초청, 현장을 체험하게 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우호적인 보도 확산 • (국민 의견 반영) '온라인 의견 수렴, 장관과의 간담회, 현장점검' 등의 다양한 국민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취합된 의견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 • (허위 조작정보 대응) 온·오프라인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사례: 진자유tv라는 유튜버의 '출입국관리법' 개정 관련 허위 조작 동영상에 대해 3차에 걸쳐 대응: 설명자료, 팩트체크 카드뉴스·동영상 제작 및 배포)	• 외신 홍보 부족 - 국내외 현안 발생·외신 관심 부족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 •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인지도 조사 부족 -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아쉬움

마) 지시이행 부문(가감점)

주요성과	보완사항
•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 법무부 실국장 검사보임비율 축소('17. 1월 85.7% → '19. 12월 28.5%) • 과거사 진상규명 및 사과 - 개별사건 15건 및 포괄적 조사사건 2건에 대한 심의 및 조사결과 발표 완료 - 검찰과거사위원회 자료집 발간 •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 음주운전 재범자 처벌강화를 주요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실시 - 구형량 상향한 교통범죄사건처리기준 마련 - 음주운전 관련 범행에 적극 대응(구속기소율49.14%, 불구속기소율 81.03% 증가)	• 근로감독관과 검찰 간 긴밀한 협력 - 관계부처 간 임금체불 신속조정제도의 활용률 저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지연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양형기준 상향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 범죄 관련 안건 미상정

2) 자체평가

가) 주요정책 평가

법무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국정과제,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종합 반영하여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5개 전략목표와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신뢰 회복' 등 13개의 성과목표 및 67개의 관리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였다.

수립된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계획수립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정책 효과성', '정책 환류 및 소통', '평가역량 제고 노력도'의 6개 평가항목과 1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각 관리과제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체평가결과 매우우수 3개(5%), 우수 10개(15%), 다소우수 12개(18%), 보통 18개(27%), 다소미흡 10개(15%), 미흡 11개(16%), 부진 3개(5%)로 나타났으며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였으며, 검사 징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징계법」을 개정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집합건물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오피스텔·상가건물 등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일명 '조두순법') 개정으로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1:1 전담 보호관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률을 2% 이하로 억제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였다.

| 그림 2-9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및 정책현장 방문





나) 재정사업 자율 평가

재정사업 자율 평가는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평과결과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 해당된다.

우리 부는 23개의 단위사업에 대해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상대평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 4개(20%), 보통 15개(65%), 미흡 4개(15%)로 3단계 등급화 하였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실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대외에 공개하였고, 미흡사업은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다) 행정관리역량 평가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는 조직, 인사, 정보화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직 분야에서는 업무처리방식을 국민과 함께 진단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민 참여 조직진단실시 등을 통해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고, 법무부 주요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사 분야에서는 법무부 훈령 반영 등을 통해 필수보직기간을 엄격히 유지하였으나 교정시설 등 특수환경에 근무하는 공안직 업무 특성상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직위 지정 추진실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대상사업을 별도 지정 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 5단계 강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 및 사이버 안전 수준 강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이란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에 이르기까지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주요정책 부문(국무조정실 주관)과 행정관리역량 부문(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주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2019년 법무부는 주요정책 부문에서 '상반기 점검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환류의 적절성' 등 일부 항목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로는 '보통' 평가를 받았고, 행정관리역량 부문에서는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자체평가 운영의 충실성', '환류의 적절성' 등 전 항목에서 '보통'으로 평가를 받았다.

나. BSC 및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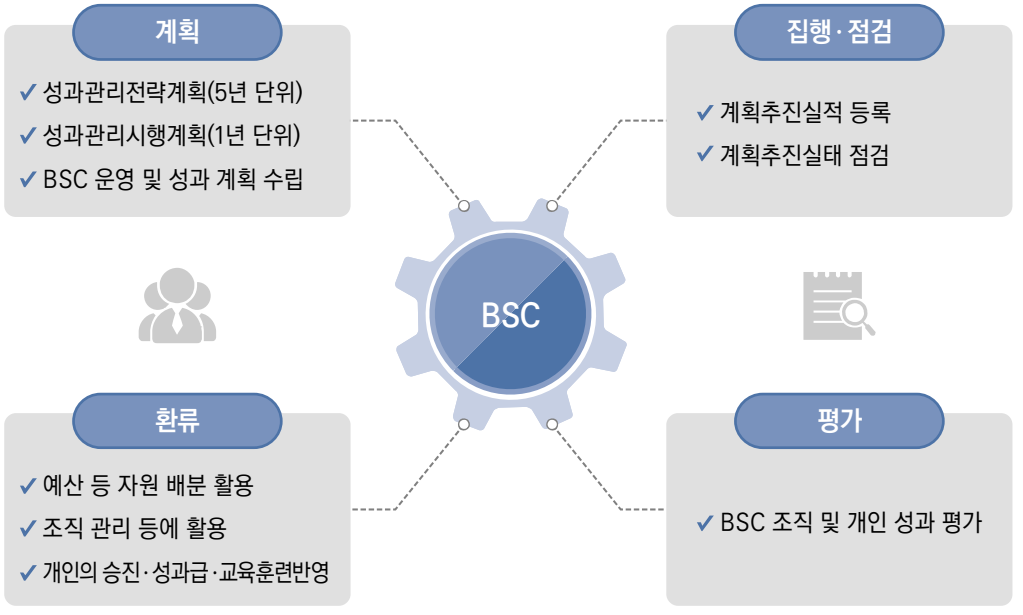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평가제도)는 조직의 임무, 비전, 전략·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를 고객, 정책, 행정개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직·개인의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인사, 성과급 등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BSC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정책 수립, 실적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직 및 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BSC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추진내용

2019년에는 공공기관웹보안인증서(G-SSL)를 성과관리시스템에 적용하는 등 성과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였고, BSC 성과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법무부(본부 및 소속기관) 총 866개 부서 및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2만 3천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및 개인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승진에 10%, 성과급에 20%, 교육훈련에 10% 각각 반영함으로써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국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 그림 2-10 | 성과관리와 BSC 체계



8.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혁신행정담당관실 주무관 안지혜

가. 개 요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는 대통령이 회의·행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한 지시를 정리·분류·전달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함으로써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시와 의견이 정책과 업무추진 과정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부에서는 지시사항 시달 시 소관부서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지시사항별 추진계획 수립 및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누락 없이 기한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현행 법무부에 시달되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지시사항은 2019. 12월말 기준, 총 23건으로 법무부 주관 지시사항은 14건으로 5건을 이행 완료하고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타부처 협조 지시사항도 총 9건으로 이 중 3건은 이행 완료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다.

나. 지시사항 현황

1) 법무부 주관 지시사항(14건)

연번	지시일자	지 시 사 항	이행상황
1	2017. 5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	종 료
2	2017. 7월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찰개혁	추진중
3	2017. 8월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관련	종 료
4	2017. 8월	국적취득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 지원(국적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종 료
5	2017. 8월	과거사 진상규명 및 사과	추진중
6	2017. 8월	근로감독관과 검찰 간 긴밀한 협력	추진중
7	2018. 1월	상가임대료 부담 경감 대책의 조속한 추진	종 료
8	2018. 2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	추진중
9	2018. 2월	검찰 관련 현안에 대한 엄정한 진상규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종 료
10	2018. 4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양형 기준 상향	추진중
11	2018. 4월	범죄수익 환수 방안 마련	추진중
12	2018. 10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추진중
13	2019. 5월	정부·공공기관 부과금 연체가산금 등의 법정이자율에 대한 형평성 검토	추진중
14	2019. 12월	형집행법 제71조제1항 신설로 인한 취사 등 작업 사용자 건강권 보호방안 마련	추진중

2) 타부처 협조 지시사항(9건)

연번	지시일자	지 시 사 항(주관부처)	이행상황
1	2017. 10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권익위, 기재부, 행안부)	추진중
2	2017. 10월	평창올림픽에 대한 전방위 홍보(문체부)	종 료
3	2018. 3월	금융혁신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금융위, 중기부)	추진중
4	2018. 3월	평창올림픽·패럴림픽 후속대책 마련(국조실)	추진중
5	2018. 4월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의 반부패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금융위)	종 료
6	2018. 4월	장애인 대책 점검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복지부, 고용부, 문체부)	추진중
7	2018. 5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관한 명확한 통계 확인 및 홍보(교육부)	종 료
8	2019. 4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유입 차단과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불법적 반입에 대한 처벌 강화(농식품부)	추진중
9	2019. 12월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 브랜드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필요(문체부)	추진중

9.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 관리 강화

가. 비상대비 태세 확립

비상안전기획관실 주무관 김인애

1) 을지태극연습 실시

2019년 남북관계는 하노이 북미회담 협상,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연이어 결렬되고 북한의 방사포 시험발사 등 불안한 행보를 이어갔으며, 대외적으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 미·중 패권다툼 등 동북아 안보 역시 불안정하고 사우디 드론테러 사례처럼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또한 늘어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였다.

이에 법무부는 전 소속·공공기관이 유비무환의 자세로 전시 대비 정부 총연습인 을지태극연습(2019. 5. 27.~30.)을 실시하였다. 대형복합재난·테러 등을 대비한 '국가위기대응 연습'과 국지도발, 전시직제편성, 전시초기 대응 등을 연습한 '전시대비 연습'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중 지진 및 테러발생을 가정해 진행한 국가위기대응 연습은 자체 실제훈련과 영상회의를 병행하고, 인천공항 유관부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실제상황 같은 연습이 되고자 노력했으며, 서울소년원 전시 대테러·화재대피 훈련은 민·관·군·경은 물론 학생 85명 등 300명이 참가한 대규모 훈련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중앙평가단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내실 있는 연습실시 결과, 법무부는 비상대비확립 유공으로 2019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으로 비상사태 시 안정적으로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부처로서 국민의 신뢰도를 높였다.

| 그림 2-11 | 2019년 을지태극연습



국가위기대응연습 과제토의(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전시 대테러·화재대피 훈련(서울소년원)

2) 비상대비 계획 수립·실시

올해 을지태극연습 시 발굴한 개선과제 및 국내외 안보상황을 반영하여 전시 법무, 검찰, 보호, 인권, 교정 및 출입국관리 사무에 관한 충무계획(「충무3600 법무부 집행계획」·「충무6000 자체충무계획」)을 개정하였으며, 본부 각과, 소속기관, 유관부처에 배부하였다. 또한 소속기관 충무계획 시행태세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소속기관 114곳의 법무시행계획을 면밀히 검토·승인하여 연계성 있고 체계적인 비상대비 계획 수립에 기여했다.

3) 소속 국가중요시설 지도·감독 강화

법무부 소속 국가중요시설의 증가 추세에 따라 소속기관 방호실태 점검을 연 2회 확대 실시하고, 안보상황 변화 및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법무시설 방호지침」을 개정하여 적 침투, 수용자 폭동 등 비상사태 시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였다. 법무부 소속기관은 물론 관계 부처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굳건한 통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통합방위본부[3]로부터 2019년 통합방위 유공(국가중요시설 분야)으로 본부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3) 통합방위본부 :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통합방위 주관 기구

나. 재난 안전관리 효율성 강화

비상안전기획관실 주무관 이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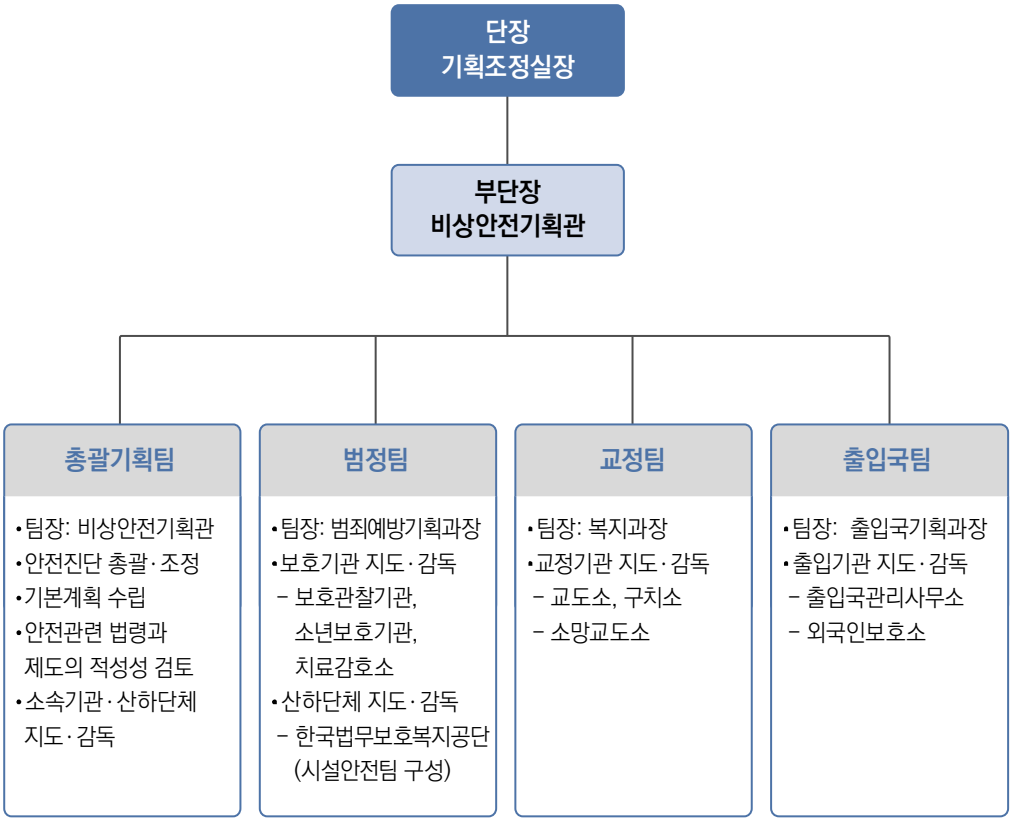
1) 소속기관 재난 안전 점검 실시

소속기관의 각종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각 5일간에 걸쳐 시설 담당관실과 합동으로 재난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화재 및 지진대피 불시 훈련 실시를 통한 재난 매뉴얼 작동실태 및 직원의 숙지 여부 확인, 유관기관과의 합동소방훈련 실시 여부 및 소화전·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점검, 가스·연료 등 각종 위험시설물 관리 상태를 점검하였다. 점검에 따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속기관에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과 재산의 피해방지 체계를 구축하였다.

2) 안전대진단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안전 강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시설 관리주체, 국민 등이 진단주체가 되는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9. 2. 18. ~ 4. 19. 61일간 공공건축물, 전기, 가스, 소방 분야 등 1,772개 시설에 대해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과 기관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 2017.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및 2018.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17. 11월 포항 지진 발생을 계기로 취약 소방분야 설비, 노후화된 건물의 시설 등 관리 전반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보일러실 노후 가스경보기 교체, 생활관 후면 폐굴뚝 균열 등 위험요인 제거 등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조치와 보강작업을 실시하였다. 안전대진단을 통해 재난 발생 요인을 효과적으로 사전 제거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하였고,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그림 2-12 | 법무부 안전대진단 추진단 구성



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연1회 실시하고 있다.

2019 안전한국훈련(10. 28. ~ 11. 1.) 기간 동안 법무부에서는 '풍·수해 대응훈련', '화재대응 훈련', '지진·해일 대응 훈련' 등 3개 분야에 걸쳐 본부 및 전 기관이 참가하여 재난 대응 시스템을 일제 정비하였다.

인천구치소(11. 1.)에서는 수용·보호시설 화재를 대비하여 미추홀구청, 미추홀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본부에서는 상황판단회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훈련을 실시하여 인천구치소 현장훈련과 연계하여 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법무부 및 소속·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이러한 범정부적 재난대응 종합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였고,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 그림 2-13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교정기관 화재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
(인천구치소)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훈련(본부)

4) 재난관리 평가 수검

법무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개인, 부서, 기관, 네트워크별 재난관리 핵심역량 및 주요 재난안전정책 추진실적 등 28개 지표에 대한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를 받았다. 재난관리 조직 및 인력 운용 실적, 재난 예방을 위한 기관장 현장점검 및 홍보 등 지표별 사전분석을 통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2018년도 추진 실적에 대한 서면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다. 또한 교수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재난관리평가단과의 현장점검 시 재난관리를 위한 비전·관심도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장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를 통해 법무부의 재난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평가결과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재난안전관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10. 스마트 법무정보화 추진

가. 국민관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정보화담당관실 주무관 김혜경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법무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국가소송 통계 정보, 생활법률 지식정보 등 총 38종의 공공데이터[4]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개하였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2019년에는 총 9종의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하였다. 사회적 약자 및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권 옹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민사 및 법률구조 현황」 데이터, 읍·면·동 마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운영현황·상담방식 등을 담은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동영상」 데이터를 공개하였고, 특히, 2019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이용 실태조사에서 개방을 원하는 국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대상자의 죄명별 현황」 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그 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통계」, 「법무법인 분사무소 및 폐쇄공증사무소 주소정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도서관리」 등의 법무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다.

| 표 2-11 | 2019년도 법무부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19년 개방 데이터 수	2019년 주요 개방 내용
9종	• (민사 및 법률구조 현황) 민·가사 구조, 형사구조 등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현황) 구조금 건수, 지급액 등 • (마을변호사 홍보)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동영상 •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 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 등 통계 • (전자공증DB) 법무법인 분사무소, 폐쇄공증사무소 주소 정보 등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도서관리 등 4종

3) 발전방향

2020년에도 국민생활 밀접 법률정보, 사회안전 관련 통계 등 국민의 수요와 이용가치가 높은 법무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오류신고 창구 운영, 데이터 관리 직원 대상 품질관리 교육 등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4) 공공데이터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컴퓨터파일, 데이터베이스(DB)등의 전자적 형태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료

나. 편리하고 안전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정보화담당관실 주무관 이루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정책을 적극 공개하여 국민들과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신속·정확한 법무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및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친근한 내용으로 법무부 기본 정보를 소개하고, 어린이·청소년이 즐겁게 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동영상·웹툰·이북·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법무부 어린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작('19. 12. 26.)하였다. 또한, 채용정보 등 국민 관심 메뉴를 메인화면에 배치하여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법무정책 최근 소식을 신속히 알리고 국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뉴스레터를 전면 개편('19. 6월)하여 사진·동영상·웹툰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 현장 소식을 매주 전자우편으로 제공하였다.

아울러, 장애인·노약자 등 정보 접근 소외계층이 제약 없이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및 호환성을 점검·보완(2회)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국가 공인인증 기관(웹와치)에서 발급하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도 갱신('19. 3.)하였다.

| 그림 2-14 | 법무부 어린이 홈페이지 메인



| 그림 2-15 | 법무부 뉴스레터 메인



한편,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요소를 파악하여 보완 조치(3회)하였으며, 이미지 형태(JPG·PDF 파일) 게시물의 개인정보도 차단·점검할 수 있는 SW를 도입('19. 12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망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망(법무정보시스템)과 인터넷망(홈페이지시스템)을 분리·운영('19. 12월)하고, 데이터를 암호화 전송함으로써 보안 및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3) 발전방향

2020년도에는 국민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으로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및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불편사항을 제거하고 최신 정보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 및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업무·인터넷 망분리를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

정보화담당관실 주무관 김학걸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인터넷을 통한 외부의 불법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여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업무망과 인터넷을 분리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송무·범죄예방·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관련 법제도 확충 및 법적 보호조치 사항 이행, 효과적 관리체계 구축 등 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2019년에는 대구·광주지방교정청 및 소속 29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망-인터넷 망분리를 추진하였다. 이로써 그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던 법무부 전 기관(본부 및 198개 소속기관)에 대한 망분리 구축을 완료하였다.

| 표 2-12 | 법무부 업무망-인터넷 망분리 추진경과

구축연도	대상기관
2008년	• 법무부 본부
2010년	• 인천공항 등 출입국관리기관(7개)
2015년	• 법무연수원 등 정보시스템 운영기관(9개)
2016년	• 소년보호기관(27개), 출입국관리기관(35개)
2017년	• 보호관찰기관(64개)
2018년	• 서울·대전 지방교정청 및 소속 교정기관(27개)
2019년	• 대구·광주 지방교정청 및 소속 교정기관(29개)

한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4차('21~'23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법무부부문)과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인 보호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협의체를 구성·운영(6회)하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논의 등 담당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소속·산하기관(12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보호조치 미비 사항을 개선하였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별(보호책임자, 보호담당자, 일반직원 등)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총 52,132명) 하는 등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3) 발전방향

앞으로도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및 각종 서식 정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 보호의 날 지정·운영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실천문화 확산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라. 법무지식 공유·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 향상 및 성과 창출

정보화담당관실 주무관 이원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행정 업무 효율 향상 및 조직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무지식[5]의 축적·

5) 법무지식 : 법무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개인 또는 부서의 경험, 노하우 등 유·무형의 실천적 정보

공유라는 목표 하에 업무 개선사례,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방법·노하우·연구논문 등 품질 높은 지식을 발굴·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2019. 3월 지식 승인 및 검증 방식 개선, 평가 기준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개정(7차)을 통해 지식 검증 및 평가에 있어 객관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였으며, 2019. 4월 지식행정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지식인·지식검증자와 지식활동 부진 기관 담당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식 우수사례 공유 및 분임토의, 외부 전문가 특강 등을 진행하여 지식행정의 질적 향상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 그림 2-16 | 지식행정 워크숍(분임토의)



| 그림 2-17 | 지식행정 워크숍(전체)



또한, 분기별(3월, 6월, 9월)로 우수지식인 25명, 총 75명을 선발하여 격려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12월 연간 지식행정 활동성과를 근거로 1개 우수기관(장관표창, 포상금) 및 우수지식인 4명(인사가점, 포상금)을 선정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한 우수 지식활동 기관 및 직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실시하였다. 2019. 7. ~ 8월 에는 지식활동에 대한 관심 및 동기 유발을 위해 '법무지식 컨테스트'를 개최(개인부문 52건, 단체부문 13건 응모)하여 개인부문에서는 '홍채 및 지능형 영상감시 승무원 자동출입국 심사대 구축' 지식을, 단체부문에서는 '스마트 전자수갑' 지식을 최우수 지식으로 선정·포상(총 개인부문 7명, 단체부문 4팀, 포상금 200만 원)하고 전 직원에게 공유하였다.

더불어 우수 학습동아리 8개('보호관찰 정책연구모임' 등)에 대해 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비 지원 사업에 2개 학습동아리('바른 급식 사랑방', '전자감독')를 추천함으로써 운영비 200만원(18년 150만 원)을 지원 받도록 하는 등 학습동아리를 통한 집단 지식 창출 및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 또한 전개하였다.

3) 발전방향

앞으로도 더욱 업무 지식을 공유·활용하고, 지식을 통한 업무 효율 제고 및 성과창출 극대화를 목표로 지식행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워크숍 및 교육, 평가 및 보상 등을 통해 법무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한편 지능 사회·지능 정부에 적합한 혁신적이고 실효적인 법무지식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마.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을 통한 사이버위협 대응

정보화담당관실 주무관 차욱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킹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법무행정 정보는 업무특성상 교정, 범죄예방 등의 형의 집행정보와 출입국·외국인 정보 등의 국제적 범위의 정보 등 보유정보 대부분이 민감 개인정보로 유출시 국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야기될 수 있어 정보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킹 등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무행정 정보유출 등의 보안위험을 체계적으로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해 2011년 법무사이버안전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최근의 해킹기술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위협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다양한 첨단 보안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서버보안·DB보안 등 8대 보안 분야에 취약점 분석 등 5개 분석체계를 활용한 고도화된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갖추고 본부, 소속 및 산하기관 등 199개 기관에 대해 24시간 365일 보안관제를 수행하고 있다.

| 그림 2-18 |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상황판



| 그림 2-19 | 법무사이버안전센터 교육



이와 같은 첨단화된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통해 6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대민 서비스에 대해 홈페이지 위변조 및 개인정보 노출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해킹 공격과 정보 유출을 예방 및 차단하고 있다. 또한, 법무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본부 및 소속·산하 시스템 운영기관(25개)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조치하였으며, 24시간 365일 철저한 보안 관제를 통해 홈페이지 해킹시도 탐지 및 차단(1,260건), 개인정보 노출 탐지 및 차단(48건), 유해 IP·사이트(596건) 등록·차단 등 보안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사이버 위협 대응 활동과 함께 직원 보안 지식 및 의식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전 직원에게 매월 1회 보안뉴스·동향 등 다양한 보안자료를 담은 보안 소식지를 제작하여 메일로 제공하고 있다. 소속기관 정보보안 담당자에게는 매일 1회 보안 관련 주요 뉴스·핫이슈 등의 내용으로 제작한 보안 뉴스레터를 메일로 발송하여 보안관련 동향의 신속한 전파 및 보안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3) 발전방향

사이버위협을 더욱 신속하게 탐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관리 분야별(관제, 침해대응, 취약점 진단) 전문성 및 역량을 향상시키고 최신의 지능형 통합 보안관제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공동활용정보 항목 확대 및 공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주무관 나기정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은 법무부·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 등 5개 형사사법기관이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공통 표준의 전자 업무시스템(형사사법정보시스템,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KICS')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통시스템을 운영하며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히 2019년에는 변사자 보험가입 조회를 위해 검찰과 손해 보험협회 정보를 연계하였고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과 KICS를 연계하여 공동 정보 활용 기관과 항목 확대를 추진하였다.

또한 공통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최적화('19. 3월), 시스템 이중화 테스트('19. 3월), 백업·복구 테스트('19. 6월), 웹구간 암호화 성능진단('19. 6월), 시스템 Health

Check('19. 8~9월), 장애 모의훈련('19. 10월), 서비스 수준진단(SLA, 매월)등의 과제를 수행하여 최적화된 업무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법무부·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 간 406종의 정보를 하루 210만 건 상당 처리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전자문서 누적 유통건수 약 6,147만 건, 사건조회 정보 등 누적 유통 약 57만 1,300건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형사사법절차 처리와 관련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였다.

2)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확대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제고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주무관 김기환

국민들에게 형사사법기관의 형사사법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은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19년 현재 민원신청 38종, 통지서 27종, 증명서 발급 14종 등 총 79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표 2-13 | 형사사법포털 운영 현황

(단위 : 건)

구 분	'19 운영 현황	누적 건수('10. 7 ~ 19. 12.)
포털 접속	4,208만 건	2억 3,937만건
모바일 앱 다운로드	66만 건	189만 건
사건진행 상황 조회	1,233만 건	6,156만 건
벌과금 조회	229만 건	1,548만 건
민원서비스	7만 건	44만건

2019년에는 사용 편의성 증가를 위해 비밀번호 찾기 개선, 모바일 앱 한글 입력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였고 「2018년 대국민 형사사법포털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개편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홈페이지는 2014. 5월 개편 버전으로, 새로운 홈페이지는 신규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존 복잡한 메뉴를 직관성 있게 주요 서비스 중심으로 간소화 하였으며 전체 폰트 사이즈 확대를 통해 사용자의 컨텐츠 가독성을 향상시켰다.

이와 같은 사용자 기반의 웹사이트 제공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투명한 형사절차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형사사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20 | 형사사법포털 메인화면



변경 전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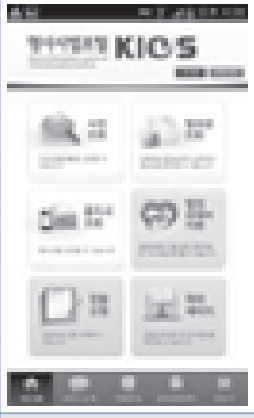
| 그림 2-21 |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메인화면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11. 법무부 양성평등 전담부서 설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사무관 김유호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8년 검찰 내 성희롱 사건 폭로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은 학계·문화·체육계로 확대되며, 사회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 근절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와 소속기관의 성희롱·성범죄 실태 점검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함)를 발족하여 약 6개월간 운영(2018. 2. 13. ~ 8. 12.)하였다.

대책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조직 내 양성평등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컨트롤타워를 두라고 권고하였다.

또한, 여성계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요구가 있었고, 2018. 7월 국무회의 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투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법무부·대검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직제안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을 거쳐 2019.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미투(Me Too) 문제 근본해결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2019. 5월에 법무부 양성평등 전담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설치하였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양성평등 전담부서의 신설로 소관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 기능,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 주류화 정책을 강화하여 영역별 성차별,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지속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 이후 체계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하여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5개 대과제, 20개 세부과제)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136회)을 실시하였다.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사건 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법무부훈령 제1221호, 2019. 5. 7.)을 전부개정 하였고,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행동수칙을 제정하여 각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에 배부하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법무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중심의 양성평등정책 위원회를 발족하여 정책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12. 법무연수원 교육 및 연구 내실화

가. 교육 및 업무추진 개관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김유철

2019년, 법무연수원은 법무·검찰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들의 전문역량 강화 및 올바른 공직 가치관 확립'이라는 근본적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교육 체계 및 내용 개선, 교수역량 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완성도 높은 강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으며,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교육생들의 몰입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학습효과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먼저 2019년도 교육현황은 다음과 같다. 검사, 검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공무원, 유관기관 및 외국 공무원,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총 818개 과정, 7,388회, 196,675명(집합교육 171개 과정, 320회 11,854명/사이버교육 647개 과정, 7,068회 184,82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인원(집합교육 759명, 사이버교육 10,901명)이다.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질문하는 쌍방향 교육, 정답을 찾아가는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을 통해 창의적·능동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소양교육 및 공직가치 내재화를 위한 주요 시책교육을 강화하였는데, 우수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인권, 양성평등, 갑질예방, 청렴, 적극행정,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클래식 공연, 역사유적지 탐방' 등 문화체험 및 정서 순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역사관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정장비 전문화 과정에 '드론실습 강의'를 편성하는 등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관한 교육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민간 교육, 유관기관 지원, 국제 교류·협력 강화 등 개방과 공유에 초점을 두어 주변과 소통하며 법무연수원의 전문성을 전수하였고, 이를 통해 상호 발전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ILEC) 발전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우호적 대외관계 형성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아카데미와 MOU 체결, 캄보디아 및 우즈베키스탄 검사 비상임 연구위원 위촉, 황철규 연구위원(국제검사협회 회장) 등의 제13차 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 회의 참석 등 다방면의 노력으로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다.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측면의 개선도 추진하였다. 법무연수원 내부교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일반직 교수들을 대상으로 2020년도부터 강의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우수 외부강사 섭외를 위해 강사료를 인상하는 등 법무연수원 규정 제·개정도 함께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사 및 일반직 고위공무원 연구위원, 검사 국외훈련, 정책연구 용역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업무 수행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형사사법포럼 공동개최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롭게 나아가야 할 형사정책의 방향을 탐구하였다.

나. 검사 교육체계 개선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김유철

1)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과정 신설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신임검사와 경력검사(8년차) 교육 사이에 발생하는 집합교육의 장기공백을 해소하고 고도화된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저년차 검사들에게 성장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19년에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과정을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업무 경험을 통한 현장교육에 의존하여 상급자의 능력에 지나치게 좌우될 우려가 있었고, 교육훈련의 내용과 수준을 통일하기 어려웠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해결하는 역량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출산 및 육아 등으로 휴직을 한 경우, 복직 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존재하여 경력 3~4년차 검사들에게 직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2019. 1월부터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286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저년차 검사들의 조사신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 기록 검토 및 롤플레잉 수업과 강평, 우수수사사례 발표 및 토론, 과학수사의 실제 및 활용 등의 과목을 편성하였다.

또한 검찰총장 강화, 법무연수원장 특강을 통해 일선 청에 근무하는 저년차 검사들에게 바람직한 검사 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교정역사박물관, 모의교도소 견학 등 타 직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교수를 통해 고도화된 교육을 균질하게 실시함으로써 내실화된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육생들이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훈련에 전념하여 높은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림 2-22 |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과정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저년차 검사 역량강화 과정' 신설을 통해 신임검사부터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경력단계에 따른 공직 생애주기별 필요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등 검사 단계별 교육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완성하였다. 2020년에는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으로 구분하고 대상, 기간, 과목 등을 세분화하는 등 교육체계를 더욱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 타겟형 교육과정 개편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8년도에 검사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도입했던 단기·집중 방식의 타겟형 교육은 대검 각 소관 부서에서 주관하여 교육일정, 강사섭외, 교육대상자 선정 등 교육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해당 분야의 수사기법·사례 등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어 유익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교육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교육장소와 주관부서가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의 효율적 진행 및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교육체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일선청 의견조회를 거쳐 형사부, 공판송무부 과정을 통합하여 필수과정, 선택과정으로 구분하였고, 교육일수 및 횟수도 조정함으로써 교육대상자 중복 및 일선청 검사들의 업무부담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해당 과정의 교육 주관을 대검에서 법무연수원으로 변경하여 강의실 확보 및 부서 간 일정조율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체계적 교육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선택과정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강의를 배제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2020년부터 개편된 교육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타겟형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일선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검사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교육 주관 변경을 통해 법무연수원의 축적된 노하우 및 시설을 활용한 효율적인 교육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전문지식 습득 확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등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얻는 이점들을 극대화하였다.

향후에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며, 교육 이수여부를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는 등 교육 대상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 실무 중심 교육 실시로 직무역량 강화

1) 신임검사 통합 교육 실시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주무관 송준욱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8년부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은 사법연수원 교육 폐지에 대비하고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이원화된 교육과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임검사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교육 시 예상되는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출신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변호사시험 출신 검사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결정문 작성방법 등 사법연수원 과정을 3~4월에 집중 교육하는 입교준비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추진 내용 및 성과

신임검사 통합교육은 사법시험 출신 및 변호사시험 출신 신임검사 총 118명을 대상으로 2019. 5월부터 2020. 2월까지 4쿼터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 중 사법시험 출신 및 변호사시험 경력 신임검사 40명은 2019. 9월 2쿼터까지 5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변호사시험 8기 및 변호사시험 5기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78명은 2019. 10월부터 12월까지 3쿼터 일선 청 실무수습까지 종료하였고, 이후 2020. 1월부터 2월까지 4쿼터 과정을 거쳐 수료할 예정이다.

기존의 법리·판례 암기 및 결정문 작성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체험형 실습 교육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였다. 교육과정 중 특히 직무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사례 중심의 기록실습, 「롤플레잉 조사실습」 등 과목을 집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건의 쟁점 파악 능력 및 조사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롤플레잉 조사실습을 통해 신임검사가 피조사자 역할을 담당해 봄으로써 조사능력 제고뿐만 아니라 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교육과정 중 국민참여재판 참관을 통해 공소 유지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디지털 증거물의 추출 과정 등을 참관하며 일선청에서 필요한 수사지휘 실무 능력을 배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선 교도소를 방문하고 교정 시설 체험을 통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보장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문학 토론 등 소양교육과 멘토-멘티 방식으로 직무교육과 생활 상담 전반을 밀착 지도하는 1:1 튜터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무역량 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갖춘 신임검사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그림 2-23 | 법무 8기 신임검사 교육 과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참관



국립현충원 방문

2) 검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과정 운영 개선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주무관 김해경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9년에도 비 직무과목 선택 합격자가 증가함에 따라 법률 및 직무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여 직렬별 9급 신규자 과정 교육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직무교육을 보강하고 신규자의 공직관·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급별로 교육과정을 실무중심으로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2018년에 비하여 '검찰직 신규자 과정'은 기초법과목(형법·형소법) 비중을 대폭 강화하였다. 비법과목으로 선발된 신규직원의 증가(약 50%)로 일선 청에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기초 법률과목 비중을 40시간에서 55시간으로 확대 편성하고 교재집필 및 시험 출제를 연수원 교수들이 직접 수행하여 일선청과 대검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보호직 9급 신규자 과정'은 공채 신규자 대상 교육 외 경력채용 신규자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출입국 9급 신규자 과정'은 일선기관 현장학습을 통해 이론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업무현장에서 적용해 보게 함으로써 현장 적응능력을 높였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국립현충원 등을 방문하고 참배함으로써 신규자들이 바람직한 공직관·국가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림 2-24 | 신규자 교육과정 운영



검찰직 신규자 현충원 방문



보호직 신규자 수료식

이와 함께 검찰직은 수사관의 수사·조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직급별 수사역량 강화과정을 개설하여(8급·7급·6급) 수사기록 위주의 실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단계별 실무교육 체계를 완성하였다. 보호직은 2018년에 대폭 개선된 교육내용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5급 관리자

과정'을 리더십 교육에서 역량 평가 대비 교육으로 변경하여 내실을 기하였다. 출입국관리직 교육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출입국관리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신문조서, 언론 보도자료 및 보고서 작성 등 실습 교육 강화에 힘썼고 주요 업무별 전문교육 6개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교육생 선발에 있어서 기존 사무소 할당 방식을 탈피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하여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3) 교정직 신규 직원 실무교육 내실화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 교감 이동근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9년에 신규 기본 교육 후 일선 교정기관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원 실무교육에 대한 현장 적합성, 개선·건의사항 등을 피드백 받아 교육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일선기관 업무 증가로 교정기관별 실무교육이 어렵고 단순 이론교육만으로 교육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인 점을 고려하여 2020년 교육과정에 교정정보시스템 실습시간 확보 등 실습위주로 교육을 편성하고 실습평가 비중을 상향하여 반영하기로 하였다.

나) 추진내용

2019년 상반기 교육을 수료한 신규 7급 및 9급 교육생 178명을 대상으로 2019. 10. 1. ~ 19.까지 2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교정정보시스템 실습시간 확보 등 실습훈련 강화 요청 의견 등을 반영하여 2020년 신규 7급 및 9급 교육생부터 교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보고문 작성 실습을 교육과정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교정청 전산관리과의 협조를 받아 법무연수원에서도 교정정보시스템을 교육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개발하고 별도 서버에 실습용으로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실무중심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습평가 비중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하였고, 평가과목으로 외부병원 근무일지 작성, 교정장비 종합 활용능력, 교정정보시스템 사용법 등을 도입하는 등 세분화하였다

다) 평가

교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과 동일한 근무환경에서 실습을 할 수 있게 되어 교육생들이 수용동 실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수용자 출원사항에 대한 보고문 작성 능력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원활한 고충해소를 통해 수용자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수용질서를 확립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실습평가 과목이 세분화되고 실습평가 비중이 높아져 교육생들의 실습교육에 대한 집중

도를 향상시켜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연구활동의 전문화

1) 형사사법포럼 개최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김홍훈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가 형사정책 수립의 중추적인 연구기관인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공동 연구 목적으로 2010년 제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한 이래로, 매년 이슈가 되는 형사정책 과제에 대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 표 2-14 | 형사사법포럼 연혁 및 주제

연도	주제	날짜	장소
2010	범죄피해자의 피해 실태 및 보호·지원 대책	1월 28일	대검찰청
2011	이성의 빛과 형사사법의 진실	3월 9일	대검찰청
2012	과학기술의 발달과 공판 : 공판절차의 선진화	3월 22일	대검찰청
2013	여성·아동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10월 24일	법무연수원
2014	경제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과제	7월 3일	대검찰청
2015	재난 없는 안전사회를 위한 형사정책적 과제	9월 3일	대검찰청
2016	신뢰의 프리즘으로 본 형사사법	6월 15일	대검찰청
2017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12월 22일	대검찰청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형사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	11월 22일	법무연수원
2019	변화하는 범죄트랜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	11월 25일	서울 더K 호텔

나) 추진 내용 및 성과

2019. 11. 25. 서울 더K 호텔에서 『변화하는 범죄트랜드에 따른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10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①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발표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 위원), ② 정신질환 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내 관리방안(발표자 :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위원), ③ 국외재산 도피실태와 대응방안(발표자 :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안광현 검사)을 소주제로 하여 변화하는 범죄트랜드에 따른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 사기사건, 진주 방화 살인사건,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새로운 형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 그림 2-25 | 제10회 형사사법포럼 개최



2)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 재구성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진건호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연수원은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19년에는 외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명을 심의위원으로 재위촉하여,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과 연구과제 심의 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표 2-15 | 2019년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고
위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직무대리	배용찬	
위원	법무연수원	검사교수	김 웅	
위원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김성동	
위원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이성식	
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효원	
위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우	
위원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정민	
위원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형관	재위촉

나) 평가 및 향후계획

법무연수원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19년에 『검찰 관리자 리더십 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관리자 리더십 교육 비교 연구』 등 법무 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4건을 엄선하여 추진하였다.

연구용역 결과물은 강의자료 등 교육 및 연구 업무 발전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법무연수원은 정책연구용역 주제 및 연구자 선정 시 정책연구용역 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법무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표 2-16 | 2019년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구분	용역 과제명	책임연구원
1	검찰 관리자 리더십 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관리자 리더십 교육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전기석
2	2019년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작	㈜에프엑스디자인
3	신임검사 교육 관련 표준교재 개발 [체험형 공판 교육(롤플레잉)을 위한 표준교재 개발]	영남대학교 예상균
4	신임검사 교육 관련 표준교재 개발 [체험형 조사 교육(롤플레잉)을 위한 표준교재 개발]	중앙대학교 이순옥

마. 법무한류 확산 및 국제협력 강화

1) 국제연수과정 실시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주무관 송준욱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연수원은 1997년부터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형사사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고, 국제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널리 전파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정착, 경제발전을 지원함과 아울러 국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과 주요성과

199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103개국, 1,903명의 외국 법조인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제연수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한 국제연수과정 현황은 아래 〈표 2-1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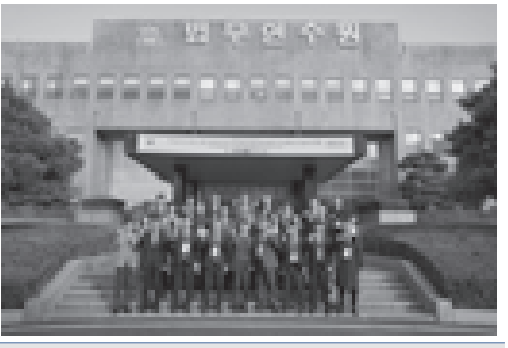
| 표 2-17 | 2019년 국제연수과정 운영 현황

순번	과 정 명	기 간	대 상
1	네팔 검찰 역량강화 과정	3. 10. ~ 3. 17.	네팔 검사 10명
2	몽골 법률집행대학 교도관 역량강화 과정	3. 25. ~ 4. 9.	몽골 교정직 공무원 20명
3	몽골 검찰 형사사법 역량강화 과정	4. 11. ~ 4. 26.	몽골 검사 10명
4	몽골 출입국관리행정 역량강화 과정	4. 27. ~ 5. 4.	몽골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12명
5	ASEA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캄보디아) 역량강화 과정	5. 12. ~ 5. 25.	캄보디아 검찰총장 등 판·검사 11명
6	ASEA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미얀마) 역량강화 과정	6. 9. ~ 6. 22.	미얀마 검사 등 검찰직 공무원 10명
7	이라크 출입국관리행정 역량강화 과정	7. 11. ~ 7. 26.	이라크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15명
8	가나 출입국관리행정 역량강화 과정	9. 19. ~ 10. 3.	가나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10명
9	필리핀 출입국관리행정 역량강화 과정	10. 17. ~ 11. 1.	필리핀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20명
10	CIS 출입국관리행정 역량강화 과정	11. 7.~ 11. 27.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등 CIS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18명

| 그림 2-26 | 2019년 국제연수과정



ASEA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역량강화 과정(캄보디아)



CIS 출입국관리행정 역량강화 과정

2) 국제교류 및 협력 확대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 주무관 송준욱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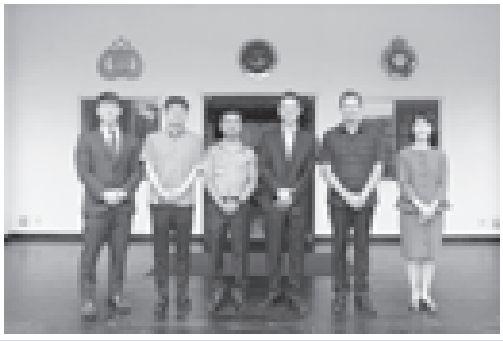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발맞추어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 부원장 쩐 콩 판, 인도네시아 법집행협력센터장 그렉 데이비스 등과 면담하고, 면담결과를 향후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양국의 법무행정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국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외국 법무연수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여 2019. 5월에는 법무연수원장 등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대검찰청 아카데미와 법무·검찰 분야의 공동연구 및 교육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중국 사법부 부부장 펑리쥔 등 6명이 법무연수원을 방문하여 양국의 법무·검찰 공무원 교육현황을 논의하였고, 콜렌코 예브게니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아카데미 원장 등 2명을 초청하여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중국 검찰관학원 부원장 양영택 등 6명을 초청하여 양국의 검찰제도와 검사교육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무·검찰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증진하였다.

| 그림 2-27 |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 부원장 면담



인도네시아 법집행협력센터(JCLEC) 방문

나) 향후계획

법무연수원은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정부의 신북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과 법무·검찰 교육 관련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바.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교육 실현

1) 청소년 법체험 캠프 및 학생직업체험 과정 운영

법무연수원 기획과 공익법무관 송경재

가)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법무연수원은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에 기여·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법체험캠프는 체험·활동 중심의 법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어린이들이 책임의식과 자부심을 갖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학생직업체험 과정은 중·고등학생에게 검사, 검찰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행정 분야의 직업을 소개하고, 직업 관련 강의 및 모의교도소 등 시설 체험을 통해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 주요성과

기존의 어린이 법교실을 2019년부터는 '청소년 법캠프'로 명칭을 바꾸고 법무부 보호정책과와 협업하여 전국에서 모집된 고등학생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학생직업체험은 2019년도에는 진천중학교, 덕산중학교, 서전중학교, 광혜원중학교 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18년에 법무연수원은 학생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직업체험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 2019. 12월 인증기관으로 재선정되었다.

한편 2020년도부터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민·형사 모의재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그림 2-28 | 청소년 법체험 캠프 실시



2) 교정훈련센터 '교도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 교감 서애경

가)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2019년에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도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교도관 체험 프로그램'은 체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준법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소개하고 수갑 등 보호장비 착용, 수용동 근무, 포토존 체험 등을 통해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 주요성과

'교도관 체험 프로그램'은 2019년도에 진천고등학교, 서전고등학교, 진천중학교, 꿈나래 어린이집 등 99명에 대해 1회당 10~30명 내외의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현재 '교도관 체험 프로그램'은 인근 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안내 공문 발송 등 적극적인 프로그램 홍보활동을 통하여 충북 및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실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 그림 2-29 | '교도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천고등학교



서전고등학교

3) 제2기 법무·검찰과 함께하는 기업법무리더 과정 실시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하정우

가)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기존에 실시하던 '혁신법무리더과정'은 충청권 중소기업 및 공기업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18년부터 '법무·검찰과 함께하는 기업법무리더 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 중소도시 소재 중소기업 경영자들로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 기간을 1박 2일로 압축하는 등 교육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실시중이다.

나) 주요성과

2019년에는 7. 15. ~ 16.까지 1박 2일 동안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할 지역 중소기업 경영자 39명을 대상으로 제2기 법무·검찰과 함께하는 기업법무리더 과정을 진행하였다.

고용관계 및 조세·관세 등 법률 문제, 알기 쉬운 생활 법률 등 실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과목을 편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현직 검사 및 관세 담당 공무원 등을 초빙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정훈련센터, 모의 교도소 등을 참관하면서 법무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 방향

'법무·검찰과 함께하는 기업법무리더 과정'은 기업법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도시 기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과목 위주로 과정을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그림 2-30 | 제2기 법무·검찰과 함께하는 기업법무리더 과정 실시



사. 교육 몰입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법무연수원 기획과 주무관 김유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법무연수원은 2015년 진천으로 이전할 당시 식재한 수목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수 죽거나 생장을 멈추는 등 환경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신규 공무원들과 일선 업무로 지친 재직자들이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교육 환경에서 교육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목 식재, 동물체험 공간 조성, 기타 주요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2)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푸르고 싱그러운 법무연수원 조성을 위해 직원 및 교육생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사과, 복숭아, 개나리 등 식목행사에 동참하였다. 또한 용인분원의 대형 소나무 등 1,000여 그루를 본원으로 이식하였으며, 산책길과 행복관 주변에 잣나무 등 상록수 1,800여 그루를 식재하여 교육생들이 푸른 나무를 보며 마음을 정화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의 장소를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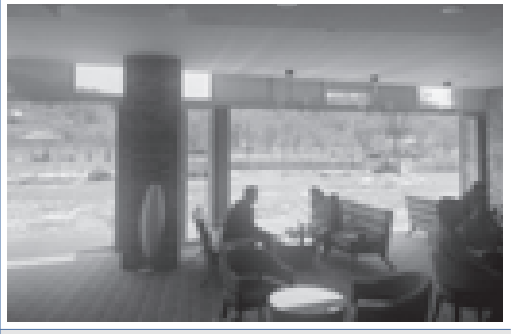
또한, 넓은 자연공간의 이점을 살려 기존에 사육하던 오골계, 금계 이외에 도심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동물체험 공간을 조성하였다. 토끼, 공작, 오리, 거위, 꽃사슴, 염소 등 다양한 동물들을 보며 교육생들이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끼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카페 공간의 전면 유리를 폴딩도어로 교체하여 무더운 여름날 탁 트인 카페 전경을 바라보며 신선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잔디밭으로만 조성된 법교육 캠핑장에 글램핑 시설 4개동을 설치하여, 교육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 그림 2-31 | 교육환경 개선



동물체험 공간 조성



카페 전면 유리 교체

3) 향후 계획

향후에도 교육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최상의 컨디션에서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천본원 생활관 바닥난방 교체, 용인분원 생활관 리모델링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생들의 자부심과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제2절 정책 홍보 활동

1. 기관장 소통 강화

대변인실 서기관 송세시리아

가. 방송 출연 및 인터뷰(8회)

법무부장관은 법무 정책 홍보를 위해 CBS〈김현정의 뉴스쇼〉(2. 13.), tbs〈김어준의 뉴스공장〉(3. 15.), YTN〈노종면의 더뉴스〉(3. 21.)에 출연하였고, 형사정책 연구소식(2. 18.), 매일경제(3. 29.), 한국일보(5. 14.), 코리아타임즈(5. 14.), 시사iN(9. 25.)과의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상법 개정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집단소송제 △기업 인권경영 △반부패 개혁 △불법촬영물 범죄 △가상화폐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 그림 2-32 | 법무부장관 방송출연 및 인터뷰



CBS 〈김현정의 뉴스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YTN 〈노종면의 더뉴스〉



매일경제



한국일보



시사iN

나. 브리핑(7회)

기관장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요 현안 및 법무 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였다. 장관이 직접 △3.1 절 특사(2. 26.) △정부업무보고(3. 13.) △과거사위 활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3. 19.) △검찰과거사 진상조사활동 종료(6. 12.) △검찰개혁방안 1차 발표(10. 8.)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방안 2차 발표(10. 14.)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차관 역시 공무원 인사 우대 제도 개선 합동 브리핑(5. 31.)으로 이슈에 적극 대처하였다.

| 그림 2-33 | 법무부장관 브리핑



3.1 절 특별사면 브리핑(2. 26.)



정부업무보고 브리핑(3. 13.)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3. 19.)



검찰과거사 진상조사활동 종료 관련 브리핑(6. 12.)



검찰개혁방안 1차 브리핑(10. 8.)



검찰개혁방안 2차 브리핑(1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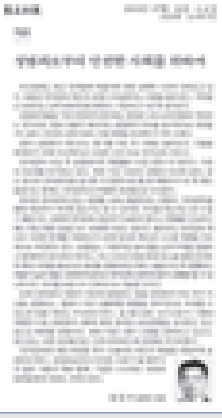
다. 기자 간담회(6회)

언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기자 간담회'를 총 6회 진행하였다. 장관 주재로 2회에 걸친 지역언론과의 간담회(강원·제주, 1. 8. / 경기, 1. 22.)와 2회에 걸친 법조출입기자 간담회(1. 24. / 1. 25.), JTBC 기자 간담회(2. 22.), 차관 주재로 법조팀장 간담회(11. 1.)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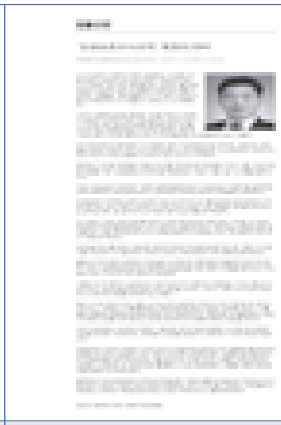
라. 언론 기고(4회)

주요 법무정책 홍보를 위해 법무부차관 명의로 언론 기고를 4회 실시하였다.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동아일보, 7. 24.)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의 의미"(법률신문, 11. 18.) △"전자장치 보석 통한 인권보호"(동아일보, 12. 11.)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자여행허가제"(서울신문, 12. 17.)를 통해 법무정책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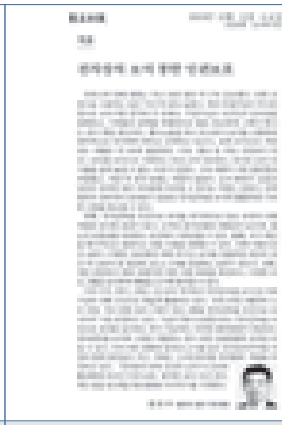
| 그림 2-34 | 기고



(동아일보, 7. 24.)



(법률신문, 11. 18.)



(동아일보, 12. 11.)



(서울신문, 12. 17.)

마. KTV 〈장도연의 롱터뷰〉

인기 개그우먼 장도연이 진행하는 KTV 〈장도연의 롱터뷰〉에 장관이 출연하여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무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법률홈닥터 제도 △마을변호사 제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조정 △불법촬영물 범죄 △주취감경 △상법개정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제작된 영상은 대한민국 정부 SNS, 법무부 SNS, 장도연 개인 SNS를 통해 확산되었으며 총 523,281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 그림 2-35 | KTV 〈장도연의 롱터뷰〉



2. 언론을 활용한 소통

대변인실 서기관 송세시리아

가.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배포

법무 정책 홍보를 위해 언론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대변인이 46회에 걸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법무 정책에 대한 언론의 취재 요청 1295건에 응대하였다. 또한 보도자료를 317건 배포하여 법무 정책 및 다양한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언론의 오해·왜곡 보도 및 비판 보도에 대해 106건의 설명 자료를 배포하여 법무부 입장을 상세히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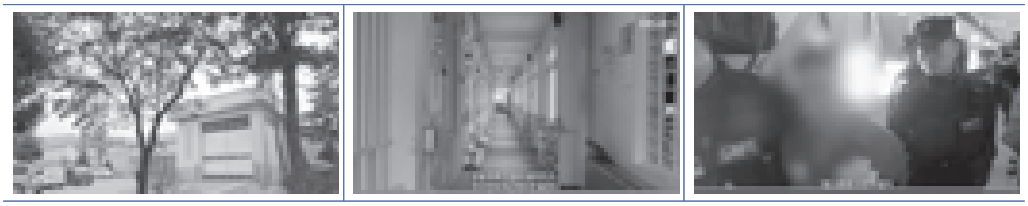
나. 기획방송을 통한 정책 홍보

방송사와 정책소개 다큐멘터리를 공동 제작하여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송출하였는데, MBC〈다큐프라임〉 "우리 곁에 숨은 보안관, 보호관찰관"('19. 12. 19.)과 EBS〈다큐시선〉 "또 다른 세상, 교도소"('19. 12. 26.)를 통해 보호관찰관제도와 교정시설 과밀화 실태를 각각 상세히 소개하였다.

| 그림 2-36 | MBC 〈다큐프라임〉 "우리 곁에 숨은 보안관, 보호관찰관"



| 그림 2-37 | EBS 〈다큐시선〉 "또 다른 세상, 교도소"



3. 허위 조작 정보 대응

대변인실 서기관 송세시리아

가.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실국본부에 모니터링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가짜뉴스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독한 상태이며, 서울구치소는 24시간 CCTV로 감시중'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발견('19. 2.) 하였고, '19. 3. 6. 유튜브 측에 해당 영상 삭제를 요청하였다.

또한 '진자유TV'라는 유튜버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게시한 허위 조작 동영상 2건('조국 법무장관 제1호 악법 외국인 입국 법안, 외국(중국)인 입국 절차 간소화 법안' '진행중인 악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1차 대응으로 언론에 설명자료를 배포하였고, 다음으로 팩트체크 카드뉴스('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진실')를 제작하여 법무부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하였다. 그리고 정책 담당자가 직접 출연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는 '팩트체크 동영상'(법무부 음모론? 아주 쉽게 정리해봅시다!)을 제작하여 법무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SNS에 게시하였다.

| 그림 2-38 | 팩트체크 카드뉴스



| 그림 2-39 | 팩트체크 동영상



나. 문화 콘텐츠 속 잘못 알려진 법무행정 바로잡기

문화 콘텐츠 속에 잘못 표현된 법무정책 관련 정보를 바로 알리기 위해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시리즈로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시하였다.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 〈자백〉 〈슬기로운 감빵생활〉 〈구해줘〉와 영화 〈뺑반〉 〈암수살인〉 속에 나타난 교정, 검찰 등과 관련한 총 14개의 에피소드를 검토한 후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 그림 2-40 | 팩트체크 카드뉴스



4. 디지털소통 강화

대변인실 사무관 이상우

가. 동영상 콘텐츠 제작

2019년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7%가 동영상 시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다가오는 2021년 역시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81.4%를 동영상 시청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영상 콘텐츠 대표 사이트인 '유튜브'가 온라인 검색 이용 채널 2위에 오르는 등 동영상이 대국민 소통의 주요 수단이 되면서 영상 콘텐츠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먼저 유튜브 환경에서는 짧은 동영상을 선호하는 국민들의 동영상 시청 양상을 반영하여

모든 동영상을 10분 이내로 제작하였으며, 법무정책을 직접 시연하여 소개하는 '해볼레오', 국민 시점에서 법무 현장을 점검하는 '전지적 국민 시점' 등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법무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셉트를 활용한 동영상을 83건 제작하였다.

또한 카드뉴스, 웹툰, 블로그 기사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를 통해 법무 정책을 홍보하였다.

| 그림 2-41 | 법무정책 관련 동영상 콘텐츠



나. 법무부TV 개국

기존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개편하여 2019. 7. 1. 법무부TV를 개국하고 동영상 콘텐츠 홍보 창구로 집중 활용하였다. 그 결과 2018년 2,260,660회이었던 유튜브 조회수가 2019년 7,938,995회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2018년 대비 351% 성장한 것으로 법무부 유튜브 채널 최대 조회수이기도 하다.

법무부 유튜브 구독자 수도 개국 전 2만여 명에서 법무부TV 개국 이후 38,155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그림 2-42 | 법무부TV 채널 화면



다. 디지털 소통 인력 강화

법무부는 콘텐츠 자제 제작을 확대하기 위하여 온라인대변인을 팀장으로 기획자 1명, 작가 1명, PD 2명으로 구성된 온라인홍보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2019년에는 디지털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더 높아져, 2019. 7. 1. 작가 1명(전문임기제 나급), PD 1명(전문임기제 다급), 디자이너 1명(전문임기제 다급)을 충원하였다.

확대된 디지털 인력은 1팀, 2팀 체제로 운영되며, 동영상·카드뉴스·웹툰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대한 양적 질적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5. 국민 참여 이벤트

대변인실 사무관 이상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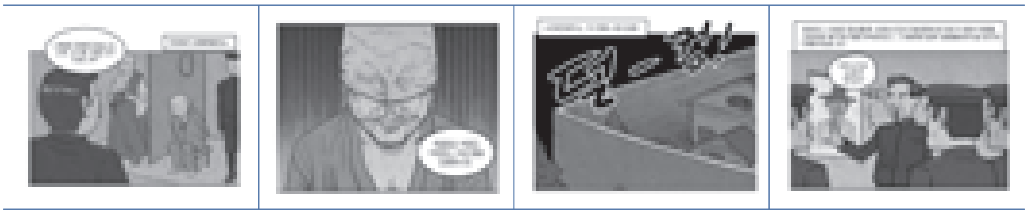
가.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국민 참여 이벤트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콘텐츠 제작과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다.

먼저 독립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 모습을 담은 시리즈 웹툰을 4편 제작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최재형 선생, 왕산 허위 선생, 남파 박찬익 선생, 이여송 선생에 대한 웹툰을 보고 독립유공자와 그들의 후손에게 감사의 인사를 댓글로 남기는 프로모션을 6. 19. ~ 7. 21.(4주간) 진행하였는데 112명이 이벤트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영웅」과 협업으로 프로모션에 선정된 국민 50명이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운동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고취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했다.

| 그림 2-43 | 독립유공자 웹툰 '왕산 허위 선생' 편



| 그림 2-44 | 법무부×뮤지컬 〈영웅〉 독립유공자 감사 이벤트



나. 2019 법무부 '급훈' 공모전

2014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법무부 '급훈 공모전'은 학급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급훈'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나아가 청소년 법의식 고양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민 참여 이벤트다.

2019 급훈 공모전은 이전 공모전과 달리 국내 초·중·고교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및 동아리 그리고 국외에서 체류 중인 학생 동아리까지 참여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19. 10. 31. ~ 11. 25.(4주간) 급훈을 공모한 결과 초등 학급부터 고등 학급까지, 전국 각지의 학급에서 고르게 참여하였고 특히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높은 평화정신을 알리는 한국 교민학생 기자단도 참여하는 등 뜻깊고 의미 있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그 중 Top 7 급훈을 선정하여 '19. 11. 29. ~ 12. 9.(2주간)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최고의 급훈은 국민 댓글 및 좋아요 합산(총 972건) 투표를 통해 선정하였다.

| 그림 2-45 | 2019 급훈공모전 TOP 7 급훈



6. 부처 협업 홍보

대변인실 사무관 이상우

가. 국가보훈처 협업 홍보

2019년은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보훈'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한 해였다. 법무부는 그 동안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해 왔는데, 2019년에는 3.1절을 맞아 '국적 수여'에 대한 의미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협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법무부는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적증서 수여식'과 '독립유공자 후손 서울 문화관광' 영상 2편을 제작하였고, 독립유공자 주요 인물인 허위, 최재형, 박찬익, 이여송의 업적을 웹툰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2019년에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맞히기'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여 927명이 참여하였으며, 제작된 콘텐츠는 법무부 공식 SNS 채널과 국가보훈처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였다.

| 그림 2-46 | 국가보훈처 협업 영상 콘텐츠



나. 소방청, 정부법무공단 협업 홍보

2019. 4월 동해안 산불로 인하여 소방 공무원과 그 처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소방 공무원은 화재를 진압하면서 어쩔 수 없는 기물 손괴를 하게 되어 이에 대한 민사 재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과 함께 '소방공무원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2. 21. 체결하였다. '소방공무원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홍보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공동으로 카드뉴스, 웹툰, 동영상을 제작하였고, 제작된 콘텐츠는 법무부 공식 SNS 채널과 소방청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였다.

| 그림 2-47 | 소방청 협업 콘텐츠



다. 금융위원회 협업 홍보

2019. 9. 16.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합동 캠페인을 통해 국민에게 전자증권제도의 시행 일정을 명확하게 알리고,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하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자본시장이 e만큼 좋아집니다.'를 핵심 메시지로 한 광고 캠페인 3편, 동영상 1편, 카드뉴스 1편을 제작하고, 포털사이트 배너 및 브랜드 검색 광고를 통해 메시지 노출수 4억 8천만회, 클릭수 100만회를 달성하였다. 또한 7월~9월 기간 동안 관련 언론보도 2,507건, 블로그, 카페 공유 5,259건(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국민적 관심을 얻었다.

| 그림 2-48 | 금융위원회 협업 콘텐츠



7. 캠페인 및 광고

대변인실 사무관 이상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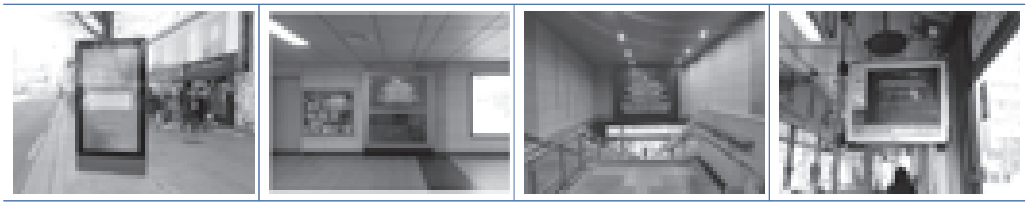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19. 12. 11. ~ '20. 6. 30.) 실시와 관련하여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기획홍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변인실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다발 국가와 외국인 밀집지역(67개)를 파악하여 타깃팅 홍보를 진행하였다. 해외 체류 시 자국 언어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점을 활용하여 불법체류 다발 국가인 태국·중국·베트남·필리핀·러시아 등 5개 언어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한글을 병기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 중 서울 중부·남부·인천권·수원권역에 버스 승차대 광고 29기 58면, 택시 승차대 광고 22기 44면을 운영하고, 외국인집중유동 지역인 이태원에 미디어블록 12기를 운영하였다. 또한 경기버스(G버스) 8,000대 버스 내부 모니터 16,000기에 광고 영상을 송출하였다. ('19. 12. 11. ~ '20. 1. 11.)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사용 언어, 국내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 국가, 관심사 등을 타깃팅 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를 알리기도 하였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를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연계한 광고로 제작하여 서울 및 경기 버스 50대에 외부광고를 진행하였다 ('19. 12. 1. ~ '20. 1. 1.).

| 그림 2-49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광고



| 그림 2-50 | 범죄피해자지원제도 버스외부 광고





8. 국민 참여 홍보

대변인실 사무관 이상우

가. 범정부 정책기자단 및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 현장 취재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정책기자단과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의 법무 현장 취재를 4회 진행하였고, 그 결과 총 12건의 홍보 콘텐츠를 생산하여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였다.

먼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19. 8. 1.)하여 일명, 조두순법 시행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1:1 전담보호관찰제도'와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위치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전자감독제도-광역 CCTV연계사업'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소개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시행으로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 보호관찰대상자들의 관리 상태를 취재하고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의 재범 방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남부준법지원센터를 방문('19. 8. 14) 하였다.

또한 교정시설 과밀화 상태를 알아보고, 수용자가 생산한 교정작품과 교도작업이 주는 긍정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안양교도소를 방문 취재('19. 9. 26.)하였으며, 인천공항 자동출입국 심사와 통합국경관리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취재('19. 10. 2.)하였다.

나. CJ E&M 오펜작가의 법무정책 현장 참관

CJ E&M에서 양성하는 오펜(O'pen) 신인작가 30명에게 법무현장 참관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콘텐츠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 법무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오펜(O'pen)작가는 CJ E&M에서 스토리텔러를 발굴하고 작가로 데뷔하는 과정을 멘토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선정된 신인작가들로 법무부는 2017년부터 매년 1회, 오펜 작가들의 법무정책현장 참관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에도 제3기 오펜 작가들을 대상으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및 시설투어를 진행하였고, 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구치소 및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및 시설투어를 실시('19. 7. 4.) 하였다.

9. 홍보 교육

대변인실 서기관 송세시리아

법무부 직원들의 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총 3회에 걸친 홍보 교육을 진행하였다. 1차(3. 21.)는 '보도자료 및 기고 작성법과 최신 홍보 트렌드와 공공기관의 홍보전략 그리고 소셜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2차(5. 16.)는 '인터뷰 능력강화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3차(6. 27.)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였다.

10. 법무부 정책홍보전략 실무협의회

대변인실 서기관 송세시리아

법무부 정책 홍보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 '정책홍보전략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차관주재로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정책기획단장, 장관정책보좌관, 실·국·본부 주무과장(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에는 총 43회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논의를 통해 △헌재 낙태죄 위헌 선고 △민영소년원 설치 등 위기관리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고,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관찰제도 △청소년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마을변호사 제도 등 주요 법무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였다.

제3절 법무업무

1.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법제 정비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임성택

가.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주요 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서울의 경우 9억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8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2019. 4. 17. 출범하여 앞서 설치·운영 중이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상한액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출범으로 상가임차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주택임대차 법제 개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에 대비할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기기간을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만료 2개월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임차인을 내실 있게 보호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이 단축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분쟁조정 신청 시 바로 개시되도록 개정이 되면,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인권과 민생을 위한 법제 정비 및 법령자문 기능 강화

법무심의관실 행정사무관 고민지

가. 추진 배경

법무부는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인권과 민생 중심의 지속적인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정부 내 법령자문 기능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다.

나. 주요내용

1)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제 정비

등기정보자료의 자유로운 제공과 등기절차 정비를 통해 국민 재산권 행사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9. 8. 13.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9. 11. 27.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0. 1. 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 주무관청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어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상사중재기관 지정권자에 법무부장관을 포함시키는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9. 11. 27.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0. 1. 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회계감사제도 도입, 리모델링 요건 완화, 구분점포 성립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9. 7. 16.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0. 1. 9.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위원회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민법은 국민의 재산관계, 친족관계 등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임에도 1958년 제정 당시의 한자, 일본식 표현 등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한글화 하고 일본식 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9. 5. ~ 2019. 11월까지 총칙,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율하여 2019. 12. 24. 재입안보고 하였고,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도모를 위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2018년에 이어 7차, 8차 T/F를 진행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 11. 5.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피후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격조항을 일괄 삭제하여 정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직업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2018. 12. 18. 시행)으로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신설되면서, 결손처분사유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결손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결손처분 시 체납자의 실종선고 사실 또는 재산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및 결손처분 취소 시 당사자에 대한 통지 절차 조항도 신설함으로써 명확한 결손처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그 외에도,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2019. 3. 5.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및 임금 등의 범위를 185만 원으로 상향하고, 2019. 5. 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소송촉진을 위해 부과되는 추가적인 법정이율을 연 12%로 인하하였으며, 2019. 5. 21. 법률체계상 모순저촉 방지를 위해 위임 근거를 상실한 대통령령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7항의 이율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한편 2019. 6. 5. 「법무자문위원회규정」 및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을 근거로 법무부 관련 법령의 개선과 운영에 관하여 자문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법무자문위원회에 엄동섭 교수 위원장으로 총 1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법무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였다.

2) 포용적 가족문화 및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법무행정 지원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인 가족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하여, 출생·가족·양육 관련 법무부 소관 법제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 4. 30.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 11월까지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 민법 제915조 징계권 규정의 개선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다.

3) 법령자문 기능 강화

법무부는 민생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사건 및 법률 문제에 대한 분석 및 해외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바, 「프랑스 민법전 번역」, 「일괄담보 도입에 따른 집행절차 연구」, 「유류분의 정당성, 기능 및 개정 방향 연구」,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운영 매뉴얼 작성 방향 모색」, 「캐나다 동산담보 관련 법제 번역 및 해설」, 「집합건물 표준규약 의무화 등 규약 관련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 검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압류금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 「공개된 시장에서의 동산 및 채권 매각방법 등에 관한 연구」,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상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를 연구용역 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2019년도에 7,322건의 법령자문 및 204건의 유권해석 업무를 처리하여 정부 내 인권 옹호 및 법무에 관한 사무 기능을 수행하였다.

| 표 2-18 | 연도별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368	4,083	3,754	5,106	4,626	4,996	5,277	6,210	6,719	7,526
법령자문	3,365	4,072	3,740	5,096	4,458	4,811	5,089	6,039	6,541	7,322
유권해석	3	11	14	10	168	185	188	171	178	204

4) 법·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법무부는 2019. 4월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의 법령안 공모하는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12개 법학전문대학원, 5개 대학원, 33개 대학교 소속의 총 351명, 116팀의 대학생·대학원생·법학전문대학원생이 예선에 참가하여 학생들에게 모의 입법의 경험을 제공하고 각종 분야의 법령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제정비 및 법률 자문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고 앞으로도 민사법령에 대한 법제 정비·제도 개선 및 정부의 법령 제·개정 작업과 법령 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편안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3.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법무과 서기관 윤성훈

가. 추진배경

형사절차상 체포 직후 피의자 신문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결정되므로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국선변호 제도 아래에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를 제공받을 수 있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입법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최근까지도 '11년 양천경찰서 고문사건(강·절도 피의자 22명에 대한 소위 '날개꺾기 고문'), '17~'18년 광주지방경찰청 불법체포사건(마약던지기 수법 알고도 불법체포) 등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의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화하고,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로 인한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변호제도를 수사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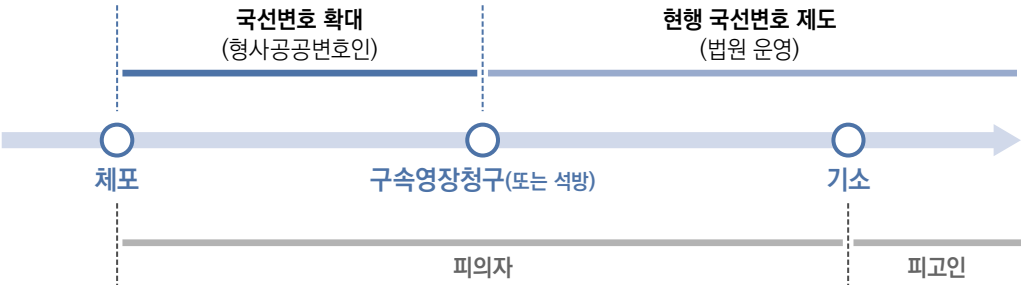
법무부는 기존 국선변호 대상이 되는 피의자 외에 체포된 피의자에게까지 국선변호 제도를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 및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단체와 수시 협의를 거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안을 마련하였고, 2019. 11월 해당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①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중죄 피의자를 국선변호 대상으로 하고, ②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대상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체포 사실을 통지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에는,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내에 국선변호인 명부 작성 및 평가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피의자 국선변호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② 위원회 구성에 법원, 법무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참여하되 위원장은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③ 중죄 피의자 중 경제적 곤란을 소명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국선변호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 그림 2-51 | 국선변호제도 체계도



법안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 **(대상범위)** 체포된 ①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②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중죄 피의자
- **(선정 절차)** 수사기관은 대상자 체포 시 법률구조공단에 통지, 공단이 국선변호인 선정
- **(활동기한)** 국선변호인은 ① 피의자 석방, ② 사선변호인 선임, ③ 구속영장·체포적부심사 청구 시까지 활동

【법률구조법】
- **(운영방식)** ① 법률구조공단에 국선변호인 명부작성 및 평가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설치, ② 위원은 법원·법무부·변협이 각 3인씩 추천한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임명
- **(비용부담)** 중죄피의자 중 경제적 곤란 소명하지 못한 자는 스스로 비용 부담
- **(기 타)** 피의자 국선변호 사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① 위원의 임기 및 연임, ② 위원의 직무상 독립, ③ 사무국 업무담당자의 겸직금지 등 규정

다. 기대효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이 사건에 관여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의자를 조력함으로써,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어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화 될 것이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은 수사 기관이 고문 등 위법한 수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수사 절차상 위법 논란이 사전에 예방되고,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4.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

법무과 행정사무관 설기석

가. 개요

법무부는 전국의 변호사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각 편중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변촌(無辯村) 등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의 법률안전망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3. 6월 대한변호사협회·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을변호사 제도를 출범시켰다.

법무부는 2014년부터 마을변호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모범 마을변호사·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해 왔고, 2019. 12월 마을변호사 6주년을 맞이하여 모범 마을변호사·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 등 10명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 그림 2-52 |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현장사진



나. 제도의 의의

1)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읍·면·동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틈새 없는 법률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 표 2-19 |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성과

구 분	도입 전의 상황(As-is)	마을변호사 도입 후 변화(To-be)
상담방법	직접 변호사 사무실 방문	전화, 이메일 등 원격 진행
비용	고비용, 감당 어려움	무료(변호사의 재능 기부)
거리감	물리적 거리감(법원 소재지 근처) 심리적 거리감(어려운 존재)	물리적 거리 해소(원격 진행) 심리적 거리 해소(친근함)

2) 변호사의 공익활동 장려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공익활동에 종사할 의무가 있으나 실제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의 순수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운영되므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

3) 민·관의 모범적 협력 모델

마을변호사 제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변호사 재능기부 활동으로 정착했고 그 결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정부혁신 행정서비스 30선'에 선정되고(2017년), 매경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2017년, 2018년)하는 등 민·관의 모범 협력모델 사례로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4)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2017. 11월 포항지진 피해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와 연계하여 법률지원단 활동을 했으며, 2018. 5월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가 협력하여 이민자 가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9. 4월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지원단 활동에 참여하였고, 2019. 8월에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전국 14개의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여 정기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다. 마을변호사 배정·상담 현황

2013. 6월 250개 읍·면에서 415명의 제1기 마을변호사로 제도를 출범하였으나, 배정지역 및 마을변호사 인원을 꾸준히 확대해 온 결과 2019. 12월 기준 전국 1,442개 읍·면·동에서 1,444명의 제4기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지난 1년 간 무변촌(無辯村)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9. 12월 전국의 모든 무변촌(376개 읍·면·동)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여 "무변촌 제로(ZERO)"를 달성했다.

| 표 2-20 |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

구 분	제1기 ('13. 6월~'14. 6월)	제2기 ('14. 6월~'16. 6월)	제3기 ('16. 6월~'18. 6월)	제4기 ('18. 6월~)
배정지역수	250개 읍·면	1,412개 읍·면	1,413개 읍·면	1,442개 읍·면·동
마을 변호사수	415명	1,455명	1,519명	1,444명

※ 마을변호사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읍·면·동은 약 2.21개로 실제 마을변호사 배정건수는 3,196건임

| 표 2-21 |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현황

년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상담건수	232	311	811	2,060	1,125	1,323	1,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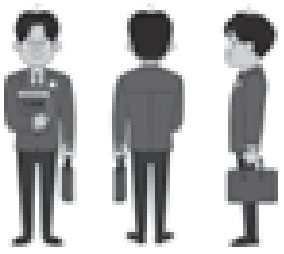
제도 출범이후 현재까지 집계된 누적 상담건수는 7,469건에 달하며, 마을변호사가 상담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상담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

1) 마을변호사 대표 캐릭터 등 개발

법무부는 2018년 '마우리 변호사' 캐릭터를 개발한 것에 이어 2019년 다양한 컨텐츠 제작을 위해 여성캐릭터인 '도우리 변호사' 캐릭터를 추가 개발하였다.

| 그림 2-53 | '마을변호사 대표캐릭터' 마우리 변호사, 도우리 변호사



마우리 변호사



도우리 변호사

2) 다양한 홍보컨텐츠 제작·배포 및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캐릭터 등을 활용한 포스터, 우수상담사례집, 동영상 등 다양한 홍보컨텐츠를 제작했고, 이를 전국의 마을변호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인지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블로그(blog.naver.com/mabyun),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mojmabyun)를 운영함으로써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3) 2019년 성과

전국의 모든 무변촌(376개 읍·면·동)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하여 '무변촌 제로(ZERO)'를 달성하는 등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9년 범정부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중 취약시장의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부분 '우수등급' 평가를 받았고, 마을변호사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한 결과 법무부 주요정책 홍보 우수사례 공모전(2019년)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19년 법무부 주요정책 자체평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가 '매우우수' 과제로 선정되었다.

| 그림 2-54 | 마을변호사 홍보컨텐츠



홍보포스터



우수상담사례집



홍보동영상

5.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김수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이하 ISDS)'는 양자투자협정(BIT)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국제중재제기 합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ISDS는 국가마다 다른 법 체제와 정책 상황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투자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하는 자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2018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3,317개 투자협정 중 대부분이 ISDS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BIT 88건, FTA 15건 중 독일, 튀니지, 프랑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BIT를 제외한 모든 BIT와 FTA에 ISDS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ISDS 중재 제기 당시부터 ISDS 사건에 적극 대응하여 왔다. 론스타는 2012. 11. 21.「한·벨기에 BIT」 위반을 근거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S 중재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관계부처 T/F'에 참여함은 물론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분쟁대응단'(단장 : 법무실장)을 통하여 실제 소송업무의 수행,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자료수집 및 정리, 대응논리 개발, 관계 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진행하였다.[6] 론스타 사건은 2016년 변론을 종결하고 현재 판정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판정 선고와 관련된 상황을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에는「한·미 FTA」 위반을 근거로 3건[7],「한·EFTA FTA 부속투자협정」 위반을 근거로 1건[8]의 ISDS 중재가 제기되었다. 법무부는 위 각 사건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청구의 근거가 된 처분을 담당하였던 처분청 및 기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분쟁대응단(단장 : 법무실장)을 구축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투자자 ISDS 사건의 경우, 본안 전 항변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 착안하여 2019. 2. 26. 한-미 FTA에 따른 신속절차를 신청하였고 2019. 9. 27. 전부승소 판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다.

6) 관계부처 TF(29회), 분쟁대응단(27회) 등 총 65회의 대응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반박 준비서면 2회(총 1,464면), 전문가증인 진술서 17회, 증인진술서 38회, 증거 593건 제출)
7) 2018. 7. 12. 엘리엇 ISDS 중재 제기, 2018. 7. 12. 미국투자자 ISDS 중재 제기, 2018. 9, 13, 메이슨 ISDS 중재 제기(각 UNCITRAL 중재규칙 선택)
8) 2018. 10. 11. 쉰들러 ISDS 중재 제기(UNCITRAL 중재규칙 선택)

한편 법무부는 증가하는 사건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거규정 입안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9. 4. 5.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하여 대응체계 개선을 달성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재 사건과 관련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전개하여 왔다. 향후 론스타 사건의 판정 선고와 관련하여 후속 조치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신규 제기된 중재사건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나. 지자체·해외진출 우리기업 국제투자 분쟁 예방과 해결 적극 지원

국제법무과 검사 신동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주요 ISDS 사건들이 접수 및 진행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ISDS 제기 및 그 결과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들이 대규모 해외투자를 다수 유치함에 따라 사업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외국인 투자자의 ISDS 제기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ISDS 예방을 위해 투자유치 MOU 작성단계부터 중앙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기업·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ISDS 대응방안 교육,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투자유치 단계에서부터 분쟁을 예방하려 노력하고 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연계하여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찾아가 ISDS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현지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한 법적 지원활동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2009. 10월부터 2019. 12월까지 총 111회에 걸쳐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및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ISDS 제도 소개, 발생 경위 및 사례 검토, 예방 및 대응 전략을 교육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2019. 12월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담당 부처 실무자들의 ISDS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ISDS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9. 8월 ISDS 예방을 위해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개정판을 발간하고 이를 배포하여 ISDS에 대한 이해도 진작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 법무부는 정부부처·공기업·지자체·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ISDS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ISDS 교육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관계자, 공기업, 해외진출기업 등의 ISDS에 대한 이해도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하여 투자분쟁사례 관련 서적의 개정판을 출간할 예정에 있으며 해외투자 유치 관련 전문가(교수, 변호사 등)를 섭외하여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ISD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 공공기관의 ISDS 예방 및 대응역량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55 | 국제투자분쟁 관련 안내 책자



ISDS 소개 책자

6. 국제법무 협력 및 교류

가. 법무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법률지원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조규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사법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회의와 자유무역협정(FTA), 양자투자협정(BIT) 등 통상분야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 참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9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회의에 12회 참가하고, 사법통일국제회의(UNIDROIT) 2회, 공정거래네트워크(ICN) 1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1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회의에 1회, 참석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통일규범과 국내규범의 조화 및 발전을 도모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법률자문 요청에 대응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법률검토 회의에 2회 참가하여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고, 2019년도에 총 14건의 법률자문을 시행하는 등 타부처에 대한 법률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 표 2-22 | 2019년도 법률자문 현황(16회)

연번	월일	제 목	요청기관	담당자
1	1. 21.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법무부	김상현 검사
2	1. 22.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분쟁해결제도)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외교부	박주현 사무관
3	2. 20.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국제투자분쟁)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외교부	신동환 검사
4	3. 18.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전자상거래법)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외교부	김상현 검사
5	3. 19.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도산법)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외교부	이언호 사무관
6	3. 20.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중소기업제도)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외교부	김상현 검사
7	4. 24.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담보거래법)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외교부	김상현 검사
8	6. 13.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복수국적에 대한 법령 검토의견	법무부	김상현 검사
9	7. 4.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검토의견	고용노동부	임세영 전문위원
10	8. 30.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분쟁해결제도)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외교부	김상현 검사
11	9. 30.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중소기업제도)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외교부	김상현 검사
12	10. 29.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법률검토 의견	산업부	최초 사무관
13	11. 12.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전자상거래)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외교부	김상현 검사
14	11. 12.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담보거래법)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외교부	김상현 검사
15	11. 18.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도산법) 회의 의제 사전 검토의견	외교부	조규현 사무관
16	12. 3.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법률검토 의견	산업부	김아주 전문위원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도 법무부는 통상, 국제거래 등 다양한 국제법무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요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단으로 참가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고, 관계부처의 법률적 자문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FTA와 BIT 체결 및 기체결 조약에 기초한 분쟁 상황의 예방 및 대응 등 국제공법적 쟁점이 점차 강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통상 분야에 대한 전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적시에 자문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

나. 국제법무교류 및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국제법무과 검사 김상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가 간 협력 및 국익 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외국 유력 법조인들과의 교류 및 법무협력협정, 상호 자료교환협정의 체결과 같은 실무적 교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나아가 주요 개발도상국에 대한민국의 선진 법률체계를 소개하여 입법 작업을 지원하는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가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킴은 물론,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시 유리한 통상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장관은 2019. 1. 14. ~ 1. 19.간 신북방정책 대상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우즈베키스탄 검찰총장 및 법무부 장관, 카자흐스탄 법무부 장관과 법무협력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검찰청과 법무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대통령님 중앙아시아 순방계기에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무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카자흐스탄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 검사 초청연수 및 법무부 실무자 초청 단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2019. 7월 국무총리 카타르 순방 계기에 카타르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9. 9월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법무부장관 방한 시 홍콩 법무부와 법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제 법무 교류를 확대하였다.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UNCITRAL 아태사무소, 대한상사중재원 등과 협업하여 2012년부터 라오스 중재법 정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6. 12월 및 2017. 12월에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중재법 정비 지원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2018. 9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UNCITRAL 아시아 사무소와 공동으로 중재 및 조정 법제정비지원 작업반 회의를 각 개최하는 등 라오스의 중재법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2019. 5. 2.에는 라오스 비엔티안 현지 세미나를 통해 라오스 집행법제 개선 및 라오스 경제분쟁해결위원회 현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라오스 측은 UNCITRAL 모델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운영 방식 등을 참고하여 한국의 선진적인 중재·조정법제를 도입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2019. 9. 26. ~ 9. 27. 에는 미얀마 법무부 소속 검사들을 초청하여 미얀마 지식재산권 위반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였다. 또한 WIPO-법무부 공동 주관 워크숍 통해 미얀마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검사들이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각국 현황 및 실무 노하우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자 하였다.

| 그림 2-56 | 법무협력사업 및 법제정비지원사업



우즈베키스탄 초청 교육 프로그램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회담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법무교류와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 사업은 대상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 편의를 더하고 주요 개도국 법제의 현대화로 현지인들의 인권 및 법률 복지 향상을 꾀함으로써 보편적인 인류애와 국제공동체 정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 우수성 등을 홍보하고 지원 사업 대상 국가 및 법제 분야(법률구조법, 외국인투자법, 중재법, 지식재산권법 등)를 확대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주요 수원국의 법제 개선을 통하여 신남방·신북방정책 등으로 표현되는 정부의 외교적 방향과 연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이익 보호와 국격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역할 수행

국제법무과 검사 김상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가입에 발맞춰(2012. 2월 협약 가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부적으로 법무부장관이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중앙당국으로 선임되었고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절차와 재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이행법률 제정이 추진되었다. 동 법 부칙 제1조는 협약 가입일로부터 법률이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2. 12월 외교통상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내에서는 2013. 3. 1.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행 법률도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기존 가입국이 신규 가입국의 가입을 수락해야 양국 간 발효되는데, 2020. 1월 현재 기존 가입국 96개국 중 58개국이 우리나라의 가입을 수락하였고, 지속적으로 수락국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2013년부터 누적된 지원 신청 접수 건수는 2020. 1월 현재 총 52건을 기록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일방 배우자에 의한 아동의 국외 무단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가 현재 부재한 상태이다. 특히, 우리 국민과 결혼하는 사람이 많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과 같은 나라의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우리나라와 상호 수락국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동 협약에 따른 지원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부부 일방의 의도만으로 아동을 국외로 무단 탈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유사한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여 아동의 국외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심판절차 도입을 연구하여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이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작성, 2019. 10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7. 국제규범 형성과정 참여

국제법무과 행정사무관 조규현

가. 추진배경 및 추진 경과

국제교류 증대와 민·상사 규범의 세계적 통합 양상에 따라 각종 규범의 통일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이러한 현상은 중재, 도산, 운송, 담보,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제 신인도 제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내법제 선진화를 위해서 국제규범의 도입 및 수용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민·상사 통일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안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논의결과를 분석하여 국내에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등 사법 분야의 국제통일규범 성안 회의에 활발하게 참석하고 있는 바, 2019년에 총 12회의 UNCITRAL 본회의 및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법제의 관점과 국제적 표준규범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진적 글로벌 통일규범 마련 작업에 일조하였고, HCCH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협약 특별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민사 또는 상사 사건의 외국판결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 최종 성안, 채택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02년부터 UNCITRAL 6개 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대표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등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 세계 최초로 UNCITRAL의 지역사무소를 인천에 유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아·태지역에서 국제거래규범의 연구·전파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UNCITRAL RCAP과 공동으로 2019. 12. 12. ~ 13. 이틀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ISDS)의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 동 회의에서 7개국 정부대표단 및 국제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UNCITRAL 제3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논의 중인 투자법원, 항소기구 설립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ISDS 제도 개선 논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적 ISDS 제도 개선 논의를 선도하는 수준 높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2019. 9. 17. ~ 21.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대한상사중재원. 서울국제중재센터,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 관련 국제회의(SAF, Seoul ADR Festival)를 개최하였는바, 위 회의에는 안나 주뱅브레 UNCITRAL 사무총장, 알렉시 무흐 ICC 국제중재재판소장 등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여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였다. 특히 법무부는 SAF 기간 중 2019. 11. 20. 제8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한국의 국제중재 현황에 대하여 공유하고 국제적 석학·실무가들과 국제중재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국제적 회의의 주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국내 법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2002. 2월 로펌변호사, 교수, 판·검사 등 각 계의 전문가를 망라한 '국제거래법 연구단'을 발족하여 여러 분과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위 연구단은 이미 제정된 국제규범의 도입을 위한 연구뿐 아니라 새로운 규범의 제정을 위한 각종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제규범의 제정단계에서부터 우리의 국익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도 법무부는 대한민국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국제거래규범의 조화 및 통일화 과정에 국내 선진 법체계의 입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법통일국제회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국제통일규범 마련 회의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 폭을 넓혀갈 예정이다.

8. 국제법무 역량 강화

가. 법률시장 개방 법제화 및 관리·감독제도 구축

국제법무과 검사 김상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개정안은 2016. 3. 2. 공포된 이후 2016. 7. 1. EU를 대상으로 최초로 적용되었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통하여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외국법 사무 및 일부 국내법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7. 3. 15. 미국, 2018. 12. 20. 베트남, 2019. 12. 12. 호주를 대상으로도 3단계 개방이 이루어졌다.

2019. 12월 현재 자격승인·설립인가를 신청한 외국변호사는 194명이고, 외국로펌은 36개로, 그 중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법자문사는 187명(미국법자문사 139명, 영국법자문사 31명, 프랑스법자문사 1명, 호주법자문사 9명, 중국법자문사 5명, 뉴질랜드법자문사 1명, 싱가포르법자문사 1명),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로펌은 33개(미국로펌 24개, 영국 로펌 6개, 중국 로펌 2개, 호주 로펌 1개)이다. 2016 ~ 17년에 걸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총 27곳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개별 사무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2019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각국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법제를 연구하였으며, 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를 방문하여 법률시장 개방 정책 및 협의 과정 등을 조사하였다. 이로써 추후 법률시장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우리나라의 추세에 맞추어 각국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 법률시장 개방 법제 관련 세계 동향을 꾸준히 살피어 우리나라의 법제를 개선하고, 심사업무의 처리 속도 및 정확성을 높여 더욱 완성된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이미 승인된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하여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등록말소 규정 및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로써 안정적인 법률시장 개방 제도를 구축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률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법무과 검사 김상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 5월과 2015. 4월에는 중국 상해에서, 2012. 12월과 2014. 4월에는 홍콩에서, 2016. 5월에는 UAE에서 각각 국내 로펌 합동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청년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을 해외 로펌, 국내 로펌 해외사무소 및 국제기구 등에 인턴으로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하반기에 14명, 2013년 46명, 2014년에 84명, 2015년에 47명, 2016년에 46명, 2017년에 38명, 2018년 38명, 2019년 45명을 선발·파견함으로써 국내 신규 법조인들이 해외에서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2014. 9월부터는 청년법조인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O.K. Academy)'를 개설하여 국제법무에 정통한 변호사들을 강사진으로 섭외해 청년법조인들을 교육하고 있다. O.K. 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하반기 해외 로펌, 국내 로펌·해외사무소 등 여러 기관에 장기(3개월 ~ 1년) 인턴으로 파견하여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2015년 7명, 2016년 5명, 2017년 3명, 2018년 2명, 2019년 1명을 선발 파견하였다. 2012년 하반기부터 계속 중인 단기(2 ~ 4주) 인턴 과정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O.K. 아카데미 운영 및 인턴 기회 제공을 함으로써 청년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의 국제법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국제 업무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이는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청년법조인의 취업기반 마련의 토대가 되어 왔다. 앞으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법조인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O.K. 아카데미 수강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강의 과목과 강사진 구성 등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턴 파견기관 확보 및 파견 인턴 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개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국제법무과 검사 신동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면서 국제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해짐에 따라, 법무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운영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계약서 검토, 현지 법령 해석 등의 무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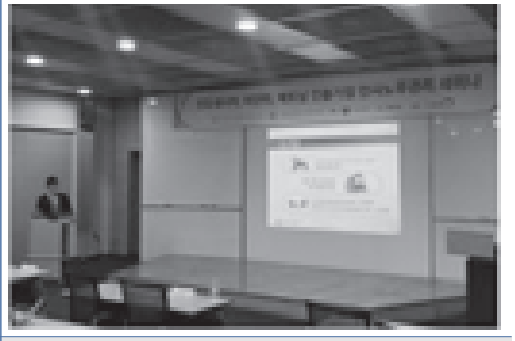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법률자문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64건으로 시작하여 2019년 339건을 기록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중소기업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 9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2019년 수출전문위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고, 2019. 5월, 10월, 12월에는 한국무역협회와 「스타트업 브랜치 법률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 7월에는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과 공동으로 '필리핀 마닐라 현지진출기업 법률설명회', 2019. 6월에는 KOTRA와 공동으로 '베트남 하노이 현지진출기업 법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진출한 해외 현지에서 국제투자규범과 현지 법령정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준법경영, 지식재산권 등 특정 현안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교육을 제공 하는 '찾아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 설명회'(2019년 국내 9회, 해외 2회)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 그림 2-57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설명회



필리핀 마닐라 현지 법률설명회



법무부-고용노동부 인사, 노무, 법무설명회

한편, 2010년부터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제투자·비즈니스 가이드』와 『알기 쉬운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 등 총 24종을 발간·배포하였으며, 2018년에는 『법률자문 50선 사례집』,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법률가이드-종합편』 2종을 발간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자문 수요의 폭증에도 기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추가 위촉, 관련 예산 증액 등 제반 행정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분야의 다각화를 통해 진출 기업의 다양한 법적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스타트업 등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혁신성장을 장려하는 한편,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준법경영' 지원을 위해 ① 실무상 쉽게 참조할 수 있는 『국가별·쟁점별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북』(가칭) 발간을 추진하고, ② 국내·외 법률설명회 내 '해외투자에 따른 준법경영 길라잡이' 세션 삽입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 중소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 전문학술지 및 연구자료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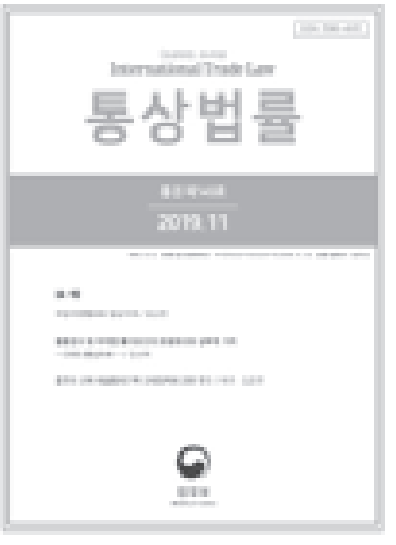
국제법무과 검사 김상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1995. 2. 1. 국제통상 전문학술지인 『통상법률』을 창간하여 연 4회 발간해오고 있는 바, 매 권호마다 장관급 고위인사의 시론 및 국제통상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1995년 1호부터 2011년 100호까지 게재되었던 논문의 총 목록을 정리한 통권 제100호를 거쳐 2019. 12월 현재 통권 제145호에 이르기까지, 『통상법률』은 국제 중재 및 각국의 통상정책, 국제 환경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다룸으로써 한국의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 관련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2010. 7. 13. 영문 법률 계간지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Business and Investment(한국법령의 최신 동향 :

| 그림 2-58 | 통상법률 통권 제145호



기업과 투자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를 창간한 이래로 2019년 통권 32호까지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오고 있다. 본 저널은 '한국의 법동향', '법무부 정책소개', '외국투자자를 위한 출입국 정보' 코너를 통해 기업·투자 활동과 관련된 법령 재·개정 사항, 판례 동향, 정부 정책과 외국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출입국 정보를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투자관련 법규, 정책을 해외에 알리는 영문 정기간행물로서 외국투자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자체 학술지 및 영문 저널의 발간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준법경영·ISDS 예방 등 중소기업 법률지원 안내서(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발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제분쟁 예방 및 해결에 실효성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행하여 실무자 및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마. '국제법무자문위원회' 운영

국제법무과 검사 김상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민·관의 역량을 모아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안착과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하여 2011. 5월 '국제법무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시대의 도래라는 대내·외적 변화에 직면하여, '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법률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법률가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며, 법률시장 개방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법무법인 변호사, 로스쿨 교수, 경제단체, 사내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등 법률서비스 산업 유관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본 자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바, 2020. 1월 현재 총 1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지금까지 국제법무자문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자문을 함으로써 다양한 의견 수렴창구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는 법무자문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어 왔다. 앞으로 ISDS, 법률시장 개방, ODA 등 급박하고 다변화하는 국제법무 현안을 적시에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국제법무

주요 현안에 대응하는 자문위원 구성, 충실한 위원회 준비, 자문 내용의 업무 반영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9. 국가송무행정의 효율적 수행

국가송무과 행정사무관 윤경식

가. 개요

2019년 국가소송은 전년 대비 접수건수는 4.3% 증가, 패소율은 0.4%p 증가하였고, 행정소송은 전년 대비하여 접수건수는 1.7% 증가, 패소율은 0.5%p 증가하였다.

나.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 시행

1) 추진배경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의 관행적 상소를 방지함으로써 소송 지연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과거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인권침해 관련 배상소송의 경우 무리한 상소를 자제하고 소송의 조기종결을 도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을 통한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을 시행하였다.

2)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2017. 11월부터 전국 고등검찰청에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2019. 12월 현재까지 총 30차례 상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사건 51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였고,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였다.

3)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 시행

2018. 1월부터 재심 무죄 확정된 과거사 국가배상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전보를 위해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의 시행을 위해서 과거사 사건의 패소원인 및 위자료 금액을 사건 유형별로 분석하고, 배상책임의 성부 및 적정

위자료 금액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일선에 배포하였다. 또한 자체 기준에 따라 무리한 상소를 자제하고, 화해·조정·청구인낙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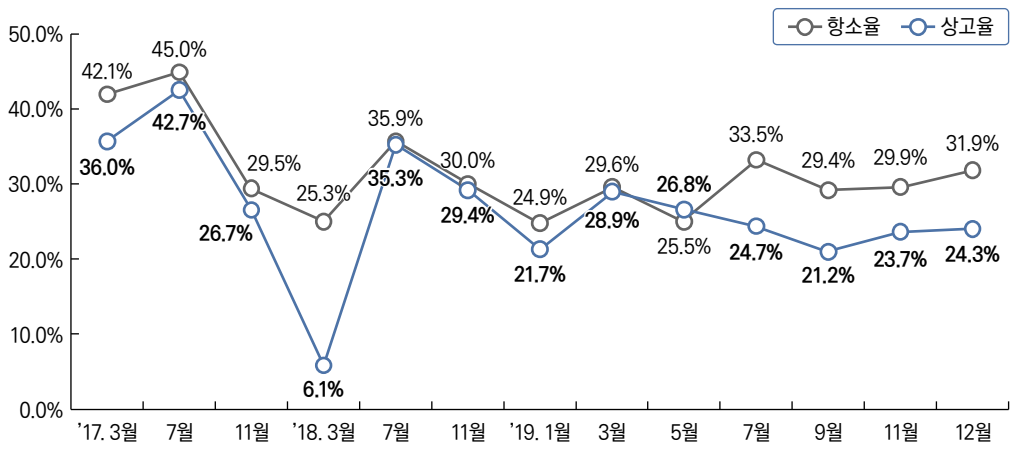
4) 상소기준 정비

2018. 1월 최근 3년간 주요 패소사례에 대한 법리를 분석한 소책자를 발간, 소송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배포 및 교육하였으며, 또한 최근 5년간 과거사 국가배상 판례의 위자료 금액 분석을 통해 유형별 적정 위자료 기준을 수립하여 배포하였다. 한편 주요 패소사례 및 위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소권 적정행사 업무처리 지침」(상소기준)을 개정하였다.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각 소송수행청 담당자들에게 '국가·행정소송 주요 패소사례 및 공통법리' 교육을 연 14회 실시하고 있다.

5) 추진 성과

절제된 상소권 행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면서 자연스레 상소율이 감소하였고, 현재까지 상소율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 그림 2-59 | 상소율 변화 추이



한편,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 시행 후 현재까지 구로농지 사건, 민청학련 사건,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 등 61건에 대하여 상소 포기·화해권고동의 등을 통해 소송의 조기 종결을 이끌어 내었다.

6) 향후 계획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일선청과의 피드백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며, 「상소권의 적정행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상소권 행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송무 교육 출강, 송무지도점검, 소송총괄관 회의 및 송무 담당 법무관 워크숍 등 일선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소권 적정 행사 관련 선순환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합리적 상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다. 소송수행 역량 제고

1) 법률전문가에 의한 국가소송 수행 확대

국가의 중요 정책·재정과 직결되는 소송이 증가하고 사건이 고액화·대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국가소송 중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소가 5,000만 원 이상 사건 및 중요사건에 대하여 각 검찰청의 검사·공익법무관이 실질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검사·공익법무관 직접수행 성과지표제'를 시행하여 부당한 국가패소 방지에 기여하였다. 국가소송 직접수행률은 2016년 42%, 2017년 45.5%, 2018년 50.2%, 2019년 33.1%(2019년은 전년 대비 공익법무관이 31% 감소, 소가 5,000만 원 이상 사건은 17% 증가)이다.

2) 송무지도점검 실시

소송업무 수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송무지도점검반을 편성, 의정부지검(6월), 창원지검(6월), 부산고검(6월), 수원고검(9월), 서울고검(12월) 총 5개 검찰청에 대하여 국가소송·행정소송·국가배상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지도 점검을 통하여 각 고·지검이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법무부의 훈령·예규 및 지시·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고 미비점을 찾아내어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수검대상 고·지검은 법무부의 지적 사항을 수용, 개선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소송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제고하였다.

3)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및 전국 소송총괄관 회의 개최

2019. 11. 22. 전국 검찰청 및 소송수행청에 근무하는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80여 명을 대상으로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검찰청 및 수행청 파견 공익법무관들이 실제로 겪은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행정소송, 국가배상신청사건,

헌법재판,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사용 등 송무 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일선 공익법무관들로부터 업무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워크숍을 송무행정 발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었다.

한편, 2019. 11. 28. 전국 중앙행정기관 소송총괄관 40여 명을 대상으로 일선 소송수행청의 송무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소송총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법무부에서는 국가송무의 최신 동향과 과제, 소송대리인 선임 시 유의사항, 국고손실 환수송무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각 기관 소송총괄관들의 질의에 답하였다. 또한 국가송무행정 관련 애로사항·건의사항을 기탄없이 논의하여 법무부와 일선 소송수행청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송무업무유공자 포상

각급 행정청 소송수행 공무원을 격려하고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2011. 5. 3.시행)에 따라 송무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소송수행 유공자 64명, 관리업무 유공자 37명 등 총 101명에 대하여 3,0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5)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2008년 출범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행정·민사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의 수행을 통하여 국가재정 손실방지 및 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에 기여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공단의 2019년 수임사건은 1,952건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고, 평균 승소율은 74.9%로 전년 대비 3.1%p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공단의 전문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라. 송무업무 실적

1) 국가소송

패소율은 국가소송의 검사·공익법무관 등 법률전문가에 의한 직접수행, 전국 송무담당 공익법무관 워크숍, 법무연수원 국가송무과정 소송수행자 교육, 소송총괄관회의, 송무지도점검 등 송무수행 역량강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4%p 증가, 2018년 1.4%p 감소, 2019년 0.4%p 증가하는 등 증감을 반복하였다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12〉와 같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사건 패소율은 2007년 이후 꾸준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하였고, 2019년 패소율은 2018년 대비 0.5%p 증가한 10.3%를 기록하였다.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16〉과 같다.

3) 국가배상 신청사건

국가배상신청사건(「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사건 포함)은 1992년 이후 다소간의 증감을 보이다가 2000. 12. 29. 「국가배상법」 개정(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이후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3.36% 감소한 5,860건을 접수하여 그 중 895건을 인용하고, 2,357건을 기각하는 등 총 3,452건을 처리하였다.

마. 헌법재판 업무

국가송무과 행정사무관 윤경식

1) 개요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의 해석·적용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헌법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내리는 판단으로서 이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확립하여 왔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 상황 속에서 법무부는 헌법소송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뿐만 아니라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사건에서도 의견서 작성 및 검토 등을 담당하며, 권한쟁의 사건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정부를 대표한다. 또한 의견서 작성, 각종 회의 개최 및 참석 등 유관 행정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재판에서 정책과 입법의 정당성 등 정부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왔는바 앞으로도 국가정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그것이 헌법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2) 헌법재판 직접 수행

「형법」 제331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8헌바8) 사건에서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법무부의 자체의견 제출은 총 33건이다.

3)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로서, 2019년에는 총 18건이 처리되어 그 중 합헌 11건, 각하 1건, 위헌 5건, 헌법불합치 1건이 선고되었으며, 그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밀수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조항) 위헌제청(2019. 2. 28. 2016헌가13) : 위헌
- 「형법」제160조(분묘발굴죄) 위헌제청(2019. 2. 28. 2017헌가33) : 합헌
- 「형법」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죄) 위헌제청(2019. 12. 27. 2017헌가18) : 합헌
- 「국민체육진흥법」제20조 제1항 제3호(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부과 조항) 위헌제청(2019. 12. 27. 2017헌가21) : 위헌

4) 헌법소원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19년에는 총 2,496건이 처리되어 그 중 합헌 등 335건, 각하 2,074건, 위헌 등 41건이 선고되었으며, 그 주요사건은 다음과 같다.

- 「형법」 제269조 제1항 등(낙태죄) 위헌소원(2019. 4. 11. 2017헌바127) : 헌법불합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출퇴근 재해 불소급 조항) 위헌소원(2019. 9. 26. 2018헌바218) : 헌법불합치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2019. 12. 27. 2016헌마253) : 각하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사할린 한인 강제징용 사건)위헌확인(2019. 12. 27. 2012헌마939) : 각하

바.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선

국가송무과 검찰사무관 이창균

1) 개요

국가송무는 매년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사 소송, 비행장 소음소송, 세월호 사건 관련 소송, 구로농지 관련 소송 등과 같이 국가재정이나 중요 정책, 국민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2011. 5월 민사소송에 있어 전자재판이 도입되고, 2013. 1월 행정소송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국가송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NDSL)' 구축 및 전 소송수행청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 그림 2-60 |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개요



2) 추진 내용

2011. 12월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소송유관기관과 사건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모범사례·패소사례 및 훈령·예규·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송무 지식포털'을 구축하였으며, 2012. 12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전면 시행하였다.

2013. 1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업체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계약을 체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소송수행자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소송수행 역량을 제고하였고, 2016년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인터넷 망 구축 및 포털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모든 소송수행청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18년에는 소송을 지휘하는 14개 고·지검에 소송수행청이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0종의 소송사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2019. 12월부터 소송수행청이 상기 보고 시 수행청 내부 결재와 상급청 보고서 전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약식결재 기능을 구현하였다. 또한, 2019. 1월부터 법원 연계정보를 매일 가공하여 담당자별로 주요 불변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 기존 소송수행자의 사후 보고에 의존한 소송사무 감독 업무를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관리 및 소송 해태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기대 효과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기반구축 및 행정기관 확대·시행으로 국가송무의 통일적·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송무 관련 법령·판례·선례·논문 등 정보의 축적을 통하여 소송 대응 및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송수행청의 국가송무 수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그에 따른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고도화 사업 등 사용자 편의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시스템의 오류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즉각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활용률을 제고하는 등 대국민 송무 관련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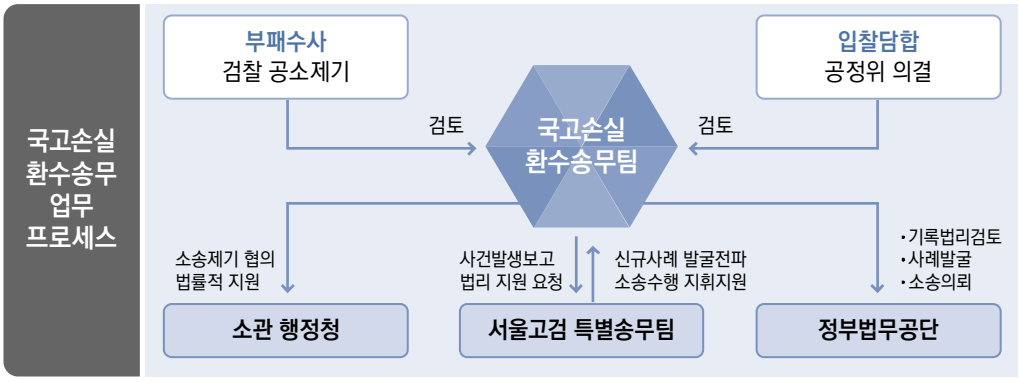
사.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운영

국가송무과 행정사무관 류정민

1) 개요

기존에는 환수소송이 소관청마다 개별적·산발적으로 진행되고, 별도의 소송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국고손실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15. 9. 22. 출범한 법무부 국가송무과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환수소송의 적극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그림 2-61 | 국고손실 환수송무 업무 프로세스



2) 환수 실적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국가상대 입찰담합으로 인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사건 의결서 및 부패비리에 대한 검찰수사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환수가능 사례를 발굴하여 환수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고가 투입된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손실된 국고를 환수할 수 있도록 자문과 지원을 하고 있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2019년 입찰담합 7건, 부패·비리 92건 등에 대해 소관행정청과 협의하여 환수소송을 제기하였고,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3건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하였다.

2019년에는 일본인 명의 토지 환수 사건, 입찰담합 사건, 우체국 보험사기 사건, 국유지 무단처분 사건, 군 부식비 횡령사건 등에서 합계 5억 5,657만원을 환수하였다.

10.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및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강화

통일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태희

가. 남북 교류협력 법제 연구 심화

1) 추진배경

남북공동선언 등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한 법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추진내용

2018. 7월부터 진행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산하 법무지원 소위원회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범정부적 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법적 지원을 수행하였다.

2019. 4월부터 12월까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를 3개 소위원회 체제로 운영하고 '남북관계발전대비법제', '북한법제정비지원체계' 및 '개혁·개방을 위한 북한 법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2019. 5월 '개성공단 내 행정형법 적용 여부'를 주제로 비공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2019. 6월 통일부 및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법적과제'를 주제로, 2019. 12월 통일부·법제처와 '북한 관광개발 동향 및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2019. 12월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를 확대·개편하여 대법원, 헌법재판소, 통일부, 법제처, 대한변협, 한국법제연구원, 통일연구원 및 관련 학회 등 민·관의 전문가들과 연구 성과를 공유·결집함으로써 남북관계 법률 전문가 전체를 망라하는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한편, 2010. 2월 창간한 통일법 전문학술지인 『통일과 법률』을 2019. 11월 제40호까지 발행하였고, 2019. 12월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연구』 개정판 및 『통일법무 법령집』을 발간하여 통일법제연구의 법적기반을 확충하였다.

3) 주요성과 및 평가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통일과 법률』,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연구』, 『통일법무 법령집』 등 연구결과서와 자료집의 발간을 통하여 남북관계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심화함과 동시에 남북관계 관련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 그림 2-62 | 통일법 연구결과서 및 통일법무 법령집 발간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 연구



통일과 법률 학술지



통일법무 법령집

나. 남북관계 발전 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1) 추진배경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고, 북한의 변화된 현실을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8기를 운영하였고, '북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2) 추진내용

2019. 9 ~ 11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업하여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8기 과정을 개설하여,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30명을 대상으로 법학자, 경제학자,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이 북한 경제 동향, 개성공단·금강산 사업의 법적쟁점,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등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아울러, 전직 무역영사, 인민참심원 등 북한에서 다양한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 전문가 간담회'에 초청하여 북한의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법무 업무의 내실을 기하였다.

3) 주요성과 및 평가

위와 같이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강좌 개설, 북한 전문가·북한이탈주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통일대비 법률전문가를 양성함과 동시에 통일법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 그림 2-63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제8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제8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자료집

다.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강화

1) 추진배경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2) 추진내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법률교육을 위하여 검사 및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들이 매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법의 중요성', '민사·가사 관계에서의 권리구제' 및 '조심해야 하는 범죄유형' 등에 대하여 강의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무담당관'이 유선 및 온라인 법률상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였다.

한편, 2019. 5월 전국 25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담당변호사 총 66명을 위촉하였고, 2019. 10월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을 전담하는 '지원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2019. 9월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의 개정판을 발간하고, 무료 법률상담 홍보물을 제작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배포하였으며, 2019. 10월 '법률상담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무담당관'이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9. 12월 하나원 법률교육을 위한 강의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하나센터 법률재교육 자료를 제작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에 내실을 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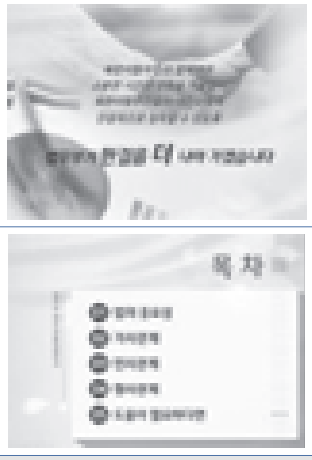
3) 주요성과 및 평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방문 교육,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담당변호사 위촉,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교육자료 제작·배포, 유선·온라인 법률상담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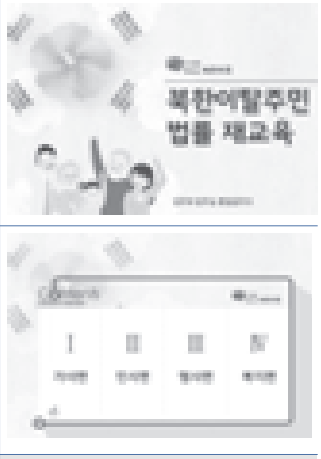
| 그림 2-64 |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및 하나원·하나센터 교육자료 발간



2019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하나원 법률교육자료



하나센터 법률재교육자료

11.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법제 개선

상사법무과 검사 이혜미

가.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고 회사의 임원 구성을 투명하게 하고자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2019. 4월),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간담회(2019. 6월), 공정경제 실천을 위한 정책 간담회(2019. 8월) 등을 통해 유관 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2) 추진내용

상장회사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수단을 다양화하고,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 시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전자투표에 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사전 별도 통지하도록 하여 전자투표를 활성화 하고자 하였다.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실한 검증기반도 마련했다.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공고 시 후보자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또한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개정을 통하여 주주들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주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감사 등 임원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법무부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추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경제민주화와 혁신성장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기 위한 '공정경제'를 실현하고자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을 위하여 2017. 10월 ~ 2018. 12월 '상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5차례에 걸친 회의 후에 마련된 상법특별위원회안을 참고하여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무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2) 추진내용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 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고,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현재 전자투표제 실시여부가 회사의 선택 사항에 맡겨져 있으나, 일정 수 이상의 주주수를 가진 상장회사는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사회적으로 경영 건전성 제고가 특별히 강하게 요구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소수주주의 청구에 따라 집중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나, 감사위원 중 일부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선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기업지배구조 개선「상법」개정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의 정상화,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실현하여 기업의 투명경영·책임경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주요 경제단체, 시민단체, 기관투자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12.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상사법무과 검사 이혜미

가. 기업환경지수 개선 목적 및 필요성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190개국의 기업환경지수를 평가하여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환경지수는 기업의 경영 환경을 소수투자자보호, 계약분쟁해결절차, 퇴출, 자금조달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지수화 한 것으로 매년 10월 경 분야별 순위 및 종합 순위가 발표된다. 기업환경지수는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국 선택과 관련한 주요 참고 자료로 해외 자금의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10개 분야 중 4개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총괄)를 중심으로 각 담당부처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법령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2019. 10. 발표된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대상 190개국 중 종합순위 5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10개 평가분야 중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어 세계 190개국 중 2위에 올랐다. 이는 법무부가 2011년부터 기업환경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세계은행에 개선 내용을 설명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이다.

| 표 2-23 | 2020년 기업환경지수 주요 국가 종합순위

국 가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일본
순위	1위	2위	3위	5위	6위	8위	29위

| 표 2-24 | 2020년 기업환경지수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 주요 국가 순위

국 가	싱가포르	대한민국	노르웨이	미국	러시아	영국	일본
순위	1위	2위	3위	17위	21위	34위	50위

나.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방안 모색

법무부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19. 11. 29.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기업환경 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기업환경 개선 국제 컨퍼런스'는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다.

본 회의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담당자, 미국과 조지아의 기업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 국제의결권자문사(ISS) 아시아 담당자, 각국 및 국내 전문가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환경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각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법무부는 '기업환경 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비롯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 그림 2-65 | 2019 기업환경 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업환경 개선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업환경 개선 국제 컨퍼런스 법무실장 축사

13.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상사법무과 검사 이혜미

가.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법무부는 경제 주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 1. 21. 상사법무과장을 단장으로 하여 검사 1명, 사무관(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3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였다. 그 후 법무부는 2009. 3. 12.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기업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現 191명)을 구성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2009년 법률상담 484건을 처리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1,127건의 전화·인터넷 법률상담을 처리하고, 10건에 대하여 자문단에 의뢰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든든한 법률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와 함께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수동적 법률지원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2010. 1월부터는 중소기업의 일선 경영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법무지식 강연 및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현장방문 강연 및 법률상담'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9년에는 35회의 현장상담 및 홍보강연 출장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법률분쟁 상황에서 상시 참고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 단행본, 9988법률지원단 절차 안내 리플렛, 『법률분쟁 상황에서 점검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소책자들을 꾸준히 개정하여 발간하고, 이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우수지원 사례로는 납품 업체의 계약 의무 위반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신청기업에 대한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이행 청구에 관한 지원을 통해 납품업체와의 갈등을 해결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기여한 바 있다.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중소·벤처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법률리스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고 대응 능력이 떨어져 법률분쟁 발생 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용하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익법무관을 파견(2019년 현재 거점 지역인 서울·경기에 공익법무관 2명 파견)하여 현장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 계약서 검토 등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법률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2015. 8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였다. 특히 판교테크노벨리 등 법률지원 수요 증가가 집중되는 지역에 스타트업 관련 기업법무에 능통한 자문 변호사 37명을 추가 위촉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수지원 사례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이 경영 초기 단계에서 창업자간 동업 계약서,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아 이후 경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위험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14.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상사법무과 서기관 이규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등을 계기로 다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분야에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증권분야에만 도입). 이러한 집단소송제는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 배상책임을 현실화함으로써 기업의 준법경영노력을 향상시키고 이로써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활동의 폭을 넓힘으로써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이다(국정과제).

법무부는 2018. 9. 21. 현행 증권 분야 외에 제조물책임 등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을 지원하였다.

법안 발의 후 법무부는 2019년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의원 등을 대상으로 상시 법안 설명을 하고, 토론회·설명회 등으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하여 입법동력을 확충하였다.

나아가 2019. 9. 18. 법무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그동안의 추진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개선된 집단소송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분야제한 없이

전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증거개시명령제 반영하며, 기존 사건의 피해자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 그림 2-66 |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정책 현장



법사위 송기헌·박주민 의원 주최 토론회



9·18 당정협의, 집단소송 확대·개선 도입방안 발표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집단소송 도입은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높여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엄격한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향후 9·18 당정협의로 발표한 확대·개선된 집단소송 도입방안을 구체화하여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15. 전자어음제도 운영

상사법무과 서기관 이규철

가. 전자어음제도 개괄

법무부는 2005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전자어음을 도입한 이래 전자어음의 정착을 추진해오고 있다. 기존 어음은 실물종이 어음으로 발행·유통되어 거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위·변조 위험과 보관·이동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전자어음 제도는 2009. 11. 9. 및 2014. 4. 6.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약속어음 발행 시 전자어음 형태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가 최종적으로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됨에 따라 종이어음의 전자어음으로 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법령 정비와 홍보를 통해 도입 10여 년이 넘는 2019년에는 건수 기준으로 전자어음이 전체 어음 발행 건수 중 84.9%에 이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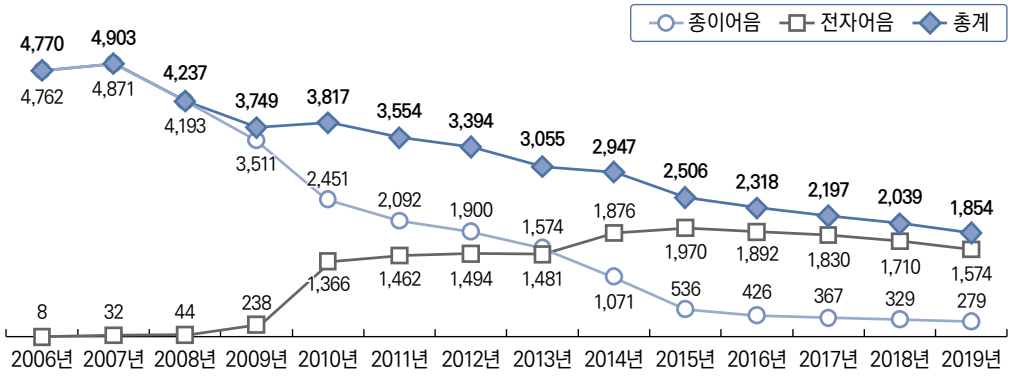
한편, 약속어음의 최장만기를 단축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6. 5. 2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에 개정 법률에 따라 2018. 5. 30.부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는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매년 1개월씩 단축되어 2021. 5. 30. 부터는 최장만기가 3개월을 넘을 수 없게 될 예정이다.

나. 2019년도 전자어음 관련 통계

2019년도에 전자어음은 157만 건(전년대비 7.92% 감소), 498조 원(전년 대비 2.89% 증가)이 발행되었고, 같은 기간 종이어음을 포함한 전체 약속어음 대비하여 건수 기준 84.9%(전년대비 1%p 증가) 금액 기준 42.9%(전년대비 1.1%p 증가)의 추이를 보였다. 참고로 종이어음은 27만 9천 건(전년대비 15.19% 감소), 661.1조 원(전년대비 2.38% 감소)이었다. 전반적인 약속어음 발행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전자어음의 활용건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금액 기준의 경우 기업어음(CP) 및 금융기관 간 단기자금 조달용 어음발행 등으로 경기추이에 따라 종이어음 발행규모가 변동하고 있다. 순수한 기업 간 결제 과정에서는 전자어음의 대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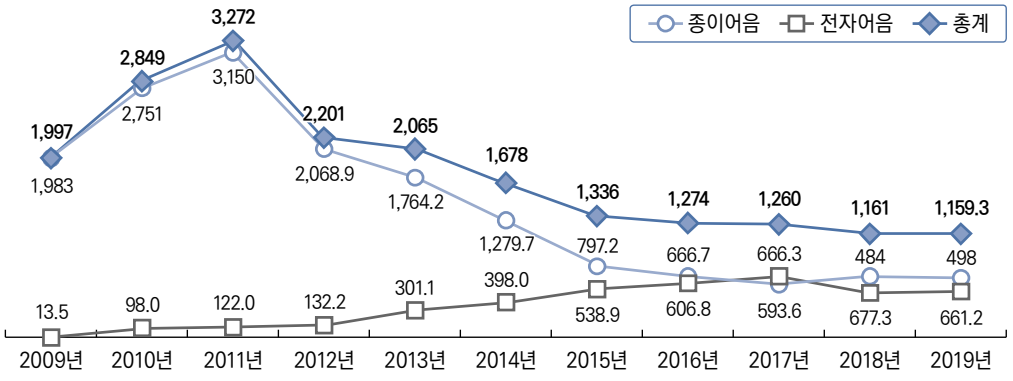
| 그림 2-67 | 종이어음·전자어음 발행건수 추이

(단위: 천 건)



| 그림 2-68 | 종이어음·전자어음 발행금액 추이

(단위: 조 원)



다. 평가 및 발전방향

도입의 취지에 따라 전자어음의 종이어음 대체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법무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약속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16. 전자증권제도 시행

상사법무과 서기관 이규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19. 9. 16.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식·사채 등에 관하여 종이 실물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 및 거래현상을 선진화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 증권을 전자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2016. 3. 22.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을 제정하였고, 2019. 6. 25.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후 「전자등록업 허가 등에 관한 규정」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대법원규칙인 「민사집행규칙」·「공탁규칙」 개정을 지원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고, 전자증권 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TV· 온라인·오프라인 전광판 등으로 집중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9. 9. 16. 시행 당일부터 상장 주식·사채 등을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하였다.

| 그림 2-69 | 전자증권제도 홍보 내용



| 그림 2-70 | 2019. 9. 16.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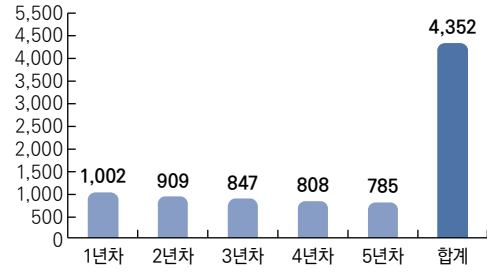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차명주식 및 탈세 방지 등 권리관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회사 및 증권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증권과 관련한 관리·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향후 5년 간 총 4,352억 원(2014. 12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최대 9,045억 원(2017. 11월 삼일PWC)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ICT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 그림 2-71 |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 추정(출처: '14. 자본시장연구원)

연간 경제적 가치추정



주요 비용절감 요인

구 분	주요 비용절감 요인
운용비용	• 실물증권 제조·교부·보관 • 실물 입출고 • 주주명부작성, 명의개서
위험비용	• 실물증권의 도난, 위변조
기회비용	• 신규발행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앞으로도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전자증권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17. 중재산업 활성화

상사법무과 서기관 강혜정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내 및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하고,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법무부는 2016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2017년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중재산업 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여 세계적 규모의 분쟁해결시설인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중재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19. ~ '23.)」을 수립해 2019. 1. 1.부터 시행하였다.

| 표 2-25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
목표	중재산업 진흥을 통한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의 도약
4대 추진전략	9대 추진과제
1. 중재산업 기반 강화	1. 중재 전문인력 양성 2.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2. 국내중재 활성화	1. 중재제도 인식 개선 2. 중재제도 이용률 제고
3.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	1. 세계적 수준의 분쟁해결시설 운영 2. 중재기관 역량 강화 3. 신규 중재분야 발굴·육성
4. 국제중재 유치 확대	1. 국제중재 유치 전략 수립 2. 국제중재 유치 지원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는 현재 중재사건 심리장소, 중재 교육 및 각종 행사 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중재산업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2019년 베트남 하노이사무소를 개소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교육원을 개원하였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시행 첫해인 2019년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약12% 증가하여 실적이 개선되었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중재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18.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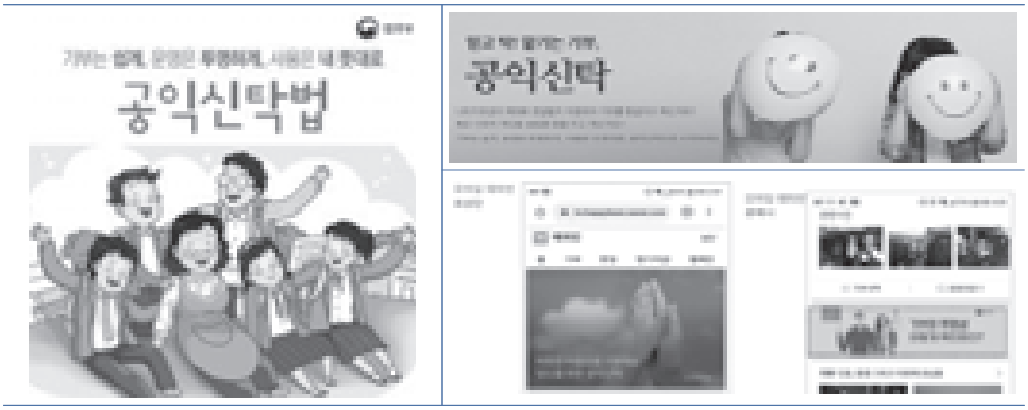
상사법무과 서기관 이규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4. 2. 29. 「공익신탁법」을 제정하여, 2015. 3. 19.부터 시행하였다. 「공익신탁법」은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법무부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해 TV·온라인 포털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였다. 이에 2019년 말까지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 및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총 26개 공익신탁이 설정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공익신탁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 11. 14.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2019. 12. 6. 학계·실무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그림 2-72 | 공익신탁 홍보 관련



| 그림 2-73 | 2019 공익신탁자문위원회



나. 평가 및 발전방향

공익신탁제도는 보다 간이한 절차로 보다 투명하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법무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제도 개선 노력으로 보다 다양한 공익신탁 사업이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공익신탁 제도로써 기부문화가 활성화하고 결국 사회계층간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 파산 면제재산 한도 상향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효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재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원이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 한도를 900만 원에서 1천11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로 의견을 수렴한 후, 2019. 2. 21. 제8회 차관회의와 2019. 2. 26. 제8회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2019. 3. 5. 대통령령 제29602호로 공포 및 시행되었다.

나. 추진 내용

개인파산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및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치 생계비 상당 금액을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게 하여 채무 변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그 생계비 금액 한도를 현행 900만 원(월 150만 원)에서 1천110만 원(월 185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새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4만 4천여 명이 합계 약

924억 원(4만 4천명('17년 기준 연간 개인파산 이용자) × 35만원(월간 생계비 인상분) × 6개월의 생계비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효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상사법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상사법제 마련을 위하여 전국의 상사법 연구자와 실무가들에게 관련 원고를 모집하고 이를 심사하여 1·4·7·10월 네 번에 걸쳐 『선진상사법률연구』 학술지(KCI 등재지)를 발간하였다.

2019년의 경우 1월에 발간한 통권 제85호는 홍복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2018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신년기획 논문과 『타인명의의 주식양수와 주식명의 신탁의 효력』 등 논단 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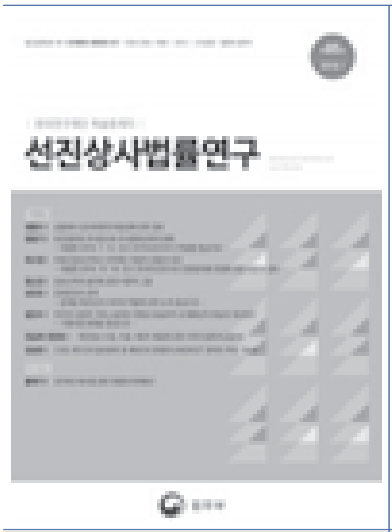
4월에 발간한 통권 제86호에는 이철송(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주주간계약의 회사법적 효력론의 동향』 논문 외 7편의 논고를 수록하였고, 7월에 발간한 통권 제87호는 고형석(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의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비롯하여 총 6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10월에 발간한 통권 제88호는 『TRS 거래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에 대하여 논한 홍명수(명지대 법과대학) 교수의 기고를 포함하여 3편의 글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내용이 수록되었다.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선진상사법률연구는 발간 시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각 대학도서관, 법·경제단체·경제부처, 국회, 로펌 등에 약 600여부를 배포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사법 연구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74 | 선진상사법률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5호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6호

21. 선진법제포럼 개최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김효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선진법제포럼'은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정보 수집을 위해 2007. 11. 결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학계·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는 포용성장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해결책으로서 사회적 기업에 주목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기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법인격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2019. 12. 10. '사회적 기업 법인격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공익 법인, 사회적 기업 관련 실무자 등도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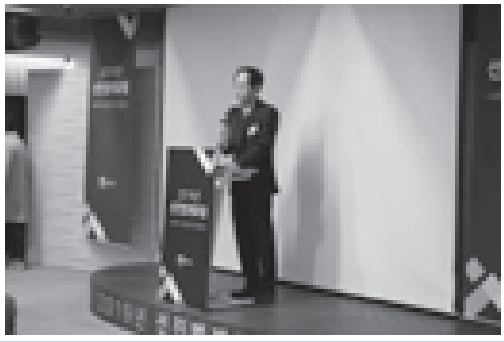
나.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포럼에서는 명한석 상사법무과장의 사회로 '사회적기업 법인격 도입방안'에 대한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의 주제발표, 송호영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경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더함), 박향희 이사((사) 한국마이크로 크레딧 신나는 조합), 신창섭 사무국장((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토론이 있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사회적 기업에 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그림 2-75 | 2019 선진법제포럼 개최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



선진법제포럼 법무부 법무심의관 축사

22.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운영과 제도 개선 도모

법조인력과 행정사무관 김효민

가. 제8회 변호사시험 실시

1) 시험 문제 합숙 출제 및 시험 시행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의 문제출제를 위하여 2018. 12. 26.부터 18일간의 합숙출제를 실시하였다. 출제오류방지와 자격시험의 성격에 부합하는 양질의 문제 출제를 위하여 교수, 실무가 등으로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최적의 합숙환경 및 보안을 위한 합숙시설·보안업체의 선정을 거쳐 합숙출제를 시행하였다.

제8회 변호사시험은 전국 8개 시험장(서울 4,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서 2019. 1. 8.부터 1. 12.까지 시행되었고 3,617명이 출원하고 3,330명이 응시하였다.

심도 있는 문제유형 연구 작업을 거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법조인 선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일구어 낸 이전의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 하에 제8회 시험도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2) 채점 및 합격자 결정

채점기준표 작성회의를 개최, 세트반복형 가채점 방식으로 채점위원별 채점편차를 최소화하는 등 채점기준을 객관화하였고, 4분할 채점제를 채택하여 채점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점수조정을 통한 채점위원 간 편차를 줄여 시험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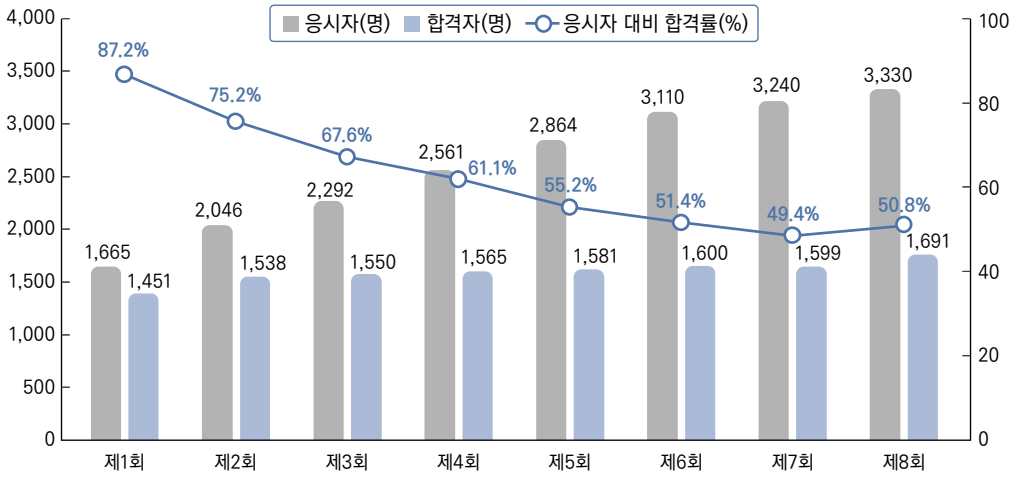
그 외에 시험위원을 상대로 한 출제오류 사례 교육, 출제 과정에서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분리를 통한 상호검증, 시험 정답 가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정답을 확정하는 등 문제오류를 방지하여 복수정답 인정사례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2019. 4. 26.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691명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2019년도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이라는 기준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시험의 검증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표 2-26 | 역대 변호사시험 현황

변호사시험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응시자(명)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3,240	3,330
합격자(명)	1,451	1,538	1,550	1,565	1,581	1,600	1,599	1,691
응시자 대비 합격률(%)	87.2	75.2	67.6	61.1	55.2	51.4	49.4	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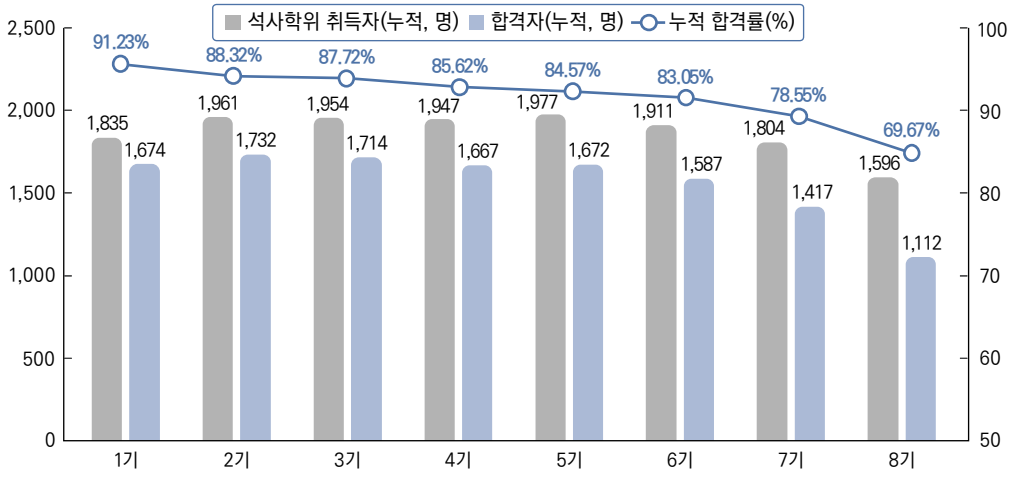
| 그림 2-76 | 역대 변호사시험 현황



| 표 2-27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입학기수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합계
석사학위 취득자 (누적, 명)	1,835	1,961	1,954	1,947	1,977	1,911	1,804	1,596	14,985
합격자 (누적, 명)	1,674	1,732	1,714	1,667	1,672	1,587	1,417	1,112	12,575
누적 합격률 (%)	91.23	88.32	87.72	85.62	84.57	83.05	78.55	69.67	83.92

| 그림 2-77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나. 제10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은 2019. 8. 3. 전국 8개 시험장(서울 3,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에서 실시되었다.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면서도 지엽적이지 않고 중요한 판례 위주의 출제를 통하여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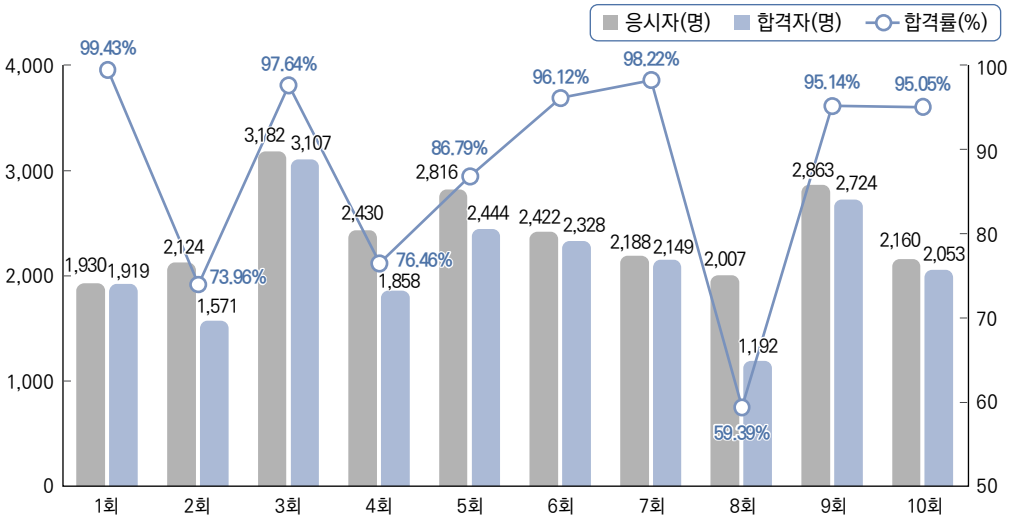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무윤리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등에 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직역윤리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총 2,190명이 출원하여 그 중 2,160명이 응시(응시율 98.6%)한 결과, 2,053명(합격률 95.05%)이 합격하였다.

※ 2018년 제9회 법조윤리시험 : 2,863명 응시, 2,724명 합격(합격률 95.14%)

| 표 2-28 | 역대 법조윤리시험 현황

	1회 (2010)	2회 (2011)	3회 (2012)	4회 (2013)	5회 (2014)	6회 (2015)	7회 (2016)	8회 (2017)	9회 (2018)	10회 (2019)
응시인원(명)	1,930	2,124	3,182	2,430	2,816	2,422	2,188	2,007	2,863	2,160
합격자(명)	1,919	1,571	3,107	1,858	2,444	2,328	2,149	1,192	2,724	2,053
합격률(%)	99.43	73.96	97.64	76.46	86.79	96.12	98.22	59.39	95.14	95.05

| 그림 2-78 | 역대 법조윤리시험 현황



다. 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전개

1)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추진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0년에 즈음하여 '17년 사법시험의 폐지로 법조인 선발방식이 일원화됨에 따라 높아진 정책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변호사시험을 운영, 양질의 법조인 선발·양성 및 선진 법률서비스 제공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8. 3 ~ 10월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고, 2018. 11. 28.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 운영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여론 수렴 결과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본적 법률분야에 대한 충실한 교육 유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충실화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도가 정착단계를 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기존에 시험을 실시하던 서울, 대전 이외에 부산, 대구, 광주에 각 1개의 시험장을 확대하여 지방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였고, 시험문제 출제 시 최근 6개월 이내 형성된 판례는 출제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즉시 적용하였다.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을 유도하기 위해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헌법, 민법, 형법 3분야의 과목에 대하여만 선택형 필기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변화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 2019. 4. 26.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 변호사 수' 등 합리적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추진에 노력하였다.

2) 시험행정 서비스 강화

장애인 편의 지원을 위해 중증 상지장애 응시자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기준을 변경하여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적용하였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적 공개 청구기한 기준을 정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변호사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를 위한 시험행정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였다.

제4절 검찰업무

1. 검찰 역량의 강화

◎검찰과 검사 최수은

가. 검사 인사제도 개선

1) 추진 배경 및 경과

2018년 최초로 검사 인사 관련 원칙과 기준의 법제화 완료 후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 2019. 3. 8.「검사 복무평정 결과 요지 고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 2019. 5. 28.「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개정·시행
- 2019. 10. 8.「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제정·시행
- 2019. 12. 31.「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 개정·시행

2) 주요 내용 및 성과

2018. 11. 30.「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개정에 따라 2019. 3. 8.「검사 복무평정 결과 요지 고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2019. 3. 이후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한 복무평정 항목에 인권옹호, 합리성 및 균형감을 추가하는 한편, 조직헌신을 삭제하는 등 평정항목을 개선하는「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을 2019. 5. 28. 개정·시행하였다.

검찰 내외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공정하게 심사하여 불필요한 파견을 줄임으로써 일선 검찰청의 형사·공판부 인력 확충을 도모하고자 2019. 10. 8.「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을 제정·시행하였다.

2019. 12. 31.「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예규)을 개정·시행하여 국민생활과 직결된 형사·공판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형사·공판 관련 주요 부서장의 근무요건을 추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검사가 주요 보직에 보임될 수 있도록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에 대한 인사·재산 검증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나. 검찰 조직 개편

1) 추진배경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검찰의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을 위해 직접 수사 축소 등 특별수사 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하였고,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수원고등검찰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검찰이 수행하는 공안 관련 사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공안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및 시대에 맞지 않는 업무를 정비하였다.

또한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에 따라 성차별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 이를 전담할 부서의 신설을 추진하였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전문성 제고 등 수사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검찰 내 조직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 추진경과

수원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19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9.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수원고등검찰청의 설치근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개정, 대통령령 제29508호, 2019. 2. 8. 일부개정, 2019. 3. 1. 시행)를 마련하였다.

2019. 2. 8. 수원고등검찰청 신설 및 인력증원 등(대통령령 제29510호), 2019. 3. 26. 대검찰청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환수 인력 및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 인력 증원 등(대통령령 제29642호), 2019. 5. 7. 대검찰청에 양성평등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대통령령 제29642호), 2019. 8. 13. 공안 명칭 변경 및 일부 기능 폐지 등(대통령령 제30039호), 2019. 10. 22. 각급 검찰청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반부패수사부·형사부 전환 등(대통령령 제30130호)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각각 공포·시행하였다.

3) 주요내용과 성과

2019. 2.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구역 내 산업단지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산업기술범죄수사부를 신설하였고, 천안지역의 효율적인 사건 접수 및 처리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사무국 및 사건과를 신설하였으며, 2019. 3. 수원고등검찰청이 설치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였다.

2019. 3. 대검찰청에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환수에 필요한 인력 2명, 수사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 31명,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 등을 증원

하였고, 2019. 5. 대검찰청에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장검사 산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였다.

2019. 8. 검찰이 수행하는 공안 관련 사무의 범위를 대공·테러 등으로 한정하고, 선거 노동 및 집단행동 관련 분야를 공안과 병렬적인 전문분야 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일부 직위 및 분장 사무 중 "공안"과 관련된 명칭과 사무를 각각 "공공수사"로 변경(12개청 20개부서의 명칭 변경, 공안부→공공수사부)하고, 공안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및 시대에 맞지 않는 업무의 정비를 위하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이 공안부장을 보좌하던 업무 중 일부를 폐지하였다.

2019. 10.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두는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7개청 10개 특별수사부를 3개청 6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 4개부는 형사부로 전환)하였고, 반부패수사부장의 분장 사무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또는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였다.

4) 평가 및 기대효과

수원고등검찰청의 신설로 830만 명 상당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음에도 항소·항고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고법·고검이 없어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고, 향후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검찰청에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환수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국정농단 관련자의 부정 축재 재산 환수 및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이 강화되고, 일선 검찰청의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인력 및 검사 보조인력 등 수사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수사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편,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로 수사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실현과 검찰 내부 성희롱·성폭력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안 명칭과 관련하여, "공안"을 "대공·테러" 등 고유영역으로 한정하고, 공안 개념에 포함시켜왔던 "선거 및 노동분야"는 공안과 병렬적인 전문분야 체제로 개편함에 따라 공안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급 검찰청의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여 반부패수사부로 전환하고, 이중 일부는 형사부로 전환함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형사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79 | 검찰 조직 개편 관련 언론기사



다. 인권 친화적 수사환경 및 검찰 구성원 복지 증진 예산 지원

법무부는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수사환경을 구축해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련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격무에 시달리는 검찰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1) 인권센터 운영 지원 및 사건관계인 메모용 의자 비치 예산 등 신설

기존에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인권 침해 관련 업무는 그 분장과 지휘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종래의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인권센터'로 개편하기로 하고, 검찰청 내 인권 업무에 관한 총괄 지휘체계를 확립하며, 인권센터 내 인권상담사를 위촉하여 사건관계인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인권센터' 신설 및 인권상담사 수당 등 예산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인권보호수사준칙」 및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이 개정되어 피의자·변호인이 조사 중 메모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기존 조사실에 배치된 철제 의자는 사실상 메모하기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여 사건관계인 메모용 의자를 각 검사실에 비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

2) 검찰 구성원 근무환경 개선

검찰은 2019년 청소·시설 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공무직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였다. 이에 검찰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휴게시설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는 한편, 안정적인 작업 조건 제공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무직·청원경찰·방호원의 피복비 예산 등을 증액하였다.

아울러, 전국 검찰청 기록 보존서고는 대량의 형사사건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서고 내 분진 누적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방문 민원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중요기록의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법무부는 검찰청 기록보존서고 리모델링과 분진제거 및 항균소독을 통한 기록훼손 방지 등을 위해 기록보존서고 환경 개선 예산을 편성하였다.

3) 검찰시설 및 환경 개선

법무부는 전국 노후 검찰청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형사조정실 리모델링 및 노후 시설 개보수, 대구 고·지검 신축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등 검찰 구성원의 근무환경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의 효과는 업무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검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등의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검찰업무의 추진방향

형사기획과 검사 정윤식

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에 관한 제반 법령을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주의 구현이 요구되어 수사과정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설치, 수사과정에서의 녹음·녹화제 활용도 증대, 신뢰관계자의 동석 범위 확대 등을 각종 법령·지침 등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04. 12월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4대 지검에 녹음·녹화실,

편면경(one-way mirror) 등을 완비한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에 여성·아동 조사실을 설치하였고, 2013. 7월 종전의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침'과 '성폭력범죄 사건 처리지침'을 통합하여 성폭력사건 처리 관련 세부내용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기 위하여 사건의 성격 및 피조사자에 따라 적합한 조사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친화적 조사 환경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법무연수원에도 여성·아동관련 범죄 수사실무 교육 프로그램 및 성폭력피해자 조사기법 강좌를 개설하여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한편,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 성폭력문제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2. 12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개정하여,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3세 미만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 10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아동성폭력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3.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전문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조회 및 법정 증언 관련 절차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성폭력범죄전문가 의견조회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2014. 4월부터 다년간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또는 치료 업무에 종사하여 온 소아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범죄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107명을 대검찰청 성폭력범죄 전문가로 선정, 위촉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해 진단하고 진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및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 9월 서울중앙지검에, 2016. 1월 대구·광주지검, 2017. 2월 대전·부산지검, 2018. 2월 수원·인천·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등 현재 총 11곳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각 지역의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자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015. 11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검사 지정·운영 및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는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시행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결혼이민 여성을 상대로 여성 범죄예방위원과의 결연사업, 지방자치단체와의 다문화가족 보호지원 업무협약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주 여성들이 국내 연고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정폭력과 국내정착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8. 12월 법률 개정에 따라 업무상위력간음·추행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였고, 특히 새롭게 사회문제로 대두된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2018. 10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유포 사건처리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 개정·시행하였고, 2018. 12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사건처리 기준을 재개정 하였으며, 2018년 불법촬영·유포 사범 184명, 2019년 불법촬영·

유포 사범 195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18. 12월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공동 대처 및 연구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실효적 대응을 강화한 이후, 이 협약에 따라 2018. 12월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19. 7월에는「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를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각 공동포럼을 개최, 2019. 11월에는「가정폭력 상해 사건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관련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2019. 2월 및 10월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세미나, 2019. 3월 및 10월 여성·아동대상 범죄 전담검사 타겟형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수사 역량 제고 및 피해자 인권 보호에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2019. 6월에는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관련, 보호관찰소를 통해 위탁 절차와 상담 관리를 함으로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사후 관리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한편 2013. 7월에는 흉기 휴대 또는 상습적 가정폭력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기준을 강화한 「가정폭력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15. 9월에는 친족간 성폭력·가정폭력 등 가정 내 범죄에 대해 기 시달된 사건처리기준 및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 및 경위, 재범의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8. 10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강서구 주차장 전처 살인 사건' 발생을 계기로 검찰은 가정폭력사건을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무·검찰은 서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다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특정 사기범죄들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여 2019. 8. 시행하였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재개정을 추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회복 절차 규정을 완비하여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들의 완비로 피해자들 대다수가 서민인 특정사기범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법무·검찰은 수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법 집행의 엄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먼저, 진술에 의존하는 기존의 수사기법이나 조사방법을 탈피하여 물적 증거 수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 12월경부터 총 144억 원을 투입하여 2008. 10월경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지상 6층, 지하 1층, 연면적 7,844㎡ 규모)를 완공하여, 그동안 분산되었던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및 감정·감식 업무를 한 곳에 집중시켜 효율적인 증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 DNA 및 법생화학 감식,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 사이버범죄 대응 등 전방위적인 과학수사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2007. 4월 서울중앙지검, 2008. 6월 부산고검, 2009. 9월 대구고검, 2010. 4월 광주고검, 2010. 12월 대전고검, 2011. 5월 인천지검, 2012. 6월 수원지검(2019. 3월 수원고검으로 이전), 2014. 11월 서울고검·서울남부지검·창원지검, 2017. 12월 서울북부지검·춘천지검 등 일선 청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운영하여 급증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업무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권존중 수사관행을 정착하고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 12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제정, 2006. 6월 전면적으로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2019. 12. 1. 위 준칙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법무부령으로 승격하여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시행하였다.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의 일환으로 2004. 6. 1. 4개 검찰청 12개 검사실에 영상녹화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2018. 12. 31.까지 전국 64개청에 총 841실로 확대 설치하여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대한 불식시키고 수사 인력 및 조사시간 단축을 통해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에서 2006. 6월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검찰청에 시달하였는바, 동 지침에서 수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구속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상세화한 '일반적 기준'을 두는 한편 '일반 형사·공안·부패·강력 사범' 등 주요 범죄별로 구분하여 구속 기준을 예시한 '범죄유형별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위 지침은 그동안 각급 검찰청에서 관행적·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기준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지침화하고 전국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2011. 12월 구속수사의 일반적 기준과 범죄유형별 기준을 좀 더 세분하여 위 지침 제정 이후 구속수사 실무 기준을 반영하였다.

대검찰청은 2008. 6월 형법범(208개 조문, 293개 범죄유형), 가중사범(4개 법률, 101개 범죄유형), 특별법범(232개 법률, 1,149개 범죄유형) 등 총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 구공판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 등을 규정한 '검찰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1. 12월에는 시행 3년을 맞아 그간 폐지되거나 변경된 법령과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비 하였다. 또한 2012. 9월에는 지역적 범죄 특성과 당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선 청에서 사건처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월, 포항 등 9개청에서 산지관리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9개 특별법범에 대해 지역의 특수성과 경제적 사정 등을 반영한 자체 사건처리기준을 수립·시행하였다.

2016. 9월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 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고, 사건 및 피의자 관련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 구형 원칙을 규정한 「검찰 구형 및 항소에 관한 업무지침」을 반영하였으며, 3차례 개정된 형법 개정 사항 〈유사강간죄 신설, 혼인빙자간음죄 등 삭제('13. 6월 시행), 범죄단체조직죄, 약취와 유인의 죄 등 정비('14. 4월 시행), 특수상해·강요·공갈죄 등 신설, 간통죄 삭제 등('16. 1월 시행)〉을 반영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추가하여 가중사범을 총 6개 법률로 확대함과 동시에, 총 42개 특별법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교통사고·음주운전 등 대검의 강화된 신병 및 구형 기준을 반영하였다. 2019. 6.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 12. 18. 시행), 도로교통법('19. 6. 25. 시행) 등의 개정에 맞추어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 전면 시행하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 7. 2.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하여, 2013. 5. 22. 전국 5대 고검에 추가 설치 현재 전국 65개청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고·지검 및 지청 소속 위원회의 경우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담·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상설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들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등의 장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되,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다.[9)]

아울러 2004. 7월부터 항고심사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사실상 동일하여 위원회 중복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제기로, 기존의 항고심사회 기능을 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① 공소제기의 적정성, ②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③ 구속취소의 적정성, ④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이외에도 최근 심의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5년 검찰시민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은 〈표 2-29〉과 같다.

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 배제

| 표 2-29 | 최근 5년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실적

구분 / 연도	개최횟수	심의건수						
		합계	기소	불기소	재청구	구속취소	영장청구	항고
2015년	728	1,525	566	607	88	10	247	-
2016년	850	1,766	531	667	106	5	409	48
2017년	956	2,086	557	971	66	5	390	70
2018년	1,078	2,324	618	1,180	277	1	277	94
2019년	1,082	2,324	587	1,341	26	1	167	110

3.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형사기획과 검사 정윤식

가. 개요

법무·검찰은 권력형 비리 등 사회지도층 비리를 중점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지역토착비리와 보조금 비리·조세포탈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부패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였다. 또한 불법수익의 철저한 박탈로 부패범죄에 대한 동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검 반부패부·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를 통해 일선청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지원하여 범죄수익환수 기능을 제고하였다.

2019. 10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서울, 대구, 광주 3곳에 반부패수사부를 두는 조직 개편을 통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였다.

법무·검찰은 국민생활 안정의 위협요소를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위사업 분야의 고질적·구조적 비리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비리, 국가 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공기업·공공기관 민관유착 비리, 법조 브로커 등 법조비리, 언론비리, 교육비리, 경제 질서 저해사범 등 금융·증권비리, 조세포탈 비리, 재벌총수일가의 횡령·배임 범죄 등의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였다.

또한 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가상통화·P2P 관련 사기, 재개발·재건축 비리, 유해화학

물질 등 불특정 다수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2019. 3. 대검찰청 형사부 내에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팀'을 신설·운영하면서 일선 검찰청의 서민다중피해범죄 사건 수사 및 범죄피해재산 환수·회복 업무를 지휘·지원하고 있다.

법무·검찰은 최근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배출가스·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환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범죄 수사매뉴얼 T/F를 구성하였고, 2019. 7월 환경범죄 일반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매뉴얼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환경 분야에 있어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하였다.

나. 부정부패사범의 척결

1) 부정부패 척결 지속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부정부패 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19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8위로서 2013년 수준(22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효율성 부문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도 2019년도 180개국 중 39위(OECD 36개국 중 27위)로 국제 평가기관들이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낮은 청렴수준과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은 상황에 법무부는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먼저 검찰에서는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 전문직역 숨은 비리를 중점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특히 2019년에는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 등을 반영하여 기존 주요 수사대상이었던 부정부패 범죄와 함께 국가경쟁력·투명성을 저해하는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 709명 기소(179명 구속)하였고, 전국 검찰청의 부패범죄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지역 토착비리 단속, 보조금 비리 수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증권·금융범죄 관련 수사 등 각종 부정부패 수사를 진행하였고, 특히 갑질범죄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수사 등에 집중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은 〈표 2-30〉 내지 〈표 2-31〉과 같다.

| 표 2-30 | 2019년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구분 / 유형	단속인원	구속인원
인사	8(3)	5(1)
건축	25(4)	9(1)
토지	0(0)	0(0)
공사	4(4)	2(2)
보건·환경	6(2)	0(0)
교통	1(0)	0(0)
소방	0(0)	0(0)
노동	1(0)	0(0)
수사	3(3)	1(1)
세무	21(0)	5(0)
교육	21(5)	3(0)
병무	0(0)	0(0)
금융	239(3)	58(0)
법조주변	38(2)	14(2)
납품	24(3)	4(1)
사이비언론	2(0)	1(0)
기타	146(25)	58(12)
합계	539(54)	160(20)

( )는 공무원

| 표 2-31 | 2019년 공직자비리 단속실적

(단위 : 명)

직급별 / 죄명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기타	계
3급 이상	4(0)	24(0)	0(0)	1(0)	29(0)
4급 이하	61(22)	82(1)	34(1)	31(3)	208(27)
합 계	65(22)	106(1)	34(1)	32(3)	237(27)

( ) 구속인원

2)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부패 관련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클린피드백 유관부처 회의를 통해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8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제도개선 발굴, 건의 실적	• 1/4분기 클린피드백 회의('19. 3월) 건의 실적 – 선원법상 퇴직금 미지급 처벌규정을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양수산부) • 2/4분기 클린피드백 회의('19. 6월) 건의 실적 – 선박안전법 제83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 신설(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관련 규정' 개정(행정안전부) • 3/4분기 클린피드백 회의('19. 9월) 건의 실적 –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의 적용대상에 농업기계를 포함하도록 개정(경찰청) • 4/4분기 클린피드백 회의('19. 12월) 건의 실적 – 선불유심칩 관련 별도 처벌조항 신설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비군 '동원 보류', '훈련을 연기 또는 보류' 시 거짓된 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규정 신설(국방부) – 소집통지서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사진으로 전달하는 등 반드시 원본 자체를 전달할 필요가 없도록 병역법, 예비군법 개정(국방부, 병무청) [2019. 12. 31. 기준 8건]

다. 엄정한 사회질서의 확립

1) 음주운전 사범 엄정 대처

2018. 9월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하여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인 윤창호 군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법무부 장관은 2018. 10. 19.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철저 이행 및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음주운전 사범 엄정 대처'를 지시하고, 10. 22.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019. 3. 18. 법무부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검찰에 음주운전 사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구형 및 치료감호 적극 청구를 지시하였고, 2019. 3. 29.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에 음주운전 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구형 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음주 금지 등의 특별 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 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부과 의견 개진토록 하고, 알코올 습벽 있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 적극 청구 등을 지시하였다.

2019. 6. 24. 대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8. 12. 18. 시행), 도로교통법('19. 6. 25. 시행) 등의 개정에 맞추어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군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하여 각 검찰청에 전면 시행하였다.

검찰도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의 실현을 위해 음주운전 관련 범행에 엄정한 기준으로 신병처리, 구형, 적극적 항소 등으로 대처한 결과, '18. 10월 ~ '19. 12월 기간 동안 615명을 구속

기소, 25,910명을 불구속기소하여 '17. 10월~'18. 12월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구속기소율이 28.1%, 불구속기소율이 83.6% 증가하였다.

| 표 2-32 | 관련 사건의 구속구공판율

통계산출 기간	음주운전 관련 사건 전체 피의자 수	구속기소한 피의자 수	구속구공판율
'17. 10월~'18. 12월	188,299명	612명	0.32%
'18. 10월~'19. 12월	148,609명	615명	0.41%

| 표 2-33 |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불구속구공판율

통계산출 기간	음주운전 관련 사건 전체 피의자 수	불구속기소한 피의자 수	불구속구공판율
'17. 10월~'18. 12월	188,299명	17,866명	9.49%
'18. 10월~'19. 12월	148,609명	25,910명	17.43%

2)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및 도로 위 난폭행위 엄정대응

최근 제주에서 위협적인 차선 변경(일명 '칼치기')을 한 사람이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이와 같은 도로 위 난폭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자 2019. 8. 21.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 및 도로 위 난폭행위 엄정대응을 지시하고, 2019. 8. 22. 대검찰청은 각 일선청에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범행동기·피해정도·동종전력 등을 종합하여 사안이 중한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하였다.

3) 정신질환자 범죄 대응

법무·검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처하고자 2019. 4. 전국 검찰청에 「'심신장애 전력' 폭력사범에 대한 치료감호 적극청구 지시」를 시달하여, 폭력사건 수사 시 심신장애가 인정되어 처벌을 감면받은 전력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치료감호·치료명령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사회 내 치료·관리를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명령제도 활성화, 형집행 종료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적 치료 도입, 벌금·집행유예 등 선고 시 치료명령 필요적 부과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라. 쾌적하고 안정된 국민경제생활의 확보

1) 5대 폭력 특별단속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2019년도 검찰 특별관리 대상을 선정, 신규 조직·마약 전담검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2019. 3. 조직·마약 검사 타켓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 12. 조직범죄·마약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를 개최하여 진화하는 조직범죄의 수사사례·수사기법 등 공유 및 논의를 통해 전국 조직폭력 수사 담당자들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고, 국제적으로는 2019. 4. 美 주관 초국가적 조직범죄 및 테러리즘 대응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초국가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국 수사기관 관계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전통적인 조직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수원 '남문파·북문파', 인천 '간석식구파', 광주 '신양오비파' 등에 대해 범죄단체 활동 등으로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범죄단체 등 기소현황은 〈표 2-34〉과 같다.

| 표 2-34 | 범죄단체 등 기소현황

(단위 : 명, 괄호 안은 구속구공판 인원)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기소	239(103)	237(82)	332(94)	363(87)	278(119)	278(107)	345(91)

2) 민생침해사범 엄단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의 심화,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하여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사범을 척결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인식에 따라 2004년에 구성된 대검찰청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일선 검찰청의 「민생경제 침해사범 수사부(반)」를 중심으로 시·도, 경찰서,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08. 5월 민생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갈취, 폭력, 사행성 게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 2008년 4/4분기에는 대검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 일선청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서민 생계를 침해하는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인 3,704명을 입건하였다. 한편, 2008. 12월에는 유례없는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을 괴롭히는 상가주변 보호비 갈취 등 민생침해 범죄,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행위, 신용훼손 등 경제불안 조성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행위, 불법 사행행위 등을 「서민경제 5대 침해사범」으로 선정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였고, 2010년 민생침해사범 단속 관련 회의를 7차례 개최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2013. 3월부터 2017. 12월까지 대검찰청에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 형사부장)'를, 일선 지검 및 지청에 합동수사부, 전담수사반을 각 설치하여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하였다. 합동수사본부가 종료된 이후에도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지속으로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9. 1. 1.부터 12. 31.까지 민생경제 침해범죄 단속실적은 〈표 2-35〉와 같다.

| 표 2-35 | 2019년 민생경제침해범죄 단속실적

구 분 / 사범별	단속인원	구속인원
계	117,009	2,207
금융거래 질서 교란사범	26,649	669
취 업 사 기 사 범	855	24
기업형 조직폭력사범	67,389	1,285
유통질서 교란사범	2,387	24
사 행 성 도 박 사 범	2,800	138
교육 관련 불법행위 사범	444	0
국민건강 위해사범	11,705	60
부동산거래 교란사범	4,780	7

3) 서민다중피해범죄 엄정 대처

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불특정 다수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집중 대응을 위해 전국 28개 차치지청 이상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팀을 통해 2019. 3월 「보이스피싱·P2P 대출사기 등 민생 사기범죄 엄정대처 지시」, 2019. 7월 「가상통화 관련 사기·다단계 등 범죄 적극 대응 지시」를 시달하였으며, 2019. 4월 및 6월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하여 피해회복 기법 및 우수 수사사례를 전파하는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다.

일선 검찰청의 서민다중피해범죄 수사 및 범죄피해재산 추적·회복을 위해 계좌추적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수사관을 일선 수사에 지원하는 등 사건 수사는 물론 서민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전국적 규모로 피해를 야기하여 전국 검찰청에 분산되어 수사 중이던 대표적 유사수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집중하여 수사하고 통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병합 수사를 지휘하였다.

또한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원,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4) 불법 사행행위 관련 범죄 집중 단속

검찰은 불법 사행행위는 지하경제, 서민생활침해범죄의 대표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 사행산업의 수익금은 상상을 초월하며 형사처벌만으로는 근원적 차단이 어렵다고 판단,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범죄동기 차단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도박장소개설 범죄로만 수사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국세청과 협업하여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조세포탈 범죄로도 수사를 전개하여 과세처분 및 환수절차를 통한 세금징수, 세금 미납 시 경제적 활동의 제약, 조세포탈로 인한 고액 벌금 미납 시 장기간 환형유치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근절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박탈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국세청과 민생침해 탈세사범 단속을 위한 협의체를 신설하고 사행성 게임장 등 막대한 불법이익을 취득하고 다액의 세금을 탈루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특히, 기업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적극 의율하고, 불법 도박장 운영 및 상습·고액 참여자 집중 단속, 범죄수익 철저 환수로 도박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였고, 청소년 등 도박금액이 크지 않고 형법상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도박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전과자 양산방지 및 재범방지에도 노력하였다.

사행행위사범 단속 현황은 〈표 2-36〉와 같다.

| 표 2-36 | 사행행위사범 단속 현황

(단위 : 명)

죄명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도박 등	39,774	43,212	33,153	29,031	27,462	26,239	28,119	20,582	17,441	18.568
게임산업법	20,278	17,614	12,811	11,003	9,682	11,771	12,403	10,233	7,837	7.580
국민체육진흥법	30	369	815	1,391	4,032	4,742	15,467	8,342	4,757	7.658
사행행위규제법	6,714	5,214	3,738	2,559	2,082	1,815	1,321	757	493	473
한국마사회법	1,359	1,555	1,057	859	1,122	1,049	1,266	906	1,127	1.210
합계	68,155	67,964	51,574	44,843	44,380	45,616	58,576	40,820	31,655	35.489

5)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 지식재산권 관계 법령 정비 및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질적인 상표 도용, 서적·음반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미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 통상 마찰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창작 의욕을 저해하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유통 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아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 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국내 지식재산권보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우리 국익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치하고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기반 구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전국 28개 검찰청에 설치된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전담수사반」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신속한 권리구제 및 분쟁해결 요청에 부응하고 검찰 수사역량을 전문화·집중화하는 차원에서 '15. 11월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17. 12월 수원지검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운영하고, '18. 2월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를 신설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로 중소·벤처기업 권리보호 강화에 힘쓰고 있다. 첨단·지능화하고 있는 지식재산침해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중점 검찰청인 대전지검과 특허청 MOU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전문인력 지원 등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였고, MOU에 따라 '18.부터 특허청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전국 청의 검사·수사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18. 12. 특허정보진흥센터와 '특허정보제공 업무협약' 체결하여 '선행기술조사의뢰' 및 'KIWEE 검색서비스'를 활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였다.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산업기술 보호 및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공적 진입과 문화콘텐츠 산업 등 지식재산의 건전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온라인 환경 발달에 따라 첨단·지능화하는 지재권 침해사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한·미 통상현안 회의 및 EU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안을 중심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대학가 주변 교재 및 서적 불법복제, 음반·비디오물 등 영상물 불법복제·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공판 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관련 사범을 엄단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 발달로 온라인상 지식재산침해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현황은 〈표 2-37〉과 같다.

| 표 2-37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연도 \ 죄명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영화및비디오진흥법위반, 음악산업진흥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계
2010	8,192 (192)	29,644 (12)	123 (0)	41,655 (1,242)	2,240 (0)	81,854 (1,446)
2011	6,293 (188)	37,082 (8)	38 (0)	38,106 (1,137)	1,447 (1)	82,966 (1,334)
2012	6,003 (106)	46,707 (1)	15 (0)	29,550 (845)	1,726 (1)	84,001 (953)
2013	6,316 (106)	37,182 (4)	3 (0)	25,068 (641)	1,827 (0)	70,396 (751)
2014	6,611 (110)	41,900 (9)	9 (0)	21,935 (518)	1,624 (0)	72,079 (637)
2015	7,398 (144)	52,196 (4)	2 (0)	23,262 (586)	1,390 (1)	84,248 (735)
2016	8,012 (104)	33,808 (2)	1 (0)	24,598 (491)	1,481 (0)	67,900 (597)
2017	6,293 (73)	24,533 (4)	1 (0)	21,817 (322)	1,513 (0)	54,157 (399)
2018	5,861 (47)	18,638 (13)	0 (0)	16,805 (259)	1,354 (0)	42,658 (319)
2019	7,941 (24)	16,285 (12)	2 (0)	16,532 (195)	1,382 (0)	42,142 (231)

( )은 구속

마. 형집행 지휘·감독

1) 벌과금 집행

① 집행실적

2019년 세입예산액은 1조 5,473억 5천 5백만 원이었고, 세입예산액의 79.05%인 1조 2,232억 5천 8백만 원을 집행하였다. 2019년 말 현재 전국의 벌과금집행 미제액은 총 27조 8,986억 3백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보다 2.24% 증가되었다.

2019년말 현재 벌과금집행 및 집행 미제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48〉과 같다.

② 벌과금집행 우수기관 등 포상

2019. 12. 31. 벌과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청을 선정하여 수원지방검찰청 등 6개 청을 집행유공기관으로 표창하였고, 집행유공공무원 16명에 대하여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집행유공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검찰청은 다음 〈표 2-38〉과 같다.

| 표 2-38 | 2019년도 벌과금 집행 유공 표창기관 현황

순 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6그룹
1위	수원지검	서울서부지검	청주지검	원주지청	해남지청	영동지청

※ 실적산출 방법 : 현년도 집행률(40%) + 과년도 집행률(30%) + 목표집행률 달성도(10%) + 세입예산액 달성도(10%) + 강제집행실적(10%)

2) 사형 확정자 관리

2017년 말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총 57명(군형법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미집행자 제외)이며, 1997. 12. 30. 23명을 집행한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3) 형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보석자 관리

형집행정지자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및 보석자 관리에 대해 분기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다.

2019년 한 해 동안 형집행정지자 370명 중 67명에 대하여 잔형집행 등을 하였고, 구속집행정지자 682명 중 631명에 대하여 구속집행 등을 하였으며, 보석으로 석방된 1,956명 중 215명에 대하여 보석취소를 청구하여 구속집행 하였다.

4. 국민의 권익 보호

형사기획과 검사 정윤식

가. 개요

법무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인권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제·개정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법무부는 2003년부터 시행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이 국민의 변화된 인권의식에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약 2년여 동안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2006. 6월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여 2006. 7. 1.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위 준칙에 따른 일선 검찰의 인권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7. 8월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7년부터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청을 포상하고 있다.

나.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3. 1월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 준칙」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준칙의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제 수사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준칙 시행 이후 제·개정된 법령이나 각종 제도개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작업에 착수, 다양한 내·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06. 6. 26. 동 준칙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 준칙은 개정 전과 달리 준칙이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검 지침 등을 참조하여 가급적 구체화하였으며, 그 내용에 따라 장·절을 세분화하였다. 그 결과, 개정 전에는 총 3장 35개 조문에 불과하였으나 개정 후 3장 8절 73개 조문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준칙의 인권보호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제 및 조문내용을 수요자 관점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2018. 2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권고에 따라, 2018. 4. 16. 출석요구 시 죄명 및 피의사실 사전고지, 조서 미작성시에도 변호인 참여 배제 불가, 피의자에게 메모 허용, 심야조사 시 심야조사 허가내역을 대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분기별 보고를 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령·시행하였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8. 7. 23.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인권보호수사준칙」 및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철저준수 등을 지시하였다.

그 이후, 법무부는 2019. 12월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중요 수사 관련 보고, 압수수색 시 준수사항, 피의자 출석조사 최소화, 장시간조사·심야조사 제한,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피해자·참고인 출석요구 및 조사시 유의사항,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전용조사실 이용,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9611호)」 제정안을 마련하여 발령·시행하였다.

참고로 2019년 중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32,177명 중 17.7%에 해당하는 5,688명을 기각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구속 장소가 없는 수사관서를 포함하여 2019년에 모두 3,721회에 걸쳐 구속 장소 감찰을 실시하였다.

다. 형사보상의 신속·적정 도모

구속 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구속 피의자·피고인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2019년 피고인 보상은 2,052건에 351억 6,721만원, 무죄비용 보상은 2,180건에 46억 4,525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의자 보상은 25건에 3억 2,601만원이 지급된 바, 피고인 보상금 및 무죄비용 보상금 지급현황은 〈표 2-39〉과 같고, 피의자 보상금의 지급현황은 〈표 2-40〉와 같다.

| 표 2-39 | 2019년 피고인 보상금 및 무죄비용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피고인 보상			무죄비용 보상	합계
	소계	구속사건 무죄	재심사건 무죄 (양벌규정 및 과거사 등)		
건수	2,052	310	1,742	2,180	4,232
금액	35,167,214	7,784,763	27,382,451	4,645,255	39,812,469

※ 피고인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 구금에 대한 보상

※ 무죄비용 보상(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변호사비용, 여비, 일당 등) 보상

| 표 2-40 | 2019년 피의자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접 수 (신수+구수)	처 리			처리중 (미결정)	지급
		인 용	기 각	계		
건수	25	25	·	25	·	25
금액	326,018	326,018	·	326,018	·	326,018

※ 피의자 보상(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구금에 대한 보상

5. 미래형 선진수사시스템 구축

형사기획과 검사 정윤식

가. 기본방향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현 시대에서,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달리 사이버범죄 등 다양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범죄의 성격도 지능화·흉포화·조직화·광역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인권보장을 위해 조직·인원 정비, 시설 확충, 첨단 과학수사장비 도입 등 다각적으로 과학수사 운영체제를 확충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를 첨단화하는 등 검찰 수사업무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나. 과학수사 운영체제의 확충

검찰수사의 과학화는 1978. 3월 중앙수사부에서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한 이래로 1984. 7월 중앙수사부 과학수사운영과 설치, 1991. 8월 과학수사지도과 설치, 1998. 2월 두 과를 통합한 과학수사과를 설치하여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04. 12. 31.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해 기존의 과학수사과는 폐지되고, 2005. 4월 과학수사기획관 및 과학수사제1담당관, 과학수사제2담당관이 신설되어 과학수사 담당부서가 확대 개편된 후 2007. 3. 8. 과학수사제1담당관을 과학수사담당관으로, 과학수사 제2담당관을 디지털수사담당관으로 변경하였고, 2010. 7. 26.「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8. 4.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디엔에이 수사담당관이 추가 신설됨으로써 과학수사기획관 산하에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등 3담당관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후 2015. 2. 11. 종전 3담당관 체계로 운영되던 과학수사기획관 체제를 검사장 중심의 '과학수사부'로 승격시키면서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을 담당하는 과학수사1과, DNA·법생물·법화학 감식 등을 담당하는 과학수사2과,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디지털수사과, 사이버범죄 수사지원을 담당하는 사이버수사과와 이를 총괄·관리하는 과학수사 기획관 등 1기획관, 4과로 조직 체계를 확대·개편하였다.

특히, 과학수사기획관실이 각 과의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구조로 개편됨으로써 일선 청에 대한 과학수사 지원이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18. 2월 과학수사1과를 법과학분석과로, 과학수사2과를 디엔에이·화학분석과로 과명칭을 개정하여 담당업무가 명칭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1. 4월 부산고검에 마약감식팀을 신설하여 영남지방의 마약범죄 수사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지원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및 원거리 압수수색 지원에 따른 수사지원의 적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인천지검에 이어 2012년도에 수원지검, 2014년도에는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2017년도에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에 디지털 포렌식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 화학·마약·DNA·문서감정 분야는 2007. 10월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을 받은 이래로 2011. 10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갱신, 2013. 10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사후평가를 통과하였고, 2015. 10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갱신, 2017. 11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사후평가를 통과하는 등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

2014. 2월경에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성인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업무를 개선, 수사에 지원함으로써 해당 사건의 해결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2014. 5월경에는 현대 범죄 수사에 있어서 CCTV 등 멀티미디어 증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삭제 또는 손상된 멀티미디어 파일을 복구하여 제대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멀티미디어 복원 업무를 새롭게 도입하였고, 포렌식 오디오 신호 처리 장비, 음성 자동식별 시스템, 영상아카이빙 시스템 등 감정 장비와 수사지원장비 총 1,052점을 새롭게 도입, 배정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4. 12월부터는 급증하는 묻지마 살인, 아동학대, 존속살해, 사이비종교집단 살인 등의 강력사건에 대비하여 임상심리평가를 도입, 피의자들의 정신감정, 싸이코패스 판별, 범죄관련 성격특성 및 재비행 위험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리생리검사관 양성 교육의 국제 규격화 및 표준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국 폴리그래프협회(APA)의 교육기관 인가를 추진, 2015. 9. 7. 대검찰청 심리분석실(Korean Supreme Prosecutor's Office Polygraph Academy)은 아시아 비영어권 최초로 APA 교육기관 인가를 취득하고, 2018. 4. 2. 인가를 갱신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심리생리검사관 교육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6. 11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등 증거 녹음자료에 대한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인 표본 음성 데이터베이스 수집을 완료하였고, 2018. 11월 신원 미상 음성의 성, 연령, 지역을 추정하는 자동 화자 프로파일링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차세대 표준 영상 코덱인 H.265 코덱의 보급이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8. 11월 자체연구를 통해 H.265 영상 복원 기법을 개발하였다.

2019년도 감정처리실적은 법화학감정 34,974점(전년 대비 23.2% 증가), DNA감식 35,884점(전년 대비 7.7% 감소), 심리분석 4,011명(전국), 문서감정 9,876점, 음성분석

1,720점, 영상분석 4,944점, 멀티미디어복원 2,662점으로 2018년 대비 7.2%가 증가하였다.

게다가 2016. 1월경부터는 성충동 억제약물 투여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약물치료 확인검사(호르몬 및 상쇄약물 검사)를, 2016. 5월경부터는 심리생리검사(PCSOT:Post Conviction Sex Offender Testing)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분야는 2010. 1월 디스크분석도구인 CFT 1.0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현재 네트워크 공유 폴더 수집 기능, 윈도우 10메일 분석 기능, Virtual Box 가상 디스크 분석 기능 등을 반영하여 국세청·관세청·해양경찰청 등 28개 법집행기관에 배포된 CFT 3.8.3.을 운용중이고, 2012. 11월 이메일 전용 압수도구인 라이브 e-mail 압수도구를, 2015. 2월 손상파일 복구도구를 개발하였으며, 2015. 12월 급증하는 모바일 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에서 자체 개발한 모바일 포렌식 도구인 MFA를 전국청에 보급하였다. 또한 포렌식어카운팅 기반의 회계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2016년 중소기업 대상 회계 도구 FAST를 개발하고, 2017년에 중견기업 대상으로 연구를 추가 진행하여 118개의 부정적발 시나리오기능을 가진 통합 회계 분석도구인 FAAT을 개발, 2018. 5. 최종검증 후 배포하였고, 세계 최초로 개발 적용한 데이터베이스 삭제 레코드 복구 도구인 MSR, MYR을 지속적으로 안정화 하여 활발히 활용 중에 있다. 2019년도에는 포털사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신속하게 선별압수가 가능한 eFA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 개발·적용으로 2019년도에는 2,847건의 현장 압수수색과 8,943건의 증거분석, 78건의 법정증언(기술자문·참관 포함) 등 총 11,868건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0. 7. 26.부터 시행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강도, 성폭력범 등 강력사범에 대한 DNA감식시료 채취·감식과 DNA-DB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강력미제사건 해결 및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16. 5월 무학산 여성 등산객 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갑 등에서 DNA형을 검출하고 DNA-DB검색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함으로써 6개월 이상 일선 경찰에서 밝히지 못하였던 진범을 밝히는 성과를 이루었고, 2018. 5월 국과수 감정결과 DNA 및 혈흔이 불검출된 범행도구 바벨봉에서, 대검찰청의 재감정을 통해 피의자 혈흔 및 DNA형을 검출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강도살인사건 피의자를 구속기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8. 10월 2003 ~ 2006년 사이에 광주 및 대전 일대에서 총 10회에 걸쳐 발생한 연쇄특수강도강간 피의자와 2001년 4세, 10세의 여아를 연속적으로 성폭행한 미제사건 피의자를 DNA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특정하고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9년에는 화성연쇄살인범이 수형인등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여 범인을 특정하여 범행을 밝히는 데 일조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DNA·화학분석과에서는 검찰의 식·의약품 수사 및 다양한 수사영역의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법생물 감정실 및 화학감정 파트를 신설하여 '가짜 백수오 사건' 과 같은 가공식품, 한약재, 식물성 마약 원료의 진위여부 판단 및 강력사건 현장의 비인체 유래물에 대한 종판별을

통해 인간 DNA 외에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증거분석으로 관련 범죄 수사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중국산 발암성 항생제 닭꼬치 사건',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체중감소제 등 건강기능식품에 불법적으로 첨가될 수 있는 식품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감정 지원 및 환경사건과 관련하여 폭발성 휘발물질, 산·염기성 물질에 의한 토양·수질오염, 기름유출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미술품 위작 사건, 성충동 억제약물 투여 대상자에 대한 확인검사(호르몬 및 상쇄약물 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 5월 허위 신기술 낙뢰보호기를 조달청 등에 납품하여 28억 원 상당을 편취한 고발사건에 대한 화학감정을 지원함으로써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18. 12월부터 약물치료 집행명령에 대한 확인 검사 기법개발에 착수하여, 2019. 1월 서울, 수원, 부산 지역 보호관찰소의 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복약검사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9. 9월부터 권역별로 복약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DNA감정실은 긴급한 시일을 다투는 긴급 DNA감정이나 기존에는 DNA 확보가 어렵다고 여겨졌던 감정물에 대한 정밀 재감정을 통해 사건 수사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9년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가 없는 살인사건에서 흉기인 과도에서 피의자와 그 가족의 DNA를 검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칼을 준비하여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다가 살인하게 되었다는 피의자의 증언을 탄핵함으로써 구속 기소한 사건이나, 24시간 이내 살인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하여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속하게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긴급 감정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을 살포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제보자가 제출한 지폐 및 선거공보 등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함으로써 지문으로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DNA 정밀감정을 통해 증거물에서 피의자의 연관성 입증이 가능함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필로폰에 대한 DNA감정을 통해 제보자 진술에 의존하던 마약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필로폰 소지 범행을 규명하고 마약사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과학수사부는 2020년부터 3개년 총 50억 원의 예산으로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 기술 연구개발」이라는 명칭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첫째로, 현 '증거검증 체계의 고도화' 연구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분석결과를 도출하여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공소유지 역할에 대한 과학적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둘째로, Data의 대량화, 스마트기기 확대에 따른 압수대상의 다양화, 암호화 등 보안기술 강화, 5G, AI기술로 인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등 과학수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신 분석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계기로 과학수사부 자체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중·장기적 기술 로드맵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한편, 2011. 10월 일선 검사 및 수사관의 과학수사 활용 증대와 과학수사 활성화를 통한 SMART 수사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과학수사책임관(부장검사급), 부책임관(검사), 책임수사관을 지정하여 과학수사 관련 교육과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과학수사책임관' 제도를 시행하였고, 2015년부터 분기별(연4회)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한 우수 수사사례를 발표하고, 대검·일선 청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의 과학수사 지원을 위한 전국 청 과학수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다. 영상녹화시스템 구축

영상녹화제는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인권보장을 위해 기존의 조서작성과 달리 수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CD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1부는 원본으로 검찰청에 보관하고, 1부는 부본으로 재판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 6월 구성된 수사과학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법무연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하게 된 것이며, 2004. 3월 수사과학화추진단의 녹음·녹화팀 구성으로 본격화되었다. 2004. 3～4월 영상녹화장비를 선정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고검 소재지 5개청, 수도권 3개청(서울서부, 인천, 수원지검), 기타 2개청(청주, 울산지검)을 시범 실시청으로 지정하였다. 같은 해 5월 시범 실시청 담당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운영지침을 시달하여 2005. 6.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시범실시 하였다. 같은 해 12월 시범실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범실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토론·분석하여 영상녹화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2008.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비하여 기존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401호, 2006. 6. 20.)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대검 예규 제425호, 2007. 12. 11. 대검 예규 제519호, 2009. 11. 3. 대검 예규 제625호, 2012. 11. 3. 대검 예규 제651호, 2013. 6. 27. 대검 예규 제682호, 2013. 12. 11. 대검 예규 제711호, 2014. 3. 31. 대검 예규 제759호, 2014. 12. 29. 대검 예규 제798호, 2015. 7. 25. 대검 예규 제982호, 2019. 3. 15.)하여 전국 청에 시행하였으며, 일선 청 검사 및 수사관들의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 12월에 영상녹화조사업무 실무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2014년에는 영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피조사자의 인권을 고려한 영상녹화 조사기법 등을 연구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2014. 12월경 「영상녹화 실무 매뉴얼」을 전국청에 배포하였다.

2019. 3월부터 4월까지 주무과장이 전국 28개 지검 및 차치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영상녹화조사 현장 설명회」 개최하여 영상녹화의 필요성 및 활용기법을 공유하여 영상녹화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9. 5월에는 일선 청 영상녹화 실적 우수검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영상녹화 활용 노하우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논의 내용 중 실무 활용사례 중심으로 영상녹화조사 활용 TIP을 제작하여 전국 검사들에게 배포하였다. 2019. 6월에는 현장 설명회 일선 청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주임검사 승인 없이 결재자가 영상녹화물 열람할 수 있도록 영상물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열람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속기·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기사 운영준칙」(대검 예규 639호, 2013. 3. 11.제정, 대검 예규 제791호, 2015. 7. 16. 개정, 대검 예규 제934호, 2018. 3. 2. 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효율적인 영상녹화조사를 위해 모든 영상녹화조사실은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한 후 즉시 CD로 제작하고, 조사실 밖에서는 조사 장면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아동조사실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고 휴게실에서는 부모 등이 모니터로 편면경을 통해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신문실은 법정에 준하는 외관을 갖추고 고소사건의 경우 민사사건처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영상녹화조사실은 2004. 12월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4개청을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하여 12실을 설치·운영한 이후 2019. 12. 31.까지 전국 65개청에 총 885실을 운용하고 있다. 조사실 설치현황은 다음 〈표 2-41〉과 같다.

| 표 2-41 | 조사실 설치현황(2004 ~ 2019년)

종 류 / 연 도	계	검사 신문실	여성·아동 조사실	일반 조사실	일체형	분리형
2004	12	1	4	7	-	-
2005	42	4	9	29	-	-
2006	70	1	6	63	-	-
2007	242	9	7	226	-	-
2008	212	4	5	135	51	17
2009	77	2	2	35	26	12
2010	94	-	23	41	-	30
2011	38	-	1	24	-	13
2012	15	-	2	13	-	-
2013	10	-	2	8	-	-
2014	15	-	1	14	-	-
2015	0	-	-	-	-	-

연 도 \ 종 류	계	검사 신문실	여성·아동 조사실	일반 조사실	일체형	분리형
2016	8	-	-	8	-	-
2017	73	-	3	70	-	-
2018	3	-	-	3	-	-
2019	82	-	5	77	-	-
계	993	21	70	753	77	72

※ 전국 수사검사(99명, 2018. 12. 31. 현재) 대비 89% 설치

※ 설치 누계는 993실이나 신청사 이전 등의 사유로 현재 총 885실 활용

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DNA감식 연구사업의 수행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시료를 사전에 채취하여 DNA형을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건발생시 현장검증물과 비교·검색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검찰은 2010. 1. 25. 공포되고 2010. 7. 26.부터 시행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들의 DNA신원확인정보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취대상자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DNA인적관리시스템에 2019. 12. 31.기준 184,908명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고, 그 중 156,402명에 대한 DNA분석결과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였으며, DNA검색을 통해 살인, 성폭력, 강도 등 총 2,276건의 미제사건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수사 재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강력사범에 대한 DNA데이터베이스 자료가 훨씬 더 축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거를 통해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하는 미제사건의 현장 증거물 DNA와의 원활한 상호검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8. 6월 및 2019. 6월, 검찰은 경찰 국과수, 국방부와 함께 DNA DB 연례운영 보고서를 발간하여 법무부 등 유관기관 및 검·경등 실무부서에 배포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업무 참고 및 국민들이 DNA-DB운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DNA감식과 범죄자 DNA-DB에 사용되는 고가의 외국 상용분석키트를 대체하는 국산화 기술을 연구하고 외국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차세대 분석 기술을 국내에 조기 정착시켜 국내 DNA감식기술의 역량을 제고하고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한 'DNA감식의 국산화 및 선진화 연구사업'이 3년 계획으로 2012년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대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용역의 형태이며 총 15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서울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의 학계·

연구 전문가 그룹이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국유 특허 12건, 저작권 2권을 등록하고, 이 중 3건을 관련 업계에 기술 이전하였다. 그리고 연구논문은 42편, 학술발표는 94건이 수행되어 관련 분야에 참고·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2. 11월, 2014. 2월, 2015. 3월, 2016. 7월, 서울대, 연세대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움(ISFDL :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rensic DNA in Law)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2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DNA-DB 및 선진 DNA 감식 기술 등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6. 7월 연세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움에는 2017. 8월 ISFG 서울총회 개최를 앞두고 ISFG 부회장 메키 프린츠 박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2017. 8. 28. ~ 9. 2.까지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국제법유전총회(ISFG : International Society of Forensic Genetics)를 통해 법과학 관련 감정관 및 연구자 771명이 참석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수사의 과학화'를 지향하는 검찰 DNA감식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감식 기술 세계화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다.

2018. 4월에 개최된 제5회 법과학 DNA 국제심포지엄에는 DNA 감정관 및 경찰 과학수사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이태원 살인사건의 현장분석에도 참여한 범죄 전문가 David J Zeliff(미국)가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을 주제로 하여 증거물채취 주의사항, 증거를 기반으로 한 사건현장의 재구성 등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2019. 3월~12월 DNA 분야 자체시험연구 '차세대염기서열 분석방법(NGS)에 대한 유효성 평가연구'를 수행하여 최신기법을 감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하였다.

2019. 4월과 9월에 개최된 한국법생물연구회는 2014. 4월 대검찰청 등 11개 유관기관이 각자 전문 분야별로 축적된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발족하였고, 그간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원산지와 종판별을 통한 관세포탈 방지, 특정 동·식물의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2회 연구회까지 1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모범적인 정부 기관 간 협업 모델로 발전하였다.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11회 연구회에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현황 및 생명윤리적 관점에서의 논란'이라는 주제로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국립 종자원에서 개최한 12회 연구회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대검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같은 감식 기관들이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한 여러 협력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서는 법생물연구회에서 구축된 각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사에 필요한 관련분야 전문가 추천도 지원하고 있다.

마.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따라 수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중요성이 확대되고 피의자의 인권

보장,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 증거취득 후 진술조사」로 검찰수사력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05. 4월 대검찰청에 과학수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2005. 5월 과학수사제2담당관실에서는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 증원,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용 장비 및 시설 확충,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센터 신축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분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2006. 3월 설계 발주를 거쳐 2006.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8. 10. 31. 대검찰청 부지에 지상6층 지하1층(건물연면적 7,844.88제곱미터, 공사비 143억 8,200만원) 규모의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준공되었다. 그 뒤 마약감정실을 제외한 과학수사기획관실 산하의 모든 감정·감식·분석실이 디지털포렌식센터로 집중되어 법화학 감정·문서감정, 심리·영상·음성분석 뿐만 아니라 화재수사·DNA 감식 등 명실공히 검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과학수사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후 2012. 11월 단순히 수사지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감정기법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선도적 과학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명칭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변경하였고, 2013. 8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개소하여 디지털 포렌식 도구 및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 등 개발에 집중하고 안티포렌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전방위적인 감정·감식·분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하나의 과학수사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 증거물에 대한 신속·정확한 분석으로 일선 수사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바. 과학수사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1) 과학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

대검과 일선청에 분산 관리중인 과학수사장비의 체계적 관리 필요와 수사장비 관리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06. 7월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수사장비관리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06. 8월 수사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6. 9. 1. 시범운영을 시작하면서 각급 검찰청의 수사장비관리대장을 토대로 전국청 수사장비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또한 전국청 수사장비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사장비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대출·회수 등 업무처리 메뉴얼을 제작·배포 하였다.

이 시스템은 전국청의 수사장비 관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권한이 허용된 대검

또는 일선청 장비관리 담당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실시간으로 장비보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기존 수기 기재 장부를 통해 관리하던 수사장비 대출·회수업무를 바코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정확성을 높였으며, 대검의 메인관리자가 수사장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과학수사기획관실 홈페이지에 연동시켰으며, 기존 과학수사기획관실 홈페이지에 장비지원 게시판을 신설하여 일선청 장비지원 요청 및 문의에 즉각 응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수사 활성화 및 수사장비 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 6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의 노후와 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사장비 활용 커뮤니티 제공, 통계 및 조회, 관리 기능 강화 등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0. 10월 성능 및 기능이 더욱 개선된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2)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시스템 구축

2006. 6월 디지털 압수수색 및 분석 지원요청, 디지털 관련 자료, 각종 공지사항, 통계 활용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여 실무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수사지원업무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하고, 수사질의어프로그램이 분석관의 PC에서만 구동되어 대용량 파일 등에 대한 검색이 어렵다는 등의 서비스 불만이 초래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포함시켜 「전국 디지털수사망 구축사업(D-NET)」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하여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을 연계하였다.

이와 함께 대검, 각 거점별 디지털포렌식팀(서울중앙, 수원고검,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 대전고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과 일선 수사팀 간의 효율적인 수사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지원업무관리, 연구개발관리, 디지털수사장비관리, 통계관리, 외부전문가 관리, 운용시스템 관리 등을 위한 「디지털수사 통합 업무 관리시스템(DFIS II)」, 분석결과의 온라인 송부 및 검색, 이메일, 회계데이터, 전자결재 데이터,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통합분석할 수 있는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 대검찰청과 각 지역 거점청의 디지털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 및 폐기가 가능한 중앙집중형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디지털수사팀 간의 분석·협업을 위한 「디지털수사화상협업시스템」,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이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디지털포렌식 온라인교육시스템」, 위 시스템들의 체계적인 보안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수사망 인프라시스템」 등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2017. 8월 「디지털증거 확보(송치)체계(KD-NET) 구축사업」을 최종 완료하여, 1차 참여기관(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2차 참여기관[(경찰청(대전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3차 참여기관[(경찰청(서울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과 디지털증거데이터패키지 국가 표준(KS X 1220)을 활용한 디지털증거의 무결한 송치·수리 등, 처리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체계를 구축하였다.

검찰·경찰 간 디지털증거 송치를 위하여 네트워크(초고속 국가망)를 연결하였고 검찰·특사경은 국가행정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디지털증거를 송치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 디지털포렌식팀은 5개 고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및 6개 지검(서울중앙, 수원, 인천, 서울남부, 창원)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폭발적인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분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7. 12월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2019. 3월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수원지검 포렌식팀이 수원고검 포렌식팀으로 이전하여 6개 고검 및 6개 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운영 중이다.

2018년에는 디지털증거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국가형사사법기록관'에 디지털증거 백업 센터를 구축하여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2019년도에는 디지털 증거의 생애주기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와 긴밀하게 연동, 디지털증거물의 등록 및 폐기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또한 급격하게 발전하는 IT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디지털증거분석 체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검 자체 개발 모바일분석도구(MFA)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기능 개선, 압수된 대용량 디지털증거에서 범죄 단서를 식별할 수 있는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 회계부정 적발 시나리오 기반의 대용량 회계데이터 분석 기법 연구 및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고 있다.

3)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의 운영

법화학, 마약, DNA, 문서 감정분야에 있어서 감정물의 접수에서부터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서 작성 및 발송까지의 세부사항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하는 감정정보관리 시스템은 감정절차의 연속성 및 무결성(chain of custody)을 담보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개발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사용되고 있다. 2018. 10. 29.에는 수사기관이 대검 과학수사부에 의뢰하는 감정물에 대한 접수를 일반 우편물과는 별도로 NDFC에 신설된 중앙감정물접수실에서 전담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도록 절차를 개편하였으며, 이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감정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을 2018. 11. 1. 개정하여 중앙감정물접수실의 운영 근거마련, 감정물 이동의 소급성을 관리하는 감정의뢰서 양식 개정, 감정물 채취 및 이동 중 발생한 훼손된 감정물에 대한 반려 조항을 강화하는 등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9. 10월 정확한 감정의뢰 방법 교육을 위해 '감정의뢰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검찰방송 온라인 교육자료에 게시하였다. 중앙감정물접수실의 신설에 따른 감정의뢰 절차의 변화 및

DNA 감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DNA감정 의뢰 시 감정물 확보부터 포장까지의 유의사항, 감정의뢰서를 작성하는 방법, 지문-DNA-법화학 공동 감정 의뢰 방법 등을 동영상 자료와 설명 자료로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감정물의 훼손 및 오염을 방지하고 감정물의 채취 단계부터 감정 완료시까지 감정물의 소급성을 유지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사. 검찰업무 정보화

1) 검찰업무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

검찰업무 정보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0. 2월 「검찰 정보화 장기발전계획(ISP)」을 수립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2000. 7월부터 단계별로 지식관리시스템(e-Pros), 검사실 수사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고, 2007. 12월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공판지원 시스템과 영상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8년 영상물관리시스템 확대 구축과 전화통화 녹음시스템 등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정보보호를 위해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에는 대전고·지검 등 6개청, 2017년에는 서울고검 등 10개청, 2018년도에는 대구고·지검 등 총 13개청, 2019년도에는 광주고·지검, 전주지검, 수원고·지검 등 총 5개청에 망분리를 적용하였다.

검찰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향후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 및 신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여 검찰 정보통신망의 대역폭을 약 3배 이상 확대하였고, 각 고검의 관내 지청 정보통신망을 이중화 구성하여 네트워크 장애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정보유출 위험 방지 등을 위한 대용량 자료 임시보관소(1인 20GB)를 구축하였다.

2016년 기존 기계식 팩스의 자료 유실·훼손 방지와 팩스 관련 업무 경감을 위해 대검찰청 등 21개청에 전자팩스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등 44개청으로 확대하여 전국 65개 검찰청에 전자팩스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8년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팩스시스템을 이중화하여 도입사업을 완료하였다.

검찰 지식의 효율적인 축적과 협업 기반 강화를 위해 차세대 검찰 지식포털을 구축(2014년)하고, 검찰 지식 백과사전인 프로스피디아를 구축(2014년)하여 운영 중이며, 보다 효율적인 지식생산 및 활용을 위해 2018. 1월 e-PROS 내 지식저장고와 프로스피디아를 일원화하였다.

한편 전자결재시스템에서는 문서관리 기능을 도입(2010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검찰 메신저 시스템 또한 새롭게 구축(2013년)하여 검찰의 소통문화를 강화하였다. 검찰 메일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메일용량을 증설(3GB)하였고, 모바일에서도

접근 가능한 검찰 모바일 메일시스템도 오픈(2016년)하였다. 2019. 1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된 신규 전자우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8. 4월『경조사 알림 등 지침』개정에 따라, 퇴직자의 혼례 및 상례를 게시할 수 있는 퇴직자 경조사 게시판을 신설하고, 2018. 6월 성추행·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창구로 작성자가 익명으로 게시글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만 볼 수 있는 '#WeTogether' 게시판을 신설하였다.

검찰청 홈페이지는 1996. 3월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별 홈페이지 구축(2002년), 민원증명발급 서비스 제공(2005년),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개선(2007년, 2008년) 등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찰 내·외부 의사소통 채널 및 검찰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찰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를 구축(2007년)하였고, 모바일 홈페이지도 구축(2011년)하여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 사전정보공표 대상 메뉴를 추가(2014년)하였다.

2019. 2월 대검찰청 등 전국 66개청 홈페이지,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홈페이지, 역사관 체험관 홈페이지의 메뉴 및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향상하였다.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 추진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형사사법업무를 표준화·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민중심의 e-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21세기형 e-형사절차 구현을 목표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수사 프로세스 348종, 재판 프로세스 260종, 집행 프로세스 380종 및 압수업무 등 기타 프로세스 34종 총 1,022종의 형사사법업무 프로세스를 수작업 기반 업무 환경에서 전자적 업무 프로세스로 대체하고, 형사사법 문서 총 1,361종의 서식을 표준화하여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형사사법기관이 사용하는 공통 코드 25종을 표준화하여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형사사법정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의 약 74개 접점을 대상으로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약 48종의 민원 업무에 대하여 온라인 발급·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형사사건처리 진행상황조회 서비스, 재판서·통지서 조회, 벌과금 조회·납부 서비스 등 총 11종의 대국민 형사사법 통합 서비스를 2010. 7월부터 개시하였다.

2008. 12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사업의 쟁점에 대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도출하고, 법무부 장비 도입을 위한 4차 사업을 발주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각 기관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운영하되, 대국민서비스시스템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통시스템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운영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09. 2월 기관 간 정보공동활용의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합의를 도출하였고, 2009. 12. 29.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10. 5.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0. 7. 12.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약식사건 전자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대국민 통합포털 신설 등으로 검찰 사건처리 업무 효율화와 국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2011년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안정성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조회 및 영장정보 조회 권한 부여에 대한 승인제 도입 등 권한관리 체계를 정비하였고, DB접근제어 도입 및 사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다.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발맞추어 팀제 수사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 사건부 기능 개선, 직접경정 및 겸방 업무 시 검사실별 시스템 접속 방식 개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미제사건부 개선, 재기·이송 시 기록목록 및 증거목록이 연계되도록 하고 사용자가 직접 기록목록 등 편집·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 개선, 영장집행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전자팩스 기능 향상, 공무원연금공단 연계를 통한 공무원 신분확인 자동화 기능 구현으로 공무원범죄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신속한 통지, KICS에 입력한 출국규제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및 체포·구속통지서, 노역자유치집행 및 형집행통지서, 항고사건 처분결과통지 등 매년 송달건수가 많은 통지서 선정 후 우정사업본부와 연계하여 우편송달 업무를 전자화 처리, 적용법조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향상된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판결문·결정문 검색기능을 개선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등 업무에 유용한 컨텐츠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에도 벌금납부 사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납부내역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한 벌과금 수납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수기 입력으로 인한 과오납 등의 민원 및 사고 발생요소를 차단, 민원인의 민원서류 신청 시 수기 작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구술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에 기여하였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지휘·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기능 구현, 주요사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 등 주요정보 통합검색 기능을 구축, 형사사건 및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관리시스템' 및 '강력사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사력 향상을 도모하였고, 범죄피해자 권리강화를 위해 피해자지원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직관사건부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직관사건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2019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감인 소환

또는 검사 직접청구 구속영장 발부·기각 시 변호인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는 기능 구현,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 관련 기능 등 신설하였고, 민원 관련 시스템 장애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민원인 통지 장애예방체계를 구축, 벌과금 수배자의 납부사실을 인지하여 불법구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재산형 인치 업무 개선, 피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처분결과 통지방식 개선, 특사경 송치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용노동부 송치사건 정보를 온라인으로 유통함으로써 업무 전자화 및 절차 간소화에 기여하였다.

3) 검찰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검찰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날로 지능화하는 DDoS 등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기초하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291호, 2012. 1. 2.)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2012. 12월 검찰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완료하였고, 2013. 1월부터 본격적으로 대검찰청 및 63개 일선청에(현재 65개청) 대한 사이버위협 정보를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검찰업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관제를 통하여 대용량의 로그정보 수집 및 다양한 상관분석으로 각종 사이버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관리 능력을 강화하였다.

검찰정보시스템의 중요 업무자료 유출 예방을 위해 각종 정보보호시스템(백신, 방화벽, IPS, 유해사이트차단, 인터넷 자료저장방지, DB 및 서버 접근제어, 스팸메일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킹메일의 유해성 분석·대응 및 네트워크와 전자우편을 통한 APT공격 차단, 악성코드 유입 탐지 및 차단을 위한 악성행위탐지시스템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업무용 PC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정보보호 교육(알면 편한 보안상식 웹툰 제작·인트라넷 게시) 12회, 가상의 악성메일을 이용한 해킹메일 모의훈련 6회 실시, 보안뉴스레터·보안권고문 등 최근 보안이슈를 e-PROS 게시판을 통해 신속히 전달하는 등으로 사용자 정보보안 의식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는 노후된 보안관제 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전한 관제 환경 마련 및 사이버위협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직원들의 보안의식 고취 및 활성화 방안으로 해킹메일 신고 우수직원을 선별하여 전직원에게 공지하고 격려하였다.

또한, 망분리청 인터넷망의 서버영역 보호를 위한 방화벽을 설치하여 보다 강화된 시스템 보호 환경을 마련하였다.

각종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PC 해킹 차단, 악성코드 감염 방지,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보안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각종 정보보호 규정 정비 등 노력을 통해 안전한 검찰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사이버공격의 양상은 국가 주요 산업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만큼 대담해지고 국민생활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피싱, 스미싱, 파밍 등 사이버범죄 수법 역시 한층 진화하여,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사이버범죄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검찰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된 업무와 기능을 추진·관리함으로써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1. 11. 1. 대검찰청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설치하였다.

사이버범죄수사단은 한수원 대상 사이버테러 사건을 계기로 2015. 2. 11. 과학수사부 출범과 함께 사이버수사과로 정식 직제화 되었고, 공공전산망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문적·조직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수사 필요분야 증가에 따른 일선청 수사역량 확대를 위하여 서울동부지검을 사이버범죄 수사 중점청으로 지정하여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대중화로 거의 모든 수사 영역에서 사이버 증거자료 수집·분석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수사과는 일선 검사·수사관에 대한 전문교육,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연구·개발, 일선 사이버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을 통해 검찰 전체의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해외 서버를 경유하여 공격하는 수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므로, 국가 간 신속한 공조가 수사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수사과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세계 86개국이 가입하여 활동 중인 G7 24/7 High Tech Crime Network의 한국 접촉점으로서 국내 수사기관을 대표하여 국제공조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7 24/7 Network를 통해 회원국들은 실시간 정보교환 및 소멸되기 쉬운 사이버 증거보존 요청을 진행함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2019. 11. 사이버수사의 국제공조 다변화를 위해,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 유로폴의 사이버범죄센터(EC3) 등을 방문하여 공조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2019. 11. 20.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역량강화 허브 설립을 위해 대검찰청-월드뱅크-GFCE, 3자 MOU를 체결하였다. 대검은 허브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에 대한 조치로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센터에 허브 사무국을 개소하였다. 향후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아·태 국가들과 협력 강화와 대검의 우수한 사이버수사역량을 전파할 계획이다.

사이버수사과는 급증하는 중국발 사이버범죄에 대한 공조 지연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어려움에 따른 장기·영구미제 심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반기별 「한·중 수사협의체 회의」에 참석, 지속적인 사이버현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편 중국 공안부 사이버안전보위국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실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주한 미 FBI 사이버협력관과 매월 협력회의 실시 등 사이버범죄정보 교환 및 공조현안 논의를 통해 미국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주요 보안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가적 사이버테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분석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연구·개발로 구축된 악성코드시스템 THEMIS는 악성코드에 대한 추출, 분석, 범죄자 추적 등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12년 구축 이후 매년 고도화를 거듭하며 악성코드 제작·배포 사범 단속을 위한 검찰수사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및 스미싱 범죄 등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신종 악성코드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증거 분석을 위하여, 모바일 기반 악성코드 등 신종 악성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순차적인 고도화 사업을 통하여 구축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는 일선 청에서 악성코드분석시스템에 접속하여 분석결과(관련 IP·도메인 등)를 손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2017년에는 기존 악성코드 분석 시스템의 데이터와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 위협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2018년에는 사이버위협자원의 정보 중 국내 위협정보를 선별하고, 정규화 등을 통해 수사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불법 촬영물 유포·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웹 자동화 분석, 동영상 콘텐츠 특정점 추출 등)을 개발하여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검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사전 탐지하여 채증 및 차단을 자동화한 시스템을 2013. 3월경에 자체 개발하여 2019. 12월까지 총 47,828건을 차단하였다.

사이버수사과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신종 사이버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화폐 관련 정책연구과제('국내 환경에 맞는 비트코인 주소 클러스터링 기법연구')를 수행하였고, 불법 촬영물 피해자 권리 구제 확대를 위해 인터넷상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불법촬영물 자동탐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과기정통부 지원 R&D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차세대 보안분야)에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대상과제가 최종 선정되어 향후 4년간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사이버수사과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탁월한 전문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와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상을 구현하고자 힘쓰고 있다.

자. 감정·분석기법 특허출원 및 등록

최근 들어 특허기술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학수사부는 특허를 통해 과학수사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최신 감정·분석기법개발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 분야는 분광법을 이용한 볼펜 서명 감식 방법(2011. 10월), 분광법을 이용한 인주 및 서명 감식 방법(2012. 5월), 음성분석 분야에서는 신원확인을 위한 발성유도 방법 및 장치(2011. 12월), 오디오 파일의 위변조 검출 장치(2014. 4월), 주파수대역의 분석을 통한 디지털오디오파일의 위변조 검출방법(2015. 10월), 녹음 인증 시스템 및 그것을 이용한 녹음 인증 방법(2016. 1월), 음질특성을 이용한 화자인식장치 및 방법(2017. 11월), 영상분석 분야에서는 렌즈 왜곡 보정에 사용된 보간 패턴 검출을 통한 촬영카메라 식별 방법 및 장치(2013. 1월), 멀티미디어 복원에서는 손상음성파일 복원 장치 및 그 방법(2014. 11월), 녹음 인증 시스템 및 그것을 이용한 녹음 인증 방법(2016. 1월),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이미지 정렬 장치 및 그 방법(2016. 11월), 손상된 멀티미디어 파일의 음성 복원 장치 및 그 방법(2017. 6월), 영상녹화분야에서는 영상 녹화 조사 시스템(2011. 10월)을 특허 등록하였다. 심리분석 분야에서는 심리생리검사 관리시스템(PMS: Polygraph Management System)(2015. 10월)을 저작권 등록하였고, 피검사자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뇌파분석 방법 및 그 장치(2017. 11월)를 특허 등록하였다. 영상녹화분야에서는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컴퓨터 모니터(2010. 2월)와 컴팩트 디스크용 라벨지(2010. 3월)를 디자인 등록하였다.

디엔에이·화학분석과 법화학감정 분야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암페타민 및 대마 유도체의 다성분 동시 분석방법(2008. 7월),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디메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유도체의 다성분 동시분석방법(2009. 6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모발 중 암페타민 유도체 및 케타민 대사체의 다성분 동시분석법(2009. 11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소변 중 60종 이상 마약성분의 다성분 동시분석법(2010. 12월), 대마 대사체 분석방법(2011. 4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기체상 혼합물로부터 목적물질의 선택적 분취방법(2012. 2월) 메탐페타민의 신규한 제조경로 특정 불순물(2013. 1월), 면역 반응 측정법을 이용한 모발 중 마약 성분 신속 분석법(2014. 3월), 고온 기체상 크로마토그래프 분석법을 이용한 발기유발제의 고감도 신속 검출법(2014. 7월), 화학적 프로파일링에 기초한 메스암페타민의 분류기법(2014. 8월), 탄소수 6이하의 알코올류 다성분 동시분석법(2015. 7월), 혈액 중 성충동 억제약물 및 남성호르몬 다성분 동시분석법(2015. 8월), 하이드록시펜터민, 펜터민 및 메펜터민 동시 신속분석법(2017. 3월)을 특허 등록하였다. DNA-DB운영 및 DNA감정분야에서는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에스티알 유전자들로 구성된 콰드루플렉스 피씨알시스템(Quadruplex PCR system)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00. 10월), 한국인 집단에서 변별력을 가진 16개의 짧은 반복 단위 유전좌위들 및 성염색체 유전좌위를 포함하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유전자 감식방법(2011. 1월), 체액식별용 키트 및 이를 이용한 체액 식별방법(2012. 12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을 이용한 분석대상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4. 10월), miRNA를 이용한 체액 식별용 조성물·키트 및 체액 식별방법(2014. 10월), DNA메틸화 마커를 이용한 체액식별방법·체액 식별용 조성물 및 키트방법(2014. 11월), NGS기반 인간객체의 상염색체 분석방법(2015. 6월), 마약성 양귀비류의 판별방법(2015. 9월)을 특허등록 하였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인간객체의 확장 상염색체 STR분석방법(2015. 10월), 인간객체 염색체 상의 STR분석방법 및 이를 이용한 분석키트(2015. 10월)를 특허 등록하였으며, STR 유전자와의 분별 선행 증폭을 통한 유전자감식 방법(2015. 7월)을 특허 출원하였다. 또한 법과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시도된 생물종 고유의 DNA바코드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법생물 디엔에이 바코드 수사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프로그램(2014. 6월)을 저작권 등록하였다. 2018. 8월에는 저명한 국제학술논문지인 Electrophoresis에 한국인에 대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를 활용한 STR분석 결과가 게재 되었다.

혼합형 DNA프로필 분석을 위해 자체시험연구를 진행하였고 과학수사학회지에 논문 'EuroForMix를 이용한 혼합형 DNA프로필 분석연구'를 발표하였다.(2019. 9월)

디지털수사과는 암호분석 분야에서 다수의 암호설정 파일에 대하여 암호를 한 번에 해제할 수 있는 '다수의 이기종 암호파일에 대한 자동화된 패스워드 해제시스템 및 방법'(2011. 12월), '착발신 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는 통화 내역 추출-추적 시스템 및 그 방법'(2013. 3월), '디지털 증거 분석시스템 및 그 방법'(2013. 7월), '디지털 증거 수집방법, 그리고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하는 컴퓨터 판독 가능 기록매체'(2013. 11월), 문서의 암호를 해독하는 'ASIC 칩을 이용한 암호 탐색 장치'(2016. 4월)를 발명하여 특허 등록,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는 '문서 파일의 포렌식 분석 방법 및 시스템'(2014. 3월), 이메일, 전자결재, 회계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손상된 레코드를 복원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5. 8월)과 'DB2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 및 장치'(2015. 12월)를 디지털증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디바이스에서 사용자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이터 획득장치 및 방법'(2015. 10월)을,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손상된 레코드를 복원하는 'Mysql MyISAM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6. 9월), 'Mysql INNODB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대한 범용 복원 기법'(2016. 10월),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는 부분 데이터 획득 장치 및 방법'(2017. 10월)을 특허 등록하였다.

6. 테러 등 국가안보위해 세력 엄정대처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공공형사과 검사 전철호

가. 추진배경

2019년 법무·검찰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헌법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테러 범죄 엄정 대처

우리나라는 IS 등 국제테러조직의 직접적 위협은 없었으나, 2019. 11. 한국 국적 선박이 예멘 근해에서 후티반군에 나포되어 선장 등이 억류 후 석방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국민·시설 대상 테러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는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준 혐의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테러위협이 존재하여, 이에 따른 '테러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하였다.

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사

北 정찰총국 공작원으로 상부선과 수차례 회합·통신하며 공작금을 수수하고 北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잠입한 사범을 구속 수사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글을 게시한 사범을 기소하였다. 신중한 입건,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국가보안법 남용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국가안보 수사체계를 운영하여 2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입건하고 그 중 1명을 기소하였다.

라. 인권보장 철저

또한 안보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심야조사 자제, 영상녹화 활용 등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비진술증거의 확보 시에도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나아가 경찰의 장기 내사 사건을 점검하여 입건 가능성이 낮은 사건들은 적극적으로 종결토록 지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건 위주로 안보수사 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내사 장기화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였다. 이와 함께 유관 안보수사기관인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안보지원사령부 수사관을 상대로 적법절차 및 증거법 준수 교육인 '안보수사관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친화적 수사방법을 전파하였다.

7.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및 침해된 인권 회복 노력

공공형사과 검사 전철호

가. 추진배경

법무·검찰은 2017년부터 과거사 재심사건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인권침해 등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발굴하여 직권 재심을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나. 지속적 직권재심 청구

2019년에도 1972년 계엄법위반 사건 관련자 등 12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여 2017년 이후 총 487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였다.

특히 검찰이 종전 결정을 변경해주지 않으면 형사보상·배상 등의 권리구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점검·발굴하여, 우선 긴급조치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이 된 12명에 대해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12명 모두 피의자보상을 신청하여 피의자 보상을 완료하였다.

다. 진술규명 및 인권회복 노력

직권 재심 사건 외에 당사자 청구 재심 사건도 공소유지 중심에서 벗어나, 재심사유가 명백한 사건은 재심개시 의견을 개진하고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며, 불법구금 등 적법절차 미준수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를 구형하고, 상소권 역시 적정하게 행사하는 등으로 진실규명과 침해된 인권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8.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공공형사과 검사 김종욱

가. 추진배경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4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 단위 선거로 금품선거사범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공직선거와 달리 금품선거사범이 근절되고 있지 않는 추세를 보여 왔고, 초기부터 과열 조짐을 보였다. 또한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019.하반기부터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2019년 연중 다수의 선거사범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노력

조합장선거에 대비하여 '선거범죄 수사전담반'을 가동, 금품선거사범 적발 등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2019. 10.부터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선거전담반을 가동, 비상근무체제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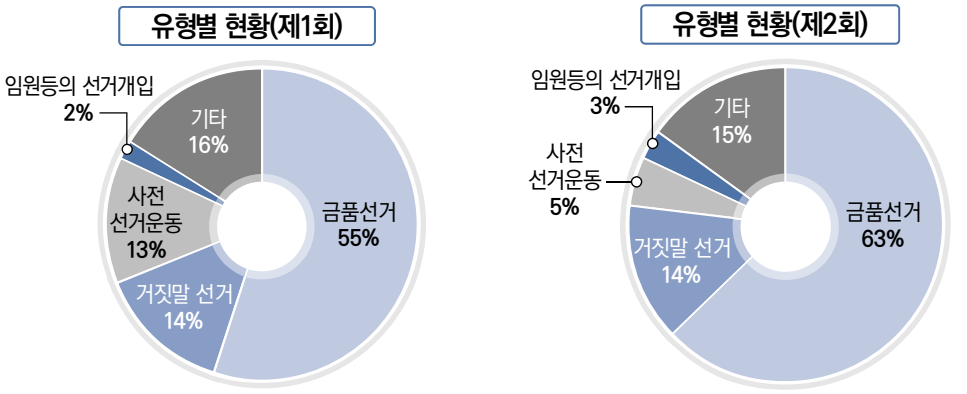
다. 수사성과 분석 및 선거범죄 적극 대처

제2회 조합장선거는 제1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 입건인원(제1회 1,334명 → 제2회 1,303명) 및 당선자 입건 및 기소인원(제1회 262명 입건, 157명 기소 → 제2회 229명 입건, 116명 기소)은 감소하였으나,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제1회 737명, 55.2% → 제2회 824명, 63.2%)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여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금품선거사범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공직선거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합장 선거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선거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검찰은 이러한 선거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위탁선거법 벌칙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적극 대처하였다.

나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비상근무 체제를 실시하고, 최근 선고된 판례 분석 등을 반영한 선거사범 양형기준 점검 및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서 개정 등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 그림 2-80 | 조합장선거 사범 유형별 현황



9. 노사 간 균형 있고 공정한 법집행

공공형사과 검사 홍희영

가. 추진배경

법무·검찰은 2019년도에도 노사 간 균형있고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각종 산업재해 사건도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나.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 및 공소유지 성과

삼성그룹 노조와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1년여간 공판 수행을 하여 2019. 12월 미래전략실 부사장 등 삼성그룹 임원급 6명 실형 선고를 받아내는 등 대부분의 죄목에 대해 1심 유죄 선고를 이끌어 내었다. 판결 선고 후 '19. 12. 18. 삼성은 "국민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취지로 공식사과 하였고 이후 삼성그룹 내에 노조가 설립되는 등 노사관계 변화 및 헌법상 노동3권 보장에 기여하였다.

피의자가 고소한 임금체불 송치사건을 수사하던 중, 오히려 고소인인 피의자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업체의 사정을 악용하여 허위 이력서로 취업한 후 노동청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편취한 것을 밝혀내고 구속 기소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영덕 수산물 가공업체의 폐수 저장탱크에서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질식·사망한 산업재해 사건에서 경찰·노동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사지휘함으로써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업주를 구속 기소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으로 유사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임금체불 엄정대응 및 전문성·공정성 제고 노력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등 임금체불에 엄정히 대응하였고, 노동법 아카데미·노동법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업무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노동수사전문자문단을 발족·운영하여 노동사건 수사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동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향상시켰다.

| 그림 2-81 | 노동법 아카데미·노동법 공동 학술대회 개최



〈제2기 노동법 아카데미〉



〈대검찰청·노동법이론실무학회 공동학술대회〉



〈노동수사전문자문단 위촉식〉



〈노동수사 전문자문단 회의 사진〉

10.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

공공형사과 검사 홍희영

가. 추진경과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처하였다.

나. 불법폭력집회·시위 건수 추이

최근 '톨게이트 노조의 직접고용 촉구 집회', '민노총 국회 앞 폭력집회', '공사현장 自노조원 고용촉구 집회' 등 다수의 불법집회·시위 발생에 따라 현행범 체포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표 2-42 | 최근 5년간 불법·폭력 집회시위 추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주요 집회·시위(건)	11,311	11,061	10,438	9,613	13,864
집회신고(건)	127,482	83,421	68,905	81,358	129,642
현행범 체포(명)	1,318	616	270	112	342
입건자(명)	3,318	3,425	1,440	602	1,515

* 주요 집회·시위란 경력이 배치된 집회·시위를 말함

(출처 : 경찰청)

| 표 2-43 | 2019년 발생 주요사건 현황

구 분	주요사건	비 고
안보사범	•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네팔인으로 위장 잠입 등 사건	서울중앙지검
	• 국내체류 외국인의 테러단체 자금지원 사건	서울중앙지검
선거사범	• 축협 조합장 선거 관련 조직적 금품 살포 사건(25명 인지, 4명 구속)	광주지검
	• 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 조직적 금품 살포 사건(22명 인지, 3명 구속)	부산서부지청
노동·집단사범	• 산업현장 공갈사건	인천지검
	• 민주노총 국회앞 폭력 집회 사건	서울남부지검

11. 국제공조를 통한 사회·경제 질서의 엄정 확립

국제형사과 검사 박성진

가.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국제수형자이송 관련 국제협력강화

1) 개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이른바 국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외국에서 죄를 범하고 국내로 잠입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테러, 마약밀매, 인신매매 등 국제조직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991년 범죄인인도조약, 1993년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최초로 체결한 이래, 2011년 유럽평의회(49개국)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대폭 확대되었으며, 최근 2019. 10. 23. 마카오와 범죄인인도조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현재 범죄인인도조약은 80개국(발효 77개국), 형사사법공조조약은 77개국(발효 74개국), 수형자이송조약은 74개국(발효 72개국)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전 세계 주요국들과 해외도피 범죄인의 강제송환과 수사공조에 관한 협력 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국제사법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범죄인인도

2019. 12. 31. 현재 우리나라는 80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여 그 중 77개국과 발효된 상태이며, 75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여 74개국이 발효된 상태이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제도 시행 29년을 맞아, 그간 축적하여 온 제도적 기반과 경험을 집약하여 주요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강제추방 등 국가별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송환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표 2-44 | 범죄인 송환 현황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수	41명	45명	48명	55명	74명	70명	85

3) 형사사법공조

형사사법공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2019년 중 외국에 총 375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하였고, 외국으로부터 235건의 형사사법공조요청을 받아 처리하였다.

| 표 2-45 | 형사사법공조요청 현황

(단위: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 요청	109	181	236	220	240	320	375
외국 요청	80	80	111	137	160	195	235

4) 국제수형자이송

2005. 11월 국내에서 발효된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의거하여, 2006년에는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등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9년 심사대상자 14명 중 국내이송 신청자 8명, 국외이송 신청자 1명에 대하여 이송승인을 하였다. 한편 2012. 12. 18. 한-태국 수형자이송조약, 2014. 6. 13. 한-홍콩 수형자이송조약, 2015. 10. 22. 한-쿠웨이트 수형자이송조약이 각 발효되는 등 국제수형자이송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나라는 7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 표 2-46 | 국제수형자 이송 현황

구 분 / 연도별	국내이송	국외이송
2013	5명	4명
2014	12명	5명
2015	11명	1명
2016	3명	1명
2017	1명	4명
2018	2명	6명
2019	6명	3명

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업정처리

1) 개요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은 1966. 7월 체결되어 1967. 2월부터 시행되어 온 바,

1991. 2월 합의 양해사항 중 일부를 개정한 이후, 2000. 8월 서울에서 SOFA 재개정 협상을 시작하고, 2000. 12. 28. 개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였다. 개정된 협정은 2001. 2. 28. 국회 동의를 거쳐 2001. 4. 2.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 주요 개정 내용은 강간, 살인범에 대한 현행범이나,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조기 신병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형사사법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었고, 미군 등을 상대로 한 민사청구권의 실효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2) 사건 처리 현황

SOFA 합의양해사항의 개정 이전에는 미군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이 1.0% 미만이었으나, 2002년 6.9%, 2003년 30.9%, 2004년 24.3%, 2005년 23.7%, 2006년 35.7%, 2007년 39.6%, 2008년 46.2%, 2009년 49.3%, 2010년 61.8%, 2011년 65.9%, 2012년 76.2%, 2013년 69.5%, 2014년 75.6%, 2015년 70.9%, 2016년 91.9%, 2017년 74.4%, 2018년 97.1%, 2019년 67.9%로 꾸준한 재판권 행사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사안이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미군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 사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폭력사건이 44.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사건에 대해서 내국인과 같은 처벌기준을 적용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미군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419건, 2011년 397건, 2012년 344건, 2013년 365건, 2014년 405건, 2015년 387건, 2016년 388건, 2017년 374건, 2018년 351건, 2019년 395건으로 매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 2-47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통계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발생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	주한미군지위협정사건 전체범죄에 대한행사
		총계	미측 관할 제외 총계	미군인 계	미군인 미측 관할	미군인 공소권 없음	미군인 미측관할 및 공소권 없음 제외	미군속 등		
'10	건	419	399	316	20	131	165	103	102(61.8%)	205
	명	491	471	380	20	148	212	111	111(52.4%)	222
'11	건	397	380	298	17	158	123	99	81(65.9%)	180
	명	456	439	341	17	177	147	115	92(62.6%)	207
'12	건	344	322	264	22	158	84	80	64(76.2%)	144
	명	379	357	294	22	175	97	85	70(72.2%)	155
'13	건	365	354	273	11	134	128	92	89(69.5%)	181
	명	403	392	305	11	163	131	98	98(74.8%)	196

구분 / 연도별		발생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	주한미군지위협정사건 전체범죄에 대한행사
		총계	미측관할 제외 총계	미군인				미군속 등		
				계	미측관할	공소권 없음	미측관할 및 공소권 없음 제외			
'14	건	405	388	286	17	146	123	119	93(75.6%)	212
	명	433	416	300	17	152	131	133	97(74.0%)	230
'15	건	387	370	265	17	138	110	122	78(70.9%)	200
	명	419	402	289	17	152	120	130	82(68.3%)	212
'16	건	388	339	293	49	170	74	95	68(91.9%)	163
	명	426	377	326	49	198	79	100	71(89.9%)	171
'17	건	374	340	265	34	153	78	109	58(74.4%)	167
	명	415	381	295	34	169	92	120	62(67.4%)	182
'18	건	351	312	296	39	186	71	55	69(97.1%)	124
	명	378	339	319	39	202	78	59	70(89.7%)	129
'19	건	444	417	395	27	212	156	49	106(67.9%)	155
	명	477	450	426	27	232	167	51	107(64.1%)	158

※ '공소권없음'은 미군인 범죄로 집계는 되었으나,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교통사고의 종합보험 가입의 사유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임

※ 2003년부터는 재판권행사율 산정 시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분모에 산입하지 않음

다. 불법수익환수를 위한 노력

선진일류국가 진입에 장애가 되는 부패범죄·경제범죄의 근본적 척결을 위해서는 불법수익의 철저한 추적 박탈로 부패행위에 대한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1. 9. 27.「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1. 9. 27.부터 시행하였다. 현행법은 '범죄수익' 개념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중대범죄에 주식회사 외부 감사인 등의 금품수수 행위 및 이에 대한 공여행위, 사회적 약자를 감금하여 강제노역을 시키는 행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행위 등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16. 9. 2.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9. 4. 5. 국회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입법 개정안과 함께 대안 가결되어 2019. 4. 23. 공포·시행되었다.

한편, 범죄수익환수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의 조직적 사기범행의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사단계에서 발견된 피해재산을 법원의 몰수·추징보전 명령으로 보전하여 재산은닉을 막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없이도 수사기관이 동결해 놓은 재산

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18. 11. 29. 국회에 제출하여 2019. 8. 2. 공포·시행되었다.

라. 국제협약의 적극적 이행

1)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

우리나라는 2002. 11월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을 비준함으로써, 동 규정의 당사국이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의해 2003. 3월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법원으로서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 등 반인륜범죄의 수사 및 소추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한 후 2004. 5월 입법예고, 같은 해 6월 공청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2006. 12월 국회에 이행입법안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였고, 2007. 12. 21. 동법률이 공포되었다.

2)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이행입법 및 비준 추진

초국가적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처벌하기 위한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이 2003. 9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 12. 13. 위 협약 뿐 아니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불법이민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고, 총기류자제의정서는 2001. 10. 4. 서명하였다. 법무부는 협약 비준을 위하여 2007. 9월 이행입법 T/F를 구성하고 2008. 12월 법무부 초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2010. 11월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등 불법이민 관련된 범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2. 1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2. 1. 17. 공포, 2012. 4. 18. 시행되었다. 또한 2012. 8월 포괄적 인신매매죄 신설, 범죄단체조직죄 개선 관련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13. 4. 5. 공포·시행되었다. 이러한 이행입법의 시행에 따라 2013. 10월 법무부는 외교부에 비준 추진을 의뢰하였고, 2014. 7월 외교부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5. 5. 29. 국회를 통과하여 2015. 11. 5. UN에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당사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이행입법으로 시행된 법률들을 충실히 시행함으로써 국내 법제도 운영에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UN부패방지협약' 비준 및 이행 관련

'UN부패방지협약'은 공공·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포괄적 부패방지 국제협약으로서 동 협약의 제정으로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 간 공조와 부패자산 환수를 위한

총체적인 국제규범이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2005. 11월 이 협약의 비준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국제범죄 분석기획단에 적극 참여하였고 2006. 10월 'UN반부패협약 이행입법 추진반'을 발족하였다. 이후 동 협약 이행입법안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2007. 10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8. 2월 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동 협약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2008. 4. 26. 비준·발효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2012. 11. 20. 부패범죄피해자의 피해재산 복구절차를 구체화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하였고,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 참가하여 협약 이행의 의지를 피력하며 우리나라의 추진 제도 및 사례, 성과를 소개하고 있으며, 동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다른 당사국에 대한 동 협약 이행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 국제협력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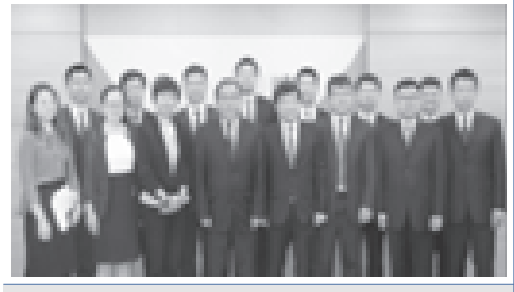
| 그림 2-82 | 국제협력성과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 방문(2019. 4.)



한-중 형사사법 상호협력 MOU체결(2019. 5.)



중국 기율검사위원회 방문(2019. 9.)



피터루이스 ICC 사무국장 예방(2019. 10.)

12.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형사법제과 검사 이경화

가. 추진배경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을 개정하였다.

나. 추진경과

2018. 6. 21. 법무·행정안정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2018. 11. 12. 합의문에 따른 법무부안을 기초로 의원입법 형태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이후 2019. 4. 30.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고, 2020. 1. 13.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 2. 4. 공포되었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공포 후 4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

다. 주요내용과 성과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하여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받도록 하여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고,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게 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3.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형사법제과 검사 이경화

가. 추진배경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근거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을 제정하였다.

나. 추진경과

2018. 11. 13. 의원입법 형태로 공수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9. 4. 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2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 12. 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 1. 14. 공포되었다.(2020. 7. 15. 시행 예정)

다. 주요내용과 성과

부패척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4.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변호인 변론권 강화

형사법제과 검사 이경화

가. 추진배경

최근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그 밖에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들을 신설하기 위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였다.

나. 추진경과

2019. 12. 4.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안하였고, 2019. 12. 12.부터 2020. 1. 21.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2020. 1. 31.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었다.

다. 주요내용과 성과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조사까지 확대하고,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방문 등을 통해 직접 변론할 수 있도록 변론기회 보장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의 옆에 앉아 참여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변호인 참여 신청 시 구두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신청방법을 확대하고, 피의자와 참여 변호인이 조사 시 조사내용을 목적의 제한 없이 메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피의자 출석요구 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도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변호인 요청 시 검사가 출석일시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평가 및 발전방향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 추진

형사법제과 검사 이경화

가. 디엔에이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 추진배경

2018. 8. 30.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2) 추진경과

2019. 10. 21. 의원입법 형태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9. 1. 9. 법사위 대안이 마련되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19. 1. 21.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되었다.

3) 주요내용과 성과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할 때 채취에 관한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때에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또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는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채취가 이루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복절차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였다.

4) 평가 및 발전방향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한 채취대상자에게 영장심사단계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판청구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영장 없는 수색 요건 강화 및 즉시항고 제기기간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1) 추진배경

2018. 4. 26. 헌법재판소는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곧바로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6조에 따른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또한 2018. 12. 27.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2) 추진경과

2018. 3. 15.부터 2019. 1. 22.까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쟁점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9. 12. 27. 위 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법사위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9. 12. 31.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포 및 시행되었다.

3) 주요내용과 성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다.

4) 평가 및 발전방향

영장에 의하지 않는 강제처분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영장주의원칙을 준수하고,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재판청구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5절 범죄예방업무

1.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가.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업무시스템 개편

보호관찰과 보호사무관 안규용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1988. 12. 31. 제정·공포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9. 7. 1. 부터 범법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시작한 이래 「형법」 개정을 통해 1997. 1월에는 성인범까지 전면 확대되었으며, 2004. 9. 2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성매매 사범에까지 확대되었다.

2009. 11. 2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별준수사항 부과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이 법제화되어 사범별 맞춤형 보호관찰이 가능해지면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2016. 12월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주취 또는 정신장애 상태에서 경미한 폭력범죄 또는 비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치료명령제도가 실시되었으며, 2018. 1월부터 벌금형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었다.

| 표 2-48 | 연도별 보호관찰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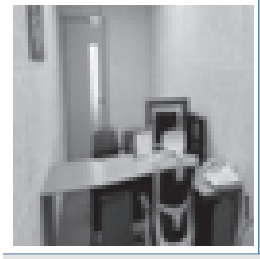
(단위 : 명)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 원	49,602	49,127	49,401	49,335	49,048	48,729	49,178	52,387	55,784	52,580	50,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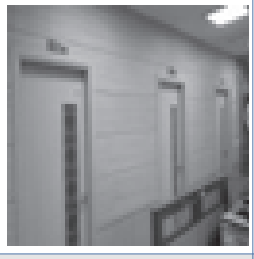
2) 추진내용

보호관찰관과 대상자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독립된 면담 공간 확보로 면담 분위기를 조성하고 면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동부, 부산, 안동, 고양 등 총 13개 기관에서 독립면담실 53실을 추가 설치하여 2019. 12. 기준 전국 30개 기관에서 총 166실의 독립면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청사 보안 및 안정적인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방호직 또는 사회복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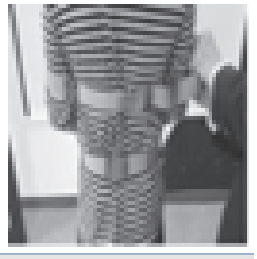
요원이 배치된 22개 보호관찰기관에 대해 2019. 12.부터 외부인 출입 통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반 정비를 위해 2019. 2. 일반 포승에 비해 신속성 및 안정성이 향상된 '벨트형 포승' 총 306개를 구입·배부하여 제재조치 시 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직원의 업무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안동보호관찰소 독립면담실



서울보호관찰소 출입자 통제



벨트형 포승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교도소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롭게 도입된 취업 및 치료를 조건으로 하는 가석방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세부적인 실시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침에 반영하였으며,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양식 개정에 따른 '보호관찰의견'란의 작성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보호관찰제도의 업무경감 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부터 보호관찰기관에 도입된 기관평가를 폐지하고 BSC 및 직무성과계약으로 평가하는 대안을 마련하였고, 현행 5단계로 운영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 분류등급 체계를 간소화하여 복잡성을 해소하는 한편, 보호관찰 개시 초기 면담 역량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범죄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피해자와 면담 등을 통해 재범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침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재범할 경우 집행유예취소신청 등 엄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음주·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초기정보수집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협의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소유여부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전문상담·처우 프로그램 활성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연구 수행, 전문처우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을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업무협약식



서울시립대학교 업무협약식

2019. 1월부터는 기소유예된 마약류사범의 중독 치료 및 교육을 위한 마약류사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여 마약류 선도위탁 대상자에게 중독재활치료, 교육, 약물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2019. 3월부터 6개월간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중점 관리 기간 운영을 통해 확인된 재범억제 효과성에 따라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초기 개입, 정기 및 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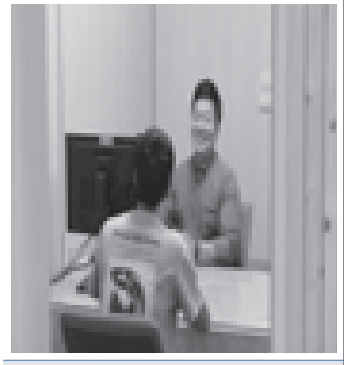
가종료 대상자 복약검사 확대 및 치료명령 대상자 복약검사 의무화로 가종료·치료명령 대상자의 복약검사 의뢰건수가 급증하여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외에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2019. 9월부터 복약검사 의뢰기관을 대검찰청 및 부산고등검찰청으로 확대, 수도권 및 경남권 보호관찰소 의뢰기관을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복약검사 환경을 마련하였다.

| 표 2-49 |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황

(단위 : %)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재범률	7.2	7.6	7.9	7.6	7.4	7.6	7.9	7.8	7.2	7.2

| 그림 2-83 | 보호관찰 실시현장



출석면담



현장지도



약물검사

3) 평가 및 발전방향

이러한 다양한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한 결과,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을 전년대비 0.02% 감소한 7.18%로 억제하여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재범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신질환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강화, 사범별 전담 보호관찰제 확대 및 지도감독 매뉴얼 개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활용 및 분류처우 적정성 제고,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면담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보호관찰제도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 조사 업무

보호관찰과 보호사무관 정유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조사제도는 법령이 정해진 바에 따라 법원 및 검찰의 요구에 의해 보호관찰관이 범죄인의 인격, 환경에 관한 상황, 재범위험성의 양태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양형 및 처우 개별화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보호관찰관은 피조사자의 범행동기, 피해회복 여부, 직업, 가족사항,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 대인관계, 정신상태, 성격, 재범위험성 등을 조사하여 통보한다.

보호관찰 조사제도는 1989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소년 판결전조사'와 석방 전 조사인 '환경조사'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후반 보호관찰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 범주도 넓어졌다. 1997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결정전조사,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성매매 보호사건 결정전조사, 2007년 「소년법」 개정에 따른 검사 결정전조사가 도입 되었다.

2007년에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성폭력사범에 대한 청구전조사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2010년 이후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전조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 아동학대(아동보호사건) 결정전조사, 피해자(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전조사, 이행실태조사, 치료명령 판결전조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조사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귀주환경조사는 가출소 및 가석방 심사가 신청된 대상자 중 귀주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귀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표 2-50 | 조사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판결전조사	4,273	3,597	1,598	1,526	2,385	2,159	2,257	2,166	1,901	2,003	2,053	1,797	27,715
법원 결정전 조사	3,311	4,234	6,398	9,242	12,719	12,141	12,399	17,678	16,931	16,606	19,662	19,007	150,328
검사 결정전 조사	1,415	3,670	4,524	3,906	5,547	5,084	5,855	3,805	4,379	3,626	1,678	1,092	44,581
청구전조사	92	304	1,376	1,933	1,696	2,497	2,511	2,352	2,619	1,783	1,600	1,468	20,231
소급청구전조사	-	-	2,251	7,772	354	247	192	119	79	86	39	52	11,191
환경조사	1,862	2,009	1,738	1,581	1,715	1,701	1,594	1,561	1,555	1,920	1,496	1,442	20,174

2) 평가 및 발전방향

조사업무는 제도 시행이후 근거 법령의 확대를 통해 매년 꾸준하게 업무가 증가하며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9. 2월 제주도 보육교사 살인사건(제주), 2019. 7월 선배 약혼녀 강간살인사건(순천), 2019. 11월 유명연예인 단톡방 사건(서울) 등 그동안의 축적된 신뢰도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는 등 대외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2019.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판결전조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는 등 향후에도 조사업무는 보호관찰제도 영역 확대와 함께 활용도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구전조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2013. 4월부터 운영해 온 27개 청구전조사 전담기관을 2019. 12월 21개로 조정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조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대외신뢰도 제고의 일환으로 2010. 8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관 자격제도를 도입, 2019년까지 863명의 조사관을 양성하였다. 2019년부터는 조사관의 전문성을 한층 제고하고 우수한 조사인력의 체계적 육성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제도를 시행, 조사관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조사업무를 전담한 직원 중 16명이 전문조사관 자격을 취득하였다. 향후 전문조사관은 조사 업무 전문성 제고와 조사서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보호관찰과 서기관 이정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사회 내에서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소년법 대상자를 시작으로 1997년 성인범에게까지 확대되었다.

2009. 9월부터 생계곤란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벌금미납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0. 1월 부터는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2010. 4월 법무부-농협중앙회 간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농촌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평균 약 9만6천 명, 총 89만여 명을 투입, 영농철 일손돕기, 영세농가 환경개선, 태풍·폭설·폭우 등 피해복구,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농촌지원 활동을 전개하였고, 2013. 5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분야를 신청받아 대상자를 투입하여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집행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18. 1월부터 벌금형 집행유예가 도입되어 벌금형을 받은 대상자에게도 사회봉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봉사는 이처럼 사회내 처우의 대표적 제도로서 범죄자 처벌과 사회에 대한 배상 및 속죄,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등 사회 재통합 기능을 수행하면서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표 2-51 | 사회봉사 실시사건

(단위 : 건)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건수	53,569	54,427	47,658	45,842	46,179	51,058	55,581	58,287	63,050	60,286	58,497

| 표 2-52 |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연인원	98,135	105,895	110,243	115,536	103,511	106,864	97,188	76,118	65,712	879,202

| 표 2-53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실적

(단위 : 건, 명)

구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건수	2,127	2,249	2,964	2,992	1,974	1,667	13,973
연인원	22,846	22,569	26,522	26,338	16,591	13,855	128,721

| 표 2-54 | 사회봉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봉사	접수	37,085	38,153	41,435	44,386	42,249	40,279
	실시	43,293	45,549	48,395	53,231	51,224	49,788
벌금대체	접수	6,758	8,554	8,530	8,282	7,624	7,413
	실시	7,765	10,032	9,892	9,819	9,062	8,709
계	접수	43,843	46,707	49,965	52,668	49,873	47,692
	실시	51,058	55,581	58,287	63,050	60,286	58,497

2)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봉사'는 중증장애인·고령자·저장강박증 가정의 청소·도배·장판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폭설·폭우·화재·지진 등 재해 피해지역 긴급지원,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진료·마사지·장수사진 촬영·이미용 봉사·학습봉사를 실시하는 특기집행 및 고독사 유류품 정리·민요공연·급식봉사·연탄배달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2019년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연인원 31,508명(4,093건), 영세·고령 농가 등 농촌 일손 돕기에 연인원 65,712명 등 연인원 총 97,220명 투입 지원하여 국민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법무부 대표적 친서민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9. 4월에는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 '나눔농장'(시흥시 소재)인 사회봉사 농촌지원 정책현장에 법무부장관이 방문하여 대상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러한 업무추진결과 2019년 기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94.1%가 사회봉사 집행완료 이후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취약계층 사회봉사'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 98.3%가 만족을 나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8년 하반기부터 국회 및 언론에서 사회봉사 인력충원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법무부는 사회봉사 전담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협력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직접 집행을 내실화함은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 집행 확대, 탄력집행 확대 등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회봉사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통해 대상자는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은 희망을 갖게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그림 2-84 | 사회봉사 집행현장



장관님 사회봉사 정책현장 방문



저장강박 장애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주거환경 개선(도배·장판 교체) 사회봉사



태풍피해 농가지원 사회봉사

라. 수강명령 집행 전문성 강화

보호관찰과 보호사무관 정유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역할극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해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 7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되어 소년에게 시행하였고 1997년 형법 개정에 따라 성인에게도 확대 실시하였다.

근거 법률의 확대에 따라 수강명령 부과의 양적 확대와 함께 폭력치료, 정신·심리치료 등 분야가 세분화되었고, 수강명령 집행의 효과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2009년 '성범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2011. 8월 '준법운전 수강명령 표준 프로그램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전문교육 이수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도모하여 2010년 수강전문 직원 108명을 양성하였고, 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성폭력·가정폭력·약물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력자 등을 특별 채용해 전문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범죄인의 재범예방에 교육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10년 이수명령이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필요적으로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성폭력·가정폭력·알코올·약물 등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전문분야의 집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2년 수원에 수강집행센터를 시범 운영한 후, 2013년 서울, 대구, 광주, 2014년 인천, 대전, 부산, 2017년 서울남부, 의정부, 창원 등 총 10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 표 2-55 | 수강명령 현황

(단위 : 건)

구 분 \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수강명령	30,281	33,513	38,857	45,459	41,884	42,408	232,402
이수명령	4,602	5,571	5,073	6,290	7,999	7,808	37,343
기소유예 등	16,268	19,155	36,889	27,564	20,897	19,173	139,946

2) 평가 및 발전방향

수강집행센터는 전문성과 강의역량을 겸비하고 제도 이해가 높은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친범죄적 사고와 행동을 수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문처우 프로그램을 집행함으로써, 외부 강사의 형사절차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운영상 단점을 보완하였다.

담당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 법무연수원과 사내강사 양성과정 등을 통해 72명의 전문분야 강사를 양성하는 한편 외부강사 선정과 평가 기준, 협력기관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강명령 집행지침을 개정,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20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실형 선고 시 수강명령이 부과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해서 수강·이수명령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수강명령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수강명령 전문성 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대상자의 사고와 행동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와 정상적인 사회적응 지원을 도모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그림 2-85 | 수강명령 집행현장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심성개선 소집단 수강프로그램

마. 보호관찰제도 30주년 기념

보호관찰과 보호사무관 이성실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이하여 2019. 7. 1.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기념식에는 박상기 장관,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전국 보호관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선진 보호관찰을 위한 미래를 다짐하였다.

보호관찰제도는 1989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범죄억제에 대한 제도의 효과성을 인정받으면서 1997년에는 성인 형사범에 까지 확대되었고, 2008년에는 전자감독제도 도입, 2016년에는 정신질환자 치료명령제도 시행 등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나라 형사정책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1989년 18개 보호관찰소에서 279명의 직원과 8,000여 명의 소년 대상자로 시작된 제도는 30년이 지난 2019년 현재 57개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1,522명의 직원이 27만여 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동안 직원은 약 8배, 대상자는 약 33배가 늘어났고, 그 대상도 소년범에서 성인범, 강력범죄자, 정신질환자 등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었다.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는 범죄자의 재범률은 평균 7% 초반 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을 2%대로 관리하고 있는 전자감독제도는 보호관찰제도의 큰 성과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마약사범의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는 매월 소변검사 등의 지도감독을 통해 5.1%의 재범률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전체 마약사범 재범률인 36.6%와 비하면 가시적인 성과이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구금위주의 형사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회내처우'로 전환해 온 보호관찰제도는 '사회내처우'의 정책방향을 처벌과 관리의 중심에서 치료와 재활 중심으로 또 한번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로부터 보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료명령 등을 통한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철저, 청소년 등 고위험자 집중관리, 범죄자 처우 전문성 확립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보호관찰 수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연기자 송영규, 송창의, 김원희씨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되어 앞으로 보호관찰소의 멘토링 활동 등 비행청소년 선도와 보호 활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박상기 장관은 기념사에서 "전국의 보호관찰관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보호관찰제도는 발전을 거듭하여 30년 만에 우리나라 범죄예방 형사정책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하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어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욕구가 어느 때 보다 크다. 보호관찰이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치료와 재활 중심의 한국형 선진 보호관찰 모형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보호관찰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며, 보다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보호관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보호관찰제도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이며, 국가의 역량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예방에 기여한 민간인, 직원 등에 대한 포상이 있었는데, 광주보호관찰소 류영호 보호관찰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대전소년원 양길모 소년보호위원과 순천보호관찰소 신대우 보호관찰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였으며, 광주비행예방센터 안종우 센터장이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총 20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2.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

가. 전자감독 강화로 국민 안전 확보

특정범죄자관리과 보호사무관 홍재성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살인 등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로 2008. 9. 1. 시행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부착대상이 성폭력으로 한정되었으나 2009년 미성년자유괴, 2010년 살인, 2014년 강도사건으로 확대되었고, 2012. 12월 헌법재판소의 성범죄자 소급 부착 합헌 결정으로 대상자 수가 급증하였다.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상시감독 및 긴급 상황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보호직공무원과 무도실무관으로 구성, 24시간 교대 당직체제)을 기존 전국 43팀에서 50팀으로 확대 개편(2019. 4월)하였으며, 범죄유발 요인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맞춤형 심리치료를 14,427회 실시(전년 대비 4.9% 증가, 2018년 13,756회)하여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재범사건 중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하고 있어 야간시간대 미귀가자 및 심야시간대 외출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귀가지도를 실시하고, 대면지도 횟수를 기존 월 1~3회에서 주 1회 이상으로 최대 4배 강화하는 한편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집중관제팀을 신설(2019. 7월)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19. 4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통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1:1 전자감독을 실시하여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인력증원 등을 통해 점증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2019. 12월 기준 8명 실시)

또한, 기존 휴대용추적장치의 위치추적 기능을 전자발찌 하나에 통합하여 휴대용추적장치 유기로 인한 소재불명 상황을 원천 차단하고 훼손 방지 기능을 대폭 강화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하여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을 완료하였다.

지자체의 CCTV를 전자감독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2019. 1월 국토교통부 및 서울·대전·광주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4월부터 대전, 광주, 서울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와 순차적으로 연계를 추진하였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자감독의 재범 억제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9. 11월에는 기존 범죄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에 한정해 가해자(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을 차단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든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를 구축하였고, 2020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표 2-56 | 연도말 전자감독 대상자 현재원

(단위 : 명)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현재원	151	127	393	932	1,032	1,703	2,119	2,313	2,696	2,981	3,126	3,111

※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대상자 20.6배 증가

2) 평가 및 발전방향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확대, 1:1 전자감독 시행 및 야간시간대 지도감독 강화 등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18년 2.53%에서 '19년 1.7%로 전년 대비 0.83%p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1:1 전자감독 확대, 전자장치의 지능화·소형화

및 시스템의 고도화 등 선제적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형사 피고인의 자기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98조에 규정된 보석의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가석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과 가석방자에 대한 전면적인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규정한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그림 2-86 | 위치추적시스템-CCTV 통합시스템 연계



나. 성충동 약물치료 안정적 집행

치료처우과 서기관 황철주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호르몬 치료제)을 주사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성범죄 증가와 조두순, 김수철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2010.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2011. 7월 시행).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전담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지도감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2011. 7월 제도 시행 이후 2019. 12월까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대한 검사 청구가 56건 있었고, 이 중 25건이 법원에서 판결 확정되었다(기각 31건).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결정은 42건이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최초 집행은 2012. 5. 30. 시행(치료감호심의위원회 2012. 5. 21. 결정)되었고, 2019년도에는 17명이 개시되어 39명을 집행하였다. 2019년 현재 전국 16개 종합병원이 성충동 약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표 2-57 | 연도말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집행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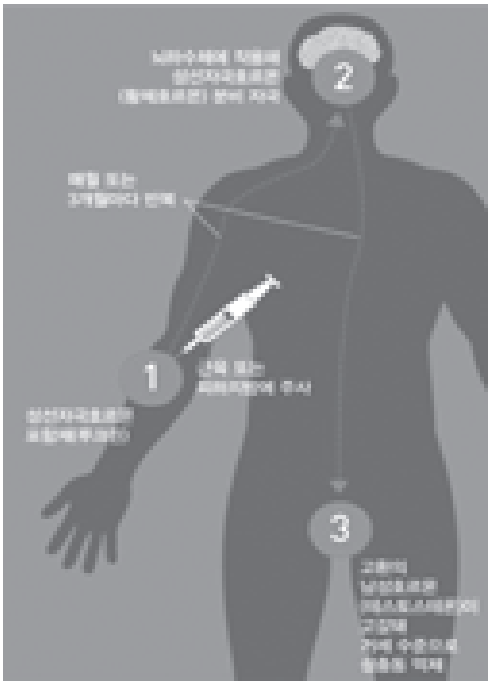
(단위 : 명)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현재원	1	3	7	8	14	17	22	39

2) 평가 및 발전방향

제도시행 이후 총 47명을 집행하였으나 2019년까지 재범한 사람은 없으며,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경미한 사례 이외에 특이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료기관의 의사, 심리치료 전문가,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관, 보호관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집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협의체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효과성과 부작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치료 대상자의 안전과 치료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전문적·통합적 처우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그림 2-87 |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



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의 체계적 관리

특정범죄자관리과 사무관 김근한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등록정보 중 일부를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에 공개·고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2011. 4월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업무가 확대되면서 법무부에서 성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를 실시하였고, 2013.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신상정보 등록업무는 법무부, 공개·고지업무는 여성가족부로 운영주체를 각각 일원화하고 등록 대상 성범죄를 확대하였다.

법무부에서 등록·관리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공개·고지집행을 위해 여성가족부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경찰전산망을 통해 전달되어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총 82,647명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2011년 대비 296배 증가) 중이고, 그 중 7,599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7,261명의 신상정보가 고지되었다.

| 표 2-58 | 연도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건수

(단위 : 건)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등록건수	279	2,337	13,628	23,874	36,267	46,415	58,053	71,012	82,647

2) 평가 및 발전방향

성범죄자 신상정보 미제출자, 소재불명 대상자 또는 허위 정보 제출자 등에 대해 상시 자체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경찰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즉시 통보하여 등록정보 관리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업무의 신속·정확한 집행을 위해 여성가족부·경찰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고 '신상정보 관계기관 공동매뉴얼'을 제작하여 여성가족부·일선 경찰관서에 배포하였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내 제도 홍보물 설치 및 KTV(한국정책방송), 전국 지하철 및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 신상정보등록 제도에 대한 홍보영상을 상시 송출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및 제도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매년 1만 건 이상 증가하는 등록사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에는 그 동안 누적된 7만여 건의 성범죄 데이터를 기초로 성범죄백서 발간을 추진하였고 분석된 성범죄 데이터는 범죄예방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향후, 등록 사건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신속·정확한 신상등록 정보의 관리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조회 분야 확대, 유관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 그림 2-88 | 신상정보등록제도 홍보



3. 감호제도 개선

가. 치료감호소 중증 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영배

1) 추진배경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효과 제고와 수용 안정화를 위해 선진국과 같이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집중치료시설의 조성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치료감호소 유휴부지에 400병상 규모의 중증 환자 집중치료 병동을 신축하기 위해 정부예산에서 중증 환자 집중치료병동 신축을 위한 사업비(총 448억 원)를 확보하여 2019. 4월 조달청 업무 협의, 2019. 8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를 거쳐 2019.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2020. 7월 착공하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선진국과 같은 1인실 위주의 소규모 병실에서 중증 환자를 집중치료하고 수용환경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나. 정신건강 의료 전문인력 확충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영배

1) 추진배경

치료감호소는 살인 등 중범죄 정신질환자 관리, 격오지, 낮은 보수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2019. 12월 현재 정신과 의사 정원 15명 중 8명(충원율 53.3%)이 근무하며 1인당 환자 86명을 담당하는 만큼 업무 부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2019. 2월 민간스카웃 제도를 활용한 치료감호소장 임용으로 치료감호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의사처우 개선을 위한 의료수당가산금 신설과 해외학회 참가 등의 지원, 법정신의학연구소 설립, 추계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한 치료감호소의 위상 강화로 우수의료인력 확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2019년 치과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각 1명 배정하고 2020년도 정신과 전공의 2명을 확보하였다,

3) 향후 추진계획

의사채용 안정을 위한 의사 직급 상향, 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의협신문 등에 채용 홍보도 강화하여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계속 확충할 예정이다.

다. 보호감호자 수용시설 독립운영

치료처우과 검찰사무관 정관영

1)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보호감호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산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특정범죄를 범한 때, 특정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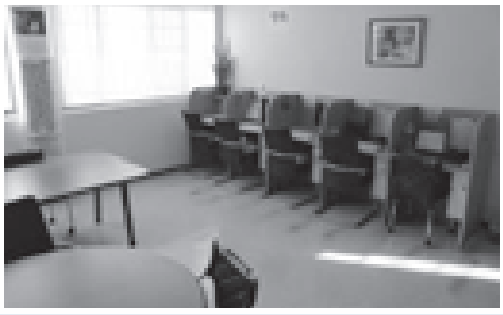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특정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보호감호 선고를 통해 보호 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0. 12. 18.「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시행된 보호감호제도는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2005. 8. 4.자로「사회보호법」폐지 법률이 시행되면서 동법 부칙 제2조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집행은 구「사회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보호감호자는 원래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만 관리하였으나, 보호감호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2010년부터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간 협의로 천안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이원화하여 관리하여 왔다.

보호감호 입소자 중 처우성과를 반영하여 자치 처우 대상자로 선정되면 천안교도소로 이감하여 자치처우를 실시하였으나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처우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8. 12월 천안교도소로 수용시설을 다시 일원화하여 2019. 12. 31. 현재 18명을 수용·관리 중에 있다.

| 그림 2-89 | 천안교도소 피보호감호자 생활복지관



생활관 입구 모습



생활관 내 독서실

| 표 2-59 | 피보호감호자 집행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집행인원	36	45	31	24	18	20	22	31	17	31

2) 평가 및 발전방향

독서실, 체력 단련실, 휴게실, 종교 집회실, 위탁 작업장 등 복지·종교·근로 시설이 갖춰진 독립된 수용동에서 자치생활을 하면서 피보호감호자의 처우 만족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전 적응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력 배양

치료처우과 검찰사무관 정관영

1)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피보호감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교도소 내 검정고시·학사고시 교과 과정을 설치하였고, 〈표 2-60〉와 같이 2010년 4명, 2014년과 2016년 각 1명, 2018년 2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아울러 위생장갑 포장, 플라스틱 배관 조립 등 위탁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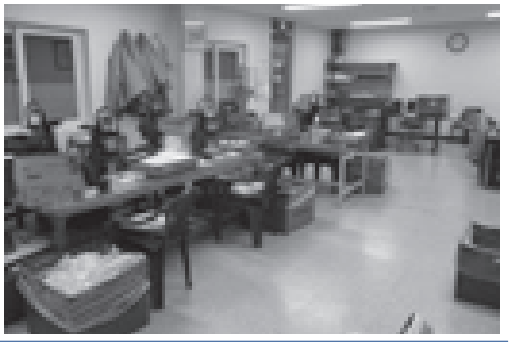
| 표 2-60 | 피보호감호자 검정고시 합격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	-	-	-	1	-	1	-	2	-
중입자격	-	-	-	-	-	-	-	-	-	-
고입자격	3	-	-	-	-	-	-	-	-	-
고졸자격	1	-	-	-	1	-	1	-	2	-

| 그림 2-90 | 위탁 작업장





2) 평가 및 발전방향

중단된 학업을 지속함으로서 지적 자존감을 향상시켰고, 위탁 작업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위탁 작업을 발굴하여 피보호감호자의 실질적 사회정착금 마련에 기틀을 다지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다.

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치료처우과 검찰사무관 정관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판사·검사·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위원으로 구성된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치료감호, 보호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고 있다.

재범위험성이 낮아진 피치료감호자와 피보호감호자에게 치료감호 가종료 및 보호감호 가출소 결정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스스로의 갱생 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가종료자·가출소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하여 가종료·가출소를 취소하고, 치료감호·보호감호를 다시 집행하게 함으로써 사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 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 치료감호 기간만료 시 보호관찰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집행면제에 관한 사항,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하며, 결정현황은 〈제5장 통계 : 표 5-70, 표 5-71〉과 같다.

치료감호 가종료의 경우 치료경과가 양호하여 약물 또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될 때 병과된 징역형 등의 형기와 상관없이 가종료를 허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08명이 가종료되었다.

장기 피치료감호자의 가종료 시 사회보호시설 연계를 확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위원들의 정신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심사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2018. 12. 18.「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보호처분 전문가인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한편, 보호감호 가출소 인원은 2005. 8. 4.「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보호감호 수용자의 자연 감소와 잔류 강력사범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으로 인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9년에는 11명이 가출소되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정신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발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가종료자 등의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증상악화 등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가종료를 취소하여 치료감호를 다시 집행하도록 하는 등 가종료자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하였고, 향후 피치료감호자 및 피보호감호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보호를 위해 재범위험성, 치료경과, 사회복귀가능성 등 실질적 평가를 통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4.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강화

가. 정신질환 소년원생 치료·관리 강화

치료처우과 사무관 김영배

1) 추진배경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원생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여 다른 학생들의 교육, 수용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정신질환 소년원생 치료·관리를 위한 근본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전국 11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의무과장 11명, 정신과 전문의 12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도 22명을 배치하여 정신질환을 가진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관찰을 하고 있다. 한편,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간호사를 2명 이상 배치하여 의료만족도를 증진하고자 간호인력 증원을 계속 추진 중이다.

3) 향후 추진계획

정신과 전문의 직급 상향, 정신건강 간호사를 증원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020년 하반기까지 대전에 의료소년원을 신설하여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소년원생들을 집중 치료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근본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나. 치료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치료처우과 보호사무관 임합격

1)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2016. 12월 개정 「치료감호법」의 시행으로 경미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질환자 등에 대하여 사회 내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더불어 경미한 강력 범죄를 범한 정신질환자에게 검사가 정신과 상담·치료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대검예규 제873호를 제정하여 치료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6년 20명, 2017년 622명, 2018년 568명, 2019년 738명이 치료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 치료명령 협의체를 구축하였고, 서울대병원, 중앙대 병원 등 치료 기관을 지정하여 임상치료 및 인지행동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표 2-61 | 치료명령 사건 접수 현황

(단위: 명)

구 분 \ 연 도	2016	2017	2018	2019
집행유예	7	429	440	585
선고유예	0	7	5	5
기소유예	13	186	124	148

2) 추진내용 및 성과

2017. 12월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주취·정신질환 이외 재범위험성이 높은 '마약중독'을 치료명령 대상에 추가하였고,(2018. 6월 시행)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하여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마약류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도입하는 등 치료명령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치료기관을 확대한 결과 현재는 전국 247개의 치료기관이 지정되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 내 사법적 치료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치료 및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미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조기 개입을 보다 확대하여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重)범죄로의

전이를 차단하는 한편 치료명령의 실효성 제고와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5. 청소년 비행 예방 강화

가.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 연수

소년범죄예방팀 사무관 김경홍

1) 추진배경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대책」(2017. 12. 22.)의 법무부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18. 12.)하였고,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은 대내·외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비행 단계별 폭력예방 프로그램으로, 조선대 권해수 교수가 참여하였다.

법무부는 청소년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의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에 대한 선도·교육 강화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비행예방교육 전문성 및 대내·외 신뢰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에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 연수·보급을 실시하였다.

| 표 2-62 |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 개발·연수 추진근거

❖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대책」(2017. 12. 22.)**
각 기관별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폭력 피·가해자 대상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특성화 프로그램 및 기관 간 연계 매뉴얼 개발·보급

❖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8. 12. 19.)**
1-3.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전문화(법무부)
○ 기관 및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특성 프로그램과 연계모델의 공동 개발 및 활용 추진

| 표 2-63 |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 주요내용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
- **구성** : 총 37회기(핵심주제 10개 선정)
- **핵심주제** : ① 자기이해 및 동기 강화 ② 폭력이해 ③ 폭력과 관련된 왜곡된 인지신념 이해 ④ 폭력 인지 재구성 ⑤ 폭력 관련 정서 모니터링 ⑥ 분노조절 기술 훈련 ⑦ 친사회적 기술훈련1(비폭력대화) ⑧ 친사회적 기술훈련2(공감훈련) ⑨ 문제해결기술 훈련 ⑩ 마음챙김 명상
- **운영** : 8회기*5일(회기당 40분), 최소 4회기 이상 운영
- **특징** : 회기별 유기적 연계, 위험요인-보호요인 고려, 실무자가 융통성 있게 활용 가능 등

2) 추진내용 및 성과

2019. 6월부터 7월까지 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 연수를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별로 1박 2일씩 총 4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98개 기관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위기청소년 등을 직접 교육·상담하는 직원 151명이 참석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자인 조선대학교 권해수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 표 2-64 |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 연수 운영 개요

구 분	호남권	중부권	수도권	영남권
장소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솔로몬로파크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일자	2019. 6. 20. ~ 21.	2019. 6. 24. ∽ 25.	2019. 6. 26. ∽ 27.	2019. 7. 3. ∽ 4.
참석	- 법무부(16)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36명 - 교육부(32) : Wee센터 등 44명 - 여가부(50) : 청소년꿈드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71명			

| 그림 2-91 |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 연수



3) 평가 및 발전방향

연수에 참석한 한 상담교사는 "사회적으로 문제인 청소년 폭력예방과 관련하여 실무에 필요한 전문 프로그램을 습득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 외에도 첨석자들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등 타부처와의 프로그램 공유·보급한 법무부에 감사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하길 바라며, 폭력가해 소년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반영한 참여형 직무연수로 폭넓은 현장 활용이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도 '청소년 폭력예방 통합 프로그램' 의 지속적인 확대·보급을 위해 법무연수원 전문교육과정 교과목으로 편성·운영 예정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타부처·연수과정에서 제시·활용할 교구세트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나. 소년보호관찰 개시초기 중점 관리계획 시행

소년범죄예방팀 박길수 사무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9년 1월 대구에서 10대 6명이 어깨가 부딪쳤다며 20대 남성을 집단폭행한 사건을 시작으로, 2월에는 인천에서 10대 보호관찰 청소년이 노인을 폭행하여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보도되었고, 대전에서도 10대 청소년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길을 가던 연인들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청소년에 의한 범죄 사건이 주요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그 결과 소년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수회 등재되는 등 사회 내에서 소년범을 관리하는 보호관찰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감안하여 소년범죄예방팀에서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현황 및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분석 결과, 소년 인구의 감소와 소년 사범의 감소로 소년 보호관찰 사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 대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 표 2-65 | 최근 3년간 소년보호관찰 재범률 현황

구 분	실시사건	재범자	재범률
'17년	32,449	4,163	12.8%
'18년	31,065	3,830	12.3%
'19년	28,062	3,596	12.8%

기간별 재범 현황은 보호관찰 개시 이후 3개월 이내 재범률이 39.6%, 6개월 이내 재범은 63.3%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집중 대상자의 경우 개시 6개월 이내 재범이 72.4%를 나타내는 등 보호관찰 개시 초기 지도감독의 강화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 표 2-66 | '19년 기간별 재범 분포 현황

구 분	1~3개월	4~6개월	7개월이상	총계
계	1,516 (39.6%)	909 (23.7%)	1,405 (36.7%)	3,830 (100%)
집중	443	311	288	1,042
주요 I	308	209	354	871
주요 II	490	333	567	1,390
기타	275	56	196	527

※ 기타 : 일반, 분류등급제외자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9년 3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 개시 3개월간 주요 I 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 수준의 강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보호관찰관의 초기 개입을 신속히 하고자 처우계획 수립에 자동 재범위험성 평가를 도입하여 처우계획 수립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0일 이내로 앞당기는 등 초기 분류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준수사항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집단교육 형태에서 담당직원별 소집단 형태로 개선하여 교육의 효과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직접 처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고위험 대상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개시 초기 중점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19년 개시 초기 중점 관리 대책을 시행한 결과, 3개월 이내 재범자가 2018년 39.6%에서 2019년 37.7%로 4.8%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6개월 이내 재범자는 2018년 63.3%에서 2019년 61.3%로 3.2%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효과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시 초기 재범방지 대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개시 초기 중점 관리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다.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도입

소년범죄예방팀 박길수 사무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9. 9월 수원의 노래방에서 중학생 다수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06년생 집단폭행사건"으로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안전한 학교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져 가자 법무부장관은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도입 추진을 지시하였다.

| 표 2-67 | 소년 보호관찰 학생 비율 및 재범분포

연 도	실시인원			재범자		
	계	학생	비학생	계	학생	비학생
'19년	28,062 (100%)	14,615 (52.1%)	13,447 (47.9%)	3,596 (100%)	1,939 (53.9%)	1,657 (46.1%)

법무부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학생대상자 현황 및 보호관찰 실태 등을 조사, 5명 이상이 재학 중인 학교 161개교를 우선 전담 관리 대상 학교로 지정하고,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사, 학교전담경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표 2-68 | 학교별 보호관찰 재학생 분포

학교별 재학현황	총계	1~2명	3~4명	5~9명	10명 이상
	1,820개교	1,385개교 (76%)	274개교 (15%)	108개교 (6%)	53개교 (3%)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은 전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를 밀도 있게 지도하게 되며 기존 출석면담 대신 학교 방문 위주의 현장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와 수시로 연락하며 협력관계를 구축, 무단지각·조퇴·결석 등 학교 교칙위반 단계부터 신속히 개입하고 상담교사와 연계를 통해 학교 부적응이 비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교 이후에는 PC방, 노래방 등 유흥시설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거리를 배회하지 않도록 현장 위주의 출장 지도를 실시, 귀가지도를 하는 한편,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주변의 비행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하교 이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학생은 집단폭행, 괴롭힘, 사이버 범죄 등 비행추이를 고려, 피해자 공감, 규범의식,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고등학생은 성숙도를 고려하여 준법운전, 성폭력예방, 음주습관, 이타적 사고와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 연령에 맞는 맞춤 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보호관찰을 부과 받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도 교칙 위반 등으로 5호 처분(교육)을 부과받는 경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전문적·체계적 교육을 이수하도록 연계하는 등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의 비행예방활동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은 그동안 일부 소년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를 1:1로 결연하여 생활 지도와 상담을 해오던 '교사 멘토링' 제도에서 관리 범위를 크게 확대 했을 뿐만 아니라, 전담

보호관찰관이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와의 체계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학생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 회복적사법 매뉴얼 개발 및 처우프로그램 실시

소년범죄예방팀 박길수 사무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보호관찰 집행은 가해자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처벌 중심에서 출발하며 보호관찰관은 법령과 규정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감독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회복적사법은 이와 같이 법집행 과정에서 배제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배상책임의 인정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사회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중심을 둔 이론으로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전통적인 분쟁해결 수단에서 기인하였다.

소년사법에서 회복적사법이 새롭게 도입된 이론이 아니며 이미 2008년「소년법」제25조 2 '피해자 등의 진술권'과 제25조의 3 '화해권고'는 물론, 2009년「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 제4호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이미 보호관찰 집행 현장에 회복적사법의 이념이 도입되어 있었다.

소관 법률에 회복적사법의 이념이 적용되어 있음에도 보호관찰 집행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인식개선을 위한 실천적 모델이 미흡하던 차에 한국증권예탁결재원 나눔재단에서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회복적사법 도입'에 대한 정책제안이 있었으며 나눔재단의 기금 출연(7천만 원)을 통해 회복적사법이 보호관찰 분야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2019. 7. 이화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회복적 보호관찰과 소년사법'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한남대학교 박미랑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은영 교수의 협조를 받아 "보호관찰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회복적사법 처우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매뉴얼 개발에 따라 소년 보호관찰 처우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12개 기관을 처우프로그램 집행기관으로 선정하였고, 해당 기관 임상심리, 정신보건 자격 특채직원과 보호관찰 심리상담 전문가 등 총 24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 프로그램 자체 운영이 가능한 사내강사를 양성하였다.

12개 기관의 사내강사들이 소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폭력사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20시간 내외의 회복적사법 처우프로그램을 기획, 열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 정착에 노력하였다.

| 그림 2-92 | 회복적사법 사내강사 교육 등



회복적사법 국제세미나



사내강사 양성 교육

2) 평가 및 발전방향

무엇보다 보호관찰 분야에 회복적사법 이념의 실천모델을 적용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회복적사법의 도입은 보호관찰 집행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2020년에는 2019년의 추진내용과 효과성을 기초로 하여 매뉴얼의 보강작업은 물론 기존 12개 기관에서 15개 기관이 추가된 전국 27개 기관에서 확대 실시 할 계획이다.

마. 비행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강화

소년범죄예방팀 이승원 사무관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 재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세계적·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불우한 환경에 있는 소년원 출원생 등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 12. 「보호소년법」에 근거하여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설립된 이후 보호소년 등의 선도·보호, 사회정착지원, 장학·원호, 연구활동 등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2001. 5월 기숙사형태의 자립생활시설인 경기(의왕)청소년자립생활관 신축·개관을 시작으로, 2005. 9월까지 부산·광주·대구·대전· 안양(여자전용)등 5개 지역에 추가로 건립하였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복권기금 16억1,500만 원과 21억 2,0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아 전주·춘천지역에 기존 기숙사형 자립지원시설의 틀을 벗어나 대리부모가 24시간 상주하며 입주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Group Home)형태의 자립생활관을 신축하였다. 2011년과 2012년에는 복권기금 7억 1,400만 원과 6억 7,000만 원을 지원 받아 기존 자립생활관 중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기·경기여자·부산·광주·대구자립생활관 시설을 리모델링하였다. 2014년과 2016년에는 복권기금 6억 4,200만 원과 12억 원을 지원받아 노후화된 경기여자·부산·대전자립생활관을 증·개축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다. 청소년자립생활관에는 2008년~2019년 최근 12년간 총 1,853명이 신규 입주하였고, 입주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취업알선, 학업연계, 심리치료, 가족 찾기, 자원봉사자 결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4. 12.에는 남자 위기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는 기숙형 직업훈련학교를 복권기금 57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아 경기도 화성에 대지면적 9,989㎡(약 3천 평) 건축연면적 3,289㎡(약 1천 평) 규모의 YES센터를 신축하였다. 2019. 2.에는 기존 'YES센터'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자동차정비, 용접, 골프매니지먼트, 커피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5개 과정, 학생 60명, 직원 20명, 1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100% 취업을 목표로 삼고 전문 직업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8. 12월에는 여자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는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설립을 위해 복권기금 28억 3,400만 원을 지원받아 경기도 안산에 대지면적 261㎡, 건물면적 615.56㎡ 규모의 4층 건물을 매입하였다. 2019. 2. 안산센터의 성공적인 개청을 위한 T/F를 구축·운영하여 2개 교육과정(뷰티, 스킨케어) 개설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20년 운영비 예산 2억 4천만 원 및 인력 5명(정원 3명, 시간강사 2명)을 확보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의 조직 및 인력(직원 정원 73명), 국고보조금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소년원 출원생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협회 본부 및 소속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협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였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회 조직·인력·예산·사업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관리를 실시 할 계획이다. 특히, 여자 위기청소년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설립된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반 운영 규정을 재정비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별관에 '상상드림카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의 사회정착 및 비행예방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6. 소년재비행방지 역량 강화

가. '교육·수용 전담제' 도입 등 소년원 교정교육 전문성 강화

소년보호과 사무관 김태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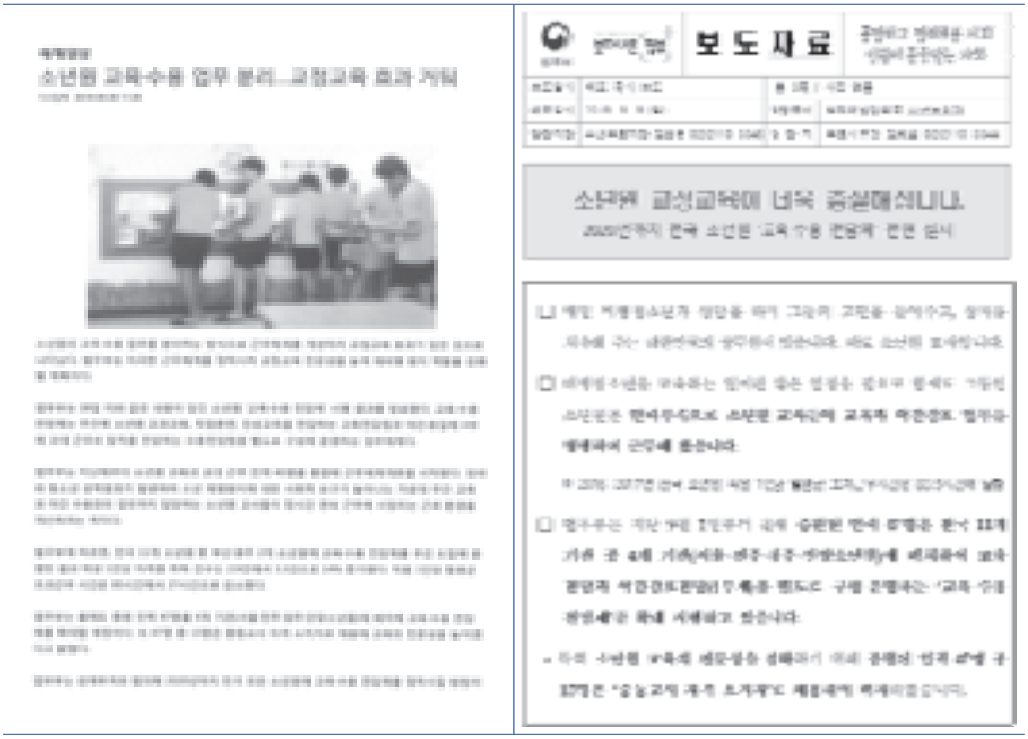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후 꾸준히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한식조리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교과 교육과정 및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과 의료재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소년원은 비행청소년의 교육기관인 동시에 수용기관으로서 24시간 감호근무가 필수적이나 그 동안 인력부족으로 소년원 교사들이 교육과 수용관리 업무를 병행하여 왔다. 최근 인력충원을 통해 소년원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비행청소년 교정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소년원 근무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2019년 증원된 감호전담인력 34명(2018년 38명)을 활용하여 주간 교육전담팀과 야간·휴일 수용전담팀(4부제)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는 '교육·수용 전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부산과 광주 2개 소년원에 이어 2019년 서울, 전주, 청주, 안양 4개 소년원에 확대 실시하여 전문화된 처우 제공 등으로 교정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 그림 2-93 | 교육·수용 전담제 언론보도



보 도 자 료

전국 소년원학교의 명칭 및 2019년 소년원 교육과정은 〈표 2-69〉와 같다.

| 표 2-69 | 전국 소년원학교의 명칭 및 2019년 소년원 교육과정

기 관(학교명)	설립일	개교일	대상	교 육 과 정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1942. 4. 20.	2000. 8. 30.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사진영상, 한식조리, 헤어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1947. 1. 18.	2000. 8. 31.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 용접,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1945. 11. 21.	2000. 8. 31.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커피바리스타, 케이크디자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1946. 11. 7.	2000. 8. 31.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 용접, 건축환경설비,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기 관(학교명)	설립일	개교일	대상	교 육 과 정
전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	1967. 3. 25.	2000. 9. 1.	8호 9호 10호	• 8호(男) 교육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1998. 7. 1.	2002. 3. 4.	7호 9호 10호	• 의료·재활교육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1978. 7. 8.	2009. 7. 1.	8호 9호 10호	• 8호(女) 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예술분장, 커피바리스타, 헤어디자인, 제과제빵)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중고등학교)	1963. 7. 2.	2000. 8. 30.	9호 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女)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피부미용, 제과제빵, 서비스마케팅)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1966. 4. 16.	2000. 9. 4.	9호 10호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가발전문, 스포츠마사지)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1987. 11. 9.	2000. 8. 30.	8호 9호 10호	• 8호(제주지역 男) 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골프매니지먼트)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 분류심사

2) 평가 및 발전방향

'교육·수용 전담제' 도입으로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 등 소년원 교육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 필요 인력을 확보하여 '교육·수용 전담제'를 전국 소년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에는 여성소년원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신설하였고, 소년원생 선호도를 반영한 재미있고 배우고 싶은 직업훈련 교육과정으로 직업교육을 개편 중이다. 향후 소년원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범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소년원생 수용환경 개선 등 인권처우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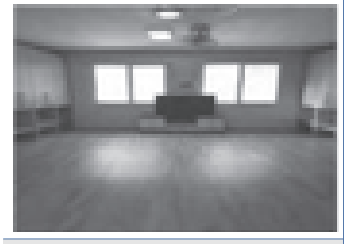
소년보호과 사무관 김태섭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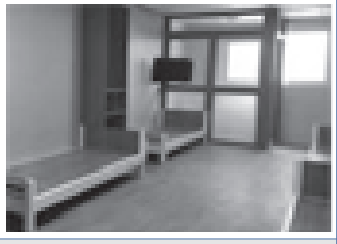
소년원생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유도하는 인권적 처우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수용소년의 인권보호와 개별처우를 위해 1인실 사용 권장)을 고려 10~15인 규모의 대형 집단생활실을 4인 이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는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을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생활실 내 화장실·세면실 설치, 개인별 침대·책상 제공 등 수용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현재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 중 5개 소년원(대구·광주·춘천·청주·전주)의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9년에는 대전소년원 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의료재활소년원 신설을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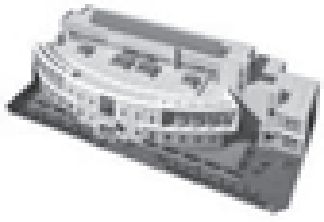
| 그림 2-94 | 소년원 시설 현대화 사업



집단 생활실



4인 이하 소규모실



개방형 Hall식 생활관

이와 더불어 수용 과밀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3개 기관(서울·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 리모델링을 통한 수용 공간 확보 및 소규모 생활실 전환을 진행 중이다.

| 그림 2-95 | 생활실 리모델링







2) 평가 및 발전방향

소년원 시설현대화 사업과 함께 집단생활실을 4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실로 전환하여 인권보호와 개별처우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소년원생의 정서적 안정과 비행학습 방지에 기여하였다. 이후에도 시설 리모델링이 미완료된 기관의 생활실 소규모화와 소년원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소년원 직업훈련 과정 개편

소년보호과 사무관 배성희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소년원생들의 선호도와 취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망 직업훈련 직종을 신설하는 등 직업훈련 과정 개편을 추진하였다.

2019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소년원학교 직업교육훈련 개편방안' 이라는 주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환경설비, 서비스마케팅, 가발전문 등 5개 직종을 폐지하고, 에너지설비, 그래픽디자인, 디저트 등 3개 직종을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2020년에 신설 예정인 3개 직종 중 에너지설비는 지역사회에 특화된 융합과정으로 태양광 등 신생·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실무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그래픽디자인과 디저트 과정은 소년원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1인 창업도 가능한 과정이다.

| 그림 2-96 | 소년원 직업훈련



2) 평가 및 발전방향

소년원생들의 직업훈련 직종 선호도와 최근 취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소년원생이 배우고 싶어 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년원 직업훈련 과정 개편을 진행 중이다.

소년원 직업훈련 교육이 소년원생의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등 재비행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도모하겠다.

7.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법교육 전개

보호정책과 사무관 이동준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민의 법의식 개선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의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체계적인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중점 사항은 법무부 내부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교육위원회의 회의 개최, 청소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수요자별 맞춤형 법교재 개발,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지역 법교육 인프라 확산을 위한 법교육 관련 유관단체 협력 및 민간 법교육 지원, 법체험 기관인 '솔로몬로파크(대전, 부산)' 운영 및 광주솔로몬로파크 추가 건립 등이다.

나. 추진성과

1) 법교육 체계 구축

2005. 3월 법조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법교육 6대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2006년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6. 7월 17인으로 구성된 법교육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관 협력방안 등 법교육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2008. 6월 「법교육지원법」 시행 및 법교육위원회 구성을 통해 법교육 연구 및 추진 체계 구성을 마무리하였으며, 2009. 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법교육위원회를 총 22차례 개최하여 법교육 프로그램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심의하였다.

| 표 2-70 | 법교육 6대 연구과제

법교육 6대 연구과제	① 국내·외 법교육 실태 점검 및 법교육 추진방향 ②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③ 법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방안 ④ 교사 등 법교육 관련자 전문성 강화 지원방안 ⑤ 법조계, 법과대학 등 법교육 지원방안 ⑥ 평생교육,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연계 방안

2) 수요자별 맞춤형 법교재 개발

2005. 9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상생활과 법, 법의 기본원리와 가치, 경제생활과 소비자, 범죄와 형사절차, 직장 생활과 근로자, 가정생활과 가족, 국가와 국민 생활의 영역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의 법과 생활'을 시작으로, 2005. 12월 대학생 및 시민 대상 '한국인의 법과 생활', 2006. 1월 법교육 프로그램 강사·교사용 지도서 '법은 내 친구', 2006. 4월 어린이용 법교육 교재인 '나는야 법짱'을 발간하였으며, 이후 대상을 확대하여 2012. 3월에 다문화가정 대상 'Fun Fun 대한민국의 법'과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우리법 바로알기', 2018년에는 일반 시민 대상 '클릭, 안전한 사이버 세상으로(LAW)'를 발간·배포 하였고, 2019년에는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해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수어영상도서로 개발하여, 수어영상 및 디지털 음성서비스를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DREAM)에서 지원하고 있다.

| 표 2-71 | 대상별 법교육 교재

대 상	도서명(발간일)
중·고교생	청소년의 법과 생활('05.12./'07.2./'08.1./'10.3./'11.3./'13.3./'14.2./'16.3./'18.10./'19.10.), 만화로 보는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09.7.), 헌법재판소 판례로 사회 교과서 200% 활용하기('10.2.),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알고보니 든든한 축구비법('12.10.), 장난과 범죄사이('13.)
대학생·시민	한국인의 법과 생활('05.12./'07.2./'08.2./'09.2./'10.2./'11.3./'13.3./'15.9./'17.9./'18.10,/'19.2.),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09.2.), 아뿔싸!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범죄('09.4.), 알면 힘이 되는 알짜배기 생활법률('10.6.), 축구 잘하는 법(法)('11.12.),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어르신을 위한 알면 알수록 좋은 법('12.8.), 희망을 만드는 법('13.9.), 보배야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줘(점자 및 음성도서)('13.9.), 클릭, 안전한 사이버 세상으로(LAW)('18.10)
법교육 강사·교사	Law Educator Ⅰ·Ⅱ, 법은 내 친구('06.1.), 학교폭력예방 가이드북('08.3.), 학생자치법정 가이드북('08.5.), 학교폭력 OUT('09.12.),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활용한 수업지도안('12.1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의안('12.6.), 강력범죄 예방 강의안('13.3.) 및 가해방지 강의안('13.10.), (헌)법교육 종합 콘텐츠 DVD('13.10.), 쉽게 가르치는 우리헌법(중·고 사회용)('15.12.),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교재 및 리플릿('16.9.)
어린이	나는야 법짱(06.4.), 손오공 무법소탕기Ⅰ·Ⅱ('06.9.) 및 Ⅲ('11.6.), 함께하는 법이야기('07.11.), 법에게 물어봐('08.4.), 만화로 배우는 우리나라 헌법('09.1.), 학교폭력 예방 소책자('12.6.), 홍비홍시와 함께하는 소중한 나와 우리('12.11.), 우리 공주의 나를 사랑하는 법('13.3.), 헌법아! 놀자Ⅰ·Ⅱ('13.9.), 손오공 무법소탕기 Ⅳ('13.11.), 나는야! 법짱('13.12.), 내친구 LAWⅠ·Ⅱ('15.2.), 조선은 법치국가다('15.5.), 우리 모두가 주인이에요 및 일곱 난쟁이 집에도 규칙이 필요해('15.12.), 우리곁엔 헌법('16.7.), 생각이 자라나는 솔로몬의 학생법정('16.8), 교과서 속 법이야기('17.11.), 어린이로스쿨('19.5.)
다문화·북한이탈 청소년	Fun Fun 대한민국의 법('12.3.), 우리법 바로알기('12.6.),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법세상 및 다문화 사회 청소년의 법과 생활('15.6.)
장애인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 수어영상도서('19. 12.)

3)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05년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법 관련 전문성을 함양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2006년 '북한이탈 청소년 법교육', '법교육 출장

강연', '학생자치법정', 2009년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2010년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2011년 스포츠 법교육, 2014년 '헌법토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일상생활 속 법교육 확대를 위해 2007년 '시민법률콘서트', 2013년 '시민로스쿨' 및 2013년 '법사랑학교', 2015. 12월부터 '유아법교육'을 실시하였고, 2016. 11월부터 '찾아가는 로파크' 버스를 도입해 법적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독후 활동을 결합한 유아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9년에는 그동안 실시해 왔던 각종 경연대회(생활법퀴즈, 모의재판, 헌법토론 등)가 과도한 경쟁으로 법교육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우려에 따라, 대회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참여와 토론을 통해 법의 가치를 배우는 중·고교생 법체험 캠프로 개편하였고, 블라인드 변호인 제도, 참관인 제도 등 학생인권의식 향상을 강화한 학생자치법교육 운영매뉴얼 4.0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생자치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4) 법교육 유관단체 협력 및 민간 법교육 지원

2006. 3월 법교육 수업모형 개발 등 청소년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서울대학교(사범대학)와 체결한 MOU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대, 2007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여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2009년 초등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교육대학교, 준법풍토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MOU를 추진하였다.

또한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1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부산 솔로몬로파크 건립 및 지역 법교육 인프라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다.

| 표 2-72 | 연도별 MOU체결 현황

연 도	MOU체결 대상
200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 서울시립대학교(법정대학)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이화여자대학교
2009년	서울교육대학교, 대한변호사협회·동아일보, 법학전문대학원 6개교 (고려대, 부산대, 전북대, 경희대, 전남대, 성관관대)
2010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 법학전문대학원 3개교 (이화여대, 중앙대, 연세대)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 3개교(제주대, 경북대, 한양대)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2개교(충남대, 동아대)
2016년	한국프로농구연맹(KBL), 한국야구위원회(KBO)

그 밖에 민간의 법교육 연구활동을 위해 약 30여명으로 구성된 '법교육학회' 창립을 지원하였고, 법교육의 확산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부설 '한국법교육센터'의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법교육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역량있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사법교육원, 한국법교육센터,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희망재단, 청소년교육전략2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준법지원센터를 비롯한 74개의 소속 기관,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여 현재 법문화진흥센터는 총 85개이다.

5) 법 체험기관 '솔로몬로파크' 운영

2007년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쉽고 재미있게 법과 질서의 소중함을 체득할 수 있도록 대전에 솔로몬로파크를 설립하였다.

대전 솔로몬로파크는 법연수관(2008. 1월 개관)과 법체험관(2009. 3월 개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2019년에는 노후화된 법체험관 전시 시설물 개선 및 후생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체험객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했다.

법연수관에서는 어린이 법탐험캠프, 중학생 법사랑캠프 등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법체험관은 법역사관, 모의국회, 모의법정, 어린이 법짱마을 등으로 구성되어 생생한 법률 현장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016년에는 증가하는 법체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산 솔로몬로파크를 건립하였고, 부산 솔로몬로파크는 대전 솔로몬로파크와 차별화하여 헌법배움터, 선거체험관, 법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 충청권(대전 로파크), 영남권(부산 로파크)과의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고 호남권 법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호남지역 교통의 중심지인 광주에 솔로몬로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설계를 시작하였고 2020년 공사 착공, 2022년에 준공 및 개소할 예정이다.

| 그림 2-97 | 대전·부산 솔로몬로파크 전경



대전 솔로몬로파크



부산 솔로몬로파크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19년에 법교육 정책 방향 설정과 주요 사업 심의를 위해 민·관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 법교육위원회 정기회의를 2차례 개최했고, 충남대학교법률센터 등 2개의 법문화진흥센터를 발굴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였다.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해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수어 영상 교재로 개발하는 등 법교육 저변 확대에 힘썼고, 법교육 도입 초기부터 운영해 왔던 각종 경연대회(생활법 퀴즈대회, 모의재판, 헌법토론대회 등)가 과도한 경쟁으로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에 따라 캠프 형태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7차례 운영하였다.

2020년에는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출장강연형 프로그램 운영, 신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 법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법교육 사업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과 인프라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이외 현행 법교육지원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법교육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교육지원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 교사, 어린이,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교육 교재 개발에 앞장설 예정이다.

매년 20만명 이상의 많은 체험객들이 방문하는 국내 유일의 법체험 테마파크인 솔로몬로파크 또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법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 예정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테마로 한 법체험 기관으로 호남권의 법교육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보호정책과 사무관 이동훈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범죄가 증가하고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범죄는 개인의 재산이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 저하는 물론 막대한 유·무형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에서 빈발하는 기초 법질서 위반 사례를 찾아서 개선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범죄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생활 속에서 법질서를 체감하게 할 수 있는 실천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4년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던 활동들을 심화, 확대한 '법질서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2014년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기초 법질서 지키기', '안전법규 준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등 3개 분야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전국 지역공모를 거쳐 모두 33개 지역에서 특성에 맞는 법질서 실천운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시민참여 법질서 실천운동의 전형을 만들고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저스티스 서포터스'를 조직하여 법질서준수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지난 2008년 이후 2019년까지 약 2천 5백 명 이상의 시민이 '저스티스 서포터스'의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2014년 14개 지역, 2015년 11개 지역에서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였다. 2016년에는 사업 규모 확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과의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법무부의 색채를 가미한 범죄예방 환경개선(법사랑타운)을 시작하였다. 범죄예방 환경개선과 더불어 주민공동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는 '법사랑타운'사업을 경기 안성과 전남 광양에 시범 실시하는 등 모두 12개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경기 광명 등 3개소 '법사랑타운'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 경기 남양주 등 5개소와 행정안전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선정지역 광주 남구 등 5개소 등 모두 13개소를 선정하여 주민역량 강화 교육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국민들의 범죄 불안감 감소와 부처 간 협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선정 경기 용인 등 7개소, 해양수산부(어촌뉴딜

사업 300) 선정 경남 남해군 등 3개소와 법무부 갈등지역 경기 성남 등 2개소를 추가하여 총 12개소를 지정함으로써 중·장기 범죄예방 계획 및 기초설계안 등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법무부 갈등지역에는 시민법률콘서트, 작은 셉테드,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을 지원하였다.

나. 추진성과

1)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2019년에는 저스티스 서포터스 35개 팀, 153명이 참여하여 실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자발적으로 진행하였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촬영 및 악성 댓글 근절, 교통안전, 학교폭력예방 등의 주제로 236회의 거리 캠페인, 인터뷰, 멘토링을 실시하였고 256건의 카드 뉴스를 제작, 온라인 홍보에 활용하였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2019년에는 강원 원주시, 경남 남해군 등 12곳에서 지역당 평균 11회, 251명(총 130회, 3,015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컨설팅과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성남보호관찰소 정상화 및 주민 갈등이 예상되는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지역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법교육·법질서 실천운동, 작은 셉테드 사업, 법교육, 솔로몬로파크 체험 견학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관 이미지 개선과 지역사회 갈등조정에 도움을 주었다.

| 그림 2-98 |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법질서 캠페인 | 범죄예방 환경개선

2) 온라인 '법사랑 사이버랜드' 및 '법교육 전자도서관' 운영

온라인 법교육의 일환인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법교육 참여형식을 다변화하였고, 대상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표 2-73 | 법사랑 사이버랜드 구성

테 마	주요 내용
유아놀이터	영상동화 등을 활용하여 법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
어린이마을	직접 게임을 체험하고, 영상시청을 통해 재밌게 법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
청소년세상	영상과 캠페인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를 일깨우도록 구성
모두가행복한교실	법무부에서 개발한 교육부 인증 우수인성교육 프로그램 5종 및 자유학기제용 주제선택 법교육 프로그램을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교과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 등에 편성하여 운영하며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
시민실천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와 범죄예방정책 소개로 구성

'법교육 전자도서관'은 법교육 출간교재, 연재기사, 연구보고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법교육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용자가 쉽고 재미있게 법질서 및 민주 시민 의식을 배울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전자도서관 웹사이트로, 법교육 자료가 필요한 성인, 교사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법교육 자료를 열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 표 2-74 | 법교육 전자도서관 구성

테 마	주요 내용
멀티미디어콘텐츠	영상동화 등을 활용하여 동영상, 읽어주는 만화, 카드뉴스, 연재기사, 스포츠와 법이야기 등으로 콘텐츠를 분류,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 누구나 편리하게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법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
문서/전자책	법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 기반의 법교육 자료(교재, 프로그램, 연구논문, 사업자료 등)를 PDF기반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
교사커뮤니티	일선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인 법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및 수업지도안, 워크북 형태의 법교육 자료를 구성하여 제공
자료검색기	교재, 프로그램, 연구논문, 사업자료 등 다양한 분류의 전자문서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여 문서를 열람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구성
전자문서 웹뷰어	PC/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문서의 열람 및 시공간의 제약 없이 법교육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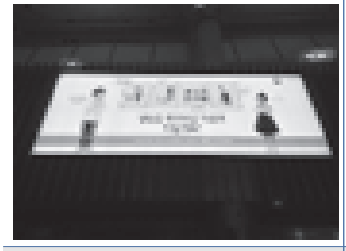
3) 생활 속의 범죄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법질서 홍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국민의 참여 및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기초질서 함양', '폭력문제'를 주제로 선정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1~4호선 내부 액자와 수서역 고속철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법질서 홍보를 통해 기초질서 준수, 학교·가정·직장폭력 예방 등 생활 속의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의 인식전환과 관심을 유도하였다.

| 표 2-75 | 연도별 홍보 현황

연 도	홍보 내용
2011년	법질서 바로세우기 관련 공익광고 제작 3,000회 이상 송출(SBS TV, CMB 등 전국 케이블방송사, MBC드라마넷, YTN 등), 스마트폰용 앱 출시('법률비타민', '동화 속 법률퀴즈', '스쿨존을 지켜라', '한국인의 법과 생활'), '나의 LQ테스트' 서비스 제공 및 카툰북(법아! 카툰과 놀자) 발간
2012년	공익광고('언어순화', '강력범죄예방-돌려주세요', '학교폭력예방-거품편') 제작 TV·라디오·지하철·영화관 등에 홍보, BGF리테일(구, 훼미리마트)과 연계하여 전국 7,000여 CU점포 계산대 및 수도권 지역 대형모니터 1,060개에 공익광고를 무료 송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송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부활 김태원 작사·작곡)' 제작, EBS '폭력 없는 학교-법질서선진화과편' 방송('12.7.)
2013년	4대악 근절을 주제로 TV, 라디오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각 1편을 제작하여, KBS, MBC, YTN, MBN, 서울·경기 전광판, 영화관 등에 홍보('13. 9. ~ 12.),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와 협력하여 4대악 근절 공익광고 2편을 제작, KBS를 통해 송출('13. 9. ~ 12.), '폭력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육부, 전국 초·중·고등학교,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총 2만 부를 배포
2014년	SBS TV, 채널A, YTN, MBN, TV조선 등에 법질서 실천운동 공익광고 '행복 비법' 편을 방영, '법질서 실천송'(카라)을 제작·배포, 법질서 실천운동 로고와 슬로건 '법질서 실천, 나부터 릴레이' 포스터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각 지자체, 민간기업 등에 총 1만부를 배포
2015년	KBS 특집다큐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와 KTV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이 방송, 채널A, YTN 등 TV·라디오에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가 총 332회 송출, '법의 날', '호국의 달', '광복절' 등 기념일을 주제로 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법사랑사이버랜드, 유튜브 등에 게시, LGU+ 승강기 광고보드와 미디어라이프 광고보드(3,287대, 콘텐츠 당 300여 회)에 송출, SNS 홍보를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 '나부터릴레이' 개설('15.8.)
2016년	페이스북에 법사랑서포터스가 제작한 '법무정책 카드뉴스' 및 '삼국지 웹툰' 등 300여개의 콘텐츠 게시
2017년	우리사회 나눔 문화 정착과 불우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재능나눔 프로젝트'를 집중 홍보(페이스북에 재능나눔을 주제로 한 웹툰과 카드뉴스를 제작·배포, 팟캐스트와 'SBS 이숙영의 파워FM'에 음성 광고를 실시, 스포츠동아, 매일경제에 우리사회 재능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고, 연합뉴스 TV, 채널 A에 공익광고를 송출)
2018년	범죄예방 및 기초법질서 준수 포스터 제작('나 이런 사람이야!', '관심이 곧 예방')하여 지하철 스크린도어·객차 및 고속버스터미널 전광판 등에 게시,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명예보호관찰관 등을 소개하는 라디오광고를 제작·송출('MBC 굿모닝 FM김재동',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9년	범죄예방 및 기초법질서 준수 포스터를 제작('당신은 부끄러운 어른이 아닌가요?', '세상에 정당한 폭력은 없습니다')하여 수도권 1~4호선 지하철 출입문, 수서역 수서평택고속선 옥외매체, 서포터스 활동, 사이버랜드 등 다양한 분야의 캠페인 콘텐츠로 활용

| 그림 2-99 | 2019년 홍보



수서역





1~4호선 지하철 내부

다. 평가 및 발전방향

2019년의 법질서 실천운동은 참여 대학생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저스티스 서포터스는 경기장, 공원 등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질서 캠페인 활동을 펼쳤으며, 직접 제작한 홍보포스터, 카드뉴스 등을 SNS에 게시하여 홍보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또한, 광주보호관찰소,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서울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법무부 보호기관의 주요 업무를 포함한 기관 정보를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저스티스 서포터스의 법질서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범죄예방정책을 쉽고 친근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타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산업 재생사업 선정지역과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사업 선정지역 및 법무부의 갈등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범죄예방 컨설팅 등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고, 지역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각종 법교육 실시 및 필요한 각종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사회에 공동체 의식 제고 등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시민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질서 실천운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 제고 및 2019년 전체가구 대비 약 29%를 점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불안감 감소에 주안점을 두고 계속 진행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법률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한 대화창을 활용한 2세대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의 분야를 확대하고 청소년이 주된 대상이었던 법사랑 사이버랜드의 대상을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층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범죄예방 추진 정책을 알아갈 수 있도록 콘텐츠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법질서 홍보는 2019년에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기초질서 함양', '폭력문제'를 주제로 광고를 실시하였다. 광고는 국민들이 기초 법질서 준수에 대한 공감과 의식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폭력 등 생활 속의 범죄를 예방하게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법질서 홍보 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홍보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및 법질서 실천운동과 범죄예방정책을 연계한 홍보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9. 출소자 사회복귀 역량강화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추진

보호정책과 사무관 김영준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산하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하여 2006년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한 「출소자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로 2010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출소자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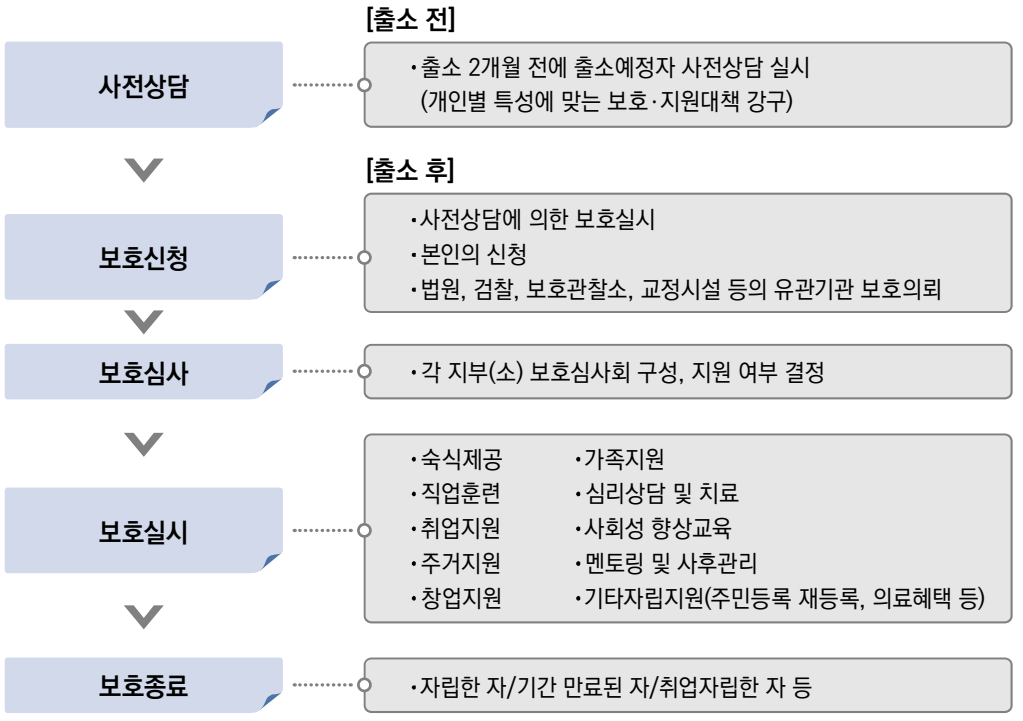
2011 ~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의 「출소자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을 통해 총 16,071명의 출소자를 참여시켜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55억여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이 아닌 법무부 직접사업으로 출소자 특화 취업지원사업인 「허그(HUG)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019년까지 출소자 27,509명을 참여시켜 취업역량을 강화시켰다.

가정 해체 위기에 처해 있는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과 출소자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2014년 경기도 오산시에 건립된 법무보호가족교육원의 가족희망센터에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가족상담, 가족캠프, 가족교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희망센터는 2014년 개청 이후 2019년까지 갱생보호대상자 966명에게 4,749건의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대상자 가족 1,069명에게 45회에 걸쳐 가족캠프, 가족교육, 문화체험 등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 참여를 높이고자 2006년부터 정계, 학계, 자원봉사자, 유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허그(HUG) 후원의 날'[10]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행사의 취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행사 명칭을 '법무보호복지의 날'로 변경했다. 전국 각 지역별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추천받아 공단 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취업지원, 재정지원, 주거지원, 종교, 사전상담, 여성, 대학생' 등 기능에 따른 직능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기관별로 활동하고 있다.

10) 허그(HUG) 후원의 날 : 갱생보호사업 유공 자원봉사자 노고를 치하하고 출소자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후원행사

| 그림 2-100 | 법무보호사업 신청 절차



나. 추진성과

1) 사회복귀 조기 정착을 위한 일자리지원

출소자의 안정적 취업처 확보를 위해 2008. 6월 전국취업위원연합회를 구성하고 1기업 1출소자 고용운동을 하고 있으며, 고용협력기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370개 업체를 발굴, 2,061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2009년부터 2019년까지 42개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체'를 사회공헌기업으로 선정하여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대출시 보증한도비율 10% 상향(80%→90%) 및 보증보험료 0.2% 할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소자 고용에 대한 기업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19. 2. 제도 도입, 동년 8월 전국 확대)와 관련하여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의 신속한 취업 연계를 위해 출소자 채용약정 희망업체 809곳을 발굴하였으며, 취업지원 수혜자 확대를 위해 공단·교정·보호관찰소 간 3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159회)하여 출소자 취업지원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표 2-76 |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실적

(기준 : 2019. 12.31)

참여연도	참여인원(명)	수료인원(명)	수료자 취업현황	
			취업 인원(명)	취업률(%)
2015	5,014	4,504	2,727	60.5
2016	4,997	4,619	2,797	60.6
2017	5,655	5,130	3,005	58.6
2018	5,726	2,220	1,528	68.8
2019	6,117	2,282	1,727	75.7
계	27,509	18,755	11,784	64.8

| 그림 2-101 | 일자리 기반 활성화 노력



공단·교정·보호관찰 3자 협의회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식

공단은 2011년부터 용접 등 취업이 용이하고 지역산업에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술교육원을 설립하였다. 인천·울산(용접), 전주(영농), 창원(기계가공), 경기 화성(바리스타 등), 충남 홍성(자동차정비), 경북 예천(전기) 등에 위치한 7개 기술교육원은 출소자 등 보호대상자를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하여 안정된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 표 2-77 | 기술교육원 운영실적

(기준 : 2011. ~ 2019.)

구 분	입교(명)	수 료		취 업		비 고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울 산	771	633	82.1	374	59.1	
인 천	696	607	87.2	352	58.0	
경기남부	343	230	67.1	81	35.2	
충 남	181	152	84.0	65	42.8	
전 북	311	240	77.2	72	30.0	
경 남	369	272	73.7	90	33.1	
경 북	58	36	62.1	5	13.9	
계	2,729	2,170	76.2	1,039	38.9	

또한 매년 지역별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출소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공단 창업지원은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창업에 곤란함을 겪는 출소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최대 6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09년부터 출소자 199명에게 78억 4,465만원을 지원, 출소자 자립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

| 그림 2-102 | 기술교육원 전경



예천 전기 기술교육원 전경



예천 전기 기술교육원 실습장

2) 출소자 가족지원 사업 강화

가족지원사업은 2019년 한 해 주거지원 220호, 심리상담 12,694회, 자녀학업지원 1,418명 등을 통해 보호대상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연계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출소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019년까지 총 2,268호의 임대주택을 지원, 2,963가구의 출소자 가족이 주거지원 수혜를 받았다.

2019년에는 주거지원 수혜 대상 범위를 수형자 가족까지 확대하여, 출소 전 단계부터 주거위기에 놓인 수형자 가족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총 14세대에게 주거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출소자 및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 진단·치료, 대인관계 개선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26명을 채용하여 2019년까지 51,159명에게 81,220건의 전문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법무부와 공단은 수형자 가족 및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학업지원 523명, 주거지원 14가구, 심리상담 152명, 원호지원 181명, 장학금 지원 51명 등 활발한 지원을 통해 수형자 가족해체 및 자녀의 범죄 대물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표 2-78 | 주거지원사업 관리주택현황

(기준 : 2006. ~ 2019.)

연번	기 관 명	관할지역	관리주택(호)
1	서 울 지 부	서울 중앙, 남부, 동부 지역	213
2	인 천 지 부	인천, 부천	250
3	경 기 지 부	수원, 경기 남부(경기남부 관할 제외)	272
4	경기남부지부	경기 남부(오산, 평택, 화성, 안성)	67
5	경기북부지부	경기 북부	161
6	강 원 지 부	강원 전지역	80
7	대 전 지 부	대전	161
8	충 남 지 부	충남 전지역	26
9	충 북 지 부	충북 전지역	67
10	대 구 지 부	대구, 경주, 포항	201
11	경 북 지 부	경북 전지역(경주, 포항제외)	15
12	부 산 지 부	부산	122
13	울 산 지 부	울산	100
14	경 남 지 부	경남 전지역(부산·울산 제외)	124
15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전 지역	165
16	전 북 지 부	전북 전지역	96
17	제 주 지 부	제주	31
18	서울북부지소	서울 북부지역	117
합계			2,268

| 그림 2-103 | 가족희망센터 활동



수형자 가정방문 및 환경조사



수형자 미성년자녀 장학금 전달

3) 지원 인프라 확대 및 홍보 강화

2019. 11.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나눔, 위대한 변화'라는 주제로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을 개최하여, 자원봉사자의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표 2-79 | 법무보호복지의 날 추진경과

일 시	장 소	내 용	참석인원
2006. 10. 26.	전국거점도시	• 발대식, 헌혈운동, 가두캠페인	2,800여명
2007. 06. 14.	라비돌리조트	• 전진대회, 노란리본, 가두캠페인	3,000여명
2008. 08. 29.	백범기념관	• 전진대회, 노란리본, 청계천 가두캠페인	4,000여명
2009. 09. 02.	올림픽홀	• 바자회, 콘서트, 사회적비용 컨퍼런스	4,000여명
2010. 09. 10.	장충체육관	• 바자회, 콘서트, 취업박람회(교정기관 합동)	3,000여명
2011. 10. 31.	코엑스	• 전진대회, 바자회, 축하공연(난타, 샌드 애니메이션)	1,500여명
2012. 10. 30.	국립중앙박물관	• 전진대회, 바자회, 성과경진대회(영상물 상영 등)	1,000여명
2013. 10. 30.	안양아트센터	• 전진대회, 바자회, 노란리본기	1,000여명
2014. 10. 29.	안양아트센터	• 전진대회, 기업홍보 축하공연(타악, 대학생 & 보호청소년)	1,000여명
2015. 11. 18.	과천정부청사	• 전진대회, 사료전시, 축하공연(국악, 대학생 & 청춘합창단)	1,000여명
2016. 11. 16.	과천정부청사	• 전진대회, 사진전, 축하공연(음악축제 수상자(합창, 난타))	1,000여명
2017. 11. 16.	과천시민회관	• 자원봉사자 포상, 역사관 개관 기념 기록물 전시, 축하공연(홍보대사)	1,000여명
2018. 11. 07.	과천시민회관	• 자원봉사자 포상, 축하공연(홍보대사 등), 공단가 제창	1,000여명
2019. 11. 08.	과천정부청사	• 자원봉사자 포상, 홍보영상 상영, 기념공연, 손피켓 퍼포먼스	200여명

아울러, 2013년부터 갱생보호사업·기술교육원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법무부 보라미 방송을 통해 각 교정기관에 송출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터나눔 허그(HUG)기업 수기집 「희망으로 다시 시작하다」를 제작·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는 모바일을 통해 공단 동향과 소식을 알리는 「월간 뉴스레터」와 자원봉사자 미담사례, 출소자 성공스토리 등을 담은 소식지 「아름다운 동행」을 활용하여 공단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출소자 포용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70여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갱생보호사업의 역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7년 법무보호가족교육원 내에 역사관을 설치하고 공단에서 보관 중인 시대별 사료를 정리하여 전시함으로써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 그림 2-104 | 2019 법무보호복지의 날





4) 전국 자원봉사 조직 개편

2019. 3. 기존 법사랑위원과 보호위원으로 이원화된 조직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법무보호위원으로 일원화하여 법무보호위원전국연합회, 전국취업위원연합회, 대학생 법무보호위원전국연합회, 가정복원위원회 등으로 자원봉사자 조직을 개편하였다. 2019년 현재 법무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조직 294개, 자원봉사자 6,741명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80 | 공단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계	운영위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사전상담	주거지원	사회성향상	재정지원	여성	종교교화	대학생	홍보	지역	자문	기타
위원회수	294	12	34	8	22	20	16	22	22	18	30	6	28	5	51
인원	6,741	309	836	148	572	577	333	567	537	188	1,005	97	842	43	687

다. 평가 및 발전방향

일자리지원 사업은 출소자들의 구직기회 및 고용협력기업 인프라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출소자 고용 우수사례 등의 관련 모바일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국민친화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출소자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2022년까지 참여자 1만명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출소자 고용을 희망하는 지역사회 내 협력기업을 지속 발굴,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등 출소자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단 일자리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동부(여성), 강릉, 목포 등에 보호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가족지원사업은 주거지원, 심리상담, 자녀학업지원 등을 통해 보호대상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친화프로그램 확대 실시 및 내실 있는 주거지원 운영으로 사업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해 교정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신문(406회), 방송(44회), 인터넷매체(1,428회), 온라인매체(17,431회) 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앞으로 출소자 우수사례 수기집 제작 및 유관기관 배포, 전국 자원봉사자 행사(허그 나눔축제, 허그 후원의 날 등) 통합 추진 등을 통해 홍보 역량을 집중하고 교정본부의 협조를 통해 보라미 방송에 송출하던 취업지원 관련 홍보 영상 외에도 수형자 가족지원 사업 홍보 영상을 추가로 제작하여 송출할 계획이다.

법무보호위원으로 새롭게 출발한 자원봉사조직은 전문화교육 강화, 자원봉사활동분야 지속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제6절 감찰·감사업무

1. 감찰업무

감찰담당관실 검찰사무관 이기용

가. 개요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적극 전개하되, 특히 비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패와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조치함으로써 유사 비위 차단에 주력하였다.

특히, 직장 내 성 관련 비위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감찰업무를 통한 직장 내 인권 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및 각 고등검찰청 감찰부서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효과적인 내부 감찰을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한편, 새로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찰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나. 감찰 업무를 통한 법무부 내 인권 증진 도모

1)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신설 운영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갑질 피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2차 피해 모니터링, 갑질 신고사건 종결 이후 갑질 신고(피해)자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피드백 시스템 등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내 인권 증진을 도모하였다.

2) 직장 내 성 관련 비위행위 엄정 대응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내 성 비위 사건기록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법무부 내 성 비위 사건들이 적절하게 조사·조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직장 내 성 관련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하여 성 관련 비위를 입수하는 즉시 신속하게 사실 확인 및 감찰 조사를 실시하여 엄정 조치하였다.

다.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찰 활동 전개

1) 비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비위행위자, 감독자의 과오 유무를 철저히 조사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소속기관의 온정적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에 기여하였다.

2) 비위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둔 예방적 감찰 활동 적극 전개

취약 분야, 과오 다발 분야, 중점 점검 대상자, 다수 민원을 야기한 직원에 대한 비노출 관찰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단순히 비위나 과오를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업무 개선을 통해 비위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감찰 활동을 추진하고, 감찰활동 우수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 추천을 하였다.

3)「법무부 감찰규정」개정(2019. 10. 21.)

검찰 자체 감찰로 인한 사건 은폐 가능성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검 및 각급청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위 사건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검찰 자체 감찰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심 증폭으로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권 확대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어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기능을 강화 하였으며, 법무부가 2차 감찰권 행사를 위해서는 감찰(감사) 관련 서류·장부 등 자료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4) 감찰과 감사의 협업을 통한 감찰 활동의 효율성 제고

사안 성격상 감찰과 감사가 모두 필요하거나 비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감찰관실 내 감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이 협업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라. 감찰 업무의 객관성 제고

1) 검찰의 감찰업무 효과적인 지휘·감독

대검찰청 감찰본부 및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감찰부서 업무에 대한 정기 사무감사를 2019년 7회 실시하였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감찰 착수·진행·결과 등 감찰과정 전반에 대해 보고받음으로써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한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감독 체제를 유지하였다.

2) 법무부 감찰위원회 신규 감찰위원 위촉 및 감찰위원회 개최

감찰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위원 9명 중 8명을 외부인사로 구성한 감찰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감찰 결과에 대한 검증 및 감찰사건 처리방향 등을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징계 권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감사업무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서혜주

가. 자체감사체계 전면 개편을 통한 감사 실효성 확보 및 조직 내 반부패 및 청렴성 제고

1) 추진개요

2019년도에는 「청렴한 법무부, 행복한 국민」을 자체감사의 목표로 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법무정책의 안정적 집행 지원, 국민생활 불편 사항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 기여 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체계를 전면 개편(감사주기 3년→1년 단축, 감사인력 기존 5개 팀 25명→7개 팀 35명) 하였고, 특히 기존의 지적 위주 감사 시스템을 탈피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하기 위한 특정정책 감사팀을 신설하여 제도 개선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년간 감사주기와 감사대상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104개 소속기관과 1개 산하공공기관(출장소·지소 포함)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 연말연시,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등 근무기강 취약시기에 맞춰 특별 복무감사, 그리고 내부 비위 제보 조사(청렴감사), 재외공관 사증 발급업무, 법무시설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433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여 관련자 486명에게 징계·경고 등 신분상 조치, 4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억 1,719만 원 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다.

2) 추진실적

| 표 2-81 | 실시현황

구 분	감사 횟수	실시기관 수
종합감사	6	105
특정감사	2	3
복무감사	6	전 소속기관·산하공공기관

| 표 2-82 | 조치내역

(단위 : 건, 명, 천원)

조치 결과 / 종별	신분·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징계		경고		주의 등		계		회수		감액 등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433	486	4	5	39	43	390	438	43	117,191	39	66,187	4	51,004
종합감사	349	390	4	5	35	39	310	346	39	66,187	39	66,187	-	-
특정감사	9	-	-	-	-	-	9	-	4	51,004	-	-	4	51,004
복무감사	75	96	-	-	4	4	71	92	-	-	-	-	-	-

나. 반부패 시책 적극 추진으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초 1등급 달성

청렴한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2017년 반부패·청렴 전담팀을 신설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속기관·부서장 청렴도 평가, 고위직 청렴소통포럼,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청렴의 날, 청렴마일리지 제도 등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산하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법무행정 청렴 민관협의회, 청렴클러스터 등을 통해 타 기관과의 우수 시책 공유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또한 입찰과정에 청렴시민감사관 참여 및 찾아가는 청렴감사 등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역대 최초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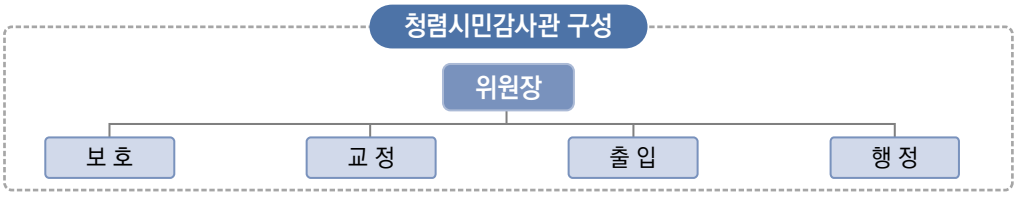
| 표 2-83 | 연도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이 및 실적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급(점수)	3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다.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적극 운영』

1) 추진개요

법무부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높은 수준의 반부패 의식을 갖춘 5인 이내의 시민·외부 전문가를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시정을 권고하며, 각종 평가에 참여하여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등 외부 부패통제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2019년에는 교정 피복류 계약과 관련하여 현장감사 및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이를 토대로 관련 절차 개선을 이끌어 냈으며 해당 계약의 입찰과정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여하여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그 결과 2019년 반부패 시책평가에서 해당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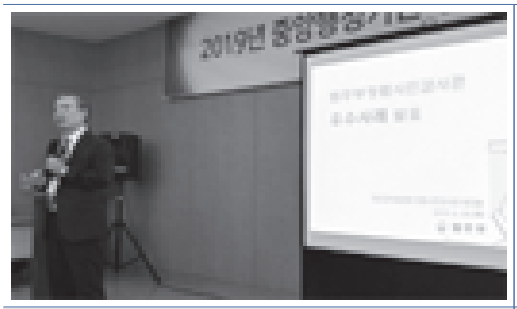
2019년 교정 피복류 입찰과정 참관('19. 6. 5.)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반부패 제도개선 권고의 적극적 수용

① 법무부는 익명게시판의 교도관 피복 저급품 지급 민원에 대한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를 수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교정 피복류 용역 선정 관련 계약방법을 적극적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발표('20. 1. 28.) 과제별 우수 사례 중 발췌

또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중앙행정기관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에서도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운영현황을 여러 기관과 공유했으며, 과천청사 입주기관 청렴시민감사관 합동 워크숍을 법무부 주관으로 개최하여 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권익위 주관 워크숍 참석, 우수사례 발표
('19. 6. 20.)



청렴시민감사관 합동워크숍 개최
('19. 9. 3.)

제7절 인권업무

1.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강화

인권정책과 사무관 김경모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에서는 2018. 8. 7.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18.~'22., 272개 과제)을 수립한 바 있으나, 기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는 각 부처가 제출한 전년도 이행 결과에 한하여 사후에 논평을 하는 것에 그치고 평가기준 등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쉽게 측정 가능한 정량적 산출물에 치중하는 문제가 있어 이행 가이드라인, 평가지표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평가방식의 부재로 인하여 각 부처의 이행계획 수립단계 및 이행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정책 자문단의 자문 및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선정된 중점과제에 관한 과제별 이행 가이드라인 및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각 부처가 이를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행계획 및 이행과정에서부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강화를 통하여 분야별 추진 과제의 적극적 이행으로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인권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권 증진의 법률적 근거 마련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과제 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권기본법의 제정과 이에 근거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나. 장애인차별시정명령 활성화

인권정책과 사무관 김현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008. 4. 1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무부는 장애인차별 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총 17회의 심의를 수행하여 총 2회 시정명령을 발한 바 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된 차별로 인한 '침해의 심각성', '공익의 중대성' 요건을 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정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은 '장애'라고 하는 하나의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등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보다 많은 장애인이 시정명령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정명령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 국제인권기구 대응 업무 강화

인권정책과 사무관 신유정, 유원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9년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위원회의 우리나라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9월)가 있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사생활권 특별보고관의 방문조사(7월)가 있었다. 법무부 소관 조약과 관련해서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후속보고서 제출(9월)이 있었다. 또한 나아가 유엔 인권기구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진정 사건 및 유엔 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 요청 서한이 다수 접수되었다. 법무부는 이에 따른 우리나라 보고서·답변서의 내용을

충실화하여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 인권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유엔 전문가의 주제별 보고서 작성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세계적 인권증진에 기여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20년에는 유엔 자유권규약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8월) 및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심의 전 질의목록 발표(4월),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 방문조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국제사회의 우리 정부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수의 유엔 인권 특별절차가 대한민국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시민사회가 국내 현안을 유엔에 진정하는 빈도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국제인권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시민사회·국회·인권위·관련 전문가와의 소통을 양적·질적으로 모두 향상하여 국제인권기구 대응 업무를 내실화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국내 인권정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라. 국제인권기준에 발맞춘 인권정책 발전 방안 모색

인권정책과 사무관 신유정, 유원정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부처로서의 적극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과제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중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시민사회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신규 정책 도입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였다. 대표적으로 '기업과 인권' 국제기준의 국내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경제계·노동계·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외의 혐오표현 규제와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혐오표현 규제의 법적·제도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한 제5회 국제인권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인권 관련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 4회 '국제인권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국제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과 법무부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우리 정부의 인권활동 소식 등을 전달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앞으로도 시민사회·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수립 및 새로운 인권문제 대응에 힘 쓸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유엔 핵심

인권협약 중 하나인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제까지의 연구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을 발간, 이를 주요 상장사 및 경제인단체에 배포하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기준을 보급하는 등 국제인권규범과 국내인권정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할 예정이다.

마.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인권정책과 서기관 김에오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9. 4. 25.(목)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법을 통한 정의실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유관 기관과 단체의 성과를 알리고, 법률문화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포상하여 국민과 함께 '법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행사를 거행하였다.

2) 추진내용

이번 기념식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윤세리 변호사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명이 포상을 수상하였으며,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하여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도 우리의 일상이 될 것' 임을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 그림 2-105 |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기념사



주요내빈 국민희망 퍼포먼스

2.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

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인권구조과 사무관 윤지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 이래 구조금 지급을 시작하여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 통합이후 지속적으로 그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왔다. '18. 12월 적법체류 결혼이민자를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고 구조금 분할지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9년 한 해 동안 총 305건, 115억 원의 구조금을 지급하여 범죄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피해구조금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범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향후에도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구조금 지급 방법 다양화 등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범죄피해자 우선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범죄피해자 심리적 지원 강화

인권구조과 주무관 문성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임시거처 등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이다. 2010. 7월 서울 송파구에 설치한 서울동부 스마일센터를 시작으로 2019. 12월 창원 스마일센터까지 전국 14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을 설치하여 전국 센터의 심리치료 서비스 전문성 강화, 표준 프로그램 개발, 행정·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스마일센터에서는 2019년까지 14,934명의 강력범죄피해자에게 260,350건의 심리치료와 22,229건의 임시주거 제공, 14,726건의 사회적 지원과 18,139건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 그림 2-106 | 2019년 신규 개소(창원) 스마일센터





2) 향후 추진계획

스마일센터 지원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약 30만 명에 이르는 강력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여전히 센터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법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스마일센터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 표 2-84 | 스마일센터 설치현황 및 지원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설치지역	동부	-	부산	인천·광주	대구·대전	춘천·전주	서부·수원	의정부	청주·울산	창원
지원실적	518	2,087	3,599	6,772	17,064	28,931	43,750	61,698	76,641	74,370

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윤지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은 범죄피해자의 주거 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서 '10. 8월부터 시행되었다. '18. 3월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 가능한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살인·강도·강간·방화 등에서 보복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아동학대 피해, 장애인·아동·청소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 실화 피해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주거지원 신청기간의 예외를 인정해 가해자 소재발견 또는 출소 등 보복의 우려가 현저해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간[11]과 관계없이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표 2-85 | 주거지원 대상 확대(2018. 3월)

종 전	개 선
1. 사망, 장해, 5주 이상의 상해	좌동
2.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주거지원 필요성 인정시 지원 -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친족간 성폭력, 약취·유인, 체포·감금 피해자	좌동 ※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한 피해자 범위 확대 - 보복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아동학대 - 장애인·아동·청소년·업무상위력 강제추행 - 실화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2) 평가 및 발전방향

주거지원은 범죄로 주거를 상실하거나 보복위험 우려, 친족 간의 범죄 등으로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19년에도 총 51가구가 주거지원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각지대 해소 – 스마일공익신탁

인권구조과 사무관 윤지원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가의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6. 4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설립하였다. 법무부 장관과 직원 일동이 제1호 위탁자로 참여하여 3,000만 원을 기탁하였으며,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로 모아진 기탁금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19년에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등 17명에게 총 9,600만 원을 지급하여, 2016년 출범 이후 총 73명에게 3억 4,473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스마일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회복과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직원들이 직접 모아준 천사공익신탁에서 스마일공익신탁으로 매년 재원을 출연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일공익 신탁을 통해 제도적 한계로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생계비·학자금 등의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활동 지원

인권구조과 주무관 윤형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단체로서 2003. 9월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17. 9월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전국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별로 6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포함)가 활동 중이다.

이들 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센터별 활동실적에 따라 2019년도 총 34억 6,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각 센터에서는 피해자 상담 82,569건, 경제·의료 지원 17,313건, 신변보호 485건, 기타 17,529건 등 총 117,896건의 각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범죄피해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활동하면서 경제적 지원 이외에도 자조모임, 자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당 지역사회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총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향후에도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범죄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107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제도



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인권구조과 주무관 윤형식

1) 제6회 다링안심캠페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고통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무관심과 보호·지원의 소홀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신변위협 등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입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2019년 한 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9. 6. 15.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의 기부 캠페인인 '제6회 다링안심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에스원이 공동 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본 행사는 2014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범죄피해자와 가족,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와 일반 시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하는 범국민적 행사이다. 2019년 행사는 기존 행사와 달리 다링주간(2019. 6. 11. ~ 2019. 6. 15.)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관과 희망카페(사회적 기업)의 운영 및 버스킹 공연을 통해 일반시민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썼고, 행사 당일에는 피해자 피해 극복 수기 청취 및 버스킹 공연과 함께 주 행사인 나눔걷기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며 행복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그림 2-108 | 제6회 다링안심캠페인





2) 제12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2019. 11. 27. 코엑스 오디토리움 홀에서 제12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였다. 2008년 '1985. 11. 29. UN의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을 기념하여 처음 개최된 본 행사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아 기존 기념사 및 포상 위주로 이루어진

행사의 틀을 지속적으로 탈피하여 피해자가 직접 행사에 참여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행사로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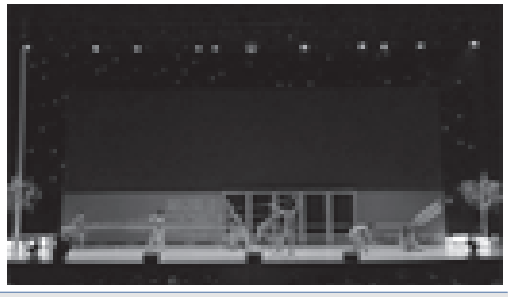
불의의 범죄피해로 겪은 고통과 그 아픔을 극복한 피해자의 따뜻한 희망수기 낭독,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상담 자원봉사자와 피해자로 구성된 공연단의 무용극(파랑새의 꿈) 공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과정과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의 노고가 담긴 동행 탐사 영상(공감 그리고 동행) 상영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본 행사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김상중씨가 특별 출연하여 관객들과 소감을 나누며 공감하는 인터뷰 시간을 마련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 행사에 참여한 각계 각층의 인사, 법무부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가 함께 모두의 웃는 내일을 희망하는 의미가 담긴 힘찬 응원 세레모니를 펼치기도 하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와 직접 피해를 극복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한 자원봉사자 등에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 정부포상 및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 그림 2-109 | 제12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정부포상식



무용극 '파랑새의 꿈'

3) 홍보매체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국민 생활 밀착형 홍보 매체를 선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광고를 제작하여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였다.

2019년 상반기에는 라디오 광고를 제작하여 2개월에 걸쳐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통해 송출하였고, 하반기에는 액자광고를 제작하여 수서역(SRT) 대형 전광판 및 수도권 지하철 1~4호선에 2개월 동안 게재함으로써 연간 균형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 그림 2-110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액자광고 홍보



액자광고 디자인



수서역 전광판 게재 사진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의미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행사를 확대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

인권구조과 주무관 김범수

우리 헌법은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범죄피해자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적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2010. 5월 연간 1조 5천억 원이 넘는 벌금의 4%를 주요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2011. 1월)하였다. 이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2013. 1월)하여 집행된 벌금의 5%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개정(2015. 1월)하여 벌금의 6%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는 등 안정적인 기금재원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9년도 기금 편성현황은 〈표 2-86〉과 같다.

| 표 2-86 | 2019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액	총액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9,620	35,237
	형사조정활성화	4,531	
	범죄피해자구조금	10,000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1,086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874	37,85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31,345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5,636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2,500	22,500
총 계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95,592	

※ 여유자금 및 기금관리비 제외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가. 소외계층에 대한 능동적 법률구조 지향

인권구조과 사무관 최현태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발생,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사건 증가와 법률구조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격차 발생 등에 따라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적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정부정책에 따른 법률보호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차원에서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법률서비스 문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의 법률구조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무변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73개 지역에 공단 지소를 설치하였다.

공단은 민사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확대·강화하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차상위계층과

경찰·소방공무원으로 확대하였고,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법인과 출연금 협의에 따라 '19. 1월부터 장기소액연체자의 개인파산·면책신청 사건까지 무료법률구조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7 | 민사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확대·강화 추진 실적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건	실시 시기	법률구조사업 실적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 지원	2018. 1. 1.	8,120건, 208,107백만 원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 지원	2018. 9. 1.	42건, 1,586백만 원
장기소액연체자 파산 및 면책사건 무료법률구조 지원	2019. 1. 1.	693건, 62,548백만 원

3) 평가 및 발전방향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규범개정과 업무협약 등을 통한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대 및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진과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다.

나.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강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최현태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여 금융소외자의 부채형 빈곤추락을 예방하고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200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7개 지부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위와 같은 전담팀 구성 후 각 7개 지부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등과 연계하여 법률구조, 신용회복,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 맞춤형 One- Stop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였으며, 그 추진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2-88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실적

지원확대 내용	시기	추진 실적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09. 1. 21.	센터 개소 이후 개인회생·파산사건 실적 (법률구조) 114,061건 (법률상담) 934,677건
대구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0. 6. 1.	
부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1. 5. 27.	
광주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2. 8. 27.	
대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3. 7. 23.	
수원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4. 6. 5.	
울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설치	2014. 6. 12.	

한편, 공단은 법원 등과의 융합행정 구현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패스트 트랙[12] (Fast-Track) 제도를 실시(2014.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범 운영)하여 이용실적이 점차 확대되로 있으며, 2018년 대비 2019년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89 | 패스트 트랙 이용실적 증대 현황

구 분	'18년		'19년		증 감 률	
	개인회생(건)	파산(건)	개인회생(건)	파산(건)	개인회생(건)	파산(건)
실 적	303	2,198	253	2,770	△16.5%	26.0%

3) 평가 및 발전방향

공단은 2013. 5. 15. 법원, 채무조정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이 진행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서울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 적용 후 2017.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전국 9개 지부로 확대하여 시행중이다. 패스트 트랙을 통한 소요기간 단축으로 금융소외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및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 결과 2019년 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종합만족도가 95.9점으로 평가되는 등 이용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12) 패스트트랙 : 법원·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한 법원 신청 절차의 간소화

다.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활성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최현태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05.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의 협약에 따라 체불임금 피해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시작하였고 2017. 4월부터는 다부처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개시로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법률구조를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9. 8.부터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등 6개 기관에 방문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신청사건을 접수받는 등 One-Stop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공단의 체불임금피해 근로자에 대한 최근 5년간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90 |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실적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원(명)	122,386	144,303	143,095	150,447	162,977
건수(건)	73,244	89,759	90,151	95,137	106,249
금액(천원)	867,223,870	935,710,540	965,727,546	983,438,918	1,118,822,106

| 표 2-91 | 체불임금피해 근로자 무료법률구조 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건수	59,703	59,002	64,425	66,706	67,338	73,244	89,759	90,151	95,137	106,249

공단은 2017. 4. 24.부터 '다부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곧바로 제공받는 등 One-Stop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9. 8. 26. 부터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업무지원(출장)하여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 제공하는 등 체불임금피해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였으며, 2018년 대비 실적 증감률은 구조인원 대비 8.3%, 구조건수 대비 11.7%, 구조금액 대비 13.8% 각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공단은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공단 지부 등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체불근로자들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임금체불근로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면 신속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체류의 적법성을 불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무료법률구조 혜택을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라.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 상담 실시 등

인권구조과 사무관 최현태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거주자나 수용시설의 수용자들은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공단에서는 2001년도부터 공단 지부나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44개 농어촌 지역을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강연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도부터는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등의 수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출장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서신, 인터넷, 전화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법률상담과 홈페이지에서의 법률정보 제공을 통하여 장애, 질병, 원거리 등의 사유로 공단에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공단의 최근 5년간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상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92 | 소외지역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출장상담 현황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횟수	540	415	303	287	300
건수	2,228	1,739	1,251	1,151	2,267

마. 이동법률상담차량 가동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0. 7월부터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국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법률상담 및 조사, 사건접수까지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그림 2-111 | 이동법률상담




2) 추진내용과 성과

이동법률상담버스 가동 이후 총 1,510개 지역을 방문하여 법률상담 16,619건, 법률구조 671건, 강연 305회를 실시함으로써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93 | 이동법률상담버스 연도별 사업실적

연 도	방문지역	법률상담(건)	소송대리 등(건)	강연(회)	수강인원(명)
2017	212	1,938	38	37	4,034
2018	220	1,999	47	25	2,414
2019	226	2,072	73	26	2,912

2019년의 경우 이동법률상담차량을 확대 운영하여 무변촌 지역, 산업단지 지역, 농·어촌 지역, 산간벽지, 도서 지역 등 법률보호 소외지대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를 강화하고, One-Stop 서비스 제공을 보다 활성화하여 2018년 대비, 방문지역은 2.7%, 상담건수는 3.7%, 접수건수는 55.3% 각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법률구조서비스 수요자 편의를 위해 공단은 2014. 10월 이동법률상담차량을 기존 1대에서 2대로 확대 운영하고, 2019. 8. 1대를 노후 교체하여 무변촌 지역, 산업단지 지역, 농·어촌 지역, 산간벽지, 도서 지역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상담과정에서 소송 등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바로 법률구조와 연계함으로써 법률구조 수요자의 공단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공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바.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문화교육 실시

인권구조과 사무관 최현태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교육 필요성을 인식, 2011. 6월 김천시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법문화교육센터를 개소하여 대한민국의 기본 법질서, 국적, 혼인과 상속, 기초질서 등에 관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문화교육센터 개소 이후 최근 5년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문화교육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94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문화교육 추진실적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원(명)	2,780	3,567	3,193	3,361	4,273

2019년의 경우, 다문화아동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을 확대하여 2018년 대비 실적 증감율은 각 △15.0%, 359.7%, 61.8% 증가한 실적을 보였고, 법교육 대상자를 다변화하여 노인·청각언어 장애인·농업인·이주노동자·재소자 등 법교육 기회가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 찾아가는 법교육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시민의 권리보호 및 법교육 대상자 다변화를 모색하였으며 2019년 추진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2-95 | 법교육대상자 다변화 추진실적

구 분	노인	청각언어장애인	농업인	이주노동자	재소자
추진노력 대상	노인복지대학	경북농아인협회	농협	외국인노동자센터	김천교도소
추진실적	113명	50명	175명	23명	48명

3) 평가 및 발전방향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에 대한 법문화교육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 조기 정착 및 준법의식 제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준법의식과 협동정신 제고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였다.

사.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인권구조과 사무관 최현태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형사절차 등에서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하여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을 위해 2012. 3월부터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법률구조를 시행하였고, 2013. 6월 형사법률구조 대상자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3. 7월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력업무를 전담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6명을 채용하여 6개 지부에 배치하였고, 2014년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9명을 증원하였다. 2015.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아동 학대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까지 국선변호 업무를 확대 실시하고, 2015. 4월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6. 1월 국선전담변호사 2명을 증원하였고, 2019. 3월 국선 전담변호사를 4명 증원하여 2019. 12월 현재 전국 21명의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2. 3월부터 2019. 12월까지 총 53,064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건을 수행하였고 연도별 추진실적은 〈표 2-96〉와 같다.

| 표 2-96 |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실적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구조건수	3,902	4,496	4,054	4,394	5,701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2019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절차 및 변호사 윤리에 관한 교육을 전국 5개 권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총 6회(서울 2회) 총 368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지원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나아가 원스톱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피해자 특성에 맞는 상담을 위해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인권구조과 사무관 최현태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정하는 서울중앙지부(2017. 5. 30.),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2017. 7. 1.) 등 총 6개 지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착을 위해 공단은 2017년부터 다음 〈표 2-97〉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및 2019년 업무추진실적은 다음 〈표 2-98〉과 같으며, 2019년 조정개시 후 조정성립 비율은 57.1%를 달성하여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표 2-97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착 사업추진 실적

추 진 내 용	추진시기
• 2017년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예산 및 설치지부 확정	2016. 12월
• 개소를 위한 소관부서별 준비절차 이행 → 제 규범 정비, 상임위원 및 사무국 인력채용, 교육훈련, 홍보 등	2017. 3~6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직원 워크샵 개최	2017. 11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국회 간담회 개최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관련 규범 재정비	2017. 12월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책자 발간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무부장관 방문 현장 간담회	2018. 5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업무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개설	2018. 6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강화 →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안내문구 삽입 → 시내버스 외벽 광고, 지하철 역사 내 포스터 게시 등	2018. 7~12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18. 6월,12월 2019. 4월

| 표 2-98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추진 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률		
	접수	조정개시	조정성립	접수	조정개시	조정성립	접수	조정개시	조정성립
실 적(건수)	2,515	885	569	2,192	681	389	△12.8%	△23.1%	△31.6%

3) 평가 및 발전방향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인권구조과 사무관 최현태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국민 생계안정을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정하는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2019. 4. 17.) 등 총 6개 지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착을 위해 공단은 2019년 다음 〈표 2-99〉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9년 업무추진실적은 다음 〈표 2-100〉과 같으며, 2019년 조정개시 후 조정성립 비율은 57.7%를 달성하여 국민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표 2-99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정착 사업추진 실적

추 진 내 용	추진시기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TF 가동 → 개소를 위한 소관부서별 준비절차 이행(제규범 정비, 개소식 준비, 시스템 정비 등)	2019. 3 ~ 4월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업무프로그램 개발 및 홈페이지 개설	2019. 4월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 개시	2019. 4월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강화 → 서울시 희망광고를 통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 홍보 등	2019. 4 ~ 12월
• 서울보증보험과의 협약으로 임대차분쟁조정신청사건 수수료 무료 지원 → 권리금보호신용보험 및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무료 지원	2019. 9월

| 표 2-100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추진 실적

구 분	접수	조정 미개시				조정 개시			
		각하	화해취하	기타	확인진행	조정성립	불성립	기타	조정진행
실 적(건수)	499	246	50	35	38	75	14	34	7

3) 평가 및 발전방향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차. 취약계층의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

인권구조과 사무관 홍주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변호사 수의 양적 확대와 다양한 법률구조제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체계, 법률복지를 위한 전달체계 미비, 소송구조에 집중된 운영 등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하여한 법률주치의 개념의 '법률홈닥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2011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12년 20명의 변호사를 채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하였으며, 2014년 40명, 2017년 60명, 2018년 65명으로 확대하여 무변촌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들과 취약 계층에게 한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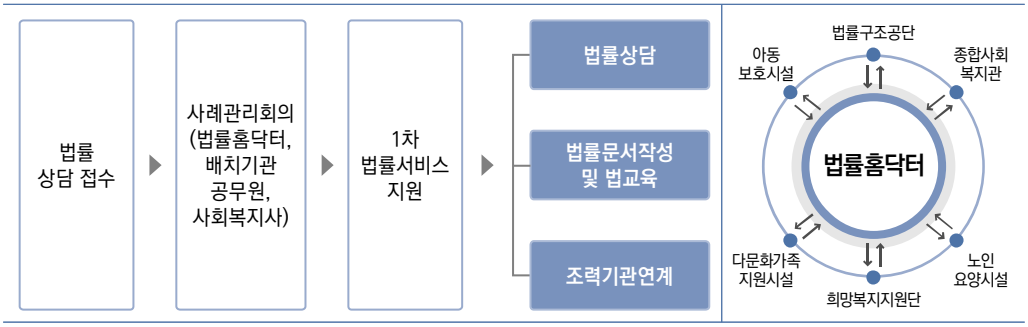
| 표 2-101 | 2019년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권 역	배치기관(65개)
서울	광진구,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13)
인천·경기	인천 강화군, 인천 미추홀구, 인천 서구,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고양시 덕양구, 광명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광주시,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15)
강원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태백시 (4)
충북	충북사회복지협의회(청주), 충주시 (2)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대전 동구,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6)
전북	익산시, 전주시, 전북사회복지협의회(전주) (3)
광주·전남	광주 광산구, 광주 남구, 광주 서구, 순천시, 전남사회복지협의회(무안) (5)
대구·경북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경산시, 영주시, 포항시 (7)
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 부산 남구, 부산 사상구, 부산 수영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광역시, 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 창원시, 진주시 (9)
제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1)

2) 추진내용과 성과

법률홈닥터는 소송 이전의 1차적 무료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구조 인프라와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서민들 가까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력기관과 연계함으로써 법률보호에 있어 모세관과 같은 효율적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그림 2-112 | 법률홈닥터 업무 처리절차 및 조력기관 연계구조



2019. 6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다부처연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법률홈닥터 법률상담에서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스터 및 리플렛, 우수사례집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였다.

| 그림 2-113 | 대한법률구조공단 다부처연계시스템 화면



| 그림 2-114 | 법률홈닥터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우수사례집



또한 2019. 4월 강원산불 이재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합동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즉각적인 현장 법률지원을 하는 등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문서 작성, 법교육 등 56,145건의 법률서비스를 서민들에게 제공하였으며, 법률홈닥터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8.81점으로 2016년 하반기 이후 '매우만족'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표 2-102 | 법률홈닥터 지원실적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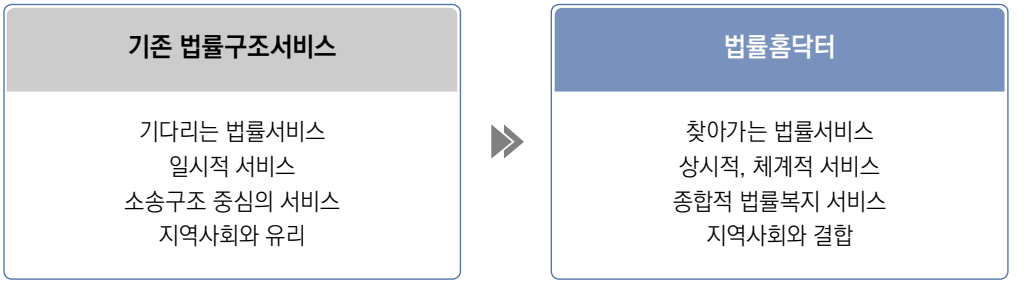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실적	11,792	17,611	28,563	37,663	39,361	55,439	59,201	56,145

* 지원실적 :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3) 평가 및 발전방향

그동안 법률홈닥터는 취약 계층 가까이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서민들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고, 법률홈닥터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 이제는 지역사회의 법률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림 2-115 | 법률홈닥터 도입 성과



4.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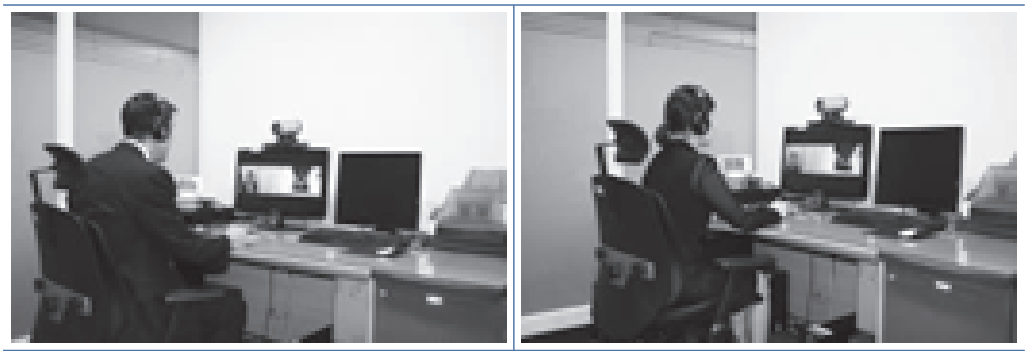
인권조사과 검사 허용준

가. 인권침해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화상조사시스템 강화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원거리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0년부터 화상조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설치하였고, 2019년에 총 7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47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그림 2-116 | 화상조사시스템 활용장면



2)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화상조사시스템을 통해 조사관은 기존에 서면으로 수용자의 진정내용을 파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화상면담을 실시하여 직접 수용자와 마주 보고 수용자의 목소리를 통해 진정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수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 표 2-103 | 연도별 화상조사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적	98	137	125	189	358	355	462	508	526	553

2019년에는 7개 구금·보호시설에 화상조사시스템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법무부 인권국에도 기존 1대만 설치되어 있던 화상조사시스템을 1대 더 추가 설치하여 더욱 신속하게 수용자와 면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나. 충실하고 적정한 인권침해사건 처리

2019년 인권침해사건은 총 3,435건으로, 그 중 진정사건은 3,364건(전화 27건, 우편 2,402건, 인터넷 42건, 팩스 889건, 방문 4건), 인지사건은 71건이다. 이 중 3,012건을 처리(인용 및 구제 60건, 이첩 1,165건, 각하 1,538건, 기각 249건) 하였다.

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구금·보호시설 감독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감독을 통해 법무행정 과정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2006년부터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인 교도소·구치소, 외국인보호소, 검찰청 구치감, 소년원 등의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019년에는 전주교도소 등 총 31개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 대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접적인 인권실태 점검을 통해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고, 수용자(피보호자 포함, 이하 같음) 설문조사(2019년 3,801명), 개별면담(2019년 261명)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표 2-104 | 2019년 인권실태 점검현황

(단위 : 회)

점검기관	교정시설	검찰청 구치감	외국인 보호시설	소년보호시설	합계
횟수	16	4	5	6	31

라.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법무행정 공무원들이 인권교육에 흥미를 가지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는데, 2019년에는 법무행정 공무원들의 인권마인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부 강사가 진행하는 인권감수성 향상 훈련 23회, 외부 강사에 의한 기관방문 교육 49회, 인권조사과 강사진의 인권교육 16회, 내부강사 통합 워크숍 1회, 검사 및 검찰수사관 상대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 48회 등 총 157회에 걸쳐 7,211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 표 2-105 | 2019년 인권교육 현황

교육명	인권감수성 향상 훈련	외부강사 방문교육	인권조사과 강사 교육	검사 1:1 인권교육	수사관 1:1 인권교육	워크샵	합계
횟수	23회	49회	16회	24회	24회	21회	157회
교육인원	566명	2,591명	1,105명	138명	157명	2,654명	7,211명

마. 인권보호 상황평가 및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

2007. 8.부터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검찰청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평가를 실시하였고, 2011년 하반기부터 인권보호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내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인권보호 상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는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 인권보호 상황평가를 실시하여 검찰 8개 기관, 교정 8개 기관, 범죄예방 10개 기관, 출입국 4개 기관 등 총 30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포상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 업무과정에서 정성과 배려를 다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격려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 10.)에 즈음하여 우수인권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2019년에는 검찰 5명, 교정 5명, 범죄예방 2명, 출입국 2명 등 총 14명을 우수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하였고, 인권침해사건 처리와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이 큰 조사관과 충실하고 성실한 인권감수성 교육을 통해 인권증진의 공이 큰 내부강사를 격려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 2명(조사관 1명, 인권내부강사 1명)을 선정하고 표창하였다.

5. 여성·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아동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상 지원 강화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이진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2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도입하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가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중 아동, 장애인과 수사기관, 법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도 양질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강원·충남·전남·경남 권역에 각 1명씩 확대하였고 상근 진술조력인 3명을 서울·충남·전북 권역에 각 1명씩 배치하였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예산을 2018년 대비 약 14억 원 증액하였다. 그 결과 2019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전년 대비 12.0% 증가한 25,487건을 지원하였고, 진술조력인은 전년 대비 29.3% 증가한 2,226건을 지원하였다.

| 표 2-106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피해자 국선변호사	2,908	8,084	13,363	16,106	19,336	19,903	22,755	25,487
진술조력인	-	-	386	727	1,203	1,381	1,722	2,226
합계	2,908	8,084	13,749	16,833	20,539	21,284	24,477	27,713

3) 평가 및 발전방향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상근 진술조력인을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추가 배치할 예정[13]이다. 또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13) 2020년 전국 권역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2명, 상근 진술조력인 2명 추가 배치 계획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와 수사기관, 유관기관 대상 제도 활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며,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나.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이진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아동학대에 대한 기존 형사처벌은 사후적 대응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적·예방적 대응을 보완하였다. 아동학대 조기예방의 일환으로 2019. 7월부터 아동학대 신고제도와 피해아동 지원제도(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등)를 안내하는 홍보동영상을 제작, 배포[14]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형사사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 10월 법교육(52명 참석)을 진행하였다.

| 그림 2-117 |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 배포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유튜브 허팝 채널)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법무부 페이스북)

14) 유튜브, 법무부 홈페이지,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 등

| 그림 2-118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법교육




2) 향후 추진 계획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학대의 심각성, 이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 아동 보호·지원 방안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은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형사사법 역량이 필요한 유관기관에 법무부의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성을 전파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현장 대응역량 및 지역별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 국내출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추진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이진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아동은 출생 시 국내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등록)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 아동 등은 출생신고(등록)할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미등록 아동은 그 규모조차 파악이 되지 않으며,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성에 노출되거나 범죄 등 사회적 위험성을 야기할 가능성도 크므로 사회적 보호망 속에 포용하여 보호하기 위해, 국내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였다.[15]

15) UN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국내출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체계 및 도입방식 등 관련 쟁점의 논의를 위해 변호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이행추진자문단에서 약 10차에 걸친 회의('18. 12월~'19. 7월)를 통해 출생등록제 법안 초안을 마련하였다.

| 그림 2-119 | 출생등록제 이행추진자문단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 법무부는 마련된 법안 초안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법안을 다듬어 언론 홍보 및 민간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출생등록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보호망을 인권 사각지대에 지속적으로 침투시킬 예정이다. 이로서 법무부는 기존의 인권 침해를 해소하는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예정이다.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관 차현지

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2016. 9. 4. 시행, 2016. 3. 3. 제정)에 따라 2016. 10. 11. 개소하여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하고 기록한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자료 등을 3개월마다 이관 받아 보존·관리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2017. 4월부터 현재(2019. 12. 31.)까지 1,512건의 북한인권 자료를 이관받았다. 이관받은 자료는 이를 분석하여 사건카드를 작성하고 인권침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에 저장·관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료 분석 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회권 관련 분석 틀도 개발하는 등 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외부 북한 전문가들로부터 북한의 실태와 인권 상황 등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북한인권 사랑방 좌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북한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심의 자료집(제1·2·3차 국·영문 합본) 및 자유권 및 사회권규약 심의자료집(제1·2차 국·영문 합본)을 발간하였고,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에 북한인권자료실 및 북한 용어 사전 메뉴를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한편,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지문인식 스크린 도어, 서고 출입문 보강, 무인경비시스템과 CCTV를 설치하는 등 시설보안을 강화하였다.

| 표 2-107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자료 이관 현황

이관시기	2017(3회)	2018(4회)	2019.01.	2019.04.	2019.07.	2019.10.	합계
건 수	355	457	126	186	205	183	1,512

2) 평가 및 발전방향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한 북한인권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보존·관리하고, 수집한 중요한 북한관련 간행물, 자료, 번역물 등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기록보존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제8절 교정업무

1.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

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신·증축

복지과 시설주사 이윤교

1) 추진배경

2012년 이후 급격한 수용인원 증가와 과밀수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출소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 확인'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함에 따라 과밀수용 해소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 2016. 12. 29 결정 -	국가는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 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을 촉구한다.

2) 추진내용과 성과

2019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951억 원을 편성하여 대구교도소 이전신축(72%), 강원북부교도소 신축(90%), 거창구치소 신축(4%) 및 기타 원주·전주·창원교도소 설계를 진행하였고, 김천소년·의정부교도소 2개 기관에 14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동을 증축 하였다. 또한 여주교도소, 인천·서울구치소 등 6개 기관의 시설 내 노후·유휴공간에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18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실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 그림 2-120 | 교정시설 신·증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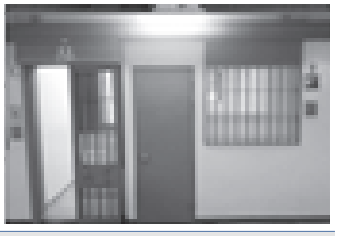

대구교도소 이전신축(72%)


강원북부교도소 신축(90%)


거창구치소 신축(4%)


김천소년교도소 증축(100%)


의정부교도소 공장 리모델링


여주교도소 독거수용실 리모델링

3) 향후 추진계획

현재 수도권과 대도시 및 여성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과밀수용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 북부권 과밀해소를 위한 경기북부구치소 신축(수용정원 1,200명), 여성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수용처우와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화성여자교도소 신축(수용정원 500명), 호남지역의 구치 기능 강화를 위한 광주구치소 신축(수용정원 900명), 대전교도소 이전 신축 사업과 병행하여 대전지역 구치소 신축(수용정원 1,200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구·대전·창원·원주·전주·부산·안양교도소, 부산구치소 이전·신축 사업과 대용감방 해소를 위한 거창구치소·강원북부교도소 신축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남원·영동교정시설은 지속 추진 예정이다. 또한 국토균형발전 및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태백시에서 추천한 부지에 태백교정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소규모 교정시설 증축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하여 천안·목포교도소의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수용공간 확충 및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청주·제주·강릉교도소 등 구내 유휴부지를 이용한 수용동 증·개축을 통해 교정시설 과밀해소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나.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교정장비 개선

보안과 교정관 김승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전국 교정시설에서 사용 중인 포승, 수갑 등 보호장비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거부감 및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포승 장비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8. 5월 '벨트형 포승'을 개발하여 전면 보급을 하였고 2019. 6월에는 '호송용 조끼'를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일부 기능을 보완한 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그림 2-121 | 일반포승 착용 사진



일반포승 착용, 앞



일반포승 착용, 뒤

| 그림 2-122 | 벨트형 포승 착용 사진



벨트형포승 착용, 앞



벨트형포승 착용, 뒤

| 그림 2-123 | 호송용 조끼 착용 사진



호송용 조끼 착용, 앞



호송용 조끼 착용, 뒤

2) 평가 및 발전방향

호송용 조끼는 시범실시 의견 수렴 단계에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상박 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보호장비로서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업체 특허 제품인 견고한 섬유 재질을 사용하여 평상 의복 같은 편안한 착용감이 들도록 디자인하여 언론 등 노출 시 대외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수용자 인권보호에 기여하였다. 앞으로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후 2020년 하반기 확대시행에 맞춰 전국 교정기관에 호송용 조끼를 보급할 예정이다.

다. 수용자 미성년 자녀 지원

사회복귀과 교정관 이규성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18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체계 구축방안」을 통해 부모의 수용생활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부모의 범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추진성과

2019. 4월에는 교정정보시스템인 보라미시스템을 통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관리를 시행하여 미성년 자녀 보호방안 시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9. 10. 24. 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2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한 보호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 표 2-108 | 연령별 수용자 미성년 자녀현황〈2019. 12. 31. 기준〉

연 령	0~6세	7~12세	13~15세	16~18세	합계
자녀수	2,689	4,248	2,148	2,298	11,383

또한, 교정위원, 직원회, 교화법인 등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수용자 미성년자에 대해 장학지원, 생계비지원, 학업지원, 상담·멘토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엄마의 수용생활로 단절될 수 있는 엄마와 자녀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엄마의 부재에서 오는 자녀의 상실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 8월 여성수용자가 자녀를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는 목소리를 녹음하여 자녀에게 전달하는 '엄마의 목소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 표 2-109 | 2019년 미성년 자녀 지원 실적〈2019. 12. 31. 기준〉

지원내용	장학금	생계비 등	상담·멘토링
지원실적	2억2,629만원	1억8,549만원	256명 290회

3) 평가 및 향후계획

법무부는 현재 수용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용자 미성년자녀 현황관리 업무를 개선하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자료 및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자료와의 연동을 통한 자녀 현황관리 실시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0년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근거규정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엄마의 목소리와 같은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부모의 수용생활로 인해 단절될 수 있는 자녀와 부모의 유대관계가 유지·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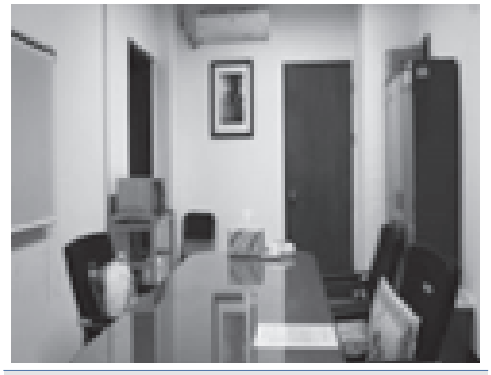
라.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구축

사회복귀과 교정관 이규성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11년 가족접견 시범실시 이후 교정시설에 가족접견실을 구축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일환으로 신규 구축되는 가족접견실을 아동친화형으로 구축하고 있다. 기존의 가족접견은 사무실 느낌의 딱딱한 가족접견실 또는 대용시설에서 이루어졌으나 어린이집과 유사한 인테리어로 꾸민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도입을 통해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교정시설에서 느낄 수 있는 위압감을 최소화함으로써 편안한 가족접견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 그림 2-124 | 가족접견실 대용시설과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비교



가족접견실 대용시설, 개선 전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개선 후

2) 추진 성과

2019년에는 서울구치소 등 11개 기관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이 설치되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 52개 교정기관에서 이루어진 가족접견은 4,295회로 해마다 가족접견실의 이용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 표 2-110 | 가족접견 실시현황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실시 인원	432명	858명	2,001명	4,144명	4,295명

| 표 2-111 |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현황

연 도	설치 기관
2017년	인천구치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여주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밀양구치소, 정읍교도소(7개)
2018년	안양교도소, 부산구치소, 전주교도소, 의정부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통영구치소, 해남교도소(8개)
2019년	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영월교도소, 대구구치소, 안동교도소, 울산구치소, 상주교도소, 천안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장흥교도소, 군산교도소(11개)

3) 평가 및 향후계획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의 도입은 형을 집행하는 시설로만 여겨지던 교정시설을 수용자와 가족에 대한 배려가 있는 행정기관으로의 이미지개선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방문한 민원인과 이용 수용자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9. 12월 현재 전국 52개 기관 중 42개 기관에 가족접견실이 구축되어 있고 이중 27개 가족접견실이 아동친화형이다. 법무부는 2020년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개의 신규 가족접견실을 신축하고 일반가족접견실 14개를 아동친화형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 표 2-112 | 교정시설 내 가족접견실 현황

구 분	기관	아동친화형	기존형	미설치
서울지방교정청	15	9	3	3
대구지방교정청	18	10	5	3
대전지방교정청[16]	10	3	4	4
광주지방교정청	9	5	4	0
합계	52	27	16	10

16) 청주여자교도소는 기존형(1개)과 아동친화형(1개) 가족접견실을 구비하고 있음

2. 국민 중심 교정행정 서비스 제공

가. 재범방지정책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 조직진단

교정기획과 교정관 박대철

1) 추진 배경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국민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인력, 업무처리절차 등을 국민과 함께 진단하는 수요자 중심의 조직관리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인력 충원이 요구되는 기관을 방문하여 업무수행 체계의 적절성 등을 진단하고 인력충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토론하여 이를 정부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부처 내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기능 중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의 시급성·필요성을 비롯하여 국정과제 추진사항이자 재범방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고려하여 '재범방지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을 진단 대상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소속기관 분류심사과 및 심리치료과 신설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2019년 법무부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진행하였다.

2) 추진 내용

2019년 법무부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2019.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국민참여단 모집-사전워크숍-현장진단-집중토론-결과보고회'의 진단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국민참여단 모집)**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모집, 교정행정 관심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되 전체 신청자의 성별·연령·지역별 분포 비율에 비례한 선정으로 국민 대표성 확보
- **(사전워크숍)** 국민참여 조직진단의 목적, 대상, 진행과정 등에 대한 소개 및 조직진단 대상에 대한 기본 현황 자료 제공(3. 12, 안양교도소)
- **(현장진단)** 진단대상 분야별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처리절차 청취, 체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인력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진단 실시(3. 14, 서울남부구치소·안양교도소 / 3. 19, 대전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
- **(집중토론)** 현장진단에 참여한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현장진단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심층토론을 통해 구체적 제도 개선안 도출(3. 21, 법무부)
- **(결과보고회)** 국민제안사항에 대한 정책반영 여부 보고 및 국민참여 방식, 절차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4. 3, 서울동부구치소)

| 그림 2-125 | 국민참여 조직진단 사진



현장진단



집중토론

3) 추진 성과

이번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통해 '사전워크숍-현장진단-집중토론-결과보고회' 등 다양한 참여 방식으로 국민에게 정책결정 및 집행 기회를 부여하였다. 또한, '국민제안-정책반영-성과환류'의 국민체감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국민참여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류센터·심리치료과·분류심사과 신설 필요성에 대해 국민참여단의 96%가 '그렇다'로 응답하는 등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통해 재범방지 전문기구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20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와 전문적 심리치료를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대전·광주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 및 안양교도소 등 5개 기관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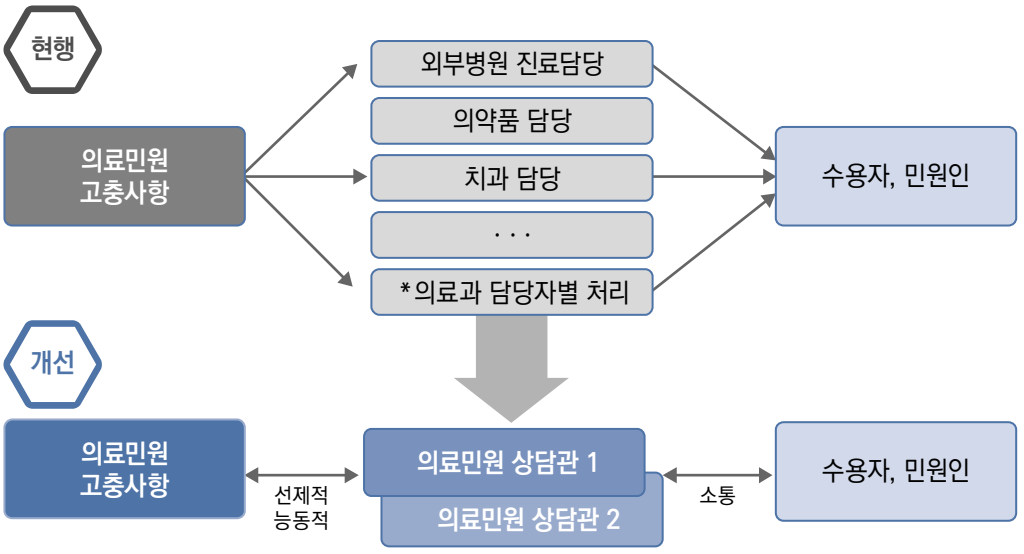
나. 의료민원 상담관 제도 운영

의료과 교감 임정호

1) 추진배경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권의식의 향상으로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의료처우로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수용자 의료처우 요청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해지고 있다. 이에 현장의 의료민원에 대해 직접 듣고 소통·해결하는 의료민원 상담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처우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시에 선제적·전문적인 소통창구의 역할 제공을 통해 수용자 건강권 확대 및 의료 서비스 지원을 실현하고 있다.

| 그림 2-126 | 의료민원 상담관 흐름도



2) 추진내용 및 성과

2019. 3. 4. ~ 2019. 5. 31.(3개월)까지 각 지방교정청별로 수용인원 등 기관규모를 고려하여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의료민원 상담관 제도를 시범·운영 하였다. 의료처우 관련 수용자와 가족의 민원에 대한 답변과 상담을 업무담당자별 처리가 아닌 각 기관 의료 인력 중 의료행정, 고충상담, 수용관리 등 경험이 풍부한 직원으로 선정·관리하게 함으로써 의료 처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의료처우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표 2-113 | 시범운영 기관 현황

지방청별	대 상 기 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구치소, 여주교도소, 영월교도소
대구지방교정청	부산구치소, 창원교도소, 경주교도소
대전지방교정청	청주교도소, 공주교도소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 군산교도소

| 표 2-114 | 기관별 실적

기관	상담관 인원	상담실적	2019. 5.		2019. 6.		2019. 7.	
			수용자	가족	수용자	가족	수용자	가족
서울구치소	2	90	0	37	0	28	0	25
여주교도소	1	14	3	0	5	1	3	2
영월교도소	1	4	4	0	0	0	0	0
부산구치소	3	110	24	17	18	19	17	15
창원교도소	2	10	1	0	2	0	5	2
경주교도소	2	88	34	1	23	7	21	2
청주교도소	2	3	1	0	0	1	1	0
공주교도소	2	11	3	3	1	0	2	2
광주교도소	2	13	0	6	0	3	0	4
군산교도소	3	25	2	8	0	13	0	2
총계	20	368	72	72	49	72	49	54

또한, 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의료관련 상담을 보다 체계화하였으며, 의료관련 전문성 확보로 다양한 의료 민원에 대하여 효과적인 의료처우가 이루어졌다. 시범운영기간 중 10개 기관 20명의 의료민원 상담관이 수용자 및 외부인 상담을(368건)실시한 결과, 상담관의 일원화된 상담으로 일관성 있는 의료처우, 책임감 부여에 따른 민원사항의 적극적 대처 및 관리, 사전 상담을 통한 추가 민원 감소 효과, 의료처우에 대한 정보공유로 개별특성에 맞는 의료처우 구현으로 의료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19. 7월부터 전국 교정기관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다. 가석방 제도의 합리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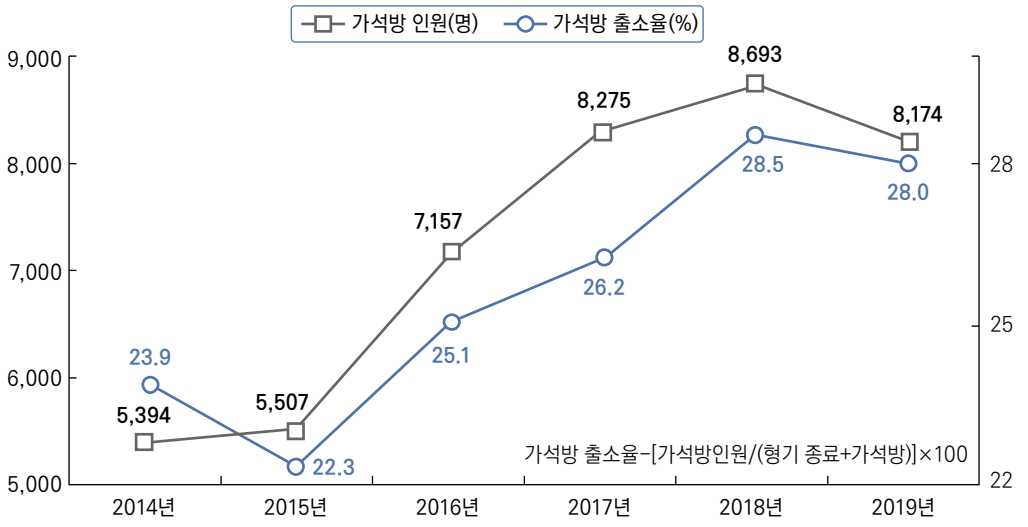
분류심사과 서기관 김진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가석방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대를 위해 각 교정기관장의 가석방 신청권을 일부 제한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는 예외 없이 가석방을 신청하도록 하는 '가석방 필요적 신청' 제도와, 가석방에서 제외되었던 단기 수형자에게 가석방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당월 가석방 신청' 제도,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 등의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였고, 음주운전·사기·가정폭력 등의 상습범 및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제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 그림 2-127 | 연도별 가석방 인원 및 출소율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새로운 가석방 제도의 시행을 통해 모범 수형자 등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가석방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음주운전·다단계 범죄 등 일부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가석방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석방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모범 수형자들의 가석방 출소가 증가되어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완화에도 기여하였다.

라. 교정시설 대체복무제도 도입

보안과 교위 정용훈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8. 6. 28.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국회 및 사회·종교단체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생겨났고, '18. 7. 병무청과 법무부 사이의 대체복무 인력 활용 협의를 하였다.

국방부 대체복무추진단은 3차례의 교정기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소방·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복무 분야와 비교한 결과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국방부에서 제출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2019. 12. 27.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 표 2-115 |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 현황

(단위 : 건)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병역거부 건수	565	493	557	461	487

※ 2019. 9월 기준 약 900건이 병역법위반으로 재판계류 중

2) 추진내용

법무부는 2019. 1. 7. ①대체복무요원의 교육기관과 생활관 등의 대체복무 시설 구축, ②대체복무제 운영 조직과 인력의 확보, ③대체복무요원 피복·지급물품 등 선정 및 구입, ④대체복무요원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훈련교재 개발, ⑤대체복무 관련 훈령 제정 등을 위한 대체복무제준비단 T/F를 구성하였다. 또한, 2019년 7월 대체복무제 설명회 및 복무분야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속기관 직원들에게 대체복무제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하고, 복무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여 대체복무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2019. 12. 11. 교육원 건립 시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영월군청과 체결하였고, 2020. 2. 3.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림 2-128 | 대체복무제 추진



국회 공청회



법무부·영월군 업무협약 체결

3)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

2020. 1월부터 대전교도소 생활관 등 13개 기관에 대한 시설개선과 교육원 건립을 위한 기초공사가 실시된다. 교육원 건립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전교도소 생활관을 임시 교육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국방부·병무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후,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가칭),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정(가칭), 대체복무요원 복제규정(가칭) 등 훈령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할 예정이다. 복무분야에 대해서는 급식·물품·보건위생·교정교화·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를 검토 중에 있으며, 시설개선 진행 점검 후 관계부처와 올해 소집인원을 협의하여 '20. 10월경 대전(교) 임시교육원에서 첫 교육 실시 후 소속기관에 대체복무요원을 배치 할 예정이다.

3. 미래를 지향하는 교정행정 구현

가.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교정시설 구축

교정기획과 교정관 문정훈

1) 추진배경

교정본부는 현재 과밀수용 등으로 인해 계호업무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보안 위주의 운영체계를 AI, 빅데이터, IoT 등 첨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스마트 교정시설을 구축하여 교정교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운영체계로 교정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수용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친화적 교정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2) 추진내용과 향후계획

스마트 교정시설 구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하여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수용관제시스템 연구개발비 2년간 총 7.45억,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수용자 생체신호 감지 레이더 연구개발비 2년간 총 5억, AI 기반 무소음 이동형 CCTV 연구개발비 2년간 총 5억을 확보하고 개발주관기업을 선정하였다. 영월교도소에 테스트베드(Test Bed)를 구축하였고 관련 IoT(Internet of Thing, 사물인터넷)를 개발 중에 있다. 2020년과 2021년에 시범실시 및 효과성 검증 후, 2022년 전국 교정시설에 도입할 계획이다.

| 그림 2-129 | 예상 이미지



스마트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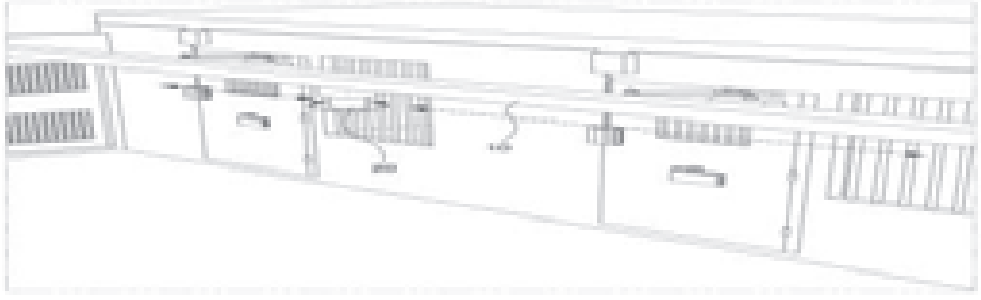
스마트 밴드 충전 모습



수용자 생체신호 감지 레이더



수용자 생체신호 감지 레이더 각도 조절



AI 기반 무소음 이동형 CCTV

나. 교정작품 인터넷 쇼핑몰 구축

직업훈련과 교정관 박기주

1) 추진 배경

교정시설에서 교도작업을 통해 제품(이하 교정작품)을 제작한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교정작품이 무엇인지 구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교정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도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고지서 발급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였다. 또한, 교도작업 관용주의 원칙상 대부분의 제품 공급대상이 교정시설, 관공서에 국한되어 민간 판매실적이 저조하였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교정작품의 우수성을 널리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교정작품의 생산 및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정작품 인터넷 쇼핑몰」 구축을 추진하였다.

2) 추진 경과

쇼핑몰 구축을 위하여 2019. 1월에 외국(미국, 일본, 대만, 스페인 등)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3월에는 외부전문업체 선정 및 신제품 개발T/F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쇼핑몰 구축을 시작하였다. 특히 쇼핑몰 활성화를 위하여 제품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였다. 우든펜, 핸드폰거치대, 편백가습기, 모니터 받침대, 여행용 폴딩백 등 다양한 제품을 발굴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쇼핑몰에서 호응도 좋은 편이다. 8월에는 쇼핑몰 구축이 완료되어 한 달 간의 시범운영 후 2019. 8. 29. 「교정작품 쇼핑몰」을 정식 오픈하게 되었다.

| 표 2-116 | 쇼핑몰 관련 주요업무 추진사항

주요 추진 사항
• 포털사이트에 누구든지 접속 가능하도록 접근성 강화
• 인터넷 주문 및 전자결제는 물론 간편 결제 시스템(삼성페이, 엘페이 등) 도입
• 신제품 개발로 제품경쟁력 강화 및 교도작업 활성화를 통한 수형자 기술력 향상 및 직업능력 가치 제고
• 교도작업의 올바른 이해와 교정행정의 대국민 이미지 제고
• 쇼핑몰 내에 구입제품에 대한 피드백 체계 마련을 통한 구매자 불만사항 공유 및 해결방안 강구

| 그림 2-130 | 교정작품 쇼핑몰 홈페이지(http://corrections-mall.net)



| 그림 2-131 | 쇼핑몰 관련 주요 신제품



고급형 우든펜(공주교도소 제작)



드립퍼세트(안양교도소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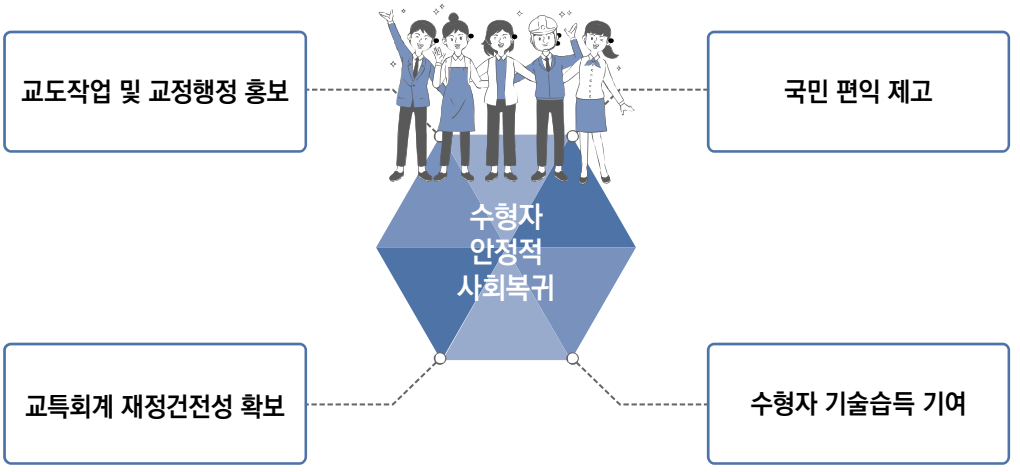


편백도마(장흥·전주·광주교도소 제작)



핸드폰 거치대(공주교도소 제작)

| 그림 2-132 | 쇼핑몰 운영의 기대효과



3)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교정작품 쇼핑몰 구축을 통해 교도작업의 의미와 교도작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효율적인 판매체계를 마련하였다. 판매수익금의 일부는 작업장려금으로 지급하여 수형자의 재범방지 목적의 초기 생활 정착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교정본부에서는 쇼핑몰 운영이 단순판매가 아닌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강화하고 수형자가 출소 후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 개선된 스마트접견 전국 교정기관 전면 시행

보안과 교정관 황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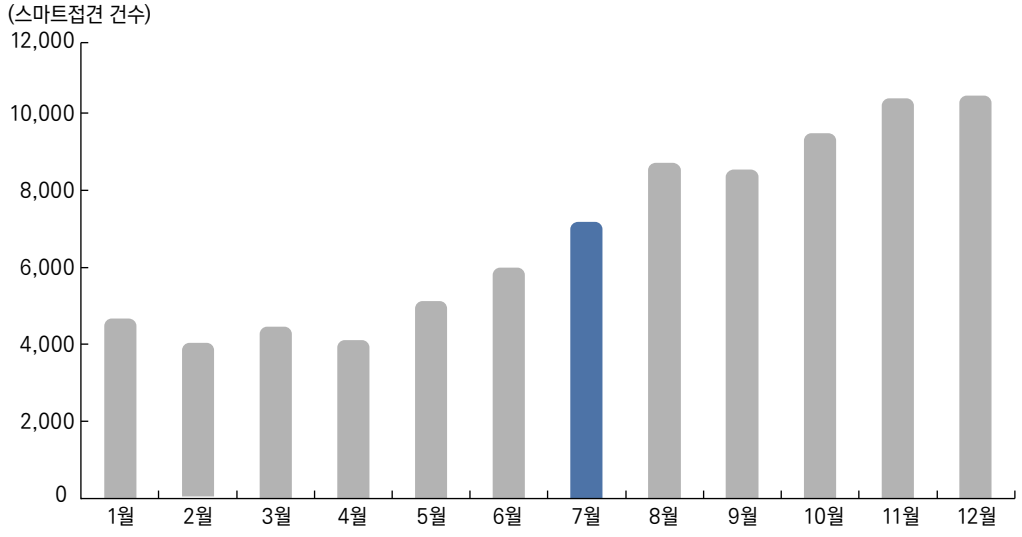
1) 추진배경 및 경과

2015. 8월부터 실시된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아닌 수용자가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민원인과의 접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또한 녹음·녹화가 되지 않아 가족 이외의 자는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자동 녹음·녹화가 가능한 '인터넷화상접견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수용자와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스마트 접견을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전면 시행하였다.

2) 추진내용

법무부는 2019. 5. 20. ~ 6. 29.(35일간)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6개 기관에서 스마트접견을 시범운영하였다. 전년 동일기간 대비 스마트접견 이용률이 55% 증가하고 기존의 모바일영상접견이 15% 감소하는 것을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견은 교정기관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동시에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개선된 스마트접견' 시스템의 시범운영 시 도출된 보안상, 기술상 문제점을 보완 후 2019. 7월부터 전국 교정기관 전면 시행하였으며 운영실태 점검 및 설문조사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화와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그림 2-133 | 개선된 스마트접견 전면시행 전·후 실적 추이



3) 평가 및 발전방향

스마트접견 제도는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어 민원인과 수용자간의 접견 기회를 확대하고,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에 기여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개선된 스마트접견'이 시행되면서, 스마트접견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민원인이 직접 예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인 편의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또한 대용량 서버 구축 및 태블릿 형태의 단말기 도입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스마트접견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접견 가능 대상자를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방문접견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라. 유튜브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강화

사회복귀과 교정관 김광희

1) 추진배경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미디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정본부는 기존 소극적 홍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였다. 이에 유튜브 전성시대에 발맞추어 유튜브를 통해 교정행정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 추진경과

국민이 접근하기 힘든 교정행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명한 유튜버와의 협업이나 교도관의 진솔한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국민 관심도를 높였다. 2019. 7. 30. 교정본부 유튜브 채널에 첫 게시를 시작으로 현재 10개 이상의 콘텐츠가 업로드 되어 있으며 매달 2편 이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고 있다.

| 그림 2-134 | 유튜브에 게재된 다양한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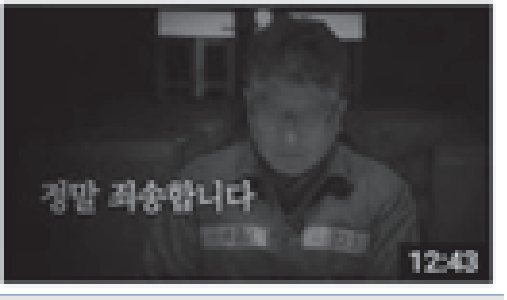
엄마의 목소리(정책소개)



유명 유투버 협업



교도관 인터뷰



수형자 다큐멘터리

3) 성과 및 기대효과

교정본부는 현재 동향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며 콘텐츠 최다 50만 조회수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1,300명이던 구독자 수가 8,000여 명을 넘어섰으며 향후 구독 및 조회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즉각적으로 국민과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4. 재범방지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교정정책 추진

가. 취업조건부 가석방 도입

직업훈련과 교정관 허영열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9년도 출소자 재복역률 통계에 따르면 출소 후 3년 이내 재복역률이 26.6%, 생계형 범죄인 절도죄의 재복역률은 무려 50.1%에 달한다. 출소자 대부분 안정적인 직업과 생계자금이 없고, 사회부적응과 생활고로 인해 생계형 재범으로 이어지고 있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정본부는 2019. 2월부터 취업과 가석방을 연계해 조기에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출소 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였다. 취업조건부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 취업의무 이행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가석방이 취소된다.

2) 추진성과

출소자 사후관리를 위해 '취업조건부 가석방 전담반'을 운영하여 범죄예방정책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취업조건부 가석방자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반 대상자와 동일하게 필요적 보호관찰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무연고 등 보호관계가 미약한 수형자에 대해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출소자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통해 재범 악순환을 차단하고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9년도 40개 업체에 60명이 취업조건부 가석방으로 사회에 조기 출소하여 생업에 종사 중이다.

| 표 2-117 | 취업조건부 가석방 절차

① 교정기관 분류심사과	② 교정기관 직업훈련과	③ 교정기관 분류심사과	④ 교정본부 분류심사과	⑤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보호관찰과)
대상 수형자 명단 통보	매월 채용약정 수형자 통보	명단 검토 및 가석방예비회의	취업조건부 가석방자 통보	공단 복지사업 연계 및 보호관찰

2) 평가 및 발전방향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는 교정·범죄예방정책국·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각 분야 전문부서의 유기적 협업으로 운영된다. 특히 출소자 사후관리를 위해 사회 내 처우에 기반을 둔 보호관찰까지 연계한 After-Care 제도로 시설 내 처우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앞으로 생계형 사범, 보호관계가 미약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석방 기간 동안 경제적 자립 기반과 사회적응의 시간을 갖고 보다 빨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정책국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 수형자 전통기술 전수프로그램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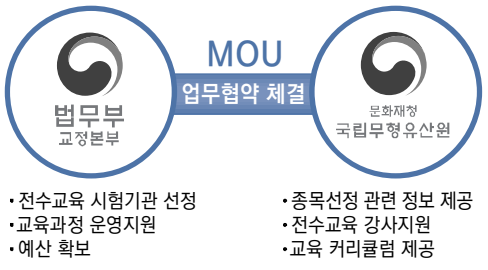
◎ 직업훈련과 교감 한성률

1) 추진배경

교정본부는 교정기관 실정에 적합하면서 사회에서 전수사업이 부진한 전통기술을 발굴하여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을 통해 계승·발전시키고,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수형자 재사회화와 재범방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였다.

| 그림 2-135 | 법무부 교정본부-국립무형유산원 업무협의('19.2.28.)





2) 추진 경과

전통기술 전수 종목과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과정이 유사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전국 4개의 교도소를 선정하였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조교나 이수자가 시설을 방문하여 전통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는 '악기장'을, 목포교도소에서는 '소반장'을, 공주교도소에서는 '소목장'을,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침선장'을 16주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실시한 '침선장' 교육은 교육생들의 반응이 좋아서 관련 기사가 언론(한국일보, 7. 31.자 보도)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 표 2-118 | 수형자 전통기술 전수교육 추진 현황

기 관 명	1차 전수교육	2차 전수교육(현재 진행중)	비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악기장 ('19.4.10.~7.3.)	소목장 ('19.10.~'20.9. 1년간)	종목변경
청주여자교도소	침선장 ('19.4.11.~8.22.)	침선장 ('19.10.~'20.9. 1년간)	
공주교도소	소목장 ('19.4.10.~7.3.)	소목장 ('19.10.~'20.9. 1년간)	
목포교도소	소반장 ('19.3.25.~7.15.)	소반장 ('19.10.~'20.9. 1년간)	

※ 소반장 : 소반은 식기를 받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쓰이는 작은 상 제작 장인
※ 소목장 :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목가구와 목공예품을 제작하는 장인
※ 악기장 : 전통악기를 제작하는 장인
※ 침선장 : 옷감을 마름질하고 바느질 해 옷을 만드는 장인

3)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교육생들은 교육기간 동안 개인별로 1개의 작품을 제작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전통기술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1차 기본교육과정(3. 25. ~ 8. 22.)을 수료한 수형자들에게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전수하였다. 교정본부는 2019. 10월부터 2차 교육과정(1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형자 재사회화, 재범방지 및 전통공예 장인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그림 2-136 | 수형자 전통기술 전수과정



국가무형문화재 침선장 전수교육, 청주여(교)



침선장 교육 작품(배냇저고리, 두렁치마)

다. 수용자 건강검진 검사항목 확대

의료과 교감 김석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교정본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질병 관리 및 예방을 위해 매년 외부 건강검진기관을 선정하여 수용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2차 건강 검진 검사항목으로 AFP(간암 표지자 검사)를 추가하여 B형 항체 양성자 및 C형 간염 기항력자를 대상으로 AFP검사를 실시하여 수용자 의료처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수용자 건강검진은 2006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인 총 31개 항목을 검진항목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 표 2-119 | 2015~2019년 수용자 건강상태 비교

(단위 %)

구 분 (년)	BMI기준 비만	허리둘레 기준복부비만	고혈압	이상지질	당뇨	대사 증후군	혈액 질환	간장 질환
2019	12.0	45.4	21.5	52.8	7.3	28.3	6.7	22.0
2018	11.4	38.0	12.6	41.7	6.9	31.9	3.3	18.0
2017	11.4	39.4	10.0	33.5	7.1	23.3	3.1	21.1
2016	10.7	35.6	10.3	35.3	6.6	21.4	2.7	22.4
2015	9.3	31.5	8.3	32.8	5.2	18.5	2.7	18.1

2) 추진내용 및 성과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B형 항체 양성자 및 C형 간염 기항력자 2,437명을 대상으로 AFP(간암 표지자 검사)검사를 기존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2020년부터는 6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CEA(대장암 표지자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3) 평가 및 기대효과

외부 전문기관의 건강검진을 통해 수용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신현상을 해소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에 힘썼다. 아울러 건강검진 항목을 늘려감으로써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및 교정행정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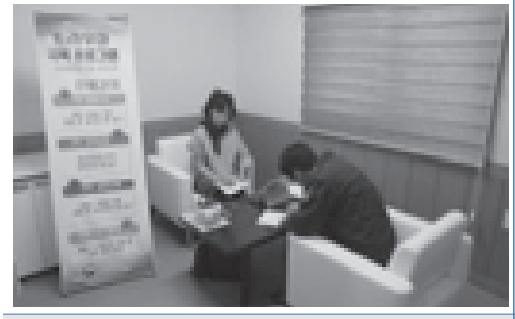
라. 직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강화

심리치료과 교감 이용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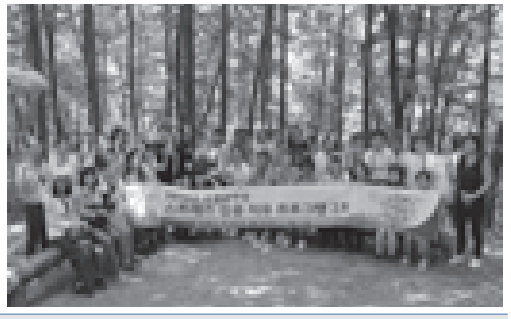
1) 추진배경 및 경과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7년부터 '마음나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전 교정기관으로 확대하여 심리상담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자살사건 등 발생 시 필수 개입을 통하여 즉각적인 심리지원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집중치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사유로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등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그림 2-137 |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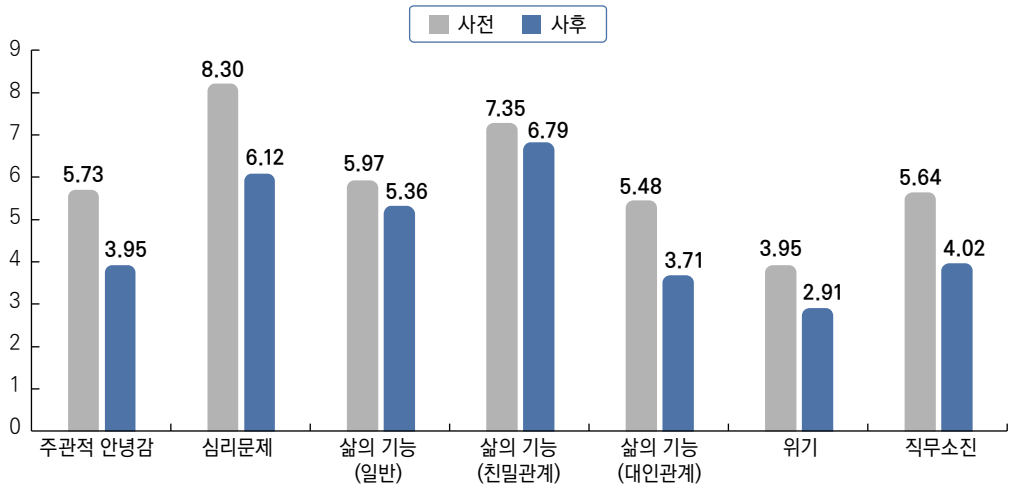


스트레스 집중치유 프로그램

2) 평가 및 발전방향

'마음나래 프로그램(외부 전문상담)'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 등 모든 요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외부 전문상담' 상시 운영,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평가 척도 개선,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및 집중 심리지원 등 한층 강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직원 개개인의 주관적 행복감뿐만 아니라 직무 몰입도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수용자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138 | 외부 전문상담 효과성 분석 결과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 상태를 의미〉

출처 : 2019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공무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최종보고서, 이지웰니스(주), 2020. 1월.

제9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1.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 확대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배덕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자동출입국심사는 사전에 지문과 얼굴사진을 등록하고, 본인이 여권과 지문을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인식시켜 간편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를 종료하는 출입국심사 제도이다. 2008. 6월 인천공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 제도를 시행한 이래 국민의 사전등록절차 생략, 등록외국인 이용 전면 허용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이용자가 증가하였다. 2018. 10. 1.부터 등록외국인은 번거로운 사전등록절차 없이 바로 자동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 시 취득한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활용하여 시스템 개발 및 2018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9. 7. 10.부터 출국 시 자동심사대 이용을 전면 시행하였다. 2019. 7월~12월 출국 시 자동심사대 이용 외국인은 전년 동기(416,495명) 대비 856%(3,568,249명) 증가하여 전체 외국인 출국자 중 38%가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출국하였다.

| 표 2-120 |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현황

(기준: 2019.12.31 단위 : 대)

구분	합계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인천항	부산항
설치대수	193	148	15	6	4	4	4	7	5

| 표 2-121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입국자	계	66,372,908	79,987,974	80,407,702	88,908,420	93,548,093
	국 민	39,111,816	45,313,898	53,445,030	57,859,670	57,795,389
	외국인	27,261,092	34,674,076	26,962,672	31,048,750	35,752,704
자동심사대 이용자	계	13,132,445	17,269,210	24,620,574	30,466,946	37,697,784
	국 민	12,426,789	16,292,958	23,810,124	29,420,061	32,093,114
	외국인	705,656	976,252	810,450	1,046,885	5,604,670
전체 대비 자동이용율(%)		19.8%	21.6%	30.6%	34.3%	40.3%
국민 자동이용율		31.8%	36.0%	44.6%	50.8%	55.5%
외국인 자동이용률		2.6%	2.8%	3.0%	3.4%	15.7%

| 그림 2-139 | 추진경과



2) 평가 및 발전방향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년대비 출입국자는 460만 명 증가하였다. 이러한 출입국자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출입국 국민의 55.5%, 외국인의 15.7%가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출입국심사관의 증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품질의 출입국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활성화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에 대한 사전등록절차 생략, 단기체류 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전면 허용은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입국 시 외국인 자동출입국 이용대상자 확대 및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교체 등을 통하여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출국금지제도 운영 개선

출입국심사과 주무관 김기현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증가하면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출국금지 제도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기반하여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약 9개월간의 내부 검토 및 검찰·경찰·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출국금지·정지 및 연장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앞서 그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2018. 7. 1.부터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 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규정을 보다 독립성 있고 인권 친화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을 「2019년도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하여 약 5개월간의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2019. 9. 6.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대상을 ▲ 이의신청 제기건 ▲ 행정쟁송(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건 ▲ 국민적 관심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주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정지 ▲ 그 밖에 출국금·정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화하였다. 특히 출국금·정지에 대해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를 심의대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심의결과 인용결정이 나면 행정쟁송 진행 중이라도 출국금·정지를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심의위원회 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지위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서 법무부차관으로 격상하였으며, 위원 수를

기존 4인(출입국정책단장, 형사기획과장, 인권조사과장, 출입국심사과장)에서 5인(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장관정책보좌관, 출입국정책단장, 형사기획과장, 인권조사과장)으로 확대하였다.

| 표 2-122 | 출국금지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9,745	27,493	14,714	14,886	15,092	11,201
검 찰	6,243	6,591	6,919	6,137	5,569	5,539
경 찰	1,753	1,810	2,283	2,107	2,325	2,525
관세청	51	86	37	73	66	78
국세청	1,102	1,611	4,421	5,670	6,503	2,220
병무청	353	319	439	391	253	159
기 타	243	17,076	615	508	376	680

* 2015년 기타 출국금지자 중 16,576명은 메르스 관련자임

2) 평가 및 발전방향

2019년도 제1회 출국금지심의위원회('19. 12. 18.)에서는 이의신청 4건(수사 2건, 입영거부 1건, 국세 체납 1건)을 심의하여 4건 모두를 인용하여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형사 사건 수사 중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 국세를 체납하였으나 국세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은닉한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내려졌던 출국금지결정을 직권으로 해제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출국금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국금지 제도가 공익과 인권의 조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한 출입국 제도개선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손흥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18. 2. 9. ~ 2. 25.) 관람 목적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제한적 무사증 입국 허용, 크루즈 개별관광객 관광상륙허가 시범사업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였다. 다만, 동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인으로 편중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동남아 국가 국민 등으로의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가 요구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입국일자 및 체류기간을 적거나 일부인을 날인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방식은 입국심사 시간 지연, 입국심사장 혼잡 발생 그리고 출입국심사관의 업무과중에 따른 피로도 증가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또한 많은 수의 관광객이 입국하는 크루즈 승객 입국심사 시 수천 매의 "여권 사본" 종이에 심사인을 날인하고 출국 시 여권사본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선사 및 심사관의 업무부담, 크루즈 승객의 정확한 인적사항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과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출입국심사서비스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이에 대한 품질 개선이 필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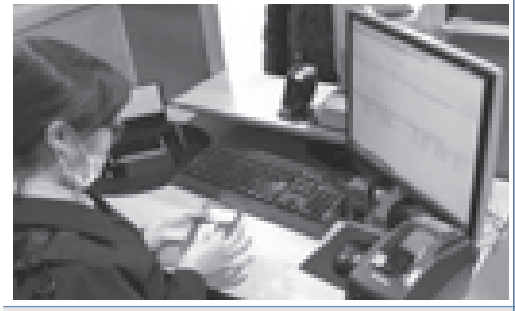
2) 평가 및 발전방향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행했던 중국인에 대한 제한적 무사증 입국제도를 개선하여 재외공관 지정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5인 이상 동남아(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여 양양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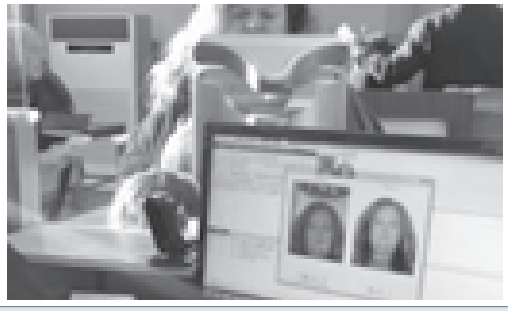
당초, 동 제도는 2018. 1. 22.부터 2018. 4. 30.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필요성 및 강원도의 적극적인 제도 연장 요청을 수용하여 2019. 12. 31. 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심사 시 기존의 "여권사본" 종이 심사 대신 "QR 코드를 탑재한 스티커형 관광상륙허가서"를 도입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승객도 심사 대기시간 단축 및 기항지 관광시간 확보 등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 그림 2-140 | QR 코드를 활용한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심사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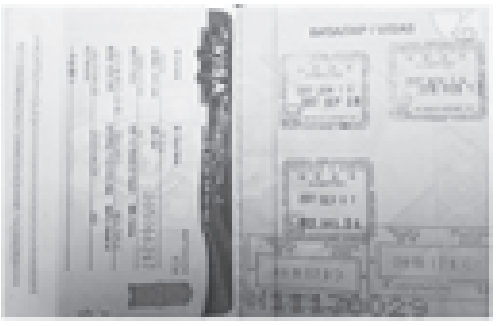
하선심사 시 관광상륙허가증을 출력하여 여권 뒷면에 부착해 주는 모습



귀선심사 시 QR코드 인식 후 승객 사진이 화면에 크게 표출되는 모습

한편, 종전의 '입국심사인 날인' 대신 '입국심사증' 교부 방식 시범시행 기관을 확대(2018. 1월 인천공항, 2018. 5월 김포공항, 2019. 8월 군산항, 2019. 11월 평택항)하였으며, 2020년 '입국심사증' 제도를 전국 공항만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 그림 2-141 | 입국심사증 견본(시행 전·후)

현행	변경(안)
	

라.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대상 확대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손흥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 공헌자, 기업인, 참전용사 등에게 보다 나은 출입국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 12월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조건부 고액투자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상생협력우수기업 종사자, 국가보훈처장이 선정한 한국전 참전용사 및 직계 자녀까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대상을 확대하였다.

〈우대 관련 카드 제도 현황〉

가)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 1996. 11월 APEC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시행 선언 후 한국, 호주, 필리핀 회원국 간 합의에 의해 1997. 5월 최초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현재 19개국의 APEC 회원국 기업인에 대해 입국비자 대신 동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카드소지자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회원국 입국 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제공 받는다. 2019. 12월 말 현재 19개국 총 카드 발급 수는 380,017개이며 이 중 한국인은 61,569개로 회원국 중 2위이다.

| 표 2-123 | APEC 기업인 여행카드 활용카드 현황

(기준: 2019.12.31., 단위 : 개)

국가 / 카드수	중 국	호 주	한 국	싱가폴	홍 콩	베트남	타 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380,017	62,968	22,687	61,569	54,703	44,871	16,991	12,829	11,550	23,217
일 본	대 만	인도네시아	페 루	칠 레	멕시코	필리핀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34,383	18,129	5,162	2,041	3,567	1,835	1,170	180	267	1,898

나) 출입국우대카드(Immigration VIP Card) : 국가·사회발전 공헌자에게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교통약자 배려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출입국심사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카드 소지자는 출입국 시 동반 3인까지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2013. 12월 시행 후 2019. 12월 말 현재 17,476명에게 출입국우대카드가 발급되었다.

다) 한국방문우대카드(Korea Priority Card) :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외국인 관광객에게 사증 발급 등 출입국절차를 우대하고 관광 위락시설·면세점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 소지자에게는 출입국 우대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단기방문 복수사증 발급, 자동심사대 이용 및 의료, 통역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된다. 2019. 12월말 현재 2,927명에게 카드를 발급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대상 확대 및 운영 개선 사항을 반영한 출입국 우대카드 관리 및 발급 지침 개정을 통해, 고액 투자자, 기업인들에게 출입국 우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참전 용사에게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국제교류 증진 및 관광, 투자, 무역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 국경 안전 강화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손흥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4. 3월에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건의 원인으로 도난·분실여권소지자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위험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탑승자 사전확인제도(IPC : I-PreChecking)"를 시행하게 되었다. 2015. 2. 16. 일본 나고야 공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국적 항공기를 대상으로 처음 시범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7. 4. 1.부터는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하였고, 2019. 12월 말 현재 48개국, 99개 항공사, 185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라이베리아 국적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난민신청, 지능범죄 증가 등으로 체류질서에 위협 요소가 되어 한-라이베리아 사증면제 협정 일시정지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불법취업 등 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전에 무사증 입국자의 여행 적격성을 시스템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17. 4. 1.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후 2019. 12. 31.까지 입국규제자 3,192건, 인터폴 수배자 정보 32건, 분실 또는 무효 처분된 여권 정보 14,162건 등을 포함한 총 53,835건에 대하여 탑승불가를 통보하여 위험인물의 대한민국 입국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테러위험으로부터 탑승자 및 항공기의 안전과 국경보안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2019년 국가적 행사였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한-메콩 정상회의 등 안전 개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고, 안전한 국경을 관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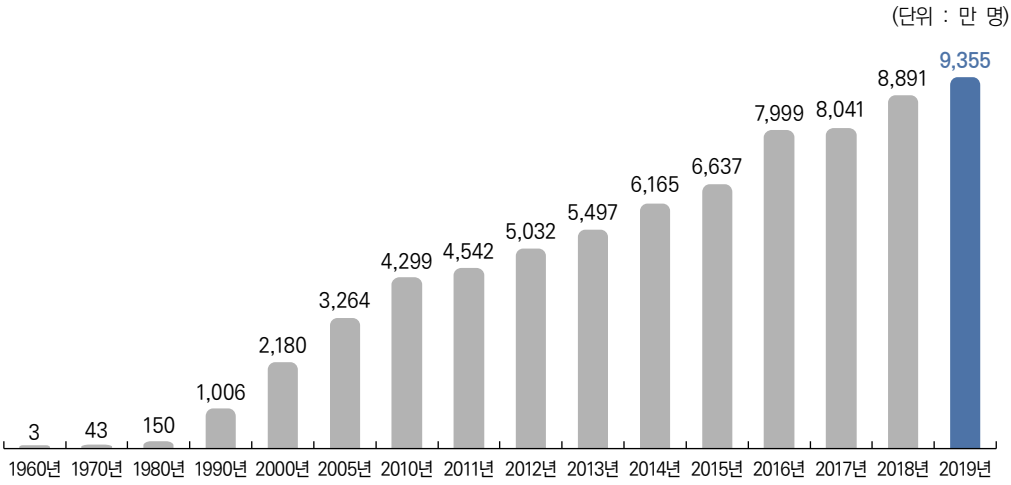
한편, 2019. 7월 대한민국-라이베리아 간 사증면제협정을 일시정지하여 국경 안전과 체류질서를 강화하였고,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9. 7월 국회 조응천 의원을 대표로 발의되어 국회 심의를 거쳐 2020.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전자여행허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예산이 2020년 법무부 예산에 반영되어 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바. 출입국자 현황

출입국심사과 주무관 구본민

2019년도 전체 출입국자는 전년도의 88,908,420명 보다 5.2% 증가한 93,548,093명을 기록하였다. 국민은 57,795,389명으로 전년도 57,859,670명에 비해 0.1% 감소하였고 외국인은 35,752,704명으로 전년도 31,048,750명에 비해 15.2% 증가하였다.

| 그림 2-142 | 출입국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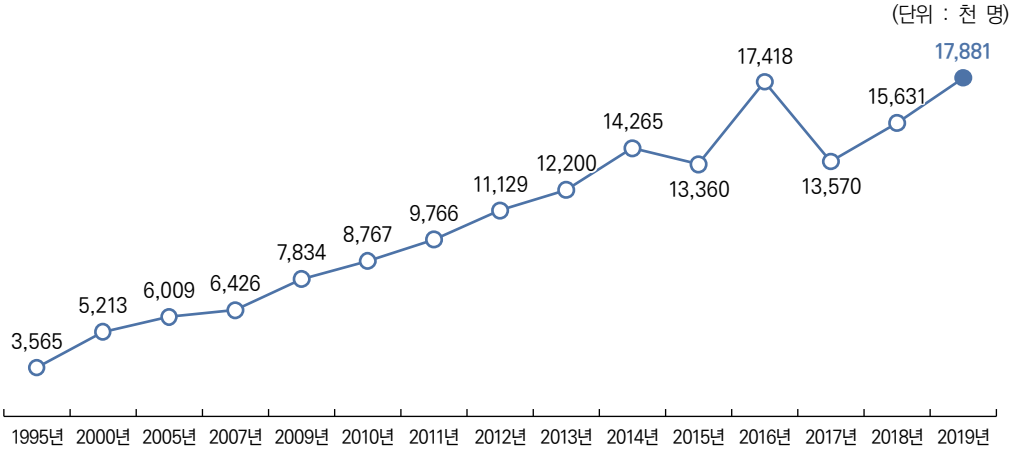
1) 외국인 입국자

2019년도 외국인 총 입국자는 17,880,503명으로 전년도 15,630,522명에 비해 14.4% 증가하였다.

국적별 입국자 수는 중국 628만 명(35.1%), 일본 330만 명(18.5%), 대만 129만 명(7.2%), 미국 114만 명(6.4%) 순이다. 중국 국적자는 전년 대비 1,251,581명(24.9%)이 증가하여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일본 국적자가 326,644명(11.0%) 증가하였다.

입국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방문이 1,440만 명(80.5%)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58만 명(3.2%), 방문취업 25만 명(1.4%)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2-143 |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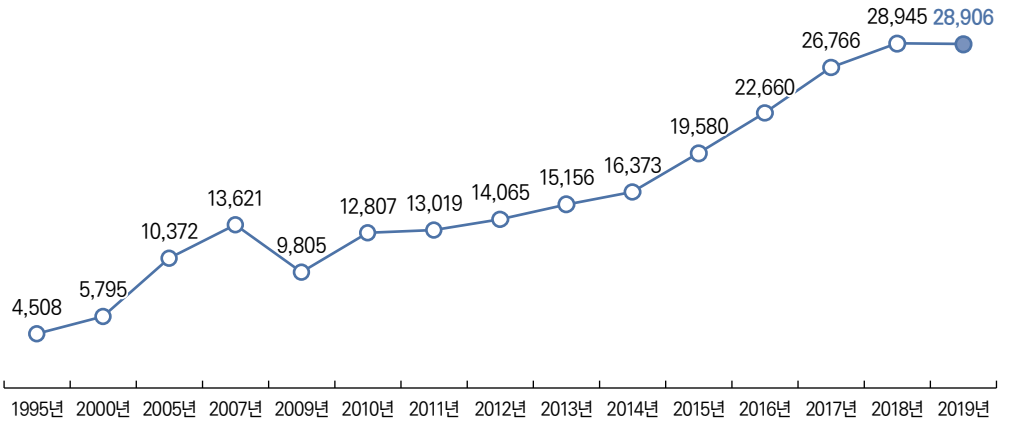


2) 국민 출국자

국민 출국자는 28,905,763명으로 전년도 28,945,447명 대비 소폭(0.1%) 감소하였다. 2007년 이후 감소하던 국민 출국자가 2010년 국내 경기회복 및 환율안정 등으로 대폭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2019년에도 2018년과 비슷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 그림 2-144 | 국민 출국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2.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질서 있는 체류환경 조성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한 농어가 일손부족 지원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종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 9월부터 충북 괴산군·보은군, 강원도 양구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이후 어촌지역까지 확대하여 현재 농·어번기 계절성이 있는 농작물과 수산물 분야에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2) 추진내용과 성과

시범운영 기간 동안(2015. 10월 ~ 2016. 12월) 7개 지자체에 219명의 계절근로자를 운영하였다. 2017년에는 21개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1,085명(농업 831명, 어업 254명), 2018년에는 42개 지자체에 2,824명(농업 2,249명, 어업 575명), 2019년에는 50개 지자체에 3,497명(농업 2,948명, 어업 549명)을 활용하는 등 그 사업 규모 및 근로자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표 2-124 | 계절근로 외국인 국적별·연도별 운영 현황

연번	국가명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1	네 팔	·	9	33	45	82	169
2	라오스	·	·	·	31		31
3	러시아	·	·	·	8	7	15
4	몽 골	·	20	61	152	95	328
5	베트남	·	29	375	1,039	1,535	2,978
6	우즈베키스탄	·	·	1	8	11	20
7	인도네시아	·	·	2	2	2	6
8	중 국	19	73	163	128	233	616
9	캄보디아	·	·	37	158	251	446
10	키르키즈스탄	·	11	·	·	139	150
11	필리핀	·	58	413	1,253	1,142	2,866
합 계		19	200	1,085	2,824	3,497	7,625

특히, 2019년에는 농·어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가당 계절근로자 최대 허용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고, '영농조합법인'에게도 최초로 계절근로자 신청을 허용했다. 또한, 태국과 같이 지방정부에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는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국내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였다.

2019년 6. 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충북 괴산군 옥수수 농장을 방문하여 계절근로자와 직접 농업활동을 함께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농장주의 근로자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 그림 2-145 |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 방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가운데)이 계절근로자 근무 현장인 충청북도 괴산군 옥수수 농장에서 농장주, 계절근로자 및 괴산군청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계절근로자 근무 현장인 충청북도 괴산군 옥수수 농장에서 옥수수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2019. 12. 16.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국 농어촌 지자체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계절근로 박람회」를 개최했다. 동 박람회에는 국내의 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총 55개 자치단체와 국내 주재 12개국 대사관에서 참여하였으며,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서울대병원(공공사업단)에서도 참여했다. 박람회를 계기로 향후 국내 지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보다 쉽게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146 | 외국인 계절근로 박람회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계절근로 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계절근로 박람회'에서 행사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 평가 및 발전방향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무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공급자(농어민)·소비자(일반 국민)·근로자(계절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등)가 모두 만족하는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0년에도 계절근로 허용인원 상향(현행 5명→6명), 불법체류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농가당 1명씩 추가고용), 계절근로 5개월 장기체류자격(E-8) 허용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어촌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노동 착취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나. 건강보험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을 통한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체납사례가 늘어나면서 체납액이 증가하여 언론, 국회 등으로부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왔다. 사실상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재산파악이 어려워 체납금의 강제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물론 국가 법질서 확립에 저해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2018년 2~3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8. 6. 7.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처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2019. 4. 23. 「출입국관리법」상 체납정보 공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후, 2019. 6월 법무부-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9. 7월 한 달 간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시범실시를 거쳐 2019. 8. 1.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시행하였다.

| 그림 2-147 | 관련 언론보도(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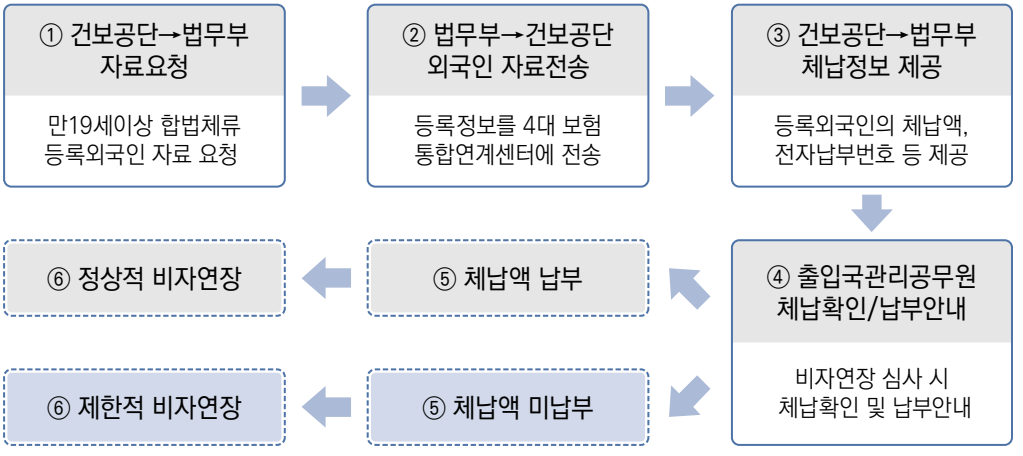


2) 추진내용과 성과

업무처리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각 보유한 등록외국인 기록 및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비자연장 심사 시 건강보험 체납여부를 확인, 체납외국인의 비자연장을 제한하며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게 된다. 건강보험 3회 체납 시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연장을 허가하며 납부를 유도하고, 4회째에도 미납할 경우 비자연장을 불허한다.

2019. 2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체납액은 약 615억 원으로 추정되며, 제도 시행 이후 금년 8~11월 4개월간 환수한 체납액은 약 58억 원으로 연간 체납 환수액은 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2-148 | 건강보험 체류외국인 체류허가 제한 절차



3) 평가 및 발전방향

이와 같이 법무부의 비자연장 허가와 외국인의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연계하여 외국인의 건강보험 체납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전략을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 및 '체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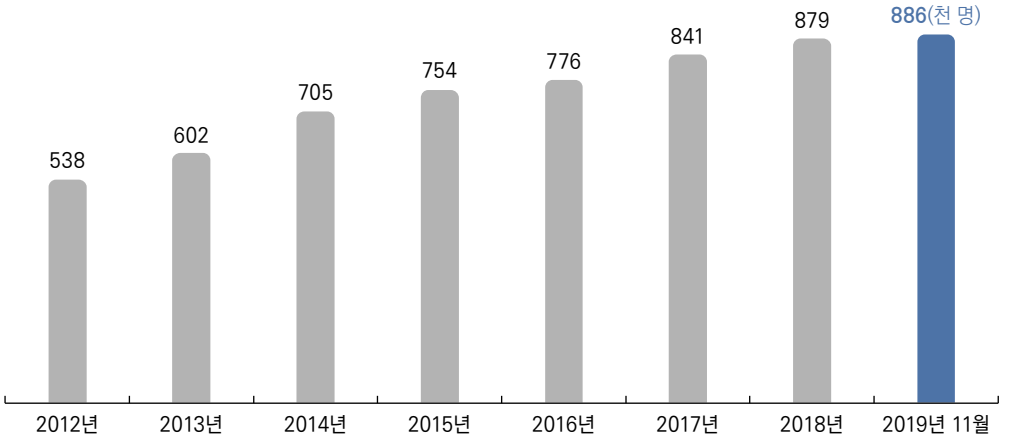
다. 동포사회에 대한 포용 및 동반성장 강화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정욱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1999년 재외동포법 시행 후 거주국 동포 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취업제(H-2) 도입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중국·구소련지역 등의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이 계속 증가하여, 2019. 11월말 현재 국내 체류 재외동포는 약 88만6천 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243만 명의 36.4%에 이르렀다.

| 그림 2-149 | 외국국적동포 연도별 체류 현황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국내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였다.

2019. 6월에는 동포 지침을 개정하여 만기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방문취업(H-2-7) 비자발급 대상 확대, 동포의 배우자 방문동거(F-1) 자격변경 신청 시 소득요건 개선, 영주자격(F-5) 신청자의 생계유지 요건 명확화 등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2019. 7. 2.부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약칭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세대 이후의 동포도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소련정부에 의해 강제이주의 역사적 아픔을 가진 고려인 동포 등의 모국 방문이 꾸준히 늘어왔으나, 재외동포 법령의 동포 범위가 3세대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동포 범위에서 제외된 젊은 청소년 동포들이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으로 4세대 이후 동포들도 대한민국 자유 왕래 및 국내 체류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모국에 대한 기여 기회와

동포로서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9. 9. 2.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 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앞으로도 동포이주의 역사적 특수성 및 1999년 「재외동포법」 시행 후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연대감,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동포체류지원(통합)센터 설치 관련 법적근거 마련, 동포 인식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비자·체류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지원과 한국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

체류관리과 사무관 최문정

1)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국내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자격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2013. 5. 27. 도입하였다.

투자유형 및 방식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용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 공익펀드와 법무부장관이 정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자에 의한 손익발생형 지역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투자기준금액은 일반 투자이민이 5억 원 이상, 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3억 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제도 도입 당해 연도인 2013년의 투자유치 실적은 13억 원으로 극히 저조하였으나, 이후 글로벌인재비자센터 운영을 통한 투자유치 홍보 강화와 투자금 송금 전담은행 지정, 해외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확대 노력으로 2019년 말 기준 공익사업 투자유치 실적은 2,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유치된 투자금액은 전액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등 국내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에 지원하고 있다.

그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홍보를 위해 매년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9. 3월에는 15억 원 이상 고액투자자의 배우자와 그 미혼자녀에게도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표 2-125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절차

① 상담 / 사전심사	② 서류 송부	③ 외환계좌 개설	④ 외화 송금
투자상담 및 투자적합여부 사전심사 (여권 지참)	사전심사서, 여권 사본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팩스 전송	투자자 우리은행 방문	본국 또는 제3국에서 투자자 계좌로 송금
⑤ 산업은행 이체	⑥ 거주비자(F-2) 신청	⑦ 외국인 등록 번호 부여	⑧ 외국인 등록증 발급
5억 송금완료 후 우리은행 재방문 (산업은행 계좌이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방문 및 신청서류 제출	소요기간 5~7일	소요기간 약 2주

2) 부동산 투자이민제

외국인 간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하여 2010. 2월부터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제주도 지역에 도입하여 제도 시행 당해 연도인 2010년에는 976억 원의 투자 유치실적을 달성하였다.

이후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적용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 강원도 평창알펜시아 지구(2. 14.), 전남 여수 경도지역(8. 19.), 인천경제자유구역(11. 1.), 2013년 부산 해운대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5. 20.), 2015년 경기 파주 통일동산(11. 1.), 2016년 강원 강릉 정동진지구(2. 1.) 및 전남 여수 화양지구(7. 11.)를 투자 대상지역에 추가 포함시켰다.

그 결과 2019년 말 기준 부동산 투자유치 실적은 1조 4,87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해당 지역 리조트 건설 등 관광 휴양시설 관련 건설경기 부양과 이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3)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및 창업지원 강화



2018. 2월부터 인천공항 내에 설치된 '투자이민상담센터(2014. 2월 개소)'를 '글로벌인재비자센터'로 확대 개편하였고, 글로벌인재비자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3개 언어(한국어/영어/중국어)로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투자 관련 홍보·통역·상담·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 및 체류허가 관련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투자상담 실적은 5,616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고, 투자유치실적은 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표 2-126 | 연도별 투자상담 및 투자유치 실적

(단위 : 건/억)

연도	상담		투자유치		비고
	실적(건)	월평균(건)	실적(억원)	월평균(억원)	
2019년	5,616	468	330	27.5	2018년 대비 투자실적 158억 원 증가 상담실적 70.4% 증가
2018년	3,958	329.8	172	14.3	
2017년	1,626	135.5	93	7.7	
2016년	1,308	109	105	8.7	
2015년	1,400	116.6	32.2	2.6	
2014년	982	89.2	18	1.6	

| 그림 2-150 | 2019년 외국인 취업박람회





2019. 5. 1.부터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 및 기술창업 비자제도를 개선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외국 전문인력 제한 완화, ▲ 기업투자 비자 발급대상 확대, ▲ 글로벌 창업이민센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여 추천한 외국 우수인재에 대한 학력요건 폐지, ▲ 예비 기술창업자가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투자 전문회사로부터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 기술창업 비자 허용 등이다. 동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9. 3. 19.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중소기업벤처부 및 글로벌창업이민센터 관계자 등과 외국인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달 29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실 전문위원 등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2019. 4. 3. 개최된 제1회 법무부-서울시 외국인정책협의회에서는 외국인 창업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외국 기업인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9. 11. 27. 법무부는 서울 강남 코엑스 홀에서 방글라데시 정부 위탁 「기술 창업 인재 양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방글라데시(정보통신기술부),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산성본부와

4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국 인재를 선발"하고,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권 국내·외 출원과 시제품 제작"을, 한국생산성본부는 "기술지도 및 자문, 사무공간 제공, 창업 소양교육, 시연회 등"을 지원하며, 법무부는 "기술창업 관련 교육 지원 및 기술창업(Start-up) 비자 신속 발급"을 지원한다. 동 협약을 통해 방글라데시는 매년 자국의 창업인재 5팀 10명을 선발하여 한국에서 실제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받을 예정이며, 관련 실무 교육 및 기술자문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 그림 2-151 | 한-방글라데시 업무협약 체결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왼쪽 두 번째)이 카지 호사나아라 방글라데시 정보통신기술부 창업국 부국장(오른쪽 두번째),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오른쪽 끝),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왼쪽 끝)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인 모하메드 샤피울씨(오른쪽에서 2번째)가 '18. 11. 27. 개최된 '18년 외국인 발명·창업대전에서 동상을 수여받은 바 있다.

마. 글로벌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최문정

2019. 3. 1.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확보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국민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 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고용 특례기준 완화, ▲ 스타트업에 대한 초청요건 완화(스타트업에 대해 외국인 고용 시 매출실적 심사 유예기간을 「창업지원법」 취지를 고려하여 5년으로 확대), ▲ 숙련기능인력·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 확대 및 고용요건 완화, ▲ 외국인 요리사 및 중도입국자녀 취업 특례 신설, ▲ 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 도입,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비자 심사기준 강화 등이다.

그동안 스타트업계는 수출을 위한 제품 개발 등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외국 우수인재를 채용하려 해도 비자제도의 경직성으로 채용이 어려워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고, 중소기업 단체는 뿌리산업 분야 등 국민 기피 업종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쿼터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해당 조치는 적극 행정의 구현과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특정활동(E-7) 비자 개선을 통해 외국 우수인재 유치를 더욱 촉진하고, 스타트업 등의 창업 분야와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의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부득이 하게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임금요건을 강화하여 인건비 절감을 위한 외국인력 고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일자리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 6. 11.「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구(E-3) 자격을 자연과학 연구 분야 외(外)에도 사회과학·인문·예체능 분야까지 확대하여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2019. 11. 18. 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요건 현실화, ▲ 세금 체납 기업 외국인 초청 제한 등 심사 기준 강화 등이다.

바.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최문정

1) 추진배경 및 추진내용

2019. 3. 4.부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결과 비자제한대학이나 컨설팅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비자심사는 더욱 엄격히 하고, 인증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한 우대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등 유학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 불법체류율, 중도탈락율 등 6개 지표로 평가하며 2019년 평가결과 인증대학 116개교, 컨설팅대학 49개교, 비자제한대학 53개교 선정

그 동안 유학생 유치와 관련, 대학교의 관리능력과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시행과정에서 대학측에 유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였으나, 재정 및 학업 능력 등에 대한 대학들의 자체 검증 부실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선내용은 ▲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제도' 시범 도입(신설), ▲ 대학부설 어학원에 대한 초청기준 강화(신설), ▲ 하위대학 학부생에 대한 어학능력 기준 강화, ▲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 확대 등이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2018. 11. 7. 자체 마련한 개선안으로 교육부 및 각 대학교 측에 1차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8. 11. 19.에는 국립국제교육원 회의실에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교육부 및 전국 대학 관계자 70여명과 2차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후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수차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쳤다.

동 유학비자 개선을 통해 유학제도를 이용한 남용적 난민신청과 불법취업 유입 통로로의 악용을 차단하는 한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한 혜택 확대 등으로 유학제도의 내실화와 함께 보다 많은 우수외국인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 신남방정책 등 관광활성화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종철

1) 신남방정책 등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정책 추진

2018. 12. 3.부터 신남방국가와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에 대해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도입하는 등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시행하였다. 신남방국가 국민* 가운데 우리나라에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등 국내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업인과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에게 유효기간 10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 (대상국가) 우리나라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국민

이와 함께,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베트남 대도시(하노이, 호치민, 다낭) 거주민을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하였다.

한편, 국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2019. 4. 2. 대통령 주재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중국 내 지역 중 복수비자 발급 대상 도시를 현행 4개에서 9개 대도시를 추가*하여 총 13개 대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2019. 5. 27.부터 시행하였다.

* 1인당 국민소득이 미화 2만불 이상인 대도시를 복수비자 발급 대상으로 지정, 기존 4개 대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 9개 대도시(쑤저우·샤먼·톈진·난징·항저우·닝보·우한·창사·칭다오)를 추가 시행

또한, 2019. 3월부터 중국 및 동남아 4개국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단체관광객 비자제도를 방한관광객 증가 잠재력이 높은 '인도'로 확대하였고, 2019. 6월부터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제도를 시행하였다.

2) 한국전쟁 참전용사 및 그 가족을 위한 출입국·체류 우대정책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법무부는 6.25전쟁 69주기를 맞이하여 유엔군 참전용사 및 그 후손과 참전국(22개국) 대학생 등 우수인재를 위한 종합적인 출입국·체류 우대정책을 최초로 시행하였다.

우선 2019. 10월부터 정부초청 방한사업(국가보훈처 주관)을 통해 입국하는 참전용사 및 그 가족은 5년 유효 복수비자와 출입국우대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출입국우대카드 소지자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에 설치된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출입국을 위한 '전용 통로(fast-track)'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쉽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음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가보훈처 주관 6.25 유엔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및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정부초청장학생(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우수인재에 대하여 취업과 체류가 자유로운 영주자격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 (유엔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6.25 유엔참전국(22개국) 출신 참전용사 직계 후손 대상 장학프로그램으로 국가보훈처와 한국외대가 협업하여 매년 학위과정(학부·대학원) 장학생을 선발·지원하는 프로그램

** (정부초청장학생: GKS-Global Korea Scholarship)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참전국(22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000여명의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등록금·생활비·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참전국 우수인재에 대하여 부여되는 거주(F-2) 자격(비자)은 일반 체류자격에 비하여 체류기간이 길고(최대 5년 부여), 자유로운 취업·학업 활동이 가능하며, 국내 취업 시 각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준 영주자격이다. 거주(F-2) 자격 부여 대상자는 6.25 유엔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정부초청장학생(400여명, '19년 4월 기준)으로서 국가보훈처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가 추천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수료생 포함)이며, 자격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10만 원) 또한 면제된다.

법무부는 2019. 12월 국가보훈처 및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로부터 65명을 추천받아 그 중 38명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2020. 1. 20. 기준)하였으며, 특히 배우자 취업 허용을 통해 참전국 출신 우수인재가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하며 그동안 쌓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0년 한국전쟁 70주기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참전용사 및 그 후손, 참전국 국민에 대한 출입국·체류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참전국 간 우호 증진과 인적교류 활성화, 참전국 청년 우수인재 지원을 통한 지한(知韓) 그룹 양성을 적극 도모해 나갈 것이다.

아.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상담서비스 강화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2008. 3. 31.「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출범하여 2019. 3월 개소 11주년을 맞은 법무부 산하 1345콜센터가 고품질의 상담 제공을 통해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

240만 체류외국인에게 국내 생활의 길라잡이가 되어 온 1345 콜센터는 2015년에 이어 2018년에도 ISO 9001 인증*을 획득하며 체류외국인을 위한 대표 콜센터로서의 신뢰성을 국제표준으로 계속 인정받고 있다.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 기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2018. 8월 취득)

1345 콜센터는 104명의 상담사가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 언어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국내 체류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와 출입국·체류 관련 민원 상담 서비스를 외국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상담사 1인당 일평균 102건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총 상담건수는 약 170만 건에 이른다. 2019년도 국적별 상담실적은 중국 412,593건 > 베트남 129,186건 > 미국 57,45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류자격별 상담서비스 이용자는 재외동포(F-4) 198,317건 > 국민의 배우자(F-6) 118,485건 > 방문취업 동포(H-2) 103,962건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와 금융감독원 등 18개 공공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외국인↔1345콜센터↔기관 간 3자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며 명실상부한 '외국인 체류 관련 정보의 핵심적인 제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3자통역서비스 제공기관(18개) :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인천소방방재본부(119), 대전교도소,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현충원, 의료중재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국민연금공단, 다누리콜센터, 대전시청

특히, 2019. 3월에는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의 수사, 재판을 돕기 위해 대검찰청과 업무협의를 맺고, 범죄 피해 외국인을 위한 3자 통역 지원을 개시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1345콜센터는 외국인의 체류 편의를 위한 정보제공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의 인권보호에도 더욱 노력하여 재한외국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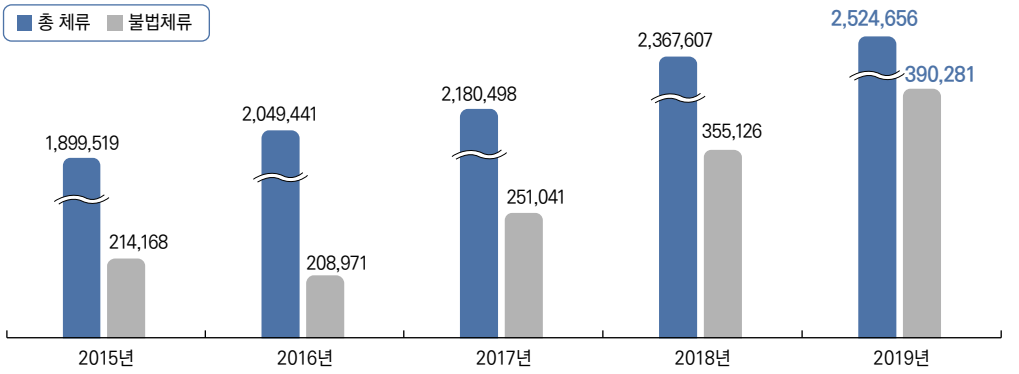
3.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이민조사과 주무관 김윤홍

2019년도에는 태국, 카자흐스탄 등 사증면제협정국가 국민 및 단기방문 자격소지자의 불법체류 영향으로 법무부의 다양한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하였다.

| 그림 2-152 | 총 체류자 및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총 체류 외국인 및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이에 법무부는 정부합동단속·연중 상시단속·건설현장 테마단속·전국 36개 특별단속지역 지정 운영 등을 통해 단속활동을 강화하였고, 이민특수조사대를 비롯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청) 별 기획조사 전담반을 상시운영하여 불법체류의 원인이 되는 불법브로커 등을 지속적으로 적발하였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법무부,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6개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정부합동단속방안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매 짝수달 각 4주간에 걸쳐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에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환경적 요소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불법고용 방지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한 후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선순환의 인적교류를 유도하는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 및 불법고용 억제 환경 조성,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인터넷, SNS 등 온라인 홍보, 공익광고 전광판,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정책을 적극 홍보하였다.

한편,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취업을 목적으로 불법입국하는 수법이 더욱 다양·교묘해지고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의 적발을 통해 불법체류 유발 환경을 차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출입국 관련 사건에 대한 기획조사 능력이 특화된 서울·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이민특수조사대의 활동을 강화하고, 각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마다 기획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였다. 또한, 기획조사 기법 연구 발표 및 공유 등을 통해 동향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와 지방 경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우범지역 및 외국인밀집지역 순찰, 출입국사범 단속 등 업무 수행 시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출입국 사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2019년에 처리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175,609명으로, 이 중 강제퇴거 34,557명(19.7%), 출국명령 5,852명(3.3%), 출국권고 2,687명(1.5%)이었고, 고발된 사람은 4,552명(2.6%)이며, 그 외에 통고처분 26,106명(14.9%), 과태료 14,330명(8.2%), 처분면제 등 기타 87,525명(49.8%) 이었다.

| 표 2-127 |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단위 : 명, 천 원)

연도	총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		고발	과태료		기타
					건	금액		건	금액	
2017	146,924	26,694	6,282	3,366	29,838	40,094,280	2,851	15,205	2,165,600	62,688
2018	176,849	31,811	4,770	3,273	30,395	49,452,520	3,482	15,595	2,086,170	87,523
2019	175,609	34,557	5,852	2,687	26,106	49,564,840	4,552	14,330	1,960,670	87,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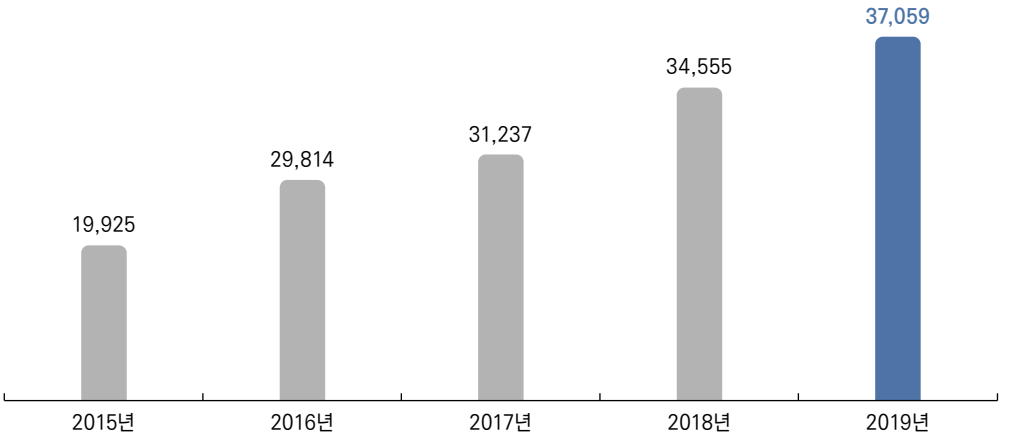
※ 기타 : 처분면제 등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불법체류외국인 감축 노력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상시적 단속체제를 통한 단속, 매 짝수달 각 4주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여 2019년 불법체류 외국인 등 37,059명을 적발하여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그림 2-153 |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현황



2019년 정부합동단속은 매 짝수달 각 4주간 총237회 실시, 총 5,218명이 참여하여 국민일자리 잠식이 심한 대규모 건설현장,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상습적으로 불법고용하는 혐의가 있는 사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806명, 불법고용주 495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표 2-128 | 정부합동 불법체류 단속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기 간	• 3.9. ~ 5.1. • 9.1. ~ 11.8.	• 3.7. ~ 5.13. • 9.5. ~ 11.11.	• 3.6. ~ 5.12. • 9.4. ~ 11.17.	• 2.26. ~ 5.11. • 9.3. ~ 11.16.	• 매 짝수달 각 4주
참 여 인 원	520	638	658	830	5,218
불법체류 외국인	8,736	13,426	13,255	16,218	2,806
불 법 고 용 주	2,393	2,625	2,549	2,835	495

※ 2019년 정부합동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실적산정 방식을 변경(전 기관 실적→ 광역단속팀 주관 실적만 인정) 하여 실적수치가 감소

2018. 10. 1.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별자진출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9. 12월부터는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여 2019. 11. 25.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태국 불법체류·불법취업 방지 협력 MOU'를 체결하여 불법체류 다발국가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였다.

| 그림 2-154 | 한-태국 불법체류·불법취업 방지 협력 MOU 체결



MOU 체결



MOU 체결

| 표 2-129 | 자진출국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18 대비 2019 실적
자진출국자	35,856	52,431	39,513	64,814	71,663	6,849↑ (10.6%↑)

이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자진출국 유도를 위한 계도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2) 기획조사 및 동향조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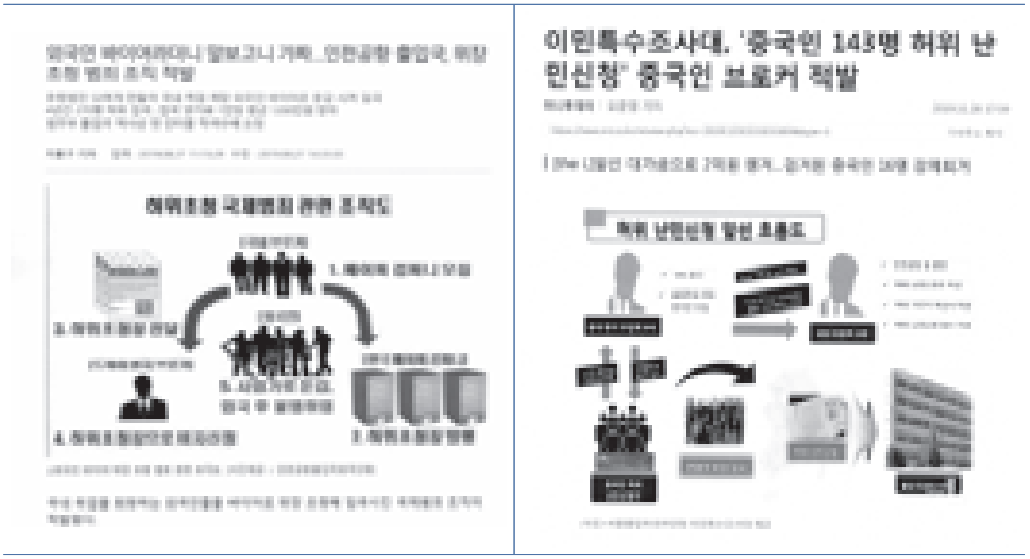
이민조사과 주무관 황규택

2019년도에 기획조사를 추진한 결과, 허위초청 알선자 등 7,569명(882건)을 적발하여 그 중 82명을 구속, 246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5,773명의 외국인을 강제퇴거 조치하였다.

외국인 여성의 인권침해 예방 및 미풍양속 저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유흥업소·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취업 외국인 등 3,204명, 불법고용주 886명, 알선브로커 9명을 적발하였다. 그간 분기별(년 4회) 실시하던 유흥업소 및 마사지업종에 대한 기획단속을 2019. 9월 매 홀수달(년 6회)로 확대하여 불법취업을 위해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러시아 여성 등 다수의 불법취업 외국인을 적발하고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또한, 불법체류 발생 주요 요인인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알선브로커 44명, 불법취업 외국인 등 498명을 적발하였고, '신분세탁 혐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16명을 적발하였으며, 불법고용을 억제하기 위해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브로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취업 알선브로커 46명, 불법고용주 39명, 불법취업 외국인 536명 등 총 621명을 적발하였다.

| 그림 2-155 | 알선브로커 적발 언론보도



기획조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조사과장 회의를 2회 개최하고,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추진실적 평가보고회, 동향조사·사범·보호 기법연구 발표회, 권역별 동향조사요원 정례회합을 통한 동향조사 기법 및 관련 정보 공유에도 힘쓰는 등 불법체류 유발 환경 차단 및 이를 통한 국민 불안 요인 해소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도 노력하였다.

| 표 2-130 | 기획조사 추진 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위변조 여권		허위초청		불법취업		기타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2018년	812	7,390	48	90	86	136	186	2,666	562	4,610
2019년	882	7,569	92	121	84	151	220	2,791	486	4,506
전년대비(%)	108.6	102.4	191.7	134.4	97.7	111.0	118.3	104.7	86.5	97.7

3)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이민조사과 주무관 남명우

2019. 9. 1.「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개정 시 직무수행 기본원칙에 단속과정에서의 사고 예방 노력 추가, 단속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강화 등을 반영하여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였다.

단속·보호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간 5명의 직원을 국군의무사령부의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 위탁교육을 받게 하는 등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9. 7. 23. ~ 7. 31. 화성·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 2019. 4 ~ 10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7개 산하기관에 대한 법무부 인권국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관련 개선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별로 관할 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소방훈련 및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기관별 실정에 따라 소방·전기시설 및 장비를 자체 또는 위탁 점검하였다. 2019. 8. 7. 혹서기 대비 외국인보호소와의 화상회의 실시 및 2019. 11. 28. ~ 11. 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지진대피, 화재대응, 풍·수해대응 훈련 등을 실시하여 시설안전 및 안전한 보호외국인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외국인 고충상담관을 지정·운영하여 강제퇴거를 앞둔 보호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체불임금 4,435건, 의료구호 1,879건 등 10,811건의 고충을 처리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2019. 12. 11. 부터 시행중인「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2020. 6. 30. 까지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2020. 2. 1.부터 신규로 불법체류가 된 후 자진출국 하는 경우, 2020. 3. 1. 이후 단속되는 경우, 2019. 12. 11. 제도 시행 당시 불법체류 하던 외국인이 2020. 7. 1. 이후 자진출국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및 입국금지 강화 등으로 신규 불법체류 유입을 억제하고, 유흥·마사지업소 등 풍속저해업종과 새벽인력시장(직업소개소) 등 서민일자리 침해사범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하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다.

4.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멘토교육 운영

이민통합과 사무관 서제선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이민자간 소통을 통해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등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를 활용하여 한국정착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2019. 6월 성공적·모범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한 이민자들을 '멘토'로 선발하여 강의·토크콘서트 형식의 교육을 4차례 시범 실시하여 470여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고 추가 교육에 대한 요구로 2019년 하반기에 전국 12곳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 그림 2-156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멘토교육





2) 평가 및 발전방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멘토교육에 총 1천여 명이 넘는 내·외국인이 참여하여 선배이민자들의 한국어, 한국사회에 대한 정착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참여자들의 공감과 흥미를 이끌었고 교육 후 법무부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분석결과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20년부터 이민자 멘토교육 과정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과정으로 편성하여 멘토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이민통합과 사무관 서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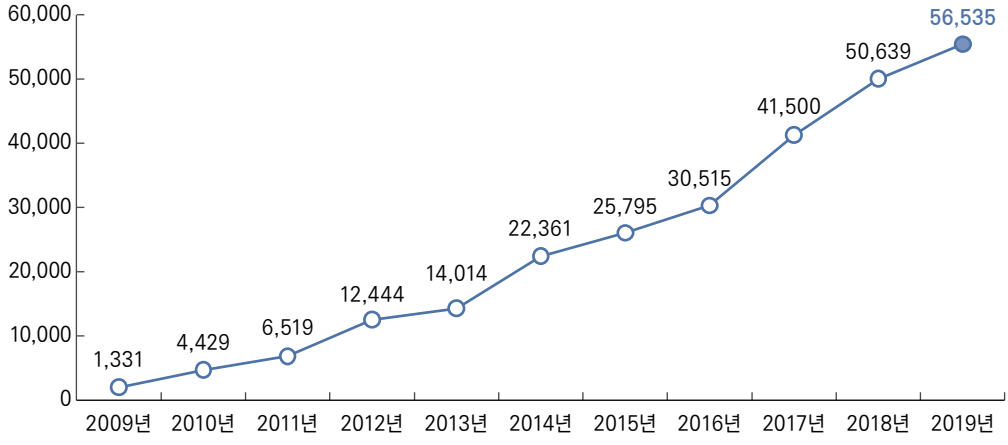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09년부터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등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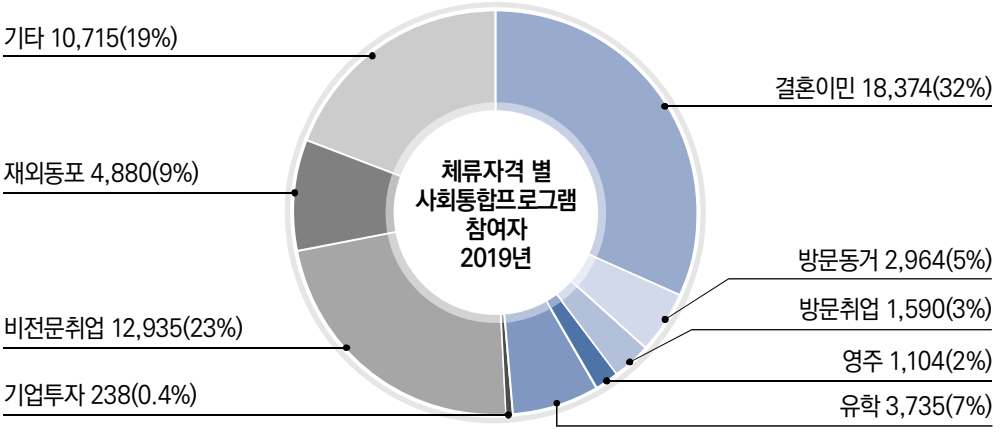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처음 시행하였던 2009년에는 참여자가 1,331명이었으나, 사업을 본격 실시한 2010년에는 4,429명이었고, 2015년에는 25,795명, 2019년에는 56,535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참여자 수 급증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도 2009년 20개에서, 2010년 77개, 2019년 308개로 늘어왔다.

이러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인원과 운영기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재한외국인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며 내실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해졌다.

| 그림 2-157 |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



| 그림 2-158 | 체류자격 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2019년)



2) 평가 및 발전방향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지속적 증가와 운영기관 수의 확대 및 타부처 운영기관의 참여 등 다변화에 대응하여 2020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시 참여자의 수요를 고려하고, 단계배정 평가 횟수를 늘리는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 실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나라와 다른 법령 체계 등으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를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생활법률특강, 금융·경제교육, 범죄예방교육,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재난사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확대하여 재난·안전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수요파악과 과정 개설 등 시민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화

이민통합과 사무관 이호수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09년부터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활정보와 기초법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초 입국하는 결혼이민자, 방문취업동포, 외국인연예인, 유학생 등이 교육에 참여하는데, 이 중 현행 결혼이민자는 의무적 참여가 아닌 자율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필요정보 제공 기회 확대의 필요성은 2019. 7월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등으로 대두되었고, 2019. 10월 법무부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19.8.)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를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대상에 반영하여 한국 초기정착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제도개선의 결과로, 결혼이민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는 '18년 3,969명에서 '19년 6,790명으로 약 71%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한국사회 적응에 가장 어려움이 큰 입국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이어가기 위해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갖는 중도입국 청소년 등에도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관련한 제도개선 검토를 할 계획이다.

라. 제9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개최

이민통합과 사무관 정해정

법무부는 2019. 10. 27. 서울 상암월드컵 공원에서 재한외국인의 우리 사회 적응지원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제9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고충상담에는 교육부·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가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도 참여하였다.

(사)건강사회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 3,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평화광장, 하늘공원둘레길(3.8km) 걷기행사와 함께 외국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정부합동고충상담이 진행되었고, 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 등 보건의료단체가 운영하는 건강캠프를 실시하여 참가한 재한외국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고충상담과 함께 실시된 한마음 걷기축제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가족단위의 참가자가 많았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 그림 2-159 | 제9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고충상담





마.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이민통합과 사무관 정해정

2019. 5. 20. 서울 더케이아트홀에서 국회의원, 31개국 외교사절 40여 명, 재한외국인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이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상호 이해와 공감을 넘어 자립과 통합을 꿈꾸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는 "국민과 외국인이 화합을 통하여 발전한다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세계를 만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천주교 안동교구 두봉 르네 마리 알베르 주교가 대통령표창인 '올해의 이민자상'을 수상하였다. 두봉 주교는 1969년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1990년 안동교구장을 은퇴할 때까지 안동지역에 농민회관 설립,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다미안 피부과의원' 개원, 사회복지시설 설립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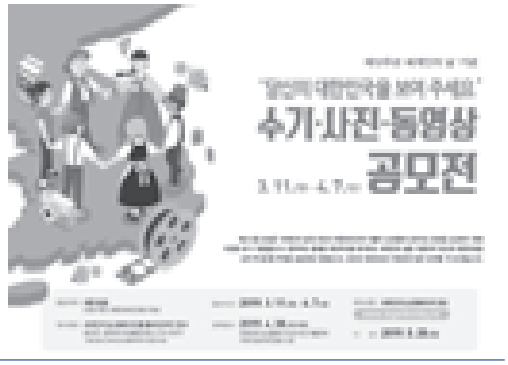
이 밖에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이은하 사무국장과 한국소비자원이 대통령표창을, (사)광주국제교류센터 신경구 소장, 서정대학교 다문화지원센터 조경자 원장, 한림성심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박복덕 소장,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윤연한 센터장 등 4명과 (사)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 한서대학교,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등 3개 단체는 국무총리 표창을, ㈜한맥테코산업 임기주 대표, 성심희망터 김보라 사회복지사 등 6명과 (사)한마음교육봉사단 등 1개 단체는 이민자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세계인의 날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 행사 외에도, '당신의 대한민국을 보여주세요'라는 주제 하에 수기, 사진,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그림 2-160 |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5.20.) 및 관련 공모전 개최







바.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건전한 국제결혼가정 형성 지원

이민통합과 사무관 권택성

1)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내실화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2010.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 국가 국민(대한민국 국민과 결혼 및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국민)과 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당사자의 경험담 소개,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와 가정폭력 방지 등 교육으로 구성되어있다.

2019년에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 후속조치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면제 대상 중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및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45일 이상 계속 체류한 자'를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한 자'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외국인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2) 결혼이민제도 개선

법무부는 2019. 7월 발생한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피해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보장하는 등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2019. 8. 21.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 시 '선(先)허가 후(後)조사' 및 귀책사유 입증조력 제도 도입, 가정폭력범의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초청 요건 강화, 상시 실태조사 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동 개선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10월부터는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의무화하였으며, 12월부터는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연장 시 원칙적 '선(先)허가 후(後)조사' 및 귀책사유 입증조력(외국인 체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한국인 배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단기속성결혼에 의한 사회적 폐해 등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 사증·체류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5.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행정 개선

가.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을 위한 국적증서수여식

국적과 사무관 정금심

1) 추진 배경 및 경과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이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되고 「국적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2019. 1. 21. 제1회 국적증서수여식(국립한글박물관)의 개최를 시작으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광주·창원·춘천·청주·전주·동해·속초 등 전국 17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로스앤젤레스 등 해외공관에서 총 288회의 국적증서수여식을 통해 총 11,943명의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가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 그림 2-161 | 국적증서수여식 개최



제1회 국적증서 수여식(1. 21.) - 연합뉴스 제공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국적증서수여식(7. 23.)

법무부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보훈처와의 협업을 통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를 방문하여 발굴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2019. 2. 2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하여 국민들이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고귀하게 여기는 국가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동포들에 대한 인식을 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귀화자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을 개최(2019. 12. 18, 정부과천청사 법무부)하는 등 귀화자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귀화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여 사회통합에 노력하였다.

| 그림 2-162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 및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

그리고 1957년 최초의 귀화자 탄생(고 손일승씨, 원 국적 대만) 이후 누적 귀화자가 20만 명에 도달함에 따라 "귀화자 20만 명 기념 국적증서수여식"을 개최(2019. 11. 2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하여 귀화자들이 더 이상 소수가 아닌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점을 알림으로써 국민과 귀화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였다.

| 그림 2-163 | 귀화자 20만명 기념 국적증서수여식



귀화자 20만 명 기념 국적증서수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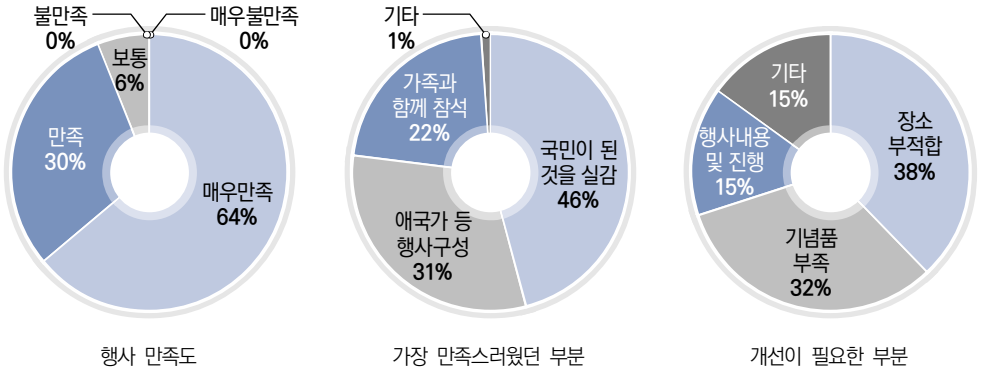


20만 번째 귀화자 챕사이통 크리스다 교수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식 시행 첫 해에 현장방문 및 국적증서수여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의견 청취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2019.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한 국적취득자 3,5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대상자의 94%가 행사전반에 대하여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였다고 응답하고,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 의견이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국적취득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정체성을 함양하는 행사로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그림 2-164 | 국적증서수여식 만족도 조사 결과



행사 만족도 |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 | 개선이 필요한 부분

다만 만족도조사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① "국민이 되면 해야 할 일"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 ② 출입국·외국인관서 시설 이용에 따른 '행사장 협소 및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 부족' 불만사항을 개선한 행사 내실화 ③ 국민이 된 이후 초기 정착과정 지원 및 귀화자 간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의 사후 관리를 꾸준히 해 나갈 예정이다.

나. 수요자 중심의 국적 제도 개선

국적과 사무관 정금심

1) 추진 배경 및 경과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강제동원 등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한 사할린동포들은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도 4만 3천여 명(추정)이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왔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한-러 수교가 이루어진 1994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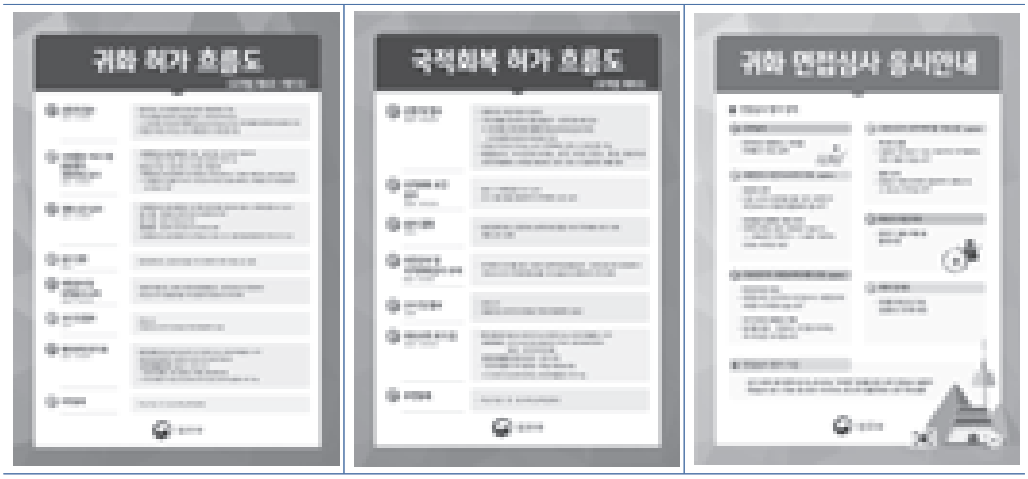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이 시작되어 사할린동포 1세들의 고국으로의 귀환은 이루어졌으나, 가족과의 이산 등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할린동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사할린동포 자녀 및 배우자 등에 대한 국적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간이·특별귀화를 신청한 사할린동포 1세의 자녀에 대해 종합평가를 면제하는 한편, 60세 이상인 경우 면접심사도 면제하는 방안을 담은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 및 시행('19. 4. 22.)하였다.

또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국적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화·국적회복자가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불참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일정범위의 친족 등이 국적증서를 대신 수여할 수 있는 '거동불능자의 국적증서 수여 방안', 국적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체류문제 등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하여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소결정 및 사후조치를 논의할 수 있는 '국적취소심의위원회' 개최 방안을 담은 '국적취소 절차의 합리성 제고방안'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적 제도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기존에 국적관련 신고 서류가 재외공관에서 외교행낭을 통해 법무부로 전달되어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교부 영사시스템(G4K)과 법무부 출입국관리 시스템(ICRM)의 연계를 통하여 서류 도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적 이탈 신고 시 요건 및 제출 서류를 명확화 하였으며, 국적관련 신청 및 신고자가 업무 처리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국적업무흐름도를 배포하는 등 국적 행정 수요자의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 그림 2-165 | 국적업무 흐름도



2) 평가 및 발전방향

법무부는 수요자 중심의 국적 제도 개선을 위하여 ① 동포 사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국적 정책 ②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적제도 수행 ③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국적 행정 개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귀화 요건의 완화를 통한 사할린 동포의 귀향 및 가족 결합 지원 방안은 한계가 있어 국적판정 제도를 확장하여 동포 2세 등의 고국 귀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인권 존중을 위하여 귀화과정의 가장 큰 관문인 면접 심사 제도를 개선하여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한 면접심사 진행 방안을 마련하고, 국적심사 우선처리 기준을 개선하여 인도적 사유로 빠른 국적 취득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적 수요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우편 접수 및 대행제도 등 국적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국적업무처리절차를 재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는 등 국적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다. 합리적 국적 심사 제도 마련

국적과 사무관 정금심

1) 추진 배경 및 경과

귀화자 등 국적취득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고 법 제도를 준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 국적을 수여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범죄경력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품행단정 귀화 요건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연령을 19세에서 14세로 하향하는 등 국적취득자의 법준수 의식을 검증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확립하였다.

또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부정수급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사전승객정보(APIS)를 활용하여 국적 상실자를 적발하고 관계기관의 국적상실자 발견 통보 방식을 간소화하여 발견통보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19년 법무부와 한국이민정책연구원이 연구한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민이 생각하는 귀화 요건은 "준법의식과 납세의무 수행 등 단정한 품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순 이었다. 이에 따라 귀화자의 품행단정 요건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적업무 처리지침」 등의 개정은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 표 2-131 |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2019년) - 외국인의 귀화 요건

(단위: %, 점)

문항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중간	④ (약간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평균 (표준편차)
1.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	3.10	4.20	16.90	30.00	45.80	4.11 (1.03)
2. 준법의식과 납세의무 수행 등 단정한 품행	1.40	1.50	9.10	26.30	61.70	4.45 (0.83)
3.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소득 또는 자산)	2.00	2.50	21.50	33.50	40.50	4.08 (0.95)
4.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1.90	2.90	24.80	36.60	33.80	3.98 (0.93)
5.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1.40	2.00	21.70	37.30	37.60	4.08 (0.89)

법무부는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귀화자를 받아들이는 데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이민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귀화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귀화 유형을 재분류하는 등 국민이 포용할 수 있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귀화정책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은 대부분 국외에서 이루어져 우리 정부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자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 국가의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동포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국적상실자 파악 및 관리에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복지부 및 외교부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건강보험 수급을 위한 국내 체류 기간 상향 및 여권 재발급 시 해외 체류자격 확인, 사전승객정보를 활용한 국적상실자 적발 등 여러 부처의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국적상실자 파악 및 관리 개선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관할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와 전산연계 검토 등 국적상실자 통보제도(국적법 제16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3) 국적업무 처리 현황

국적과 사무관 정금심

귀화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법상 법률행위를 말한다. 귀화자는 2015년 10,924, 2016년 10,108명, 2017년 10,086명, 2018년 11,556명이며 2019년에는 9,914명으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꾸준히 약 1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귀화는 성년자로서 영주권을 갖고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부여하는 것으로서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따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연고가 없이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귀화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로서 2019년 전체 귀화자 중 60.8%(6,027명)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특별귀화자로서 17.7%(1,763명)이다. 특별귀화자에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성년 양자 제외), 특별공로자, 국익기여 우수인재가 포함된다.

특히, 우수인재 선정을 위한 국적심의위원회를 2019년 말까지 총 32회 개최(2019년 4회)하여 과학·인문 등 학술분야 86명, 체육분야 28명, 첨단기술분야 11명, 경영·무역분야 5명, 문화·예술분야 8명 등 총 138명을 우수인재로 인정하여 우리 국적을 부여하였다.

그밖에,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로서 부 또는 모의 귀화 시에 함께 국적을 취득하는 수반취득자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적인 귀화자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 표 2-132 | 유형별 귀화자 현황

(단위 : 명)

유형별 / 연도별	합계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
			혼인귀화	기타		
2015	10,924	323	6,966	618	2,778	239
2016	10,108	566	6,375	413	2,382	372
2017	10,086	715	6,438	304	2,238	391
2018	11,556	1,037	7,689	264	2,064	502
2019	9,914	1,172	6,027	339	1,763	61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회복제도는 국적법 제정 시부터 있었으나,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1년 이내에 포기해야 했었다. 그러나 2011. 1. 1. 제10차 개정 「국적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65세 이상 고령동포가 영주 귀국할 목적으로 국적회복 시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국적회복자가 「국적법」 개정 전인 2010년까지 연평균 491명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566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복수국적을 보유하기를 원하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 국가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며, 국적회복자 추이가 2015년 2,610명, 2016년 2,303명, 2017년 2,775명, 2018년 2,698명, 2019년 2,443명으로 국적회복을 희망하는 우리 동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133 | 국적별 국적회복자 현황

(단위 : 명)

국적별 / 연도별	합계	미국	캐나다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기타
2015	2,610	1,665	297	193	95	360
2016	2,303	1,486	286	113	102	316
2017	2,775	1,655	356	245	112	407
2018	2,698	1,681	334	144	116	423
2019	2,443	1,476	277	182	121	388

국적선택제도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적법령에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제10차 개정 「국적법」이 공포된 2010. 5월부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1998. 6월 제4차 개정 「국적법」 시행으로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적선택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2009년까지 연평균 52명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1,234명, 2016년 1,513명, 2017년 1,329명, 2018년 1,714명, 2019년 1,82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효과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인구 순유출 현상을 개선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며 우수인재를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적상실은 2015년 16,595명, 2016년 35,257명, 2017년 19,364명, 2018년 26,608명, 2019년 22,078명이며 국적이탈은 2015년 934명, 2016년 1,147명, 2017년

1,905명, 2018년 6,986명, 2019년 2,461명이었다.

기타 항목에는 미성년자로서 출생 당시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신고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그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국적재취득이 포함된다.

| 표 2-134 | 국적 신고 업무 처리 현황

(단위 : 명)

유형별 / 연도별	국적선택	국적상실	국적이탈	기타
2015	1,234	16,595	934	540
2016	1,513	35,257	1,147	629
2017	1,329	19,364	1,905	519
2018	1,714	26,608	6,986	538
2019	1,829	22,078	2,461	679

※ '16년, '18년 국적상실 현황은 각각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제7회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 처리한 결과이며, '18년 국적이탈 현황은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18. 5. 1.)에 따른 영향과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을 집중 처리하여 증가함

라.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 지속 실시 및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모범귀화자를 꾸준히 발굴, 격려하는 행사를 매년 추진하여 귀화자에 대한 국민정체성을 함양하고, 수요자를 중심으로 국적제도를 개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6.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가. 추진배경

2019년 난민신청 건수는 201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지속된 난민신청 급증 추세로 인해 심사대기 건수가 증가하여 난민심사 적체 현상은

심화되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난민심사 운영 외에도 난민심사 및 난민통역의 전문성 강화 및 현행 난민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도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난민심사제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업무 전담인력 충원과 이의신청 심의 지원 전담부서 신설 추진 등을 통해 심사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난민심사의 전문성을 증진시켰으며, 난민통역의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난민통역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난민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제도상의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 표 2-135 | 난민신청 및 심사 대기 현황

(매년 12. 13. 기준,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난민신청		5,711	7,541	9,942	16,173	15,452
대기	1차	3,312	3,791	7,317	16,887	22,321
	이의신청	2,145	3,066	2,325	2,747	3,253

나. 추진내용

1) 난민업무 전담인력 확충 및 심사 전문성 강화

난민과 사무관 이취경

2013년 난민법 시행 당시 전국 18명에 불과했던 난민업무 전담인력은 이후 5년간 21명이 증원되어 2018년 말 기준 전국 난민업무 전담인력은 39명으로 늘어났지만,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난민 신청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업무 전담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52명의 난민업무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총 91명의 전담인력을 확보하였다. 특히 신규증원인력 중 20명은 국가정황 등 지역 전문가와 특수언어 전문가로 구성되어 난민심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의 진술내용과 출신국의 정황정보, 기타 사실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법무부는 전문적인 난민심사를 위해 매년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의 집합교육과 사이버강의 외에도 관련 국제기구(유엔난민기구, UNHCR)와의 공동 집합교육을 총 7회 실시하였으며, 이탈리아 산레모 국제인도법연구소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 난민심사이론과 실무 심사기법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있다.

출신국의 박해로부터 급히 피신해오는 난민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난민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신의 국가정황을 파악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정확한 심사를 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9. 3월 난민신청 다발국가 정황에 정통한 전직 외교관, 현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정황정보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최신 국가정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 표 2-136 | 2019년 법무부-유엔난민기구(UNHCR) 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

회차	교육과정	주요 내용	주최
1차 (1 .25.)	초급 (39명)	• 난민이론(박해) •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 면접기법 및 사례연구(강제결혼, 가정폭력)	법무부/UNHCR
2차 (3. 6.)	중·고급 (37명)	• 난민이론개관(난민인정기준, 구조적 분석법) • 국가정황정보 수집, 해외 사례분석 • 최근 쟁점사례 등 교육	법무부/UNHCR
3차 (4. 26.)	초급 (34명)	• 면접 기법 연구(종교, 특정집단) • 난민이론 연구 – 신빙성/신뢰성 심사 • 사례 분석, 역할극 및 소그룹 토론	법무부/UNHCR
4차 (6. 5./6. 14.)	초·중급 (20명)	• 난민심사 연구(6.5) – 면접 및 보고서 작성 – 판례를 통한 난민심사 기준 • 출입국항 난민심사(6.14) – 회부심사의 절차 및 면담 및 보고서 작성 – 출입국항 난민심사 및 소송의 이해	법무부
5차 (7. 15.)	중·고급 (21명)	• 난민이론 연구(대안적 피신) •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전문통역인 활용방안 – 난민법의 몇가지 법리 • 사례분석 및 소그룹 토론	법무부/UNHCR
6차 (8. 26. ~ 9. 6.)	초·중급 (33명)	• 난민전문임기제 기본교육 및 난민실무교육 • 난민면접 기술 및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다발지역 정세의 이해 및 난민심사 – 국제 난민법의 이해	법무부/UNHCR
7차 (11. 25. ~ 29.)	초급 (6명)	• 난민전문임기제 기본교육 • 사유별 난민면접 실무,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 난민다발지역 정세의 이해 및 난민심사 • 전문가 초청 강연 – 난민통역의 이해 및 통역인 활용방안 • 사례 연구 및 토론 – 이집트 정치, 말레이시아 동성애 사례	법무부/UNHCR

2) 난민 통역 제도

난민과 사무관 홍인표

2019년 한 해 동안 난민신청자의 국적이 89개, 난민통역 언어가 45개에 달하는 등 난민신청자의 국적과 구사언어가 다양해지며 소수·특수 언어에 대한 통역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다. 법무부는 다양한 언어권에 대한 통역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난민전문 통역인 풀(Pool)을 구축하였고, 2019. 12월 현재 24개 언어 173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이 난민면접 과정에서 통역을 하고 있다.

한편 난민전문통역인의 자격검증과 품질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난민통역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매년 난민전문 통역인에게 난민제도와 통역윤리, 난민통역실습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 난민전문통역인의 역량 강화 및 통역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3)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난민과 사무관 김민경

「난민법」 제18조(난민의 인정 등)는 기본적으로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를 6개월 안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기간 동안에는 같은 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상 긴급지원금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출신국의 박해로부터 긴급히 피난해오는 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생계비는 난민신청자 중 별도로 지원신청을 한 사람들 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소득·자산, 주거현황, 자녀동반 또는 임신여부, 중대한 질병 유무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난민신청일로부터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로 지급된 비용은 총 7억1천만 원이며, 가구당 1회 생계비 지원 금액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137 | 2019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금액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센터 비(非) 입주자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센터 입주자	216,450	368,600	476,950	585,200	693,450

2019년 한 해 전체 난민신청자 15,452명 중 717명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이 중 542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4)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

난민과 사무관 김민경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숙식·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고,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이다.

지원센터에서는 난민 등의 초기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별 한국어 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등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내 아동대상 외국어 교실 운영, 체육 시설 개방, 관내 외국인 대상 이동출입국사무소 운영,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선발 등 지역사회와 상생·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지원센터에 새로 입소한 사람은 총 84명이다.

5) 재정착난민 수용

난민과 사무관 김민경

재정착난민제도는 「난민법」 제24조(재정착 희망난민의 수용)에 따라 해외 난민캠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수용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재정착난민제도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 37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동참하여 지역난민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재정착난민은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추천을 받은 난민 중 서류심사, 현지면접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현지에서 건강검진 및 사전교육 후 입국하여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및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 초기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재정착난민 아동으로 구성된 '하울림 합창단'

법무부는 2015년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된 '재정착 난민 수용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태국 내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 총 86명(16가족)을 수용하며 1차 시범사업을 종료하였다. 이어 2018. 6월 사업국을 말레이시아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2차 재정착난민 수용시범사업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26명, 2019년 37명의 재정착난민을 수용하였다. 현재까지 재정착난민 제도를 통해 국내로 입국한 난민은 총 149명이다.

| 표 2-138 | 재정착난민 수용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원(가구수)	22(4)	34(7)	30(5)	26(8)	37(15)
사업수행국	태국	태국	태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6) 난민업무 처리 현황

난민과 사무관 이취경

1994년 난민업무를 시행한 이후 2019년 말까지 총 64,358건의 난민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자진 철회된 10,738건을 제외한 총 28,600건에 대한 난민심사를 완료하였다. 심사결과 총 1,022명에게 난민인정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2,217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총 3,239명에게 난민법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였다.

2019년에는 난민신청 수가 총 15,452건으로 난민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전년 대비 감소(2018년 총 16,173건)하였으나, 그간 누적된 건수로 인해 난민심사 대기 건수는 총 25,57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9년 난민심사결정 건수(1차 심사 후 이의신청까지 완료한 건수)는 총 5,598건으로 전년도 3,964건 대비 41% 증가하였으나, 난민인정은 79건, 인도적 체류허가는 232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45%, 54% 감소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2020년에는 그간 추진해 왔던 이의신청 심의 지원 전담부서 신설이 확정되어 법무부 내 '난민심의과'가 신설될 예정으로, 난민인정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진행된 난민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처우를 지원하는 한편,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사례에는 엄정히 대처하는 효과적인 난민제도 운영을 위해 난민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7.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외국인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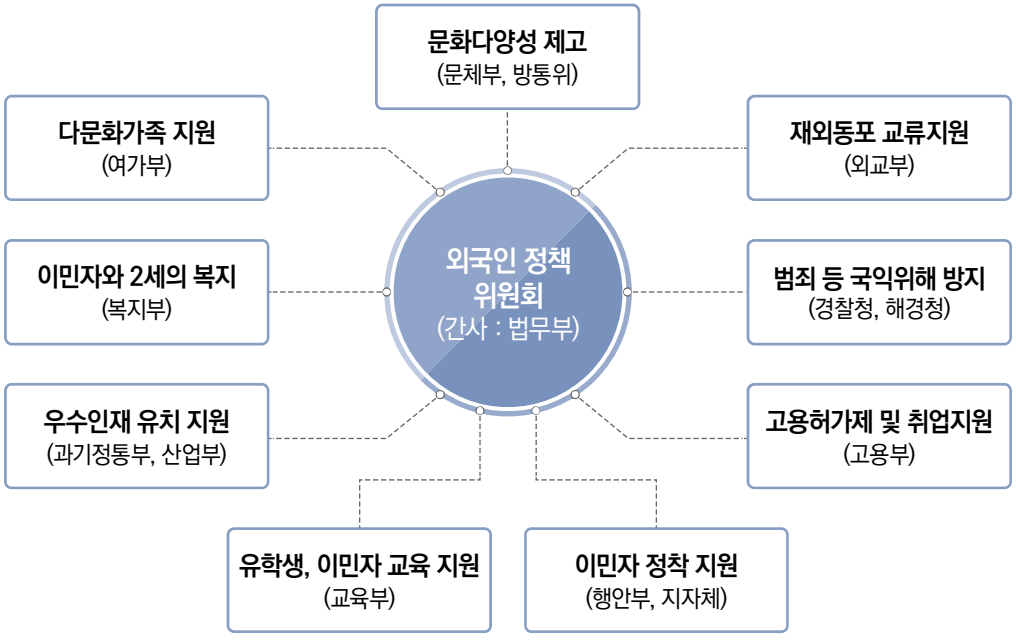
가.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옥효재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외국인정책[17]은 그 특성상 관련분야가 많고 정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소관부처별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의 연도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8. 12. 28.부터 2019. 1. 3.까지 '제23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그림 2-166 | 외국인정책위원회



17)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를 의미하며,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국민이 '해외 이민'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민정책' 대신 「외국인정책」으로 호칭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하여 사용

2) 주요 내용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5개 정책목표(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를 중심으로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210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4,502억여 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 우수인재, 투자자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한 가족 초청범위 확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한 통역 서비스 확대
-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하여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대학의 유학생 관리역량 제고, 다양한 방식의 국내대학 해외진출 지원제도 마련
- 계절근로자 도입인원 확대 및 법적 근거 강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예방 강화 등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 환승투어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강화, 관광코스 다양화, 목표그룹 선정 및 홍보 확대, 인천공항 환승관광 신규코스 개발 등 환승관광 활성화

②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전자민원 확대, 모바일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민원 편의 제고
- 중앙과 지방정부의 사회통합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상호 지원함으로써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협업 강화
-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 공교육 진입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업 강화,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 지원 확충
- 지방자치단체 이민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성공사례 발굴 및 표준 모델 개발 추진

③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 입국심사 시 필요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여행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입국거부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최소화를 위한 전자여행허가 제도 도입 검토
- 고위험 환승외국인 관리체계 운영, 환승객 정보 공유시스템 고도화, 환승객의 미탑승 및 불법입국 대응 모의훈련 시행, 환승구역 범죄 관련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환승관리 강화
-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 및 SNS를 이용한 출입국사범 수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 도입 등 디지털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④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재한외국인 지원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업무 관련 고충 처리 및 인권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강화
-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을 통해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등에 주거, 상담, 의료·법률 및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업소·공연기획사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시행
- 외국인 아동 담당 교원 대상 학적관리 연수 실시, 외국인 아동 실태 파악을 통한 외국인 아동 인권보호 및 합리적 관리·지원 방안 마련 추진
- 4세대 이후 동포를 동포 범위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 추진, 동포밀집지역 동포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확대, 고려인 동포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등 동포지원 인프라 확충

⑤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 송출국의 귀국 촉진 노력을 송출국별 도입규모 결정과 연계하는 등 송출국의 책임성 강화, 원활한 귀국을 위한 홍보 강화를 통한 단순직 종사자 귀환체계 강화
- 각종 이민행정 기록을 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이민행정 통계 및 정책기초정보로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 정보분석 및 통계시스템 구축
- 국제인구이동통계·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다문화인구동태통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상주 외국인 통계를 포함한 인구주택총조사 시행 및 결과 공표 등 외국인 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 감식정보의 체계적·과학적 분석 및 시스템 구축, 위·변조 감식 광역 지원, 대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감식연구소 설치 추진

| 표 2-139 | 과제 및 예산규모 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19년 정책목표	합 계		중앙부처		지자체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합계	1,210	450,237	188	262,099	1,022	188,138
1. 개방	122	182,582	46	142,644	76	39,938
2. 통합	692	133,572	41	19,777	651	113,795
3. 안전	44	28,489	27	27,795	17	694
4. 인권	285	45,524	49	15,841	236	29,683
5. 협력	67	60,070	25	56,042	42	4,028

나. 2019년 출입국·이민실무 정책발표회 개최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박래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9. 11. 8. 외국인정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출입국행정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직원이 참여하는 정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 이래로 매년 출입국·이민실무 정책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출입국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정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평가 및 발전방향

2019년 정책발표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53개 과제를 제출할 정도로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였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 과제가 본선에 진출하였다. 2019. 11. 8. 개최된 정책발표회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이용한 밀실 및 도주로 확보 방안'이 최우수상을, 'E-입국 신고서 제도 도입을 통한 국경관리 강화방안'과 '송무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이 우수상을, '항만용 통합국경관리시스템(IBMS) 단계적 구축 방안'과 '전자팩스 수신·처리결과 조회 서비스 도입', '체류심사 선진화 방안'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2-167 | 제22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발표회





다. 2019년 이민정책포럼 개최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박래식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2007. 8. 29.부터 수요정책포럼이 시작되었다. 2016. 3. 24. 이민정책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제 및 발표방식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였고, 2017. 9월부터 외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하여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 e나라도움 화상회의를 활용하여 일선 기관 직원들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주요 내용 및 평가

2019년 이민정책포럼을 통해 학자, 언론인, 주한대사관 주재관, 각국 이민국 중견관리자, NGO임직원,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등 외국인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하였고,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본 이민정책방향', '한국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외국인력 및 이민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효과', '대한민국의 적정 이민도입규모', '내가 경험한 난민 2019', '현장에서 만난 이민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민자', '외국인력정책 과거, 현재와 미래' 등을 주제로 초청 강사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이민정책 환경과 세계적 이민정책 동향을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듣고 토론을 함으로써 정책추진 역량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는 등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그림 2-168 | 이민정책포럼



라. 국제협력 강화

출입국기획과 주무관 송지연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제이주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이민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환경 변화와 흐름에 부응하여 난민, 국제테러, 불법이주 문제 등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GM 회의, OECD 이주정책 전문가회의, 제110차 국제이주기구(IOM) 총회, 정부 간 이민정책 협의체 실무회의(IGC) 등에 참석하여 전 세계적인 이민의 흐름을 파악하고 인권보호에 노력하는 한편, ICAO의 여행자 신원확인 프로그램 지역 세미나(생체정보를 활용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승객정보 활용)에 참석하여 각국 운영사례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제70차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이사회 및 제1차 글로벌난민포럼에 참석하여 전세계의 난민 동향 등을 파악하고 지원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였으며, 국제폭력 극단주의 대응 워킹그룹 세미나, 한·중 수사협의체 실무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테러 발생을 막고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출입국 관련 현안이 있는 인도네시아, 중국, 몽골 등 이민 당국과 회의를 개최하여 양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한공관원을 초청하여 출입국 정책을 소개하는 이민정책포럼(Immigration Policy Forum), 주요국의 이민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하는 차세대 이민정책 전문가회의(FILC, Future Immigration Leaders' Conference), 직원 상호 교환연수, 정책연수 등 실무자간 인적 교류사업을 통하여 해외 정책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2) 주요 내용 및 평가

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국제이민협력

급변하는 세계이민동향에 발맞춰 국제기구에서 이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개선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 동향 파악 및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19. 1월부터 12월까지 ① OECD 이주작업반 회의 ②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GM 회의 ③ 유엔난민기구(UNHCR) 제70차 집행이사회 참가 회의 ④ IGC(국가간이민정책협의체) 워킹그룹 회의 ⑤ IGC 고위급 회의 ⑥ 제109차 국제이주기구(IOM) 총회 ⑦ 발리프로세스 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나) 양자협력 강화 및 교류 다양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해외 이민당국과 실질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다발국가, 인력 송출국가 등 우리나라와 이주 관련 현안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이민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편의를 지원하고 이민당국 간 현안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시적 공식채널을 만드는데 정책적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신남방 정책에 발맞춰 인도네시아 이민청과 고위급 회담을 실시하였고, 몽골, 중국 등의 이민당국과 고위급 회의를 통하여 출입국 관리 분야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 그림 2-169 | 고위급 회담



한·인도네시아 고위급 회담



한·중 고위급 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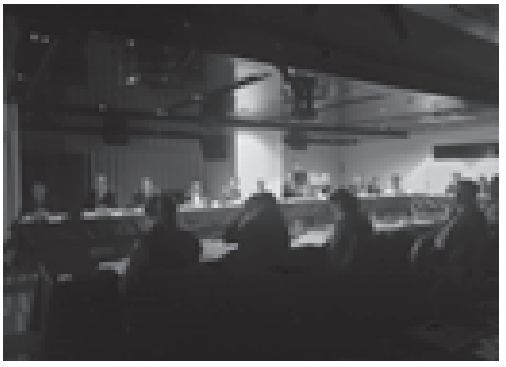
2019. 11. 4. ~ 9.까지 국제기구 IOM과 아시아, 미주, 유럽지역 18개국의 미래이민정책결정자 25명을 국내로 초청하여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FILC : Future Immigration Leaders'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를 통해 전 세계 이민국 직원들이 각국의 이민제도를 소개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민행정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위 회의에는 국제사회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 IOM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출입국관리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층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출입국관리 제도의 우수성 홍보, 각국의 주요현안 및 출입국정책 정보공유, 해외 이민당국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젊은 해외 이민국 우수인재들을 초청하여 친한 인사로 양성하고, 이를 통해 20 ~ 30년 후 양자 간 이민협력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국제협력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 그림 2-170 |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FILC)





한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며, 국제적인 마인드를 지닐 수 있도록 정책연수 및 직원 교환연수를 연중 시행하였으며, 선진 이민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역량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미국,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등 19개 과정에 직원 54명을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하여 양국 이민당국 실무자급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당국가의 이민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10절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 업무

정책기획단 검사 김영빈

1.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 배경 및 운영 경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 9. 29.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2017. 12. 12.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대검찰청은 2018. 2. 6.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을 설치하였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①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개별 조사사건 1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 2건을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②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며, ③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사건 조사 결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 사건 총 17건(개별적 조사사건 15건 + 포괄적 조사사건 2건)을 조사·심의하여 총 21차례에 걸쳐 권고한 후 2019. 6월 활동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사건 및 권고요지는 〈표 2-140〉과 같다.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으로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외압이나 지휘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사례, 경찰의 가혹행위를 걸러내지 못하거나 진범 제보가 있음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례, 유죄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극적 부실수사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소홀히 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누락 또는 지연 제출하고 증거조작 사실을 간과하는 등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호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각 개별사건이나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가 있었고,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이 기소되었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제도화된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표 2-140 |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사건 및 권고요지

	사건	권고요지
1	형제복지원 사건 ('18. 10. 10)	• 검찰총장 비상상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릴 것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등 제도 및 대책 수립
2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18. 10. 11.)	• 검찰의 국민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규정」의 '안보수사조정권' 폐지
3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8. 10. 11.)	• 잘못된 수사사례와 모범적 수사사례를 대비하여 원인, 문제점 등을 교육 과정에 반영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등 제도 및 대책 수립
4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8. 11. 21.)	• 검찰총장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및 단정적 주장을 언론에 발표하는 잘못된 관행 개선 • 재심사건에서 기계적으로 불복하는 관행 중단 등 제도 개선, '상고심사위원회'에서 과거사 재심결정 등 심의하도록 제도 개선
5	피디수첩 사건 ('19. 1. 9.)	• 검찰의 정치적 중립 준수·특정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 축소·범죄혐의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수사지휘 지양 • 위법·부당한 수사지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의제기절차 마련 및 수사지휘 과정의 투명한 운영 • 수사결과 발표 시 피의사실공표, 개인 명예와 사생활 침해하는 방식으로 발표하지 않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준수할 것 • 수사내용이 유출 방지 방안 마련 • 강제수사 최소화
6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 ('19. 1. 15.)	• 핵심 관련자들의 무고 의심 정황에 대해 살펴볼 것 • 조직적 위증 및 남산 3억 원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 본 사건 무죄 평정 경위에 대한 진상 파악
7	약촌오거리 사건 ('19. 1. 17.)	• 누명을 쓴 피해자 및 가족, 살인사건 유족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 •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실효적인 이행방안 수립과 철저한 시행 • 본건 재심 대응의 적정성 파악 • 중형 선고된 중요 강력사건에서 기록 보존 시한까지 핵심 압수물 보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강구
8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 ('19. 1. 17.)	• 검찰총장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제기 등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확보 위한 제도적 개선책(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검찰총장 지휘·감독권 제도 개선책 포함) 마련 • 법왜곡죄 도입 적극 검토

	사건	권고요지
9	삼례 나라슈퍼 사건 ('19. 1. 23.)	•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 장애인의 경우 조사과정 필수적으로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수사사건은 물론 내사사건에서도 기피, 회피제도 도입 • 강력 범죄 등에 대해서는 다른 검사가 기록 일체를 교차적으로 검토하는 기록 교차검토제도 도입
10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19. 1. 27.)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통해 국가권력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검찰권 행사 • 수사지휘권 행사기준 마련 및 이의제기절차 도입 • 기록 관리책임자 지정 및 이동 상황에 대한 기록 등 기록관리제도 보완 • 종국처분 이후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후속 수사 가능한 제도 마련 • 사건 배당 후 수사 진행 없이 방치되는 것 방지할 제도 마련
11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19. 2. 8.)	• 검찰총장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탈북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마련
12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19. 4. 17.)	•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검사가 자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마련 • 강력사건의 중요증거물을 기록 보존 혹은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 및 조서 열람 시 필요적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조서의 진정성 확보 및 조서열람권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수사기록목록의 진실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이를 위반한 검사, 수사관 등에 대한 징계절차 마련
13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 ('19. 4. 17.)	• 현행 검찰의 '형사사건 변론기록' 제도 개선하여 몰래 변론 방지 • 사건 분리 처분시 미처분 부분 누락 방지 대책 마련 • 몰래 변론 연루 검사 감찰 및 징계 강화
14	장자연 리스트 사건 ('19. 5. 20.)	•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 보존 • 관련자 김△△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 법 왜곡죄 구성요건 마련 •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및 보존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검찰공무원 간 사건청탁방지 제도 마련
15	피의사실공표 사건 ('19. 5. 28.)	•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 제정 • 수사공보 대상의 제한 • 수사공보 대상자의 반론권 등 권리보장 절차 마련
16	김학의 전 차관 사건 ('19. 5. 29.)	• 수사단의 성역 없는 엄중수사 • 합리적인 검찰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적 논의에 적극 참여 • 주임검사의 사건처리 자율성 확대 및 사후통제 강화 •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17	용산지역 철거 사건 ('19. 5. 31.)	• 용산 지역 철거 사건 관련 철거민들과 사망자 유족들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 사과 •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교육 및 제도개선 •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2항의 긴급성 판단을 위한 지침 마련 • 검사의 구두지휘에 대한 서면기록 의무화

제11절 법무·검찰개혁 업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검사 송인호

1.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운영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19. 9. 30. 법무·검찰 개혁에 관심이 높은 법조계와 학계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간부, 일선의 형사부 검사와 검찰수사관 그리고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등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신속히 실현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법무부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 기구로서 단장 1명, 부단장 1명, 검사 2명 등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설치하여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였다.

2. 진행상황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전환,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등의 검찰개혁 기조를 담당하는 제1분과와 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등의 검찰개혁 기조를 담당하는 제2분과, 그리고 이행점검을 위한 특별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였다. 2019. 9. 30.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17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모두 11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2019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제는 검찰 직접수사축소,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화 등이며, 법무부는 위원회 권고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권고안 내용과 발표일자는 〈표 2-141〉과 같다.

| 표 2-141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2019년 권고안

회차	일자	내용
1	9. 30.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2	10. 7.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
3	10. 18.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4	10. 21.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5	10. 21.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
6	10. 28.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7	11. 12.	이의제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권고
8	11. 18.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 폐지
9	11. 25.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의 민주적 구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
10	12. 9.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의 공개,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
11	12. 23.	검찰옴부즈만 수용,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등 수사상 인권보호조치

法務年鑑

03



법령정비

제1절 개관
제2절 법률
제3절 대통령령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제1절 개관

구분 / 연도	계	제정				개정				폐지
		소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소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법률·대통령령
2008	88	16	3	7	6	61	15	22	24	11
2009	73	15	6	6	3	56	15	19	22	2
2010	72	16	9	4	3	56	19	12	25	-
2011	67	9	1	3	5	58	11	21	26	-
2012	58	7	2	3	2	51	10	24	17	-
2013	59	3	1	1	1	56	14	14	28	-
2014	83	8	1	4	3	75	27	26	22	-
2015	59	4	1	2	1	55	10	19	26	-
2016	80	5	3	1	1	75	24	26	25	-
2017	70	3	-	2	1	67	23	20	24	-
2018	58	1	-	1	-	57	19	23	15	
2019	51	2	-	1	1	48	9	24	15	1

제2절 법률

Ⅰ. 개정법률

1. 검사징계법

가. 추진배경

◦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으로 하던 것을 「국가공무원법」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와 동일하게 하고, 징계부가금의 집행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의 공정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며,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심의를 하도록 하고,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8. 3. 29. 국회제출
2019. 3. 28. 국회통과
2019. 4. 16. 법률 제1631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사징계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 징계부가금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징계부가금 사유와 동일시하여 징계부가금 부과 범위 확대(前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회령 및 유용)
- 징계부가금 징수·집행 등 국가공무원법 준용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의 공정성 및 집행의 효율성 강화 등

◦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상 강화
-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제도 도입, 의결 방식 및 절차 개선을 통한 검사징계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등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을 위한 유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구인·유치과정에서 사용하는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고려할 사항 등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6. 19. 의원 발의
2019. 3. 28. 국회통과
2019. 4. 16. 법률 제1631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보호관찰 준수사항 '삭제' 규정 신설
◦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유치 규정 정비
  - 벌금형에 대한 선고·집행유예 대상자의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취소 청구 등의 신청이 필요하더라도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
◦ 보호장구 규정 개선
  - 보호장구의 종류에 보호대를 추가하고, 보호장구의 사용요건 등을 구체화
◦ 보호관찰 등 종료 사유 정비
  -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종료 사유에서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를 제외
◦ 보호관찰 등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근거 규정 마련
  - 보호관찰 기간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종료 후 3년간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전자장치 피부착자 가운데 동종 범죄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무엇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등의 출소 후 재범 및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1대1 보호관찰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8. 2. 8. 의원 발의
2019. 3. 28. 국회통과
2019. 4. 16. 법률 제1631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보호관찰 명령을 할 때 필요적으로 특정인에게의 접근금지를 부과하도록 규정 마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1대1 보호관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4. 출입국관리법

가. 추진배경

◦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 이주아동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와 적절한 지원을 도모하고,
◦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 및 국민건강보험 등의 체납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며,
◦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재외공관 문서업무 및 공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8. 4. 10.(박경미 국회의원), 7. 12.(금태섭 국회의원), 9. 3.(신경미 국회의원) 제안
2019. 4. 5. 국회의결
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공포
2019. 4. 23. 시행(일부 10. 24. 시행)

다. 주요내용

◦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4. 23. 시행)
◦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를 할 때 관계 기관에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 납부정보, 과태료 납부정보,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과태료 체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4. 23. 시행)
◦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마련함.(10. 24. 시행)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목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용자가 미성년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
◦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지나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장비 등을 추가하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7. 10. 25. 정부안 국회 제출
2019. 4. 5. 법사위 대안 의결
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거나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되,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등의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함
◦ 교정시설 내 소지와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추가하되,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교정시설에 교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교정청에 설치하여 수용자 관리 및 교정교화 사무에 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를 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소장의 허가 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촬영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 추진배경

◦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조직 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점이 드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8. 11. 30. 국회제출
2019. 8. 2. 국회의결(수정 가결)
2019. 8. 20. 법률 제1644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함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은 속도를 제한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식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현행법은 도주차량 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가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11. 29. 법사위 대안 제출
2019. 12. 10. 국회의결
2019. 12. 24. 법률 제16829호로 공포(2020. 3. 25. 시행 예정)

다. 주요내용

◦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상해 사고 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함

8. 통신비밀보호법

가. 추진배경

◦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 및 기지국 수사'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적 요소 제거 필요

나. 추진경과

2019. 3. 28. 국회제출
2019. 12. 27. 국회통과
2019. 12. 31. 법률 제1684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통신제한조치 총연장기간 신설(원칙적 1년, 예외적 3년)
◦ 위치정보 추적자료·기지국 수사 시 요건강화(기존 수사필요성 외에 보충성 요건 추가)
◦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범위 확대(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 장기화의 경우에도 통지)
◦ 통신사실확인 사유통지 신청권 부여

9. 형사소송법

가. 추진배경

◦ 2018. 4. 26. 헌법재판소는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곧바로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6조에 따른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 또한 2018. 12. 27.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게 되었음

나. 추진경과

2019. 11. 27. 법사위 대안 제출
2019. 12. 27. 국회의결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함

제3절 대통령령

Ⅰ. 대통령령[제정]

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2016. 3. 22. 주식·사채 등 증권의 실물없이 전면 전자적으로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 되도록 하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일* 등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법률은 시행일을 법률 공포 후 4년이 되는 일자(2020. 3. 22.)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나. 추진경과

2017. 3. ~ 5.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위원회」 운영
2017. ~ 2018. 공동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
2019. 1. ~ 3.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공포
2019. 9. 16. 시행

다. 주요내용

◦ 전자증권제도 시행일 확정(2019. 9. 16.)
- 시스템 전환 위한 준비 등 일정 고려하여 추석 연휴 후인 2019. 9. 16.부터 시행

◦ 전자증권 적용 및 의무대상 증권 범위, 전자등록의 절차와 방법, 전자증권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 초과분 발생 시 권리자 보호절차, 시행 당시 전환을 위한 경과조항 등 법률 위임사항을 확정

Ⅱ. 대통령령[개정]

1.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경기도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수원고등검찰청 신설 근거 마련

나. 추진경과

2019. 2. 8. 대통령령 제29508호로 공포·2019. 3. 1. 시행

다. 주요내용

◦ 수원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경기도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하남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관할하는 수원고등검찰청 신설 근거 마련
- 별표 중 광주고등검찰청 다음에 수원고등검찰청란 신설

2. 검사정원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검사정원법」의 개정으로 2019. 1. 1.부터 검사 40명이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 70명을 각급 검찰청에 배정 필요, 2019. 3. 1.자 수원고등검찰청이 설치됨에 따라 검사정원 16명 재배치 필요

나. 추진경과

2019. 2. 8. 대통령령 제2950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신설되는 수원고등검찰청의 검사 정원 16명 중 1명(차장검사)은 대검찰청 검사 정원에서 재배정하고, 11명(고등검찰청 검사)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정원에서 재배정하며, 4명(검사장 1명 및 고등검찰청 검사 3명)은 증원되는 검사 정원에서 배정, 그 밖에 증원되는 검사 36명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로 배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정원 1명(부장검사)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재배정

3.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수원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이에 대응하는 수원고등검찰청이 신설됨에 따라 인력 증원 필요, 천안지역의 효율적인 사건 접수·처리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사무국 및 사건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증원 필요

나. 추진경과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0호로 공포·시행(수원고검 설치 등은 3. 1.자 시행)

다. 주요내용

◦ 수원고등검찰청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 8명 증원(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7급 또는 기록연구사 1명, 8급 1명, 9급 3명)
◦ 천안지청 사무국 및 사건과 신설에 필요한 인력 2명 증원(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구역 내 산업단지의 산업기술보호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산업기술범죄수사부 신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개인파산의 경우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여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음
◦ 법원이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 한도를 900만 원에서 1천 110만 원으로 증액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재활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2. 21. 제8회 차관회의 통과
2019. 2. 26. 제8회 국무회의 통과
2019. 3. 5. 대통령령 제2960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생계비 상한을 인상(안 제16조 제2항)

- 파산절차에서 면제되는 생계비를 현행 월 150만 원(6개월분 합계 900만 원)에서 월 185만 원(6개월분 합계 1천110만 원)으로 약 24% 상향

※ 월 185만 원은 '19년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약 460만 원)의 약 40%에 해당

5. 민사집행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등의 최저금액을 상향하여 약탈적 집행을 방지하고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 수준을 높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8. 10. 15.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19. 1. 23. 금액 변동에 따른 재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공포(2019. 4. 1. 시행)

다. 주요내용

◦ 생계비와 급여, 예금액의 압류금지 최저한도를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해당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3. 5. 대통령령 제2960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제2조의 제목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의 범위”를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로 하고 별표의 제목 중 “자의 기준(제2조관련)”을 “사람의 기준(제2조 관련)”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중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같은 표 제6호 중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개정함

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환수 업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 수사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에 필요한 인력 등 증원 필요

나. 추진경과

2019. 3. 26. 대통령령 제2964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환수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 증원(8급 2명),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 증원(5급 1명, 6급 1명)
◦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 수사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1명 증원(6급 9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5명)
◦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 증원(8급 1명)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상한액을 증액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1. 9. 입법 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1호로 공포·시행(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은 4. 17.자 시행)

다. 주요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6억 1천만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5억 원 이하에서 6억 9천만 원 이하 등으로 증액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꾀함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등 규정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및 광주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함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심사관과 조사관을 두고, 사무국장이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9.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수사과정의 양성평등 실현, 대검찰청 양성평등 정책 기능강화 필요

나. 추진경과

2019. 5. 7. 대통령령 제2973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평가대상조직)
◦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증원(6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나군 1명)

10.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조정(총 보수 대비 1.8% 인상)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 반영 필요

나. 추진경과

2019. 5. 7. 대통령령 제2974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 반영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조정('19. 1. 1.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
- 단, 3호봉 이상의 검사의 경우에는 별표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9. 12. 31.까지는 부칙 규정에 의해 봉급을 지급

◦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를 20만원 감액하여 지급

11. 검사정원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대검찰청에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그 이행 관리를 위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수행할 검사 이체·조정 필요

나. 추진경과

2019. 5. 7. 대통령령 제2974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인천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 각 1명씩을 감축하여 대검찰청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1명 및 검찰연구관 1명으로 이체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변화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2. 20.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공포(2019. 6. 1. 시행)

다. 주요내용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 선고 시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에서 연 100분의 12로 하향 조정

1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단수여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도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인 날인을 대신하여 입국심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과 외국인에게 출입국 심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취업하려는 직종 등을 정보통신망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6. 11. 대통령령 제2881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단수여권 소지자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불가능하던 것을 여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가사 도우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사전에 국적, 성명 및 직종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단기취업(C-4) 대상자로 추가하고, 자연과학 연구에 한정되었던 연구(E-3) 자격 활동 범위를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까지 확대함.

1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국적동포로 함으로써, 더 많은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우리나라를 자유로이 방문하고 국내 체류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7. 2. 대통령령 제2893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출생에 의한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세대와 상관없이 모든 동포로 확대함.

15. 검사정원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대검찰청 과장 직위에 상응하는 검사 직위별 정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검찰청 직제와 정원의 불일치 초래

나. 추진경과

2019. 8. 13. 대통령령 제3003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찰청별 검사정원표 직위 구분에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 란을 신설하고, 현재 대검찰청 과장으로 겸임 발령하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정원 18명과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정원 2명을 각각 감축하여 대검찰청 과장 정원으로 이체

1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공안 관련 사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분장사무의 정비 필요성 제기, 공안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필요

나. 추진경과

2019. 8. 13. 대통령령 제3003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찰이 수행하는 공안(公安) 관련 사무의 범위를 대공(對共)·테러 등으로 한정
◦ 선거·노동 및 집단행동 관련 분야를 공안과 병렬적인 전문분야 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일부 직위 및 분장 사무 중 "공안"과 관련된 명칭과 사무를 각각 "공공수사"로 변경(대검찰청 공안부 → 공공수사부 등)
◦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이 공안부장을 보좌하던 업무 중 일부 폐지 등

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2018. 12. 18.「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으로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신설되면서, 결손처분사유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결손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결손처분 시 체납자의 실종선고 사실 또는 재산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및 결손처분 취소 시 당사자에 대한 통지 절차 조항도 신설함으로써 명확한 결손처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7. 9. 입법 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결손처분 사유의 구체화
- 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서 위임된 결손처분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①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체납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

◦ 결손처분 및 처분취소 시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 행정청이 결손처분시 관계기관에 체납자의 실종선고 사실이나 재산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 체납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 신설함

18.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 강화 필요, 특별수사부의 분장사무 명확화 필요

나. 추진경과

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3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각급 검찰청에 두는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제1~4부 → 반부패수사 제1~4부
- 대구지검 및 광주지검 특별수사부 → 반부패수사부
- 그 외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

◦ 반부패수사부의 분장 사무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또는 중요 기업범죄로 명확화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등 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별도의 접견 횟수와 시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34호로 공포
2019. 10. 24. 시행

다. 주요내용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협의체 구성
- 협의체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등, 대검찰청 소속 검사 등,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중 각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협의체 위원으로 함

◦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는 경우
-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고,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는 경우를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한 경우,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함

◦ 접견 시 별도의 접견 횟수 규정 대상 확대
- 종전에는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만 별도의 접견 횟수와 시간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의 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접견 횟수(사건 당 2회)와 시간(회당 60분)을 부여하여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이 보다 충실하게 보장되도록 함

20. 국가배상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등으로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실제로 남성 간병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병비 지급 기준은 여성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제한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장해 정도에 따라 적정한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병비 지급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더불어, 이혼율 증가 등의 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미혼인지, 또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부모가 동일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자료 산정 기준에 존재하던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11. 5. 대통령령 제3018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간병비 산정 기준 적정화
-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 산정 기준을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개정하여 장해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간병비가 지급되도록 함

◦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 개선
-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도 미혼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부모에 대한 위자료 지급 기준을 본인의 1/2로 규정

2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외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관찰 준수사항 관련 규정에 이를 반영하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직업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신고기한의 개시 시점을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때에서 보호관찰의 시작 시점인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때로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11. 5. 대통령령 제3018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보호관찰 신고기한 정비
-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 대상자의 보호관찰 신고기한 개시시점을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때”에서 보호관찰 시작 시점인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때”로 정비

◦ 보호관찰 준수사항 관련 조문 정비
-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외에 ‘삭제’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규정에 반영

2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추진배경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횡령·배임죄나 해외로 도피시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 등 중한 경제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중한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체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람이 다시 그 기업체에 취업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에도 취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 문장의 일본식 표현을 일상적인 국어로 고치고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5. 7. 대통령령 제29744호로 공포
2019. 11. 8. 시행

다. 주요내용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억 원 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5억 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3천만 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확정 시 일정기간 취업제한 및 인허가 금지
◦ 승인 없이 취업 또는 인허가받은 자, 해임요구 불응 기업체의 장은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되고 취업 기관에 해임 요구 및 관계 기관에 인허가 취소 요구 조치 가능하도록 개정

2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범죄 수사와 관련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을 국민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관리를 위하여 방문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한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영주자격 부여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외국인 범죄 수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정지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하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1개월 이내를 3개월 이내로 각각 연장함.

◦ 법무부장관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계절근로 체류자격은 단기취업(C-4)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8) 자격을 장기 체류자격으로 신설함.

◦ 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자녀에게도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24. 난민법 시행령

가. 추진배경

◦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결정에 불복하거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즉시 난민신청자 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신청자 등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나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 이용 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7. 22. ~ 9. 2. 입법예고
2019. 12. 24. 국무회의 통과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78호로 공포
2019. 12. 31. 시행

다. 주요내용

◦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발급 근거 마련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불회부결정통지서 발급 권한을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 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근거 마련
-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 난민지원시설 운영 권한의 위임
-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난민지원시설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Ⅲ. 대통령령[폐지]

1. 민사소송법 제642조제7항의 이율에 관한 규정

가. 추진배경

◦ 2002년 「민사소송법」 전면개정 및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같은 내용이 「민사집행규칙」 제75조에 규정됨에 따라, 위임 근거를 상실한 대통령령을 폐지

나. 추진경과

2019. 2. 20.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2019. 5. 21. 폐지

다. 주요내용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7항의 이율에 관한 규정」 폐지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Ⅰ. 규칙[제정]

1. 인권보호수사규칙

가. 추진배경

◦ 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국가작용이지만, 동시에 그 본질상 국민에 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확립을 위해 종전에는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최근 국민들의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의식이 크게 높아졌고,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에게도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인권보호수사에 관한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규성을 강화하는 한편, 심야조사·장시간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며,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수사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수사절차상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10. 31. 법무부령 제961호로 공포
2019. 12. 1. 시행

다. 주요내용

1) 공정한 수사 및 수사의 비례성(제5조 및 제6조)

◦ 검사는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를 해서는 안 됨.

2)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제15조)

◦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됨.

3) 압수·수색 시 준수사항(제29조 및 제30조)

◦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압수·수색 대상자, 변호인 등에게 압수·수색 전 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압수한 물건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으면 돌려주어야 함.

4)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 제한(제44조 및 제45조)

◦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휴식시간, 열람시간 등을 포함한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국외 출국 등 재출석 곤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음.
◦ 검사는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하는 심야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국외 출국 등 재출석 곤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소속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음.

5)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제77조)

◦ 법무부장관은 검사 및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종사자의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Ⅱ. 규칙[개정]

1.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가. 추진배경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기동조끼에 무전기 및 소형 촬영장비 등을 쉽게 휴대할 수 있도록 주머니를 달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근무복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2. 1. 법무부령 제94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기동조끼에 무전기 및 액션캠 등을 부착하기 쉽도록 별도의 주머니 마련
◦ 업무수행 중 장비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머니 위치를 조정하고, 소지품 분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정 장치를 추가하는 등 기능 개선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끼 뒷면에 반사띠 추가

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법무부에 정보보호·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외국인 생활불편사항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수용자 경계 강화 및 야간 교대근무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62명(5급 3명, 6급 40명, 7급 62명, 8급 121명, 9급 123명, 전문경력관 나군 1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96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569호, 2019. 2.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나. 추진경과

2019. 2. 26. 법무부령 제94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2019년 소요정원 반영 등
- 기구 신설 : 2과(청주소년원 의무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
- 인력 증원 : 375명
- 평가대상 정원 조정 : 320명 추가 등

3.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가. 추진배경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등에게 대여하는 피복 중 교복 등의 제식을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원의 교육과정 중 야영훈련·영농교육이 폐지되고 예능교육·체육교육의 분류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3. 27. 법무부령 제948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등에게 대여하는 피복 중 교복 등의 제식을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

◦ 소년원의 교육과정 중 야영훈련·영농교육이 폐지되고 예능교육·체육교육의 분류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

4.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가. 추진배경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소년원직원 등의 근무복과 부속물 등 제복의 제식을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대민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소년원직원 등의 제복은 각 센터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년원직원 등의 제복의 부속물 중 와이셔츠·블라우스를 삭제하고, 여름옷과 겨울옷의 착용 시기를 날짜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제복 착용의 실용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3. 27. 법무부령 제94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소년원직원 등의 근무복과 부속물 등 제복의 제식을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함
◦ 대민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소년원직원 등의 제복은 각 센터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소년원직원 등의 제복의 부속물 중 와이셔츠·블라우스를 삭제하고, 여름옷과 겨울옷의 착용 시기를 날짜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하던 것을 폐지함

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추가 지정하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의 명칭을 다양한 법무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무교육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5. 7. 법무부령 제950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법무부 기획조정실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4급 1명, 5급 1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1명)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를 신설기구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설 부서인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기구 평가대상에 추가

6. 검사복무평정규칙

가. 추진배경

◦ 검사 복무평정의 평가 항목에 '인권옹호' 등을 적시하여 인권보호 의지를 강화하고, '균형감'을 추가 하는 등 세부 항목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선 필요

나. 추진경과

2019. 5. 28. 법무부령 제951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평정항목에 인권옹호, 합리성 및 균형감을 추가, 조직헌신을 삭제

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형식적인 절차로 남아있던 상륙허가서 회수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사회통합 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국심사증 등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6. 11. 법무부령 제952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성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입국심사증 발급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사회통합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결혼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 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문 등을 하도록 함.

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추가 지정하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의 명칭을 다양한 법무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무교육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7. 29. 법무부령 제95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규정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추가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1개 부서 명칭 변경 : 대외연수과 → 법무교육과

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검찰이 수행하는 공안(公安) 관련 사무의 범위를 대공(對共)·테러 등으로 한정하고, 선거·노동 및 집단행동 관련 분야를 공안과 병렬적인 전문분야 체제로 개편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법무부 검찰국장의 분장 사무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040호, 2019. 8.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범죄예방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보호소년 등의 이송·호송 업무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를 폐지하면서 호송과를 신설하고, 종전에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장이 분장하던 범죄예방정책 관련 교육방송 및 콘텐츠의 제작·운영 관련 업무를 앞으로는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보화센터장이 분장하도록 하면서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를 상호 이체하고,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8. 13. 법무부령 제956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검찰국 내 공안사건 관련 업무 내용 수정
◦ 본부 1개 부서 명칭 변경 : 공안기획과 → 공공형사과
◦ 소속기관 명칭변경 : 특정범죄자관리과 → 전자감독과
◦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 폐지, 호송과 신설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수형자 처우등급 등을 심의·의결하는 분류처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가석방 적격여부 심사 시 수용생활에 대한 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8. 29. 법무부령 제957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분류처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
◦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서식을 정비

1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계호를 위해 보호장구에 보호대(帶)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13호, 2019. 4. 16. 공포,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대의 사용방법을 정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별로 기록하는 보호관찰카드에 보호관찰경력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10. 17. 법무부령 제959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보호관찰 준수사항 관련 조문 정비
- 기존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에 '삭제'를 추가

◦ 보호장구 중 '보호대(帶)'의 사용방법을 추가
- 보호장구의 종류에 '보호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 2(보호장구별 사용방법)에 보호대 및 그 사용방법을 마련

◦ 타법 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 등 정비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정비

◦ 서식 정비
-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호관찰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준수사항의 추가·변경에 '삭제'를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 정비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각 교정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교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각 지방교정청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 수형자가 독학으로 검정고시 또는 학사고시 등에 응시하려는 경우 자체 평가시험과 수형생활태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던 것을 수형생활태도는 고려 사항에서 삭제하여 응시 기준을 완화하고, 벨트형포승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연승줄의 규격 등과 징벌집행부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10. 22. 법무부령 제960호로 공포
2019. 10. 24. 시행

다. 주요내용

◦ 징벌집행부 조문 및 양식 신설

◦ 벨트형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 연승줄의 규격 신설

◦ 검정고시 및 학사고시 응시 대상자 선정 기준 중 '수형생활태도'를 삭제함

◦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소장'이 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지방교정청장'으로 변경하고 교정자문위원회의 간사를 '교정시설 총무과장'에서 '지방교정청 총무과장'으로 변경

1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출입국관리법」이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전자화 대상이 되는 서류의 종류 및 위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여권이 없더라도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되면 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발급 거부처분 시 통지절차를 마련하고, 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계절근로(E-8) 자격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12. 24. 법무부령 제963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재외공관의 장 등이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증발급 거부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방문하여 요청하면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함.

◦ 사증발급 신청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전자화 대상 서류로 정함.

◦ 전자화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적합한 장비와 3년 이상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전자화업무 위탁 대상기관의 요건을 정함.

◦ 계절근로(E-8)의 체류기간을 5개월로 정하고, 체류자격 신청 시 고용계약서, 건강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계절근로자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계절근로 자격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1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법무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 정원의 상한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275호, 2019. 12. 24.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교정기관 의료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의무직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일부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12. 31. 법무부령 제964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를 신설기구 평가대상에서 제외
◦ 교정기관 의무직 4급 공무원 정원 축소 및 4·5급 공무원 정원 확대

15. 난민법 시행규칙

가. 추진배경

◦ 난민인정 심사를 신청한 사람 중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난민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서식을 신설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여 난민신청자가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의료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은 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접수하던 것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접수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추진경과

2019. 12. 31. 법무부령 제965호로 공포·시행

다. 주요내용

-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이의신청 접수증 서식 신설
- 열람·복사 대장 신설
-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이의신청 접수증 서식 신설
- 열람·복사 대장 신설
-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대장 삭제
-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접수 기관 확대
- 의료 지원 절차 및 신청서 서식 신설
- 기존 별지 서식 개정

法務年鑑

04



국회업무

제1절 국회업무

제1절 국회업무

1. 정기회 및 임시회

기획재정담당관실 주무관 김도후

2019년도에는 총 7회(367회 ~ 374회)에 걸쳐 정기회 및 임시회가 개최되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 보호,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개혁입법 추진, 청소년·여성·아동 보호, 국민안전을 위한 선진국형 범죄예방 시스템 마련,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강화, 법무부 탈검찰화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사징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법안들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에 법사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현안보고를 통해 우리 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과 현안 과제의 추진상황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표 4-1 | 회차별 국회활동 개관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367회	'19. 3. 7. ~ 4. 5. (30일간)	【본회의】 • 총 10차례 개의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19. 3. 11.) • 교섭단체 대표연설(자유한국당, '19. 3. 12.) • 교섭단체 대표연설(바른미래당, '19. 3. 13.)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19. 3. 19.) •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19. 3. 20.)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19. 3. 21.) •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19. 3. 22.) • 통과법안('19. 3. 28.)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 통과법안('19. 4. 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총 10차례 개회(전체회의 5, 제1소위 2, 제2소위 3) • 업무현황 보고('19. 3. 14.) – 주요현안 보고 · 사개특위 대응(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조정) · 론스타 등 ISDS 사건 대응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 진행 현황 ·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추진 ·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 · 난민제도 개선 및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정책 · 대체복무제 시행 준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총 1차례 개회(전체회의 1)
제369회	'19. 6. 20. ~ 7. 19. (30일간)	【본회의】 • 총 8차례 개의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19. 6. 24.)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19. 7. 3.) • 교섭단체 대표연설(자유한국당, '19. 7. 4.) • 교섭단체 대표연설(바른미래당, '19. 7. 5.) •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19. 7. 9.)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19. 7. 10.) •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19. 7. 11.) 【법제사법위원회】 • 총 6차례 개회(전체회의 4, 제1소위 1, 제2소위 1)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총 2차례 개회(전체회의 2) • 업무현황 보고('19. 6. 27.) – 주요현안 보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 인사·복무제도 개선 ·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 ·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 · 국정농단 및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 진행상황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370회	'19. 7. 29. ~ 8. 27. (30일간)	【본회의】 • 총 1차례 개의 • 통과법안('19. 8. 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제사법위원회】 • 총 3차례 개회(전체회의 3)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총 2차례 개회(전체회의 2)
제371회	'19. 9. 2. ~ 12. 10. (100일간)	【본회의】 • 총 12차례 개의 • 정기회 개회식('19. 9. 2.)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19. 9. 26.) •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19. 9. 27.)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19. 9. 30.) •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19. 10. 1.) •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19. 10. 22.) •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19. 10. 28.) • 교섭단체 대표연설(자유한국당, '19. 10. 29.) • 교섭단체 대표연설(바른미래당, '19. 10. 30.) •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19. 10. 31.) • 통과법안('19. 12. 1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19. 12. 10.) 【법제사법위원회】 • 총 18차례 개회(전체회의 12, 예결심사소위 4, 제1소위 1, 제2소위 1) • 국정감사('19. 10. 2. ~ 10. 21.) – 법무부(10. 15.), 대검찰청(10. 17.), 종합감사(10. 21.) 실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총 2차례 개회(전체회의 2)
제372회	'19. 12. 11. ~ 25. (15일간)	【본회의】 • 총 1차례 개의 【법제사법위원회】 • 총 1차례 개회(전체회의 1)

구분	회기	국회 활동 개관
제373회	'19. 12. 26. ~ 28. (3일간)	【본회의】 • 총 1차례 개의 • 통과법안('19. 12. 27.)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374회	'19. 12. 30. ~ '20. 1. 10. (12일간)	【본회의】 • 총 3차례 개의 • 통과법안('19. 12. 3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원) • 통과법안('20. 1. 9.)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총 4차례 개회(전체회의 3, 제1소위 1)

2. 당정협의 및 간담회

당정협의·간담회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논의,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 및 검찰개혁 관련 논의, 검찰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등 현안에 대하여 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처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였다.

| 표 4-2 | 당정협의 및 간담회

구 분	일시	논의 안건	참석자
당정협의	'19. 2. 11.	•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논의	• **〈당 측〉** – 민병두 위원장, 이원욱, 유동수, 고용진, 김병욱, 이학영, 전해철, 제윤경, 최운열, 전재수 의원 등 • **〈정부 측〉** – 공정거래위원장, 법무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정협의	'19. 9. 5.	•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 방안 논의	• **〈당 측〉** –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윤관석, 김민기, 홍의락, 김병욱, 기동민, 송기헌, 유동수, 김정우, 한정애, 김성환, 맹성규 의원 등 • **〈정부 측〉** – 법무부 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 **〈청 측〉** – 정책실장
당정협의	'19. 9. 18.	•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 및 검찰개혁 관련 논의	• **〈당 측〉** –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법사위원 등 • **〈정부 측〉**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당정협의	'19. 9. 18.	• 정기국회 대비 여당 워크숍	• **〈당 측〉** –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주당 국회의원 등 • **〈정부 측〉**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구 분	일시	논의 안건	참석자
당정 협의	’19. 10. 13.	• 검찰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	• **〈당 측〉** –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주민 최고위원 등 • **〈정부 측〉** –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 **〈청 측〉** – 정책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당정 협의	’19. 11. 14.	• 검찰개혁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 **〈당 측〉** –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윤관석, 김민기, 박주민, 이상민, 이종걸, 김상희, 이춘석, 박범계, 김종민, 금태섭,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안호영, 이재정, 이철희, 장춘숙, 표창원 의원 등 • **〈정부 측〉** –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 **〈청 측〉** –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法務年鑑

05



통 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제2절 검찰업무 통계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제4절 인권업무 통계
제5절 교정업무 통계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제1절 법무업무 통계

1. 법무업무

| 표 5-1 | 법령자문

(단위 : 건)

부처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365	4,072	3,740	5,096	4,458	4,811	5,089	6,039	6,541	7,322
기획재정부	109	136	122	149	153	171	169	174	314	285
교육부	-	-	-	185	222	217	287	303	234	262
미래창조과학부	-	-	-	107	149	192	78	92	-	-
교육과학기술부	216	280	289	41	-	-	-	99	-	-
과학기술부	-	-	-	-	-	-	-	-	-	-
교육인적자원부	-	-	-	-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	-	348	228
외교부	28	27	38	27	26	23	32	33	18	40
통일부	35	11	10	153	16	28	44	41	57	65
법무부	452	398	330	480	263	438	272	570	710	1,008
국방부	93	104	99	121	118	138	101	142	118	130
행정자치부	-	-	-	-	19	313	418	247	-	-
안전행정부	291	444	410	625	412	-	-	187	-	-
행정안전부	-	-	-	-	-	-	-	187	509	605
문화체육관광부	78	133	152	192	224	225	210	240	249	345
농림축산식품부	187	338	280	281	238	287	310	279	309	308
산업통상자원부	99	300	111	316	252	324	370	248	314	379
보건복지부	424	422	356	432	346	430	469	609	530	567
환경부	136	149	174	210	164	196	220	250	310	344
고용노동부	127	141	114	194	145	172	200	261	229	273
여성가족부	72	96	84	118	125	121	77	108	122	114
국토교통부	392	472	418	553	571	578	559	687	706	720
해양수산부	-	-	-	120	194	196	179	176	203	293
중소벤처기업부	-	-	-	-	-	-	-	-	156	190
국민안전처	-	-	-	-	2	150	139	103	-	-
방송통신위원회	71	66	62	38	35	47	70	67	91	82
국무조정실	22	9	18	25	21	10	25	31	28	29
공정거래위원회	56	62	46	51	33	34	74	132	88	141
금융위원회	66	123	99	192	169	94	198	186	231	274
국민권익위원회	12	12	9	14	10	9	11	25	26	23
인사혁신처	-	-	-	-	1	50	57	65	91	85

부처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법제처	10	8	14	15	10	5	8	11	12	9
국가보훈처	69	49	46	64	55	60	66	86	81	72
식품의약품안전처	–	–	–	91	103	103	106	131	119	131
기타	320	292	459	302	382	200	340	456	338	320

| 표 5-2 | 법령해석

(단위 : 건)

부처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	11	14	10	168	185	188	171	178	204
기획재정부	–	1	–	1	2	–	2	–	1	2
교육부	–	1	–	–	7	6	1	2		–
미래창조과학부	–	–	–	–	1	1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	–	2	3
외교부	–	–	–	–	–	–	2	4	1	1
통일부	–	–	–	–	1	–	–	–	–	–
법무부	–	–	–	1	–	8	17	12	10	13
국방부	–	–	–	–	–	1	2	1	3	–
행정자치부	–	–	–	–	–	6	6	2	–	–
안전행정부	–	–	–	–	5	–	–	–	–	–
행정안전부	–	–	–	–	–	–	–	–	9	6
문화체육관광부	–	–	–	2	1	–	–	–	1	3
농림축산식품부	–	–	–	–	2	–	–	1	–	–
산업통상자원부	1	–	2	2	2	–	1	1	–	1
보건복지부	–	–	–	1	1	5	2	2	2	1
환경부	–	2	–	–	3	–	–	1	–	3
고용노동부	–	1	1	–	3	–	–	1	2	3
여성가족부	–	–	–	–	4	3	1	–	–	1
국토교통부	–	1	1	–	4	5	7	4	5	9
해양수산부	–	–	–	–	–	–	–	1	4	–
국민안전처	–	–	–	–	–	1	1	4	–	–
방송통신위원회	–	–	–	–	–	–	–	–	1	–
국무조정실	–	–	–	–	–	–	–	–	–	–
공정거래위원회	–	1	–	–	–	–	–	–	1	1
금융위원회	–	–	–	–	1	1	1	1	3	1
국민권익위원회	–	–	–	–	–	–	3	–	–	1
인사혁신처	–	–	–	–	–	–	–	1	–	1
국가보훈처	–	–	–	–	–	–	4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2	–	–	–	3	–
기타	2	4	10	3	129	148	138	133	130	154

| 표 5-3 | 법령 제정·개정(정부발의안 기준)

(단위 : 건)

분류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75	68	61	59	74	55	67	66	55	48
제 정	소 계	17	8	7	4	7	3	5	2	1	2
	법 률	5	-	2	1	1	-	3	-	-	-
	대통령령	4	3	3	1	4	2	1	2	1	1
	총리·부령	8	5	2	2	2	1	1	-	-	1
개 정	소 계	56	58	51	54	67	52	62	64	52	45
	법 률	8	11	10	13	22	7	18	15	5	5
	대통령령	15	21	24	14	23	19	20	20	18	21
	총리·부령	33	26	17	27	22	26	24	29	29	19
폐 지	법 령	2	2	3	1	-	-	-	-	2	1

| 표 5-4 | 법무자료 발간

(단위 : 건)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발간횟수	9	4	10	8	22	18	17	18	11	8

2. 국제법무활동

| 표 5-5 | 통상관계 법률자문 및 조약 등 국제협약의 법률문제 검토

(단위 : 건)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횟 수	75	43	38	40	56	28	14	9	14	16

| 표 5-6 | 법률관련 인사 국제 교류

(단위 : 건)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횟 수	2	7	11	5	7	7	12	7	9	4

| 표 5-7 | 법무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단위 : 건, 명)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횟 수	28	30	26	39	48	27	29	11	18	27
인 원	35	44	34	73	82	55	42	20	38	47

3. 변호사·공증

| 표 5-8 | 변호사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등록인원	11,802	12,607	14,534	16,547	18,708	20,531	22,318	24,015	25,838	27,695
개 업	10,263	10,976	12,532	14,242	15,954	17,424	18,849	20,182	21,573	23,144
비 개 업	1,539	1,631	2,002	2,305	2,754	3,107	3,469	3,833	4,265	4,551

| 표 5-9 | 공증인 인원

(단위 : 명, 개)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임명공증인		38	42	48	59	66	73	77	75	78	81
법무법인	사무소	307	291	280	268	261	245	241	239	238	234
	구성원	1,420	1,322	1,211	1,183	1,170	1,029	1,000	981	946	918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소	52	46	36	31	29	27	25	23	20	20
	구성원	215	188	127	121	115	109	93	86	85	60
대 행 청		14	14	13	12	12	12	12	13	13	13

| 표 5-10 | 공증사무 처리 건수

(단위 : 건, 원)

구분 \ 연도	사건처리건수	가 액
2010	3,872,079	54,138,827,021,658
2011	4,802,467	45,122,981,413,573
2012	4,027,514	47,911,345,357,891
2013	4,030,468	51,669,105,779,697
2014	3,825,991	38,138,696,634,463
2015	3,758,294	40,822,996,285,880
2016	3,745,816	384,323,860,343,243
2017	3,415,840	539,439,962,774,258
2018	3,074,532	41,338,004,732,419
2019	2,777,661	40,034,838,159,900

4. 국가소송

| 표 5-11 | 전체 국가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계	9,929	10,086	10,887	11,891	13,412	14,874	10,390	9,982	10,116	10,549
	구 수	5,548	5,786	6,018	7,171	8,025	9,350	5,841	5,192	5,227	5,570
	신 수	4,381	4,300	4,869	4,720	5,387	5,524	4,549	4,790	4,889	4,979
처리	계	4,138	3,637	3,120	3,373	3,560	4,485	5,293	4,530	4,526	4,250
	승 소	1,534	1,440	1,360	1,477	1,623	1,882	1,822	1,746	1,806	1,587
	패 소	634	565	514	522	586	606	568	546	485	471
	기 타	1,970	1,632	1,246	1,374	1,351	1,997	2.903	2,238	2,235	2,192
미 제		5,791	6,449	7,767	8,518	9,852	10,389	5,097	5,452	5,590	6,299

| 표 5-12 | 국가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승 소	패 소	기 타	
2010	9,929 (4,381)	4,138	1,534	634	1,970	5,791
2011	10,086 (4,300)	3,637	1,440	565	1,632	6,449
2012	10,887 (4,869)	3,120	1,360	514	1,246	7,767
2013	11,891 (4,720)	3,373	1,477	522	1,374	8,518
2014	13,412 (5,387)	3,560	1,623	586	1,351	9,852
2015	14,874 (5,524)	4,485	1,882	606	1,997	10,389
2016	10,390 (4,549)	5,293	1,822	568	2,903	5,097
2017	9,982 (4,790)	4,530	1,746	546	2,238	5,452
2018	10,116 (4,889)	4,526	1,806	485	2,235	5,590
2019	10,549 (4,979)	4,250	1,587	471	2,192	6,299

* 접수란 중 ( )는 신수

| 표 5-13 | 유형별 국가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9,929	10,074	10,875	11,879	13,398	14,860	10,377	9,966	10,096	10,536
국가원고	계	1,335	1,413	1,469	1,663	2,936	4,213	2,328	2,212	2,181	2,061
	부동산	271	316	346	351	265	314	343	419	376	405
	손해배상	15	24	26	26	30	26	17	15	14	9
	기 타	1,049	1,073	1,097	1,286	2,641	3,873	1,968	1,778	1,791	1,647
국가피고	계	8,594	8,661	9,406	10,216	10,462	10,647	8,049	7,754	7,915	8,475
	부동산	3,644	3,179	2,986	2,942	2,951	2,942	2,649	2,638	2,617	2,800
	손해배상	2,127	2,342	2,980	3,668	3,786	3,536	2,017	1,793	1,749	2,010
	기 타	2,823	3,140	3,440	3,606	3,725	4,169	3,383	3,323	3,549	3,665

| 표 5-14 | 민사신청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계	2,692	3,207	3,753	4,231	7,113	5,731	6,220	6,983	8,134	8,974
	구 수	1,048	1,552	2,206	2,111	4,328	3,373	3,584	4,288	5,047	5,566
	신 수	1,644	1,655	1,547	2,120	2,785	2,358	2,636	2,695	3,087	3,408
처리	계	1,105	998	1,398	1,543	3,718	1,785	2,020	1,977	2,596	3,062
	종 결	870	805	1,220	1,318	1,234	1,394	1,512	1,336	1,762	2,314
	본안이송	118	87	77	95	2,325	222	255	355	348	255
	취 하	96	62	66	87	86	116	137	149	159	202
	각 하	8	10	17	14	30	15	17	29	36	77
	기 타	13	34	18	29	43	38	99	108	291	214
미 제		1,587	2,209	2,355	2,688	3,395	3,946	4,200	5,006	5,538	5,912

5. 행정소송

| 표 5-15 | 전체 행정소송 사건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계	33,424	34,847	36,854	36,444	38,182	38,882	36,799	36,969	37,130	37,772
	구 수	16,920	19,400	21,346	20,289	22,317	22,775	19,239	18,246	18,326	18,709
	신 수	16,504	15,447	15,508	16,155	15,865	16,107	17,560	18,723	18,804	19,063
처리	계	13,875	13,118	16,071	13,091	14,592	13,285	18,664	18,800	18,560	16,414
	승 소	6,692	6,635	7,867	6,371	7,132	6,290	9,392	10,250	10,064	8,991
	패 소	1,607	1,601	2,047	1,865	1,702	1,740	2,056	1,814	1,811	1,687
	취하등	5,576	4,882	6,157	4,855	5,758	5,255	7,216	6,736	6,685	5,736
미 제		19,549	21,729	20,783	23,353	23,590	25,597	18,135	18,169	18,570	21,358

| 표 5-16 | 행정소송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승 소	패 소	기 타	
2010	33,424 (16,504)	13,875	6,692	1,607	5,576	19,549
2011	34,847 (15,447)	13,118	6,635	1,601	4,882	21,729
2012	36,854 (15,508)	16,071	7,867	2,047	6,157	20,783
2013	36,444(16,155)	13,091	6,371	1,865	4,855	23,353
2014	38,182 (15,865)	14,592	7,132	1,702	5,758	23,590
2015	38,882 (16,107)	13,285	6,290	1,740	5,255	25,597
2016	36,799 (17,560)	18,664	9,392	2,056	7,216	18,135
2017	36,969 (18,723)	18,800	10,250	1,814	6,736	18,169
2018	37,130 (18,804)	18,560	10,064	1,811	6,685	18,570
2019	37,772 (19,063)	16,414	8,991	1,687	5,736	21,358

* 접수란 중 ( )는 신수

| 표 5-17 | 유형별 행정소송 사건

(단위 : 건)

유형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3,424	34,847	36,854	36,444	38,182	38,882	36,799	36,969	37,130	37,772
조세관계	4,206	4,698	4,810	5,644	6,849	7,379	6,089	5,246	4,849	5,412
공무원신분	1,742	1,611	1,623	1,681	1,582	1,645	1,515	1,611	1,635	1,799
국토도시계획	3,916	3,625	3,473	3,129	3,141	2,846	2,642	2,477	2,632	2,619
영업허가취소·정지	3,271	2,828	3,190	3,534	3,934	3,389	2,283	2,414	2,424	2,163
자격·면허·등록·인가	2,919	3,116	2,754	2,678	2,810	2,231	1,889	2,062	2,802	2,779
기타	17,370	18,969	21,004	19,778	19,866	21,392	22,381	23,159	22,788	23,000

6. 지구심의회 국가배상 신청사건

| 표 5-18 | 전체 국가배상 신청사건(협정배상 신청사건 포함)

(단위 : 건)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계	1,590	2,983	3,011	4,517	3,976	4,149	4,738	4,558	6,064	5,860
	구수	229	443	938	885	1,130	1,057	1,059	1,140	1,629	2,001
	신수	1,361	2,540	2,073	3,632	2,846	3,092	3,679	3,418	4,435	3,859
처리	계	1,162	2,058	2,127	3,299	2,915	3,047	3,598	2,921	4,054	3,452
	인용	637	736	1,063	1,767	1,177	1,057	1,154	801	1,129	895
	기각	426	1,222	944	1,424	1,627	1,896	2,249	2,008	2,777	2,357
	기타	99	100	120	108	111	94	195	112	148	200
미제		428	925	884	1,218	1,061	1,102	1,140	1,637	2.010	2,408

| 표 5-19 | 국가배상 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협정배상 신청사건 포함)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인 용	기 각	기 타	
2010	1,590 (1,361)	1,162	637	426	99	428
2011	2,983 (2,540)	2,058	736	1,222	100	925
2012	3,011 (2,073)	2,127	1,063	944	120	884
2013	4,517 (3,632)	3,299	1,767	1,424	108	1,218
2014	3,976 (2,846)	2,915	1,177	1,627	111	1,061
2015	4,149 (3,092)	3,047	1,057	1,896	94	1,102
2016	4,738 (3,679)	3,598	1,154	2,249	195	1,140
2017	4,558 (3,418)	2,921	801	2,008	112	1,637
2018	6,064 (4,435)	4,054	1,129	2,777	148	2.010
2019	5,860 (3,859)	3,452	895	2,357	200	2,408

* 접수란 중 ( )는 신수

| 표 5-20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 신청사건

(단위 : 건)

구 분 \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계	139	177	190	167	168	174	196	175	185	204
	구 수	40	57	61	53	56	58	50	70	58	97
	신 수	99	120	129	114	112	116	146	105	127	107
처리	계	78	114	137	111	109	124	126	109	88	141
	인 용	67	93	116	91	84	110	112	101	78	119
	기 각	6	15	16	19	20	12	14	7	9	14
	기 타	5	6	5	1	5	2	0	1	1	8
미 제		61	63	53	56	59	50	70	66	97	63

| 표 5-21 |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배상 신청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처 리				미 제
		계	인 용	기 각	기 타	
2010	139 (99)	78	67	6	5	61
2011	177 (120)	114	93	15	6	63
2012	190 (129)	137	116	16	5	53
2013	167 (114)	111	91	19	1	56
2014	168 (112)	109	84	20	5	59
2015	174 (116)	124	110	12	2	50
2016	196 (146)	126	112	14	0	70
2017	175 (105)	109	101	7	1	66
2018	185 (127)	88	78	9	1	97
2019	204 (107)	141	119	14	8	63

* 접수란 중 ( )는 신수

7.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 표 5-22 |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백만 원)

구분 / 연도	지급총액	배 상 결 정	판 결	소송비용확정액
2010	316 / 18,989	139 / 284	177 / 18,705	- / -
2011	489 / 80,765	140 / 434	185 / 79,382	164 / 949
2012	659 / 133,869	120 / 398	198 / 127,483	341 / 5,988
2013	409 / 57,389	119 / 273	290 / 57,116	- / -
2014	745 / 203,013	85 / 180	385 / 198,872	275 / 3,961
2015	1,005 / 300,722	122 / 438	461 / 293,615	422 / 6,669
2016	960 / 236,223	91 / 275	371 / 228,695	498 / 7,253
2017	861 / 354,386	121 / 599	369 / 349,084	371 / 4,703
2018	821 / 770,075	107 / 793	319 / 762,218	395 / 7,064
2019	780 / 154,637	99 / 169	267 / 146,600	414 / 7,868

8. 헌법재판 현황

| 표 5-23 | 헌법재판 현황

연도	구분	접수 (신·구수)	처리											미제
			합계	위헌					합헌				각하 등	
				소계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소계	합헌	한정합헌	기각		
2010	계	2,330	1,670	101	69	–	7	25	267	135	–	132	1,302	660
	위헌법률	148	113	67	62	–	5	–	14	14	–	–	32	35
	권한쟁의	21	12	4	–	–	–	4	2	–	–	2	6	9
	헌법소원	2,161	1,545	30	7	–	2	21	251	121	–	130	1,264	616
2011	계	2,226	1,428	68	29	7	5	27	283	168	–	115	1,077	798
	위헌법률	77	46	24	22	–	2	–	15	15	–	–	7	31
	권한쟁의	12	7	1	–	–	–	1	3	–	–	3	3	5
	헌법소원	2,137	1,375	43	7	7	3	26	265	153	–	112	1,067	762
2012	계	2,509	1,661	74	15	7	5	47	337	140	–	197	1,250	848
	위헌법률	53	21	9	9	–	–	–	7	7	–	–	5	32
	권한쟁의	9	3	–	–	–	–	–	2	–	–	2	1	6
	헌법소원	2,447	1,637	65	6	7	5	47	328	133	–	195	1,244	810
2013	계	2,328	1,585	71	25	–	3	43	372	147	–	225	1,142	743
	위헌법률	60	22	8	7	–	1	–	14	14	–	–	–	38
	정당해산	1	–	–	–	–	–	–	–	–	–	–	–	1
	권한쟁의	9	5	–	–	–	–	–	1	–	–	1	4	4
	헌법소원	2,258	1,558	63	18	–	2	43	357	133	–	224	1,138	700
2014	계	2,712	1,888	60	11	3	15	31	255	104	–	151	1,573	824
	위헌법률	64	14	7	3	3	1	–	6	6	–	–	1	50
	정당해산	1	1	1	–	–	–	1	–	–	–	–	–	–
	권한쟁의	5	2	–	–	–	–	–	–	–	–	–	2	3
	헌법소원	2,642	1,871	52	8	–	14	30	249	98	–	151	1,570	771
2015	계	2,683	1,937	110	47	–	15	48	379	176	–	203	1,448	746
	위헌법률	87	44	22	21	–	1	–	20	20	–	–	2	43
	정당해산	1	–	–	–	–	–	–	–	–	–	–	–	1
	권한쟁의	11	2	1	–	–	–	1	–	–	–	–	1	9
	헌법소원	2,584	1,891	87	26	–	14	47	359	156	–	203	1,445	693

연도	구분	접수 (신·구수)	처리											미제
			합계	위헌					합헌				각하 등	
				소계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소계	합헌	한정합헌	기각		
2016	계	2,697	1,976	101	33	1	9	58	393	179	–	214	1,482	721
	위헌법률	63	27	14	12	–	2	–	4	4	–	–	9	36
	탄핵	1	–	–	–	–	–	–	–	–	–	–	–	1
	정당해산	1	1	–	–	–	–	–	–	–	–	–	1	–
	권한쟁의	18	5	–	–	–	–	–	–	–	–	–	5	13
	헌법소원	2,614	1,943	87	21	1	7	58	389	175	–	214	1,467	671
2017	계	3,347	2,425	43	4	–	1	38	293	116	–	177	2,089	922
	위헌법률	71	11	1	1	–	–	–	10	10	–	–	–	60
	탄핵	1	1	1	–	–	–	1	–	–	–	–	–	–
	권한쟁의	15	2	–	–	–	–	–	–	–	–	–	2	13
	헌법소원	3,260	2,411	41	3	–	1	37	283	106	–	177	2,087	849
2018	계	3,349	2,447	168	57	–	59	52	379	108	–	271	1,900	902
	위헌법률	77	39	26	8	–	18	–	10	10	–	–	3	38
	권한쟁의	15	5	–	–	–	–	–	–	–	–	–	5	10
	헌법소원	3,257	2,403	142	49	–	41	52	369	98	–	271	1,892	854
2019	계	3,632	2,519	49	8	–	7	34	348	142	–	206	2,122	1,113
	위헌법률	69	18	6	5	–	1	–	11	11	–	–	1	51
	권한쟁의	16	5	2	–	–	–	2	2	–	–	2	1	11
	헌법소원	3,547	2,496	41	3	–	6	32	335	131	–	204	2,120	1,051

9. 제8회 변호사시험 관련 통계

가. 출원 현황

| 표 5-24 | 연도별 응시원서 접수 현황

(단위 : 명)

연 도	시험구분	총 계	남 자	여 자
2014	변호사시험	2,432	1,387	1,045
2015	변호사시험	2,704	1,567	1,137
2016	변호사시험	3,115	1,816	1,299
2017	변호사시험	3,306	1,839	1,467
2018	변호사시험	3,490	1,985	1,505
2019	변호사시험	3,617	2,038	1,579

| 표 5-25 | 연령별 출원 현황

(단위 : 명)

연령 / 시험구분	25세 미만	25세 이상 ~ 30세 미만	30세 이상 ~ 35세 미만	35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45세 미만	45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변호사시험 (비율)	2 (0.06%)	1,013 (28.01%)	1,658 (45.84%)	672 (18.58%)	197 (5.45%)	54 (1.49%)	21 (0.58%)

| 표 5-26 | 법학전공별 출원 현황

(단위 : 명)

법학전공 / 시험구분	총 계	전 공	비 전 공
변 호 사 시 험 (비 율)	3,617	1,662 (45.95%)	1,955 (54.05%)

나. 합격자 현황

| 표 5-27 | 연도별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시험구분	총 계			남 자			여 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4	변호사시험	2,292	1,550	67.62	1,298	869	66.94	994	681	68.51
2015	변호사시험	2,561	1,565	61.10	1,471	893	60.70	1,090	672	61.65
2016	변호사시험	2,864	1,581	55.20	1,668	939	56.29	1,196	642	53.68
2017	변호사시험	3,110	1,593(기준)	51.22	1,720	870	50.58	1,390	723	52.01
			1,600(기준)	51.45	1,720	876	50.93	1,390	724	52.09
2018	변호사시험	3,240	1,599	49.35	1,843	906	49.16	1,397	693	49.61
2019	변호사시험	3,330	1,691	50.78	1,873	935	49.92	1,457	756	50.89

| 표 5-28 | 법학전공별 시험 합격 현황

(단위 : 명)

법학전공 / 시험구분	총 계	전 공	비 전 공
변 호 사 시 험 (비율)	1,691	698 (41.28%)	993 (58.72%)

제2절 검찰업무 통계

1. 검사 수사 사건

가. 전체 사건

| 표 5-29 |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계		2,464,720	2,333,951	2,401,107	2,474,033	2,463,524	2,580,756	2,672,784	2,506,404	2,401,898	2,503,478
	구수		71,007	65,803	74,547	84,196	83,944	88,432	83,473	90,535	99,297	111,949
	신수		2,393,713	2,268,148	2,326,560	2,389,837	2,379,580	2,492,324	2,589,311	2,415,869	2,302,601	2,391,529
처리	계		2,398,984	2,259,500	2,316,969	2,389,660	2,374,370	2,495,255	2,581,748	2,407,061	2,290,052	2,361,611
	기소	소계	1,014,849	917,335	902,552	910,158	870,320	852,314	894,616	809,882	719,980	699,111
		구공판	160,407	182,436	196,484	182,322	191,080	187,402	209,734	202,649	196,821	205,418
		구약식	854,442	734,899	706,068	727,836	679,240	664,912	684,882	607,233	523,159	493,693
	불기소	소계	1,253,203	1,203,587	1,257,938	1,297,033	1,344,779	1,460,294	1,458,816	1,367,742	1,320,937	1,381,922
		무혐의	288,355	280,482	304,120	315,513	334,419	361,070	371,611	333,716	314,565	324,017
		기소유예	374,420	359,305	357,854	338,628	338,350	378,723	376,137	338,971	274,936	242,471
		기소중지	129,813	123,232	147,858	185,052	208,340	218,047	213,833	209,989	237,460	295,726
		참고인중지	18,578	17,740	17,710	17,582	15,694	12,542	10,008	8,411	7,150	6,836
		각하	71,665	67,423	83,974	87,987	95,974	112,931	104,710	116,518	138,712	162,762
		기타	370,372	355,405	346,422	352,271	352,002	376,981	382,517	360,137	348,114	350,110
	이송	소년보호	32,274	33,233	37,253	29,992	25,226	25,027	25,192	24,948	23,478	24,396
		가정보호	3,222	3,039	3,753	6,414	9,449	20,036	22,264	18,829	19,539	23,424
		타관	95,189	102,087	115,214	145,830	124,378	137,197	179,522	182,140	202,896	228,636
		성매매보호	247	219	259	233	218	387	1,338	956	465	249
		아동보호	-	-	-	-	-	-	-	2,564	2,757	3,873
미제			65,736	74,451	84,138	84,373	89,154	85,501	91,036	99,343	111,846	141,867

나. 청별 사건

| 표 5-30 |

(단위 : 명)

검찰청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393,713	2,268,148	2,326,560	2,389,837	2,379,580	2,492,321	2,589,311	2,415,869	2,302,596	2,391,529
서울중앙	199,361	190,118	184,574	183,105	175,052	175,798	181,844	171,076	165,305	172,967
서울동부	82,924	75,844	77,063	78,169	76,497	76,287	73,148	71,256	73,250	76,612
서울남부	102,752	103,816	103,313	100,572	99,170	103,045	100,839	97,922	96,437	100,253
서울북부	89,070	87,418	80,196	86,491	90,907	91,109	94,269	88,617	84,968	85,674
서울서부	67,893	65,026	64,295	69,321	68,703	67,255	70,706	65,081	64,015	64,409
의정부	83,470	77,549	82,393	87,021	87,175	93,587	98,927	92,808	91,082	90,519
고양	51,317	49,437	52,782	56,961	59,494	62,921	67,051	63,366	58,324	61,366
인천	137,107	123,444	133,871	139,475	141,832	143,257	155,534	144,821	139,518	145,386
부천	50,931	49,460	52,915	53,972	55,792	60,109	64,154	58,583	58,422	58,402
수원	107,479	106,624	114,135	119,807	123,235	136,617	152,098	142,413	131,605	139,803
성남	56,297	53,956	56,576	60,269	60,984	64,293	74,402	65,256	62,303	63,293
여주	19,553	17,497	17,600	19,137	19,216	20,627	22,661	22,466	21,753	22,826
평택	29,541	30,922	30,888	31,973	34,926	38,080	43,750	41,843	39,415	42,389
안산	66,551	68,829	67,886	70,573	69,766	82,751	94,682	81,275	73,865	75,641
안양	37,494	38,528	40,836	41,395	40,557	43,780	48,460	42,634	40,669	42,096
춘천	19,643	19,264	19,895	22,126	20,227	20,663	21,007	19,579	17,631	19,230
강릉	19,620	17,384	17,794	17,736	18,166	17,941	18,893	18,226	15,779	16,365
원주	18,781	18,604	20,927	19,976	18,948	19,907	21,182	20,387	17,241	18,276
속초	7,312	6,778	7,308	7,518	7,157	7,472	7,362	7,423	6,798	7,132
영월	8,017	8,289	9,010	8,299	7,790	8,403	8,745	7,315	6,916	7,488
대전	73,220	62,516	64,623	67,572	68,139	71,061	77,084	77,375	75,308	78,099
홍성	15,894	13,074	12,971	13,773	13,732	15,991	16,407	14,722	14,584	15,264
공주	6,001	5,222	5,456	5,772	5,878	5,788	5,806	5,473	5,994	5,926
논산	8,383	7,836	7,971	8,728	8,193	8,707	8,193	8,146	7,770	7,702
서산	17,264	14,443	16,433	17,688	17,597	17,529	18,782	17,920	18,197	17,915
천안	33,532	34,386	36,999	38,163	43,292	46,263	48,295	43,913	44,222	44,056
청주	43,014	36,870	39,015	40,919	41,656	44,964	51,021	46,298	45,767	46,182

검찰청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충주	15,256	13,100	14,128	13,489	13,769	15,577	17,104	14,260	13,905	14,119
제천	7,796	7,466	6,886	7,691	7,158	7,086	6,787	6,390	5,986	5,903
영동	3,595	3,220	3,414	3,316	3,302	3,623	3,259	3,020	2,673	3,323
대구	100,286	100,006	101,075	94,367	95,746	98,787	98,506	89,621	85,753	89,907
안동	13,298	12,044	13,404	12,745	12,985	13,244	12,416	11,806	10,944	11,702
경주	12,700	12,201	13,256	14,377	12,774	13,362	12,974	12,393	10,855	11,707
포항	29,027	22,593	23,231	25,424	22,382	23,637	22,937	22,055	21,277	21,857
김천	26,007	24,177	25,732	27,104	25,438	26,971	27,520	25,274	22,493	23,189
상주	7,826	7,686	7,634	7,724	7,276	7,496	7,277	7,139	7,576	7,807
의성	4,756	3,897	3,796	4,056	3,687	3,846	4,415	3,944	4,058	4,492
영덕	4,071	3,307	3,726	3,913	3,959	4,239	4,244	4,376	4,313	4,062
대구서부	51,043	47,390	47,703	47,116	48,041	50,597	47,113	43,776	40,931	43,275
부산	133,659	122,481	133,132	135,847	138,579	138,971	134,094	90,312	78,056	84,222
부산동부	41,329	40,509	43,464	44,037	42,094	46,398	44,792	42,596	40,629	42,566
부산서부	-	-	-	-	-	-	-	37,240	42,841	45,057
울산	63,233	58,498	60,683	67,016	64,205	69,837	69,618	63,190	59,769	62,922
창원	80,675	71,063	48,574	54,548	49,294	52,880	54,616	51,915	48,384	52,698
진주	26,566	24,216	22,829	22,730	22,036	23,244	23,191	21,133	19,591	21,876
통영	23,874	21,727	22,008	22,604	22,667	24,614	26,793	24,519	20,754	20,871
밀양	6,608	6,583	6,782	6,341	6,753	7,009	6,918	6,836	6,478	8,029
거창	5,322	4,915	5,091	5,046	4,975	5,422	5,610	4,901	4,432	4,811
마산	-	9,394	19,111	19,963	20,829	22,187	21,268	18,875	17,839	19,253
광주	91,213	90,173	94,790	97,246	94,977	93,188	89,002	83,088	78,863	81,976
목포	26,106	23,022	23,895	25,656	24,568	25,137	25,152	22,224	21,125	21,387
장흥	3,516	3,529	3,187	3,233	3,120	3,264	3,502	3,264	3,179	3,245
순천	42,613	39,803	40,558	39,768	38,272	42,618	42,724	37,967	35,909	38,359
해남	7,014	6,884	6,879	7,263	6,619	7,106	7,081	6,992	6,490	6,483
전주	38,626	35,704	40,733	37,598	36,633	38,139	39,814	36,768	36,669	37,815
군산	30,284	28,424	30,632	27,495	26,272	26,145	26,631	26,545	24,709	24,975
정읍	9,223	8,868	8,632	8,624	8,389	8,902	8,865	9,267	8,242	8,646
남원	5,221	4,832	5,077	4,643	4,566	5,053	4,737	4,893	4,027	4,261
제주	30,549	27,302	28,793	32,346	34,134	39,537	45,049	43,096	36,708	35,463

다. 고소·고발 사건

| 표 5-31 |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계		711,513	664,971	724,116	758,785	743,223	768,579	744,960	729,229	782,251	850,551
	구수		43,031	41,621	47,077	58,920	58,821	62,890	59,659	60,869	68,140	78,511
	신수		668,482	623,350	677,039	699,865	684,402	705,689	685,301	668,360	714,111	772,040
처리	계		670,158	618,034	665,687	699,795	680,782	708,905	683,655	661,220	704,080	750,668
	기소	소계	169,257	140,388	149,723	158,071	152,955	147,111	144,331	135,601	135,340	140,519
		구공판	39,089	36,428	38,088	43,723	46,110	43,211	45,478	43,122	44,932	48,323
		구약식	130,168	103,960	111,635	114,348	106,845	103,890	98,853	92,479	90,408	92,196
	불기소	소계	445,577	418,441	449,344	461,758	465,207	497,561	464,421	452,450	488,050	524,399
		무혐의	170,879	161,287	167,592	167,470	169,636	175,930	174,599	166,589	179,861	187,842
		기소유예	50,770	40,195	44,070	41,160	40,706	46,201	36,880	33,939	31,958	30,678
		기소중지	62,639	64,215	73,812	84,669	84,952	87,672	84,139	80,201	82,678	88,105
		기타	161,289	152,744	163,870	168,459	169,913	187,758	168,803	171,721	193,553	217,774
	이송	소년보호	1,991	2,232	2,199	1,573	1,441	1,241	1,614	2,040	2,354	2,705
		가정보호	574	503	549	626	867	973	909	895	995	839
		타관	52,758	56,470	63,872	77,767	60,309	62,018	72,378	69,855	76,961	81,704
		성매매보호	1	-	-	-	3	1	2	3	1	-
		아동보호	-	-	-	-	-	-	-	376	379	502
미제			41,355	46,937	58,429	58,990	62,441	59,674	61,305	68,009	78,171	99,883

라. 주요범죄유형별 사범

| 표 5-32 | 병역사범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계	24,989	23,426	26,034	33,626	25,824	23,301	19,397	11,352	8,392	7,605
	구수	210	58	81	155	160	99	76	80	78	114
	신수	24,779	23,368	25,953	33,471	25,664	23,202	19,321	11,272	8,314	7,491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처리	계	24,882	23,345	25,888	33,461	25,729	23,229	19,318	11,272	8,274	7,516
	기소 소계	14,441	13,781	15,764	20,003	16,604	16,359	13,852	7,680	5,201	4,469
	기소 구공판	1,633	1,675	1,627	1,834	1,899	1,786	1,623	1,293	963	801
	기소 구약식	12,808	12,106	14,137	18,169	14,705	14,573	12,229	6,387	4,238	3,668
	불기소 소계	9,588	8,789	9,129	11,973	8,682	6,443	5,091	3,348	2,785	2,783
	불기소 무혐의	692	383	367	405	393	432	407	242	277	251
	불기소 기소유예	1,204	1,096	1,309	1,493	1,187	1,207	1,026	969	1,190	1,343
	불기소 기소중지	6,277	6,596	6,968	6,823	5,870	3,903	2,591	1,240	828	752
	불기소 기타	1,415	714	485	3,252	1,232	901	1,067	897	490	437
	이송 소년보호	-	-	-	-	-	-	-	-	-	-
	이송 타관	853	775	995	1,485	443	427	375	244	288	264
	이송 성매매송치	-	-	-	-	-	-	-	-	-	-
미제		107	81	146	165	95	72	79	80	118	89

| 표 5-33 | 경제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계	117,265	116,642	129,450	124,139	125,015	134,123	118,507	115,754	103,541	107,950
	구수	8,068	6,117	9,117	11,246	10,474	10,138	9,562	10,451	11,593	12,145
	신수	109,197	110,525	120,333	112,893	114,541	123,985	108,945	105,303	91,948	95,805
처리	계	110,300	108,529	119,048	114,372	114,950	125,059	108,785	104,756	92,204	93,090
	기소 소계	31,558	28,269	27,697	26,896	26,097	26,878	27,418	27,639	23,072	22,718
	기소 구공판	9,581	9,090	8,277	8,479	9,146	9,208	9,114	8,897	8,667	8,492
	기소 구약식	21,977	19,179	19,420	18,417	16,951	17,670	18,304	18,742	14,405	14,226
	불기소 소계	68,121	68,975	77,534	72,154	76,958	86,499	66,829	60,151	53,329	54,188
	불기소 무혐의	17,879	15,370	16,788	17,072	16,885	17,335	17,295	17,419	17,045	18,389
	불기소 기소유예	13,292	13,808	16,240	15,578	17,135	19,042	12,547	11,420	9,204	8,134
	불기소 기소중지	6,433	6,531	7,787	7,834	8,701	8,201	6,835	6,570	7,270	8,300
	불기소 기타	30,517	33,266	36,719	31,670	34,237	41,921	30,152	24,742	19,810	19,365
	이송 소년보호	558	808	759	833	680	700	664	534	454	488
	이송 가정보호	-	-		-	-	-	-	1	-	-
	이송 타관	10,063	10,477	13,058	14,489	11,215	10,982	13,874	16,431	15,349	15,696
	이송 성매매	-	-		-	-	-	-	-	-	-
미제		6,965	8,113	10,402	9,767	10,065	9,064	9,722	10,998	11,337	14,860

| 표 5-34 | 폭력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계			412,888	408,396	427,029	407,284	404,955	431,618	450,413	437,983	419,272	419,596
	구수			8,622	8,408	8,811	8,963	6,775	6,863	6,754	7,481	8,272	9,469
	신수			404,266	399,988	418,218	398,321	398,180	424,755	443,659	430,502	411,000	410,127
처리	계			404,573	400,235	418,265	399,869	397,142	424,815	443,141	429,923	410,157	407,715
	기소	소계		126,628	123,839	125,433	114,961	105,712	98,166	98,581	93,055	91,871	93,464
		구공판		20,677	19,726	22,496	25,799	30,006	28,631	32,339	30,206	28,878	28,315
		구약식		105,951	104,113	102,937	89,162	75,706	69,535	66,242	62,849	62,993	65,149
	불기소	소계		260,498	257,627	269,504	263,823	269,267	293,812	308,410	302,149	284,118	276,000
		무혐의		33,835	32,836	35,343	34,033	33,672	33,511	32,274	31,211	32,250	33,867
		기소유예		91,686	83,729	83,948	70,644	61,757	58,882	51,859	47,175	40,459	34,857
		기소중지		5,285	5,528	10,401	20,157	33,711	45,534	53,443	57,892	55,328	56,412
		기타		129,692	135,534	139,812	138,989	140,127	155,885	170,834	165,871	156,081	150,864
	이송	소년보호		9,569	10,150	12,473	7,593	6,476	6,072	6,329	7,291	6,914	6,807
		가정보호		3,067	2,897	3,605	6,170	9,069	19,127	20,989	17,701	18,247	21,712
		타관		4,811	5,722	7,250	7,322	6,618	7,638	8,832	9,471	8,756	9,385
		성매매		-	-	-	-	-	-	-	-	-	-
미제				8,315	8,161	8,764	7,415	7,813	6,802	7,272	8,060	9,115	11,881

| 표 5-35 | 흉악사범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계			16,071	15,079	19,798	18,855	18,125	17,655	16,041	17,713	17,271	17,849
	구수			828	653	1,010	993	926	1,196	838	1,299	1,213	1,277
	신수			15,248	14,426	18,788	17,862	17,199	16,459	15,203	16,414	16,058	16,572
처리	계			15,336	14,433	18,789	17,391	16,826	16,763	14,726	16,449	15,965	15,224
	기소	소계		5,337	4,745	7,178	6,681	6,450	5,912	5,260	4,671	4,787	4,665
		구공판		5,319	4,739	6,926	6,403	5,796	5,158	4,810	4,382	4,514	4,504
		구약식		18	6	252	278	654	754	450	289	273	161
	불기소	소계		8,114	8,041	9,199	8,714	8,466	9,099	7,694	10,335	9,630	8,892
		무혐의		3,044	2,359	3,347	3,482	3,775	3,869	3,866	3,964	4,094	4,362
		기소유예		763	720	1,006	936	1,096	1,196	978	785	682	667
		기소중지		509	532	819	962	1,058	1,042	1,234	1,246	1,116	1,093
		기타		3,925	4,430	4,027	3,334	2,537	2,992	1,616	4,340	3,738	2,770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송	소년보호	683	574	1,145	673	593	379	384	347	284	312
		가정보호	8	5	22	24	25	49	29	26	33	19
		타 관	1,067	1,068	1,245	1,299	1,292	1,324	1,359	1,066	1,224	1,331
		성 매 매	-	-	-	-	-	-	-	-	-	-
미 제			735	646	1,009	1,464	1,299	892	1,315	1,264	1,306	2,625

| 표 5-36 | 교통사범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계		745,161	629,998	650,966	654,364	644,397	663,726	688,128	581,769	471,945	442,188
	구 수		2,606	1,281	2,689	1,960	1,870	2,528	2,456	2,941	3,317	3,234
	신 수		742,555	628,717	648,277	652,404	642,527	661,198	685,672	578,828	468,628	438,954
처리	계		742,704	627,311	648,985	652,063	641,732	661,340	685,327	578,550	468,775	438,643
	기소	소 계	477,521	407,817	394,315	388,961	361,137	351,980	358,119	310,143	249,514	213,543
		구 공 판	42,565	69,436	82,244	51,890	41,637	36,105	42,152	42,485	38,084	43,579
		구 약 식	434,956	338,381	312,071	337,071	319,500	315,875	315,967	267,658	211,430	169,964
	불기소	소 계	254,676	208,819	243,731	253,597	270,987	299,463	314,563	255,695	208,095	213,993
		무 혐 의	31,683	19,386	44,250	53,248	59,968	67,463	76,786	50,160	24,020	22,971
		기소유예	64,894	42,239	54,666	55,688	58,600	70,892	75,315	51,319	25,329	19,752
		기소중지	11,126	8,511	9,992	11,857	14,304	14,575	15,120	14,454	16,565	19,964
		기 타	146,973	138,683	134,823	132,804	138,115	146,533	147,342	139,762	142,181	151,306
	이송	소년보호	7,622	7,130	7,258	5,813	5,042	4,731	4,901	5,073	4,231	4,535
		가정보호	-	1	3	-	-	1	1	1	-	-
		타 관	2,885	3,544	3,678	3,692	4,566	5,165	7,743	7,638	6,935	6,572
		성 매 매	-	-	-	-	-	-	-	-	-	-
미 제			2,457	2,687	1,981	2,301	2,665	2,386	2,801	3,219	3,170	3,545

마. 주요신분별 사건

| 표 5-37 | 소년사범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계		106,096	105,225	120,191	102,454	91,100	91,723	88,226	85,178	76,642	76,871
	구수		1,063	1,117	1,069	1,563	1,018	921	823	1,062	1,276	1,690
	신수		105,033	104,108	119,122	100,891	90,082	90,802	87,403	84,116	75,366	75,184
처리	계		104,998	104,201	118,714	101,421	90,158	90,890	87,277	84,026	75,150	75,197
	기소	소계	6,855	7,262	8,475	8,086	6,764	6,618	6,238	5,648	5,945	6,155
		구공판	3,572	4,150	5,315	5,197	4,284	4,437	4,010	3,531	3,944	4,255
		구약식	3,283	3,112	3,160	2,889	2,480	2,181	2,228	2,117	2,001	1,900
	불기소	소계	61,948	59,317	66,766	55,541	50,897	51,086	47,718	46,166	37,873	36,499
		무혐의	5,060	4,865	6,174	5,702	5,260	6,201	5,964	5,532	5,280	5,522
		기소유예	45,313	41,720	44,349	35,132	31,036	30,371	26,558	25,416	20,237	19,157
		기소중지	1,562	1,816	2,537	5,349	6,490	5,322	6,707	6,566	5,031	4,889
		기타	10,013	10,916	13,706	9,358	8,111	9,192	8,489	8,652	7,325	6,931
	이송	소년보호	32,227	33,186	37,193	29,937	25,191	24,999	25,159	24,935	23,478	24,393
		가정보호	10	14	19	36	49	156	180	183	169	212
		아동보호	0	0	0	0	0	0	0	0	9	6
		타관	3,948	4,412	6,257	7,820	7,253	8,023	7,972	7,067	7,666	7,926
		성매매	10	10	4	1	4	8	10	27	10	6
미제			1,098	1,024	1,477	1,033	942	833	949	1,152	1,492	1,677

※ 소년범 : 20세 미만 범죄(2008. 6. 22.시행 개정소년법 나이〈19세 미만〉 미반영)

| 표 5-38 | 학생사범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계	39,811	1,142	2,194	5,536	6,047	4,947	2,972	2,264	1,061	1,360
	구수	652	35	26	137	74	76	35	17	27	39
	신수	39,159	1,107	2,168	5,399	5,973	4,871	2,937	2,247	1,034	1,321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처리	계		39,776	1,118	2,077	5,460	5,970	4,912	2,957	2,242	1,024	1,329
	기소	소계	5,012	69	152	215	363	274	244	148	40	27
		구공판	825	13	69	147	177	95	85	86	16	9
		구약식	4,187	56	83	68	186	179	159	62	24	18
	불기소	소계	26,382	736	1,307	3,435	3,645	3,046	1,809	1,417	534	676
		무혐의	2,315	45	142	344	415	463	247	163	55	95
		기소유예	19,487	580	841	2,431	2,353	1,829	1,007	863	288	343
		기소중지	160	8	71	125	179	245	211	210	90	103
		기타	4,420	103	253	535	698	509	344	181	101	135
	이송	소년보호	7,463	279	529	1,473	1,520	1,089	670	495	336	448
		가정보호	4	-	-	2	2	4	4	2	3	5
		타관	914	34	89	335	439	496	229	180	111	173
		성매매	1	-	-	-	1	3	1	0	0	0
미제			35	24	117	76	77	35	15	22	37	31

| 표 5-39 |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계		10,852	6,669	6,636	9,182	7,778	7,942	9,480	13,466	18,458	19,483
	구수		766	870	720	822	884	1,085	960	1,233	1,634	1,677
	신수		10,086	5,799	5,916	8,360	6,894	6,857	8,520	12,233	16,824	17,806
처리	계		10,040	6,140	6,148	8,288	7,044	7,314	8,553	12,041	17,083	17,697
	기소	소계	792	528	423	332	415	293	303	345	190	180
		구공판	595	392	375	280	354	256	274	301	147	148
		구약식	197	136	48	52	61	37	29	44	43	32
	불기소	소계	8,818	5,310	5,376	7,524	6,278	6,755	7,831	11,157	16,227	17,029
		무혐의	2,547	2,128	2,349	2,561	2,560	2,443	2,481	2,894	2,920	2,988
		기소유예	986	394	165	133	121	99	104	171	95	80
		기소중지	36	12	24	58	91	71	45	79	74	65
		기타	5,249	2,776	2,838	4,772	3,506	4,142	5,201	8,013	13,138	13,896
	이송	소년보호	-	-	-	-	-	-	-	-	-	-
		가정보호	-	-	-	-	-	-	-	-	-	-
		타관	430	302	349	432	351	266	419	539	666	488
		성매매	-	-	-	-	-	-	-	-	-	-
미제			812	529	488	894	734	628	927	1,425	1,375	1,786

| 표 5-40 | 외국인 사건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계		34,635	37,143	33,121	35,281	38,674	48,277	54,200	46,928	45,068	50,867
	구 수		1,049	690	757	821	775	1,283	1,049	1,257	1,145	1,486
	신 수		33,586	36,453	32,364	34,460	37,899	46,994	53,151	45,671	43,923	49,381
처리	계		33,976	36,436	32,365	34,561	37,615	47,280	53,001	45,867	43,671	48,866
	기소	소 계	11,846	13,999	12,584	13,965	13,863	16,535	18,332	14,944	13,789	14,811
		구 공 판	2,066	2,160	2,208	2,451	2,894	3,979	3,985	3,974	4,162	4,927
		구 약 식	9,780	11,839	10,376	11,514	10,969	12,556	14,347	10,970	9,627	9,884
	불기소	소 계	20,583	20,895	18,441	19,093	22,100	28,377	31,609	28,173	27,097	30,174
		무 혐 의	2,823	3,003	3,040	3,410	4,138	5,981	6,832	5,840	5,175	5,649
		기소유예	8,848	10,035	7,950	7,227	8,308	10,246	11,788	9,960	9,130	10,599
		기소중지	4,721	3,163	3,026	3,405	4,191	5,642	5,863	5,325	5,385	5,851
		기 타	4,191	4,694	4,425	5,051	5,463	6,508	7,126	7,048	7,407	8,075
	이송	소년보호	21	25	29	38	31	45	48	57	61	86
		가정보호	22	41	39	96	145	314	350	303	365	480
		타 관	1,499	1,471	1,266	1,366	1,468	2,004	2,649	2,386	2,320	3,312
		성 매 매	5	5	6	3	8	5	13	4	6	3
미 제			659	707	756	720	1,059	997	1,199	1,061	1,397	1,940

| 표 5-41 |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형사사건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발생							미군인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	주한미군지위협정사건 전체범죄에 대한행사
		총계	미측 관할 제외 총계	미군인				미군속 등		
				계	미측 관할	공소권 없음	미측관할 및 공소권 없음 제외			
'10	건	419	399	316	20	131	165	103	102(61.8%)	205
	명	491	471	380	20	148	212	111	111(52.4%)	222
'11	건	397	380	298	17	158	123	99	81(65.9%)	180
	명	456	439	341	17	177	147	115	92(62.6%)	207
'12	건	344	322	264	22	158	84	80	64(76.2%)	144
	명	379	357	294	22	175	97	85	70(72.2%)	155
'13	건	365	354	273	11	134	128	92	89(69.5%)	181
	명	403	392	305	11	163	131	98	98(74.8%)	196
'14	건	405	388	286	17	146	123	119	93(75.6%)	212
	명	433	416	300	17	152	131	133	97(74.0%)	230
'15	건	387	370	265	17	138	110	122	78(70.9%)	200
	명	419	402	289	17	152	120	130	82(68.3%)	212
'16	건	388	339	293	49	170	74	95	68(91.9%)	163
	명	426	377	326	49	198	79	100	71(89.9%)	171
'17	건	374	340	265	34	153	78	109	58(74.4%)	167
	명	415	381	295	34	169	92	120	62(67.4%)	182
'18	건	351	312	296	39	186	71	55	69(97.1%)	124
	명	378	339	319	39	202	78	59	70(89.7%)	129
'19	건	444	417	395	27	212	156	49	106(67.9%)	155
	명	477	450	426	27	232	167	51	107(64.1%)	158

※ '공소권없음'은 미군인 범죄로 집계는 되었으나,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교통사고의 종합보험 가입의 사유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임

※ 2003년부터는 재판권행사율 산정 시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분모에 산입하지 않음

2. 구속영장 발부 등

| 표 5-42 | 구속영장 발부 및 처리

(단위 : 명)

연도	구분	구속영장 발부 현황					구속인원 처리현황									
		청구 및 신청	기각		발부	미집행	계	기소			소년(가정) 보호사건 송치	불기소				
			검사	판사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없음	기타
'10	계	50,396	7,032	10,332	32,516	13	31,078	30,093	29,941	152	560	425	66	19	137	203
	검사	6,670	-	1,610	4,728	-	4,539	4,506	4,498	8	8	25	6	5	6	8
	사경	43,726	7,032	8,722	27,788	13	26,539	25,587	25,443	144	552	400	60	14	131	195
'11	계	44,125	5,562	8,970	28,814	-	28,831	28,134	28,016	118	313	384	40	27	90	227
	검사	6,944	-	1,693	4,505	-	4,413	4,373	4,362	11	3	37	11	8	3	15
	사경	37,181	5,562	7,277	24,309	-	24,418	23,761	23,654	107	310	347	29	19	87	212
'12	계	41,270	6,202	7,195	27,327	-	27,948	27,429	27,333	96	258	261	38	31	87	105
	검사	6,873	-	1,711	4,618	-	4,421	4,398	4,381	17	1	22	4	14	1	3
	사경	34,397	6,202	5,484	22,709	-	23,527	23,031	22,952	79	257	239	34	17	86	102
'13	계	38,766	5,655	5,914	26,716	-	28,298	28,040	27,953	87	118	140	33	42	65	82
	검사	7,327	-	1,769	5,075	-	5,476	5,440	5,424	16	-	36	1	32	3	5
	사경	31,439	5,655	4,145	21,641	-	22,822	22,600	22,529	71	118	104	32	10	62	77
'14	계	41,637	5,310	7,303	28,580	-	30,547	30,269	30,207	62	79	199	16	39	64	80
	검사	8,134	-	1,903	5,835	-	6,786	6,750	6,731	19	-	36	3	31	1	1
	사경	33,503	5,310	5,400	22,745	-	23,761	23,519	23,476	43	79	163	13	8	63	79
'15	계	44,110	5,695	6,831	31,153	-	33,946	33,731	33,655	76	67	148	21	37	47	43
	검사	7,013	-	1,528	5,142	-	6,181	6,147	6,115	32	-	34	3	27	1	3
	사경	37,097	5,695	5,303	26,011	-	27,765	27,584	27,540	44	67	114	18	10	46	40
'16	계	46,198	6,088	7,187	32,369	-	35,154	35,010	34,948	62	25	119	6	36	34	43
	검사	8,165	-	1,812	5,889	-	7,015	6,995	6,974	21	-	20	-	19	-	1
	사경	38,033	6,088	5,375	26,480	-	28,139	28,015	27,974	41	25	99	6	17	34	42
'17	계	41,701	6,574	6,682	28,340	-	31,355	31,185	31,126	59	19	151	6	39	40	66
	검사	5,919	-	1,485	4,414	-	5,706	5,670	5,658	12	0	36	0	30	3	3
	사경	35,782	6,574	5,197	23,926	-	25,649	25,515	25,468	47	19	115	6	9	37	63
'18	계	35,946	5,871	5,585	24,438	-	27,525	27,388	27,332	56	20	117	6	20	32	59
	검사	4,225	-	1,118	3,095	-	4,584	4,559	4,534	25	1	24	2	18	1	3
	사경	31,721	5,871	4,467	21,343	-	22,941	22,829	22,798	31	19	93	4	2	31	56
'19	계	35,344	5,688	5,592	24,036	-	26,860	26,756	26,704	52	8	96	5	16	34	41
	검사	3,167	-	922	2,240	-	3,645	3,628	3,604	24	0	17	1	14	1	1
	사경	32,177	5,688	4,670	21,796	-	23,215	23,128	23,100	28	8	79	4	2	33	40

3. 구속적부심사

| 표 5-43 |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계	2,643	2,293	2,052	1,746	2,127	2,117	2,353	2,125	1,994	1,929
	구 수	-	-	-	-	-	-	-	-	-	-
	신 수	2,643	2,293	2,052	1,746	2,127	2,117	2,353	2,125	1,994	1,929
처리	계	2,643	2,293	2,052	1,717	2,127	2,117	2,353	2,125	1,993	1,929
	석 방	831	609	439	304	441	344	355	301	240	197
	기 각	1,778	1,652	1,573	1,379	1,656	1,748	1,972	1,795	1,730	1,691
	취 하	34	32	40	34	30	25	26	29	23	41
심사중		-	-	-	-	-	-	-	-	1	-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표 5-44 | 항 고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계	41,505	39,890	24,365	48,642	51,995	55,140	53,168	57,306	65,456	80,195
	구 수	3,312	3,419	1,804	3,447	3,327	4,386	4,505	4,825	5,435	7,936
	신 수	38.193	36,471	22,561	45,195	48,668	50,754	48,663	52,481	60,021	72,259
처리	계	38,094	36,554	22,574	45,312	47,602	50,632	48,341	51,886	57,524	72,539
	기소명령	74	98	292	176	201	121	117	96	50	60
	재기수사명령	2,562	2,671	1,795	3,060	3,606	3,436	3,067	3,646	4,402	4,695
	주문변경명령	65	96	118	103	114	90	255	240	140	135
	항고기각	31,713	30,284	19,178	37,736	39,618	42,984	40,305	42,247	43,628	52,451
	각 하	3,680	3,405	1,191	4,237	4,063	4,001	4,597	5,648	9,304	15,198
미제		3,411	3,336	1,791	3,330	4,393	4,508	4,827	5,440	7,932	7,656

| 표 5-45 | 재항고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수	계	4,828	4,867	2,244	2,651	2,936	3,110	2,669	3,754	4,300	7,312
	구수	1,499	1,062	602	1,110	919	461	348	465	523	908
	신수	3,329	3,805	1,642	1,541	2,017	2,649	2,321	3,289	3,777	6,404
처리	계	3,766	3,184	1,737	1,732	2,476	2,762	2,204	3,231	3,392	5,833
	기소명령	-	-	-	-	-	-	-	-	-	0
	재기수사명령	120	161	122	72	52	72	59	61	56	104
	주문변경명령	-	-	-	-	-	1	-	-	-	0
	항고기각	742	703	307	928	1,501	1,722	1,655	2,170	2,247	3,717
	각하	2,904	2,320	1,308	732	923	967	490	1,000	1,089	2,012
미제		1,062	1,683	507	919	460	348	465	523	908	1,479

| 표 5-46 | 재정신청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심사중		5,061	7,168	2,652	14,688	16,037	19,377	22,165	25,061	29,406	36,793
접수	계	14,861	14,129	7,740	18,884	20,771	21,043	19,393	21,285	24,212	34,758
	공소제기명령	4	-	-	-	-	-	-	-	-	-
	고법송부	14,854	14,129	7,739	18,884	20,771	21,043	19,393	21,285	24,209	34,756
	신청취소	3	-	1	-	-	-	-	-	3	2
처리	계	13,843	12,048	7,080	14,419	18,007	19,461	16,605	18,389	19,864	27,369
	신청기각	13,507	11,810	6,911	14,231	17,738	19,184	16,392	18,014	19,586	27,085
	공소제기결정	216	133	105	118	150	160	86	171	106	97
	신청취소	120	105	64	70	119	117	127	204	172	187

5. 형의 집행

| 표 5-47 | 사형집행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03 ~ '07	2008	'09 ~ '16	2017	2018	2019
집행인원	-	-	-	-	-	-	-	-	-	-	-	-
기 타 (사면·감형 등)	19	2	5	2	-	4	-	6	-	-	-	-

| 표 5-48 | 벌과금 집행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조정금액	처분금액				집행미제액
		현금집행	유치집행	기타처분 금액	계	
2010	31,517,871,678	1,407,365,718	3,766,487,989	342,982,267	5,516,835,974	26,001,035,705
2011	31,073,627,198	1,361,572,755	3,360,866,184	229,632,610	4,952,071,549	26,121,555,647
2012	30,812,230,452	1,411,087,487	2,937,264,777	302,088,236	4,650,440,500	26,161,789,951
2013	30,255,449,022	1,478,847,909	2,500,582,716	238,671,053	4,218,101,678	26,037,347,344
2014	30,338,793,001	1,515,336,230	2,437,519,838	212,084,718	4,164,940,786	26,173,852,215
2015	30,427,117,765	1,485,721,253	2,172,718,742	285,497,041	3,943,937,036	26,483,180,729
2016	30,973,951,033	1,477,985,331	2,702,019,260	180,568,827	4,360,573,419	26,613,377,614
2017	31,479,966,569	1,440,018,684	2,920,347,012	148,669,665	4,509,035,361	26,970,931,208
2018	32,367,440,507	1,302,533,747	3,123,518,750	652,849,501	5,078,901,998	27,288,538,509
2019	32,616,527,504	1,223,258,449	3,000,576,228	494,089,002	4,717,923,679	27,898,603,825

※ 조정금액은 당해년도 벌과금 조정총액에서 촉탁금액을 감액한 실조정금액
※ 기타 처분금액은 사회봉사 집행, 집행불능 결정, 공제(미결구금일수 통산)금액의 합계액
※ 집행미제액은 사회봉사집행 중, 집행정지, 순미제 금액의 합계액

6. 사 면

| 표 5-49 | 사면

(단위 : 명)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82. 1. 1.	-	11	-	-	-	-	-	징계변호사
'82. 3. 3.	-	1,419 (488)	-	545 (248)	-	238 (233)	-	12대 대통령취임 1주년
'83. 3. 15.	-		-	2	-	-	-	미문화원 방화사건
'83. 8. 12.	-	77 (1)	-	10	-	551 (257)	-	광복절
'83. 12. 23.	-	36	-	-	-	142 (66)	-	성탄절
'84. 8. 14.	-	43	-	2	-	307 (71)	364 (50)	광복절
'84. 10. 2.	-	-	-	177 (40)	-	-	-	개천절
'85. 3. 2.	-	1,615 (393)	-	512 (186)	-	-	-	대통령취임 4주년
'85. 8. 15.	-	-	-	4	-	-	-	40주년 광복절(국가유공자등)
'87. 7. 10.	-	1,819 (7)	-	-	-	401 (21)	115 (43)	7·1대통령담화관련
'88. 2. 27.	-	4,214 (788)	-	835 (185)	-	992 (665)	334 (19)	제13대 대통령취임
'88. 12. 21.	-	1,113 (20)	-	96 (5)	-	365 (31)	155 (6)	11·26 대통령특별 담화관련
'90. 4. 12.	-	1	-	-	-	-	-	김현희
'91. 2. 25.	-	914 (187)	-	565 (187)	-	-	-	대통령취임 3주년
'91. 5. 25.	-	-	-	30 (9)	-	-	-	
'91. 12. 24.	-	1	-	-	-	1	-	
'92. 12. 24.	-	9	-	1	-	12	2	
'93. 3. 6.	-	34,147 (590)	-	1,076 (167)	-	2,987 (81)	2,703 (66)	제14대 대통령취임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93. 5. 28.	-	81 (75)	-	-	-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
'93. 12. 24.	-	137	-	-	-	24	26	전교조 관련
'95. 8. 15.	-	1,269 (103)	-	426 (46)	-	528 (29)	318 (23)	8·15 광복절
'95. 12. 2.	일반사면(대통령령 제14818호)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자 및 징계공무원
'96. 2. 25.	-	1	-	-	-	-	22	대통령취임 3주년
'96. 8. 15.	-	-	-	-	-	5	6	광복 51주년 경축
'97. 10. 3.	-	1	-	-	-	8	14	개천절기념
'97. 12. 22.	-	17	-	-	-	-	8	전직대통령 등
'98. 3. 13.	-	2,058 (231)	-	1,258 (61)	-	806	30,681	제15대 대통령 취임 기념
'98. 8. 15.	-	18 (3)	-	13	-	1,402 (5)	3,406 (12)	건국 50주년 경축
'99. 2. 25.	-	2,707 (2)	-	12	-	1,088 (28)	3,501 (50)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99. 8. 15.	-	40 (1)	-	7	-	256 (9)	788 (16)	광복 54주년 경축
'00. 8. 15.	-	3,881 (58)	-	810 (8)	-	525 (3)	23,148 (163)	광복 55주년 경축
'02. 7. 10.	월드컵 경축	-	-	-	-	-	-	운전면허벌점 등 감면 4,810,000명
'02. 12. 31.	-	54	-	4	-	25	39	복역중인 외국인 51명 잔형집행 면제포함
'03. 4. 30.	-	38 (1)	-	-	-	431	955 (5)	제16대 대통령 취임(공안사범 사면)
'03. 8. 15.	-	2,363 (502)	-	675 (10)	-	170	21,417	광복 58주년 경축
'04. 5. 26.	-	1	-	-	-	6	62	부처님 오신 날 경축
'05. 8. 15.	-	2,528 (62)	-	567 (20)	-	1,483 (1)	9,515 (19)	광복 60주년경축(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4,207,152명)
'06. 8. 15.	-	46	-	19	-	27	50	광복 61주년경축(건설업체 벌점삭제 등 4,390명)
'07. 2. 12.	-	28	-	12	-	276	118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구 분 / 실시일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일반 감형	특별 감형	일반 복권	특별 복권	특별 사면 및 특별 복권	비 고
'08. 1. 1.	-	8	-	14	-	18	35	
'08. 6. 4.	-	119	-	31	-	-	-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운전면허 벌점 등 감면 2,828,917명)
'08. 8. 15.	-	1,401 (8)	-	178	-	1,951	8,797 (16)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 경축(징계사면 328,335명,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취득결격기간 해제 500명)
'09. 8. 15.	-	1,947 (6)	-	375	-	-	7,145 (2)	제64주년 광복절, 건국 61주년 경축
'09. 12. 31.	-	1	-	-	-	-	-	
'10. 8. 15.	-	25	-	15	-	2,406	47	제65주년 광복절 기념 (징계사면 5,685)
'12. 1. 12.	-	595	-	185	-	-	165	
'13. 1. 31.	-	16	-	3	-	18	18	
'14. 1. 29.	-	516 (1)	-	113	-	-	5,296 (1)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7,601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896,499명
'15. 8. 15.	-	877 (5)	-	246	-	1	5,403 (5)	제70주년 광복절 기념(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200,925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2,206,924명)
'16. 8. 15.	-	858 (6)		261		3	3,754 (6)	제71주년 광복절 기념(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420,049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422,493명)
'17. 12. 30.	-	852 (2)	-	245	-	17	5,330 (2)	2018년 신년(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650,975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652,691명)
'19. 2. 28.	-	819 (1)	-	243 (1)	-	89	3,227 (2)	제100주년 3·1절
'19. 12. 31.	-	569 (1)	-	153	-	2,159	2,293 (2)	2020년 신년(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1,709,822명 등 행정제재 감면 총 1,712,422명)

※ ( )는 국방부 소관

7. 형사보상금 지급

| 표 5-50 |

(단위 : 천원,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액	3,961,348	4,080,000	7,972,000	11,000,000	14,000,000	20,000,000	24,000,000	27,500,000	33,213,000	33,213,000
보상인원	5,155	15,116	39,519	29,015	34,363	14,546	8,713	7,374	5,073	4,257
지급금액	17,362,009	22,565,518	53,178,959	57,671,711	88,165,833	52,974,617	31,768,637	36,038,809	36,736,416	40,138,487

※ 형사보상금 = 피고인 보상금 + 피의자 보상금 + 무죄비용 보상금 + 기타

8. 마약보상금 지급

| 표 5-51 |

(단위 : 천원)

종 류 \ 구 분	민간인 보상금	공무원 보상금	계
예 산 액	120,000	180,388	300,388
2018	120,000 (115)	180,388 (1,413)	300,388
2019	89,800 (27)	180,388 (1,648)	270,188

※ ( )는 인원

9. 해외연수

가. 검사 장기 해외연수

| 표 5-52 |

(단위 : 명)

지역 / 연도	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스페인	러시아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이집트	네덜란드	벨기에	싱가포르	칠레	이탈리아	인도	터키	스웨덴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
2005	28	14	1	2	1	2	2	1	-	1	1	1	1	1	-	-	-	-	-	-	-	-	-
2006	50	25	2	5	2	3	3	1	-	2	1	1	1	1	1	1	1	-	-	-	-	-	-
2007	53	26	3	4	2	3	3	1	-	3	2	1	-	1	1	-	1	1	1	-	-	-	-
2008	54	21	4	5	2	3	4	2	1	4	2	1	-	2	1	-	1	1	1	-	-	-	-
2009	53	21	4	5	3	3	4	2	-	3	1	1	-	2	1	-	1	2	-	-	-	-	-
2010	54	24	4	5	2	3	3	3	-	3	2	1	1	1	1	-	-	1	-	-	-	-	-
2011	54	20	2	5	2	5	6	3	-	6	2	1	-	1	-	-	-	-	-	1	-	-	-
2012	54	23	3	5	3	3	5	2	-	4	3	1	-	1	-	-	-	1	-	-	-	-	-
2013	54	25	3	4	3	2	3	4	-	4	3	1	-	1	-	-	-	1	-	-	-	-	-
2014	52	23	2	5	3	2	5	3	-	5	2	1	-	1	-	-	-	-	-	-	-	-	-
2015	52	24	3	5	3	2	3	4	-	4	2	1	-	1	-	-	-	-	-	-	-	-	-
2016	52	20	3	5	3	4	3	2	-	4	2	1	-	1	1	1	-	-	-	-	1	1	-
2017	57	26	3	2	3	2	5	2	-	4	1	1	-	2	1	1	1	-	-	-	2	-	1
2018	57	37	1	6	1	2	2	1	-	3	1	1	-	1	-	1	-	-	-	-	-	-	-
2019	57	45	3	2	3	2	-	-	-	1	-	-	-	1	-	-	-	-	-	-	-	-	-

※ 타부처 주관 포함

나. 검사 외 검찰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 표 5-53 |

(단위 : 명)

연도 \ 지역	계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스페인	체코	멕시코	몽골	네덜란드
2005	4	1	1	-	-	-	-	-	-	1	1	-	-	-
2006	4	1	-	-	-	-	1	2	-	-	-	-	-	-
2007	8	2	-	-	-	2	1	1	1	1	-	-	-	-
2008	7	3	-	-	-	1	1	1	-	1	-	-	-	-
2009	5	2	1	-	-	-	1	1	-	-	-	-	-	-
2010	6	3	-	-	-	1	1	1	-	-	-	-	-	-
2011	6	3	1	-	-	-	1	-	-	-	-	1	-	-
2012	5	3	-	-	-	-	1	1	-	-	-	-	-	-
2013	7	3	-	1	-	1	1	-	-	-	-	-	1	-
2014	7	3	-	-	1	-	2	1	-	-	-	-	-	-
2015	6	3	-	-	-	-	2	1	-	-	-	-	-	-
2016	4	3	-	-	-	-	-	1	-	-	-	-	-	-
2017	5	3	-	-	-	1	-	1	-	-	-	-	-	-
2018	7	3	1	-	-	-	2	-	-	-	-	-	-	1
2019	3	2	1	-	-	-	-	-	-	-	-	-	-	-

※ 타부처 주관 포함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1. 감호처분

가. 감호청구

| 표 5-54 | 감호종류별 청구인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32	290	244	254	156	155	118	99	77	184
보호감호	-	-	-	-	-	-	-	-	-	-
치료감호	332	290	244	254	156	155	118	99	77	184

| 표 5-55 | 죄명별 청구인원

연도 / 죄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감호	치료감호
계	-	332	-	290	-	244	-	254	-	156	-	155	-	118	-	99	-	77	-	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7	-	1	-	7	-	5	-	1	-	-	-	1	-	-	-	-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76	-	36	-	42	-	36	-	27	-	18	-	1	-	-	-	-	-	-
절도	-	9	-	30	-	14	-	7	-	11	-	5	-	10	-	8	-	2	-	16
강도	-	6	-	8	-	4	-	5	-	4	-	2	-	2	-	2	-	-	-	3
살인	-	47	-	10	-	27	-	40	-	22	-	29	-	17	-	9	-	9	-	14
강간	-	42	-	12	-	16	-	13	-	6	-	4	-	4	-	1	-	2	-	2
사기	-	5	-	40	-	10	-	10	-	4	-	3	-	0	-	2	-	-	-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	1	-	-	-	-	-	-	-	-	-	-	-	-	-	-	-	-	-	-
상해·폭행	-	6	-	11	-	16	-	14	-	16	-	15	-	16	-	12	-	8	-	39
방화·실화	-	17	-	23	-	10	-	14	-	11	-	11	-	6	-	14	-	7	-	12
상해(폭행)치사	-	6	-	2	-	-	-	-	-	2	-	3	-	1	-	-	-	2	-	2
무고	-	-	-	2	-	-	-	-	-	-	-	-	-	-	-	-	-	-	-	-
기타	-	90	-	115	-	98	-	110	-	52	-	65	-	60	-	51	-	47	-	90

나. 피보호감호자 수용

| 표 5-56 | 죄명별 수용인원

죄명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01	120	135	119	104	100	62	31	17	31
강도	52	43	43	33	32	32	18	8	5	12
절도	17	18	23	23	19	16	10	3	3	9
폭력	5	5	4	4	2	2	0	-	1	2
성폭력	-	53	64	59	48	47	32	20	8	8
기타	27	1	1	-	3	3	2	-	-	-

| 표 5-57 | 전과별 수용인원

전과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01	120	135	119	104	100	62	31	17	31
초범	7	10	8	7	6	7	3	3	-	1
2~3범	22	27	32	28	22	18	11	5	4	7
4~5범	38	41	47	39	31	32	20	10	4	8
6~7범	18	30	34	33	31	29	20	7	6	8
8~9범	9	7	8	7	8	7	4	3	2	5
10범 이상	7	5	6	5	6	7	4	3	1	2

| 표 5-58 | 동기별 수용인원

동기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01	120	135	119	104	100	62	31	17	31
이욕(利慾)(생활비, 유흥비, 허영)	90	108	120	105	101	98	62	31	17	31
원한·분노	-	-	-	-	-	-	-	-	-	-
취중	2	1	2	4	3	2	-	-	-	-
우연	-	-	-	-	-	-	-	-	-	-
기타	9	11	13	10	-	-	-	-	-	-

| 표 5-59 | 학력별 수용인원

학력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01	120	135	119	104	100	62	31	17	31
무 학	2	2	2	9	15	11	14	-	-	3
초 졸	23	27	34	40	31	36	14	7	8	11
중 졸	34	42	45	21	19	17	12	11	2	8
고 졸	39	47	52	47	38	35	22	13	7	9
대 졸	3	2	2	2	1	1	-	-	-	-

| 표 5-60 | 직업별 수용인원

직업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01	120	135	119	104	100	62	31	17	31
노 동	29	38	45	22	29	30	12	1	3	5
종 업 원	40	42	53	32	16	14	6	1	1	2
농 업	3	3	3	1	-	1	-	-	-	-
상 업	25	29	27	13	10	9	8	3	1	2
기 타	4	8	7	51	49	46	36	26	12	22

| 표 5-61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집행기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01	120	135	119	104	100	62	31	17	31
1년 미만	18	25	17	10	5	4	7	3	3	2
1년 이상~2년 미만	17	24	28	20	13	11	7	4	7	5
2년 이상~3년 미만	22	22	30	30	23	12	10	7	1	4
3년 이상~4년 미만	25	20	18	27	27	24	22	7	1	2
4년 이상	19	29	42	32	36	49	16	10	5	18

다. 피치료감호자 수용

| 표 5-62 | 죄명별 수용인원

죄명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887	948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살인	297	297	318	334	340	372	343	338	328	336
상해(폭행)치사	37	33	35	37	37	36	34	38	30	30
폭력	127	149	163	180	195	161	137	156	149	140
절도	80	70	66	64	58	68	60	59	58	62
방화	54	62	62	63	71	80	75	80	76	74
강도	53	50	40	45	54	57	52	48	48	44
성폭력	131	170	209	247	263	279	272	242	208	184
기타	108	117	128	152	131	127	120	135	141	142

| 표 5-63 | 전과별 수용인원

전과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887	948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초범	566	596	664	721	759	769	728	721	671	657
2범	93	95	112	130	121	132	133	129	126	132
3범	46	58	63	63	70	77	61	65	57	60
4범	45	41	38	44	42	40	45	35	38	37
5범 이상	137	158	144	164	157	162	126	146	146	126

| 표 5-64 | 병명별 수용인원

병명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887	948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조현병	355	382	450	480	509	533	507	519	528	543
정신지체	100	82	86	89	104	102	97	93	84	77
조울증	64	42	54	57	72	81	85	84	71	76
성격(인격)장애	52	33	38	44	38	35	27	27	23	13
간질	25	25	28	26	20	14	12	10	10	9
약물중독	68	50	71	85	176	175	130	35	46	35
기타	223	334	294	341	230	240	235	328	276	259

| 표 5-65 | 학력별 수용인원

학력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887	948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무 학	42	55	59	42	41	48	44	73	70	54
초 졸	130	131	129	138	143	141	139	189	163	153
중 졸	194	212	202	222	230	227	202	186	173	156
고 졸	377	389	444	497	494	512	475	478	475	499
대 졸	144	161	187	223	241	252	233	170	157	150

| 표 5-66 | 직업별 수용인원

직업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887	948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노 동	81	83	89	103	104	102	85	94	93	81
종 업 원	33	26	35	43	94	67	53	46	40	30
농 업	37	33	32	29	28	28	27	27	31	28
상 업	9	7	11	10	41	7	40	22	17	4
무 직	589	629	669	732	759	745	695	693	658	664
기 타	138	170	185	205	123	231	193	214	199	205

| 표 5-67 | 감호집행 기간별 수용인원

집행기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887	948	1,021	1,122	1,149	1,180	1,093	1,096	1,038	1,012
1년 미만	313	320	293	434	548	279	283	220	195	210
1년 이상 ~ 2년 미만	198	195	225	188	126	199	181	230	167	136
2년 이상 ~ 3년 미만	107	129	135	126	115	173	133	156	178	123
3년 이상 ~ 4년 미만	81	81	104	110	99	126	115	103	116	144
4년 이상	188	223	264	264	261	403	381	387	382	399

라. 피보호감호자 교육훈련 및 기능자격취득

| 표 5-68 | 교육훈련 인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9	11	11	17	14	7	7	-	2	-
학과교육	소계	-	-	2	4	12	7	6	-	2	-
	초등반	-	-	-	-	-	-	-	-	-	-
	중등반	-	-	-	-	-	-	-	-	-	-
	고등반	-	-	1	-	2	-	-	-	-	-
	학사고시반	-	-	1	4	10	7	6	-	2	-
직업훈련	소계	9	11	9	13	2	-	1	-	-	-
	목공	-	-	-	-	-	-	-	-	-	-
	미(도)장	-	-	-	-	-	-	-	-	-	-
	조적	-	-	-	-	-	-	-	-	-	-
	타일	-	-	-	-	-	-	-	-	-	-
	배관	-	-	-	-	-	-	-	-	-	-
	전기	-	-	-	-	-	-	-	-	-	-
	보일러시공	-	-	-	12	-	-	-	-	-	-
	이·미용	-	-	-	-	-	-	-	-	-	-
	원예	-	-	-	-	-	-	-	-	-	-
	양재	-	-	-	-	-	-	-	-	-	-
	정비	-	-	-	1	1	-	-	-	-	-
	정보기기	-	-	-	-	-	-	-	-	-	-
	기타	9	11	9	-	1	-	1	-	-	-

| 표 5-69 | 기능자격취득 인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9	11	9	13	2	-	1	-	1	-
천안교도소	소계	-	-	-	-	-	-	-	-	-	-
	1·2기능사	-	-	-	-	-	-	-	-	1	-
	기능사보	-	-	-	-	-	-	-	-	-	-
	면허	-	-	-	-	-	-	-	-	-	-
경북북부제3교도소	소계	9	11	9	13	2	-	1	-	-	-
	1·2기능사	9	11	9	13	2	-	1	-	-	-
	기능사보	-	-	-	-	-	-	-	-	-	-
	면허	-	-	-	-	-	-	-	-	-	-

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 표 5-70 | 피보호감호자 결정 인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4	39	25	38	33	39	59	53	31	22
가출소	17	19	17	37	33	23	53	43	23	11
가출소취소	7	7	8	1	-	16	6	10	8	11
집행면제	-	13	-	-	-	-	-	-	-	-

| 표 5-71 | 피치료감호자 결정 인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71	295	265	268	330	354	456	320	326	269
종료	3	-	-	2	1	4	2	3	-	-
가종료	260	275	255	247	275	266	394	226	246	208
가종료취소	8	20	10	19	54	84	60	91	80	61

바. 보호감호 가출소

| 표 5-72 | 감호집행 기간별 가출소 인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7	19	15	37	33	23	53	43	26	11
3년 미만	5	3	1	5	-	-	3	1	8	6
3년이상 ~ 4년 미만	3	8	4	6	5	5	6	6	6	-
4년이상 ~ 5년 미만	1	2	4	3	8	5	12	23	6	2
5년 이상	8	6	6	23	20	13	32	13	6	3

| 표 5-73 | 죄명별 가출소 인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7	19	15	37	33	23	53	43	26	11
절도	2	4	3	7	9	9	10	12	3	2
강도	10	8	7	13	9	5	20	11	10	4
폭력행위등	-	2	3	3	2	-	4	1	-	1
성폭력	-	5	2	14	13	9	19	17	13	4
기타	5	-	-	-	-	-	-	2	-	-

| 표 5-74 | 전과별 가출소 인원

전과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7	19	15	37	33	23	53	43	26	11
초범	2	-	3	2	2	-	4	2	-	-
2~3 범	5	2	3	6	10	6	9	8	-	4
4~5 범	4	7	3	14	11	5	14	13	6	1
6~7 범	4	6	3	11	8	7	17	14	10	5
8~9 범	1	4	1	1	1	4	5	3	4	-
10범 이상	1	-	2	3	1	1	4	3	6	1

사.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 표 5-75 | 치료감호 기간별 종료·가종료 인원

기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3	260	-	275	-	255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1년 미만	3	60	-	55	-	48	-	47	1	65	2	59	1	68	-	11	-	40	-	55
1년 이상 2년 미만	-	108	-	126	-	107	1	94	-	94	2	72	-	80	2	51	-	39	-	30
2년 이상 3년 미만	-	40	-	39	-	47	1	43	-	36	-	41	-	62	1	26	-	41	-	33
3년 이상	-	52	-	55	-	53	-	63	-	80	-	94	1	183	-	138	-	132	-	117

| 표 5-76 | 죄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죄명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3	260	-	275	-	255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살인	1	19	-	23	-	33	-	33	-	42	-	27	-	77	-	48	-	35	-	23
상해(폭행)치사	1	7	-	3	-	2	-	3	-	5	-	6	-	10	-	2	-	8	-	3
폭력행위등	1	28	-	28	-	39	-	48	-	39	2	81	-	78	2	26	-	38	-	45
강간	-	5	-	3	-	7	1	9	-	31	1	16	1	50	-	56	-	54	-	50
강도	-	16	-	12	-	21	-	9	-	6	-	13	1	17	-	12	-	7	-	9
절도	-	27	-	38	-	26	-	23	-	24	1	13	-	26	-	16	-	19	-	17
방화,실화	-	19	-	15	-	18	1	17	-	10	-	10	-	32	-	11	-	19	-	16
기타	-	139	-	153	-	109	-	105	1	118	-	100	-	103	1	55	-	72	-	72

| 표 5-77 | 전과별 종료·가종료 인원

죄명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3	260	-	275	-	255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초 범	1	122	-	120	-	90	-	102	-	114	1	119	-	209	-	124	-	131	-	116
2 범	1	30	-	33	-	28	1	29	1	37	2	33	1	43	3	25	-	29	-	25
3 범	1	10	-	14	-	14	-	16	-	15	-	17	1	31	-	13	-	20	-	17
4 범	-	14	-	16	-	16	-	14	-	14	1	9	-	10	-	15	-	12	-	9
5범 이상	-	84	-	92	-	107	1	86	-	95	-	88	-	100	-	49	-	60	-	68

| 표 5-78 | 병명별 종료·가종료 인원

죄명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종료	가종료
계	3	260	-	275	-	255	2	247	1	275	4	266	2	393	3	226	-	252	-	235
조현병	3	42	-	52	-	66	-	71	-	65	2	83	1	139	2	80	-	84	-	63
정신지체	-	44	-	25	-	17	1	17	-	11	-	16	-	27	-	19	-	16	-	16
조울증	-	16	-	29	-	13	-	14	-	11	-	15	-	24	-	14	-	23	-	16
성격(인격)장애	-	27	-	22	-	8	-	8	-	8	-	9	1	8	1	1	-	5	-	8
간질	-	11	-	3	-	3	-	4	-	7	-	7	-	4	-	2	-	0	-	1
약물중독	-	81	-	82	-	76	1	107	1	143	-	105	-	138	-	37	-	35	-	41
기타	-	39	-	62	-	72	-	26	-	30	2	31	-	53	-	73	-	89	-	90

2. 보호관찰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

| 표 5-79 |

(2019년)

구분 \ 심사위원회	계	서 울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계	2,994	1228	335	475	614	342
가 석 방	42	7	1	9	4	21
임 시 퇴 원	1,642	705	134	238	430	135
기 타 (임시퇴원취소, 임시해제, 가해제)	1,310	516	200	228	180	186

나. 처분종류별 실시사건 현황

| 표 5-80 |

(2019년)

구분 \ 대상	총 실 시 인 원			종 료	현 원
	계	구 수	신 수		
계	223,072	75,018	148,054	148,869	74,203
선 고 유 예	36	21	15	26	10
집 행 유 예	122,713	44,565	78,161	79,039	43,671
보 호 처 분	34,842	13,988	20,854	21,719	13,123
가 석 방	10,911	2,470	8,441	8,571	2,340
임 시 퇴 원	1,787	729	1,058	1,169	618
가 출 소	137	103	34	72	65
가 종 료	1,059	751	308	445	614
감 호 가 석 방	-	-	-	-	-
치 료 명 령	1,489	744	745	513	976
치료감호기간만료	44	13	31	10	34
가 정 보 호	12,125	2,741	9,384	8,873	3,255
성 매 매	406	163	243	336	70
아 동 학 대	1,943	579	1,364	1,306	637
선 도 위 탁	12,744	2,388	10,356	10,056	2,688
성구매자 교육	3,138	681	2,457	2,649	489
형 기 종 료	3,181	2,389	792	674	2,507
벌 금 대 체	8,709	1,296	7,413	7,190	1,519
이 수 명 령	7,808	1410	6,398	6,221	1587

다. 근거법률별 접수현황

| 표 5-81 |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32,429	121,188	116,860	112,878	121,517	134,364	159,636	162,360	149,282	148,054
형법	소계	61,021	56,395	56,437	57,485	60,190	63,746	76,366	81,808	85,217	78,079
	선고유예	7	15	17	13	9	22	23	16	22	11
	집행유예	54,984	50,911	51,677	52,803	55,992	59,568	70,670	74,996	78,057	69,627
	가석방	6,030	5,469	4,743	4,669	4,189	4,156	5,673	6,796	7,138	8,441
소년법	소계	39,858	41,253	41,440	34,932	27,765	26,517	24,718	25,511	24,972	21,912
	단기보호관찰	19,907	21,252	20,599	16,010	12,214	12,974	11,240	11,815	11,319	9,281
	장기보호관찰	12,916	12,948	13,018	13,692	10,956	9,570	9,538	9,594	9,224	8,619
	단독명령	5,858	5,964	6,400	3,910	3,238	2,889	2,707	2,910	3,133	2,954
	임시퇴원	1,177	1,089	1,423	1,320	1,357	1,084	1,233	1,192	1,296	1,058
치료보호법	소계	506	535	482	510	531	481	690	986	1,097	1,118
	가출소	39	45	22	61	61	40	87	78	64	34
	감호가석방	-	-	-	-	-	-	-	-	-	-
	가종료	467	490	460	449	470	441	603	434	488	308
	치료명령	-	-	-	-	-	-	-	474	528	745
	치료감호기간만료	-	-	-	-	-	-	-	-	-	31
성폭력특별법	소계	915	1,114	1,132	716	3,144	4,389	5,533	10,957	17	11,962
	선고유예	-	-	-	3	1	5	11	16	12,544	4
	벌금(이수명령)	-	-	-	-	-	-	-	5,074	6	6,044
	집행유예	915	1,114	1,132	713	3,143	4,384	5,522	5,867	6,223	5,914
가정폭력특별법	소계	2,380	1,708	1,995	3,176	5,596	7,823	8,608	9,126	6,315	9,384
	보호처분	2,380	1,708	1,995	3,176	5,596	7,823	8,608	9,126	7,875	9,384
성매매처벌법	소계	1,090	572	646	760	910	1,619	2,274	2,835	7,875	879
	보호처분	531	215	273	335	239	390	1,050	1,443	1,274	243
	집행유예	559	357	373	425	671	1,229	1,224	1,392	521	636
선도위탁(기소유예)	소계	4,885	5,002	5,090	5,899	7,859	11,425	14,859	13,126	753	11,082
	1급	124	277	130	199	106	190	103	96	2,301	106
	2급	4,761	4,725	4,960	5,700	7,753	4,096	3,810	3,553	148	1,835
	선도교육	-	-	-	-	-	7,139	10,946	9,477	2,153	9,141
성구매자교육	소계	13,413	8,366	4,807	3,058	2,658	2,847	11,763	5,817	7,213	2,457
	기소유예	13,413	8,366	4,807	3,058	2,658	2,847	11,763	5,817	3,239	2,457
형기종료	소계	226	468	311	996	971	833	870	795	3,239	793
	형기종료	226	468	311	996	971	833	870	795	891	793
벌금대체사회봉사	소계	7,971	4,856	3,465	4,059	6,718	8,554	8,530	8,282	891	7,413
	벌금대체	7,971	4,856	3,465	4,059	6,718	8,554	8,530	8,282	7,624	7,413
아동청소년법	소계	164	919	1,055	1,287	5,175	5,608	4,444	1,609	7,624	1,270
	선고유예	-	-	-	-	-	-	1	1	1,219	0
	벌금(이수명령)	13	129	274	414	4,454	4,356	3,219	257	-	251
	집행유예	151	790	781	873	721	1,252	1,224	1,351	-	1,019
아동학대특례법	소계	-	-	-	-	-	522	981	1508	1,219	1,705
	벌금(이수명령)	-	-	-	-	-	149	20	31	1,029	103
	보호처분	-	-	-	-	-	301	839	1235	-	1,364
	집행유예	-	-	-	-	-	72	122	242	784	238

※ 접수사건 : 전년도 이월사건을 제외한 당해연도 순수접수건

라. 기관별 보호관찰 등 대상자 접수현황

| 표 5-82 |

기관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32,429	121,188	116,860	112,878	121,517	134,364	159,636	162,360	149,282	148,054
서울	8,300	6,223	5,766	5,924	7,052	7,875	8,645	8,438	7,153	7,113
서울동부	3,676	2,764	3,065	3,167	3,191	3,626	3,964	3,718	3,397	3,579
서울남부	5,247	4,292	4,169	4,099	4,298	4,758	5,436	5,880	5,361	5,455
의정부	5,252	4,554	4,962	4,527	4,338	4,670	6,561	6,175	6,050	5,850
인천	7,354	5,729	4,640	4,414	5,315	6,092	7,633	7,895	6,856	6,295
수원	5,251	4,391	5,421	5,799	5,966	6,687	8,784	8,857	7,992	7,992
춘천	1,280	1,383	1,642	1,353	1,335	1,340	1,478	1,717	1,596	1,447
대전	4,651	4,461	4,322	4,382	4,255	4,541	4,895	5,753	5,804	5,541
청주	2,842	2,736	2,200	2,151	2,348	2,631	2,654	3,155	3,346	3,270
대구	4,809	4,518	4,612	4,164	4,056	5,975	6,351	5,843	5,204	5,637
부산	7,501	6,063	5,144	4,866	5,370	5,413	7,460	6,634	4,479	3,424
울산	3,616	4,096	3,234	2,961	4,110	3,552	3,178	4,964	4,097	4,738
창원	3,709	4,076	4,043	3,333	3,963	3,818	4,843	4,961	3,976	4,650
광주	4,352	4,925	5,504	5,270	5,159	5,577	5,355	7,899	6,872	5,608
전주	2,282	2,487	2,141	1,747	2,041	2,104	2,888	3,191	3,005	2,667
제주	1,464	1,475	1,451	1,528	1,797	1,699	2,493	3,103	2,839	2,851
서울서부	3,432	2,593	2,491	2,276	2,662	2,988	3,330	3,247	3,132	3,195
서울북부	3,187	2,606	2,364	2,439	2,294	2,898	3,152	3,014	3,328	4,076
고양	2,961	2,926	2,816	2,810	2,942	4,070	4,401	4,155	3,539	3,522
부천	2,759	2,663	2,358	2,619	2,837	2,991	3,548	4,351	4,172	4,117
성남	3,515	2,572	2,877	2,899	3,302	3,344	4,440	4,676	4,026	3,710
여주	1,260	1,345	1,507	1,277	1,109	1,172	1,422	1,588	1,321	1,255
안산	4,655	4,453	3,652	4,375	4,253	5,301	6,515	5,177	4,856	4,493
평택	1,636	1,437	1,669	1,679	1,802	2,286	3,063	2,580	2,128	2,664
안양	2,263	2,227	2,028	1,653	1,828	2,156	2,606	2,378	2,305	2,308
강릉	959	1,056	811	887	1,259	1,192	1,366	1,355	1,209	1,401
원주	883	958	1,583	1,194	1,214	1,562	1,780	1,561	1,499	1,530

기관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속초	576	437	437	548	548	474	630	396	497	505
영월	524	482	534	438	445	501	487	489	433	597
홍성	932	1,020	856	914	843	1,128	992	900	943	754
공주	421	454	431	376	421	429	547	505	478	387
논산	626	651	608	769	805	778	891	890	657	805
서산	963	916	813	914	1,191	1,205	1,079	988	926	1,082
천안	2,167	2,149	2,288	2,007	2,034	2,283	3,304	3,059	2,784	3,173
충주	908	1,244	912	1,042	904	1,048	1,182	1,130	915	886
제천	446	497	559	557	723	746	629	623	506	547
대구서부	3,179	2,862	2,568	2,422	2,389	3,147	3,790	3,011	3,023	3,044
안동	1,198	1,028	1,304	863	971	948	1,296	958	1031	839
경주	587	573	521	556	703	685	789	724	621	587
포항	1,230	1,425	923	1,039	1,193	1,584	2,178	2,317	1,754	1,706
구미	1,673	1,462	1,555	1,545	1,611	1,533	1,974	1,978	1,913	2,199
상주	563	667	536	533	510	608	612	657	470	643
영덕	312	385	353	260	209	308	388	336	298	332
부산동부	4,183	3,080	2,943	2,524	2,870	2,918	4,196	3,708	3,436	3,359
부산서부	-	-	-	-	-	-	-	-	3,580	2,883
진주	1,437	1,317	966	1,006	1,156	1,170	1,478	1,659	1,595	1,562
통영	1,724	1,549	1,615	1,294	1,513	1,499	2,015	2,025	1,627	1,720
밀양	343	362	335	418	421	482	544	464	473	470
거창	385	310	331	335	351	361	503	448	440	472
목포	1,408	1,218	1,567	1,560	1,603	1,755	1,932	2,366	1,772	1,311
순천	2,476	2,176	1,761	1,974	2,036	2,431	2,955	3,319	2,848	2,831
해남	596	627	683	654	738	783	788	866	851	692
군산	1,582	1,416	1,409	1,379	1,438	1,482	1,778	1,469	1,612	2,016
정읍	809	825	865	691	700	608	782	851	839	893
남원	431	410	407	351	320	335	348	324	325	399
인천서부	1,489	2,185	1,882	1,847	2,426	2,577	3,057	3,417	2,850	2,689
영동	165	452	426	269	349	240	251	218	243	283

마. 소년·성인별 실시사건 현황

| 표 5-83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199,713	227,141	240,073	227,733	223,072
소년	계			51,978	49,687	47,493	45,364	40,587
	형법	소계		823	745	727	684	777
		선고유예		1	2	5	6	3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764	698	657	606	699
			단독명령	37	33	52	60	56
		가석방		21	12	13	12	19
	소년법	소계		44,050	40,693	40,482	5	36,629
		보호처분	단기보호관찰	19,952	18,637	18,465	5	15,592
			장기보호관찰	18,912	17,103	16,721	40,108	15,693
			단독명령	3,454	3,227	3,489	18,189	3,557
		임시퇴원		1,732	1,726	1,807	16,271	1,787
	치료감호법	소계		-	-	3	3,685	3
		치료명령		-	-	3	1,963	3
	성폭력법	소계		118	105	107	104	127
		선고유예		2	-	2	2	1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94	85	83	71	88
			단독명령	22	20	22	31	38
	가정폭력법	소계		31	61	55	40	61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24	48	34	30	53
			단독명령	7	13	21	10	8
	성매매법	소계		7	8	12	12	7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6	5	9	9	6
			단독명령	1	3	3	3	1
		소계		-	-	-	1	5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	-	1	5
			단독명령	-	-	-	-	-
	선도위탁	소계		6,714	7,864	5,894	4,173	2,750
		기소유예		6,714	7,864	5,894	4,173	2,750
	성구매자교육	소계		2	17	11	5	3
		기소유예		2	17	11	5	3
	벌금대체	소계		91	67	68	56	37
		벌금대체		91	67	68	56	37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동청소년법	소계		142	122	129	173	185
		선고유예			-	1	1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108	85	110	136	136
			단독명령	32	33	13	35	47
		이수명령		2	4	5	1	2
	아동학대특례법	소계		-	5	5	3	3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	4	5	3	3
			단독명령	-	1	-	-	-
		소계		-	-	-	-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	-	-	-	-
			단독명령	-	-	-	-	-
		이수명령		-	-	-	-	-
성인	계			147,735	177,454	192,580	182,369	182,485
	형법	소계		96,954	109,973	122,762	120,652	119,625
		선고유예		29	40	26	31	26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54,952	62,588	67,840	65,058	61,578
			단독명령	36,638	40,582	46,524	46,323	47,129
		가석방		5,335	6,763	8,372	9,240	10,892
	치료감호법	소계		1,147	1,380	1,854	2,396	2,726
		가출소		112	157	169	170	137
		감호가석방		-	-	-	-	-
		가종료		1,035	1,223	1,208	1,221	1,059
		치료명령		-	-	477	988	1,486
		치료감호기간만료		-	-	-	17	44
	성폭력법	소계		11,256	12,186	14,342	16,245	16,011
		선고유예		4	15	24	18	6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2,741	3,254	3,575	3,690	3,534
			단독명령	8,511	8,917	4,797	4,943	5,108
		이수명령		-	-	5,946	7,594	7,363
	가정폭력법	소계		9,662	10,098	12,186	10,425	12,064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7,735	6,644	7,849	6,820	7,998
			단독명령	1,927	3,454	4,337	3,605	4,066
	성매매법	소계		493	1,192	1,909	861	399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418	732	1319	691	302
			단독명령	75	460	590	170	97
		소계		1,657	1,938	2,232	1,723	1,358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1,189	1,360	1,661	1,318	999
			단독명령	468	578	571	405	359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선도위탁	소계	8,055	12,324	11,132	9,515	11,016
		기소유예	8,055	12,324	11,132	9,515	11,016
	성구매자교육	소계	3,462	12,493	9,226	3,942	3,135
		기소유예	3,462	12,493	9,226	3,942	3,135
	형기종료	소계	2,532	2,844	2,907	3,218	3,183
		형기종료	2,532	2,844	2,907	3,218	3,183
	벌금대체	소계	9,941	9,825	9,751	9,006	8,672
		벌금대체	9,941	9,825	9,751	9,006	8,672
	아동청소년법	소계	2,049	1,930	2,211	2,076	1,841
		선고유예		2	-	2	-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859	793	828	800	728
		집행유예 단독명령	872	912	1085	939	797
		이수명령	318	223	298	335	316
	아동학대특례법	소계	453	1,080	1,690	1,869	1,940
		보호처분 보호관찰부	392	894	1,306	1,425	1,373
		보호처분 단독명령	61	186	384	444	567
		소계	74	191	378	441	388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43	100	183	206	206
		집행유예 단독명령	31	64	150	166	182
		이수명령	-	27	45	69	127

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실시사건 현황

| 표 5-84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199,713	227,141	240,073	227,733	223,072
보호관찰	계			96,419	100,995	105,705	104,850	101,089
	형법	소계		45,608	50,743	55,951	56,842	55,325
		선고유예		30	42	31	37	29
		집행유예		40,222	43,926	47,535	47,553	44,385
		가석방		5,356	6,775	8,385	9,252	10,911
	소년법	소계		31,090	28,809	27,520	27,600	25,735
		보호처분	단기보호관찰	14,180	13,761	12,940	12,842	11,386
			장기보호관찰	15,178	13,322	12,773	12,795	12,562
		임시퇴원		1,732	1,726	1,807	1,963	1,787
	치료감호법	소계		1,147	1,380	1,814	2,336	2,637
		가출소		112	157	169	170	137
		감호가석방		-	-	-	-	-
		가종료		1,035	1,223	1,208	1,221	1,059
		치료명령		-	-	437	928	1,397
		치료감호기간만료		-	-	-	17	44
	성폭력법	소계		1,733	2,092	2,323	2,430	2,309
		선고유예		6	15	26	20	7
		집행유예		1,727	2,077	2,297	2,410	2,302
	가정폭력법	소계		5,724	6,361	5,956	5,155	6,210
		보호처분		5,724	6,361	5,956	5,155	6,210
	성매매법	소계		1,082	1,508	2,112	1,615	1,056
		보호처분		278	476	820	496	222
		집행유예		804	1,032	1,292	1,119	834
	선도위탁	소계		6,587	5,875	5,340	3,740	2,796
		기소유예		6,587	5,875	5,340	3,740	2,796
	형기종료	소계		2,532	2,844	2,907	3,220	3,183
		형기종료		2,532	2,844	2,907	3,220	3,183
	아동청소년법	소계		613	588	596	596	551
		선고유예		-	2	1	1	-
		집행유예		613	586	595	595	551
	아동학대특례법	소계		303	795	1,186	1,316	1,287
		보호처분		283	738	1,076	1,180	1,140
		집행유예		20	57	110	136	147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회봉사명령	계		45,549	48,395	53,231	51,224	49,788
	형법	소 계	34,247	37,624	41,054	40,088	39,910
		보호관찰부	9,957	12,055	12,755	11,402	10,912
		단독명령	24,290	25,569	28,299	28,686	28,998
	소년법	소 계	7,170	6,432	6,981	6,714	5,905
		단기보호관찰	2,997	2,456	2,804	2,643	2,095
		장기보호관찰	2,342	2,276	2,311	2,113	1,991
		단독명령	1,831	1,700	1,866	1,958	1,819
	치료감호법				43	65	92
	성폭력법	소 계	885	1,184	1,406	1,572	1,592
		보호관찰부	271	307	361	374	389
		단독명령	614	877	1,045	1,198	1,203
	가정폭력법	소 계	634	795	820	610	616
		보호관찰부	332	322	275	273	294
		단독명령	302	473	545	337	322
	성매매법	소 계	772	849	1,076	528	412
		보호관찰부	338	300	442	205	149
		단독명령	434	549	634	323	263
	선도위탁	소 계	1,515	1,140	1,354	1,181	838
		기소유예	1,515	1,140	1,354	1,181	838
	아동청소년법	소 계	292	299	348	307	297
		보호관찰부	94	86	97	105	100
		단독명령	198	213	251	202	197
	아동학대특례법	소 계	34	72	149	159	126
		보호관찰부	15	30	51	56	32
		단독명령	19	42	98	103	94
수강명령	계		33,513	38,857	45,459	41,884	42,408
	형법	소 계	17,933	22,358	26,488	24,406	25,167
		보호관찰부	5,537	7,312	8,211	6,709	6,980
		단독명령	12,396	15,046	18,277	17,697	18,187
	소년법	소 계	5,790	5,452	5,981	5,794	4,989
		단기보호관찰	2,775	2,420	2,721	2,704	2,111
		장기보호관찰	1,392	1,505	1,637	1,363	1,140
		단독명령	1,623	1,527	1,623	1,727	1,738
	성폭력법	소 계	3,496	4,169	4,774	4,753	4,874
		보호관찰부	837	955	1,000	977	931
		단독명령	2,659	3,214	3,774	3,776	3,943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가정폭력법	소 계	3,335	4,777	5,465	4,700	5,299
		보호관찰부	1,703	1,783	1,652	1,422	1,547
		단독명령	1,632	2,994	3,813	3,278	3,752
	성매매법	소 계	303	781	965	454	301
		보호관찰부	193	289	435	199	107
		단독명령	110	492	530	255	194
	선도위탁	소 계	1,510	-	-	-	-
		기소유예	1,510	-	-	-	-
	아동청소년법	소 계	956	938	1,093	1,008	860
		보호관찰부	250	206	246	236	213
		단독명령	706	732	847	772	647
	아동학대특례법	소 계	190	382	693	769	918
		보호관찰부	117	173	257	262	263
		단독명령	73	209	436	507	655
성구매자교육	계		3,464	12,510	9,237	3,947	3,138
	기소유예		3,464	12,510	9,237	3,947	3,138
벌금대체사회봉사	계		10,032	9,892	9,819	9,062	8,709
	벌금대체사회봉사		10,032	9,892	9,819	9,062	8,709
이수명령	계		5,571	5,073	6,290	7,999	7,808
	이수명령		5,571	5,073	6,290	7,999	7,808
선도교육	계		5,165	11,419	10,332	8,767	10,132
	기소유예		5,165	11,419	10,332	8,767	10,132

사. 성적양호자에 대한 조치 현황

| 표 5-85 |

구분 / 연도	총 계	임시해제	부정기형종료	집행면제	가종료 집행종료	가정보호 처분종료
2015	5,343	5,320	1	-	7	15
2016	2,618	2,602	1	-	2	13
2017	2,840	2,811	-	-	7	22
2018	2,184	2,165	-	-	3	16
2019	877	854	-	-	2	21

아. 성적불량자에 대한 조치 현황

| 표 5-86 |

구분 / 연도	구인	긴급 구인	유치	제재조치							
				경고	집행 유예 취소	보호 처분 변경	임시 퇴원 취소	가석방 취 소	기간 연장	보호 관찰 정지	가정 보호 등 취소
2015	1,980	40	1,800	35,514	744	1,812	126	11	79	71	128
2016	1,796	31	1,695	36,129	726	1,780	109	11	40	58	149
2017	1,713	24	1,594	38,752	791	1,576	118	7	49	70	194
2018	1,417	14	1,350	35,479	749	1,217	128	14	35	76	219
2019	1,231	9	1,125	33,849	694	982	122	20	36	65	201

자. 구인·유치대상자의 단계별 처리 현황

| 표 5-87 |

구분 / 연도	긴급구인	구인장 신청				구인장 집행	구인장 반환	구인후 석방	유치허가신청			유치	취소·변경신청				
		검찰		법원					검찰	법원			검찰	법원		심사 위원회	
		기각	청구	기각	인용				기각	기각	인용		기각	기각	인용	기각	인용
2015	40	16	2,934	8	2,926	1,980	1,037	140	12	18	1,850	1,850	6	275	1,381	1	129
2016	31	29	2,663	5	2,658	1,796	791	87	10	4	1,695	1,695	5	293	1,264	3	111
2017	24	32	2,613	15	2,598	1,713	806	85	14	11	1,594	1,594	4	300	1,160	-	121
2018	14	30	2,265	23	2,242	1,417	829	51	16	24	1,302	1,343	6	241	942	2	132
2019	9	20	1,921	24	1,897	1,230	7622	77	6	15	1,080	1,125	3	236	718	1	127

차. 사회봉사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 표 5-88 |

구분 / 연도	개시	종료계	집행		이송	집행불능
			완전집행	부분집행		
2015	45,549	38,554	35,677	562	1,625	690
2016	48,395	39,532	36,426	572	1,825	709
2017	53,213	44,157	40,653	644	2,061	799
2018	51,224	41,853	38,447	609	2,023	774
2019	49,788	40,043	36,918	607	1,930	588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카. 사회봉사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 표 5-89 |

구분 / 연도	총 계		형 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성폭력법		가정폭력법		성매매법		선도위탁		아동청소년법		아동학대특례법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2015	45,549	38,153	34,247	28,420	7,170	6,128	-	-	885	775	634	548	772	690	1,515	1,304	292	255	34	33
2016	48,395	41,435	37,624	32,117	6,432	5,459	-	-	1,184	1,036	795	698	849	729	1,140	1,071	299	259	72	66
2017	53,231	44,386	41,054	33,914	6,981	5,923	43	42	1,406	1,188	820	708	1,076	945	1,354	1,237	348	293	149	136
2018	51,224	42,249	40,088	32,911	6,714	5,650	65	53	1,572	1,326	610	530	528	404	1,181	973	307	261	159	141
2019	49,788	40,279	39,910	32,214	5,905	4,805	92	74	1,592	1,262	616	517	412	344	838	733	297	226	126	104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타. 사회봉사명령 부과 형태 추이

| 표 5-90 |

구분 / 연도	총 계			소 년			성 인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소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소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2015	45,549	16,569	28,980	8,677	5,641	3,036	36,872	10,928	25,944
2016	48,395	17,969	30,426	7,616	4,973	2,643	40,779	12,996	27,783
2017	53,231	19,351	33,880	8,321	5,465	2,856	44,910	13,886	31,024
2018	51,224	17,405	33,819	7,845	5,111	2,734	43,379	12,294	31,085
2019	49,788	16,133	33,655	6,787	4,359	2,428	43,001	11,774	31,227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파.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 표 5-91 |

구분 / 연도	총 계	직접집행	협력집행(분야별 성격)					
			소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15	36,239	8,966	27,273	56	24,990	658	1,433	136
2016	36,998	9,236	27,762	88	25,457	681	1,346	190
2017	41,297	8,538	32,759	79	30,747	952	734	247
2018	39,007	6,521	32,486	48	30,325	1,089	770	254
2019	37,453	5,775	31,678	53	29,718	899	725	283

하. 수강명령 접수 및 집행현황

| 표 5-92 |

구분 / 연도	개시	종료계	집행		이송	집행불능
			완전집행	부분집행		
2015	33,513	25,850	23,751	252	1,035	812
2016	38,857	30,038	27,674	284	1,261	819
2017	45,459	36,859	34,100	311	1,452	996
2018	41,884	34,046	31,353	293	1,439	961
2019	42,408	33,575	31,199	273	1,262	841

※ 집행불능 : 형집행, 사망, 집행유예취소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시간 중 단 1시간도 집행하지 못하고 종료한 사건

거. 수강명령 근거법률별 실시 및 접수사건 추이

| 표 5-93 |

구분 / 연도	총 계		형 법		소년법		성폭력법		가정폭력법		성매매법		선도위탁		아동 청소년법		아동학대 특례법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실시 사건	접수 사건
2015	33,513	27,588	17,933	14,916	5,790	4,544	3,496	2,704	3,335	2,911	303	255	1,510	1,342	956	729	190	187
2016	38,857	31,971	22,358	18,532	5,452	4,367	4,169	3,320	4,777	3,980	781	699	-	-	938	745	382	328
2017	45,459	36,657	26,488	21,508	5,981	4,775	4,774	3,781	5,465	4,488	965	698	-	-	1,093	834	693	573
2018	41,884	33,309	24,406	19,607	5,794	4,510	4,753	3,703	4,700	3,801	454	331	-	-	1,008	737	769	620
2019	42,408	34,523	25,167	20,582	4,989	3,975	4,874	3,850	5,299	4,512	301	214	-	-	860	624	918	766

※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 + 당해연도접수사건

너. 수강명령 부과 형태 추이

| 표 5-94 |

구분 / 연도	총 계			소 년			성 인		
	계	보호 관찰부	단독 명령부	소계	보호 관찰부	단독 명령부	소계	보호 관찰부	단독 명령부
2015	33,513	14,460	19,053	6,056	4,250	1,806	27,457	10,210	17,247
2016	38,857	14,643	24,214	5,587	3,999	1,588	33,270	10,644	22,626
2017	45,459	16,159	29,300	6,139	4,446	1,693	39,320	11,713	27,607
2018	41,884	13,872	28,012	5,952	4,151	1,801	35,932	9,721	26,211
2019	42,408	13,292	29,116	5,182	3,355	1,827	37,226	9,937	27,289

※ 실시사건 기준(선도위탁도 단독명령이 가능해 2013년부터 포함하여 산정)

더. 집행분야의 연도별 추이

| 표 5-95 |

구분 \ 연도	총 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15	24,003	23,521	482	23	2	27	180	67	183
2016	27,958	27,386	572	26	-	27	275	51	193
2017	34,411	33,845	566	1	-	5	244	22	294
2018	31,646	30,800	846	6	64	53	140	34	549
2019	31,472	29,977	1,495	2	81	104	61	70	1,177

러.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

| 표 5-96 |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환경조사	소 계	1,742	1,616	1,740	1,701	1,594	1,561	1,555	1,921	1,502	1,442
	소년원	1,454	1,380	1,500	1,555	1,395	1,432	1,419	1,693	1,373	1,343
	교도소	224	173	146	43	106	59	60	167	104	93
	감호소	60	28	69	103	93	70	76	60	19	6
환경개선		4	35	25	-	-	-	-	1	6	1

머. 조사

| 표 5-97 |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판결전조사	1,598	1,526	2,385	2,159	2,257	2,166	1,901	2,003	2,053	1,797
결정전조사	6,398	9,242	12,719	12,141	12,399	17,678	16,931	16,606	19,662	19,007
검사결정전조사	4,524	3,906	5,547	5,084	5,855	3,805	4,379	3,626	1,678	1,092
청구전조사	1,376	1,933	1,696	2,497	2,511	2,352	2,619	1,783	1,600	1,468
소급청구전조사	2,251	772	354	247	192	119	79	86	39	52

버. 지명수배 의뢰 및 해제 현황

| 표 5-98 |

구분 / 연도	계				소 년				성 인			
	수배 의뢰	수배해제			수배 의뢰	수배해제			수배 의뢰	수배해제		
		계	검거	기타		계	검거	기타		계	검거	기타
2015	3,566	2,753	2,005	748	1,924	1,604	1,297	307	1,642	1,149	708	441
2016	3,288	2,396	1,817	579	1,666	1,344	1,133	211	1,622	1,052	684	368
2017	3,196	2,315	1,682	633	1,479	1,181	997	184	1,717	1,134	685	449
2018	2,887	2,089	1,430	659	1,267	1,018	828	190	1,620	1,071	602	469
2019	2,457	1,812	1,233	579	1,035	822	675	147	1,422	990	558	432

※ 수배해제 사유 중 기타는 기간만료, 사망 등의 사유가 포함됨.

서. 보호관찰 사안조사

| 표 5-99 |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건 수	8,705	6,766	6,144	6,658	6,297	6,252	7,895	8,821	9,434	11,571

어. 보호관찰 불요결정

| 표 5-100 |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접 수	8,093	7,067	6,502	6,150	5,503	5,716	7,221	8,248	8,575	8,268
필 요	5,493	4,779	4,246	4,174	3,734	3,816	5,127	6,205	6,394	7,962
불 요	2,600	2,288	2,256	1,976	1,769	1,900	2,094	2,043	2,181	593
허 가	2,600	2,288	2,256	1,976	1,769	1,900	2,094	2,043	2,181	593

3. 갱생보호

가. 갱생보호 실적

| 표 5-101 |

구분	총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원호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창업 지원	사회성 향상	가족 희망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116,040	1,993	4,397	10,080	284	7,266	17,383	36,106	9	6,713	2,224	14,125	15,460

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적

| 표 5-102 |

구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원호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창업 지원	사회성 향상	가족 희망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105,490	1,568	4,305	9,981	278	7,033	17,148	32,052	5	3,674	2,224	12,694	14,528

다.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실적

| 표 5-103 |

구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주거 지원	긴급 원호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창업 지원	사회성 향상	심리 상담	기타 지원
인원	10,550	425	92	99	6	233	235	4,054	4	3,039	1,431	932

4.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

가. 보호소년 수용

| 표 5-104 | 입·출원 인원

입·출원		성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입원	계	남	3,382	3,848	4,314	3,863	3,223	2,884	2,763	2,974	2,770	2,392
		여	631	706	665	572	484	504	476	510	539	565
	전년도 이월	남	978	1,217	1,202	1,197	1,175	945	928	858	924	695
		여	213	224	195	201	169	155	215	176	186	185
	송치	남	2,265	2,534	2,995	2,548	1,933	1,858	1,754	2,022	1,729	1,607
		여	396	426	435	341	295	321	241	308	333	349
	임시퇴원 취소	남	139	97	117	118	115	81	81	94	117	90
		여	22	56	35	30	20	28	20	26	20	31
	이탈학생 재수용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출원	계	남	2,381	2,360	2,954	2,685	2,275	1,961	1,900	2,029	2,064	1,700
		여	439	401	446	401	333	281	316	320	352	358
	퇴원	남	1,595	1,555	1,873	1,676	1,254	1,119	1,045	1,135	1,049	877
		여	226	235	278	243	188	164	147	194	210	183
	임시퇴원	남	735	768	1,036	941	952	786	788	832	946	747
		여	199	158	159	145	137	103	158	114	123	137
	처분변경·취소	남	31	25	29	48	46	43	41	36	50	58
		여	13	8	9	12	8	13	10	8	18	35
	사망	남	-	-	-	-	-	-	-	-	-	-
		여	-	-	-	1	-	-	-	-	-	-
	이탈	남	-	-	1	-	-	-	-	-	-	-
		여	-	-	-	-	-	-	-	-	-	-
	기타	남	20	12	15	20	23	13	26	26	19	18
		여	1	-	-	-	-	1	1	4	1	3

주) 1. 송치 :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구,6호) 및 10호(구,7호) 인원)
2. 이탈 : 이탈 후 당해연도에 재수용 되지 않은 인원
3. 기타 : 유죄판결 등
4. 입원인원 중 "송치+임시퇴원 취소=신수용인원"

| 표 5-105 | 1일 평균 수용인원

기관 \ 연도 / 성별		2010	기관	성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남	963	계	남	1,063	1,188	1,207	1,056	921	932	981	869	738
	여	200		여	201	202	173	181	192	199	185	209	208
서 울	남	208	서 울	남	254	270	295	270	236	234	246	204	172
	여	-		여	-	-	-	-	-	-	-	-	-
부 산	남	127	부 산	남	140	161	175	132	118	138	124	111	86
	여	1		여	-	1	1	1	1	1	1	-	-
대 구	남	130	대 구	남	127	143	128	137	130	141	137	114	94
	여	-		여	-	-	-	-	-	-	-	-	-
광 주	남	99	광 주	남	142	165	161	129	94	104	134	107	95
	여	-		여	-	-	-	1	-	-	-	-	-
전 주	남	112	전 주	남	110	126	128	123	108	92	81	91	102
	여	-		여	-	-	-	-	-	-	-	-	-
대 덕	남	142	대 전	남	146	165	139	112	111	92	109	106	64
	여	9		여	16	14	9	10	5	6	12	15	20
청 주	남	-	청 주	남	-	-	-	-	-	-	-	-	-
	여	54		여	48	60	54	46	45	45	45	85	85
안 양	남	-	안 양	남	-	-	-	-	-	-	-	-	-
	여	136		여	137	127	109	123	141	147	127	109	103
춘 천	남	106	춘 천	남	112	128	151	117	93	89	107	103	92
	여	-		여	-	-	-	-	-	-	-	-	-
제 주	남	39	제 주	남	32	30	30	36	31	42	43	33	33
	여	-		여	-	-	-	-	-	-	-	-	-
대 전	남												
	여												
창 원	남												
	여												
안 산	남												
	여												
대 전 의 료	남												
	여												

'07. 7. 23. 기관폐지

주)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표 5-106 | 기관별 신수용 인원

기관 \ 연도 / 성별		2010	기관	성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남	2,404	계	남	2,534	2,994	2,666	2,048	1,939	1,835	2,116	1,846	1,697
	여	418		여	426	435	371	315	349	261	334	353	380
서 울	남	344	서 울	남	521	552	635	489	474	442	524	482	474
	여	-		여	-	-	-	-	-	-	-	-	-
부 산	남	381	부 산	남	322	337	351	267	281	213	265	208	198
	여	60		여	31	46	44	44	44	54	48	38	43
대 구	남	174	대 구	남	138	129	88	110	143	176	162	78	73
	여	38		여	25	16	21	15	25	16	13	5	6
광 주	남	79	광 주	남	97	116	146	154	122	90	137	139	147
	여	17		여	27	19	40	28	36	9	28	20	39
전 주	남	48	전 주	남	69	109	69	16	5	-	5	3	385
	여	12		여	22	15	3	-	-	-	-	-	-
대 덕	남	1,285	대 전	남	1279	1,540	1,242	921	828	849	943	876	362
	여	21		여	22	10	9	4	3	15	21	8	30
청 주	남	-	청 주	남	-	-	-	-	-	-	-	-	-
	여	168		여	181	228	137	106	110	71	102	31	105
안 양	남	-	안 양	남	-	-	-	-	-	-	-	-	-
	여	90		여	105	90	113	108	122	87	114	233	150
춘 천	남	54	춘 천	남	74	146	90	53	66	38	39	30	41
	여	4		여	4	3	-	6	1	3	1	9	3
제 주	남	39	제 주	남	34	65	45	38	20	27	41	30	17
	여	8		여	9	8	4	4	8	6	7	9	4
대 전	남												
	여												
창 원	남												
	여												
안 산	남												
	여												
대 전 의 료	남												
	여												

'07. 7. 23. 기관폐지

주)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표 5-107 | 수용기간별 인원

기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755	2,716	3,399	3,005	2,531	2,171	2,138	2,275	2,328	1,943
1월 미만	1,356	1,370	1,680	1,348	969	883	773	902	830	16
3월 미만	86	76	125	96	80	62	62	47	64	705
6월 미만	653	649	796	894	769	670	676	777	773	535
6월 이상	100	76	115	149	108	91	126	115	131	240
7월 이상	5	4	16	20	19	15	13	8	12	5
8월 이상	15	14	28	15	19	28	13	20	8	11
9월 이상	20	32	26	26	29	16	14	16	25	18
10월 이상	24	23	14	11	13	16	11	12	18	9
11월 이상	13	11	10	11	20	15	12	8	20	17
12월 이상	86	32	39	25	30	30	47	19	49	64
13월 이상	156	91	139	81	77	43	71	46	85	94
14월 이상	134	161	181	114	91	86	83	90	99	78
15월 이상	69	117	138	82	132	84	75	71	87	51
16월 이상	31	38	53	72	80	58	73	59	53	32
17월 이상	4	14	23	30	37	30	37	49	37	21
18월 이상	1	3	8	21	35	26	21	23	24	15
19월 이상	-	4	4	7	19	11	11	10	7	13
20월 이상	2	1	4	3	4	7	20	3	6	4
평균수용기간(월)	4.61	4.66	4.66	4.9	5.18	4.8	5.35	4.85	5.1	5.6

※ 대상 : 퇴원 및 임시퇴원

나. 보호소년 분류처우

| 표 5-108 | 처우과정 분류인원

기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822	2,960	3,429	3,037	2,363	2,288	2,096	2,450	2,199	2,077
7호	소계	51	104	111	94	108	109	83	132	141	116
	기타	51	104	111	94	108	109	83	132	141	116
8호	소계	1,334	1,328	1,680	1,296	925	802	762	880	801	707
	기타	1,334	1,328	1,680	1,296	925	802	762	880	801	707
9호	소계	782	780	975	960	768	766	713	857	741	716
	교과	54	57	132	111	125	168	161	95	87	97
	직업	-	-	-	77	70	102	72	243	219	236
	특성화	189	178	244	188	134	178	136	132	74	78
	기타	539	545	599	584	439	318	344	387	361	305
10호	소계	655	748	663	687	562	611	538	581	516	538
	교과	118	227	174	196	118	53	31	45	34	64
	직업	297	244	295	279	294	408	332	374	314	349
	특성화	47	62	50	36	27	13	12	8	1	-
	기타	193	215	144	176	123	137	163	154	167	125

※ 대상 : 신수용인원

다. 보호소년 교육

| 표 5-109 | 교과교육 수료인원

기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86	287	389	228	139	135	154	187	208	253
초등학교	-	-	-	-	-	-	-	-	-	-
중 학 교	206	198	210	101	49	32	25	26	18	95
고등학교	80	89	179	127	90	103	129	161	190	158

| 표 5-110 | 검정고시 합격인원

기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94	497	688	619	670	600	676	617	447	420
초졸	4	5	3	4	3	1	-	-	-	-
중졸	228	254	283	246	224	190	152	141	76	65
고졸	162	238	402	369	443	409	524	476	371	355

| 표 5-111 | 직업훈련 수료인원

기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직 업 훈 련	386	374	523	472	497	500	640	552	633	532

| 표 5-112 | 기능자격 취득 인원

기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644	2,980	3,125	2,687	3,301	3,106	3,681	4,710	4,762	4,188
일 반 기 능	634	670	900	774	947	992	1,238	1,524	1,634	1,478
컴 퓨 터 관 련	1,387	1,642	1,581	1,292	1,590	1,288	1,415	1,524	1,341	1,181
외 국 어 관 련	45	41	48	-	-	-	-	-		-
기 타	578	627	596	621	764	826	1,028	1,662	1,787	1,529

| 표 5-113 | 학생 사회봉사활동 현황

(단위 : 명)

기간 \ 연도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					정보화교육 봉사활동		
	소 계	PC등 수리	복지 시설 방문	농촌 일손 돕기	지역 행사 지원 등	소 계	지역 주민	장애인
계	15,754	11	5,148	345	10,250	38	0	38
2010	2,759	4	935	74	1,746	28	-	28
2011	2,246	7	800	71	1,368	8	-	8
2012	2,546	-	837	72	1,637	2	-	2
2013	1,220	-	511	16	693	-	-	-
2014	1,477	-	480	18	979	-	-	-
2015	1,035	-	356	56	623	-	-	-
2016	1,399	-	345	9	1,045	-	-	-
2017	1,050	-	294	18	738	-	-	-
2018	1,011	-	348	6	657	-	-	-
2019	1,011	-	242	5	764	-	-	-

| 표 5-114 | 취업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취업인원	328	261	313	273	327	234	423	417	352	303

| 표 5-115 | 상급학교 진학 현황

(단위 : 명)

기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08	111	137	115	134	154	159	167	165	104
대 학 교	38	22	45	45	71	91	93	88	86	55
고등학교	70	89	92	70	63	63	66	79	79	49

라. 위탁소년 수용·분류심사

| 표 5-116 | 입·출원 인원

구분		성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입원	계	남	5,486	5,691	5,746	5,888	5,230	5,508	4,778	4,931	4,745	4,055
		여	1,277	1,445	1,307	1,228	1,095	1,104	1,051	1,372	1,398	1,305
	이월인원	남	387	366	392	336	341	364	348	333	338	307
		여	81	88	77	69	75	68	73	61	102	98
	신수용인원	남	5,099	5,325	5,354	5,552	4,889	5,144	4,430	4,598	4,407	3,748
		여	1,196	1,357	1,230	1,159	1,020	1,036	978	1,311	1,296	1,207
	이탈자재수용	남	-	-	-	-	-	-	-	-	-	-
		여	-	-	-	-	-	-	-	-	-	-
출원	계	남	4,942	5,359	5,351	5,547	4,866	5,159	4,446	4,593	4,439	3,778
		여	1,185	1,348	1,240	1,153	1,027	1,030	992	1,270	1,300	1,223
	보호자위탁	남	22	13	14	8	10	29	16	14	19	11
		여	15	8	6	9	4	8	-	6	10	5
	보호시설위탁	남	460	435	440	492	429	474	430	456	438	454
		여	145	195	189	197	181	163	201	241	281	249
	소년원송치	남	1,797	2,049	2,243	2,090	1,684	1,709	1,507	1,689	1,455	1,227
		여	340	321	312	301	270	319	243	288	305	285
	보호관찰부보호자위탁	남	2,321	2,483	2,262	2,603	2,318	2,472	2,121	2,138	2,139	1,789
		여	592	697	599	555	494	418	461	630	591	589
	위탁변경	남	130	107	111	112	114	112	92	72	65	38
		여	12	24	40	26	25	21	18	17	14	12
	심리불개시	남	-	-	1	-	-	-	-	-	-	-
		여	1	-	-	-	-	-	-	-	-	-
	불처분	남	20	5	15	16	10	9	8	5	8	11
		여	2	-	-	2	2	2	2	1	-	2
	이탈	남	-	-	-	-	-	-	-	-	-	-
		여	-	-	-	-	-	-	-	-	-	-
	기타	남	192	267	265	226	301	354	272	219	315	248
		여	78	103	94	63	51	99	67	87	99	81
연말현재인원		남	371	337	336	341	364	348	333	338	307	276
		여	70	79	69	75	68	73	61	101	98	83

| 표 5-117 | 1일 평균 수용인원

기관 \ 연도 / 성별		2010	기 관	성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남	341	계	남	367	379	391	391	364	327	348	334	301
	여	77		여	89	85	80	80	72	71	95	97	95
부 산 (부산심)	남	63	부 산 (부산심)	남	83	78	74	73	78	70	70	66	63
	여	12		여	17	17	11	11	16	17	18	16	19
대 구 (대구심)	남	27	대 구 (대구심)	남	27	25	28	28	28	32	30	25	25
	여	8		여	7	5	7	7	5	6	6	6	6
광 주 (광주심)	남	40	광 주 (광주심)	남	34	35	41	41	37	35	43	36	27
	여	9		여	8	8	8	8	8	6	10	9	6
전 주	남	15	전 주	남	14	11	7	7	-	-	-	-	-
	여	4		여	4	2	2	2	-	-	-	-	-
대 덕	남	36	대 전	남	28	20	24	24	26	35	28	33	28
	여	6		여	6	4	5	5	5	7	11	11	9
춘 천	남	10	춘 천	남	12	14	11	12	9	9	15	11	12
	여	4		여	4	4	2	2	1	1	2	2	4
제 주	남	2	제 주	남	1	1	3	3	3	2	2	3	4
	여	1		여	-	-	1	1	1	1	1	0	1
서울심	남	148	서울심	남	168	195	203	203	183	144	160	160	141
	여	33		여	43	45	44	44	36	34	47	53	51

※ 2007. 7. 23. 기관통폐합에 따라 ( )의 심사원기능은 소년원에서 수행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4. 1. 9. 전주소년원 위탁(유치) 업무 광주소년원 이전

| 표 5-118 | 기관별 위탁 인원

기관 \ 연도 / 성별		2010	기 관	성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남	5,099	계	남	5,325	5,352	5,552	4,889	5,142	4,430	4,598	4,407	3,748
	여	1,196		여	1,357	1,230	1,159	1,020	1,036	979	1,311	1,296	1,207
부 산 (부산심)	남	966	부 산 (부산심)	남	1,257	1,208	1,074	1,059	1,055	893	901	771	670
	여	207		여	271	250	167	195	213	211	249	186	205
대 구 (대구심)	남	363	대 구 (대구심)	남	342	327	336	367	368	395	344	297	278
	여	113		여	103	66	89	71	68	73	75	71	66
광 주 (광주심)	남	559	광 주 (광주심)	남	426	422	495	403	463	413	513	452	348
	여	124		여	110	99	105	97	110	73	110	120	73
전 주	남	170	전 주	남	181	144	111	1	-	-	-	-	-
	여	49		여	50	32	28	1	-	-	-	-	-
대 덕	남	620	대 전 (대전의료)	남	454	299	355	305	387	450	363	422	356
	여	114		여	101	56	75	57	81	102	150	140	107
춘 천	남	135	춘 천	남	176	207	161	176	139	144	215	182	169
	여	54		여	61	54	33	31	18	19	34	31	51
제 주	남	50	제 주	남	22	30	38	44	44	27	26	36	40
	여	16		여	15	8	14	21	16	8	11	7	16
서울심	남	2,236	서울심	남	2,467	2,715	2,982	2,534	2,686	2,108	2,236	2,247	1,887
	여	519		여	646	665	648	547	530	493	682	741	689

※ 2007. 7. 23. 기관통폐합에 따라 ( )의 심사원기능은 소년원에서 수행
※ 2011. 5. 4. '대덕소년원'이 '대전소년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4. 1. 9. 전주소년원 위탁(유치) 업무 광주소년원 이전

| 표 5-119 | 위탁기간별 인원

기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출원 인 원	6,164	6,707	6,589	6,700	5,893	6,187	5,438	5,863	5,739	5,000
10일 미만	164	159	158	124	154	166	106	124	144	70
10 ~ 20일	1,491	1,182	1,053	949	754	950	679	562	616	371
21 ~ 30일	3,578	4,367	4,200	4,392	3,874	3,850	3,326	3,851	3,573	3,134
31 ~ 40일	784	851	916	1,026	877	1,014	1,018	1,032	1,001	907
41 ~ 50일	113	128	198	145	191	160	250	238	291	400
51 ~ 60일	34	20	64	64	43	47	58	56	114	118

※ ( )는 위탁변경, 불처분, 심리불개시 등 인원

| 표 5-120 | 비행원인진단 실시인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분 류 심 사	5,723	6,007	5,435	6,357	5,543	5,804	5,116	5,614	5,385	4,755
상 담 조 사	5,301	5,296	5,148	4,382	4,261	4,119	3,993	4,179	3,224	2,421
검사결정전조사	397	126	7	-	-	-	25	-	-	-

| 표 5-121 | 비행예방프로그램 실시인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76,577	82,942	89,342	154,934	196,798	408,850	371,625	408,850	315,184	336,404
대안교육	소 계	12,862	23,382	30,122	23,013	23,630	36,638	49,317	54,019	50.635	48,698
	일반학생	11,396	21,280	26,814	19,739	18,359	31,298	43,305	48,410	45,180	41,557
	가소유예	1,124	1,191	2,034	2,767	4,993	5,123	5,757	5,416	4,365	4,608
	보호처분	342	911	1,274	507	278	217	255	193	1,090	2,533
청소년심리상담		6,438	7,973	9,445	9,377	10,020	11,046	12,473	12,933	10,868	12,322
보 호 자 교 육		6,626	7,498	8,101	8,246	9,192	8,964	9,465	13,314	12,024	10,373
법 교 육		50,651	44,089	41,674	114,298	153,956	211,331	300,370	328,584	241,657	265,011

※ 보호자교육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소년보호기관 통합 실적임

| 표 5-122 | 법원 보호처분결정별 인원

판정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6,164	6,707	6,591	6,700	5,893	6,189	5,438	5,863	5,739	5,000
1호	37	21	20	17	14	37	16	20	29	16
2호	39	54	47	59	31	42	46	47	80	73
3호	34	50	35	65	69	55	33	29	88	56
4호	1,214	1,287	1,088	1,132	1,153	1,464	1,118	1,169	1,323	1,049
5호	1,663	1,893	1,773	2,026	1,659	1,426	1,464	1,599	1,407	1,285
6호	605	643	650	689	610	637	631	697	719	703
7호	50	79	87	69	88	74	63	99	116	95
8호(1개월)	941	1,035	1,164	860	682	672	525	593	531	372
9호(단기)	621	618	754	837	684	714	670	774	658	607
10호(장기)	525	638	627	622	501	568	492	511	455	479
기타	435	389	346	324	402	500	380	325	333	265

주) 소년법 개정(2007. 12. 21. 2008. 6. 22. 시행)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2호처분 : 수강명령
3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4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처분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호처분 : 병원, 요양소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처분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기 타 : 불처분

제4절 인권업무 통계

| 표 5-123 |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실적

구분 / 연도	민·가사 법률구조(건)			형사구조(건)	법률상담(건)
	계	소송전구조	소송구조		
2008	99,043	190	98,853	25,952	1,194,603
2009	108,654	120	108,534	24,619	1,260,401
2010	113,092	115	112,977	19,579	1,281,792
2011	122,057	133	121,924	13,888	1,242,783
2012	126,898	123	126,775	13,612	1,409,916
2013	136,747	116	136,631	16,257	1,482,762
2014	143,853	98	143,755	21,546	1,505,699
2015	148,161	112	148,049	21,759	1,486,795
2016	150,088	64	150,024	21,468	1,481,186
2017	149,446	104	149,342	17,791	1,373,195
2018	154,585	187	154,398	16,770	1,320,476
2019	168,039	169	167,870	15,480	1,399,103

| 표 5-124 | 범죄피해자 지원활동(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실적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상담	경제·의료 지원	신변보호	기 타
2013	57,240	41,748	10,140	1,641	3,711
2014	78,977	57,071	11,867	1,082	8,957
2015	89,699	66,876	11,773	512	10,538
2016	109,484	80,763	12,247	407	16,067
2017	159,728	121,223	14,655	503	23,347
2018	184,412	139,294	15,817	538	28,763
2019	192,266	156,939	17,313	485	17,529

| 표 5-125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단위 : 천 원, 명)

구분 \ 예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액	2,246,220	3,268,220	9,305,000	9,584,000	7,929,000	7,728,000	9,773,000	9,712,000	9,870,000	9,870,000	9,870,000
보상인원	205	209	287	291	312	331	382	279	264	248	305
지급금액	2,204,833	3,416,782	5,410,033	6,250,686	7,912,273	7,070,624	9,770,720	9,257,269	9,289,429	10,175,047	11,516,297

| 표 5-126 | 인권침해사건 접수현황

구분 \ 연도	합 계	수 사	교 정	출입국	범죄예방	기타
2014	1,755	54	1,369	56	147	129
2015	1,809	26	1,545	30	125	83
2016	2,620	62	2,252	26	124	156
2017	2,782	73	2,355	26	129	199
2018	2,935	50	2,520	30	150	185
2019	3,435	78	2,942	49	111	255

| 표 5-127 | 인권침해사건 처리현황(신수기준)

구분 \ 연도	합 계	각 하	이 첩	기 각	인용·구제 (인용·구제율)
2014	1,715	921	495	217	82(4.7%)
2015	1,780	930	543	223	84(4.6%)
2016	2,513	1,289	846	293	85(3.2%)
2017	2,533	1,326	891	236	80(2.9%)
2018	2,623	1,476	887	189	71(2,4%)
2019	3,012	1,538	1,165	249	60(1.99%)

제5절 교정업무 통계

1. 수용자 수용 현황

가. 수용현황

| 표 5-128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용정원			45,930	45,690	45,690	45,690	46,430	46,600	46,600	47,820	47,820	47,990
1일평균수용인원			47,471	45,845	45,488	47,924	50,128	53,892	56,495	57,298	54,744	54,624
수용내용	기결구금자	소 계	32,652	31,644	31,302	32,278	32,751	34,625	35,618	37,006	35,877	35,281
		수형자	30,607	29,820	29,448	30,181	30,727	32,649	33,791	35,382	34,380	33,813
		노역수	2,045	1,824	1,854	2,097	2,024	1,976	1,827	1,624	1,497	1,468
	미결구금자	소 계	14,819	14,201	14,186	15,646	17,377	19,267	20,877	20,292	18,867	19,343
		피의자	786	724	703	712	747	847	864	753	643	632
		피고인	14,033	13,477	13,483	14,934	16,630	18,420	20,013	19,539	18,224	18,711

| 표 5-129 | 인구대비 수용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인 구	1일 평균 수용인원	인구대비 1일 평균수용인원(%)	교도관 정원	교도관 대비 평균수용인원
2010	48,874,539	47,471	0.097	15,221	3.1
2011	49,779,000	45,845	0.092	15,478	3.0
2012	50,004,441	45,488	0.091	15,757	2.9
2013	51,141,463	47,924	0.094	15,476	3.1
2014	51,327,916	50,128	0.098	15,934	3.1
2015	51,529,338	53,892	0.105	15,887	3.4
2016	51,696,216	56,495	0.109	15,892	3.6
2017	51,779,148	57,298	0.111	15,871	3.6
2018	51,824,477	54,744	0.106	15,999	3.4
2019	51,849,861	54,624	0.105	16,101	3.4

| 표 5-130 | 수용자 성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5,681	45,038	46,708	48,824	51,760	54,667	57,675	55,198	54,169	54,099
수형자	소 계	31,981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남	30,534	29,694	29,863	30,525	31,661	33,122	34,281	33,905	32,932	32,384
	여	1,447	1,504	1,571	1,612	1,783	1,976	2,198	2,262	2,339	2,313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4.5	4.8	5.0	5.0	5.3	5.6	6.0	6.3	6.6	6.7
미결수용자	소 계	13,700	13,840	15,274	16,687	18,316	19,569	21,196	19,031	18,898	19,402
	남	12,772	12,915	14,263	15,376	17,008	18,026	19,488	17,520	17,340	17,863
	여	928	925	1,011	1,311	1,308	1,543	1,708	1,511	1,558	1,539
	총수에 대한 여자비율(%)	6.8	6.7	6.6	7.9	7.1	7.9	8.1	7.9	8.2	7.9

| 표 5-131 | 수형자 연령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1,981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16세 미만	1	2	16	6	3	0	2	4	1	4
18세 미만	46	49	70	55	50	47	46	45	35	41
20세 미만	304	231	251	280	270	262	290	244	248	231
25세 미만	2,457	2,153	2,147	2,327	2,514	2,609	2,642	2,484	2,335	2,255
25세 이상	3,295	2,899	2,539	2,366	2,247	2,244	2,450	2,562	2,779	2,860
30세 이상	8,436	8,018	7,681	7,677	7,584	7,678	7,678	7,543	7,059	6,834
40세 이상	9,925	9,708	9,714	9,714	9,986	10,310	10,275	9,712	9,307	8,637
50세 이상	5,876	6,344	6,866	7,362	7,989	8,624	9,255	9,330	9,067	9,033
60세 이상	1,641	1,794	2,150	2,350	2,801	3,324	3,841	4,243	4,440	4,802

| 표 5-132 | 외국인 수용인원(국적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250	1,198	1,132	1,222	1,271	1,884	1,997	2,096	2,079	2,315
소계	기 결	911	848	769	773	770	1,123	1,232	1,320	1,338	1,416
	미 결	339	350	363	449	501	761	765	776	741	899
중국	기 결	510	488	482	488	492	800	852	903	805	730
	미 결	169	206	223	269	340	500	477	431	343	426
일본	기 결	17	14	4	3	4	6	8	8	7	7
	미 결	-	2	2	1	3	1	1	4	4	2
미국	기 결	22	24	30	30	34	35	37	35	37	40
	미 결	19	12	20	20	24	29	28	26	28	17
기타	기 결	362	322	253	252	240	282	335	374	489	639
	미 결	151	130	118	159	134	231	259	315	366	454

| 표 5-133 | 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1,981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절 도	5,898	5,315	4,752	4,650	4,599	4,420	4,061	3,858	3,678	3,549
폭력행위등 처벌법	2,430	2,343	2,396	2,582	2,748	2,863	2,815	2,624	2,547	2,509
사기 및 횡령	3,897	3,951	4,150	5,024	5,911	6,834	7,699	7,630	8,029	8,024
성 폭 력	4,394	4,877	5,215	5,845	6,284	6,272	5,953	5,480	5,711	5,717
마 약 류	1,336	1,339	1,295	1,380	1,344	1,553	1,890	2,133	2,002	1,996
과 실 범	1,175	1,123	1,257	1,315	1,463	1,423	1,691	1,722	1,896	1,851
강 도	3,882	3,623	3,506	3,276	3,014	2,821	2,552	2,333	2,038	1,919
살 인	3,785	3,729	3,711	3,675	3,750	3,728	3,584	3,484	3,291	3,228
기 타	5,184	4,898	5,152	4,390	4,331	5,184	6,234	6,903	6,279	5,904

| 표 5-134 | 수형자 형명, 형기별 인원

(단위 : 명)

형명·형기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1,981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징역	소 계	30,683	29,889	30,082	30,796	32,064	33,694	35,048	34,736	33,847	33,288
	1년 미만	5,430	5,421	5,322	5,078	5,312	5,724	6,362	6,050	6,169	5,599
	1년 이상	10,673	9,666	9,829	10,344	10,898	12,001	13,010	13,208	12,591	12,819
	3년 이상	6,458	6,610	6,493	6,613	6,866	6,870	6,747	6,727	6,589	6,340
	5년 이상	4,197	4,335	4,601	4,912	5,088	5,216	5,195	5,029	4,886	4,902
	10년 이상	3,396	3,344	3,317	3,299	3,335	3,283	3,127	3,071	2,927	2,903
	20년 이상	529	513	520	550	565	600	607	651	685	725
금고	소 계	72	45	84	53	60	67	86	73	87	66
	6월 미만	4	2	2	1	4	5	8	1	1	5
	6월 이상	35	23	51	32	33	37	39	31	29	27
	1년 이상	29	15	26	16	19	17	28	28	41	25
	3년 이상	4	5	5	4	4	8	11	13	16	9
무기징역		1,226	1,264	1,268	1,288	1,320	1,337	1,345	1,358	1,337	1,343

| 표 5-135 | 수형자 입소 경력별 인원

(단위 : 명)

사유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1,981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무경험자		15,384	15,225	16,676	17,483	18,604	19,794	20,649	20,055	19,558	18,955
유경력자	소 계	16,597	15,973	14,758	14,654	14,840	15,304	15,830	16,112	15,713	15,742
	1 회	5,835	5,373	5,308	5,292	5,552	5,987	6,437	6,979	6,741	6,474
	2 회	2,850	2,622	2,540	2,515	2,531	2,506	2,665	2,728	2,668	2,847
	3 회	2,066	1,993	1,889	1,833	1,790	1,742	1,685	1,615	1,623	1,638
	4회이상	5,846	5,985	5,021	5,014	4,967	5,069	5,043	4,790	4,681	4,783

| 표 5-136 | 수형자 입·출소 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입소자	계	62,862	55,046	53,689	55,479	56,044	62,395	64,541	62,624	57,562	56,420
	신 입 소	32,817	27,253	26,145	27,333	26,573	29,357	28,330	24,851	22,421	21,827
	형 확 정	25,380	23,163	22,931	23,267	24,281	27,206	30,269	31,500	29,477	29,225
	기 타	4,665	4,630	4,613	4,879	5,190	5,832	5,942	6,273	5,664	5,368
출소자	계	63,228	55,436	53,202	54,297	54,203	60,414	62,979	62,819	58,303	56,900
	형기종료	17,468	16,551	15,742	16,374	17,191	19,187	21,357	23,324	21,759	21,092
	가 석 방	8,083	7,129	6,500	6,201	5,394	5,507	7,157	8,275	8,693	8,174
	사 면	12	0	374	13	282	559	479	309	0	561
	기 타	21,105	17,367	16,857	17,501	16,173	15,927	14,184	12,559	11,031	10,177
	노역종료	16,560	14,389	13,729	14,208	15,163	19,234	19,802	18,352	16,820	16,896
연도말 인원		31,981	31,198	31,434	32,137	33,444	35,098	36,479	36,167	35,271	34,697

나. 미결구금자

| 표 5-137 | 미결구금자 입소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8,335	44,300	43,152	44,274	48,265	52,129	55,240	51,863	47,986	47,581
신 입 소		44,276	40,084	39,029	39,604	43,171	46,585	49,405	45,976	42,461	42,120
기 타 (보석취소 등)		4,059	4,216	4,123	4,670	5,094	5,544	5,835	5,887	5,525	5,461

| 표 5-138 | 미결구금자 출소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61,815	43,987	41,433	42,651	46,272	50,654	53,470	53,890	47,913	47,061
구속취소		1,893	1,465	1,355	1,400	1,669	2,056	2,452	2,761	2,538	2,474
벌 금		1,574	1,235	947	1,078	1,224	1,306	1,310	1,218	976	775
집행유예		13,074	11,030	9,941	10,100	11,777	12,914	12,447	11,227	8,985	8,831
보 석		3,885	3,376	2,662	2,882	3,167	3,069	2,678	2,555	2,127	2,105
형 확 정		24,351	21,955	21,660	22,017	23,155	25,985	29,019	30,173	28,216	28,040
기 타		17,038	4,926	4,868	5,174	5,280	5,324	5,564	5,956	5,071	4,836
연도말인원		13,700	13,840	15,274	16,687	18,317	19,569	21,196	19,031	18,898	19,402

※ 2011년 통계부터 교정기관간 이송·이입 인원은 제외함

다. 소년수형자

| 표 5-139 |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46	114	170	152	131	130	150	128	105	116
절 도	45	26	42	43	34	26	23	24	17	10
사기·횡령	3	-	2	1	2	10	2	12	12	9
폭력·상해	1	5	17	17	5	10	27	4	3	11
강 간 등	32	33	54	46	34	27	35	44	24	26
강 도 등	33	18	24	16	11	14	19	8	5	14
살 인	11	10	11	7	6	5	5	4	4	3
과 실 범	3	1	2	-	2	2	2	-	1	4
기 타	18	21	18	22	37	36	37	32	39	39

| 표 5-140 |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단위 : 명)

형명형기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46	114	170	152	131	130	150	128	105	116
징역형	무 기	-	-	-	-	-	-	-	-	-	-
	20년 이상	-	1	2	4	1	-	-	-	1	-
	10년 이상	5	4	5	4	3	2	2	-	-	1
	5년 이상	15	12	13	10	11	12	13	9	13	21
	3년 이상	45	38	44	39	42	48	56	47	33	45
	1년 이상	58	48	94	87	67	56	69	64	55	45
	1년 미만	23	10	12	8	7	11	8	8	2	4
	6월 미만	-	1	-	-	-	1	1	-	1	-
금고형	3년 미만	-	-	-	-	-	-	-	-	-	-
	1년 미만	-	-	-	-	-	-	1	-	-	-

| 표 5-141 |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14	69	86	101	103	74	94	83	67	57
가 석 방	21	10	17	10	12	8	9	10	5	11
부정기형집행 종료결정	-	-	-	-	-	-	-	-	-	-
형 기 종 료	75	45	45	68	78	53	64	38	43	37
기 타	18	14	24	23	13	13	21	35	19	9

라. 외부교통권

| 표 5-142 | 수용자 원격화상접견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건 수	159,144	163,186	178,762	198,458	214,205	246,045	279,423	288,953	294,150	316,462

| 표 5-143 | 수용자 전화사용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건 수	490,903	463,230	487,228	488,153	501,483	569,562	576,357	555,883	594,835	588,130

| 표 5-144 | 수용자 접견예약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건 수	345,762	374,780	410,980	479,481	533,348	579,852	657,241	751,207	969,264	903,667

| 표 5-145 | 수용자 접견 실적

(단위 : 건)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건 수	2,030,847	1,964,389	1,979,015	2,159,672	2,425,321	2,576,186	2,807,596	2,737,767	2,504,718	2,471,940

마. 재복역률 및 가석방

| 표 5-146 | 2015년 출소자의 누적 재복역률

재복역 기간	'15년 출소자의 누적 재복역률 (출소자 24,356명)	
	재복역 인원	비 율
3월 이내	78	0.3%
6월 이내	469	1.9%
1년 이내	2,017	8.3%
2년 이내	4,828	19.8%
3년 이내	6,486	26.6%

※ 조사대상인원 : 24,356명

※ 출소자 재복역률 개념

출소자 재복역률이란,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15년에 형기종료, 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

| 표 5-147 | 출소사유별·재복역기간별·성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총출소 인원		재복역 인원		재복역기간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전체	여자
총 계	24,356	1,743	6,486	202	78	1	391	17	1,548	35	2,811	96	1,658	53
형기종료	18,269	1,009	6,024	182	76	1	382	17	1,474	33	2,599	88	1,493	43
가석방	5,507	620	404	16	2	-	6	-	63	1	185	7	148	8
감호기간종료	-	-	-	-	-	-	-	-	-	-	-	-	-	-
가출소	23	-	7	-	-	-	-	-	1	-	4	-	2	-
사 면	557	114	51	4	-	-	3	-	10	1	23	1	15	2

※ 출소사유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 32%, 가석방 7.3%, 감호기간 종료 0.0%, 가출소 30.4%, 사면 9.2%

※ 재복역기간별 누적 재복역률 : 3월 이내 0.32%, 6월 이내 1.93%, 1년 이내 8.2%, 2년 이내 19.7%, 3년 이내 26.6%

※ 재복역기간별 인원 : 3월 이내 78명(1.2%), 3월 이상 6월 이내 391명(6%), 6월 이상 1년 이내 1,548명(23.9%), 1년 이상 2년 이내 2,811명(43.3%), 2년 이상 3년 이내 1,658명(25.5%)

※ 성별 재복역률 : 남자 27.8%, 여자 12.9%

| 표 5-148 | 출소자 범수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범수				
			1범	2범	3범	4범	5범 이상
총계	출소인원	24,356	13,992	4,110	1,798	1,100	3,356
	재복역인원	6,486	1,761	1,236	774	561	2,154
	재복역률	26.6	12.6	30.1	43.0	51.0	64.2
형기종료	출소인원	18,269	8,790	3,303	1,743	1,096	3,337
	재복역인원	6,024	1,463	1,088	763	560	2,150
	재복역률	33.0	16.6	32.9	43.8	51.1	64.4
가석방	출소인원	5,507	4,685	769	51	-	2
	재복역인원	404	254	142	7	-	1
	재복역률	7.3	5.4	18.5	13.7	-	50.0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재복역인원	-	-	-	-	-	-
	재복역률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23	-	3	3	2	15
	재복역인원	7	-	1	3	-	3
	재복역률	30.4	-	33.3	100.0	-	20.0
사면	출소인원	557	517	35	1	2	2
	재복역인원	51	44	5	1	1	-
	재복역률	9.2	8.5	14.3	100.0	50.0	-

※ 범수별 재복역률 : 초범 12.6%, 2범 30.1%, 3범 43.0%, 4범 51.0%, 5범 이상 64.2%
※ 출소사유별 범수별 재복역률 : 형기종료 5범(64.4%), 가석방 2범(18.5%), 가출소 3범(100.0%), 사면 3범(100.0%)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5-149 | 출소자 연령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연령					
			20세 미만	20세 ~ 29세	30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 59세	60세 이상
계	출소인원	24,356	153	3,506	5,164	7,060	6,257	2,216
	재복역인원	6,486	70	1,051	1,410	1,954	1,588	413
	재복역률	26.6	45.8	30.0	27.3	27.7	25.4	18.6
형기종료	출소인원	18,269	125	2,297	3,957	5,461	4,771	1,658
	재복역인원	6,024	56	905	1,282	1,868	1,520	393
	재복역률	33.0	44.8	39.4	32.4	34.2	31.9	23.7
가석방	출소인원	5,507	17	1,149	1,096	1,434	1,325	486
	재복역인원	404	8	120	117	80	62	17
	재복역률	7.3	47.1	10.4	10.7	5.6	4.7	3.5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재복역률	-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23	-	-	2	7	13	1
	재복역인원	7	-	-	2	2	3	-
	재복역률	30.4	-	-	100.0	28.6	23.1	-
사면	출소인원	557	11	60	109	158	148	71
	재복역인원	51	6	26	9	4	3	3
	재복역률	9.2	54.5	43.3	8.3	2.5	2.0	4.2

※ 연령별 재복역률
20세 이내 45.8%, 20대 30.0%, 30대 27.3%, 40대 27.7%, 50대 25.4%, 60대 이상 18.6%
※ 출소사유별 연령별 재복역률
형기종료(44.8%), 가석방(47.1%)은 20세 미만의 재복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5-150 | 출소자 죄명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죄명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행위	절도	사기·횡령	마약류	과실범	기타
계	출소인원	24,356	582	628	1,644	3,098	3,379	8,043	1,417	2,159	3,406
	재복역인원	6,486	45	175	302	1,071	1,694	1,259	693	589	658
	재복역률	26.6	7.7	27.9	18.4	34.6	50.1	15.7	48.9	27.3	19.3
형기종료	출소인원	18,269	272	429	1,637	2,735	2,937	4,920	1,416	1,618	2,305
	재복역인원	6,024	35	152	299	1,018	1,566	1,124	693	518	619
	재복역률	33.0	12.9	35.4	18.3	37.2	53.3	22.8	48.9	32.0	26.9
가석방	출소인원	5,507	309	191	1	341	374	2,713	1	509	1,068
	재복역인원	404	10	21	-	50	102	113	-	70	38
	재복역률	7.3	3.2	11.0	-	14.7	27.3	4.2	-	13.8	3.6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재복역률	-	-	-	-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23	-	8	6	-	9	-	-	-	-
	재복역인원	7	-	2	3	-	2	-	-	-	-
	재복역률	30.4	-	25.0	50.0	-	22.2	-	-	-	-
사면	출소인원	557	1	-	-	22	59	410	-	32	33
	재복역인원	51	-	-	-	3	24	22	-	1	1
	재복역률	9.2	-	-	-	13.6	40.7	5.4	-	3.1	3.0

※ 죄명별 재복역률
살인(7.7%), 강도(27.9%), 성폭력(18.4%), 폭력(34.6%), 절도(50.1%), 사기·횡령(15.7%), 마약류(48.9%), 과실범(27.3%)
※ 출소사유별 죄명별 재복역률
형기종료(49.6%) 및 가석방(27.3%)·사면(40.7%)은 절도가, 가출소(33.3%)는 성폭력의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남

| 표 5-151 | 출소자 형기별 재복역률

출소사유	구분	총출소인원	재복역자 형기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계	출소인원	24,356	902	7,362	12,070	2,741	665	294	218	73	31
	재복역인원	6,486	249	1,957	3,325	754	114	46	31	7	3
	재복역률	26.6	27.6	26.6	27.5	27.5	17.1	15.6	14.2	9.6	9.7
형기종료	출소인원	18,269	879	6,256	8,157	2,005	538	221	146	47	20
	재복역인원	6,024	248	1,873	3,014	702	110	43	26	5	3
	재복역률	33.0	28.2	29.9	36.9	35.0	20.4	19.5	17.8	10.6	15.0
가석방	출소인원	5,507	16	981	3,542	686	126	66	59	23	8
	재복역인원	404	1	72	274	50	4	1	1	1	-
	재복역률	7.3	6.3	7.3	7.7	7.3	3.2	1.5	1.7	4.3	-
감호기간종료	출소인원	-	-	-	-	-	-	-	-	-	-
	재복역인원	-	-	-	-	-	-	-	-	-	-
	재복역률	-	-	-	-	-	-	-	-	-	-
가출소	출소인원	23	-	-	-	-	-	4	13	3	3
	재복역인원	7	-	-	-	-	-	2	4	1	-
	재복역률	30.4	-	-	-	-	-	50.0	30.8	33.3	-
사면	출소인원	557	7	125	371	50	1	3	-	-	-
	재복역인원	51	-	12	37	2	-	-	-	-	-
	재복역률	9.2	-	9.6	10.0	4.0	-	-	-	-	-

※ 형기별 재복역률
6월 미만(27.6%), 6월 이상 1년 미만(26.6%), 1년 이상 3년 미만(27.5%), 3년 이상 5년 미만(27.5%), 5년 이상 7년 미만(17.1%), 7년 이상 10년 미만(15.6%), 10년 이상 15년 미만(14.2%), 15년 이상 20년 미만(9.6%), 20년 이상(9.7%)
※ 출소사유별 형기별 재복역률
형기종료(36.9%) 및 가석방(7.7%)은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재복역률이 높게 나타남

| 표 5-152 | 수형자 가석방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원	8,083	7,129	6,500	6,201	5,394	5,507	7,157	8,275	8,693	8,174

2. 수용자 교육·교화 현황

가. 학과교육, 프로그램, 입상 등

| 표 5-153 | 검정고시 교육인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874	873	761	785	720	609	556	616	639	655
고졸 검정	536	569	485	510	498	428	411	444	473	498
중졸 검정	260	238	207	228	188	147	126	150	155	144
초졸 검정	78	66	69	47	34	34	19	22	11	13

| 표 5-154 | 검정고시 합격인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481	514	558	571	565	575	533	508	492	502
고졸 검정	291	325	390	370	390	394	383	371	364	379
중졸 검정	169	162	130	187	163	147	133	125	120	113
초졸 검정	21	27	38	14	12	34	17	12	8	10

| 표 5-155 |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인원

(단위 : 명)

소 별 \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교육인원	40	40	30	30	30	30	30	21	22	17
	졸업인원	13	10	5	9	6	7	6	5	7	6
천안	교육인원	-	-	-	-	-	-	-	-	-	-
	졸업인원	-	-	-	-	-	-	-	-	-	-
김천	교육인원	40	40	30	30	30	30	30	21	22	17
	졸업인원	13	10	5	9	6	7	6	5	7	6

| 표 5-156 | 수형자 문화프로그램 시행 현황

연 도	기 관	횟 수	인 원(명)	비 고
2010	50	401	53,639	
2011	51	457	68,162	
2012	51	503	78,826	
2013	51	535	68,786	
2014	51	654	58,412	
2015	52	846	55,468	
2016	52	1,285	61,110	
2017	52	1,428	63,671	
2018	38	1,322	50,873	
2019	52	917	43,018	

| 표 5-157 | 일반수형자 정신교육 및 인성교육 실적

(단위 : 명)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집중인성)	2016 (집중인성)	2017 (집중인성)	2018 (집중인성)	2019 (집중인성)
실시인원	9,245	8,744	6,789	6,202	5,763	8,604	10,066	10,525	9,909	11,566

나. 귀휴 등 사회적 처우

| 표 5-158 | 귀휴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 원	1,157	1,165	1,209	1,282	1,356	999	1,084	1,142	1,198	1,193

| 표 5-159 |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 원	5,108	4,323	4,099	4,245	4,417	4,322	4,991	5,080	4,850	4,859

| 표 5-160 | 가족만남의 날 행사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 원	11,078	11,566	11,681	11,578	11,855	12,755	14,393	11,095	8,891	9,004

| 표 5-161 | 가족만남의 집 이용 인원

(단위 : 명)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 원	1,223	1,120	1,177	1,261	1,338	1,361	1,431	1,583	1,913	1,908

다. 교정위원 활동

| 표 5-162 | 교정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5,220	5,069	4,915	4,833	4,688	4,706	4,765	4,830	4,777	4,592
교화위원	2,232	2,070	1,971	1,915	1,778	1,804	1,790	1,845	1,812	1,702
종교위원	1,963	1,962	1,942	1,967	1,924	1,895	1,931	1,910	1,891	1,864
교육위원	248	225	218	211	246	275	315	329	328	333
의료위원	140	123	112	108	98	102	98	97	91	84
취업위원	637	689	672	632	642	630	631	649	655	609

| 표 5-163 | 교화위원 현황

(2019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교 육	법 조	사회사업	실 업	공무원	기 타
인 원	1,702	62	38	77	1,148	22	355

| 표 5-164 | 종교위원 현황

(2019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기독교	불 교	천주교	기 타
인 원	1,864	874	614	341	35

| 표 5-165 | 교육위원 현황

(2019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교 수	교 사	학원강사	직업훈련 강사	기 타
인 원	333	79	12	28	12	202

| 표 5-166 | 의료위원 현황

(2019 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의 사	한의사	약 사	간호사	기 타
인 원	84	74	2	1	0	7

| 표 5-167 | 취업위원 현황

(201912. 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실 업	사회사업	교 육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기 타
인 원	609	409	18	52	41	89

| 표 5-168 | 교화위원 활동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상 담 (명)	1,454	1,728	1,615	1,591	2,390	1,629	1,734	1,704	1,334	2,371
교화강연(회)	15	13	6	3	8	11	15	5	3	14
자매결연(명)	778	719	186	363	515	519	341	204	306	1,101
수 용 생 활 지 원 (명)	4,747	4,739	4,440	4,619	6,992	5,867	6,726	4,434	5,363	6,068

| 표 5-169 | 종교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교리지도(명)	44,678	37,072	39,667	41,207	37,790	29,560	36,876	33,215	37,085	35,670
자매결연(명)	12,466	9,652	2,920	3,989	3,448	3,828	3,333	7,158	11,641	12,360
수 용 생 활 지 원 (명)	24,891	26,093	27,305	24,780	22,336	22,170	23,962	24,725	28,224	37,336
교 화 도 서 기 증 (권)	3,429	2,361	1,782	401	670	346	3,441	164	3,809	1,013

| 표 5-170 | 교육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교육훈련지도(명)	8,777	8,783	7,665	6,761	7,668	11,401	14,162	18,003	20,428	18.520
자매결연(명)	6	7	4	8	29	18	13	44	-	-
수용생활지원(명)	400	110	1	-	11	36	187	67	93	20
교화도서기증(권)	97	89	276	-	20	100	43	249	-	230

| 표 5-171 | 의료위원 활동실적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의료지원(명)	2,754	6,029	4,970	4,762	4,731	10,716	12,310	11,566	13,295	12,410
자매결연(명)	1	-	3	2	5	9	3	-	-	-
수용생활지원(명)	29	38	19	-	-	45	115	68	120	380
교화도서기증(권)	-	33	-	-	-	-	-	-	100	-

3.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가. 교도작업

| 표 5-172 | 취업 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형자 총인원		31,975	31,032	31,620	32,076	32,867	34,425	36,082	35,990	34,633	34,605
취업 불가능인원		8,575	8,469	9,053	9,140	9,085	10,458	12,154	11,613	11,510	11,662
취업가능인원	계	23,400	22,563	22,567	22,936	23,782	23,967	23,928	24,377	23,123	22,942
	취업인원	18,892	19,379	18,826	18,991	21,471	22,090	22,100	22,265	21,351	21,562
	비율(%)	81	86	83	83	90	92	92	91	92	94
	불취업인원	4,508	3,184	3,741	3,945	2,311	1,877	1,828	2,112	1,772	1,380

※ 감호작업은 제외

| 표 5-173 | 생산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획	31,800	32,000	32,913	33,789	37,699	42,082	55,541	57,033	60,056	60,893
실적	33,053	39,220	38,038	42,099	47,247	55,792	62,239	66,127	65,732	62,704
실적/계획(%)	103.9	122.6	115.6	124.6	125.3	132.6	112.1	115.9	109.5	103.0
실적 증가율(%)	△2.0	18.7	△3.0	10.7	12.2	18.1	11.6	6.2	△0.6	△0.5

| 표 5-174 | 작업형태별 생산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실 적	33,053	39,220	38,038	42,099	47,246	55,792	62,239	66,127	65,732	62,704
직영작업	실 적	21,284	26,496	22,951	22,873	24,801	30,228	34,998	38,141	37,905	34,326
	구성비 (%)	64.4	67.6	60.3	54.3	52.5	54.2	56.2	57.7	57.7	54.7
위탁작업	실 적	5,455	6,170	7,907	11,548	15,026	17,448	18,763	19,312	19,886	20,158
	구성비 (%)	16.5	15.7	20.8	27.4	31.8	31.3	30.1	29.2	30.2	32.2
외통·개방	실 적	6,154	6,256	7,004	7,020	7,217	7,914	8,330	8,456	7,807	8,114
	구성비 (%)	18.6	16.0	18.4	16.7	15.3	14.2	13.4	12.8	11.9	12.9
기타	실 적	160	298	176	658	202	202	148	218	134	107
	구성비 (%)	0.5	0.8	0.5	1.6	0.4	0.4	0.2	0.3	0.2	0.2

| 표 5-175 | 연도별 관수용품 등 공급실적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생산총액		33,053	39,220	38,038	42,099	47,247	55,792	62,239	66,127	65,732	62,704
관수용품	계	19,146	23,857	20,320	19,354	22,504	28,503	31,723	35,343	28,617	26,595
	교정기관	18,492	23,081	19,513	18,757	20,535	25,971	27,479	31,060	24,949	23,570
	법무부산하	145	153	346	296	311	205	994	74	99	1,162
	부 외 처	509	623	461	301	1,658	2,327	3,250	4,209	3,569	1,863
일반판매		13,907	15,363	17,718	22,745	24,743	27,289	30,516	30,784	37,115	36,109

| 표 5-176 | 작업장려금 지급실적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급액 (천 원)	10,174,852	10,550,869	11,966,506	14,901,986	17,798,954	20,231,129	20,853,628	22,641,637	22,074,502	23,129,488
지 급 연인원 (명)	4,745,771	4,958,200	4,965,893	5,022,670	4,435,528	5,634,098	5,615,637	5,874,204	4,967,883	5,187,748
1인당 1일평균 (원)	2,144	2,128	2,410	2,967	4,013	3,591	3,713	3,854	4,443	4,458

| 표 5-177 | 수용자 조위금·위로금 지급실적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급인원	8	6	5 (1)	3	-	5	5 (2)	2	5 (2)	2
지 급 액	69,627	60,804	73,735 (42,709)	11,346	-	98,729	96,308 (90,034)	20,040	145,466 (103,986)	10,287

※ ( )는 조위금

| 표 5-178 |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 지급실적

(단위 : 천 원)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 급 액	423,956	549,227	599,907	700,846	630,667	687,043	449,740	405,258	167,154	151,133
지급인원	90	97	122	117	98	92	64	32	16	21
1인당 평균 지급액	4,711	5,662	4,917	5,990	6,435	7,468	7,027	36,241	36,520	38,348

| 표 5-179 | 최근 5년간 세입·세출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 연도별	총세입액	총세출액	세계잉여금	비 고
2015	85,801	53,834	31,967	
2016	104,461	86,244	18,217	
2017	97,566	90,298	7,268	
2018	118,233	110,222	8,011	
2019	114,086	100,203	13,883	

※ 총세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 표 5-180 | 국유재산 및 주요장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계	국유재산	공작물 등
163,394	161,683	1,771

| 표 5-181 | 작업장려금 1일 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생 산 작 업									비 생 산 작 업								
작 업 종 류	직영 개방지역작업			직영 집중근로 (위탁 집중근로)			직영 일반생산작업 (위탁 일반생산작업)			운영지원작업						직업훈련		
										일반운영 지원작업			취사원					
등 급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지급액	15,000	12,000	10,000	8,500 (8,000)	7,500 (7,000)	6,500 (6,000)	3,000 (2,800)	2,500 (2,300)	2,000 (1,900)	1,400	1,300	1,200	3,500	3,000	2,500	1,100	1,000	900

| 표 5-182 | 연도별 취업 지원 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취업	1,174	1,080	1,238	1,405	1,576	1,503	1,663	1,670	1,542	1.557

나. 직업훈련

| 표 5-183 | 직업훈련 실시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725	3,825	4,129	4,852	6,276	6,484	6,644	6,727	6,939	6,433
양성·향상 훈 련	3,164	3,076	3,386	3,336	3,811	3,758	3,913	3,719	4,313	4,276
숙련훈련	327	369	350	249	397	360	364	457	608	626
일반훈련	234	380	393	1,267	2,068	2,366	2,367	2,551	2,018	1,531

| 표 5-184 | 기술자격 취득인원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856	2,803	2,813	2,953	3,278	3,264	3,316	3,443	3,424	3,338
기 술 사	-	-	-	-	-	-	-	-	-	-
기 능 장	-	2	4	4	1	5	4	-	-	2
기 사	4	4	-	11	-	-	1	-	1	-
산업기사	277	288	252	158	79	50	56	92	87	60
기 능 사	2,575	2,509	2,557	2,780	3,198	3,209	3,255	3,351	3,336	3,276

| 표 5-185 |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34	86	85	95	101	87	76	77	98	99
지방대회	118	71	72	84	88	77	64	63	76	76
전국대회	16	15	13	11	13	10	12	14	22	23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1.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 표 5-186 |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계	42,988,101	45,422,910	50,322,102	54,966,229	61,652,158
	승 객	38,863,373	40,976,012	45,744,545	48,888,699	55,316,870
	승무원	4,124,728	4,446,898	4,577,557	6,077,530	6,335,288
국민	소 계	25,585,627	26,064,463	28,136,628	30,352,303	32,722,368
	승 객	23,419,302	23,759,315	25,557,744	27,646,533	29,971,333
	승무원	2,166,325	2,305,148	2,578,884	2,705,770	2,751,035
외국인	소 계	17,402,474	19,358,447	22,185,474	24,613,926	28,929,790
	승 객	15,444,071	17,216,697	20,186,801	21,242,166	25,345,537
	승무원	1,958,403	2,141,750	1,998,673	3,371,760	3,584,253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계	66,372,908	79,987,974	80,407,702	88,908,420	93,548,093
	승 객	60,054,078	73,916,823	75,134,915	83,558,252	87,822,137
	승무원	6,318,830	6,071,151	5,272,787	5,350,168	5,725,956
국민	소 계	39,111,816	45,313,898	53,445,030	57,859,670	57,795,389
	승 객	36,228,736	42,197,580	50,130,062	54,321,526	54,198,298
	승무원	2,883,080	3,116,318	3,314,968	3,538,144	3,597,091
외국인	소 계	27,261,092	34,674,076	26,962,672	31,048,750	35,752,704
	승 객	23,825,342	31,719,243	25,004,853	29,236,726	33,623,839
	승무원	3,435,750	2,954,833	1,957,819	1,812,024	2,128,865

2.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87 |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7,774,645	8,666,503	10,121,950	10,678,334	12,682,019
중국	1,723,849	2,045,380	2,731,121	3,923,190	5,663,482
일본	3,004,066	3,270,290	3,497,525	2,715,451	2,254,307
미국	693,892	694,990	733,984	743,017	798,858
타이완	438,041	457,680	570,442	566,200	666,805
홍콩	221,121	272,600	352,019	391,340	550,268
필리핀	94,897	113,552	126,566	133,595	162,615
태국	219,231	262,703	334,502	313,347	412,217
말레이시아	98,807	136,531	161,970	187,322	227,434
베트남	92,810	106,360	110,250	114,357	141,827
인도네시아	61,592	85,351	110,209	119,179	132,547
러시아	77,024	86,129	104,273	119,691	164,628
싱가포르	100,526	110,610	138,813	157,696	185,712
인도	49,762	52,009	56,329	60,675	68,097
캐나다	112,496	112,417	119,943	122,330	135,163
오스트레일리아	105,304	114,844	121,795	114,106	129,504
영국	90,331	97,817	104,724	106,783	113,786
독일	81,396	80,142	86,327	86,759	89,004
프랑스	58,531	60,209	63,555	67,836	73,846
몽골	41,889	48,632	61,771	65,446	63,584
우즈베키스탄	22,385	29,910	42,133	44,326	48,777
뉴질랜드	25,792	25,504	28,239	27,065	29,119
기타	360,903	402,843	465,460	498,623	570,439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중국	6,154,730	8,268,262	4,393,936	5,032,906	6,284,486
일본	1,859,190	2,321,842	2,337,588	2,976,444	3,303,088
미국	859,361	960,683	969,277	1,068,173	1,139,150
타이완	551,362	865,948	957,836	1,146,215	1,290,683
홍콩	524,116	651,639	659,182	679,942	685,569
필리핀	412,197	566,693	459,588	471,532	516,503
태국	375,021	474,262	503,777	565,784	580,191
말레이시아	223,782	311,686	308,152	383,467	409,254
베트남	199,323	299,084	380,929	519,448	624,640
인도네시아	194,472	296,377	231,908	250,248	280,146
러시아	191,214	238,171	275,779	308,665	350,093
싱가포르	160,402	221,844	216,574	232,359	246,736
인도	154,294	196,773	124,458	120,975	144,758
캐나다	147,715	178,023	178,761	196,859	208,280
오스트레일리아	134,357	153,125	151,583	154,390	174,681
영국	124,833	136,900	128,046	133,149	146,132
독일	101,251	111,413	111,077	117,173	121,989
프랑스	85,093	93,039	94,013	101,854	112,588
몽골	81,201	82,780	108,139	118,783	118,977
우즈베키스탄	59,453	71,299	81,711	89,391	95,634
뉴질랜드	28,806	32,038	33,526	34,652	39,504
기타	737,528	886,426	863,669	928,113	1,007,421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3. 항구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88 |

항구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계	7,774,645	8,666,503	10,121,950	10,678,334	12,682,019
인천공항	5,360,400	5,810,937	6,694,670	6,791,570	7,910,157
제주공항	372,620	374,352	610,609	1,035,720	1,188,019
김해공항	462,688	578,389	706,527	768,412	826,736
김포공항	867,397	1,097,356	1,200,431	1,080,350	1,056,803
부산항	250,111	236,334	259,977	244,125	223,248
인천항	296,826	364,524	364,662	416,320	465,523
청주공항	23,292	20,577	37,470	70,967	190,906
평택항	42,008	71,655	113,328	96,698	141,425
대구공항	8,700	12,039	9,962	11,961	40,523
군산항	24,889	28,568	28,877	30,859	35,035
감천항	7,509	7,327	9,384	9,800	10,070
울산항	6,772	8,120	7,928	8,593	8,429
광양항	2,164	3,431	2,452	9,651	9,622
오산공항	17,037	21,388	26,380	24,943	29,920
무안공항	3,490	4,135	4,591	23,639	32,019
양양공항	2,437	2,253	11,320	19,231	86,785
동해항	7,581	11,017	9,962	8,329	8,320
여수항	4,388	4,774	12,376	10,809	4,649
창원항	1,319	1,879	1,658	1,659	2,380
서산항	2,153	2,309	2,216	2,186	2,380
속초항	4,138	56	526	7,452	8,879
기타	6,726	5,083	6,644	5,060	400,191

항구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인천공항	7,778,178	10,010,950	9,288,559	10,789,900	11,983,837
제주공항	958,601	1,327,513	555,387	839,775	1,220,957
김해공항	789,992	1,059,397	1,062,683	1,279,277	1,375,031
김포공항	943,451	1,029,912	922,837	1,084,115	1,165,403
부산항	460,625	850,990	412,465	380,537	450,550
인천항	543,334	621,693	332,305	410,667	510,530
청주공항	194,255	237,282	61,021	68,166	89,695
평택항	170,805	179,051	211,138	210,495	296,933
대구공항	51,145	103,339	68,730	107,407	204,324
군산항	47,844	65,265	76,979	109,649	169,779
감천항	56,558	57,818	57,964	56,697	60,005
울산항	48,852	48,071	46,328	43,955	43,266
광양항	29,080	44,614	38,986	35,377	34,642
오산공항	36,431	34,994	32,599	32,306	28,809
무안공항	37,727	34,295	4,074	7,717	20,770
양양공항	47,005	34,202	2,446	13,699	12,113
동해항	21,234	27,978	31,066	28,465	28,423
여수항	20,337	26,904	26,031	31,798	59,960
창원항	13,526	13,191	13,034	13,071	13,389
서산항	6,433	6,590	7,782	8,527	8,425
속초항	1,386	1,101	11,858	4,969	5,938
기타	1,102,902	1,603,157	305,237	73,953	97,724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 오산공항은 2016년부터 평택으로 명칭 변경

4.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현황

| 표 5-189 |

체류자격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계	7,774,645	8,666,503	10,121,950	10,678,334	12,682,019
사증면제(B-1)	803,617	909,930	1,066,334	1,090,907	1,426,293
관광통과(B-2)	4,601,828	4,969,884	5,524,120	5,040,354	5,335,626
단기상용(C-2)	224,574	182,404	22	-	-
단기종합(C-3)	959,374	1,324,640	2,102,656	2,728,573	3,725,073
유 학(D-2)	106,961	112,291	111,219	114,818	117,836
기술연수(D-3)	2,274	2,274	1,951	1,806	1,663
일반연수(D-4)	30,938	37,432	34,413	37,282	45,624
종 교(D-6)	2,346	2,190	4,083	2,362	2,323
주 재(D-7)	7,930	8,469	8,908	9,234	9,103
기업투자(D-8)	37,966	38,102	39,584	39,859	40,550
무역경영(D-9)	16,848	18,191	17,456	32,326	38,867
교 수(E-1)	7,454	7,824	8,181	8,186	7,323
회화지도(E-2)	47,405	44,108	40,848	38,572	34,567
연 구(E-3)	7,829	8,023	8,525	9,223	9,670
예술흥행(E-6)	4,183	3,655	4,162	4,368	4,710
특정활동(E-7)	24,525	29,143	35,907	36,904	39,260
비전문취업(E-9)	82,099	106,442	99,140	105,738	115,294
선원취업(E-10)	7,084	8,900	7,173	8,281	9,574
방문동거(F-1)	34,595	29,597	38,883	41,740	41,043
거 주(F-2)	122,063	117,377	19,099	24,948	30,189
동 반(F-3)	26,459	27,671	31,704	36,544	40,173
재외동포(F-4)	129,142	190,212	227,836	280,130	349,137
영 주(F-5)	41,561	58,805	70,890	87,497	101,184
기 타	445,590	428,939	618,856	898,682	1,156,937

체류자격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17,880,503
사증면제(B-1)	1,249,506	1,556,536	1,634,095	1,908,616	2,053,173
관광통과(B-2)	4,632,593	5,833,225	5,269,825	6,378,362	7,158,538
단기상용(C-2)	-	-	-	-	-
단기방문(C-3)	3,635,898	5,026,435	3,319,579	4,127,283	5,184,417
유 학(D-2)	140,160	169,715	212,295	248,472	291,007
기술연수(D-3)	1,934	1,678	1,723	1,449	1,103
일반연수(D-4)	62,550	81,033	90,357	83,538	84,653
종 교(D-6)	2,292	2,348	2,428	2,313	2,398
주 재(D-7)	8,991	9,160	8,548	8,460	9,072
기업투자(D-8)	40,795	42,007	41,984	41,886	42,442
무역경영(D-9)	33,958	26,302	18,288	9,705	8,669
교 수(E-1)	7,555	7,550	7,491	7,160	6,904
회화지도(E-2)	32,299	32,158	30,922	27,291	29,115
연 구(E-3)	9,810	9,494	9,618	9,508	9,212
예술흥행(E-6)	4,596	3,996	3,765	4,570	5,436
특정활동(E-7)	43,300	46,324	47,528	46,661	46,475
비전문취업(E-9)	123,433	134,764	140,072	145,174	151,116
선원취업(E-10)	9,431	9,877	10,720	11,737	11,634
방문동거(F-1)	49,310	69,742	82,857	88,747	97,159
거 주(F-2)	35,728	43,041	48,924	53,672	58,425
동 반(F-3)	43,222	43,684	40,048	38,402	40,284
재외동포(F-4)	405,948	468,336	515,587	565,636	579,522
영 주(F-5)	118,553	134,138	151,115	162,760	177,531
기 타	2,667,839	3,666,764	1,881,740	1,659,120	1,832,218

※ 외국인입국자 현황은 2014년까지 승무원 제외, 2015년 이후 승무원 포함

5.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 표 5-190 |

국가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1,899,519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중국	955,871	1,016,607	1,018,074	1,070,566	1,101,782
베트남	136,758	149,384	169,738	196,633	224,518
미국	138,660	140,222	143,568	151,018	156,982
태국	93,348	100,860	153,259	197,764	209,909
필리핀	54,977	56,980	58,480	60,139	62,398
우즈베키스탄	47,103	54,490	62,870	68,433	75,320
일본	47,909	51,297	53,670	60,878	86,196
인도네시아	46,538	47,606	45,328	47,366	48,854
캄보디아	43,209	45,832	47,105	47,012	47,565
몽골	30,527	35,206	45,744	46,286	48,185
네팔	30,185	34,108	36,627	40,456	42,781
타이완	30,002	34,003	36,168	41,306	42,767
러시아	19,384	32,372	44,851	54,064	61,427
스리랑카	26,678	27,650	26,916	25,828	25,064
캐나다	25,177	26,107	25,692	25,934	26,789
미얀마	19,209	22,455	24,902	28,074	29,294
방글라데시	14,849	15,482	16,066	16,641	18,340
오스트레일리아	12,303	13,870	13,008	14,279	15,222
파키스탄	11,987	12,639	12,697	13,275	13,990
인도	10,414	10,515	11,244	11,945	12,929
영국	7,275	7,180	6,727	6,972	7,550
기타	97,156	114,576	127,764	142,738	166,794

6.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 표 5-191 |

체류자격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1,899,519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사증면제(B-1)	95,427	112,323	177,629	228,194	248,753
관광통과(B-2)	104,287	118,566	121,725	149,474	204,541
단기방문(C-3)	154,105	190,443	199,518	218,743	256,696
단기취업(C-4)	685	594	1,719	1,302	1,645
유 학(D-2)	66,334	76,040	86,875	102,690	118,254
기술연수(D-3)	3,497	2,950	2,705	2,461	1,964
일반연수(D-4)	31,810	41,592	49,939	59,729	63,691
종 교(D-6)	1,727	1,719	1,723	1,594	1,561
상사주재(D-7)	1,492	1,631	1,340	1,308	1,400
기업투자(D-8)	5,924	5,999	5,939	5,889	5,909
무역경영(D-9)	7,236	5,697	2,982	2,520	2,352
교 수(E-1)	2,612	2,511	2,427	2,341	2,187
회화지도(E-2)	16,144	15,450	14,352	13,749	13,910
연 구(E-3)	3,145	3,174	3,214	3,145	3,132
예술흥행(E-6)	4,924	4,302	3,704	3,633	3,549
특정활동(E-7)	20,299	21,498	21,206	21,884	21,314
비전문취업(E-9)	276,042	279,187	279,127	280,312	276,755
선원취업(E-10)	15,138	15,312	16,069	17,447	17,603
방문동거(F-1)	85,759	103,826	111,449	118,192	122,886
거 주(F-2)	38,881	39,681	40,594	41,099	43,671
동 반(F-3)	22,652	22,828	22,457	22,360	22,890
재외동포(F-4)	328,187	372,533	415,121	444,880	464,152
영 주(F-5)	123,255	130,237	136,334	142,151	153,291
방문취업(H-2)	285,342	254,950	238,880	250,381	226,322
기 타	204,615	226,398	223,470	232,129	246,228

7. 청·사무소(출장소)별 등록외국인 현황

| 표 5-192 |

사무소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1,143,087	1,161,677	1,171,762	1,246,626	1,271,807
서 울	118,466	116,280	113,921	119,496	118,335
서 울 남 부	130,208	126,799	121,990	130,854	127,223
부 산	66,351	47,788	48,752	51,849	52,323
인 천	94,630	97,343	102,281	112,056	118,283
수 원	153,856	119,924	123,675	132,472	133,871
제 주	16,960	19,593	21,689	24,841	25,668
대 구	46,183	47,524	48,647	51,947	54,698
대 전	33,696	35,358	36,771	39,186	41,593
여 수	5,734	5,897	6,004	6,576	6,817
양 주	35,473	36,416	36,774	38,212	39,806
광 주	27,635	29,724	31,564	33,479	34,535
창 원	31,728	31,279	30,815	30,911	30,854
춘 천	10,138	10,561	11,146	11,808	12,196
청 주	31,290	34,169	35,357	38,148	39,114
전 주	20,661	21,830	23,322	25,647	26,973
울 산	35,380	32,933	30,701	31,295	32,239
세 종 로 (출)	59,947	63,173	63,312	67,776	69,750
안 산 (출)	87,233	85,796	85,764	91,433	91,164
구 미 (출)	13,360	13,287	13,127	13,140	13,078
포 항 (출)	7,166	7,557	7,844	8,612	8,740
천 안 (출)	32,239	34,530	37,231	39,703	41,226
서 산 (출)	6,925	7,394	7,676	8,115	8,308
고 양 (출)	22,024	22,524	22,929	23,939	24,080
목 포 (출)	14,122	14,452	13,386	14,204	15,424
거 제 (출)	15,051	14,178	9,089	7,473	8,302
군 산 (출)	5,533	5,490	5,266	5,700	6,101
평 택 (출)	-	37,829	40,424	43,855	45,606
김 해 (출)	-	20,761	21,123	21,315	21,883
기 타	21,098	21,288	21,182	22,584	23,617

8.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 표 5-193 |

지역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1,143,087	1,161,677	1,171,762	1,246,626	1,271,807
경 기	369,665	373,923	381,628	408,526	414,318
서 울	274,957	273,441	267,153	283,984	281,876
경 남	82,316	81,021	75,136	74,304	76,123
충 남	60,064	64,098	68,280	73,174	76,375
인 천	57,669	59,103	62,596	67,869	72,259
경 북	49,765	51,351	53,364	56,969	58,119
부 산	39,991	41,840	42,837	45,738	45,999
충 북	32,637	35,499	36,656	39,537	40,714
전 남	30,566	31,750	31,221	33,042	34,638
전 북	26,194	27,320	28,588	31,347	33,074
대 구	26,141	26,493	26,442	28,033	30,191
울 산	26,183	23,457	20,513	20,002	20,450
광 주	18,455	19,920	21,279	22,815	23,825
제 주	16,960	19,593	21,689	24,841	25,668
대 전	16,416	17,035	17,431	18,184	19,109
강 원	15,108	15,833	16,949	18,261	19,069

※ 충남은 세종시(5,700명) 포함

9.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 표 5-194 |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754,427	775,715	841,308	878,665	878,439
중 국	647,717	652,028	702,932	728,539	719,269
미 국	46,737	46,050	45,177	45,011	45,655
캐 나 다	15,397	15,959	15,947	15,933	16,046
우즈베키스탄	20,653	26,385	31,081	34,355	36,752
러 시 아	8,590	15,555	21,264	25,302	28,020
오스트레일리아	4,521	4,609	4,617	4,624	4,783
뉴 질 랜 드	2,310	2,387	2,395	2,436	2,490
카 자 흐 스 탄	2,504	5,236	9,223	12,586	14,992
독 일	920	908	854	841	809
일 본	812	817	827	826	852
기 타	4,266	5,781	6,991	8,212	8,771

10.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 표 5-195 |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96,357	115,927	135,087	160,671	180,131
유학(D-2)	66,334	76,040	86,875	102,690	118,254
한국어연수(D-41)	30,017	39,873	48,208	57,971	61,867
외국어연수(D-47)	6	14	4	10	10
증감률(전년대비, %)	(11.5%)	(20.3%)	(16.5%)	(18.9%)	12.1%

국가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96,357	115,927	135,087	160,671	180,131
중국	59,192	66,614	67,133	68,994	71,719
베트남	7,445	15,193	27,563	45,143	57,539
몽골	4,847	6,000	7,784	8,650	8,739
우즈베키스탄	1,442	2,386	4,793	7,840	10,499
일본	2,213	2,384	2,464	2,676	2,887
인도네시아	1,316	1,365	1,418	1,520	1,461
파키스탄	1,164	1,266	1,461	1,720	1,905
인도	1,059	1,151	1,406	1,411	1,451
말레이시아	961	1,099	1,093	1,075	969
미국	1,119	1,062	1,119	1,210	1,385
(타이완)	911	1,030	1,211	1,354	1,108
방글라데시	677	824	1,016	1,206	1,387
러시아	708	769	826	884	965
네팔	690	722	1,078	1,636	2,331
필리핀	660	672	666	659	613
기타	11,953	13,390	14,056	14,693	15,173

11. 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 표 5-196 |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인 원	151,608	152,374	155,457	159,206	166,025
증감률 (전년대비, %)	(0.4%)	(0.5%)	(2.0%)	(2.4%)	(4.3%)

국가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151,608	152,374	155,457	159,206	166,025
중 국	58,788	56,930	57,644	58,706	60,324
베 트 남	40,847	41,803	42,205	42,460	44,172
일 본	12,861	13,110	13,400	13,738	14,184
필 리 핀	11,367	11,606	11,783	11,836	12,030
캄 보 디 아	4,555	4,473	4,459	4,496	4,641
미 국	3,192	3,354	3,471	3,658	3,883
태 국	2,821	3,182	3,671	4,411	5,130
몽 골	2,384	2,381	2,396	2,438	2,497
우 즈 베 키 스 탄	2,244	2,302	2,367	2,425	2,688
캐 나 다	1,295	1,318	1,345	1,320	1,334
러 시 아	1,305	1,321	1,367	1,494	1,668
네 팔	1,081	1,032	974	901	884
파 키 스 탄	915	936	937	968	984
타 이 완	823	929	1,072	1,213	1,394
영 국	792	842	911	969	1,045
인 도 네 시 아	653	687	748	809	905
방 글 라 데 시	355	369	369	368	375
기 타	5,330	5,799	6,338	6,996	7,887

12. 연도별 국적 처리현황

| 표 5-197 |

국가 \ 연도	허가 유형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귀화	10,924	10,108	10,086	11,556	9,914
	회복	2,610	2,303	2,775	2,698	2,443
중국	귀화	6,477	5,126	4,781	4,838	4,371
	회복	193	113	245	144	181
베트남	귀화	2,722	3,289	3,742	4,849	3,867
	회복	47	56	57	45	39
필리핀	귀화	280	337	359	597	423
	회복	6	3	7	7	11
몽골	귀화	101	107	93	99	102
	회복	10	7	17	14	6
우즈베키스탄	귀화	81	62	48	72	78
	회복	28	19	27	12	6
일본	귀화	44	35	29	17	14
	회복	49	31	38	53	41
태국	귀화	45	41	52	58	52
	회복	5	5	4	5	3
파키스탄	귀화	24	33	51	42	48
	회복	0	0	10	2	0
기타	귀화	1,150	1,078	931	984	959
	회복	2,272	2,069	2,370	2,416	2,156

13.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 표 5-198 |

구분 \ 연도		총계	'94~'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청	1차	64,358	5,069	1,574	2,896	5,711	7,541	9,942	16,173	15,452
	이의 신청	23,742	2,202	349	1,759	3,258	5,277	3,722	3,113	4,062
심사 완료	소계	51,789	4856	914	3,349	6,238	10,603	9,634	6,882	9,313
	1차	31,854	2,901	598	2,388	4,244	6,327	5,219	4,298	5,879
	이의 신청	19,935	1,955	316	961	1,994	4,276	4,415	2,584	3,434
철회	소계	10,738	895	350	408	351	815	1,245	2,412	4,262
	1차	10,184	840	327	362	278	735	1,197	2,305	4,140
	이의 신청	554	55	23	46	73	80	48	107	122

14. 난민신청 심사결과

| 표 5-199 |

구분 \ 연도		총계	1994~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심사완료		28,600	2,646	523	1,574	2,755	5,664	5,876	3,964	5,598
난민 인정 (보호)	소계 (보호율, %)	3,239 (11.03%)	495 (18.7)	63 (1.2)	627 (40)	303 (11)	350 (62)	438 (7.4)	652 (16.4)	311 (5.6)
	인정 (인정율, %)	1,022 (3.6)	324 (12.2)	57 (10.9)	94 (6)	105 (3.8)	98 (1.7)	121 (2.1)	144 (3.6)	79 (1.4)
	인도적 체류	2,217	171	6	533	198	252	317	508	232
불인정		25,361	2,151	460	947	2,452	5,314	5,438	3,312	5,287

※ 인정취소 7건 및 철회 1건 포함(2009년 4건, 2010년 2건, 2011년 1건, 2014년 1건)

法務年鑑



자 료

제1절 직제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제3절 장관 연설문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제6절 인사
제7절 국외훈련·출장
제8절 국제교류 현황
제9절 상훈
제10절 위원회 현황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제1절 직제

1. 직제 연혁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	1948. 7.17.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 제정 공포	• 정부수립과 동시 법무부 설치
2	1948. 9.13.	대통령령 제3호	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	• 과도정부 사법부(법률기초국과 법률조사국 제외)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
3	1948.11. 4.	대통령령 제21호	법무부직제 제정 공포	• 1실 4국 21과 설치
4	1950. 3.31.	대통령령 제307호	법무부직제 개정	• 3국 10과로 개편
5	1954. 9. 1.	대통령령 제936호	〃	• 법무국 조사과 폐지, 소년과 신설
6	1955. 2. 7.	법률 제354호	정부조직법 개정	• 법제처를 법제실로 개칭하고 법무부에 소속시킴
7	1955. 2.17.	대통령령 제1008호	법제실직제 제정 공포	• 법제실에 제1·2국을 두고 제1국에 운영지원과를 둠
8	1960. 7. 1.	법률 제552호	정부조직법 개정	• 정무차관·사무차관 신설, 법제실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국무원 사무국으로 이관
9	1961. 8.25.	법률 제698호	〃	• 정무차관·사무차관 폐지 기획조정관 신설
10	1961.10. 2.	각령 제177호	법무부직제 개정	•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 신설, 김포·인천·부산에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
11	1962. 5.21.	각령 제770호	〃	•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형무과를 교정과로 각 개칭, 출입국관리과를 법무국으로, 소년과를 교정국으로 각 이관
12	1962. 7. 4.	각령 제885호	공보사무담당공무원의배치및직무에관한건 제정 공포	• 공보담당 일반직 3급갑류 1인 신설
13	1963.12.14.	법률 제1506호	정부조직법 개정	•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개칭
14	1966.10.26.	대통령령 제2798호	법무부직제 개정	• 일본국 해외주재관 2명 주재
15	1967. 4.10.	대통령령 제2986호	〃	• 법무국을 법무실로 승격하고 소송수행담당관 신설
16	1967. 7. 7.	대통령령 제3139호	법무부직제 개정	• 교정국에 시설과 설치
17	1969. 3.24.	대통령령 제3829호	〃	• 기획관리실에 비상계획담당관 신설
18	1970. 2.20.	대통령령 제3900호	〃	• 비상계획담당관을 비상계획관으로 하고 그 밑에 비상계획보좌관을 둠
19	1970. 2.27.	대통령령 제4678호	〃	• 본부 각과의 계제도 폐지, 출입국관리담당관 신설. 경제기획원에 주재관(3갑) 신설
20	1970. 8.20.	대통령령 제5278호	〃	• 출입국관리담당관을 출입국관리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 밑에 입국심사과·체류심사과 설치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21	1973. 3.14.	대통령령 제6570호	〃	• 교정국장 밑에 교정기획관 신설, 비상계획관은 차관직속으로 개편
22	1973. 3.28.	대통령령 제6594호	〃	• 공보담당관(3갑)을 공보관(2갑, 2을 또는 별정직)으로 조정
23	1975. 7.16.	대통령령 제7697호	〃	• 검찰과를 검찰 제1·2·3·4과로 하고 인권옹호과를 인권과로 개편하여 법무실 이관, 출입국관리국에 기록관리과 신설
24	1976.12. 9.	대통령령 제8293호	〃	• 출입국관리국장 밑에 출입국관리심의관 신설
25	1977. 9.20.	대통령령 제8698호	〃	• 차관 밑에 감사관 신설
26	1978. 5. 2.	대통령령 제9000호	〃	• 법무실에 조사과를 신설하고 송무과를 송무제1·2과로 하며, 교정국에 보안과·직업훈련과를 신설하고 계획과를 작업지도과로 개칭
27	1981. 1. 9.	대통령령 제10160호	〃	• 보호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보호과·조정과·심사과를 설치
28	1981.11. 2.	대통령령 제10526호	법무부직제 개정	• 송무담당관 2인을 1인으로 감축하고, 법무실의 송무제1·2과를 송무과로 통합. 검찰국장 밑에 연구검사 신설. 교정국의 교정기획관을 폐지하고 관리과를 재정과로, 직업훈련과를 교육과로 개칭. 출입국관리국의 출입국관리심의관을 폐지함
29	1982. 8.11.	대통령령 제10891호	〃	• 검사로 보하게 되어있던 실·국장 및 과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송무담당관을 검사장으로 함
30	1983. 7.22.	대통령령 제11179호	〃	• 검사장으로 보하게 되어 있던 실·국장을 검사장 및 고등검찰관으로 하고 출입국관리국장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며, 법무실·검찰국·보호국 소속과장 직급을 고등검찰관에서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조정. 송무담당관과 조사과를 폐지하고 법무실장 밑에 법무심의관, 교정국장 밑에 교정심의관과 교화심의관을 신설하며, 비서관 직급을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으로 조정
31	1984.12.31.	대통령령 제11592호	〃	• 교정국 소속의 소년과를 보호국 소속으로 하고, 조정과를 조사과로, 심사과를 관찰과로 하며, 교정국에 경비과를 신설함. 법무심의관의 기능 일부 조정
32	1986. 4. 3.	대통령령 제11879호	〃	• 보호국장을 고등검찰관에서 검사장으로 직급 조정하고, 별정직 전산처리사 4인(6급상당 2인, 7급상당 2인)을 전산처리사 또는 별정직으로 직렬 조정
33	1986.10.11.	대통령령 제11978호	〃	• 법무실에 섭외법무심의관, 교정국에 보안제2과를 신설하고, 보안과를 보안제1과로 개편
34	1988.12. 2.	대통령령 제12553호	〃	• 교정국 사설과를 기획관리실 사설관리담당관으로 개편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35	1990.10.29.	대통령령 제13149호	법무부직제 개정	• 법무실 송무과를 송무심의관으로 개편, 섭외법무심의관을 국제법무심의관으로 명칭 변경
36	1991. 2. 1.	대통령령 제1327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와 산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직제를 법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법무부·법무연수원·교도소·치료감호소·소년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합 조정
37	1991. 9.30.	대통령령 제13483호	〃	• 교화심의관, 경비과 폐지(4개 지방교정청 신설에 따름), 출입국기획과 신설, 투자외국인관리담당관 폐지 및 입국심사과를 출입국심사과로 변경 • 서울·대구·대전·광주 지방 교정청 신설 • 영등포·수원·부산·마산교도소와 인천구치소에 분류심사과 신설 • 광주소년감별소 신설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산실 설치
38	1992. 2.15.	대통령령 제13588호	〃	• 법무실에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관계법령 정비를 위하여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신설
39	1992. 8.31.	대통령령 제13720호	〃	• 법무시설 공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기획담당관과 건설관리담당관으로 확대개편 • 청송제2교도소 신설 • 서울남부·의정부·울산보호관찰지소 신설 • 서울외국인수용소와 의정부·대산출장소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국에 조사2과, 김포·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과 신설
40	1993. 3.30.	대통령령 제1387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5항)	•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명칭변경 •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명칭변경
41	1993. 6.28.	대통령령 제1391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검사정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 법무부 기획관리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보호국장·교정국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법무실·검찰국·보호국(소년과 제외) 각 과장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법무실의 법무·송무·국제법무심의관을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보함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으로, 기획과장 및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교관을 "고등검찰관 또는 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로, 연구위원 중 3인을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관"으로 보하던 것을 "검사장 또는 검사"로 보함
42	1994. 1.17.	대통령령 제141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중간정책관리계층을 보강하기 위하여 주요계장의 직위를 4급으로도 보할 수 있게 함(운영지원과 1, 기획예산담당관실 1, 교정과 1, 출입국기획과 1)
43	1994. 2. 5.	대통령령 제14157호	〃	• 공보관을 0사관·부이사관 2·3급 별정직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게 함
				• 보호국의 검찰사무직중 조사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도직), 관찰과 3인(검찰사무직 또는 보호관찰직)을 복수직화
				• 울산구치소 신설
44	1994. 4.30.	대통령령 제142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실의 송무심의관을 송무과로 개편
				•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중 검사연구위원(3인)을 폐지하고 그 중 검사장 1인을 감축하며, 나머지 검사 2인은 교관으로 활용함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심사과 설치
45	1994. 9.17.	대통령령 제14383호	〃	• UR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법령정비의 지원 및 통상법률 관계 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국제법무심의관실에 검사 2인을 증원
46	1995. 3.23.	대통령령 제14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소년원법시행령 부칙 제2조)	•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명칭 변경
47	1995. 4.12.	대통령령 제1458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기능을 보강하고 실적주의에 입각한 인사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주요 과장 및 과장급 담당관의 직위를 3급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4급 정원 중 3인(운영지원과장·교정과장·출입국기획과장)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 주요 기획사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을 확대하여 5급 정원 중 11인(공보관실·행정관리담당관실·시설기획담당관실·건설관리담당관실·법무과·검찰제1과·검찰제2과·보호과·소년과·보안제1과·출입국심사과)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조정
48	1995. 7. 8.	대통령령 제1472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출입국심사과를 입국심사과로 개편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구·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직급 하향조정(별정직 3급상당→별정직 4급상당)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 3과 신설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49	1995.10.19.	대통령령 제1479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교정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교정국장의 직급을 검사장에서 검사장·교정이사관 또는 교정부이사관으로 복수직화
50	1996. 6.29.	대통령령 제15064호	〃	• 보호국의 소년과를 소년제1과와 소년제2과로 개편 • 서울지방교정청에 수원구치소 및 수원구치소 평택구치지소를 각각 신설 • 대전보호관찰소에 홍성지소를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과장 및 주요계장의 복수직급화 계획에 따라 본부의 4급정원 3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10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하고 소속기관의 4급정원 6인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정원 22인을 4급 또는 5급으로 복수직급화 • 중앙행정기관의 실무기획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6급 및 7급정원 11인을 감축하여 그중 9인을 5급으로 상향조정
51	1997. 3.20.	대통령령 제15305호	〃	• 기능직공무원 25인 감축
52	1997. 8.13.	대통령령 제15459호	〃	• 소년제1과장 직급을 3·4급 복수직급화 • 대전교도소강경구치지소를 신설하고, 인천구치소 부소장을 신설 • 대구보호관찰소에 김천지소, 대전·수원보호관찰소에 사무과·관호과 신설 • 동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장소로 축소개편하고,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며, 대구·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심사과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과를 두고,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보호관찰, 계호, 출입국심사인력 등 222인 증원
53	1997. 8.13.	대통령령 제15462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실무·기획인력조정 및 복수직급화로 일부 직급의 정원 조정 (6·7급 26인 감, 5급 9인 증)
54	1997. 8.23.	대통령령 제15467호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일부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 4인(1급 2, 2급 2) 신설
55	1998. 2.28.	대통령령 제15711호 법무부령 제45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정	• 각부처의 조직운영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따라 기존직제의 전문개정과 함께 법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법무부령)을 제정 • 시설기획담당관실과 건설관리담당관실을 통합하여 시설관리담당관실로 개편(정원 34인→26인)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실(정원 7인) 신설
				• 국제법무심의관실을 국제법무과로 명칭변경하고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변경
				• 본부 기구개편에 따라 정원 13인 감축
				• 법무연수원 자료과를 폐지하고 분장사무를 기획과로 이관(정원 7인 감축)
				•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의 관리국·교화국 폐지
56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5호 법무부령 제46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에 상임연구위원 1인 증원(2급)
57	1998. 7. 1.	법무부령 제462호	〃	• 서울소년원 대덕지원 신설
58	1998.12. 7.	법무부령 제46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교정국의 교정행정 전산업무를 보안제1과 분장사무에서 교정과 분장사무로 조정
				• 출입국관리국 기록관리과를 출국심사과로 명칭 변경
59	1998.12.31.	대통령령 제1600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연수원 기획부와 일반연수부를 기획부로 통합
		법무부령 제47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대구구치소 신설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양출장소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조정
60	1999. 5.24.	대통령령 제163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법무부령 제48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비상계획담당관 폐지
				• 소년분류심사원의 관호과를 교무과로 명칭변경
61	1999.12. 2.	법무부령 제488호	〃	• 출국심사과를 출국관리과로 명칭변경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 출장소 신설
62	2000. 2.28.	대통령령 제1672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규정	• 개방형임용제 실시를 위하여 교정심의관·교정연수부장·천안개방교도소장·치료감호소장·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63	2000. 3. 7.	대통령령 제167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정보화담당관실 신설 및 보호국 조사과 폐지
		법무부령 제49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보호관찰소 서울서부·수원성남·부산서부지소 신설
				• 대덕지원을 대덕소년원으로 승격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64	2000.11.20.	대통령령 제1700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서울외국인보호소를 화성으로 이전,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명칭 변경
		법무부령 제49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기획검사 설치 근거규정 신설
65	2001. 3.29.	대통령령 제1716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명칭 변경
		법무부령 제50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로 명칭 변경
66	2001. 4.23.	대통령령 제172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실에 법조인력정책과 신설
	2001. 4.24.	법무부령 제50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대구·대전·안양·광주·전주·마산·의정부·춘천교도소에출정과 신설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신설
67	2001. 9.29.	대통령령 제1737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신설
	2001.10.10.	법무부령 제50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수원교도소를 여주로 이전하고, 여주교도소로 명칭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 신설
68	2002. 3.25.	대통령령 제17549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규정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
				•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2002. 3.30.	법무부령 제51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홍성교도소 서산구치지소 신설에 따른 45인 증원 및 여주교도소 계호인력 29인 증원
				• 본부 공보관실 소속 촬영기사의 직급을 7급 상당에서 6급상당으로 상향조정
69	2002. 5.27. 2002. 6. 8.	대통령령 제17610호 법무부령 제520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서울소년원에 창업지원과 신설 •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실무인력 50인 증원 •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인력 16인 증원 • 광주 및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4급)
70	2002. 7.10. 2002. 8. 9.	대통령령 제17664호 법무부령 제52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안산의료소년원 신설 (2002. 10. 1.부)
				• 청주여자교도소를 확장함에 따라 계호인력 6인 증원
71	2002. 8.16. 2002. 8.16.	대통령령 제17715호 법무부령 제526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연수원 상임연구위원(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검사→관리관·이사관, 1급 또는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
				• 본부 교화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직위로 정함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72	2002.11. 9.	법무부령 제527호	〃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신설
73	2003. 5.15.	법무부령 제530호	〃	• 장관정책보좌관 신설 –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인 –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교정감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인
74	2003. 7.25. 2003. 8.22.	대통령령 제18054호 법무부령 제53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 신설 및 이에 따른 소요인력 6인 증원
75	2003. 9.29.	대통령령 제1810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법무부 개방형직위 중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를 출입국관리국장 직위로 대체 지정하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직업훈련교사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76	2003.12. 3.	대통령령 제18148호	〃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2004. 1. 1.부)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신설 • 출입국심사업무에 필요한 인원 43인 증원
77	2003.12.30. 2003.12.31.	대통령령 제18195호 법무부령 제544호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충주구치소와 포항구치소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20인 증원 • 창원소년원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인원 15인 증원
78	2004. 1.29. 2004. 2. 9.	대통령령 제18252호 법무부령 제54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치료감호소에 약물중독재활센터 신설 및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24인 증원 • 보호관찰전담인력 45인 및 구치소·교도소의 호송·계호인력 100인 증원
79	2004. 2. 9. 2004. 2.28.	대통령령 제18275호 법무부령 제547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법무부 본부의 정책·기획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부의 6·7급 정원 중 13명을 5급으로 조정 • 법무부 소속기관의 집행기능 강화를 위하여 7급 정원 중 58명을 6급으로 조정
80	2004. 3.22. 2004. 3.22.	대통령령 제18328호 법무부령 제548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4개 중앙행정기관 등에 업무혁신전담기구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 밑에 행정관리담당관을 없애는 대신 인사·조직 및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혁신인사담당관을 신설하고, 혁신인사담당관의 분장업무를 정함
81	2004. 5.24. 2004. 6.12.	대통령령 제18399호 법무부령 제55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	• 청주외국인보호소 및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59인 증원 • 계호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원된 실무인력 92인 증원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82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3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감찰관을 신설하고, 일부보호감호소 및 소년교도소의 명칭을 변경 • 상사실무인력 및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강화를 통하여 외국인고용 허가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인천공항의 출입국심사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인력 보강
83	2005. 3. 2. 2005. 3.24.	대통령령 제18729호 법무부령 제564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록연구사 6급 1인 증원 • 정책·기획업무 중심으로 실무인력구조를 재조정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강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범위 안에서 직급조정 - 본부 : 5급 8명 증원, 6급 6명, 7급 2명 감축 - 소속기관 : 6급 49명 증원, 7급 49명 감축
84	2005. 4.15. 2005. 5. 2.	대통령령 제18876호 법무부령 제56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설치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 • 정책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신설하며, 홍보관리관(구 공보관) 설치 및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을 설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재정기획관실로 명칭변경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총 3인(4급 1인, 5급 2인)을 증원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2005. 7. 4.부)
85	2005. 7. 4.	법무부령 제5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성매매사범의 보호관찰실시와 외출제한명령 전면시행 등 급속한 보호관찰 영역의 확대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보호관찰소 공무원 정원 증원(150인)(2005. 8. 15.)
86	2005. 8.12. 2005. 8.12.	대통령령 제18997호 법무부령 제57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2005년도 소요정원 3인(건축주사 1, 전산주사 1, 전산주사보 1) 및 검사적격 심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2인(검사 1, 전산주사 1)증원하고 공무원임용령중 일부개정(2005. 5. 6.)으로 "부이사관", "기술서기관"으로 직군·직렬 통합(검찰사무직 제외) • 포항교도소 신설, 순천교도소 소록도 지소 기관폐지
87	2006. 2. 3. 2006. 2. 3.	대통령령 제19316호 법무부령 제58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	• 출입국관리국 밑에 국적난민과와 외국적동포과를 신설하여 국제적 수준의 난민인정 업무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규칙 일부개정	관리국의 분장사무에 이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정부출장소를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중 279인(3급 또는 4급 1, 4급 2, 5급 13, 6급 38, 7급 50, 8급 83, 9급 74, 기능직 18)과 외국국적 동포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인력 6인(4급 1, 5급 2, 6급 2, 7급 1)을 증원하는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
88	2006. 5. 3. 2006. 5. 3.	대통령령 제19465호 법무부령 제58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호·지원과 법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법무실의 인권과를 확대 개편하여 인권국에 인권정책과등 3개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소요인력 13인(2·3급 1, 3·4급 1, 3·4급 또는 검사 1, 4·5급 2, 4·5급 또는 검사 1, 5급 3, 6급 2, 7급 1, 기능10급 1)을 증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 폭주로 야기되는 외국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출입국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종로출장소를 신설하는 등 민원처리 실무인력 30인(5급 1, 6급 5, 7급 8, 8급 9, 9급 6, 기능10급 1)을 증원
89	2006. 6.12. 2006. 6.12.	대통령령 제19508호 법무부령 제58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경비교도대원 감축에 따른 계호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2006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교정공무원 821인(4급 4, 5급 4, 6급 85, 7급 127, 8급 303, 9급 298)을 증원하고, 7급 정원 42인을 6급으로, 8급 정원 42인을 7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 • 법무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담당 인력 6인(5급 4, 7급 2)을 증원하려는 것임 •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에 성과관리팀을 신설하고, 교정국 일부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로 하는 등 4개 구치지소의 명칭을 지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0	2006. 6.30.	대통령령 제1959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국장급 직위의 계급을 삭제하고, 실·국장급 공무원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91	2006. 8. 3.	법무부령 제59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공포, 2006. 7. 1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 부여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직위의 개방형 변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92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정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로 정원을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총정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93	2007. 2. 1.	대통령령 제19860호	〃	• 장관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정책보좌관을 일반직·별정직공무원보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고도화 및 정보보호와 보안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정보화담당부서의 기능 강화 및 필요인력 증원 및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가 개선·보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94	2007. 5. 4. 2007. 5.10.	대통령령 제20048호 법무부령 제61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과 외국인정책에 관한 업무 총괄 수행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35인(고위공무원단 2, 3·4급 1, 4급 3, 4·5급 2, 5급 8, 6급 11, 7급 5, 기능직 3)을 증원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 전담인력 28인(5급 2, 6급 6, 7급 7, 8급 8, 9급 5)을 증원하고 감사관을 폐지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감찰·감사조직을 통합하여, 감찰관 밑에 감찰기획관 및 감사기획관을 두며, 정책홍보관리실장 밑에 성과기획조정관을 설치하고, 성과기획조정관 밑에 고객만족팀을 신설하며,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소속과 명칭을 인권국 및 여성정책과로 바꾸며, 2007년도 소요정원으로 인정된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인력 400인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관리인력 등 33인을 직제에 반영하며 교정기관의 수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청송교도소와 광주교도소의 보건의료과장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상호 조정하려는 것임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95	2007. 7.23.	대통령령 제20180호 법무부령 제61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보호국의 업무조정과 기관폐지 및 산설 및 인력재배치(광주소년분류심사원 등 7개 소년보호기관을 폐지하고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남는 인력 213명 중 212명은 교정, 보호관찰 등에 재배정하고 1명은 감축) 등을 반영하는 한편, '07년도 3/4분기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176명(보호 127, 교정 25, 출입국 16, 감사 8명)을 반영
96	2007. 8.22. 2007. 9.13.	대통령령 제20236호 법무부령 제61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 대변인제 도입에 따라 홍보관리관이 대변인을 겸하고 대변인의 기능 규정
97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0호 법무부령 제62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수용자의 인권신장, 새로운 교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 교정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정사무에 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개편하고 필요인력을 소속기관 정원에서 법무부로 재배치(고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6, 6급 9, 7급 6, 기능10급 3) 하는 한편, 「상법」의 개정으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실장 및 법무심의관의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
98	2008. 2.29. 2008. 3. 3.	대통령령 제20674호 법무부령 제63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책홍보관리관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는 등 대국(大局)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 홍보관리관을 폐지하고 장관 직속 기구인 대변인으로 개편하고, 성과기획조정관을 폐지하고, 기획조정관을 신설하며, 정책홍보관리실은 기획조정실로, 총무과는 운영지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 • 정책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장관 직속 대변인 밑으로 재편하고, 재정기획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혁신인사기획관은 창의혁신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성과관리팀과 고객만족팀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창의혁신담당관실로 이관 •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질서 선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총괄·추진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4급·검사 1, 5급 2, 6급 2, 기능직 1)을 신설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정책관을 정책단으로, 각 과를 팀으로 변경하고,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하는 한편, 법무실·보호국·인권국·교정국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아래의 일부 부서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 중 보호직 1명(4급)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의 수를 7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천안개방교도소장, 치료감호소장, 치료감호소 의료부장, 서울소년원 창업지원과장)에서 4개(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안정책단장, 치료감호소장)로 조정
				• 인권옹호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쉽도록 일반직(3·4급)으로 되어 있는 인권정책과장의 직급을 일반직(3·4급) 또는 검사로 복수직급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기획관(3·4급)을 폐지한 후 정책기획평가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4급 정원 1명은 4급 또는 검사로 복수 직급화하여 신설되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정원으로 활용하되, 서기관 또는 교정관 정원 1명을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변경함
				• 공무원 4명(7급 1, 기능10급 3)을 감축
99	2008. 8. 7.	대통령령 제20954호 법무부령 제64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도소의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투경찰·의무경찰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정규인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교정공무원 118명(7급 24, 8급 47, 9급 47)을 증원하는 한편, 교정본부장의 분장사무 중 수형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교화팀장의 분장사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설된 수형자 사회복귀지원 관련 사무를 사회복귀지원팀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교정본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인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하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조정
100	2008.10.22.	법무부령 제64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행정직 5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5급으로, 기술직 6급 정원 중 1명을 행정·기술직 6급으로 각각 복수직화하여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
10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9호 법무부령 제65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재배정
				•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인권국의 구조지원과의 명칭을 인권지원과로 변경, 범죄피해구조금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기능을 검찰국 형사기획과에서 인권국 인권지원과로 이관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위치추적관제센터 설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년법」에 따른 결정전조사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호관찰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인권국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보직범위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인권정책과장의 분장사무로 추가 • 교정기획팀장 수행기능 중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기능을 수용기획팀장에게 이관 • 서울지방교정청에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산관리과를 신설 • 서울소년원의 하부조직 중 기능1이관 등에 따라 업무가 축소된 창업지원과를 폐지한 후 소년보호교육에 필요한 컨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정보관리과 신설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해소를 위해 안양·영월·공주·제천·상주·거창·해남 지역에 7개의 보호관찰지소를 신설 • 감찰기능 수행강화를 위해 정원 4명을 소속기관에서 본부 감찰담당관실로 이체, 치료감호소의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원 1명을 본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
102	2009. 1.29.	법무부령 제65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21209호, 2008. 12. 31. 공포·시행)으로 인권국장의 보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인 인권국장 직위를 자율 직위로 변경,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대체
103	2009. 3.18. 2009. 3.19.	대통령령 제21350호 법무부령 제66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168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 관련 규정 정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의결이 가능한 경우를 가석방·임시퇴원의 취소결정, 보호관찰 가해제의 취소결정 등으로 구체화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04	2009. 5.25.	대통령령 제21502호 법무부령 제66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을 법질서담당관으로, 시설관리담당관을 시설담당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법조인력정책과를 법조인력과로 명칭 변경 • 공공형사과를 공안기획과로 명칭 변경 • 사회보호정책과를 보호법제과로, 소년보호과를 소년과로, 법문화진흥팀을 법교육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여성아동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인권정책과, 인권지원과를 인권구조과로, 인권옹호과를 인권조사과로 변경 •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각 팀을 과로 변경, 교육교화팀 폐지, 기능을 사회복귀과로 이관, 경비정책팀 폐지, 보안과로 기능 이관, 외국적 동포팀 폐지, 기능을 사회통합과로 이관, 국제이민협력팀 폐지, 기능을 출입국심사과로 이관, 급증 하는 국적민원 업무적체 해소를 위한 실무인력 5명(5급 1, 6급 2, 7급 2) 증원 •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소장으로 하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신설 하부조직으로 총무과 등 8개 과를 설치, 운영인력 110명(3·4급 1, 5급 8, 6급 16, 7급 18, 8급 45, 9급 15, 기능 7) 증원 • 8호 처분 여자 소년원생의 교육 내실화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를 위해 청주소년원을 신설하고 전담인력 10명(6급 4, 7급 2, 8급 4) 증원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광역화 해소 및 현장밀착 지도·감독을 위해 영덕·밀양·남원보호관찰지소를 신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관련 전담 수행인력 61명(6급 19, 7급 21, 8급 21) 증원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그 실무인력 7명(5급 1, 6급 2, 7급 2, 8급 2) 증원, 출입국관리기관의 일부 부서명칭의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동향조사인력 40명(6급 7, 7급 20, 8급 13)과 출입국심사인력 37명(7급 14, 8급 16, 9급 7) 증원.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개정에 따라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계약직으로 보할 수 있게 변경
105	2009. 7. 6.	법무부령 제67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부서명칭을 핵심업무가 부각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명칭으로 변경, 지방교정청의 5급 과장 직위와 소속기관의 3·4급 또는 4·5급 과장 직위를 상호 이체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외국인수형자에 대한 처우 및 1통역지원을 위해 천안소년교도소에 국제협력과를 신설 •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를 폐지 천안소년교도소에 통합, 중복인력을 전환·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 보호관찰기관의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현장밀착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임
106	2009. 7.17.	법무부령 제67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삭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
107	2009.12.31.	대통령령 제21946호 법무부령 제68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영월·해남교도소, 밀양구치소 등 3개 교정시설의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134명과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인력 235명, 국가송무시스템 전담인력 3명 등 총 372명을 증원 •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5명을 일반직공무원 45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직공무원 직렬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
108	2010. 8. 2.	대통령령 제22313호 법무부령 제71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 등 기구 신설과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 집행인력 55명 등 총 109명 증원
109	2010.10.18.	대통령령 제22453호 법무부령 제72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회복무제도 개선계획」(2007. 7. 10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과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인력 18명, 영월·해남교도소 및 밀양구치소 정상 운영을 위한 실무인력 78명, 출입국 안산출장소 및 천안출장소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8명 등 총 339명 증원
110	2011. 5. 4. 2011. 5.11.	대통령령 제22917호 법무부령 제74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질서담당관실(기획조정실)과 법교육팀(범죄예방정책국) 통폐합, 법질서선진화과(범죄예방정책국) 신설(9. 1. 시행) • 행정관리담당관실 성과·고객업무 분장, 성과고객팀 신설 (9. 1. 시행) • 영등포구치소·영등포교도소→서울남부구치소·서울남부교도소로 명칭변경 •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1. 4. 16.)에 따른 본부 보호관찰과 성폭력범 신상공개 인력 2명, 교정심리치료센터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운영인력 16명,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확대에 따른 실무인력 21명,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수강명령 집행인력 7명, 구미·고양 등 2개 신설 출입국출장소 운영인력 4명 등 총 40명 증원 ※ 교정기관 전화상담원 10명 감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개방형직위에서 공모형직위로 변경, 본부 홍보담당관 개방형 직위 지정 •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총액인건비제 시행 (2014. 4. 30.까지)
111	2011. 5.30.	대통령령 제22937호 법무부령 제74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인력 3명 증원
112	2011. 8.23.	법무부령 제74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4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4, 기능10급 44 → 9급 10, 8급 37, 7급 1)
113	2011.10.10. 2011.10.13.	대통령령 제23211호 법무부령 제75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역출장소 신설 및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포출장소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 •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를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로 명칭 변경 • 경북직업훈련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 분류심사과를 대구구치소 및 청주여자교도소 분류심사과로 이관(2012. 1. 1. 시행) • 법조인력과 변호사시험 시행인력 4명, 국제법무과 외국법자문사 관리인력 2명, 보호관찰과 성충동약물치료 집행 등 중간관리 인력 1명, 경비교도대 대체 계호 인력 235명, 교정기관 의료처우 개선인력 16명, 성폭력 범죄자 치료·재활 인력 6명, 신설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운영인력 9명,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전담인력 4명, 신설 서울역출입국출장소 운영인력 1명, 김포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에 따른 운영 및 심사인력 5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심사 인력 3명 등 총 286명 증원 • 천안개방교도소장 : 고위공무원→4급,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 3·4급→고위공무원, 창원교도소장 : 4급→3·4급으로 직급 조정(2012. 1. 1. 시행) • 본부 대변인실 "온라인대변인" 지정 근거 신설
114	2012. 3.26. 2012. 3.30.	대통령령 제23675호 법무부령 제76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 서울서부·북부보호관찰지소 보호관찰소 승격, 울산출입국출장소 사무소 승격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개 신설 및 제주출입국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리사무소 조사과 신설 • 재정업무 담당인력 2명, 전문 감사인력 1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및 관리인력 1명, 교화방송센터 운영 인력 1명, 남북법률통합 실질화사업 추진인력 2명 등 7명 증원 • 조사인력 10명, 전자감독 확대 시행인력 11명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시설 인력 24명 등 45명 증원 •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인력 17명, 4부제 개편 소요 인력 28명, 교정직 직급구조 개선 인력 2명 등 47명 증원 • 지문관리점담 운영인력 6명, 울산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에 따른 필요 인력 3명, 복수국적 허용 심사인력 2명, 청주공항 활성화에 따른 심사인력 2명,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심사인력 21명 등 34명 증원 • 급여인력 감축 30명 감원 • 체류조사과→이민조사과로 명칭변경 • 사회통합과→이민통합과로 명칭변경
115	2012. 6.10. 2012. 7.12.	대통령령 제23857호 법무부령 제77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 공항 심사인력 10명 증원
116	2012. 9.10. 2012.10.22.	대통령령 제24116호 법무부령 제77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전자발찌 비상출동 전담인력 43명, 성폭력사범 지도감독 인력 19명, 재범방지를 위한 밀착 보호관찰 인력 75명, 경비교도대 대체 인력 235명 증원
117	2013. 1. 8.	법무부령 제78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무기능직렬 2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28 → 7급 4, 8급 17, 9급 7)
118	2013. 3.23. 2013. 3.23.	대통령령 제24115호 법무부령 제78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기획조정관, 비상계획관 →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 • 성과고객팀 폐지 • 정보팀 → 이민정보과 변경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 폐지 및 총무과 신설 • 공통지원부서 정원 6명 감축(5급 1, 6급 2, 7급 1, 8급 1, 기능9급 1)
119	2013. 5.22. 2013. 6.12.	대통령령 제24537호 법무부령 제79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를 국적과와 난민과로 분리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를 경기도 과천시로 변경 •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 등 본부 정원 15명 및 소속기관 정원 125명 증원
120	2013. 9.17.	대통령령 제2473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 행정관리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2013.10. 1.	법무부령 제80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여성아동인권과 신설 • 치료감호소 및 소년원 등의 하부조직 중 '서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명칭 변경 • 춘천·전주·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신설 • 정부3.0 전담 및 협업과제 추진 인력 등 본부 정원 11명, 소속기관 정원 26명 증원 • 사무기능직렬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기능9급 16 → 7급 6, 8급 7, 9급 3) • 안전행정부(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로 정원 이체(기능8급 △1)
121	2013.11. 5.	대통령령 제2482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 정읍교도소, 상주교도소 신설 • 정읍·상주교도소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정원 257명 증원
	2013.11.13.	법무부령 제80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22	2013.12.12.	대통령령 제2494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 개정	• 기능직공무원 폐지 및 일반직 전환 : 1,098명(7급 25, 8급 56, 9급 1,017)
	2013.12.12.	법무부령 제80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계약직공무원 폐지 및 별정직 전환 : 2명 •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 160명 • 통합정원 감축 95명(5급 3, 6급 15, 7급 19, 8급 24, 9급 34) • 홍보 담당 인력 1명(4·5급) 증원
123	2014. 4. 1.	법무부령 제81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실 →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개편 –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 통합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 • 총액인건비제 운영 출입국관리사무관(12명) 존속기한 연장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9급 9명→7급2명, 8급 4명, 9급 3명
124	2014. 8.27.	대통령령 제2556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서울·부산·광주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2014. 9. 4.	법무부령 제82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산동부·울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등 본부 7명,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인력 등 소속기관 49명 정원 증원 및 직급 상향 55명 • 별정직공무원 일반직(임기제) 전환 : 5명(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청주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에 '청원군'을 삭제
125	2015. 1. 6.	대통령령 제259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신설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당진출장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신설 • 출입국관리인력 22명, 치료감호소 의료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37명 증원
	2015. 1. 6.	법무부령 제83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소속기관 정원 본부 이체(6급 1, 7급 1) •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2, 6급 11, 7급 14, 8급 25, 9급 33)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119명→행정직군 1명, 기술직군 118명 • 개방형직위 규정 정비(국장급 2개 직위→실·국장급 7개 직위 범위내)
126	2015. 2.26. 2015. 2.27.	대통령령 제26117호 법무부령 제83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설 : 대외연수과, 운영지원과 신설, 과명칭 변경(교정연수부 운영과→교정훈련과) 및 기구폐지(연구위원△1, 연구개발팀△1)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관리인력 6명, 용인분원 신설 인력 13명 등 소속기관 정원 19명 증원 • 직급 상향 : 본부 5→4·5급 2명, 소속기관 5→4·5급 1명, 7→6급 31명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과→사범과로 변경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규정 신설
127	2015. 5.26. 2015. 5.28.	대통령령 제26263호 법무부령 제84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 조사대 신설 • 개인정보보호 인력 1명, 특정범죄자관리과 인력 6명 등 본부 정원 7명 및 교정기관 의료인력 4명, 소년보호기관 호송인력 9명, 특정범죄자 관리 인력 23명 등 소속기관 정원 57명 증원 • 직급 상향 : 본부 5→4·5급 2명, 소속기관 4→3·4급 1명, 5→4·5급 4명, 6→5급 13명, 7→6급 31명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25명→행정직군 4명, 기술직군 21명 • 교정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8명→13명)
128	2015.11.30. 2015.12. 1.	대통령령 제26675호 법무부령 제85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 인력 본부 정원 1명 증원(4·5급) • 소년보호기관 임기제공무원 대체 정원 확대(의무직 5급 6명→7명) • 과장급 개방형직위 변경(난민과장, 치료감호소 신경과장·특수치료과장→군산교도소 의료과장,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사회정신과장)
129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2호 법무부령 제86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신설 • 국고손실 환수송무 인력 2명 등 본부 정원 2명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인력 2명, 공항 및 크루즈터미널 심사 인력 66명,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77명 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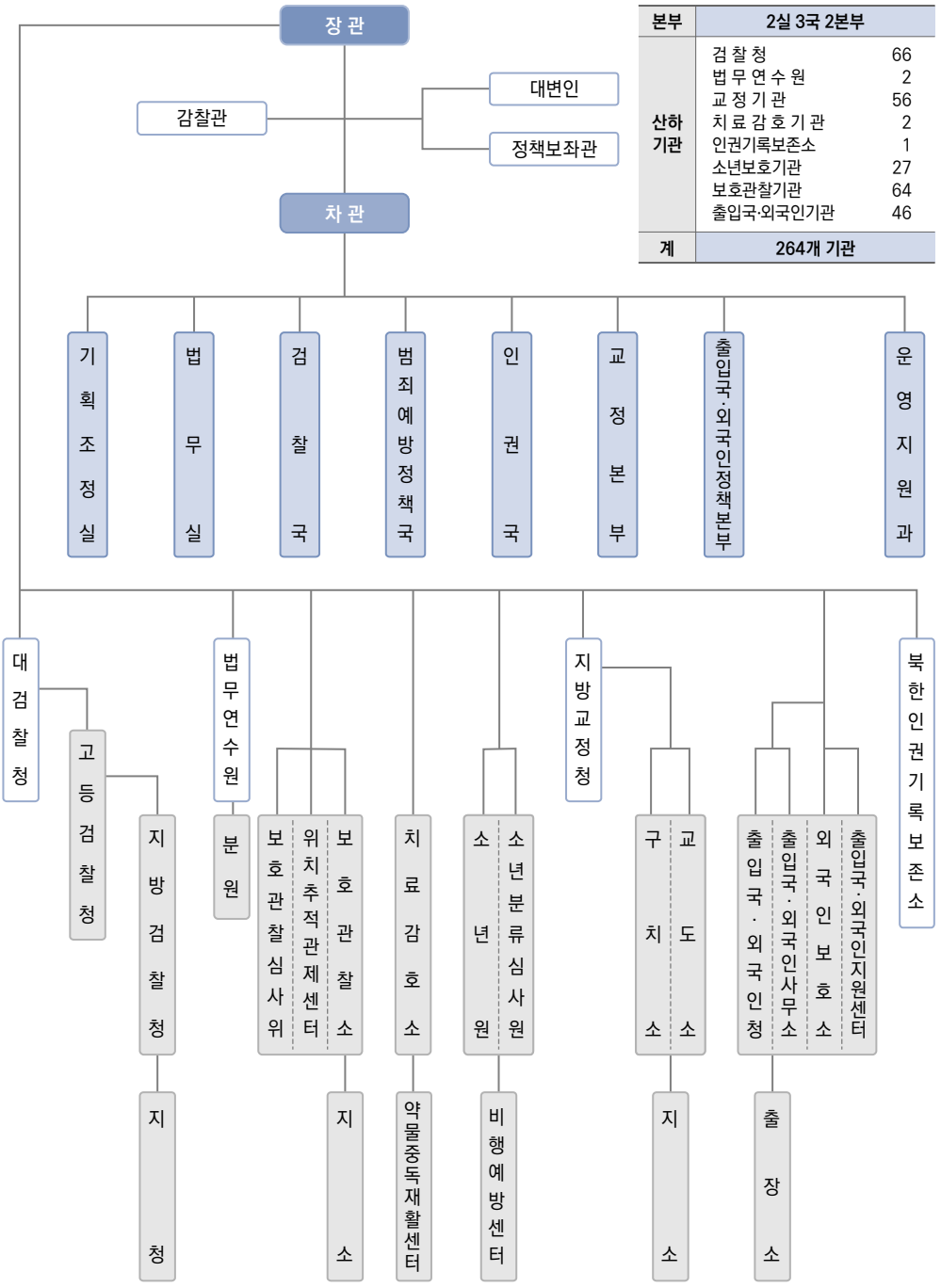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 통합정원 감축 85명(5급 3, 6급 15, 7급 9, 8급 25, 9급 33) •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관리운영직군 32명→행정직군 2명, 기술직군 30명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평택항만출장소, 오산출장소→평택출장소로 변경
130	2016. 2.29. 2016. 3. 2.	대통령령 제27001호 법무부령 제86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대전·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 아동인권보호 전담 본부 정원 1명 및 치료감호소 병동 운영 인력 12명,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신설 인력 9명 등 소속기관 정원 21명 증원 • 기구 신설,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 상향 16명
131	2016. 5.10. 2016. 5.10.	대통령령 제27134호 법무부령 제86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 신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 김해·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 김해공항·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각각 명칭변경 • 감찰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교정기관 수용자 의료개선 인력 4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신설 인력 4명 등 소속기관 정원 12명 증원
132	2016. 9. 5.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3호 법무부령 제8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신설 • 지방교정청 의료분류과·직업훈련과 → 보안과·사회복귀과로 통폐합 • 교정본부 및 교정기관 인력재배치 337명 • 직급상향 20명
133	2016.10.11. 2016.10.11.	대통령령 제27540호 법무부령 제87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인력 12명,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 신설 인력 20명, 크루즈 심사 인력 15명 등 소속기관 정원 69명 증원
134	2016.12.27. 2016.12.30.	대통령령 제27685호 법무부령 제88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통합정원 감축 85명 • 관리운영직군 28명 일반직 전환 • 치료감호소 및 외국인보호소 직렬 조정 8명
135	2017. 2.28. 2017. 2.28.	대통령령 제27876호 법무부령 제88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민원 담당 본부 정원 2명 및 보호관찰소 치료명령제도 운영 인력 37명,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30명 등 소속기관 정원 96명 증원 •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급 상향 28명 • 한시조직(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존속기한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연장(2017. 2. 28. → 2019. 2. 28., 2년) 및 정원 1명 감축
136	2017. 4.28.	법무부령 제90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총액인건비제 존속기한 연장(2017. 4. 30. → 2020. 4. 30., 3년)
137	2017. 5. 8.	대통령령 제2802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한시조직(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존속기한 연장(2017. 5. 31. → 2019. 5. 31., 2년)
	2017. 5.24.	법무부령 제90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38	2017. 6.20.	대통령령 제2811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소속기관 명칭 변경(성동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
	2017. 6.20.	법무부령 제90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및 급식운영 인력 26명, 소년원 정신질환 소년원생 교육 인력 15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심사 및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 인력 14명 등 소속기관 정원 79명 증원 • 인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급 상향 1명
139	2017. 8. 1.	대통령령 제2822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3개 실국장 직위(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
	2017. 8. 1.	법무부령 제90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창조행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140	2017.10.20.	대통령령 제2839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국장급 이하 39개 직위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검사 또는 일반직)
	2017.10.20.	법무부령 제90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141	2017.10.31.	대통령령 제2840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2국, 입국재심2과, 심사13, 심사14, 심사15과 신설
	2017.10.31.	법무부령 제91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기구 신설(1국 4과) 인력 198명 증원
142	2017.11.16.	법무부령 제91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임기제 보임범위 확대(23명 → 45명)
143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한시조직(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전자비자센터) 존속기한 연장(2017. 12. 31. → 2019. 12. 31., 2년)
	2017.12.29.	법무부령 제91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임기제 정원 1명 신설
144	2018. 2.20.	대통령령 제2866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 신설기구 정규화(2개 부서) 및 존속기한(2개 부서) 연장
	2018. 2.20.	법무부령 제91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정규화 : 대전 및 대구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 - 존속기한 연장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2018. 2. 28. → 2020. 2. 28., 2년)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145	2018. 3.30. 2018. 3.30.	대통령령 제28736호 법무부령 제92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및 관찰과 신설 • 상사분야 법령 정비 등 본부 정원 11명 및 출입국기관 출입국심사 및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 107명,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및 급식운영 인력 98명, 소년원생 교육·관리 인력 50명 등 소속기관 정원 263명 증원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법질서선진화과 → 보호정책과) • 소속기관 하부조직 개편 – 신설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호송과 – 폐지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연구개발과 • 한시조직(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 존속기한 연장(2018. 4. 30. → 2020. 4. 30., 2년) 등
146	2018. 4. 9.	법무부령 제92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규정에 감찰관 직위를 추가
147	2018. 5. 8. 2018. 5.10.	대통령령 제28870호 법무부령 제92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속기관 명칭 변경 –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 → 6개 출입국·외국인청, 13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48	2018. 5.31.	법무부령 제92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규정에 법무심의관 직위를 추가
149	2018. 6.26. 2018. 6.26.	대통령령 제28994호 법무부령 제93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본부 하부조직 명칭 변경 – 보호법제과 → 치료처우과 – 소년과 → 소년보호과 • 신설기구 정규화(2개 부서) – 본부 심리치료과,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
150	2018.10. 2. 2018.10. 4.	대통령령 제29207호 법무부령 제93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교정기관 수용자 관리 인력 30명 증원 • 신설기구 정규화(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보안관리과)
151	2018.12. 4. 2018.12. 4.	대통령령 제29326호 법무부령 제94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기관 출입국 체류센터 관리 인력 5명 증원
152	2018.12.3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42호 법무부령 제94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 인력 30명, 출입국기관 출입국심사 및 난민심사 인력 21명 등 소속기관 정원 51명 증원 • 검찰국 과장 2개 직위의 보임범위 확대(검사 → 일반직 또는 검사) • 평가대상 조직(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 평가기간 연장(2019. 2. 28. → 2020. 2. 28., 1년) 등
153	2019. 2.26.	대통령령 제2956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 청주소년원 의무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

순위	공포일자	법령호수	건 명	내 용
	2019. 2.26.	법무부령 제946호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소 조사과 신설 • 수용자 경계강화, 야간근무교대 개선 등을 위한 인력 375명 증원 • 평가대상 정원 320명 추가
154	2019. 5. 7. 2019. 5. 7.	대통령령 제29733호 법무부령 제95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및 신설기구 평가대상에 추가 •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기구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개방형직위 변경 –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 → 신경과장
155	2019. 7.29.	법무부령 제95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를 법무교육과로 명칭변경
156	2019. 8.13. 2019. 8.13.	대통령령 제30040호 법무부령 제95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법무부 공안기획과를 공공형사과로 명칭변경 • 법무부 검찰국 내 공안사건 관련 업무내용 수정 • 소속기관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전자감독과로 명칭변경 •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 폐지, 호송과 신설
157	2019.12.24. 2019.12.31.	대통령령 제30275호 법무부령 제96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를 신설기구평가대상에서 제외 • 교정기관 의무직 4급 공무원 정원축소 및 4·5급 공무원 정원 확대

2. 조직도



본부	2실 3국 2본부	
산하기관	검찰청	66
	법무연수원	2
	교정기관	56
	치료감호기관	2
	인권기록보존소	1
	소년보호기관	27
	보호관찰기관	64
	출입국·외국인기관	46
계	264개 기관	

3. 정원 변동표

구분 \ 연도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총 계	4,473	4,621 (+148)	4,569 (−52)	4569	4,569	4,504 (−65)	4,504	4,474 (−30)	4,556 (+82)	4,083 (−473)	3,862 (−221)	3,862	3,952 (+90)	4,403 (+451)	4,438 (+35)	4,872 (+434)	4,976 (+104)	5,197 (+221)	5,354 (+157)	6,440 (+1,086)	6,677 (+237)	6,905 (+228)
본 부		148	148	148	148	83 (−65)	83	53 (−30)	53	68 (+15)	68	68	68	170 (+102)	177 (+7)	199 (+22)	189 (−10)	189	232 (+43)	269 (+37)	314 (+45)	318 (+4)
검찰청 검 사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63	190 (+27)	190	190	190	190	190	220 (+30)	220	243 (+23)	243	300 (+57)	300	300	300
검찰청 일반직 등	586	586	534 (−52)	534	534	534	534	534	589 (+55)	589	589	589	589	904 (+315)	903 (−1)	996 (+93)	1,089 (+93)	1,089	1,089	1,273 (+184)	1,338 (+65)	1,388 (+50)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3,372	3,372	3,372	3,372	3,372	3,372	3,372	3,372	3,372	2,914 (−458)	2,790 (−124)	2,790	2,840 (+50)	2,837 (−3)	2,836 (−1)	3,089 (+253)	3,089	3,229 (+140)	3,229	3,979 (+750)	4,066 (+87)	4,216 (+150)
소 년 원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126	96 (−30)	96	96	136 (+40)	164 (+28)	164	181 (+17)	181	250 (+69)	250	363 (+113)	397 (+34)	397
출입국관리 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49 (+49)	47 (−2)	59 (+12)	116 (+57)	118 (+2)	124 (+6)	148 (+24)
법무연수원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129 (−97)	129	129	138 (+9)	138	138	138	138	138	138	138	138

조선형무관학교 → 형무관학교 → 교도관학교

구분 \ 연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총 계	7,035 (+130)	7,568 (+533)	7,526 (−42)	8,024 (+498)	8,257 (+233)	8,556 (+299)	9,589 (+1,033)	9,938 (+349)	10,664 (+726)	10,995 (+331)	11,538 (+543)	13,210 (+1,672)	13,431 (+221)	13,561 (+130)	13,820 (+259)	13,967 (+147)	14,255 (+288)	15,216 (+961)	15,708 (+492)	18,847 (+3,139)
본 부	332 (+14)	256 (−76)	245 (−11)	248 (+3)	210 (−38)	291 (+81)	295 (+4)	295	350 (+55)	355 (+5)	360 (+5)	426 (+66)	420 (−6)	430 (+10)	429 (−1)	429	444 (+15)	444	444	444
검찰청 검사	300	343 (+43)	343	360 (+17)	377 (+17)	377	417 (+40)	417	473 (+56)	473	473	467 (−6)	497 (+30)	527 (+30)	557 (+30)	587 (+30)	587	667 (+80)	707 (+40)	747 (+40)
검찰청 일반직등	1,388	1,457 (+69)	1,457	1,473 (+16)	1,539 (+66)	1,565 (+26)	1,565	1,866 (+301)	2,024 (+158)	2,161 (+137)	2,309 (+148)	2,996 (+687)	3,165 (+169)	3,266 (+101)	3,372 (+106)	3,489 (+117)	3,647 (+158)	3,904 (+257)	4,067 (+163)	4,886 (+819)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4,312 (+96)	4,772 (+460)	4,753 (−19)	5,179 (+426)	5,292 (+113)	5,554 (+262)	6,474 (+920)	6,474	6,776 (+302)	6,921 (+145)	7,185 (+264)	8,076 (+891)	8,076	8,074 (−2)	8,092 (+18)	8,092	8,092	8,447 (+355)	8,574 (+127)	10,780 (+2,206)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397	427 (+30)	425 (−2)	425	484 (+59)	484	484	532 (+48)	625 (+93)	652 (+27)	676 (+24)	684 (+8)	695 (+11)	695	749 (+54)	749	769 (+20)	998 (+229) 치료감호소 195포함	998	1,047 (+49)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168 (+20)	175 (+7)	166 (−9)	202 (+36)	218 (+16)	218	279 (+61)	279	340 (+61)	357 (+17)	455 (+98)	475 (+20)	492 (+17)	479 (−13)	531 (+52)	531	581 (+50)	621 (+40)	783 (+162)	795 (+12)
법무연수원	138	138	137 (−1)	137	137	67 (−70)	75 (+8)	75	76 (+1)	76	80 (+4)	86 (+6)	86	90 (+4)	90	90	135 (+45)	135	135	148 (+13)

구분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계	20,270 (+1,423)	21,211 (+941)	21,795 (+584)	21,931 (+136)	22,213 (+282)	22,603 (+390)	23,161 (+558)	23,427 (+266)	23,436 (+9)	23,360 (−76)	23,736 (+376)	23,981 (+245)	24,376 (+395)	24,788 (+412)	25,334 (+546)	25,809 (+475)	27,137 (+1,328)	28,067 (+930)	28,262 (+195)	29,091 (+829)
본 부	459 (+15)	467 (+8)	498 (+31)	491 (−7)	479 (−12)	479	488 (+9)	473 (−15)	455 (−18)	446 (−9)	436 (−10)	453 (+17)	453	455 (+2)	455	479 (+24)	507 (+28)	594 (+87)	590 (−4)	605 (+15)
검찰청 검 사	787 (+40)	827 (+40)	867 (+40)	907 (+40)	947 (+40)	987 (+40)	1,037 (+50)	1,087 (+50)	1,137 (+50)	1,207 (+70)	1,287 (+80)	1,287	1,357 (+70)	1,427 (+70)	1,507 (+80)	1,587 (+80)	1,627 (+40)	1667 (+40)	1,752 (+85)	1,847 (+95)
검찰청 일반직등	5,288 (+402)	5,823 (+535)	5,984 (+161)	6,095 (+111)	6,222 (+127)	6,424 (+202)	6,575 (+151)	6,607 (+32)	6,612 (+5)	6,520 (−92)	6,689 (+169)	6,715 (+26)	6,873 (+158)	7,029 (+156)	7,175 (+146)	7,336 (+161)	7,468 (+132)	7,685 (+217)	7,681 (−4)	7,769 (+88)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11,254 (+474)	11,515 (+261)	11,784 (+269)	11,778 (−6)	11,898 (+120)	11,901 (+3)	12,165 (+264)	12,216 (+51)	12,287 (+71)	12,245 (−42)	12,245	12,308 (+63)	12,388 (+80)	12,508 (+120)	12,700 (+192)	12,751 (+51)	13,748 (+997)	14,162 (+414)	14,280 (+118)	14,757 (+477)
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1,185 (+138)	1,278 (+93)	1,293 (+15)	1,293	1,293	1,354 (+61)	1,354	1,396 (+42)	1,380 (−16)	1,368 (−12)	1,371 (+3)	1,371	1,392 (+21)	1,407 (+15)	1,431 (+24)	1,299 (−132)	1,298 (−1)	1,092 (−206)	1,092	1,102 (+10)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포함)	870 (+75)	870	930 (+60)	929 (−1)	937 (+8)	1,006 (+69)	1,062 (+56)	1,099 (+37)	1,060 (−39)	1,068 (+8)	1,154 (+86)	1,266 (+112)	1,282 (+16)	1,331 (+49)	1,390 (+59)	1,476 (+86)	1,551 (+75)	1,619 (+68)	1,619	1,702 (+83)
법무연수원	148	148	150 (+2)	149 (−1)	147 (−2)	147	156 (+9)	156	99 (−57)	99	99	99	99	99	99	99	105 (+6)	105	105	105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함)	279 (+279)	283 (+4)	289 (+6)	289	290 (+1)	305 (+15)	324 (+19)	393 (+69)	406 (+13)	407 (+1)	455 (+48)	482 (+27)	532 (+50)	532	577 (+45)	782 (+205)	833 (+51)	1,143 (+310)	1,143	1,204 (+61)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계	29,738 (+647)	30,077 (+339)	30,620 (+543)	30,883 (+263)	30,968 (+85)	31,099 (+131)	31,513 (+414)	32,070 (+557)	32,607 (+537)	33,076 (+469)
본 부	611 (+6)	623 (+12)	630 (+7)	647 (+17)	654 (+7)	656 (+2)	666 (+10)	668 (+2)	679 (+11)	697 (+18)
검찰청 검 사	1,942 (+95)	1,942	1,942	1,942	1,942	2,032 (+90)	2,112 (+80)	2,182 (+70)	2,252 (+70)	2,292 (+40)
검찰청 일반직등	7,873 (+104)	7,883 (+10)	7,941 (+58)	7,870 (−71)	7,899 (+29)	7,910 (+11)	8,224 (+314)	8,337 (+113)	8,444 (+107)	8,493 (+49)
교 도 소 (구치소, 감호소 포함)	15,088 (+331)	15,345 (+257)	15,623 (+278)	15,839 (+216)	15,850 (+11)	15,756 (−94)	15,701 (−55)	15,732 (+31)	15,860 (+128)	15,963 (+103)
소 년 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포함)	1,122 (+20)	1,128 (+6)	1,148 (+20)	1,146 (−2)	1,169 (+23)	1,181 (+12)	1,196 (+15)	1,238 (+42)	1,291 (+53)	1,339 (+48)
출입국외국인기관 (외국인보호소 포함)	1,738 (+36)	1,751 (+13)	1,789 (+38)	1,800 (+11)	1,809 (+9)	1,903 (+94)	1,946 (+43)	2,197 (+251)	2,330 (+133)	2,439 (+109)
법 무 연 수 원	105	105	105	105	107 (+2)	124 (+17)	131 (+7)	130 (−1)	130	130
보 호 관 찰 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포 함)	1,259 (+55)	1,300 (+41)	1,442 (+142)	1,534 (+92)	1,538 (+4)	1,537 (−1)	1,525 (−12)	1,574 (+49)	1,609 (+35)	1,711 (+102)
북 한 인 권 기 록 보 존 소							12 (+12)	12	12	12

제2절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1. 훈 령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194	1. 15.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지침	• 소년보호기관 의료처우 개선 종합대책 및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인권보호 및 소년원 의료시스템 전반 개선) • 의약품 관리 규정 신설 • 「보호소년 처우지침」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치료처우과
1195	1. 15.	보호소년 처우지침	• 개방처우의 활성화를 위해 보호소년의 교정교육 단계 등에 따른 등급별 개방처우를 실시 • 근신 기준 세부양정의 세분화 및 근신을 위한 처우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석 등	소년보호과
1196	1. 15.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용직 근로자의 급여품 등에 대한 근거 조문 신설	소년보호과
1197	1. 15.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 보호소년 등의 안전을 위해 버스 등 차량 호송시 안전벨트 착용을 명문화 하였으며, 수용사고의 방지를 법정 대기실에서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등	소년보호과
1198	1. 23.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은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본 훈령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를 정비	감찰담당관실
1199	1. 28.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 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운영지원과
1200	2. 1.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 피보호감호자의 처우향상을 위한 자치생활 대상자 범위 확대, 소지할 수 있는 사진 범위 확대, 규정 체계 불일치 사항 보완 및 법령 정비기준 불일치 용어 개선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분류심사과
1201	2. 1.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관리 기준에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규칙 추가	이민정보과
1203	2. 13.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 및 출입국심사 절차 개선, 외국인 승무원의 상륙허가기간 연장규정 신설, 기타 지침 적용범위 정비 등	출입국심사과
1204	2. 27.	보호소년 교육지침	• 여성 고교과정 신설 및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항 적용 등	소년보호과

번호	일자	제 목	주요내용	비 고
1205	2. 27.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 여성 고교과정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 일부과정 폐지, 여성 특수단기(8호 처분) 운영기관 조정, 특수인성교육 용어 변경 • 집중처우 교육과정 운영기관(제주소년원) 삭제,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일부기관의 복수명칭 변경	소년보호과
1206	2. 27.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 여성 특수단기(8호 처분) 운영기관 조정 등	소년보호과
1207	2. 27.	보호소년 처우지침	• 집중처우 운영기관(제주소년원) 삭제 • 여성 고교과정 신설, 여성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및 특수단기(8호 처분) 운영기관 조정	소년보호과
1208	2. 28.	보호기 규정	• 보호기관을 상징하는 보호기의 비치·제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 제정	범죄예방기획과
1209	2. 28.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 지급대상자 추가 및 변경	혁신행정담당관실
1210	3. 5.	법무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혁신행정담당관실
1211	3. 7.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개정	• 수용거실 합리적 운용 및 수용처우 확대 등 업무 관련 규정 정비 • 스마트접견 관련 규정 정비 및 대상자 확대 등	보안과
1212	3. 1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공무원징계령」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혁신행정담당관실
1213	3. 21.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 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운영지원과
1214	3. 26.	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보호관찰소의 조사관 및 소년원의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보호관찰과
1215	4. 1.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 처리지침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실시	이민정보과
1216	4. 11.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 소년보호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주기 명시, 소년보호위원 소속기관 변경방법을 구체화 등	소년보호과
1217	4. 15.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 규정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후보자 추천 시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규정 마련	이민통합과
1218	4. 17.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 상위 근거 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된 내용 반영 • 공직자 갑질금지 규정 및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 등 금지 규정 신설	감사담당관실
1219	4. 24.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 근로자 처우 개선, 정규직 전환 요건 완화, 채용 절차 투명화 및 청렴의무, 휴직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근로자 복무 관리 등을 규정함	혁신행정담당관실
1220	4. 23.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 관리규칙	• 변경된 부서명칭 및 용어 반영 • 관리책임자 지정 및 '공용차량 관리 규정' 준영을 위해 위임규정 신설	범죄예방기획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221	4. 29.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 적용 범위 확대,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1222	5. 2.	교도관 급여품 및 대여품 지침	• 신설·변경된 복제와 품목을 지침에 반영하고 재검토 기한을 신설	복 지 과
1224	5. 14.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운영 규정	•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에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설치	법무심의관실
1225	5. 23.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훈령을 정비	감찰담당관실
1226	5. 23.	법무부감찰규정	• 공무원평정규정」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감찰담당관실
1227	6. 1.	보호소년 처우지침	• 남성 특수단기(8호 처분) 운영기관을 대전소년원에서 전주소년원으로 조정 • 전주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폐지	소년보호과
1228	6. 1.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 남성 특수단기(8호 처분) 운영기관을 대전소년원에서 전주소년원으로 조정	소년보호과
1229	6. 1.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 남성 특수단기(8호 처분) 운영기관을 대전소년원에서 전주소년원으로 조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기관에서 전주소년원을 삭제	소년보호과
1230	5. 28.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 검수관의 검수업무 대행 금지 예외규정 신설	이민조사과
1231	6. 3.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개인정보 유출신고 기준 등) 반영 •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한 조문 등 삭제 • 개인정보취급자의 연간 교육이수 기준 신설 등	정보화담당관실
1233	6. 25.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 전보안 마련 시 균형인사 노력 • 갑질행위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	혁신행정담당관실
1234	6. 2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공무원징계령」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혁신행정담당관실
1236	6. 27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45호)에 따라 법무부 위임전결규정 별표를 공개로 전환하고, 일부 부서의 위임전결 사항을 조정함	혁신행정담당관실
1237	7. 1.	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침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3년 마다 재검토하는 근거 규정 신설	교정기획과
1239	7. 19.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 재검토기한 수정(2019.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체류관리과
1240	7. 22.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 연수생 요건 중 한국어능력 요건 추가 • 연수기간 관련 예외적인 연장 허용기간 확대	체류관리과

번호	일자	제 목	주요내용	비 고
1241	7. 31.	법무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삭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운 영 지 원 과
1242	8. 23.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 수시 소독 실시 사유 구체화 • 감염병 보호외국인 사용 물품 소각 외의 조치 신설 • 격리보호 중인 보호외국인 최소한의 실외운동 보장	이 민 조 사 과
1243	8. 23.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입국사범 단속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인권 교육 및 단속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직무수행 기본원칙에 사고 예방 노력 추가, 단속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강화 등	이 민 조 사 과
1244	8. 27.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	• 훈령 재검토 기한 변경	보 호 관 찰 과
1245	8. 30.	보호소년 교육지침	• 사회복귀교육의 대면교육일수 조정 • 집중처우교육을 기관별 실시에 따른 교육기간 축소 등	소 년 보 호 과
1246	8. 30.	보호소년 처우지침	• 징계 등의 조사 시 형사입건 등 중요사항만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 • 집중처우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대상자 지정 기준 명확화, 대상자 지정 시 처우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규정 명문화	소 년 보 호 과
1247	8. 30.	연구업무수당 지급규칙	• 훈령 재검토 기한 변경	소 년 보 호 과
1249	9. 9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 정책연구 공개 확대 • 정책연구 검증 및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규정 신설	기획재정담 당 관 실
1250	9. 23.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기능 :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구성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민간위원 2분의 1 이상 - 운영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	혁 신 행 정 담 당 관 실
1251	9. 20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45호)에 따라 법무부 위임전결규정 별표를 공개로 전환하고, 일부 부서의 위임전결 사항을 조정함	혁 신 행 정 담 당 관 실
1252	10. 1.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지침	•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 선발방식이 보다 체계적인 숙련기능 점수제(E-7-4) 체류자격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존 훈령을 폐지함	체 류 관 리 과
1253	10. 4.	법무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혁 신 행 정 담 당 관 실
1254	10. 8.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 검찰 개혁 일환으로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 폐지 • 검찰 수사차량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분, 차량 배정대상과 이용 근거를 명확히 규정	검 찰 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255	10. 21.	법무부감찰규정	• 검찰 자체 감찰로 인해 사건 은폐 가능성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각급청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조사결과, 처리예정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위 사건 보고 체계 개선 • 검찰 자체 감찰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심 증폭으로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 확대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어 1차 감찰 사유 추가하는 내용으로 1차 감찰권 강화	감 찰 담 당 관 실
1258	11. 4.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舊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법무부훈령 제978호, '舊 규정')이 존속기한 만료로 실효됨에 따라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상 사 법 무 과
1259	11. 18.	법무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지침	• 적극행정 추진의 결과로 인한 징계,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소송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징계의결 등 요구 : 200만원 이하 지원 - 고소·고발 등 : 500만원 이하 지원(기소 이전에 한함) - 민사상 책임 소송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범위	혁 신 행 정 담 당 관 실
1260	11. 26.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 보호직 공무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제정함	범 죄 예 방 기 획 과
1261	11. 26.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 자비구매물품 자문위원회 제도 신설, 자비구매 물품 품목 폐지 시 수용자의 선호도를 반영, 자비구매물품 공급 주기에 대한 통일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교 정 기 획 과
1263	11. 29.	법무부 자체감사 규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등에 대한 사항 반영 • 감사주기 단축(3년→1년)에 따른 대행감사 관련 규정 정비	감 사 담 당 관 실
1264	11. 29.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 전보안 마련 시 균형인사 노력 • 갑질행위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	혁 신 행 정 담 당 관 실
1265	12. 1.	형사사건공개금지등에관한규정	•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한 원칙적 공개금지 •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에 대한 제한적 공개 •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 예외적 실명 공개 시 위원회 승인 필요 • 형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공보관 도입 • 수사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방송 제한, 검찰청 내 포토라인의 설치 제한 등 초상권보호 조치 • 전문공보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직원 전원에 대한 공보교육 실시 • 훈령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의무	형 사 기 획 과
1266	12. 2.	치료감호소의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 훈령 재검토 기한 설정	치 료 처 우 과

번호	일자	제 목	주요내용	비 고
1267	12. 2.	보호관찰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지침	• 보호관찰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당직실 비치서류 개정, 당직근무 면제규정을 의무조항 및 재검토기한 개정	보호관찰과
1268	12. 11.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045호)에 따라 법무부 위임전결규정 별표를 공개로 전환하고, 일부 부서의 위임전결 사항을 조정함	혁신행정담당관실
1270	12. 6.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규정	• 이용대상자에 대한 규정 명확화, 센터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이용제한 규정 마련	난민과
1271	12. 11.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	• 조리식품 1인분의 보관기간을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연장	이민조사과
1272	12. 12.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인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무원(나급) 직위를 통합하여 운영도록 규칙 개정	교정기획과
1273	12. 12.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 처리지침	• 출입국 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 관련 중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해석상 혼란방지 등 지침의 명확화	이민정보과
1274	12. 17.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지침	• 의무관 부재 기관에서 타 기관 의무관에 대한 진료지원 요청의 근거 보완 •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전담직원 지정	치료처우과
1275	12. 18.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	정보화담당관실
1276	12. 30.	보호소년 처우지침	• 신재생에너지 과정 신설 등 직업훈련 직종 개편	소년보호과
1277	12. 30.	보호소년 교육지침	• 소년원 학교 특성화 교과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2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수 있도록 변경	소년보호과
1278	12. 30.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 사용에 관한 지침	• 신재생에너지 과정 신설 등 직업훈련 직종 개편	소년보호과
1279	12. 31.	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	• 각급 검찰청의 청 운영상황 등에 관한 보고사항 및 절차 규정하여 보고의 적정성 및 통일성 확보, 보고사무의 합리적 운영 도모	검찰과
1280	12. 31.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 소년보호위원 활동유예 기준 구체적 지정 및 보수교육에 사이버 교육 추가 등	소년보호과

2. 예 규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207	1. 14.	교정위원 운영지침	• 교정위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교정위원증 발급기관 명의를 교정시설 기관장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②항 교정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함을 근거로 법무부장관으로 변경	사 회 복 귀 과
1208	1. 21.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 검정고시반 모집·교육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교육대상자 및 시험응시자 확대를 통하여 수용자 교육의 실질적 기회 균등 추구 • 집중인성교육 교육시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교육 수혜자 확대,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반영 및 형기 주기별 교육성격·시간 조항을 추가하여 교육효과성 제고 • 신문 등 구독 및 집필용구 사용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제처 의견을 수용하고, 도서 관련 법령의 위임 사항 및 새로운 우편제도의 처리절차 등을 규정	사 회 복 귀 과
1209	2. 26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 외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도 심의회 간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 • 간병비 산정 기준을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변경 • 간병의 필요성 판단에 있어 반드시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의 판정에 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심의회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개정 • 매년 달라지는 완전생명표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통계청장이 정기적으로 작성·공표하는 완전생명표'에 따라 기대여명 기간을 산정하도록 개정	국 가 송 무 과
1210	2.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 상고허가신청 제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1990년 폐지되었으므로 상고허가신청 포기 승인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민사집행법」이 2002년 제정됨으로써 기존의 '채무명의'가 '집행권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	국 가 송 무 과
1212	3. 13.	검사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수원고검 개청에 따른 수원고검에 관한 내용 추가	검 찰 과
1213	3. 22.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 「정보공개법」 개정 사항 반영 • 공표대상 정보 및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표 개정	운 영 지 원 과
1215	4. 15.	가석방업무지침	• 환자 및 장애인 등 보호사범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기준 완화, 중환자의 경우 가석방 심사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보완	분 류 심 사 과
1216	4. 11.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 소년보호기관 특성에 맞는 부식 구매기준 신설,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 신설, 지침 중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관련 사항을 개정	소 년 보 호 과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217	4. 12.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 병역미필자가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영조물 하자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사병의 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국 가 송 무 과
1218	4. 16.	국적업무처리지침	• 국적 증서의 명칭·종류에 관한 규정 신설 • 사할린 동포 자녀의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 규정	국 적 과
1219	4. 18.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 편중된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된 상고수용자 등의 수용구분 현행화 등 • 수용(출소)증명서 양식을 분리하고 인터넷 발급규정 신설	보 안 과
1221	4. 24.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 신입자 건강진단 시 흉부방사선 검사를 추가하고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 검사에 대하여 외부의료시설 위탁 근거 규정 마련 • 미결수용자 전용 혈액투석기관 운영에 따른 관련이송절차 신설 • 마약류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 규정 신설 • 야간 또는 휴일 등 의무관 부재 시 입소하는 신입수용자가 긴급히 복용하여야 하는 휴대의약품에 대한 임시지급절차 신설 •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지급유형에 따른 구분을 명확히 하여 지침의 체계를 정비 • 상위 법령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용어사용 예에 따라 건강진단과 건강검진의 용어사용을 체계적으로 정비	의 료 과
1222	4. 25.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 절차 상의 미비한 근거 규정을 보완 • 중간처우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 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시행하였거나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폐지 및 개선	사 회 복 귀 과
1224	5. 15.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 직업훈련 분류 용어 및 구분기준 정비, 직업훈련 지도보조원 선정 및 취소절차 명확화 등 지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직 업 훈 련 과
1225	5. 21.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	• 교정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의 측정횟수 방법 등 구체적으로 명시	교 정 기 획 과
1226	5. 23.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사무 처리지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 1. 17. 일부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본 예규 제22조(교육 등)를 정비	감 찰 담 당 관 실
1227	6. 4.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 절차 및 정비 지침	• 법무부 예규 등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한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	법 무 심 의 관 실
1229	6. 25.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 직원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신규 직원 인권교육 실시 규정 신설,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한 진정서 작성 물품 제공 명시, 상위법과 배치되는 내용 삭제, 진정취하서 양식 추가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안	분 류 심 사 과
1230	6. 25	법무연감 발간 규정	• 매년 연감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각 실·국·본부의 의견수렴·조정을 통해 법무연감 발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예규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	기 획 재 정 담 당 관 실

번호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231	6. 28.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의 개정(2019. 4. 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부 고충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혁신행정담당관실
1232	7. 1.	순회점검반 운영지침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침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3년 마다 재검토하는 근거 규정 신설	교정기획과
1233	7. 29.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 법무부 업무포털 게시판 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운영 취지에 맞게 관리되도록 정비	정보화담당관실
1234	8. 27.	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	• 4부제 야근자의 야근일 다음날 교육, 출장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야근일 근무를 일근 근무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침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3년 마다 재검토하는 근거 규정 신설	교정기획과
1235	9. 2.	교도작업 운영지침	• 교도작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차정비 직영운영 개선, 집중근로 작업대상자 선정요건 완화 등 교도작업 운영상 미비점 보완	직업훈련과
1236	9. 2.	교도작업 특별회계 운영지침	• 외부기업통근작업 및 위탁일반생산작업 장려금 인상 등 개선·보완	직업훈련과
1237	9. 4.	심리치료 업무지침	• 교화프로그램에 관한 형집행법 관련 규정 신설(법 제5조의 2·제64조 2항·제107조 3호) 및 시행규칙의 징벌 대상자 심리상담 규정 신설(제219조의 2)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 • 새로 도입되는 추수상담, 정신적 외상 극복 프로그램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동기없는 범죄, 정신질환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심리치료과
1238	10. 8.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검찰 내외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공정하게 심사하여 불필요한 파견을 줄임으로써 일선 검찰청의 형사·공판부 인력 확충 도모	검찰과
1239	10. 18.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 소년보호기관 영양사의 조리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하여 갈등을 방지하고, 소년보호기관의 전반적 위생관리를 위해 영양사를 대신할 위생관리 책임자 신설 등	소년보호과
1240	11. 4.	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 서술형식의 지침을 법률조문 형식으로 변경 • 적용범위(제2조) 신설 • 입지선정(제3조) 관련부서 의견 수렴을 명문화 • 업무주체의 구분(제4조) 내용 추가 • 예산편성 및 예산 재배정(제10조) 관련부서 협의를 명문화 • 재검토기한(제10조) 신설	시설담당관실
1241	11. 29.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 시스템 운영지침	• 변경된 출입국기관 명칭 반영 • 직제 상 보호과가 없거나 상황실(감시실)이 없는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 보완	이민조사과
1243	12 31.	검사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검사가 주요 보직에 보임 될 수 있도록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에 대한 인사·재산 검증의 근거규정을 신설	검찰과

3. 주요지시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1. 1.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 면제조치 연장	• 단체비자 발급대상 5개국(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캄보디아)의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 면제조치를 '19. 12. 31.까지 연장	재외공관	체 류 관 리 과
1. 14.	작업도구 관리 철저 지시	• 2018년도 작업도구로 인한 사고사례 전파 및 작업도구 안전조치 강구, 위험기계취급자 관리 및 사용법 교육, 도구점검 및 불출관리 등 관리 철저 지시	무	직 업 훈 련 과
1. 15.	2019년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관련 자체 행사계획 수립 지시	• 2019. 5. 20. 제12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체 행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	기	이 민 통 합 과
1. 17.	2019년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 방안 시달	• 전국 36개 권역별 특별단속지역 지정, 각 관서별 특별단속지역 단속·순찰 자체 시행계획 수립 등	기	이 민 조 사 과
1. 17.	상주교도소 상고수 수용구분 조정(안) 시달	• 상고하는 수용자에 대한 수용구분을 상주교도소에서 김천소년교도소로 조정	무	보 안 과
1. 18.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철저 지시	• 공중보건의사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관련 사항 및 공무원의 의무 등에 대한 교육실시 등 복무관리 철저 지시	무	의 료 과
1. 23.	'19년도 범죄예방 및 슬럼화 방지를 위한 외국인 밀집지역 재지정 및 관리 방안 시달	• 외국인 밀집지역 재지정(67개소), 외국인 밀집지역 담당관제 지정·운영 등	기	이 민 조 사 과
1. 23.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반입 방지 대책 시달	• 수용자 신입·이입 시 신체·의류 및 영치품 검사 철저 • 서신·도서·소포물 등 외부반입 물품 검사 철저 • 출정 수용자 신체(의류) 및 소지품 검사 철저	무	보 안 과
2. 8.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연임 희망여부 파악 지시	• 외국인 법률상담 지원 중인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촉 절차를 위한 연임희망자 파악	기	이 민 통 합 과
2. 13.	법무부-경찰청 불법 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계획 시달	• '19. 2. 18. ~ 3. 15.(4주) 광역단속팀 설치 출입국·외국인 관서 주관으로 합동단속반 편성, 주당 2회 경찰과 합동단속 실시	기	이 민 조 사 과
2. 22.	필요적 가석방 신청범위 지정 시범운영 계획(안) 시달	• 가석방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대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형자는 예외 없이 가석방을 신청하도록 하는 '가석방 필요적 신청' 제도 도입	무	분 류 심 사 과
3. 6.	테러대비태세 강조 지시	• 국제테러분자 등 위험인물 입국차단을 위한 입국심사 및 정첩보 수집 강화, 상황관리체계 등 강조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3. 11.	환절기 환자관리 철저 지시	• 일교차에 영향을 받는 심장, 폐, 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환자 발생과 직원교육 등을 통해 돌연사 예방 및 환자관리 철저에 지시	무	의 료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3. 12.	교정기관 수용정원 조정(안) 시달	• 부산(구), 광주(교), 논산(지) 수용동 증축 또는 신축에 따른 수용정원 변동내역 반영	무	보 안 과
3. 13.	'19년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실시(안) 시달	• '19. 3. 18. ~ 4. 12.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실시	기	이 민 조 사 과
3. 15.	감염우려자 수용관리 유의사항 시달	• 감염병이나 감염병 우려가 있는 수용자는 분리수용 철저 • 의료기록부·동정관찰사항 등 질병 관련 의료정보 유출 방지	무	보 안 과
3. 20.	결혼이민(F-6) 사증 및 체류지침 개정 시달	• 결혼동거 목적 사증발급 기준 중 초청인이 최근 5년 내 초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른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의 면제 대상에 '폭행 등 초청인 귀책사유 없이 전(前) 배우자 사망한 경우 추가	기	이 민 통 합 과
3. 22.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입국심사 지원 방안 시달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입국편의 제공 및 출입국안전대책반 운영 등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대회 조직위	출 입 국 심 사 과
3. 25.	2018년도 교정사고 등 통계분석 자료 시달	• 각종 교정사고와 징벌집행, 입건 송치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수용관리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 권장	무	보 안 과
3. 25.	「무사증 입국허가 통합지침」 개정	• 국내 입항하는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심사절차 개선 [승무원 상륙허가 방식→무사증 입국허가(B-2-3)] 반영 등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3. 26.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 관리 철저 지시	• 출입국기록, 외국인등록, 규제자 등 우리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의 오남용 사례방지를 위한 교육철저 지시	기	이 민 정 보 과
3. 26.	2019. 4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계획 시달	• '19. 4. 1.~ 4. 26.(4주)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해경청) 실시	기	이 민 조 사 과
4. 4.	식품 위생관리 등 철저 지시	• 식중독 예방 및 청결한 음식물 조리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지시	무	복 지 과
4. 4.	복무규정 위반 사례교육 실시 등 지시	• 겸직 금지, 근무규정 위반, 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사례 전파로 공직기강 확립 철저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4. 10.	석면자재 관리실태 점검결과 알림 및 개선 지시	• 석면자재 실태 결과 알림 및 기관별 재점검 지시	무	복 지 과
4. 12.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확립 지시	•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 • 공직기강 해이 사례 예방 및 점검활동 강화 • 재난사고 발생 등에 대응한 비상 대비태세 유지	무	교 정 기 획 과
4. 15.	인플루엔자 예방활동 지속 실시	• 환절기 인플루엔자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교정시설 및 가정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관리 철저 지시	무	의 료 과
4. 26.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	• 개정 시행된 의약품관리지침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및 약품 오남용 금지 철저 지시	무	의 료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4. 29.	A형간염 등 감염병 예방관리 철저 지시	• 최근 A형 간염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개인위생에 철저 지시	무	의 료 과
5. 14.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전파 및 활용 협조 이행	• 외국인 체류 관련 업무처리 시, 국가인권위원회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기	체 류 관 리 과
5. 14.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 집중단속 실시(안) 시달	• ’19. 5. 20.~ 6. 14. (4주)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 집중단속 실시	기	이 민 조 사 과
5. 15.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ASF 관련 반입금지 품목 및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조치사항 안내·홍보	기, 지방자치단체	체 류 관 리 과
5. 21.	2019. 6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계획 시달	• ’19. 6. 3.~ 6. 28.(4주)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해경청)실시	기	이 민 조 사 과
5. 27.	폐기대상 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	• 의약품폐기 부적정 사례 기관이 발생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철저 지시	무	의 료 과
5. 27.	교정시설 하절기 수용관리 대책(안)	• 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 강화 • 환자·노인수용자 등 온열질환 발병 취약 수용자 집중 관리 • 다양한 폭염 대책 마련 시행	무	보 안 과
5. 28.	취업조건부 가석방 허가(예정)자 교육철저 지시	• 가석방 허가(예정)자 교육과 별도로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과 취업담당직원이 출근일 및 특별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 철저 지시	무	직 업 훈 련 과
5. 31	도로교통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근절 재강조 지시	• 음주운전 유형별 징계 기준 상향 등 처벌강화 기조와 관련 변경된 처벌 법령 전파	무	교 정 기 획 과
5. 3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지시사항 알림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자 처벌 강화 및 공항만 법무부 자체 홍보 실시 등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6. 5.	「관광상륙허가제 시행지침」 개정	• QR코드를 탑재한 관광상륙허가서 발급 등 크루즈 승객 출입국심사 절차 개선 반영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 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6. 10.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방안’ 연장	• 한시적 구제조치 시행(’17.8.15.~’19.6.30.)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치로 방문동거(F-1-25) 자격을 부여받았던 4세대 이후 동포의 체류허가기간을 ’19.12.31.까지 연장 허용	기	체 류 관 리 과
6. 12.	2분기 유흥업소·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등 합동단속 계획(안) 시달	• ’19. 6. 17.~ 7. 12.(4주), 유흥·마사지업종의 불법취업 외국인 및 고용주와 불법입국 및 고용 알선브로커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기	이 민 조 사 과
6. 13.	2019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연수회 참여희망자 파악 지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강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회 참여 수요 파악	기	이 민 통 합 과
6. 18.	수용자 호송용 조끼 개발 및 시범실시 계획(안) 시달	• 수용자 외부 호송 시 포승 등 보호장비 노출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인격권 강화를 위한 ‘수용자 호송용 조끼’ 시범 실시	무	보 안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6. 18.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관리 매뉴얼 시달	• 교정시설 및 수용자 계호강화를 위해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매뉴얼을 시달	무	보 안 과
6. 18.	경찰관 호송 입소자 물품 인계인수 관련 유의사항 시달	• 각 경찰서 유치장에서 교정기관으로 호송되는 피의자의 영치물품은 호송경찰관이 인수관서에 직접 전달하도록 지시	무	보 안 과
6. 21.	장마철 및 혹서기 방역 등 예방활동 강화 지시	• 방역활동 강화, 온열질환 예방, 환자조기 발견 및 관리강화, 개인위생 철저 등 지시	무	의 료 과
6. 25.	단기방문 외국인 출국 시 자동심사대 이용 확대 관련 업무 지시(협조)	• 외국인 관광객 등 단기방문 외국인 출국시 자동출국심사대 이용 확대 관련 지시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6. 26.	개정 구상권 행사 업무 처리 지침 시행	•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하여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상 대상 사건의 손해가 적극행정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구상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지시 • 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 제기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구상 대상 사건의 손해가 적극행정의 결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시	소송수행 검찰청	국 가 송 무 과
7. 1.	출입국심사 철저 및 직무교육 강화 지시	• 본인여부, 출입국규제자 여부, 위변조여권 행사 여부 등 확인 철저, 심사관 직무교육 내실화, 직무 해태 시 엄중조치 등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7. 15.	개선된 스마트접견 전국 교정기관 전면 시행 계획 시달	• 개선된 스마트접견 시스템의 시범운영 결과 조출된 문제점 보완하여 전 기관 확대 시행	무	보 안 과
7. 22.	2019. 8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계획 시달	• '19. 8. 5.~ 8. 30.(4주)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해경청) 실시	기	이 민 조 사 과
7. 23.	운영지원 취업자 수용관리 등 강화 방안	• 간병수용자의 우편물(택배)을 이용한 휴대전화 반입·사용 등과 관련, 각 사무실에 출역하는 운영지원 작업자의 효율적 관리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	무	보 안 과
7. 25.	수용자 의약품 투약관리 개선방안 시달	• 국립법무병원 방문, 정신질환자 관리 및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약품) 투약방법 비교분석을 통하여 수용자 의약품 투약관리 개선방안 시달	무	의 료 과
7. 25.	교부허가의약품반입 절차 개선방안 시달	• 교부허가의약품 반입 관련 완화 적용시 우송에 의한 무분별한 교부허가의약품 반입방지를 위한 제한 장치 마련	무	의 료 과
7. 30.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추천 등 지시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임기 만료 예정에 따른 신규위원 및 임기만료자에 대한 재위촉 추천 지시	기	이 민 통 합 과
7. 31.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시달	•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 및 배려 부족 등으로 인한 차별행위, 인권침해, 성희롱 논란 방지 등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시달	무	보 안 과
8. 1.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재강조 지시	• A형간염 확산에 따른 식중독 예방 철저 재강조 지시	무	복 지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8. 8.	음주운전(숙취운전) 근절 재강조 지시	• 소량 음주 및 숙취 운전으로 인한 교정공무원 적발이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 예방활동 강화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8. 16.	조사수용, 징벌집행 관련 개선(안) 시달	• 조사수용 기간의 징벌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기준 적용 등 조사수용에 관한 사항 • 징벌위원 구성·회의방식 변경, 외부위원 연임 제한 등 징벌 집행에 관한 사항	무	보 안 과
8. 21.	교정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지시 사항 시달	• 신청한 사업 목적에 맞게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 설계내역서, 도면, 시방서 등에 맞게 시공되도록 감독 철저 • 공사 인부 및 장비 등에 대한 감독 철저	무	보 안 과
8. 28.	불법·유흥 마사지 업소 집중단속 계획 시달	• '19. 9월(1개월) 불법 유흥·마사지업소 집중단속 실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불법행위, 마사지업소 등 신종 유흥업소의 미풍양속 저해행위 등)	기	이 민 조 사 과
8. 29.	분류심사 당월 가석방 실시계획 통보 및 시달	• 가석방에서 제외되었던 단기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 기회를 부여하고 수형자 간 악풍감염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당월 가석방 신청' 제도 도입	무	분 류 심 사 과
8. 30.	추석 연휴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철저 지시	• 공중보건의사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관련 사항 및 공무원의 의무 등에 대한 교육실시 등 복무관리 철저 지시	무	의 료 과
9. 2.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멘토교육 전면실시 관련 지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등 우수 이민자가 멘토가 되어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는 멘토과정을 전국 15개 출입국·외국인관서별 실시	기	이 민 통 합 과
9. 6.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휴강 검토 지시	•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우려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휴강 여부 검토 및 휴강결정 시 신속한 통보와 시설물 안전대책 등 마련 지시	기	이 민 통 합 과
9. 10.	수용자 개인 병력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지시	• 수용자 의료처우시 개인병력 등 개인정보 침해사례 관련 관리 철저 지시	무	의 료 과
9. 16.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사복착용 개선 지시	•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참여 수용자의 사복(정장) 착용과 관련하여 계호부담 완화, 부가적 업무 감소 등으로 수형자 취업지원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희망자에 따라 사복을 착용하는 개선방안 시달	무	직 업 훈 련 과
9. 20.	ICRM2019 사용자 운용환경 점검 및 실습 지시	•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ICRM2019) 운영 예정에 앞서 오픈 초기 혼란방지 예방 및 사용자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한 사용자 운용환경 점검 및 실습 지시	기	이 민 정 보 과
9. 24.	환절기 환자관리 철저 지시	•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환자관리 유의 사항 및 관리 철저 지시	무	의 료 과
9. 25.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통합·조기적응 프로그램 수업 관련 지시	•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일시 이동 중지명령 발령에 따른 축산 관련 종사자의 교육참여 관련 안내 등 조치 지시	기	이 민 통 합 과
9. 30.	2019. 10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계획 시달	• '19. 10. 7. ~ 11. 1.(4주)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해경청) 실시	기	이 민 조 사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10. 2.	수용자용 공중전화기 교체 및 개선 계획 시달	• 음성 자동 안내·통화 차단 기능 등이 부가된 공중전화기 도입	무	보 안 과
10. 7.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시행 알림	• 10. 21.(월)부터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자진출국 제도를 폐지하고, 출국일 기준 3일 전(공휴일 제외)~15일 전까지 현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 • 체류지 관서에서는 '19. 10. 14.(월)부터 접수	기	이 민 조 사 과
10. 8.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체류심사 강화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역에서 축산업(E-9-3) 체류자격으로 근무했던 외국인근로자 근무처변경 신청 시, 신규 고용주에게 이전 근무경력 고지 및 고용의사 확인 후 심사 진행	기	체 류 관 리 과
10. 11	음주운전(숙취운전) 예방교육 철저 지시	• 2019년도 주요 음주운전 적발사례를 전파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10. 17.	출입국심사 특이동향 분석 강화 지시	• 공항만별 통상 범위를 벗어난 특이동향 확인 철저, 불법체류 다발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목적 확인 철저, 선별적 집중심사 강화 등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10. 24.	소송수행청 송무지도점검 철저 지시	• 소송수행청에 대한 송무지도점검 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전반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및 적정성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	소송수행 검찰청	국 가 송 무 과
10. 24.	형집행법 일부개정(안) 전면 시행(금지물품 등) 관련 안내사항 시달	• 무인비행장치 등을 금지물품에 추가 • 금지물품의 소지·반입에 대한 벌칙 규정 정비 • 교정시설 내부 불법 녹화·녹음 처벌 규정 신설	무	보 안 과
10. 28.	11월 불법·유흥 마사지 업소 집중단속 계획 시달	• '19. 11월(1개월) 불법 유흥·마사지업소 집중단속 실시(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불법행위, 마사지업소 등 신종 유흥업소의 미풍양속 저해행위 등)	기	이 민 조 사 과
10. 31.	교정시설 상공 무인비행장치(드론) 불법 침투에 따른 대응방안 시달	•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의 대중화로 불법촬 영 및 부정물품 반입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대응방안 시달	무	보 안 과
10. 31.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적정 수용 및 처우를 위한 개선 방안 시달	•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수에 적정한 중경비시설을 추가 지정하여 중경비 처우급 수형자 처우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개선방안 시달	무	보 안 과
11. 7.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가석방 실시계획 시달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출소 후 재범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해 전문의료기관 치료를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가하는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 시행	무	분 류 심 사 과
11. 7.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심사 지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공모 및 신규지정을 위한 절차 지시	기	이 민 통 합 과
11. 9.	ICRM2019 통합 모의시험 시행 지시	•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ICRM2019)의 성공적인 운영 전환을 위해 출입국업무 단위별 실제운영과 유사한 방식의 모의시험 실시 지시	기	이 민 정 보 과
11. 11.	결혼이민자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준비 및 운영 철저	• '19. 10월 이후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등에 따른 교육수요 반영을 위한 교재확보 및 기타 준비사항 철저 확인 지시	기	이 민 통 합 과

일자	제 목	주 요 내 용	수신처	비 고
11. 12.	수용자 의약품 투약관리 철저 지시	• 의약품 지급 및 복용관리 유의사항 시달 및 관리철저 지시	무	의 료 과
11. 18.	영치금 잔액 점검 및 관리 철저 지시	• 영치금 잔액 불일치 사례 점검 및 철저 지시	무	복 지 과
11. 19.	2019 한-아세안, 한-메콩 특별정상회의 등의 출입국 지원 및 안전대책 시달	• 2019 한-아세안, 한-메콩 특별정상회의 출입국 편의제공 및 출입국안전대책반 편성 등 알림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11. 22.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및 이용에 관한 통합지침	• 자동출입국심사 관련 별도 관리하던 지침을 통합하고, 승무원 자동심사 간소화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 등	본부 각 과, 출입국·외국인기관	출 입 국 심 사 과
11. 26.	2019. 12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계획 시달	• '19. 12. 2. ~ 12. 27.(4주)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경찰청, 고용부, 국토부, 해경청) 실시	기	이 민 조 사 과
11. 28.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교육 지시	• 교정공무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례를 활용한 각 기관 교육 철저 지시	무	교 정 기 획 과
12. 2.	수용자 호송용 조끼 확대시행 방안 시달	• 수용자 인권침해 최소화를 통한 교정행정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실시해 오던 '수용자 호송용 조끼'의 일부 개선하여 확대 시행 방안 시달	무	보 안 과
12. 4.	ICRM2019 전환에 따른 비상심사 운영 시 업무처리 지시	• 소속직원들이 비상출입국심사시스템 운영시 비상심사 매뉴얼 및 자동출입국심사대의 비상전환 매뉴얼 숙지 등 지시	기	이 민 정 보 과
12. 5.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활동 철저 지시	• A형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와 관련하여 증상 및 예방법 등을 전파,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관리 철저 지시	무	의 료 과
12. 10.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 시행 알림	• (재입국 기회 부여)'20. 6. 30.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090) 단수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기간 준수 출국 시 90일 단기방문 1년 복수비자 발급) • (신규유입 억제)'20. 3. 1. 이후 단속되거나 '20. 7. 1. 이후 자진출국 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 •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19. 12. 11. ~ '20. 3. 31.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무처 변경 등 절차 미 이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진신고제도 운영, '19. 12. 11. ~ '20. 1. 15.까지 농·어촌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 운영 등	기	이 민 조 사 과
12. 16.	보호외국인 장기보호 방지방안(보호기간 연장 심사의 실질화)시달	• 보호기간 연장시 단계별 승인절차 강화 • 보호소장 의견 수렴절차 강화 • 보호일시해제의 적정운영 방안	기	이 민 조 사 과

제3절 장관 연설문

▣ 2019년도 법무부 장관의 주요연설 현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설현황 |

일 자	주요 행사명	비 고
1. 21.	•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2. 27.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3. 29.	• 2019 인권경영포럼	
4. 1.	• 신임검사 임관식	
4. 5.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4. 5.	•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격려사	차관 대참/대독
4. 25.	• 제56회 법의 날 기념사	
4. 30.	•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위촉식	
5. 2.	•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5. 3.	• 수원고등검찰청사 준공식	
5. 8.	• 신임검사 임관식	
5. 9.	•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	
5. 20.	•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5. 20.	• 2019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5. 24.	•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외국인본부장 대참/대독
6. 25.	• 법무부·통일부·국회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	차관 대참/대독
6. 28.	•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차관 대참
7. 1.	•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행사	
8. 1.	• 신임검사 임관식	
8. 26.	•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차관 대참/대독
9. 16.	•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9. 20.	• 제8회 ADR 컨퍼런스 개회사	차관 대참/대독
10. 28.	• 제74주년 교정의 날	장관 직무대행
11. 8.	• 2019년 법무보호복지의 날 격려사	장관 직무대행
11. 20.	• 20만 번째 귀화자 국적증서 수여식	장관 직무대행
11. 22.	• 이민정책연구원 10주년 기념행사	장관 직무대행
11. 27.	• 제12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기념사	장관 직무대행
12. 3.	•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	외국인본부장 대참/대독
12. 6.	• 2019 법무부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위촉식	장관 직무대행
12. 9.	• 2019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 격려사	장관 직무대행
12. 18.	• 마을 변호사 6주년 기념식	장관 직무대행
12. 18.	•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	장관 직무대행

• 제1회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축사

Ⅰ

오늘 새롭게 국적을 취득 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이 되시는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태어난 국가와 자라온 환경은 다르지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간 이민자로서 한국에 잘 정착해 왔고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Ⅱ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땅의 우리 선조들은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지혜와 강건한 의지로 당당히 맞서 일어섰으며,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인구 5천만 이상과 3만 불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갖춘 나라만이 자격이 되는 30-50클럽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민주화를 이루어 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국적을 취득한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 조국의 역사가 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사회를 더욱 활력 있고 다채롭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을 지원하고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구히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희망찬 역사를 함께 써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1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수여식 축사

Ⅰ

먼저, 오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님과 국가보훈처 관계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올해는 3. 1 만세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참으로 뜻깊은 해입니다.

100년 전 1919. 3월 이 땅에서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운동은 조국의 독립과 자주, 세계평화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는 쾌거였습니다.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3·1 만세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와 열강의 침탈에 시달리던 다른 국가들과 민족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항일독립을 위한 투쟁은 한반도뿐 아니라 이역만리에서도 가열하게 전개되었고,

1919. 4월에는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국권회복과 독립투쟁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등 광복으로 가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선열들께서는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의병으로, 독립군으로, 만세시위의 주최자로, 민족교육자로서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 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의 선조입니다.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목숨 바쳐 싸우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의지에 가슴깊이 경의를 표하며,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힘들게 살아오셨을 후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 많은 것을 인내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오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늦게나마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에게 국적을 되찾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Ⅲ

우리 대한민국은 선대들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세계 10위권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문화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번영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대한민국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7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2019 인권경영포럼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입니다.

우리나라 인권경영의 미래를 논하는 2019 인권경영포럼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김관영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경제신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화두에 오르는 주제중 하나가 기업의 '갑질'입니다. 더욱이 기업 임직원의 인격모독적 행위 외에도 우리 기업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사업장에서 공급망

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의 인권을 도외시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권침해 사례가 기업 활동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과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과 인권' 증진을 위한 관계부처 및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과 인권'이라고 하면 언뜻 새로운 주제 같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이 주제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이후 논의를 거듭한 끝에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공표되면서, '기업과 인권' 분야는 비로소 국제사회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는 기존에 국제인권규범의 수범자를 국가로 한정하여 해석해왔으나, 이를 점차 기업에까지 확장시켜왔습니다. 비록 '기업과 인권'과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은 아직 없지만, 다국적기업도 국제법적으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경영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는 (1)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2)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3)효과적 구제수단을 인권경영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들은 국가정책을 집행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기관으로서 이러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인권경영을 실천함으로써 민간 기업에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 기업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공기업이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권경영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을지 법무부로서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계에도 인권경영이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29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신임검사 임관식

신임검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3년간의 법무관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영예로운 대한민국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신임검사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오신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임검사들에게 아낌 없는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과 힘든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검사에게는 가족의 격려와 지원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임검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형 집행 등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국민을 위한 기관의 구성원이며, 검찰 조직의 일원이라는 협소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검사로서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동시에, 앞으로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무게를 느끼고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훌륭한 검사로 성장해 나가는 길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권 행사를 당부합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균형감각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기계적인 법적용을 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고 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검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막대한 사회적 폐해를 끼친 범죄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특권과 반칙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검찰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수사의 중심목표와 관련성이 약하거나 처벌만을 위한 표적수사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에게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균형감각은 정의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검사에게 진정으로 기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검찰상, 국민들이 검찰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항상 깊이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기 바랍니다.

둘째, 인권보호를 항상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한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법무행정의 중심 가치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검사 제도가 탄생한 배경은 기소와 재판을 함께 담당한 규문주의 사법제도 하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검사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깊이 새기면서, 동시에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업무의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도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에서만 그 의미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셋째,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무와 권한을 생각하면, 검사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범하지 않도록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은 검사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업무내용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검사에게 높은 직업윤리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검사의 비위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단죄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검사가 비위를 저지르고,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순간의 경솔한 판단과 행동은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언행 역시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하며, 신중하여야 합니다.

검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품격을 지키면서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검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가족·친지들의 축하를 받으며, 그동안 꿈꾸어 왔던 검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앞길이 항상 화려하거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달리, 검사로서의 일상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에게 주어진 책무와 권한은 가볍지 않고, 국민들의 기대치는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검사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처음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며 품었던 이상과 목표를 간직하면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바른 마음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낼 것이라 믿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오늘 낭독한 검사 선서의 문구를 마음 깊이 새겨두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의 초심을 잊지 않고 꾸준히 정진한다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훌륭한 대한민국 검사로 성장할 것입니다.

검사로서의 새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0주년을 기념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을 마련해 주신 김순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틀을 바꾼 역사적인 변화였습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지난 10년간 그 틀을 갖추고 법조인 양성 제도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1만 명 이상의 법조인이 배출되었고, 송무 영역 외에도 기업과 공익 영역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다양한 전문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진출하여 국민의 법률복지를 향상시키고 법치주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중요한 성과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변호사시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 변호사시험 시행 7회를 맞이하여,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정착 단계를 넘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는 올해 실시된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5개 지역으로 시험장을 확대하였고, 최신 판례의 출제 범위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선택형 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하는 법령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목 시험 개선과 노트북 답안작성 등 추가 개선방안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시험에 관한 다양한 요구에 항상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합격자 결정기준과 응시제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제도의 도입 취지와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재논의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을 포함한 응시제한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지만,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제도 운영의 문제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 선발 및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지역인재 육성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아가, 학문 후속 세대 양성,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논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모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포지엄에서의 논의가 제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과 같은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김순석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5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격려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봄 기운이 가득한 과천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법무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학생 여러분을 직접 마주하니 따뜻한 봄 햇살과 같은 큰 원동력을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은 총 351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여러분들이 법령경연대회에 공모해주신 모의 법령안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올바른 정책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실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짐을 체감할 수 있는 법령을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무정책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열정을 다해 경연대회를 준비한 참가자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학사 일정 와중에도 오늘 시상식을 위하여 시간을 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5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제56회 법의 날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확립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제56회 법의 날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 깊은 날을 맞아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보호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제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의해 제정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립 운동가들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10개조에 달하는 '임시헌장'을 제정함으로써 건국의 법적 기초를 닦았습니다.

'임시헌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민주공화제로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주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의 나라임을 만방에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을 규정하고 생명형·신체형을 전폐하는 등 당시로서는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내용의 헌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100년 전의 민주적 법 정신은 오늘까지 이어져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길고 긴 질곡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법이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해 봉사하고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 법 정신이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투쟁하신 분을 포함하여 국민의 힘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60년 4·19 혁명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항쟁, 1987년의 민주화 투쟁 그리고 촛불 혁명은 모두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분연히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민주화 투쟁의 역사입니다.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도 비로소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법의 이름으로 법을 훼손한 그 동안의 반칙을 단죄하고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그 한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보호를 위한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법과 질서'만을 강조하는 오만한 자세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였던 모습을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인권의 문제는 기업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 원칙입니다. 법무부는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민주주의적 원칙과 부합하여야 하고, 구성원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이며 우리나라 기업의 의사결정 수준을 선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기업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인권경영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여 인격이 존중되고 평등한 인간관계가 기업 내에서도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임시정부를 수립한 직후 도산 안창호 선생은 "과거에는 주권자가 오직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주권자"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은 법의 적용대상으로만 취급되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주권자이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가치를 우리 헌법은 담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염원을 법무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법 제정,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과 법치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쉬게 된다면 1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임시헌장을 만들며 꿈꾸었던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며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영예로운 훈장과 표창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5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위촉식

존경하는 윤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신록의 계절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역할을 맡아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법무부의 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주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각 분야에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이자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등을 담당하는 '가족'을 도외시하고는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가족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하나, 가족의 기능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구조와 출생·가족·양육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음에도, 기존 제도가 이를 수용함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제도는 소외되는 계층을 만들고, 나아가 구성원 간의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낮은 수용성과 편견·차별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낙태, 유기 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는 앞서의 지적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의롭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은 요원할 것입니다.

금일 출범하는 본 위원회는 출생·가족·양육 관련 법무부 소관 법제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그 방향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폭넓은 연령대에서, 교수님과 법조·여성·아동복지 분야의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그리고, 조경애 서울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부장님을 비롯하여 총 네 분의 여성 위원님을 위촉함으로써 여성의 목소리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가 출생·가족·양육의 분야에서 실현되는 구체적인 법령과 정책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계와 실무계의 권위자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법무부의 관련 주요 법령과 정책을 잘 점검해주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가오는 가정의 달도 뜻깊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30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사랑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달 5월에 제37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예로운 교정대상을 받으시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혼신을 다해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가족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정대상을 주관하고 후원해 주신 서울신문사 고광헌 사장님, 한국방송공사 정필모 부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용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새 삶의 희망을 심어주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은 어렵고도 힘든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용자 교정교화는 자기희생의 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시상한 교정대상은 작지만 이 분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교정가족 여러분!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면서 임무는 인권이 보호받는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비로소 국민 모두는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법과 질서만을 강조해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범죄 역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범죄를 최대한 예방하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범죄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범죄대책 수립과 지속적인 재범방지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교정행정이 있습니다. 그 동안 법무부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정정책의 시행과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수용자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인권보장 내실화를 위해 수용환경 개선과 규율 위반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적 소외감을 덜어줌으로써 따뜻한 포용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범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심리치료과와 분류센터 등을 신설하여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각 지역의 교도소 증축 및 신축, 취업조건부 가석방제도 도입,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교정행정은 국민의 인권의식의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수용자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건전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관심과 교정가족 여러분들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헌신적인 노력은 결국, 수용자로 하여금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 내어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교정행정을 포함하여 법무행정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동시에,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교정가족 여러분도 국민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교정행정의 변화를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교정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및 교정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수원고등검찰청사 준공식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수원의 검찰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수원고등검찰청 개청 및 수원 검찰청사 준공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신청사 준공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원은 경기도의 중심지역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도권 행정·산업의 핵심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관련 기업이 집중되어 있고, 이에 따른 인구유입, 광역 고속 철도망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등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적 지역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등검찰청이 없었고 기존의 수원 지검 청사도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이에 2014년 2월 수원고검 설치법안을 마련하고 2016. 11월 공사를 시작하여 지난 4월 신청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원고등검찰청은 우리나라에서 27년 만에 개청한 6번째의 고등검찰청입니다.

1948년 8월 서울지방검찰청 수원지청으로 시작한 수원 검찰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에서 수원 지역의 위상에 걸맞은 수원 검찰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공식은 수원 검찰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입니다.

새 청사의 준공에 걸맞은 검찰의 역할을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은 개성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이고, 기업이나 단체는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검찰조직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은 주지하다시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수사권과 재판권을 모두 가지고 있던 견제 받지 않던 규문판사의 전횡을 막아보자는 것이 제도적 취지였습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집중된 권한으로 인한 문제점은 검찰제도의 등장으로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역시 직접적으로 수사에 집중할 경우 기소를 하여야 한다는 심리적 강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소권 행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검사로서의 열정과 정의감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1차적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한 순간 검사로서의 객관의무보다는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시대 상황은 변했고 국민의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관행은 물론이고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검찰은 경찰에 대하여 각종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정부 수사권조정안에서 합의된 내용인 자치경찰제의 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도 함께 논의될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한 진지한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국민을 위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둘째, 검찰의 사건처리는 신속하고 적정하게 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연되는 검찰의 사건처리는 민원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제도적 개선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혁파하여 주민들이 신뢰하는 수원 검찰을 만들어 우리나라 검찰의 전형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업무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균형감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실질에 부합하는 상대적 균형감을 의미합니다.

경미한 사건을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하고, 중대한 사건에 대해 관용적인 처분을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는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처분입니다.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이 적정하고 사안의 경중에 비례해서 적용되는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구성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의욕도 생기는 법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경직된 수직적 조직문화가 유연한 수평적 조직문화로 바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검찰 가족 여러분!

'광교 법조타운 시대'를 맞이하여 관할 인구로는 서울고검 다음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청사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즐겁게 근무하면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수원 검찰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수원고검의 개청과 신청사의 준공을 축하드리며,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3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신임검사 임관식

신임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예로운 대한민국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미래를 짊어질 여러분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니 매우 든든합니다.

오늘 검사로서 첫 걸음을 시작하는 여러분은 매우 힘든 관문을 거쳐 대한민국 검사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굳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신임검사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아낌없이 뒷받침을 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검사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국가의 법질서를 지켜내야 할 무거운 책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권 행사를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검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균형감 있고 적정한 법 적용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균형감을 상실하고 편협하거나 기계적인 법 적용을 할 경우, 법적 정의의 기본 토대가 약화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사안의 경중을 분간하고 이에 비례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검사의 직무 수행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형감은 정의의 핵심요소라 할 것이며, 국민들이 검사에게 진정으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에게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둘째, 인권보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이며, 인권보호는 법무행정의 중심목표입니다. 또한 검찰제도의 출현 배경이기도 합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도 인권이 보장되는 적법절차 내에서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으며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를 항상 국민의 시각으로 직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검사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검사에게 청렴성을 특히 요구하는 것은 검사가 수행하는 직무 내용에서 비롯됩니다.

청렴하지 않고 도덕성이 결여된 검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검사 한 사람의 언행이 검찰 전체에 대한 평가로 쉽게 일반화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언제나 언행에 신중하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하기 전에 오해될 소지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임검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가족·친지들의 축하를 받으며, 그동안 꿈꾸어 왔던 검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대와 달리, 검사로서의 일상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검찰에 변화와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처음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며 품었던 이상과 목표를 간직하기 바랍니다.

또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바른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10개월 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실시될 신임검사 교육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훌륭한 대한민국 검사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검사로서의 새 출발을 다시 한 번 축하하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8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 축사

I

출입국기관장과 해외 주재관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할 나위 없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특히,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먼걸음을 하신 해외주재관 여러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로 우리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고, 앞으로 맞을 새로운 영광의 100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권상실, 분단과 전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높은 생활수준과 경제규모를 갖춘 강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II

이처럼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의 수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지역 출신의 불법체류 외국인, 남용적 난민신청자의 유입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부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新)남방정책의 성공을 위해, 한편으로는 우수인재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비자정책을 개선해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익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출입국 기관장과 해외 주재관들께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II

첫째, 적극행정은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은 엄단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올해 공직복무 방향을 "적극정인 행정은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로 장려하고, 소극적인 행정은 엄중히 문책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기존 관행이나 형식에 치우친 업무 처리, 업무 해태, 민원처리 지연 등과 같은 소극행정의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기관장들은 이러한 직원들의 행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장 책임하에 직원들의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엄중 문책한다는 원칙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재관들 또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우수인재 유치에 초점을 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비자발급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조기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 군인,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하나되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가 최악의 참사가 되지 않은 것은 소방 매뉴얼을 철저히 따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의 하나된 노력과 사고 단계별로 잘 만들어진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안전사고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길 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재관들도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의 유입 방지를 위해 비자발급 업무에 보다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공직사회의 변화가 공무원 조직 내에서만 느껴질 수 있는 수준 만으로는 국민인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는 만큼 그간의 업무 방식과 사고의 틀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연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역량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회의 마치고, 국내외 임지에 잘 복귀하시기 바라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9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사

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한외국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이하는 '세계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신 정성호 국회의원님,

마이클 대나허(Michael Danagher) 주한 캐나다 대사님,

그리고 각국 대사님들을 비롯한 주한외교사절 여러분과 올해의 이민자 상 등 수상의 영예를 안은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Ⅱ

「세계인의 날」은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마련된 법정기념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미 240만 명을 넘어섰으며, 향후 2021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 2025년에는 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퍼센트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간의 인구 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는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민은 21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외국인 증가에 따라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Ⅲ

앞으로 우리 정부는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자립·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과 외국인이 상호소통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이민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하여 이민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과 외국인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외국인 간 정서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상호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자를 적극 발굴, 홍보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Ⅳ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한외국인 여러분!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독립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세계인과 함께 한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외국인이 함께 했기에 그 꿈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상호 이해와 공감을 넘어 자립과 통합을 함께 꿈꾸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국민과 외국인이 화합을 통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세계를 만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0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친애하는 전국 교정기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관장 여러분, 그리고 교정공무원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인권이 보호받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개선하고, 신뢰에 기반한 평등한 사회,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진정한"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정본부 역시,"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을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국민과 수형자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정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수용처우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접견 등 수용자의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유도하고 출소 후 사회적응력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범죄의 대물림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정의 변화는

교정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수형자에게는 새 삶의 희망을 심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정기관장 여러분!

변화와 혁신이라는 국민의 열망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3년차입니다.

이제 교정도, 보다 내실 있게 정책을 운용하고, 아직도 조직 내 불합리한 제도와 의식이 관행처럼 남아 있다면, 과감히 청산하고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정기관장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서와 인권이 조화로운 수용처우로 국민이 신뢰하는 교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수용관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우하고, 정해진 기준과 절차가 준수되는 엄정한 수용질서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엄정한 수용질서 요구만으로는 수용자의 변화를 기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감성이 바탕이 되어야 참다운 교정교화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은 차별적이고 부수적인 가치가 아니라 천부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수용자라 하여 결코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이 변화된 시대적 인식입니다. 교정행정의 목표를 올바로 실천하고, 시대적 인식변화까지 감지하고 담아내, 국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교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교정행정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교정의 목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시켜, 재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소자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때, 교정이 그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국민들 역시 교정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대적 상황을 담아낼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미래지향적 교정행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 친화적 교정행정'을 만드는데 힘써 주십시오.

교정은 여러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국민과 친숙한 소재의 하나가 되었으나, 여전히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만족할 만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지지 없이는 교정시설의 신축, 이전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교정의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민의 뜻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교정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시행하여, 국민이 교정을 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출소자들을 동반자로 수용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교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교정공무원이 행복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발전의 근본은 튼튼한 조직기반을 바탕으로 한 조직 역량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교정공무원의 소통을 통한 단합은 교정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의 전제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과 같은 관리자들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직원들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조직구성원 모두가 조직문화의 주체가 되어 구성원들의 역량이 한 방향으로 결집될 때 목표로 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장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하여 교정공무원 모두가 행복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선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정기관장 여러분!

과밀수용 문제, 부족한 인력사정 등 교정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 해결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기관장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교정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교정이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교정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정조직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정공무원 가족에게도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20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축사

제12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이민정책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스하고 화창한 5월의 봄날에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포럼을 공동주최하여 주신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님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에 참여하신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 및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지난 2007년 체류외국인이 100만 명에 도달한 이래, 2018년에는 국민의 약 4.6%에 해당하는 약 237만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민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글로벌 사회현상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증가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창의와 혁신에 도움을 주는 반면 문화적 갈등과 사회통합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중장기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민현상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현상으로 인한 미래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롭게 상생하며 상호발전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우수외국인 유입이 미래의 국가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어느덧 12회를 맞이한 세계인의 날을 기념한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와 학회에서 함께 국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이민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뜻 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오늘 포럼을 통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방향성과 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우리사회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법무부·통일부·국회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전쟁 발발 69주년인 오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법적과제'를 주제로 통일부와 국회입법조사처 그리고 법무부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국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학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김연철 통일부장관님과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에 대한 큰 관심과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청중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구상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 온 평화의 기회를 잡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난관이 남아있고, 아직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2일 오슬로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의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한국 정부는 평화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며, 반드시 평화를 이룰 것"임을 선언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단단한 걸음은 법과 제도의 정비로 시작되고, 법과 제도의 정착으로 마무리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추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도의 연구는 한반도가 항구적인 평화로 가는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정책을 총괄해 온 통일부, 입법정책을 조사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하는 금일 공동학술대회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일 발제와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분들과 행사를 준비해주신 세 기관의 관계자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역사적인 소명과 책임은 우리 세대 모두의 것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69주년에 개최되는 금일 공동학술대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을 여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25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친애하는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교정가족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녹음이 가득한 이곳 법무연수원에서 교정공무원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한「제54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대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용자 교정교화의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도 부단히 무도 기량을 연마하여 오늘 이 대회에 참가하시는 선수단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정공무원 여러분 !

1949년 시작된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올해로 어느덧 54회를 맞이하는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대회를 통해 참가 선수들이 보여준 도전과 열정은 교정공무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단련을 위한 무도 수련의 과정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함으로써, 수형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교정업무 수행에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교정가족 여러분 !

그 동안 우리 교정행정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꾸는 교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입소절차 및 보호장비 개선을 통해 수용자 인권적 처우를 향상하고 스마트접견·가족접견 등을 도입하여 수용자 가족관계 회복 및 민원 편의 향상에 매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정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며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뤄낸 발전과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만족할 수만은 없습니다. 범죄의 양상은 더욱 더 다양하고 잔혹해지며,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는 한 층 더 높아져 교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간 우리 교정이 외연을 넓히는데 주력했다면 이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도록 교정의 내실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과 더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감으로써, 교정의 목적을 빈틈없이 달성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우리 사회 내 교정의 위상이 확고히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일체가 되어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선수단 여러분!

오늘 경기에 임하는 여러분은 개인과 소속기관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히 시합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자는 패자를, 패자는 승자를 다 함께 격려하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한마당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모든 교정공무원들이 자랑스러운 교정문화를 공유하고, 오늘 대회의 슬로건과 같이 "가슴 뛰는 열정으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전국의 교정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법무부차관 김 오 수

•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행사

존경하는 전국의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지원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30년 전 오늘은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처음 시행된 날입니다!

시행 30주년을 맞는 이 뜻깊은 날에 여러분과 함께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며, 앞으로 한국 보호관찰이 나아갈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범죄인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애써 주신 보호관찰관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남다른 헌신과 열정으로 오늘 수상을 하신 분들게 특별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의 보호관찰제도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함께,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라는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보호관찰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은 우리나라에 선진적인 보호관찰 시스템을 만들어 냈습니다. 보호관찰관, 보호관찰위원, 그리고 명예보호관찰관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보호관찰관 여러분!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강력범죄들로 인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행의 보호관찰 시스템이 우리 국민들을 빈틈없이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한명 한명의 행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대상자의 재범방지라는 보호관찰의 목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되새기면서, 우리 국민 기대 수준에 걸맞는 한국형 보호관찰 모형을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통제와 감독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범죄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이에 대응하는 치료와 재활 중심의 처우를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관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이 바친 열정과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보호관찰제도는 오늘날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또한, 수많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도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성과에 만족할 수 없는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고, 범죄환경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검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목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그리고 재범의 방지를 통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입니다.

오늘 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이하여 더 안전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을 위한 보호관찰, 국민과 함께 하는 보호관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온 정성을 다해 힘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1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신임검사 임관식

신임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3년간의 법무관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영예로운 대한민국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아울러, 신임검사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아낌없는 뒷받침을 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시청한 영상을 통해 신임검사 여러분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니 든든합니다.

여러분의 각오와 다짐, 꿈이 이루어지기를 저 역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우 힘든 관문을 거쳐 대한민국 검사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신임검사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국가의 법질서를 지켜내야 할 무거운 책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가족이 입혀 준 법복은 또한 국민이 입혀준 것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최후적으로는 검찰의 직무수행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검사의 역할과 책무를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사안의 경중을 분간하고,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식에서 벗어나고 시대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 판단을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감은 정의의 핵심요소이며, 국민이 검사에게 진정으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균형감을 상실하고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법 논리를 내세우며 법 적용을 할 경우,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사건처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 인권보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인권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제도를 고안해 내었습니다.

업무수행의 각 단계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도 인권이 보장되는 적법절차 내에서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인권보호수사준칙 및 공보준칙의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검사에게 특히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은 검사가 수행하는 막중한 책무와 권한에서 비롯됩니다.

청렴하지 않고 도덕성이 결여된 검사가 타인의 범죄를 단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 한 사람의 언행이 검찰 전체에 대한 평가로 쉽게 일반화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언행에 신중하고, 절제와 품격을 지키는 태도를 유지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하기 전에는 오해될 소지가 없는지도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신임검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동안 꿈꾸어 왔던 검사로서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대와 달리, 검사로서의 일상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검찰에 변화와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오늘 낭독한 검사 선서의 문구를 되새기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7개월 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실시될 신임검사 교육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꾸준히 정진하여 대한민국 검찰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검사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검사로서의 새 출발을 다시 한 번 축하하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1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존경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의 변호사 대회 주제는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입니다. 한 나라의 인권의 척도는 형사사법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만큼 형사사법은 인권과 직결된 절차이며, 형사사법기관의 구성과 작동원리는 인권증진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적 절차로서 형사소송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임무배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모델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형사절차의 궁극의 목표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관련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수사권과 수사기관은 모두 역사적 배경, 형사사법의 운영현실, 구성원의 인식방향 등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환경 속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감내할 만큼 일시적이거나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문제가 정치적 현안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모두 검찰개혁이라는 목표아래 이러한 제도설계를 약속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시대상황에 맞는 수사구조가 완성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감시와 관심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는 항상 장애와 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는 왜곡되지 않는 여론형성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민주주의 역사가 오랜 사회에서도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방패로 삼은 가짜뉴스의 범람은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도전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입니다.

변호사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변호사 수의 증가, 사회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화, 전문화의 방향에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 역시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법무부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활동과 함께 함으로써 이러한 목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성숙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법무부장관 박 상 기

•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축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조국입니다.

새로운 전자증권 시대를 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습니다. 법안 통과를 지원해주신 민병두 위원장님, 김정훈 의원님, 유동수 의원님, 특히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걸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소관부처로서 함께 준비해주신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과 금융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탁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이병래 사장님과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식·사채 등의 증권 실물 없이 전자증권이 도입됩니다. 2016.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19. 6. 25. 시행령을 제정하고 대법원과 협의하여 대법원규칙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하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대국민 홍보를 하는 등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다시 한 번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자증권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증권 실명제를 실현함으로써 거래 및 권리관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아울러 주주 등이 권리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합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전자증권제 시행을 준비해주신 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오며, 법무부 또한 새로운 전자증권 시대에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법무부장관 조 국

• 제8회 ADR 컨퍼런스 개회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제8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무부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주최한 UNCITRAL의 안나 주뱅-브레 사무총장님, 대한상사중재원 이호원 원장님, ICC 국제중재재판소 알렉시 무흐 소장님,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신희택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12년에 시작한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가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는 어느덧 세계 각국의 중재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중재 분야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중재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사, 건설 등의 분야에서만 활용되었다면, 지금은 의료,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소비자권익 보호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활용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 분쟁에 관해서는 더 이상 '대체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라고 불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 어떤 수단보다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에 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변화와 전망을 모색하는 오늘의 자리는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중재의 정당성과 효율성, 투자 중재에 관한 최신 쟁점, 국제중재의 절차적·실무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열띤 논의가 국제거래 활성화 및 분쟁해결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평화와 공동의 번영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도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국내 중재산업 육성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동북아 국제중재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중재 인프라를 조성하고, 중재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법무부차관 김 오 수

• 제74주년 교정의 날

친애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은 일흔 네 번째 맞는 교정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교정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의 길을 다져 나가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공로로 영예로운 포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일선 현장에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교정공무원과 교정 참여인사 여러분께도 가장 따뜻하고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교정의 날은 74년 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교정행정의 주인이 되고 대한민국 교정역사의 주체가 된 자주교정의 씨앗을 싹틔운 날입니다.

그동안 교정은 74년 세월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단순히 격리와 구금을 넘어 수용처우의 최우선 가치를 인권에 두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정으로 거듭났으며, 지속적인 수용환경 개선과 함께, 법령과 제도의 혁신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교정정책으로 담아 실천해 왔습니다.

특정강력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치료체계를 구축하여 재범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직업훈련과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수형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저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이뤄낸 많은 성과들이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한톨의 밀알이 썩어 새싹을 틔우듯이 이와 같은 발전과 성장은 여러분이 흘려온 땀방울들을 모아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교정가족 여러분!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조직의 생존을 위협받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정은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더 큰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관행처럼 남아 있는 우리 안의 불합리한 제도나 문화는 과감히 척결하고, 국민의 열망과 시대적 상황에 적극 부응하여 인권이 더욱 존중받고 국민의 체감지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교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저는 교정이 자주권을 되찾은 뜻깊은 오늘 백범 김구선생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대한민국의 교정을 되새겨 봅니다.

“후일 우리나라가 독립한 후 감옥 간수부터 대학교수 자격으로 사용하고, 죄인을 죄인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의 일원으로 보아서 선으로 지도하기에만 주력해야 하겠고, 일반사회에서도 감옥살이 한 자라고 멸시하지 말고 대학생 자격으로 대우해야 감옥을 설치한 가치가 있겠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꿈꾸시던 교정의 실현은 백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더디고 어려우며, 과밀수용, 인력부족 등 무거운 과제들로 교정환경 또한 녹록치 않습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대한민국 교정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정공무원에게 헌신만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인력, 과밀수용과 같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정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비록 수용자 일지라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람 사는 교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용자의 사회성을 함양하고 자활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수용자가 출소 후 자신의 인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포용의 교정환경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방울의 물이 모여 큰 연못을 이룬다는 적수성연(積水成淵)의 힘처럼 우리들의 노력을 하나로 모아, 국민이 열망하는 교정을 이룰 때 국민은 교정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고 더 큰 성원과 지지를 보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저하거나 멈추지 말고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의 길로 담대히 나아 갑시다. 다시 한번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 전국 모든 교정가족과 같이 하신 내빈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 오 수

• 2019년 법무보호복지의 날 격려사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단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추의 계절에 그 간 출소자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남다른 헌신과 열정으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신 박재숙 위원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선현장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공단 임·직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단가족 여러분!

우리나라는 매년 6만명 이상이 출소하여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만 오랜 격리생활, 사회적 편견,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과자'라는 냉대와 불신으로 출소자 중 상당수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범죄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고통을 안겨주며, 필연적으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희생과 비용을 강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은 출소자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갱생보호사업은 교도소와 사회를 잇는 가교로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며 재범방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갱생보호사업은 교도소와 사회를 잇는 가교로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며 재범방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법무부와 공단은 국민들이 열망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그간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한 주거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총 2천호의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출소자들의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호대상자 4만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고, 올해 초에는 갱생보호사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온 자원봉사 조직을 정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능별 위원회 중심의 봉사 활동을 통해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전국에 계신 보호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덕분에 갱생보호대상자들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더 많은 출소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회정착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친화적인 갱생보호사업이 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출소자의 인권강화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대상자를 다시 돌아온 이웃으로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법무보호위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법무보호위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조차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상자들에게 보낸 따뜻한 마음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출소자들에게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법무부도 항상 동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무보호위원과 공단 가족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 오 수

• 20만 번째 국적증서 수여식

오늘 20만 번째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주신 귀화자 여러분과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오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이 되시는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2011년 10만 번째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신 로이 알록 꾸마르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와 주신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뜻 깊은 날입니다. 1957년 첫 귀화자가 나온 이후 62년만에 20만 번째 귀화자가 탄생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귀화자 수가 2011년에 10만명을 넘어선 후 10년이 되지 않은 올 해에 20만 명을 돌파한 것은 대한민국이 이민자들에게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나라로 선택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강인한 민족정신으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세계 11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는 불굴의 의지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것을 결심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귀화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으시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도 다할 때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각자 태어난 나라와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여러분 모두 새로운 희망을 품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오셨고,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과 다양한 경험이 우리 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우리 문화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대를 이어 살아가고, 자신과 가족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각자의 분야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희망찬 역사를 함께 써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 오 수

• 이민정책연구원 10주년 기념행사 축사

이민정책연구원 10주년 기념행사 및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영상축사를 보내주신 「안토니오 비토리노」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님, 「스테픈 캐슬」 명예교수님, 「그라지아노 바티스텔라」 前 SMC 센터장님, 「하워드 듀칸」 교수님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이민정책연구원 정기선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오늘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발전을 위해 귀한 말씀을 나누어주실 발표자 및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0년 전, 2009. 12. 17..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의 협정을 바탕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이 개원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이주와 이민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출범한 이민정책연구원은 지난 10년간 300여건 이상의 연구물을 발간하고, 180여건 이상의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원의 열정적인 활동은 이민정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에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학계에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연구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와 고용조사를 수행하였고,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의 아시아 공동사무국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처럼 훌륭한 성과를 내어준 이민정책연구원 구성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출범한 10년 전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은 110만 명이었으나, 현재는 2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상당수가 우리의 이웃, 가족, 동료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대한민국을 더욱 다채롭게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적·경제적 변화는 우리의 인식과 정책 또한 달라져야 하며, 다가오는 변화를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많은 정책적 도전과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의 비중과 역할이 더욱 증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국인과 이주민들이 어떻게 소통하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 더욱 무거운 과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맞는 이민정책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새로운 미래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가의 전략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걸맞는 이민정책 개발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전문가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방향을 찾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후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여러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학문적·정책적 논의를 통해 우리의 미래와 이민정책을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국민 공감 하에 안전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보다 포용적인 대한민국을 위한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파트너로서 이민정책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발전과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 오 수

• 제12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차관 김오수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범죄피해자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주신 원혜욱 한국피해자학회 회장님,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 범죄피해자 보호위원이신 박광민·조균석 교수님과 배우 김상중씨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법무부는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기반으로 하여 구조금 지급,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및 스마일센터 설치·확대, 법률홈닥터 운영 등 다양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의 삶을 되찾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도 구조금 지원 대상이 되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자 추진 중이고, 창원 스마일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다가오는 12월 중순 경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분들의 경제적·심리적 회복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985. 11. 29. UN의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선포일'을 기념하여 범죄피해자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2008년부터 개최되어 온 본 행사가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유공자 선정 범위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를 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 자원봉사자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로가 있는 분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각계각층의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매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이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이 행사도 범죄피해자분들의 피해와 고통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행사의 주제는 '공감과 동행'입니다. 동행의 사전적 의미는 '같이 길을 감' 또는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저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이라는 관허 스님의 말씀처럼 범죄피해자분들을 이해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며, 상처를 보듬어 줄 때 진정한 의미의 '동행'이 되어 '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30조에서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실현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분들의 실질적인 권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 드린 진정한 의미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물방울이 모여 강물을 이루듯 여러분의 노력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길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7.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 오 수

•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에 외국인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무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토론회를 위해 발제와 토론을 해주시는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여명에 이르는 등 글로벌 사회가 되어 외국인과 함께 상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통합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수가 2019. 11월 기준 39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이민학회에서 실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조사 연구'에서, 2018. 5월 기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2만6천명인데, 이 중 15만9천명이 불법취업 하고 있다고 추산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불법체류 외국인 31만2천명의 51%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건설현장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고 익명성으로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 외국인들이 쉽게 불법취업을 할 수 있어, 이로 인해 40~50대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잠식당하고 있는 건설업 분야에 대해 법무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법취업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외국인의 불법취업은 갈수록 늘어나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단계에 이르렀고, 일자리를 잃은 한국인 건설근로자들과 관련 단체에서는 '건설업 분야 불법취업 단속을 강화해 달라'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하는 것이 법·제도상의 문제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시공 중인 건설현장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청업자에게 자신의 하청업자가 해당 건설현장에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원청업자는 하청업자를 선정하여 그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청업자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한다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의

불법취업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한정애 의원님께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건전한 외국인 체류질서유지를 위해 제안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건설현장에서 국민들의 일자리가 보호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을 펼치는 데에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유익한 논의와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 오 수

• 2019 법무부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오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을 허락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15년 3월 시행된 이래 내년 3월이면 5주년이 됩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홍보대사를 섭외하고 방송광고를 실시하는 등, 공인신탁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해왔습니다. 그 결과 '15년 7월 최초 5 건으로 시작하여 현재 26건으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5년 간의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공익신탁의 발전과 확산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익신탁이 투명한 기부문화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 오 수

• 2019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 격려사

우수 인권공무원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1948. 12. 10.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세계 인권 선언문'이 전 세계에 발표된 날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을 하루 앞두고 우수 인권공무원 포상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9년 한 해 동안 법집행 현장에서 국민의 인권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수상자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법무부 차관으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해 보여준 남다른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수상자들이 공직에 전념하여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도록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수상자 가족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상자들의 업적을 모두 소개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일부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수용자가 상담 중 장기기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야간 근무자에게 수용자를 잘 살펴보도록 부탁하여 야간에 수용자의 자살 시도를 막고 귀중한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고 즉시 피고인이 수용 중인 구치소에 피해자가 수신인으로 되어 있는 우편 발신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였습니다.

경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가 합동결혼식을 통해 예식을 올리고 생활가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감사편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몽골 국적 여성 외국인과 함께 보호실에 동반 입실한 생후 2세 아기가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사비를 들여 아기에게 간식과 장난감을 사주며 보살펴주어 여성 외국인과 아기가 건강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법무행정 과정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고 배려하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모여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인권을 지키고 매사에 정성을 기울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법무부차관으로서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법무·검찰 내에 인권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동안 기울인 노력의 결실을 차곡차곡 거두고 이웃들과 나누는 정겨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수 인권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화목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 오 수

•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한 해 동안,마을변호사 제도의 발전에 공헌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마을변호사 6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년 간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신 10명의 수상자 분들과, 무변촌(無辯村)의 마을변호사로 새롭게 위촉되는 35명의 변호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을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마을변호사 제도의 발전과 정착에 의구심을 품은 사람도 있었지만, 전국의 마을변호사 1,409명이 1,411개의 지방소도시 읍·면·동 마을 주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한 결과, 서민들의 크고 작은 법률적 문제들이 분쟁 초기 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고, 실력과 열정을 갖춘 변호사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변호사의 공적인 역할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가 서민들의 법의 문턱을 낮추고 틈새 없는 법률 복지를 실현하는데 계속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마을변호사 제도가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후 법무부는,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하여 마을변호사를 현장에 파견하였고, 전국 14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학교 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마을변호사를 새로이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의 모든 무변촌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함으로써 '무변촌 제로(ZERO)'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들의 일상 속 작은 법률문제까지 법률전문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법률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에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국의 정치인인 윈스턴 처칠은 "우리는 일함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하였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마을변호사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내면 또한 풍요로워지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연말 잘 마무리 하시고,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 오 수

•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모범귀화자로 선정되신 네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범귀화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가족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오랫 동안 단일민족의 전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전통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귀화자들은 우리 사회를 더 새롭게 하고, 다양성을 가진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귀화자는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 2011년에 10만 명을 넘어선 후 10년이 되지 않은 금년 11월에 2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250만 명에 이르는 등 글로벌 사회가 되어, 이민자는 대한민국을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자기발전을 이루고,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모범귀화자'를 2018년부터 발굴하여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귀화자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의 출입국·외국인관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20년 이상 생활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묵묵히 봉사를 하는 등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신 분들입니다.

귀화자 여러분,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어 사회에 적응하고 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고 계시는 모범귀화자 여러분들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모범귀화자 여러분

각자 태어난 나라와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여러분 모두 새로운 희망을 품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오셨고,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범귀화자로 선정되신 여러분들은 한국에 온 많은 이민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부도 이민자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자기발전을 이루고 우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다음 세대에게도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봉사,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사회를 살 만한 세상, 더욱 풍요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모범귀화자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 오 수

제4절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1. 법무부장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 인(李 仁)	1948. 8. 2. ~ 1949. 6. 5.	
2 대	권승렬(權承烈)	1949. 6. 6. ~ 1950. 5. 21.	
3 대	이우익(李愚益)	1950. 5. 22. ~ 1950. 11. 22.	
4 대	김준연(金俊淵)	1950. 11. 23. ~ 1951. 5. 6.	
5 대	조진만(趙鎭滿)	1951. 5. 7. ~ 1952. 3. 4.	
6 대	서상환(徐相懽)	1952. 3. 5. ~ 1954. 6. 29.	
7 대	조용순(趙容淳)	1954. 6. 30. ~ 1955. 9. 15.	
8 대	이 호(李 澔)	1955. 9. 16. ~ 1958. 2. 19.	
9 대	홍진기(洪璡基)	1958. 2. 20. ~ 1960. 3. 23.	
10 대	권승렬(權承烈)	1960. 4. 25. ~ 1960. 8. 19.	
11 대	조재천(曺在千)	1960. 8. 23. ~ 1961. 5. 2.	
12 대	이병하(李炳夏)	1961. 5. 3. ~ 1961. 5. 18.	
13 대	고원증(高元增)	1961. 5. 20. ~ 1962. 1. 8.	
14 대	조병일(趙炳日)	1962. 1. 9. ~ 1963. 1. 31.	
15 대	장영순(張榮淳)	1963. 2. 1. ~ 1963. 4. 21.	
16 ~ 18대	민복기(閔復基)	1963. 4. 22. ~ 1966. 9. 25.	
19 대	권오병(權五柄)	1966. 9. 26. ~1968. 5. 20.	
20 대	이 호(李 澔)	1968. 5. 21. ~ 1970. 12. 20.	
21 대	배영호(裵泳鎬)	1970. 12. 21.~ 1971. 6. 3.	
22 대	신직수(申稙秀)	1971. 6. 4. ~ 1973. 12. 2.	
23 대	이봉성(李鳳成)	1973. 12. 3. ~ 1974. 9. 17.	
24 ~ 25대	황산덕(黃山德)	1974. 9. 18. ~ 1976. 12. 3.	
26 대	이선중(李善中)	1976. 12. 4. ~ 1978. 12. 21.	
27 대	김치열(金致烈)	1978. 12. 22. ~ 1979. 12. 13.	
28 대	백상기(白翔起)	1979. 12. 14. ~ 1980. 5. 21.	
29 ~ 30대	오탁근(吳鐸根)	1980. 5. 22. ~ 1981. 4. 9.	
31 대	이종원(李鐘元)	1981. 4. 10. ~ 1982. 5. 20.	
32 대	정치근(鄭致根)	1982. 5. 21. ~ 1982. 6. 23.	
33 대	배명인(裵命仁)	1982. 6. 24. ~ 1985. 2. 18.	
34 대	김석휘(金錫輝)	1985. 2. 19. ~ 1985. 7. 15.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5 대	김성기(金聖基)	1985. 7. 16. ~ 1987. 5. 25.	
36 ~ 37대	정해창(丁海昌)	1987. 5. 26. ~ 1988. 12. 4.	
38 대	허형구(許亨九)	1988. 12. 5. ~ 1990. 3. 18.	
39 대	이종남(李種南)	1990. 3. 19. ~ 1991. 5. 26.	
40 대	김기춘(金淇春)	1991. 5. 27. ~ 1992. 10. 8.	
41 대	이정우(李正雨)	1992. 10. 9. ~ 1993. 2. 25.	
42 대	박희태(朴熺太)	1993. 2. 26. ~ 1993. 3. 7.	
43 대	김두희(金斗熙)	1993. 3. 8. ~ 1994. 12. 23.	
44 대	안우만(安又萬)	1994. 12. 24. ~ 1997. 3. 5.	
45 대	최상엽(崔相曄)	1997. 3. 6. ~ 1997. 8. 4.	
46 대	김종구(金鍾求)	1997. 8. 5. ~ 1998. 3. 2.	
47 대	박상천(朴相千)	1998. 3. 3. ~ 1999. 5. 23.	
48 대	김태정(金泰政)	1999. 5. 24. ~ 1999. 6. 7.	
49 대	김정길(金正吉)	1999. 6. 8. ~ 2001. 5. 20.	
50 대	안동수(安東洙)	2001. 5. 21. ~ 2001. 5. 23.	
51 대	최경원(崔慶元)	2001. 5. 24. ~ 2002. 1. 28.	
52 대	송정호(宋正鎬)	2002. 1. 29. ~ 2002. 7. 10.	
53 대	김정길(金正吉)	2002. 7. 11. ~ 2002. 11. 5.	
54 대	심상명(沈相明)	2002. 11. 9. ~ 2003. 2. 26.	
55 대	강금실(康錦實)	2003. 2. 27. ~ 2004. 7. 28.	
56 대	김승규(金昇圭)	2004. 7. 29. ~ 2005. 6. 29.	
57 대	천정배(千正培)	2005. 6. 30. ~ 2006. 7. 26.	
58 대	김성호(金成浩)	2006. 8. 30. ~ 2007. 9. 3.	
59 대	정성진(鄭城鎭)	2007. 9. 4. ~ 2008. 2. 28.	
60 대	김경한(金慶漢)	2008. 2. 29. ~ 2009. 9. 29.	
61 대	이귀남(李貴男)	2009. 9. 30. ~ 2011. 8. 10.	
62 대	권재진(權在珍)	2011. 8. 11. ~ 2013. 3. 10.	
63 대	황교안(黃敎安)	2013. 3. 11. ~ 2015. 6. 18.	
64 대	김현웅(金賢雄)	2015. 7. 9. ~ 2016. 11. 29.	
65 대	박상기(朴相基)	2017. 7. 19. ~ 2019. 9. 8.	
66 대	조 국(曺 國)	2019. 9. 9. ~ 2019. 10. 14.	

2. 검찰총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10. 31. ~ 1949. 6. 5.	임기제 (1988 ~)
2 대	김익진(金翼鎭)	1949. 6. 6. ~ 1950. 6. 21.	
3 대	서상환(徐相懽)	1950. 6. 22. ~ 1952. 3. 5.	
4 대	한격만(韓格晩)	1952. 3. 14. ~ 1955. 9.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5. 9. 30. ~ 1956. 7. 5.	
6 대	정순석(鄭順錫)	1956. 7. 6. ~ 1958. 3. 10.	
7 대	박승준(朴承俊)	1958. 3. 11. ~ 1960. 5. 4.	
8 대	이태희(李太熙)	1960. 5. 5. ~ 1961. 5. 27.	
9 대	장영순(張榮淳)	1961. 5. 28. ~ 1963. 1. 31.	
10 대	정창운(鄭暢雲)	1963. 2. 1. ~ 1963. 12. 6.	
11 대	신직수(申稙秀)	1963. 12. 7. ~ 1971. 6. 3.	
12 대	이봉성(李鳳成)	1971. 6. 5. ~ 1973. 12. 2.	
13 대	김치열(金致烈)	1973. 12. 3. ~ 1975. 12. 18.	
14 대	이선중(李善中)	1975. 12. 19. ~ 1976. 12. 4.	
15 대	오탁근(吳鐸根)	1976. 12. 7. ~ 1980. 5. 21.	
16 대	김종경(金鍾卿)	1980. 5. 28. ~ 1981. 3. 9.	
17 대	허형구(許亨九)	1981. 3. 10. ~ 1981. 12. 15.	
18 대	정치근(鄭致根)	1981. 12. 16. ~ 1982. 5. 21.	
19 대	김석휘(金錫輝)	1982. 5. 24. ~ 1985. 2. 18.	
20 대	서동권(徐東權)	1985. 2. 21. ~ 1987. 5. 26.	
21 대	이종남(李種南)	1987. 5. 27. ~ 1988. 12. 5.	
22 대	김기춘(金淇春)	1988. 12. 6. ~ 1990. 12. 5.	
23 대	정구영(鄭銶永)	1990. 12. 6. ~ 1992. 12. 5.	
24 대	김두희(金斗喜)	1992. 12. 6. ~ 1993. 3. 7.	
25 대	박종철(朴鍾喆)	1993. 3. 8. ~ 1993. 9. 13.	
26 대	김도언(金道彦)	1993. 9. 16. ~ 1995. 9. 15.	
27 대	김기수(金起秀)	1995. 9. 16. ~ 1997. 8. 6.	
28 대	김태정(金泰政)	1997. 8. 7. ~ 1999. 5. 24.	
29 대	박순용(朴舜用)	1999. 5. 26. ~ 2001. 5. 25.	
30 대	신승남(愼承男)	2001. 5. 26. ~ 2002. 1. 15.	
31 대	이명재(李明載)	2002. 1. 17. ~ 2002. 11. 5.	
32 대	김각영(金珏泳)	2002. 11. 11. ~ 2003. 3. 10.	
33 대	송광수(宋光洙)	2003. 4. 3. ~ 2005. 4. 2.	
34 대	김종빈(金鍾彬)	2005. 4. 4. ~ 2005. 10. 17.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11. 24. ~ 2007. 11. 23.	
36 대	임채진(林采珍)	2007. 11. 24. ~ 2009. 6. 4.	
37 대	김준규(金畯圭)	2009. 8. 20. ~ 2011. 7. 13.	
38 대	한상대(韓相大)	2011. 8. 11. ~ 2012. 12. 2.	
39 대	채동욱(蔡東旭)	2013. 4. 4. ~ 2013. 9. 27.	
40 대	김진태(金鎭太)	2013. 12. 2. ~ 2015. 11. 30.	
41 대	김수남(金秀南)	2015. 12. 2. ~ 2017. 5. 15.	
42 대	문무일(文武一)	2017. 7. 25. ~ 2019. 7. 24.	
43 대	윤석열(尹錫悅)	2019. 7. 25. ~	

3. 법무부차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권승렬(權承烈)	1948. 8. 7. ~ 1948. 10. 30.	
2 대	백한성(白漢成)	1948. 10. 31. ~ 1949. 6. 7.	
3 대	김갑수(金甲洙)	1949. 6. 8. ~ 1950. 3. 13.	
4 대	김윤근(金潤根)	1950. 3. 14. ~ 1951. 11. 29.	
5 대	민복기(閔復基)	1951. 11. 30. ~ 1952. 5. 26.	
6 대	정재환(鄭在煥)	1952. 5. 27. ~ 1954. 2. 9.	
7 대	홍진기(洪璡基)	1954. 2. 17. ~ 1955. 10. 5.	
8 대	임석무(林碩茂)	1955. 10. 12. ~ 1956. 6. 12.	
9 대	배영호(裵泳鎬)	1956. 6. 23. ~ 1958. 3. 10.	
10 대	신언한(申彦瀚)	1958. 3. 11. ~ 1960. 5. 3.	
11 대	김영천(金永千)	1960. 7. 1. ~ 1960. 9. 29.	
12 대	김영환(金英煥)	1960. 8. 23. ~ 1961. 5. 15.	
	김영천(金永千)	1960. 9. 29. ~ 1962. 3. 18.	
13 대	서일교(徐壹敎)	1962. 3. 19. ~ 1963. 8. 7.	
14 대	권오병(權五柄)	1963. 8. 8. ~ 1965. 8. 27.	
15 대	이경호(李坰鎬)	1965. 8. 28. ~ 1968. 5. 23.	
16 대	김병화(金炳華)	1968. 5. 24. ~ 1969. 7. 27.	
17 대	오탁근(吳鐸根)	1969. 7. 28. ~ 1971. 8. 23.	
18 대	이선중(李善中)	1971. 8. 24. ~ 1973. 3. 8.	
19 대	김 선(金 璿)	1973. 3. 9. ~ 1974. 7. 7.	
20 대	김종경(金鍾卿)	1974. 7. 8. ~ 1977. 2. 16.	
21 대	이종원(李鐘元)	1977. 2. 17. ~ 1979. 2. 18.	
22 대	이용훈(李龍薰)	1979. 2. 19. ~ 1980. 5. 22.	
23 대	정태균(鄭泰均)	1980. 5. 26. ~ 1981. 4. 17.	
24 대	서동권(徐東權)	1981. 4. 25. ~ 1981. 12. 16.	
25 대	이영욱(李永旭)	1981. 12. 17. ~ 1982. 6. 17.	
26 대	정해창(丁海昌)	1982. 6. 18. ~ 1985. 2. 27.	
27 대	김종건(金鍾鍵)	1985. 2. 28. ~ 1985. 10. 18.	
28 대	이종남(李種南)	1985. 10. 19. ~ 1987. 5. 26.	
29 대	한영석(韓永錫)	1987. 5. 30. ~ 1988. 3. 4.	
30 대	서정신(徐廷信)	1988. 3. 5. ~ 1989. 3. 28.	
31 대	김두희(金斗喜)	1989. 3. 29. ~ 1991. 4. 17.	
32 대	조성욱(趙成郁)	1991. 4. 18. ~ 1993. 3. 3.	
33 대	신 건(辛 建)	1993. 3. 4. ~ 1993. 5. 27.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4 대	김기석(金基錫)	1993. 5. 31. ~ 1994. 9. 15.	
35 대	김종구(金鍾求)	1994. 9. 16. ~ 1995. 9. 19.	
36 대	김태정(金泰政)	1995. 9. 20. ~ 1997. 8. 6.	
37 대	원정일(元正一)	1997. 8. 8. ~ 1998. 3. 18.	
38 대	최경원(崔慶元)	1998. 3. 19. ~ 1999. 6. 8.	
39 대	김경한(金慶漢)	1999. 6. 9. ~ 2001. 5. 30.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1. 5. 31. ~ 2001. 9. 11.	
41 대	신광옥(辛光玉)	2001. 9. 12. ~ 2001. 12. 13.	
42 대	김승규(金昇圭)	2001. 12. 18. ~ 2002. 2. 7.	
43 대	한부환(韓富煥)	2002. 2. 8. ~ 2002. 8. 18.	
44 대	김각영(金珏泳)	2002. 8. 19. ~ 2002. 11. 10.	
45 대	명로승(明魯昇)	2002. 11. 18. ~ 2003. 3. 11.	
46 대	정상명(鄭相明)	2003. 3. 13. ~ 2004. 5. 31.	
47 대	김상희(金相喜)	2004. 6. 1. ~ 2005. 8. 26.	
48 대	김희옥(金熙玉)	2005. 9. 8. ~ 2006. 8. 25.	
49 대	정동기(鄭東基)	2006. 8. 25. ~ 2007. 3. 4.	
50 대	정진호(鄭振昊)	2007. 3. 5. ~ 2008. 3. 9.	
51 대	문성우(文晟祐)	2008. 3. 10. ~ 2009. 1. 18.	
52 대	이귀남(李貴男)	2009. 1. 19. ~ 2009. 7. 11.	
53 대	황희철(黃希哲)	2009. 8. 12. ~ 2011. 8. 12.	
54 대	길태기(吉兌基)	2011. 8. 22. ~ 2013. 12. 23.	
55 대	김학의(金學義)	2013. 3. 14. ~ 2013. 3. 22.	
56 대	국민수(鞠敏秀)	2013. 4. 10. ~ 2013. 12. 23.	
57 대	김현웅(金賢雄)	2013. 12. 24. ~ 2015. 2. 10.	
58 대	김주현(金周賢)	2015. 2. 11. ~ 2015. 12. 23.	
59 대	이창재(李昌宰)	2015. 12. 24. ~ 2017. 5. 21.	
60 대	이금로(李今魯)	2017. 5. 22. ~ 2018. 6. 21.	
61 대	김오수(金洿洙)	2018. 6. 22. ~	

4.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승준(朴承俊)	1949. 11. 14. ~ 1952. 4. 6.	
2 대	정창운(鄭暢雲)	1952. 4. 7. ~ 1955. 10. 25.	
3 대	정순석(鄭順錫)	1955. 10. 26. ~ 1956. 7. 6.	
4 대	박천일(朴天一)	1956. 7. 25. ~ 1958. 2. 28.	
5 대	소진섭(蘇鎭燮)	1959. 4. 22. ~ 1960. 5. 20.	
6 대	주운화(朱雲化)	1962. 4. 11. ~ 1963. 5. 8.	
7 대	김영천(金永千)	1963. 5. 9. ~ 1963. 12. 30.	
8 대	주운화(朱雲化)	1963. 12. 31. ~ 1964. 3. 2.	
9 대	김병화(金炳華)	1964. 3. 16. ~ 1968. 5. 31.	
10 대	이봉성(李鳳成)	1968. 6. 1. ~ 1971. 6. 4.	
11 대	김영천(金永千)	1971. 8. 24. ~ 1973. 3. 19.	
12 대	이영환(李永煥)	1973. 4. 6. ~ 1977. 2. 16.	
13 대	김일두(金一斗)	1977. 2. 17. ~ 1980. 7. 9.	
14 대	허형구(許亨九)	1980. 7. 28. ~ 1981. 3. 9.	
15 대	배명인(裵命仁)	1981. 4. 27. ~ 1981. 12. 16.	
16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2. 17. ~ 1982. 5. 23.	
17 대	이명희(李明熙)	1982. 6. 18. ~ 1985. 3. 4.	
18 대	이중근(李重根)	1985. 3. 5. ~ 1985. 3. 11.	
19 대	김세권(金世權)	1985. 5. 25. ~ 1986. 5. 1.	
20 대	정해창(丁海昌)	1986. 5. 2. ~ 1987. 5. 25.	
21 대	최상엽(崔相曄)	1987. 5. 30. ~ 1990. 3. 19.	
22 대	서정신(徐廷信)	1990. 3. 27. ~ 1991. 4. 17.	
23 대	김두희(金斗喜)	1991. 4. 18. ~ 1992. 12. 5.	
24 대	박종철(朴鍾喆)	1992. 12. 12. ~ 1993. 3. 8.	
25 대	김도언(金道彦)	1993. 3. 17. ~ 1993. 9. 15.	
26 대	송종의(宋宗義)	1993. 9. 21. ~ 1995. 9. 14.	
27 대	최명선(崔明善)	1995. 9. 20. ~ 1997. 8. 9.	
28 대	이원성(李源性)	1997. 8. 11. ~ 1999. 6. 3.	
29 대	신승남(愼承男)	1999. 6. 9. ~ 2001. 5. 25.	
30 대	김각영(金珏泳)	2001. 5. 31. ~ 2002. 2. 7.	
31 대	김승규(金昇圭)	2002. 2. 8. ~ 2002. 8. 18.	
32 대	김학재(金鶴在)	2002. 8. 19. ~ 2003. 3. 13.	
33 대	김종빈(金鍾彬)	2003. 3. 13. ~ 2004. 5. 31.	
34 대	이정수(李廷洙)	2004. 6. 1. ~ 2005. 3. 31.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5 대	정상명(鄭相明)	2005. 4. 8. ~ 2005. 11. 23.	
36 대	임승관(林承寬)	2005. 11. 28. ~ 2007. 3. 4.	
37 대	정동기(鄭東基)	2007. 3. 5. ~ 2007. 11. 23.	
38 대	권재진(權在珍)	2007. 11. 26. ~ 2009. 1. 18.	
39 대	문성우(文晟祐)	2009. 1. 19. ~ 2009. 7. 13.	
40 대	차동민(車東旻)	2009. 7. 20. ~ 2011. 8. 3.	
41 대	채동욱(蔡東旭)	2011. 8. 22. ~ 2012. 12. 5.	
42 대	김진태(金鎭太)	2012. 12. 6. ~ 2013. 4. 4.	
43 대	길태기(吉兌基)	2013. 4. 10. ~ 2013. 12. 4.	
44 대	임정혁(任正赫)	2013. 12. 5. ~ 2015. 2. 10.	
45 대	김수남(金秀南)	2015. 2. 11. ~ 2015. 12. 1.	
46 대	김주현(金周賢)	2015. 12. 24. ~ 2017. 5. 21.	
47 대	봉 욱(奉 旭)	2017. 5. 22. ~ 2019. 6. 27.	
48 대	강남일(姜南一)	2019. 7. 31. ~	

5. 법무부 실·국·본부장

• 기획조정실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락윤(金洛潤)	1961. 9. 25. ~ 1962. 3. 8.	
2 대	이두성(李斗成)	1962. 8. 14. ~ 1966. 11. 18.	
3 대	나길조(羅吉祚)	1966. 11. 19. ~ 1969. 1. 9.	
4 대	윤두식(尹斗植)	1969. 1. 20. ~ 1972. 11. 21.	
5 대	정익원(鄭益源)	1972. 11. 22. ~ 1974. 8. 31.	
6 대	설동훈(薛東勳)	1974. 9. 1. ~ 1976. 2. 28.	
7 대	강우영(姜友永)	1976. 3. 1. ~ 1978. 2. 10.	
8 대	안경열(安慶烈)	1978. 2. 11. ~ 1981. 4. 26.	
9 대	송병철(宋炳喆)	1981. 4. 27. ~ 1981. 12. 16.	
10 대	김세권(金世權)	1981. 12. 17. ~ 1982. 6. 17.	
11 대	김양균(金亮均)	1982. 6. 18. ~ 1983. 7. 31.	
12 대	김유후(金有厚)	1983. 8. 1. ~ 1985. 3. 4.	
13 대	신 건(辛 建)	1985. 3. 5. ~ 1987. 6. 7.	
14 대	송종의(宋宗義)	1987. 6. 8. ~ 1989. 3. 28.	
15 대	지헌범(池憲範)	1989. 3. 29. ~ 1991. 4. 17.	
16 대	정성진(鄭城鎭)	1991. 4. 18. ~ 1991. 7. 31.	
17 대	김종구(金鍾求)	1991. 8. 1. ~ 1992. 7. 28.	
18 대	김태정(金泰政)	1992. 7. 29. ~ 1993. 3. 16.	
19 대	김상수(金相洙)	1993. 3. 17. ~ 1993. 9. 20.	
20 대	최경원(崔慶元)	1993. 9. 21. ~ 1994. 9. 15.	
21 대	최병국(崔炳國)	1994. 9. 16. ~ 1995. 9. 19.	
22 대	김경한(金慶漢)	1995. 9. 20. ~ 1997. 1. 22.	
23 대	신승남(愼承男)	1997. 1. 23. ~ 1997. 8. 13.	
24 대	윤동민(尹東旻)	1997. 8. 14. ~ 1998. 3. 22.	
25 대	신광옥(辛光玉)	1998. 3. 23. ~ 1999. 2. 21.	
26 대	김각영(金珏泳)	1999. 2. 22. ~ 1999. 6. 8.	
27 대	이범관(李範觀)	1999. 6. 9. ~ 2000. 7. 14.	
28 대	장윤석(張倫碩)	2000. 7. 15. ~ 2001. 5. 30.	
29 대	채수철(蔡秀哲)	2001. 5. 31. ~ 2002. 2. 7.	
30 대	정상명(鄭相明)	2002. 2. 8. ~ 2003. 3. 12.	
31 대	박상길(朴相吉)	2003. 3. 13. ~ 2004. 5. 31.	
32 대	김회선(金會瑄)	2004. 6. 1. ~ 2005. 4. 4.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3 대	이귀남(李貴男)	2005. 4. 8. ~ 2006. 2. 5.	2005. 5. 2.
34 대	황희철(黃希哲)	2006. 2. 6. ~ 2006. 3. 15.	정책홍보
35 대	박한철(朴漢徹)	2006. 3. 16. ~ 2007. 3. 4.	관리실로
36 대	박영렬(朴永烈)	2007. 3. 5. ~ 2008. 3. 10.	개편
37 대	소병철(蘇秉哲)	2008. 3. 11. ~ 2009. 1. 18.	2008. 2. 29.
38 대	김수남(金秀南)	2009. 1. 19. ~ 2009. 8. 11.	기획조정실로
39 대	최재경(崔在卿)	2009. 8. 12. ~ 2010. 7. 14.	개편
40 대	김희관(金熙官)	2010. 7. 15. ~ 2011. 8. 21.	
41 대	조성욱(曺成旭)	2011. 8. 22. ~ 2012. 7. 17.	
42 대	김주현(金周賢)	2012. 7. 18. ~ 2013. 4. 9.	
43 대	봉 욱(奉 旭)	2013. 4. 10. ~ 2013. 12. 23.	
44 대	안태근(安兌根)	2013. 12. 24. ~ 2015. 2. 10.	
45 대	진경준(陳炅準)	2015. 2. 11. ~ 2015. 12. 23.	
46 대	권익환(權益煥)	2015. 12. 24. ~ 2017. 7. 31.	
47 대	조상철(趙商喆)	2017. 8. 1. ~ 2018. 6. 21.	
48 대	강남일(姜南一)	2018. 6. 22. ~2019. 7. 30.	
49 대	김후곤(金煦坤)	2019. 7. 31. ~	

• 법무실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갑수(金甲洙)	1948. 11. 4. ~ 1949. 7. 1.	1948. 11. 4.
2 대	민복기(閔復基)	1949. 7. 2. ~ 1949. 12. 31.	법무국 신설
3 대	홍진기(洪璡基)	1950. 4. 1. ~ 1954. 2. 17.	
4 대	배영호(裵泳鎬)	1954. 4. 6. ~ 1956. 6. 22.	
5 대	김영천(金永千)	1956. 6. 23. ~ 1960. 6. 30.	
6 대	이경호(李坰鎬)	1960. 7. 1. ~ 1965. 8. 27.	
7 대	김 선(金 璿)	1965. 10. 1. ~ 1966. 11. 18.	
8 대	이선중(李善中)	1966. 11. 19. ~ 1971. 8. 23.	1967. 4. 10.
9 대	김종경(金鍾卿)	1971. 8. 26. ~ 1974. 7. 7.	법무실로
10 대	주문기(朱文基)	1974. 9. 1. ~ 1978. 2. 10.	개편
11 대	변무관(卞務寬)	1978. 2. 11. ~ 1979. 8. 31.	
12 대	강우영(姜友永)	1979. 9. 1. ~ 1980. 6. 8.	
13 대	이길주(李桔柱)	1980. 6. 9. ~ 1981. 4. 26.	
14 대	백광현(白光鉉)	1981. 4. 27. ~ 1981. 12. 16.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5 대	이준승(李準昇)	1981. 12. 17. ~ 1982. 6. 17.	
16 대	한영석(韓永錫)	1982. 6. 18. ~ 1985. 3. 4.	
17 대	김유후(金有厚)	1985. 3. 5. ~ 1987. 6. 7.	
18 대	임상현(任尙鉉)	1987. 6. 8. ~ 1989. 3. 28.	
19 대	황길수(黃吉秀)	1989. 3. 29. ~ 1991. 7. 31.	
20 대	정성진(鄭城鎭)	1991. 8. 1. ~ 1992. 7. 28.	
21 대	문종수(文鍾洙)	1992. 7. 29. ~ 1993. 3. 16.	
22 대	신창언(申昌彦)	1993. 3. 17. ~ 1993. 9. 20.	
23 대	주광일(朱光逸)	1993. 9. 21. ~ 1994. 9. 15.	
24 대	김수장(金壽長)	1994. 9. 16. ~ 1995. 9. 19.	
25 대	김상수(金相洙)	1995. 9. 20. ~ 1995. 9. 26.	
26 대	신승남(愼承男)	1995. 9. 27. ~ 1997. 1. 22.	
27 대	공영규(孔永規)	1997. 1. 23. ~ 1997. 8. 13.	
28 대	강신욱(姜信旭)	1997. 8. 14. ~ 1998. 3. 22.	
29 대	김영철(金永喆)	1998. 3. 23. ~ 1999. 6. 8.	
30 대	송광수(宋光洙)	1999. 6. 9. ~ 1999. 8. 23.	
31 대	정충수(鄭忠秀)	1999. 8. 24. ~ 2000. 7. 14.	
32 대	명로승(明魯昇)	2000. 7. 15. ~ 2001. 5. 30.	
33 대	김영진(金永珍)	2001. 5. 31. ~ 2002. 2. 7.	
34 대	장윤석(張倫碩)	2002. 2. 8. ~ 2002. 8. 18.	
35 대	유창종(柳昌宗)	2002. 8. 19. ~ 2002. 11. 17.	
36 대	박종열(朴淙烈)	2002. 11. 18. ~ 2003. 3. 12.	
37 대	홍경식(洪景植)	2003. 3. 13. ~ 2003. 8. 4.	
38 대	이기배(李棋培)	2003. 8. 5. ~ 2004. 5. 31.	
39 대	안영욱(安永昱)	2004. 6. 1. ~ 2005. 4. 7.	
40 대	김준규(金畯圭)	2005. 4. 8. ~ 2007. 3. 4.	
41 대	한상대(韓相大)	2007. 3. 5. ~ 2009. 1. 18.	
42 대	채동욱(蔡東旭)	2009. 1. 19. ~ 2009. 8. 11.	
43 대	성영훈(成永薰)	2009. 8. 12. ~ 2010. 7. 14.	
44 대	한명관(韓明官)	2010. 7. 15. ~ 2011. 8. 21.	
45 대	정병두(鄭炳斗)	2011. 8. 22. ~ 2012. 7. 17.	
46 대	황윤성(黃允成)	2012. 7. 18. ~ 2013. 4. 9.	
47 대	강찬우(姜燦佑)	2013. 4. 10. ~ 2013. 12. 23.	
48 대	정인창(鄭仁昌)	2013. 12. 24. ~ 2015. 2. 10.	
49 대	봉 욱(奉 旭)	2015. 2. 11. ~ 2015. 12. 23	
50 대	김호철(金浩徹)	2015. 12. 24. ~ 2017. 7. 31.	
51 대	이용구(李容九)	2017. 8. 22. ~	

• 검찰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민복기(閔復基)	1948. 11. 4. ~ 1949. 7. 1.	1948. 11. 4.
2 대	이태희(李太熙)	1949. 7. 2. ~ 1949. 9. 22.	신설
3 대	최병석(崔秉錫)	1949. 11. 8. ~ 1950. 4. 20.	
4 대	신언한(申彦瀚)	1950. 6. 8. ~ 1952. 7. 17.	
5 대	권오병(權五柄)	1952. 7. 18. ~ 1953. 11. 6.	
6 대	김장섭(金長涉)	1953. 11. 23. ~ 1954. 3. 23.	
7 대	박천일(朴天一)	1954. 4. 3. ~ 1956. 7. 24.	
8 대	김치열(金致烈)	1956. 9. 17. ~ 1958. 3. 13.	
9 대	김장섭(金長涉)	1958. 3. 14. ~ 1958. 8. 30.	
10 대	주운화(朱雲化)	1958. 9. 10. ~ 1960. 9. 23.	
11 대	김찬수(金纘洙)	1960. 9. 24. ~ 1961. 7. 19.	
12 대	위청용(韋靑龍)	1961. 7. 20. ~ 1961. 12. 22.	
13 대	김용제(金龍濟)	1962. 1. 26. ~ 1963. 5. 30.	
14 대	윤두식(尹斗植)	1963. 5. 31. ~ 1964. 10. 16.	
15 대	윤운영(尹雲永)	1964. 10. 17. ~ 1966. 11. 18.	
16 대	김일두(金一斗)	1966. 11. 19. ~ 1968. 5. 31.	
17 대	김성재(金聖在)	1968. 6. 1. ~ 1969. 8. 1.	
18 대	박원호(朴元鎬)	1969. 8. 2. ~ 1971. 8. 25.	
19 대	이종원(李鐘元)	1971. 8. 26. ~ 1973. 4. 5.	
20 대	서정각(徐廷覺)	1973. 4. 6. ~ 1975. 9. 30.	
21 대	허형구(許亨九)	1975. 10. 1. ~ 1979. 2. 18.	
22 대	문상익(文相翼)	1979. 2. 19. ~ 1980. 6. 8.	
23 대	배명인(裵命仁)	1980. 6. 9. ~ 1981. 4. 26.	
24 대	정해창(丁海昌)	1981. 4. 27. ~ 1981. 12. 16.	
25 대	김기춘(金淇春)	1981. 12. 17. ~ 1982. 6. 17.	
26 대	정구영(鄭銶永)	1982. 6. 18. ~ 1985. 3. 4.	
27 대	김두희(金斗熙)	1985. 3. 5. ~ 1987. 6. 7.	
28 대	김유후(金有厚)	1987. 6. 8. ~ 1989. 3. 28.	
29 대	박종철(朴鍾喆)	1989. 3. 29. ~ 1990. 3. 26.	
30 대	김도언(金道彦)	1990. 3. 27. ~ 1991. 4. 17.	
31 대	최명부(崔明夫)	1991. 4. 18. ~ 1993. 3. 16.	
32 대	김종구(金鍾求)	1993. 3. 17. ~ 1993. 9. 20.	
33 대	최영광(崔永光)	1993. 9. 21. ~ 1994. 9. 15.	
34 대	최 환(崔 桓)	1994. 9. 16. ~ 1995. 9. 19.	
35 대	김진세(金鎭世)	1995. 9. 20. ~ 1997. 1. 22.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36 대	박순용(朴舜用)	1997. 1. 23. ~ 1997. 8. 13.	
37 대	최경원(崔慶元)	1997. 8. 14. ~ 1998. 3. 18.	
38 대	신승남(愼承男)	1998. 3. 23. ~ 1999. 6. 8.	
39 대	한부환(韓富煥)	1999. 6. 9. ~ 2000. 7. 14.	
40 대	김학재(金鶴在)	2000. 7. 15. ~ 2001. 5. 30.	
41 대	송광수(宋光洙)	2001. 5. 31. ~ 2002. 2. 7.	
42 대	김진환(金振煥)	2002. 2. 8. ~ 2002. 8. 18.	
43 대	장윤석(張倫碩)	2002. 8. 19. ~ 2003. 3. 12.	
44 대	홍석조(洪錫肇)	2003. 3. 13. ~ 2003. 8. 4.	
45 대	이종백(李鍾伯)	2003. 8. 5. ~ 2004. 5. 31.	
46 대	임채진(林采珍)	2004. 6. 1. ~ 2006. 2. 5.	
47 대	문성우(文晟祐)	2006. 2. 6. ~ 2008. 3. 9.	
48 대	차동민(車東珉)	2008. 3. 11. ~ 2009. 1. 18.	
49 대	한상대(韓相大)	2009. 1. 19. ~ 2009. 8. 11.	
50 대	최교일(崔敎一)	2009. 8. 12. ~ 2011. 8. 21.	
51 대	국민수(鞠敏秀)	2011. 8. 22. ~ 2013. 4. 9.	
52 대	김주현(金周賢)	2013. 4. 10. ~ 2015. 2. 10.	
53 대	안태근(安兌根)	2015. 2. 11. ~ 2017. 5. 21.	
54 대	박균택(朴均澤)	2017. 5. 22. ~ 2018. 6. 18	
55 대	윤대진(尹大鎭)	2018. 6. 19. ~ 2019. 7. 30.	
56 대	이성윤(李盛潤)	2019. 7. 31. ~	

• 보호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서동권(徐東權)	1981. 1. 26. ~ 1981. 4. 26.	1981. 1. 19.
2 대	박일흠(朴一欽)	1981. 4. 27. ~ 1982. 6. 20.	신설
3 대	이병근(李秉根)	1982. 6. 21. ~ 1983. 7. 31.	
4 대	김도언(金道彦)	1983. 8. 17. ~ 1985. 3. 5.	
5 ~ 6대	임상현(任尙鉉)	1985. 3. 12. ~ 1987. 6. 7.	
7 대	변재일(卞在日)	1987. 6. 8. ~ 1989. 3. 28.	
8 대	장응수(張應水)	1989. 3. 29. ~ 1991. 4. 17.	
9 대	지헌범(池憲範)	1991. 4. 18. ~ 1992. 7. 28.	
10 대	김기수(金起秀)	1992. 7. 29. ~ 1993. 3. 16.	
11 대	김태정(金泰政)	1993. 3. 17. ~ 1993. 4. 2.	
12 대	원정일(元正一)	1993. 4. 3. ~ 1993. 9. 20.	
13 대	김수장(金壽長)	1993. 9. 21. ~ 1994. 9. 15.	
14 대	김병학(金秉學)	1994. 9. 16. ~ 1995. 9. 19.	
15 대	이재신(李載侁)	1995. 9. 20. ~ 1997. 1. 22.	
16 대	송정호(宋正鎬)	1997. 1. 23. ~ 1997. 8. 13.	
17 대	김영철(金永喆)	1997. 8. 14. ~ 1998. 3. 22.	
18 대	윤동민(尹東旻)	1998. 3. 23. ~ 1999. 2. 3.	
19 대	신광옥(辛光玉)	1999. 2. 22. ~ 1999. 6. 8.	
20 대	정충수(鄭忠秀)	1999. 6. 9. ~ 1999. 8. 23.	
21 대	박종열(朴淙烈)	1999. 8. 24. ~ 2001. 5. 30.	
22 대	김종빈(金鍾彬)	2001. 5. 31. ~ 2002. 2. 7.	
23 대	조규정(趙圭政)	2002. 2. 8. ~ 2002. 11. 17.	
24 대	윤종남(尹鍾南)	2002. 11. 18. ~ 2003. 3. 12.	
25 대	정동기(鄭東基)	2003. 3. 13. ~ 2004. 5. 31.	
26 대	정진호(鄭振昊)	2004. 6. 1. ~ 2005. 4. 7.	
27 대	이승구(李承玖)	2005. 4. 8. ~ 2005. 9. 11.	
28 대	김수민(金秀敏)	2005. 9. 12. ~ 2007. 3. 4.	
29 대	이상도(李相燾)	2007. 3. 5. ~ 2008. 3. 10.	

• 범죄예방정책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박기준(朴基俊)	2008. 3. 11. ~ 2009. 1. 18.	
2 대	소병철(蘇秉哲)	2009. 1. 19. ~ 2009. 8. 11.	
3 대	주철현(朱哲鉉)	2009. 8. 12. ~ 2010. 7. 14.	
4 대	김수남(金秀南)	2010. 7. 15. ~ 2011. 8. 21.	
5 대	김희관(金熙官)	2011. 8. 22. ~ 2012. 7. 17.	
6 대	이건주(李健周)	2012. 7. 18. ~ 2013. 4. 9.	
7 대	문무일(文武一)	2013. 4. 10. ~ 2013. 12. 23.	
8 대	황철규(黃喆奎)	2013. 12. 24. ~ 2015. 2. 10.	
9 대	오광수(吳桄洙)	2015. 2. 11. ~ 2015. 12. 23.	
10 대	이상호(李相虎)	2015. 12. 24. ~ 2017. 7. 31.	
11 대	고기영(高基榮)	2017. 8. 1. ~ 2018. 2. 27.	
12 대	강호성(姜鎬成)	2018. 4. 2. ~	

• 인권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김준규(金畯圭)	2006. 5. 3. ~ 2006. 8. 6.	2006. 5. 3.신설
2 대	김종훈(金鍾勳)	2006. 8. 7. ~ 2009. 2. 15.	개방직
3 대	조영곤(曺永昆)	2009. 2. 28. ~ 2009. 8. 11.	검 사
4 대	송찬엽(宋讚燁)	2009. 8. 31. ~ 2010. 7. 14.	검 사
5 대	박민표(朴珉豹)	2010. 8. 2. ~ 2011. 9. 4.	검 사
6 대	이명재(李明宰)	2011. 9. 5. ~ 2012. 7. 17.	검 사
7 대	봉 욱(奉 旭)	2012. 7. 26. ~ 2013. 4. 9.	검 사
8 대	안태근(安兌根)	2013. 4. 23. ~ 2013. 12. 23.	검 사
9 대	한찬식(韓璨湜)	2014. 1. 16. ~ 2015. 2. 10.	검 사
10 대	차경환(車京煥)	2015. 2. 25. ~ 2015. 12. 23.	검 사
11 대	권정훈(權政勳)	2016. 1. 13. ~ 2017. 8. 16.	검 사
12 대	황희석(黃希錫)	2017. 9. 29. ~	개방직

• 감찰관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임채진(林采珍)	2005. 2. 1. ~ 2005. 4. 7.	직무대리
2 대	선우영(鮮于泳)	2005. 4. 8. ~ 2005. 9. 11.	
3 대	이승구(李承玖)	2005. 9. 12. ~ 2006. 2. 5.	
4 대	안종택(安鍾澤)	2006. 2. 6. ~ 2007. 3. 4.	
5 대	이복태(李福泰)	2007. 3. 5. ~ 2008. 3. 10.	
6 대	곽상욱(郭相煜)	2008. 4. 15. ~ 2009. 8. 11.	
7 대	이경재(李慶在)	2009. 9. 10. ~ 2010. 7. 14.	
8 대	안장근(安章根)	2010. 9. 1. ~ 2012. 8. 31.	개방직
9 대	안장근(安章根)	2012. 9. 1. ~ 2014. 8. 31.	개방직
10 대	김주현(金周賢)	2014. 9. 1. ~ 2015. 2. 10.	직무대리
11 대	안태근(安兌根)	2015. 2. 11. ~ 2015. 3. 15.	직무대리
12 대	장인종(張仁鍾)	2015. 3. 16. ~ 2017. 3. 15.	개방직
13 대	장인종(張仁鍾)	2017. 3. 16. ~ 2018. 4. 19.	개방직
14 대	송규종(宋奎鍾)	2018. 4. 20. ~ 2018. 7. 18.	직무대리
15 대	이정현(李定炫)	2018. 7. 19. ~ 2019. 4. 28.	직무대리
16 대	마광열(馬光烈)	2019. 4. 29. ~	개방직

• 교정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윤용섭(尹用燮)	1948. 11. 8. ~ 1949. 11. 8.	1948. 11. 4.
2 대	원탁연(元鐸淵)	1949. 11. 8. ~ 1951. 8. 28.	형정국 신설
3 대	최세황(崔世璜)	1951. 8. 29. ~ 1952. 7. 18.	
4 대	신언한(申彦瀚)	1952. 7. 19. ~ 1958. 3. 11.	
5 대	이병호(李丙浩)	1958. 3. 12. ~ 1960. 9. 23.	
6 대	이홍규(李弘圭)	1960. 9. 24. ~ 1961. 6. 21.	
7 대	서일교(徐壹敎)	1961. 6. 22. ~ 1962. 3. 18.	1962. 5. 21.
8 대	이봉성(李鳳成)	1962. 3. 19. ~ 1964. 10. 16.	교정국으로
9 대	윤두식(尹斗植)	1964. 10. 17. ~ 1966. 11. 18.	개편
10 대	윤운영(尹雲永)	1966. 11. 19. ~ 1968. 12. 1.	
11 대	김덕문(金德文)	1968. 12. 2. ~ 1971. 8. 25.	
12 대	김일두(金一斗)	1971. 8. 26. ~ 1973. 4. 5.	
13 대	이종원(李鍾元)	1973. 4. 6. ~ 1975. 9. 30.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4 대	김윤근(金潤槿)	1975. 10. 1. ~ 1977. 2. 16.	
15 대	송종진(宋鍾辰)	1977. 2. 17. ~ 1979. 2. 18.	
16 대	김석휘(金錫輝)	1979. 2. 19. ~ 1981. 4. 26.	
17 대	안경상(安景相)	1981. 4. 27. ~ 1981. 12. 16.	
18 대	김종건(金鐘鍵)	1981. 12. 17. ~ 1983. 7. 31.	
19 대	이병근(李秉根)	1983. 8. 1. ~ 1986. 5. 2.	
20 대	허은도(許殷道)	1986. 5. 3. ~ 1987. 6. 7.	
21 대	김동철(金東哲)	1987. 6. 8. ~ 1988. 8. 24.	
22 대	신 건(辛 建)	1988. 8. 25. ~ 1991. 4. 17.	
23 대	유순석(柳淳錫)	1991. 4. 18. ~ 1993. 3. 16.	
24 대	김기수(金起秀)	1993. 3. 17. ~ 1993. 5. 31.	직무대리
25 대	원정일(元正一)	1993. 6. 1. ~ 1993. 9. 20.	
26 대	김택수(金澤秀)	1993. 9. 21. ~ 1994. 9. 15.	
27 대	원정일(元正一)	1994. 9. 16. ~ 1995. 9. 19.	검사장급
28 대	박순용(朴舜用)	1995. 9. 20. ~ 1997. 1. 22.	
29 대	유재성(柳在成)	1997. 1. 23. ~ 1997. 8. 13.	
30 대	김수장(金壽長)	1997. 8. 14. ~ 1998. 3. 22.	
31 대	김경한(金慶漢)	1998. 3. 23. ~ 1999. 6. 8.	
32 대	이순길(李淳吉)	1999. 6. 9. ~ 2001. 6. 30.	일반직
33 대	김명환(金明煥)	2001. 7. 1. ~ 2002. 12. 31.	
34 대	하근수(河根洙)	2003. 1. 1. ~ 2003. 12. 31.	
35 대	양봉태(梁奉泰)	2004. 1. 19. ~ 2005. 12. 31.	
36 대	이인순(李仁焞)	2006. 1. 1. ~ 2006. 6. 25.	
37 대	승성신(承聖信)	2006. 6. 26. ~ 2007. 11. 29.	

• 교정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승성신(承聖信)	2007. 11. 30. ~ 2008. 6. 29.	
2 대	이태희(李台熙)	2008. 6. 30. ~ 2010. 6. 29.	
3 대	안동주(安東珠)	2010. 6. 30. ~ 2012. 6. 30.	
4 대	김태훈(金兌勳)	2012. 7. 1. ~ 2014. 6. 30.	일반직
5 대	윤경식(尹慶植)	2014. 7. 16. ~ 2016. 6. 30.	
6 대	김학성(金學成)	2016. 7. 1. ~ 2018. 6. 30.	
7 대	최강주(崔康柱)	2018. 7. 1. ~	

• 출입국관리국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이영환(李永煥)	1970. 9. 1. ~ 1971. 8. 25.	1970. 8. 20.
2 대	정익원(鄭益源)	1971. 8. 26. ~ 1972. 11. 21.	신설
3 대	안경열(安慶烈)	1972. 11. 22. ~ 1976. 6. 20.	
4 대	이길주(李桔柱)	1976. 6. 21. ~ 1978. 2. 10.	검사장급
5 대	정명래(鄭明來)	1978. 2. 11. ~ 1980. 6. 8.	
6 대	김용인(金用璘)	1980. 6. 9. ~ 1981. 4. 26.	
7 대	김기춘(金淇春)	1981. 4. 27. ~ 1981. 12. 16.	
8 대	정구영(鄭銶永)	1981. 12. 17. ~ 1982. 6. 17.	
9 대	박희태(朴熹太)	1982. 6. 18. ~ 1983. 7. 31.	
10 대	안태현(安泰鉉)	1983. 8. 1. ~ 1987. 2. 28.	일반직
11 대	조기현(曺麒鉉)	1987. 3. 2. ~ 1989. 4. 14.	
12 대	김우진(金宇鎭)	1989. 4. 15. ~ 1991. 6. 30.	
13 대	김시평(金時評)	1991. 7. 1. ~ 1993. 9. 30.	
14 대	홍석종(洪錫宗)	1993. 10. 1. ~ 1995. 3. 31.	
15 대	유병랑(兪炳郎)	1995. 4. 1. ~ 1997. 5. 31.	
16 대	구창덕(具昌德)	1997. 6. 1. ~ 1999. 4. 1.	
17 대	김수영(金秀永)	1999. 4. 2. ~ 2001. 6. 30.	
18 대	최수근(崔洙根)	2001. 7. 1. ~ 2003. 11. 21.	
19 대	이민희(李珉熙)	2003. 12. 5. ~ 2005. 12. 4.	계약직
20 대	강명득(姜命得)	2005. 12. 5. ~ 2007. 4. 1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 순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추규호(秋圭昊)	2007. 7. 10. ~ 2009. 7. 10.	계약직
2 대	석동현(石東炫)	2009. 8. 12. ~ 2011. 8. 21.	검사장
3 대	이창세(李昌世)	2011. 8. 22. ~ 2013. 4. 3.	검사장
4 대	정동민(鄭東敏)	2013. 4. 10. ~ 2013. 12. 23.	검사장
5 대	한무근(韓武根)	2013. 12. 24. ~ 2015. 2. 10.	검사장
6 대	김영준(金英畯)	2015. 2. 11. ~ 2015. 12. 23.	검사장
7 대	진경준(陳炅準)	2015. 12. 24. ~ 2016. 5. 22.	검사장
8 대	김우현(金宇鉉)	2016. 5. 23. ~ 2017. 7. 31	검사장
9 대	차규근(車圭根)	2017. 9. 4. ~	일반직

제5절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2019. 12. 31. 기준)

1. 본 부(5급 이상)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장 관		
차 관	**김오수**	**2018. 6. 22.**
장관비서관	최대진	2019. 9. 10.
장관정책보좌관	조두현	2019. 8. 6.
감 찰 관	**마광열**	**2019. 4. 29.**
감찰담당관	노만석	2019. 8. 6.
검사	박건욱	2019. 8. 6.
검사	이진용	2018. 2. 5.
검찰사무관	김봉석	2015. 8. 31.
〃	류재완	2017. 9. 27.
교정관	조영혁	2019. 1. 28.
감사담당관	유지중	2019. 7. 1.
서기관	박종국	2019. 4. 15
〃	김재술	2019. 4. 15
〃	조시형	2018. 1. 15
행정사무관	정동환	2018. 1. 15.
〃	서혜주	2019. 1. 14.
〃	이상영	2018. 1. 15.
〃	이준서	2019. 7. 1.
공업사무관	최해규	2018. 7. 1.
운영지원과장	최정석	2019. 7. 1.
서기관	유경남	2019. 7. 1.
행정사무관	허태구	2018. 1. 15.
〃	김경수	2018. 1. 15.
〃	김범영	2018. 1. 15.
〃	홍진희	2017. 8. 1.
시설사무관	임영탁	2016. 12. 23.
대변인	박재억	2019. 8. 6.
홍보담당관	한정진	2013. 9. 1.
서기관(일반임기제)	송세라아	2010. 9. 29.
행정사무관	고영석	2016. 12. 22.
검찰사무관(일반임기제)	이상우	2014. 5. 1.
전문임기제 나급	김은정	2019. 7. 1.
정책기획단장	김수현	2019. 8. 6.
검사	이혜은	2019. 8. 6.
검사	김영빈	2019. 8. 6.
사무관	조병기	2019. 8. 6.
기획조정실장	**김후곤**	**2019. 7. 31.**
정책기획관	이상순	2018. 1. 8.
검사	김영준	2018. 2. 5.
서기관	조연호	2019. 2. 11.
사무관	이현정	2019. 4. 22.
비상안전기획관	정 일	2019. 1. 1.
행정사무관	이강채	2013. 7. 29.
기획재정담당관	천정훈	2019. 7. 1.
서기관	최상혁	2016. 7. 4.
〃	김홍준	2018. 1. 8.
행정사무관	김용갑	2019. 4. 22.
〃	박상열	2019. 2. 11.
혁신행정담당관	김상권	2019. 7. 1.
서기관	임성훈	2019. 7. 1.
행정사무관	이준석	2019. 2. 11.
시설담당관	조록환	2018. 7. 1.
서기관	김정복	2018. 1. 8.
기술서기관	배성용	2018. 1. 8.
시설사무관	엄동철	2014. 11. 12.
〃	최기용	2018. 4. 16.
〃	최주환	2019. 9. 9.
〃	이인환	2019. 9. 9.
공업사무관	임맹원	2019. 4. 1.
〃	장동선	2019. 12. 2.
보호사무관	최상현	2016. 4. 4.
정보화담당관	김종협	2018. 7. 1.
기술서기관	진우석	2018. 7. 1.
〃	김희성	2019. 1. 1.
전산사무관	유상동	2018. 7. 1.
〃	정혜찬	2015. 10. 12.
〃	서종석	2018. 1. 15.
〃	정성훈	2018. 10. 11.
전산사무관(일반임기제)	김종철	2019. 12. 02.
정책성과관리팀장	이천재	2018. 1. 8.
행정사무관	양동규	2019. 2. 11.
〃	권호연	2019. 7. 1.
행복민원센터장	정 진	2019. 10. 28.
시설사무관	김 송	2019. 7. 1.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윤전	2019. 11. 20.
행정사무관	김유호	2019. 5. 7.
〃	김정원	2019. 5. 7.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문성인	2019. 8. 6.
검사	박혜영	2018. 2. 26.
전산사무관	원민정	2017. 1. 16.
〃	김봉우	2016. 5. 2.
보호사무관	이성실	2018. 8. 27.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법 무 실 장	**이용구**	**2017. 8. 22.**
법 무 심 의 관	전태석	2018. 10. 1.
검 사	김경목	2019. 2. 11.
〃	이지영	2019. 2. 11.
서 기 관 (일 반 임 기 제)	임성택	2019. 2. 11.
〃	권혜옥	2019. 3. 11.
검 찰 사 무 관	안호현	2019. 9. 30.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고민지	2018. 2. 5.
〃	김도윤	2018. 2. 5.
〃	정혜림	2018. 2. 5.
법 무 과 장	김향연	2019. 8. 6.
검 찰 수 사 서 기 관	강재성	2019. 1. 28.
〃	김재일	2019. 1. 28.
서 기 관 (일 반 임 기 제)	윤성훈	2019. 2. 5.
검 찰 사 무 관	윤석인	2019. 9. 30.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설기석	2018. 7. 30.
국 제 법 무 과 장	한창완	2018. 4. 9.
검 사	신동환	2017. 2. 20.
〃	김상현	2017. 2. 20.
검 찰 사 무 관	김진형	2018. 7. 9.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최 초	2016. 10. 4.
〃	김수진	2018. 2. 13.
〃	최승은	2019. 8. 7.
〃	조규현	2019. 8. 7.
국 가 송 무 과 장	김기수	2019. 8. 19.
검 찰 사 무 관	김연천	2016. 8. 29.
〃	이창균	2018. 7. 9.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류정민	2016. 4. 1.
〃	박건우	2018. 2. 5.
〃	윤경식	2019. 8. 6.
통 일 법 무 과 장	구태연	2019. 8. 6.
검 사	황진아	2019. 8. 6.
서 기 관 (일 반 임 기 제)	한경태	2019. 2. 11.
검 찰 사 무 관	장석경	2017. 9. 27.
〃	이해형	2019. 9. 30.
행 정 사 무 관	유재륜	2018. 10. 15.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태희	2019. 10. 14.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상 사 법 무 과 장	명한석	2018. 7. 23.
검 사	이혜미	2018. 2. 5.
서 기 관 (일 반 임 기 제)	이규철	2015. 11. 16.
〃	강혜정	2019. 2. 11.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김효선	2018. 7. 30.
〃	임수민	2019. 8. 26.
법 조 인 력 과 장	배성훈	2019. 8. 6.
서 기 관	이한식	2019. 2. 11.
〃	유경남	2019. 12. 23.
검 찰 사 무 관	안태성	2016. 8. 29.
행 정 사 무 관	최영만	2016. 5. 24.
〃	김효민	2018. 1. 8.
〃	이승항	2013. 7. 29.
검 찰 국 장	**이성윤**	**2019. 7. 31.**
사 법 연 수 원 부 원 장	이영주	2019. 7. 31.
검 찰 과 장	진재선	2019. 8. 6.
검 사	조아라	2019. 8. 6.
〃	김수홍	2017. 2. 20.
〃	이건표	2018. 2. 5.
〃	최수은	2019. 2. 11.
검 찰 수 사 서 기 관	박영서	2018. 7. 9.
〃	김동규	2017. 9. 27.
검 찰 사 무 관	이동영	2018. 1. 26.
형 사 기 획 과 장	김창진	2019. 8. 6.
검 사	한지혁	2019. 2. 11.
〃	조수영	2018. 7. 19.
검 찰 수 사 서 기 관	김성곤	2018. 7. 9.
검 찰 사 무 관	허종욱	2019. 9. 30.
공 공 형 사 과 장	권상대	2019. 8. 6.
검 사	김종욱	2018. 7. 19.
〃	홍희영	2019. 2. 11.
검 찰 사 무 관	안대현	2019. 1. 28.
〃	고영록	2018. 7. 9.
국 제 형 사 과 장	이동언	2019. 8. 6.
검 사	김남수	2018. 2. 5.
〃	오진세	2019. 2. 11.
검 찰 사 무 관	최창환	2017. 1. 16.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검 찰 사 무 관	고영호	2018. 7. 9.	보 호 사 무 관	김태섭	2019. 7. 22.
형 사 법 제 과 장	유태석	2019. 8. 6.	특정범죄자관리과장	손세헌	2018. 8. 27.
검 사	추창현	2019. 2. 11.	서 기 관	민덕희	2019. 7. 22.
〃	이경화	2019. 8. 6.	보 호 사 무 관	윤현봉	2019. 1. 28.
검 찰 사 무 관	임상현	2019. 9. 30.	〃	김근한	2019. 7. 22.
〃	김창옥	2017. 9. 27.	〃	성봉호	2015. 1. 12.
범죄예방정책국장	**강호성**	**2018. 4. 2.**	**인 권 국 장**	**황희석**	**2017. 9. 29.**
범죄예방기획과장	황진규	2018. 8. 27.	인권정책과장	김수아	2019. 5. 29.
서 기 관	염정훈	2018. 8. 27.	서 기 관	김에오	2017. 9. 29.
보 호 사 무 관	김병배	2018. 1. 22.	검 찰 사 무 관	박광수	2018. 1. 26.
〃	강신원	2018. 1. 22.	행 정 사 무 관	김현우	2018. 7. 2.
〃	정 윤	2019. 7. 22.	〃	김경모	2018. 8. 6.
〃	석철우	2019. 1. 28.	〃	신유정	2018. 2. 5.
〃	이승원	2018. 4. 9.	〃	유원정	2019. 6. 3.
행 정 사 무 관	신한헌	2018. 7. 16.	인권구조과장	김종현	2018. 9. 3.
보호정책과장	정소연	2018. 4. 2.	서 기 관	조상민	2017. 9. 29.
서 기 관	김기환	2018. 7. 22.	검 찰 사 무 관	최현태	2016. 2. 22.
보 호 사 무 관	정주호	2018. 1. 22.	행 정 사 무 관	한제오	2019. 1. 14.
보 호 사 무 관	김구회	2019. 1. 28.	〃	홍주영	2018. 10. 15.
보 호 사 무 관	이동준	2017. 1. 9.	〃	윤지원	2018. 2. 5.
행 정 사 무 관	이동훈	2018. 1. 15.	인권조사과장	최두천	2018. 7. 19.
〃	임동우	2019. 1. 1.	검 사	허용준	2018. 2. 5.
치료처우과장	윤웅장	2019. 1. 21.	검 찰 사 무 관	조수희	2017. 9. 27.
서 기 관	양현규	2018. 6. 14.	〃	여혜진	2019. 9. 30.
검 찰 사 무 관	정관영	2019. 9. 30.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영주	2018. 4. 2.
보 호 사 무 관	김영배	2018. 8. 27.	검 찰 사 무 관	이진선	2018. 1. 26.
〃	권은아	2015. 1. 12.	〃	이진영	2019. 8. 6.
보호관찰과장	이영면	2018. 8. 27.	**교 정 본 부 장**	**최강주**	**2018. 7. 1.**
서 기 관	문희갑	2019. 7. 22.	교정정책단장	유승만	2018. 8. 27.
보 호 사 무 관	임합격	2019. 7. 22.	보안정책단장	김명철	2019. 1. 28.
〃	김동하	2018. 1. 22.	교정기획과장	유태오	2018. 8. 27.
〃	안규용	2019. 1. 28.	서 기 관	조병주	2018. 8. 27.
〃	신혜진	2019. 7. 22.	〃	김성호	2019. 7. 15.
소년보호과장	김용운	2018. 1. 22.	교 정 관	김선희	2019. 1. 28.
서 기 관	송중일	2019. 7. 22.	〃	박대철	2018. 8. 27.
보 호 사 무 관	김지수	2016. 7. 18.	〃	주기남	2019. 1. 28.
〃	배성희	2019. 7. 22.	〃	이도곤	2019. 1. 28.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교 정 관	이권상	2019. 7. 15.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박주현	2018. 7. 23.
〃	문정훈	2018. 8. 27.	〃	이한태	2019. 1. 7.
〃	김찬우	2019. 7. 15.	〃	이은경	2019. 7. 8.
직 업 훈 련 과 장	최규철	2018. 12. 17.	출 입 국 심 사 과 장	안동관	2019. 1. 7.
교 정 관	박기주	2019. 1. 28.	서 기 관	김세진	2019. 3. 18.
〃	허영열	2019. 7. 15.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손흥기	2018. 6. 4.
행 정 사 무 관	이두형	2019. 7. 1.	〃	오동록	2019. 10. 10.
사 회 복 귀 과 장	윤창식	2018. 12. 17.	체 류 관 리 과 장	이진곤	2019. 8. 23.
교 정 관	김광희	2016. 9. 12.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이승현	2015. 8. 10.
〃	이규성	2017. 2. 13.	〃	이종철	2019. 3. 2.
〃	송진수	2016. 9. 12.	〃	김명훈	2018. 1. 1.
〃	정영모	2019. 1. 28	〃	김정욱	2019. 7. 8.
복 지 과 장	김남주	2018. 12. 17.	이 민 조 사 과 장	반재열	2019. 8. 22.
교 정 관	심재동	2016. 3. 14.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강성록	2018. 3. 5.
행 정 사 무 관	권태성	2018. 1. 15.	〃	박수완	2019. 1. 7.
시 설 사 무 관	손영조	2019. 7. 1.	〃	김영오	2019. 1. 7.
보 안 과 장	우희경	2018. 12. 17.	이 민 정 보 과 장	이상달	2018. 1. 1.
교 정 관	황진석	2018. 1. 1.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임준식	2017. 1. 9.
〃	조진호	2018. 12. 17.	〃	윤철민	2019. 1. 7.
〃	김 승	2019. 7. 15.	외 국 인 정 책 과 장	차용호	2019. 1. 28.
분 류 심 사 과 장	하영훈	2018. 12. 17.	서 기 관	이정미	2019. 7. 8.
서 기 관	윤순풍	2018. 12. 17.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김기락	2018. 2. 27.
교 정 관	허덕환	2018. 1. 1.	〃	서석주	2018. 7. 23.
〃	최종일	2018. 8. 27.	〃	고동중	2019. 3. 18.
의 료 과 장	김동환	2018. 8. 27.	국 적 과 장	송소영	2019. 8. 24.
교 정 관	강권홍	2019. 7. 15.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황민하	2018. 1. 1.
〃	김동식	2019. 9. 16.	〃	배창준	2018. 1. 1.
심 리 치 료 과 장	박수연	2018. 12. 17.	〃	소근희	2019. 1. 7.
교 정 관	박승률	2019. 7. 15.	이 민 통 합 과 장	김현채	2019. 3. 18.
〃	김수희	2019. 1. 28.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유성오	2018. 1. 1.
행 정 사 무 관	신동진	2019. 1. 13.	〃	권택성	2019. 3.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2017. 9. 4.**	〃	임동규	2019. 1. 7.
출 입 국 정 책 단 장	이인규	2019. 10. 7.	〃	이호수	2019. 7. 8.
국 적 · 통 합 정 책 단 장	유복근	2018. 8. 20.	난 민 과 장	김정도	2018. 4. 1.
출 입 국 기 획 과 장	육승훈	2019. 10. 10.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이취경	2019. 7. 15.
서 기 관	김무진	2019. 7. 8.	〃	김종무	2019. 3. 18.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이대우	2017. 1. 9.	〃	전동균	2019. 7. 8.

2. 법무연수원(4급 이상)

직 위	직 급	성 명	발 령 일
원 장	고 등 검 사 장	박 균 택	'19. 07. 31.
기 획 부 장 직 무 대 리	검 사	배 용 찬	'19. 08. 06.
용 인 분 원 장	검 사	박 성 근	'19. 08. 06.
교 정 연 수 부 장	고 위 공 무 원	이 경 식	'19. 01. 28.
연 구 위 원	고 등 검 사 장	황 철 규	'19. 07. 31.
	검 사	류 장 만	'14. 04. 28.
	고 위 공 무 원	이 영 호	'19. 10. 28.
	고 위 공 무 원	김 정 선	'19. 12. 12.
	이 사 관	송 병 철	'19. 02. 11.
	비 상 임	찬다라라스메이	'19. 06. 28.
	비 상 임	무스르마노프 도니요르	'19. 08. 26.
검 사 교 수	검 사	배 용 찬	'19. 08. 06.
		김 웅	'19. 08. 06.
		강수산나	'19. 08. 06.
		박 종 선	'19. 02. 11.
		송 민 경	'19. 02. 11.
		김 선 화	'19. 08. 06.
		한 제 희	'18. 07. 19.
		박 현 준	'19. 08. 06.
		김 경 근	'19. 08. 06.
		유 광 렬	'19. 08. 06.
		황 현 아	'18. 02. 05.
		김 익 수	'18. 07. 19.
		문 지 석	'19. 02. 11.
로 스 쿨 검 사 교 수	검 사	이 상 민	'18. 02. 05.
		권 내 건	'18. 07. 19.
		최 미 화	'18. 07. 19.
		허 훈	'19. 02. 11.
		손 상 희	'19. 02. 11.
		서 효 원	'18. 02. 05.
		이 유 현	'19. 08. 06.
기 획 과 장	검 사	김 성 동	'19. 08. 06.
법 무 교 육 과 장	검 사	이 성 식	'18. 07. 19.
총 무 과 장	서 기 관	김 수 철	'19. 07. 01.
일 반 연 수 과 장	검 찰 수 사 서 기 관	서 맹 웅	'18. 07. 09.
교 정 연 수 과 장	서 기 관	백 금 태	'19. 01. 18.
교 정 훈 련 과 장	서 기 관	강 의 곤	'19. 08. 06.
운 영 지 원 과 장	검 찰 수 사 서 기 관	현 임	'18. 07. 09.
시 설 팀 장	기 술 서 기 관	홍 성 운	'19. 07. 01.
보 호 직 교 수	서 기 관	장 재 원	'19. 01. 21.

3. 검 찰 청

직 위	성명	발령일
(대 검 찰 청)		
검찰총장	윤석열	2019.07.25
차장검사	강남일	2019.07.31
기획조정부장	이원석	2019.07.31
반부패·강력부장	한동훈	2019.07.31
형사부장	조상준	2019.07.31
공공수사부장	박찬호	2019.08.13
공판송무부장	노정연	2019.07.31
과학수사부장	이두봉	2019.07.31
인권부장	문홍성	2019.07.31
감찰부장	한동수	2019.10.18
수사정보정책관	김유철	2019.08.06
수사정보1담당관	김영일	2019.08.06
수사정보2담당관	성상욱	2019.08.06
대변인	권순정	2019.08.06
정책기획과장	박현철	2019.08.06
정보통신과장	이덕진	2019.08.06
수사지휘과장	엄희준	2019.08.06
수사지원과장	윤병준	2019.08.06
범죄수익환수과장	박승환	2019.08.06
형사제1과장	김형수	2019.08.06
형사제2과장	공봉숙	2019.08.06
조직범죄과장	천기홍	2019.08.06
마약과장	원지애	2019.08.06
공공수사정책관	임 현	2019.08.06
공안수사지원과장	김성훈	2019.08.06
선거수사지원과장	이희동	2019.08.06
노동수사지원과장	유도윤	2019.08.06
공판송무과장	서정민	2019.08.06
과학수사기획관	박철웅	2019.08.06
과학분석과장	주민철	2019.08.06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정용환	2019.08.06
디지털수사과장	문현철	2019.08.06
사이버수사과장	김윤후	2019.08.06

직 위	성명	발령일
인권기획과장	박상진	2019.08.06
인권감독과장	박주현	2019.08.06
피해자인권과장	최영아	2019.08.06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지연	2019.08.06
감찰제1과장	신승희	2019.08.06
감찰제2과장	정희도	2019.08.06
미래기획단장	이진수	2019.08.06
국제협력단장	박세현	2019.08.06
검찰연구관	김춘수	2019.08.06
〃	양석조	2019.08.06
〃	황병주	2019.08.06
〃	박찬록	2019.08.06
〃	조대호	2019.08.06
〃	이선혁	2019.08.06
〃	서정식	2019.08.06
〃	나욱진	2019.08.06
〃	김종우	2019.08.06
〃	임일수	2019.08.06
〃	이동균	2019.08.06
〃	조만래	2019.08.06
〃	김동희	2019.08.06
〃	추의정	2019.02.11
〃	김영미	2019.02.11
〃	장일희	2019.02.11
〃	최재만	2019.08.06
〃	이재만	2019.02.11
〃	박종선	2019.02.11
〃	박건영	2019.02.11
〃	최종혁	2019.02.11
〃	박윤희	2019.02.11
〃	이승희	2019.02.11
〃	이원모	2019.08.06
〃	손지혜	2019.02.11
〃	전수진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나영욱	2019.02.11
〃	오민재	2019.08.06
〃	박상희	2019.08.06
〃	김은정	2019.08.06
〃	차호동	2019.08.06
〃	이지혜	2019.08.06
사무국장	복두규	2019.10.05
운영지원과장	곽명규	2019.01.28
집행과장	장병인	2019.10.28
검찰총장실	강의구	2019.07.25
수사지원과	박치활	2019.01.28
디지털수사과	김광수	2019.01.28
운영지원과	권영갑	2018.01.26
운영지원과	이은상	2019.01.28
복지후생과장	오만옥	2018.01.26
감찰제1과	문명호	2019.01.28
비상안전담당관	박정호	2018.03.28
정보통신서기관	윤미숙	2016.05.02
정보통신서기관	고성순	2014.02.24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영대	2019.07.31
차장검사	심우정	2019.07.31
형사부장	김범기	2019.08.06
공판부장	조기룡	2019.08.06
송무부장	김재옥	2019.08.06
감찰부장	송규종	2019.08.06
검사	정명호	2017.08.17
〃	하종철	2018.07.19
〃	김호영	2019.08.06
〃	임무영	2018.07.19
〃	이의경	2018.07.19
〃	백찬하	2019.08.06
〃	이종대	2018.07.19
〃	정의식	2018.08.29
〃	서정식	2018.09.23
〃	이 용	2019.08.06

직 위	성명	발령일
〃	권도욱	2019.08.06
〃	이재구	2014.01.16
〃	강길주	2018.02.05
〃	방봉혁	2016.01.13
〃	김태광	2018.07.19
〃	정용수	2018.07.19
〃	이주일	2019.08.06
〃	김성렬	2019.08.06
〃	유두열	2019.08.06
〃	안성수	2018.07.19
〃	김국일	2018.07.19
〃	김충한	2018.07.19
〃	이현철	2019.08.06
〃	안권섭	2019.08.06
〃	변창범	2017.08.17
〃	백재명	2019.08.06
〃	서종혁	2018.07.19
〃	서봉규	2018.07.19
〃	김 신	2018.07.19
〃	이선욱	2019.08.06
〃	명점식	2019.08.06
〃	박승환	2018.07.19
〃	최영운	2018.07.19
〃	박재현	2019.08.06
〃	손영배	2019.08.06
〃	예세민	2019.08.06
〃	이영재	2019.08.06
〃	정희원	2019.08.06
〃	전영준	2018.07.19
〃	형진휘	2019.08.06
〃	배창대	2018.07.19
〃	김영기	2019.08.06
〃	남상관	2018.07.19
〃	박영진	2019.08.06
〃	김정헌	2019.02.11
사무국장	강진구	2019.10.28

직위	성명	발령일
총무과장	이홍용	2019.10.28
사건과장	김기성	2019.09.30
관리과장	오영근	2019.09.30
소송사무제1과장	강형규	2019.09.30
소송사무제2과장	이호열	2019.01.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배성범	2019.07.31
제1차장검사	신자용	2019.08.06
제2차장검사	신봉수	2019.08.06
제3차장검사	송경호	2019.08.06
제4차장검사	한석리	2019.08.06
인권감독관	김효붕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성상헌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강지성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박승대	2019.08.06
형사제4부장검사	이종혁	2019.08.06
형사제5부장검사	김태훈	2019.08.06
형사제6부장검사	이영림	2019.08.06
형사제7부장검사	김윤섭	2019.08.06
형사제8부장검사	차순길	2019.08.06
형사제9부장검사	박성민	2019.08.06
총무부장검사	안동완	2019.08.06
공공수사제1부장검사	정진용	2019.08.13
공공수사제2부장검사	김태은	2019.08.13
공공수사제3부장검사	김성주	2019.08.13
외사부장검사	김도형	2019.08.06
공판제1부장검사	전양석	2019.08.06
공판제2부장검사	김남순	2019.08.06
공판제3부장검사	김석담	2019.08.06
반부패수사제1부장검사	구상엽	2019.10.22
반부패수사제2부장검사	고형곤	2019.10.22
반부패수사제3부장검사	허 정	2019.10.22
반부패수사제4부장검사	이복현	2019.10.22
공정거래조사부장검사	구승모	2019.08.06
방위사업수사부장검사	강성용	2019.08.06
조세범죄조사부장검사	김종오	2019.08.06

직위	성명	발령일
조사제1부장검사	박진원	2019.08.06
조사제2부장검사	이영남	2019.08.06
강력부장검사	박영빈	2019.08.06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검사	김윤희	2019.08.06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유현정	2019.08.06
범죄수익환수부장검사	권기대	2019.08.06
부장검사	김용규	2019.08.06
(부부장)검사	박철우	2019.08.06
〃	김준섭	2019.08.06
〃	장윤태	2019.08.06
〃	양동우	2019.08.06
〃	정일균	2019.08.06
〃	김상현	2019.08.06
〃	조주연	2018.07.19
〃	김창수	2019.08.06
〃	김영철	2019.02.11
〃	이상록	2018.07.19
〃	이광석	2019.08.06
〃	정수진	2018.07.19
〃	윤재슬	2019.08.06
〃	정성현	2019.08.06
〃	이혜은	2019.08.06
〃	김정환	2019.08.06
〃	유광렬	2019.08.06
〃	김호준	2019.08.06
〃	위수현	2019.02.11
〃	신혜진	2019.08.06
〃	강백신	2019.08.06
〃	김일권	2019.08.06
〃	마수열	2019.08.06
〃	윤동환	2019.08.06
〃	이승형	2019.08.06
〃	이용균	2019.08.06
〃	김민아	2019.08.06
〃	백승주	2019.08.06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해경	2019.08.06
〃	박현규	2019.08.06
〃	김영남	2019.08.06
〃	장혜영	2019.08.06
〃	김용식	2019.08.06
〃	이유선	2019.08.06
〃	임유경	2019.08.06
〃	문지선	2019.08.06
〃	최재훈	2019.08.06
〃	오종렬	2019.08.06
〃	오기찬	2019.08.06
〃	최우균	2019.08.06
〃	조용후	2019.08.06
〃	박성민	2019.08.06
〃	박성민	2019.08.06
〃	손상욱	2019.08.06
〃	김성원	2019.08.06
〃	장재완	2019.08.06
〃	김재혁	2019.08.06
〃	김형원	2019.08.06
〃	임예진	2019.08.06
〃	권성희	2019.08.06
검 사	김석순	2019.02.11
〃	홍민유	2019.02.11
〃	김희동	2019.02.11
〃	장영준	2019.02.11
〃	윤신명	2019.02.11
〃	심기호	2018.02.05
〃	황익진	2018.03.02
〃	박제연	2019.03.01
〃	한웅세	2019.03.01
〃	이영훈	2018.03.02
〃	주은혜	2018.03.02
〃	이지영	2019.03.01
〃	박영웅	2019.03.01
〃	박종민	2019.08.06

직 위	성명	발령일
〃	신건호	2018.02.05
〃	박경섭	2017.02.20
〃	김종필	2017.08.17
〃	서현욱	2018.02.05
〃	허지훈	2018.02.05
〃	채희만	2017.02.20
〃	김윤정	2019.02.11
〃	노선균	2017.02.20
〃	공준혁	2017.02.20
〃	김은하	2018.02.05
〃	장준호	2018.02.05
〃	김상민	2018.02.05
〃	김태훈	2017.02.20
〃	김승걸	2017.02.20
〃	최태은	2017.02.20
〃	장혜영	2019.08.06
〃	박진석	2017.02.20
〃	원신혜	2019.02.11
〃	김지용	2017.02.20
〃	김윤용	2016.01.27
〃	엄재상	2018.02.05
〃	김지혜	2018.02.05
〃	정화준	2018.02.05
〃	국 원	2017.02.20
〃	송준구	2019.02.11
〃	윤수정	2016.01.27
〃	허성규	2019.02.11
〃	김지영	2019.02.11
〃	이재연	2019.02.11
〃	정유선	2018.02.05
〃	김현우	2018.02.05
〃	윤소현	2019.02.11
〃	나하나	2018.02.05
〃	조재철	2019.02.11
〃	김봉진	2018.02.05
〃	유민종	2018.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	송봉준	2018.07.19
〃	박경택	2017.02.20
〃	천헌주	2018.02.05
〃	소정수	2018.02.05
〃	박 철	2017.02.20
〃	이태순	2018.07.19
〃	김영주	2017.02.20
〃	김준선	2019.02.11
〃	문하경	2018.02.05
〃	이태협	2017.08.17
〃	강성기	2018.07.19
〃	류주태	2018.02.05
〃	김민구	2019.02.11
〃	박건영	2017.08.17
〃	최두헌	2016.01.27
〃	홍정연	2019.02.11
〃	신희영	2019.08.06
〃	박상범	2019.02.11
〃	박지훈	2017.02.20
〃	정우석	2017.02.20
〃	배상윤	2017.02.20
〃	김영빈	2017.02.20
〃	정원석	2019.02.11
〃	박지나	2017.02.20
〃	진을종	2016.01.27
〃	남철우	2017.02.20
〃	조정호	2017.02.20
〃	최정민	2019.02.11
〃	조성윤	2017.02.20
〃	허윤희	2017.02.20
〃	변진환	2019.02.11
〃	김성태	2018.02.05
〃	이정호	2017.02.20
〃	이은윤	2019.02.11
〃	고영하	2017.02.20
〃	김진희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진용	2019.02.11
〃	이세원	2018.07.19
〃	이근정	2018.02.05
〃	서정화	2017.02.20
〃	이주용	2017.02.20
〃	장세진	2019.02.11
〃	이대헌	2017.02.20
〃	홍정연	2018.02.05
〃	황선옥	2019.02.11
〃	윤효선	2015.02.25
〃	이한울	2019.02.11
〃	엄영욱	2018.02.05
〃	이윤구	2019.02.11
〃	소재환	2018.02.05
〃	최형규	2016.01.27
〃	윤석환	2018.02.05
〃	김영신	2016.01.27
〃	천재인	2018.02.05
〃	오대건	2018.02.05
〃	서동범	2018.02.05
〃	양익준	2018.02.05
〃	전영우	2018.02.05
〃	김지윤	2018.02.05
〃	이혜현	2018.02.05
〃	이현주	2019.02.11
〃	허선주	2018.02.05
〃	신기용	2019.02.11
〃	송찬우	2019.02.11
〃	박영상	2019.02.11
〃	이윤환	2019.02.11
〃	장태형	2018.02.05
〃	성대웅	2019.02.11
〃	강진욱	2019.02.11
〃	임홍주	2019.02.11
〃	문승태	2019.02.11
〃	이정현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방글	2019.02.11
〃	홍지예	2017.02.20
〃	안재욱	2019.02.11
〃	강일민	2019.02.11
〃	이승현	2017.02.20
〃	우옥영	2018.02.05
〃	양재영	2017.02.20
〃	홍성기	2019.02.11
〃	홍석기	2019.02.11
〃	박성욱	2019.02.11
〃	고유진	2019.02.11
〃	신비나	2019.02.11
〃	정승원	2018.02.05
〃	최성규	2019.02.11
〃	김승기	2018.02.05
〃	신영민	2018.02.05
〃	오준근	2018.02.05
〃	이슬기	2018.02.05
〃	성재호	2018.02.05
〃	이상민	2018.02.05
〃	김희송	2018.02.05
〃	정선희	2019.02.11
〃	안성민	2018.02.05
〃	이승철	2018.02.05
〃	이희준	2018.02.05
〃	조도준	2018.02.05
〃	이소연	2018.02.05
〃	우재훈	2018.02.05
〃	송태원	2019.02.11
〃	양준석	2019.02.11
〃	문종배	2019.02.11
〃	양찬규	2019.02.11
〃	정덕채	2019.02.11
〃	정 혁	2019.02.11
〃	문재웅	2019.02.11
〃	신은정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곽중욱	2019.02.11
〃	손정현	2019.02.11
〃	손성민	2018.04.01
〃	구자원	2018.04.01
〃	이권석	2019.04.01
〃	신충섭	2018.02.05
〃	박현우	2018.02.05
〃	함석욱	2019.02.11
사 무 국 장	강성식	2019.01.28
총 무 과 장	권영준	2019.01.28
집 행 제 1 과 장	유정민	2019.09.30
집 행 제 2 과 장	윤재순	2018.07.09
기 록 관 리 과 장	박희상	2018.07.09
형 사 증 거 과 장	조창희	2019.09.30
피 해 자 지 원 과 장	박형석	2019.09.30
공 공 수 사 지 원 과 장	허철안	2019.09.30
수 사 제 1 과 장	이원태	2018..07.09
수 사 정 보 과 장	김동완	2018.07.09
수 사 제 2 과 장	황세일	2018.07.09
수 사 지 원 과 장	정병인	2019.07.25
조 사 과 장	박상식	2019.09.30
조 직 범 죄 수 사 과 장	최진호	2019.09.30
마 약 수 사 과 장	한광익	2019.09.30
공 판 과 장	조동규	2019.01.28
검 사 직 무 대 리	조경익	2018.07.09
검 사 직 무 대 리	이형봉	2018.01.26
검 사 직 무 대 리	안동선	2019.09.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 사 장	조남관	2019.07.31
차 장 검 사	홍승욱	2019.08.06
인 권 감 독 관	정규영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강신엽	2017.08.17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최영의	2017.08.17
〃	이성일	2019.08.06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김양수	2019.08.06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김재호	2019.08.06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3부장검사	장성철	2019.08.06
형사제4부장검사	이창수	2019.08.06
형사제5부장검사	장준희	2019.08.06
형사제6부장검사	이정섭	2019.08.06
사이버수사부장검사	김봉현	2019.08.06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서창원	2019.08.06
공판부장검사	이주영	2019.08.06
(부부장)검사	장봉문	2019.08.06
〃	박홍규	2019.08.06
〃	유지연	2019.08.06
〃	박명희	2019.08.06
〃	허수진	2019.08.06
〃	이성범	2019.08.06
검사	조규웅	2018.07.19
〃	남소정	2019.02.11
〃	고건영	2019.02.11
〃	문승철	2019.03.01
〃	조약돌	2019.08.01
〃	이동헌	2019.08.01
〃	이가은	2018.03.02
〃	안세영	2018.03.02
〃	김병진	2019.03.01
〃	김은성	2019.03.01
〃	김승훈	2019.05.08
〃	이준명	2019.05.08
〃	고영인	2019.05.08
〃	황인혜	2019.05.08
〃	박석용	2018.02.05
〃	강선주	2017.02.20
〃	이세희	2018.02.05
〃	이시전	2018.02.05
〃	최용락	2017.02.20
〃	반 지	2017.02.20
〃	나희석	2019.02.11
〃	김윤정	2019.02.11
〃	전세정	2018.07.19
〃	김승우	2018.02.05
〃	이승현	2018.07.19
〃	정효민	2016.01.27
〃	최윤희	2018.02.05
〃	구진미	2019.02.11
〃	이지은	2017.02.20
〃	류승진	2019.02.11
〃	노경은	2018.02.05
〃	황보영	2019.02.11
〃	황윤선	2019.02.11
〃	박수정	2018.02.05
〃	허 정	2018.02.05
〃	권가희	2019.02.11
〃	김소정	2019.02.11
〃	전경민	2018.04.01
〃	정정교	2019.04.01
〃	김재현	2018.02.05
〃	조윤정	2018.02.05
〃	박강일	2019.02.11
사무국장	윤진웅	2019.01.28
총무과장	정연철	2019.09.30
사건과장	장정호	2019.09.30
집행과장	이길재	2018.07.09
공판과장	조광훈	2019.09.30
조사과장	정안진	2019.09.30
수사과장	오범석	2019.09.30
검사직무대리	김도석	2018.01.26
검사직무대리	조희영	2018.07.0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송삼현	2019.07.31
제1차장검사	심재철	2019.08.06
제2차장검사	신응석	2019.08.06
인권감독관	나병훈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석우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하충헌	2017.08.17
〃	김영익	2019.08.06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대룡	2019.08.06
〃	김재호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강형민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이정봉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오정희	2019.08.06
형사제4부장검사	이계한	2019.08.06
형사제5부장검사	허인석	2019.08.06
형사제6부장검사	조상원	2019.08.06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오세영	2019.08.06
공판부장검사	김용자	2019.08.06
금융조사제1부장검사	임승철	2019.08.06
금융조사제2부장검사	박성훈	2019.08.06
공공수사부장검사	조광환	2019.08.13
(부부장)검사	최헌만	2019.08.06
〃	박은정	2019.08.06
〃	김수현	2019.08.06
〃	최재민	2019.08.06
〃	이세진	2019.08.06
〃	이광우	2019.08.06
〃	이준동	2019.08.06
〃	나의엽	2019.08.06
검사	임상규	2019.02.11
〃	엄상준	2018.02.05
〃	박진아	2019.02.11
〃	김연희	2019.02.11
〃	이윤석	2018.03.02
〃	최우석	2019.03.01
〃	조정연	2019.08.01
〃	고형근	2019.08.01
〃	박보영	2018.03.02
〃	이동욱	2018.03.02
〃	배상아	2019.03.01
〃	신석규	2019.05.08
〃	우희준	2019.05.08
〃	박지환	2019.05.08
〃	박세진	2019.05.08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종훈	2019.05.08
〃	송명섭	2019.02.11
〃	강정영	2017.02.20
〃	최종필	2018.02.05
〃	조영성	2017.02.20
〃	김진호	2017.02.20
〃	최수봉	2018.02.05
〃	한문혁	2018.02.05
〃	이동현	2018.02.05
〃	용태호	2017.02.20
〃	김진혁	2018.07.19
〃	정선제	2016.01.27
〃	구민기	2017.02.20
〃	최성수	2019.08.06
〃	이수창	2019.02.11
〃	최성겸	2019.02.11
〃	신은식	2018.02.05
〃	김효진	2017.02.20
〃	단정려	2017.02.20
〃	이세종	2019.02.11
〃	신승호	2019.02.11
〃	윤 경	2019.02.11
〃	최상훈	2018.02.05
〃	박 수	2019.02.11
〃	김은정	2016.01.27
〃	정정욱	2018.02.05
〃	이은주	2018.02.05
〃	이수현	2018.02.05
〃	정성헌	2019.02.11
〃	박재평	2018.02.05
〃	김 진	2019.02.11
〃	이상미	2017.02.20
〃	최여련	2018.07.19
〃	박신영	2017.02.20
〃	배지훈	2018.07.19
〃	김미영	2018.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	전혜현	2017.02.20
〃	최성준	2019.02.11
〃	권슬기	2018.02.05
〃	정동현	2019.02.11
〃	황호석	2018.02.05
〃	이정아	2017.02.20
〃	김보미	2018.02.05
〃	허수진	2018.02.05
〃	강 현	2019.02.11
〃	임수민	2019.02.11
〃	최민혁	2018.04.01
〃	김진규	2019.04.01
〃	신가현	2018.02.05
〃	조영민	2019.02.11
사무국장	이갑수	2019.10.28
총무과장	성찬오	2019.09.30
사건과장	김윤기	2019.09.30
집행과장	김승현	2019.01.28
조사과장	최성규	2019.09.30
수사과장	박정학	2019.09.30
공판과장	이정용	2019.01.28
검사직무대리	이헌	2019.09.30
검사직무대리	박종필	2019.09.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오인서	2019.07.31
차장검사	이문한	2019.08.06
인권감독관	김지헌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기정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유종완	2019.08.06
〃	공태구	2019.08.06
〃	손우창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최용규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정종화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이은강	2019.08.06
형사제4부장검사	전무곤	2019.08.06
형사제5부장검사	천관영	2019.08.06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6부장검사	이태일	2019.08.06
공판부장검사	김효섭	2019.08.06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유천열	2019.08.06
(부부장)검사	이영준	2019.08.06
〃	김진남	2018.07.19
검사	송정범	2019.02.11
〃	김혜주	2019.02.11
〃	손정아	2018.07.19
〃	염호영	2018.02.05
〃	김상직	2018.08.01
〃	김준소	2019.03.01
〃	이재희	2019.03.01
〃	신건수	2019.08.01
〃	안현선	2019.08.01
〃	박지향	2018.03.02
〃	김진호	2017.04.27
〃	김병준	2019.03.01
〃	최건호	2019.03.01
〃	박민지	2018.04.30
〃	김규현	2019.05.08
〃	반동호	2019.05.08
〃	이인영	2019.05.08
〃	이강천	2019.05.08
〃	정명원	2019.02.11
〃	한상훈	2017.02.20
〃	김태헌	2017.08.17
〃	강호준	2019.02.11
〃	노정옥	2019.02.11
〃	유정현	2017.02.20
〃	하준호	2016.01.27
〃	강은선	2017.02.20
〃	김금이	2018.02.05
〃	김호경	2018.02.05
〃	이대성	2017.02.20
〃	김동율	2017.02.20
〃	윤인식	2018.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기영	2019.02.11
〃	이종혁	2018.07.19
〃	정우성	2019.02.11
〃	정혜승	2017.08.17
〃	임지연	2017.02.20
〃	최한나	2019.02.11
〃	이율희	2019.02.11
〃	박형수	2019.02.11
〃	송민하	2019.02.11
〃	이재연	2019.02.11
〃	설수현	2019.02.11
〃	박지영	2018.02.05
〃	은종욱	2018.02.05
〃	이수환	2018.02.05
〃	오보미	2018.02.05
〃	심재신	2019.02.11
〃	김광락	2018.02.05
〃	성진영	2018.02.05
〃	김연재	2018.04.01
〃	김진영	2019.04.01
〃	박선영	2018.02.05
〃	김지혜	2018.02.05
〃	김윤환	2019.02.11
사무국장	전병렬	2019.10.28
총무과장	이상남	2019.10.28
사건과장	박상락	2019.01.28
집행과장	고병훈	2019.09.30
조사과장	송영근	2019.01.28
수사과장	최종필	2018.01.26
공판과장	구제일	2018.07.09
검사직무대리	김영일	2019.01.28
검사직무대리	하영식	2019.01.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조상철	2019.07.31
차장검사	이정현	2019.08.06
인권감독관	최성완	2019.08.06

직 위	성명	발령일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최창호	2018.07.19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박병규	2019.08.06
〃	김종호	2019.08.06
〃	이종찬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강종헌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정원혁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이재승	2019.08.06
형사제4부장검사	변필건	2019.08.06
형사제5부장검사	배문기	2019.08.06
공판부장검사	이종민	2019.08.06
식품의약조사부장검사	이동수	2019.08.06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이준식	2019.08.06
(부부장)검사	이병대	2019.08.06
〃	임대혁	2019.01.07
〃	이정배	2019.08.06
〃	조희영	2019.08.06
〃	정현승	2019.08.06
〃	김상균	2019.08.06
검사	유재근	2019.02.11
〃	김자은	2019.02.11
〃	이영준	2019.03.01
〃	모형민	2019.08.01
〃	이명희	2018.03.02
〃	신명은	2018.03.02
〃	정기하	2019.03.01
〃	임여은	2019.03.01
〃	이수경	2019.05.08
〃	박혜란	2018.02.05
〃	문지석	2019.02.11
〃	박대환	2019.02.11
〃	김재성	2018.02.05
〃	이주현	2015.08.27
〃	서민주	2018.07.19
〃	김재환	2018.02.05
〃	유관모	2017.08.17
〃	황윤재	2018.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지은	2016.08.31
〃	왕선주	2016.01.27
〃	송한섭	2018.02.05
〃	정가원	2016.01.27
〃	오창명	2018.07.19
〃	김동규	2019.02.11
〃	송새봄	2018.02.05
〃	김미경	2018.02.05
〃	김지혜	2017.02.20
〃	김진희	2019.02.11
〃	김현서	2019.02.11
〃	고명아	2018.02.05
〃	최종경	2019.02.11
〃	홍현준	2019.02.11
〃	김녹원	2018.02.05
〃	김수지	2018.02.05
〃	박예주	2019.02.11
〃	정경진	2019.02.11
〃	최광진	2018.04.01
〃	김진혁	2019.04.01
〃	최정수	2018.02.05
〃	김혜리	2019.02.11
사무국장	윤득영	2019.10.28
총무과장	이재호	2019.01.28
사건과장	전덕진	2019.09.30
집행과장	백종동	2018.07.09
조사과장	김영규	2018.01.26
수사과장	서진학	2019.01.28
공판과장	김몽철	2019.01.28
검사직무대리	정영운	2019.09.30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구본선	2019.07.31
차장검사	정진기	2019.08.06
인권감독관	김정호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종근	2018.07.19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박재영	2018.07.19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성훈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홍종희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허정수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진철민	2019.08.06
형사제4부장검사	유동호	2019.08.06
형사제5부장검사	이환기	2019.02.23
공공수사부장검사	최창민	2019.08.13
공판송무부장검사	김종철	2019.08.06
(부부장)검사	김현채	2018.07.19
〃	양성필	2019.08.06
〃	권유식	2019.08.06
〃	국상우	2019.08.06
〃	박혜영	2019.08.06
〃	진호식	2019.08.06
검사	연제혁	2019.02.11
〃	남경우	2019.02.11
〃	이선미	2018.07.19
〃	남재현	2018.02.05
〃	민은식	2018.02.05
〃	김정선	2019.02.11
〃	고재린	2019.02.11
〃	오자연	2019.02.11
〃	류재현	2019.03.01
〃	이해영	2019.03.01
〃	이경문	2019.08.01
〃	이재연	2018.03.02
〃	정다미	2018.03.02
〃	김태현	2019.03.01
〃	한채란	2019.03.01
〃	송동민	2019.05.08
〃	김의회	2019.05.08
〃	오혜림	2019.05.08
〃	서원익	2017.02.20
〃	홍승현	2019.02.11
〃	이정화	2018.02.05
〃	김명옥	2017.08.17

직 위	성명	발령일
〃	남대주	2018.02.05
〃	권재호	2017.02.20
〃	김다래	2016.08.31
〃	최혜경	2016.01.27
〃	이혜미	2015.02.25
〃	송명진	2018.02.05
〃	박상선	2017.02.20
〃	박경화	2018.02.05
〃	정선철	2018.02.05
〃	박재호	2018.02.05
〃	조현일	2018.02.05
〃	김유나	2019.02.11
〃	황경원	2018.02.05
〃	안미현	2018.02.05
〃	김경년	2018.02.05
〃	황수희	2019.02.11
〃	권동욱	2018.02.05
〃	김수희	2018.02.05
〃	이부용	2018.02.05
〃	나민영	2019.02.11
〃	정경영	2018.02.05
〃	박민지	2018.02.05
〃	이신애	2018.02.05
〃	이거량	2018.04.01
〃	정주미	2018.02.05
〃	정제훈	2019.02.11
사무국장	유승준	2019.01.28
총무과장	조순남	2019.09.30
사건과장	정해영	2019.01.28
집행과장	전귀현	2019.09.30
수사과장	이경구	2018.07.09
공판송무과장	정의수	2019.09.30
검사직무대리	윤대섭	2019.09.30
(고양지청)		
지청장	김관정	2019.08.06
차장검사	이준식	2019.08.06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1부장검사	김도완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정우식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최현철	2019.08.06
형사제4부장검사	이동원	2019.08.06
(부부장)검사	이진호	2019.08.06
〃	김기룡	2019.08.06
〃	최재준	2019.08.06
검사	최진혁	2019.02.11
〃	전형준	2019.02.11
〃	이기명	2019.02.11
〃	김주혜	2019.02.11
〃	박예진	2018.02.05
〃	김시한	2019.08.01
〃	류광환	2019.08.01
〃	오승식	2018.03.02
〃	최종윤	2018.03.02
〃	오종혁	2019.03.01
〃	박 현	2019.03.01
〃	이인원	2019.05.08
〃	이가희	2019.05.08
〃	박유나	2019.05.08
〃	이섬연	2019.05.08
〃	황수연	2018.02.05
〃	황정임	2019.02.11
〃	박순애	2017.02.20
〃	김지영	2018.02.05
〃	유지연	2016.08.31
〃	김동진	2019.02.11
〃	성기범	2018.02.05
〃	김미혜	2018.02.05
〃	김태호	2018.02.05
〃	허태훈	2018.02.05
〃	이소연	2019.02.11
〃	유상우	2019.02.11
〃	정기훈	2019.02.11
〃	김가연	2018.02.05

직위	성명	발령일
사무국장	박귀원	2019.01.28
총무과장	이영일	2019.09.30
사건과장	류경숙	2018.07.09
집행과장	이금영	2019.01.28
수사과장	이보균	2019.09.30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정회	2019.07.31
제1차장검사	주영환	2019.08.06
제2차장검사	이종근	2019.08.06
인권감독관	윤철민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승영	2018.07.19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박문수	2019.08.06
〃	류지열	2019.08.06
〃	박혜경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이정환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한윤경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박기동	2019.08.06
형사제4부장검사	강대권	2019.08.06
형사제5부장검사	정재훈	2019.08.06
형사제6부장검사	하담미	2019.08.06
형사제7부장검사	김형록	2019.10.22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정은혜	2019.08.06
공판송무부장검사	변수량	2019.08.06
공공수사부장검사	양동훈	2019.08.13
강력부장검사	김호삼	2019.08.06
외사부장검사	양건수	2019.08.24
(부부장)검사	신명호	2019.08.06
〃	이창온	2017.02.09
〃	조용한	2019.08.06
〃	이기영	2019.02.11
〃	안병수	2019.02.11
〃	송지용	2019.08.06
〃	홍석기	2018.07.19
〃	신동원	2019.08.06
〃	김영오	2019.08.06
〃	김연실	2019.08.06
〃	구미옥	2019.08.06
〃	이승훈	2019.08.06
검사	신정수	2019.02.11
〃	황진선	2018.02.05
〃	이지륜	2019.02.11
〃	양귀호	2018.02.05
〃	권근환	2018.02.05
〃	유주현	2018.02.05
〃	조윤경	2018.02.05
〃	전영경	2018.02.05
〃	김승연	2019.02.11
〃	장지철	2019.02.11
〃	하언욱	2018.03.02
〃	원선아	2019.02.11
〃	최윤영	2019.03.01
〃	이태훈	2019.03.01
〃	김소영	2016.05.02
〃	김나연	2017.04.27
〃	이상범	2018.03.02
〃	정종일	2019.03.01
〃	김미리	2019.03.01
〃	백가영	2018.04.30
〃	안창보	2019.05.08
〃	김은영	2019.05.08
〃	김기윤	2019.02.11
〃	남계식	2019.02.11
〃	정혁준	2015.02.25
〃	권내건	2018.07.19
〃	김희주	2019.02.11
〃	소창범	2018.02.05
〃	이치현	2019.02.11
〃	박향철	2018.02.05
〃	서성목	2019.02.11
〃	조 철	2018.02.05
〃	김병철	2017.02.20

직 위	성명	발령일
〃	박수민	2017.02.20
〃	정우준	2018.02.05
〃	우만우	2017.08.17
〃	김태겸	2019.02.11
〃	성두경	2019.02.11
〃	김병욱	2019.02.11
〃	박현규	2017.08.17
〃	전철호	2019.02.11
〃	안준석	2018.02.05
〃	최수지	2018.02.05
〃	김진우	2018.02.05
〃	이승민	2018.02.05
〃	손수진	2017.02.20
〃	임하나	2015.02.25
〃	김민석	2018.02.05
〃	이건웅	2017.02.20
〃	김민정	2018.02.05
〃	황근주	2019.02.11
〃	조동훈	2018.02.05
〃	백상준	2018.02.05
〃	이수정	2018.02.05
〃	김재우	2018.02.05
〃	김나리	2017.02.20
〃	서지원	2018.02.05
〃	김한울	2019.02.11
〃	안상현	2019.02.11
〃	임찬미	2019.02.11
〃	박지영	2017.02.20
〃	이홍석	2019.02.11
〃	강형윤	2017.02.20
〃	차대영	2018.02.05
〃	변재은	2018.02.05
〃	허윤행	2018.02.05
〃	황두평	2019.02.11
〃	서동인	2019.02.11
〃	김준성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전유경	2019.02.11
〃	손용도	2018.02.05
〃	권민정	2019.02.11
〃	이수영	2018.04.01
〃	황준성	2019.04.01
〃	성혜진	2018.02.05
〃	김호중	2019.02.11
〃	이수경	2019.02.11
사무국장	박천홍	2019.10.28
총무과장	김태현	2018.07.09
사건과장	서상국	2019.01.28
집행과장	이택근	2019.09.30
조사과장	박호문	2019.09.30
수사과장	박시중	2019.01.28
마약수사과장	김용권	2019.09.30
공판송무과장	임승철	2018.08.27
검사직무대리	이창준	2019.09.30
검사직무대리	이일남	2019.09.30
검사직무대리	이용성	2019.09.30
(부천지청)		
지청장	이정수	2019.08.06
차장검사	김후균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강범구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이현정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전계광	2019.08.06
형사제4부장검사	박주성	2019.08.06
(부부장)검사	김영현	2019.08.06
검사	김세현	2018.02.05
〃	이선미	2018.02.05
〃	손현진	2018.03.02
〃	이은정	2019.02.11
〃	유경준	2018.08.01
〃	장근보	2019.03.01
〃	이채훈	2018.02.05
〃	조수연	2018.03.02
〃	김정윤	2017.03.0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현철	2019.03.01
〃	황의수	2019.08.06
〃	황은영	2019.08.06
〃	김현선	2019.03.01
〃	이문성	2019.08.06
사무국장	이정범	2019.10.28
총무과장	김근모	2019.03.01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윤대진	2019.07.31
제1차장검사	배용원	2019.08.06
제2차장검사	이진동	2019.08.06
인권감독관	황성연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광진	2018.07.19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도상범	2019.08.06
〃	윤석주	2018.07.19
〃	이철호	2019.08.06
〃	김정훈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정진웅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김지연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이병석	2019.08.06
형사제4부장검사	권기환	2019.08.06
형사제5부장검사	김덕곤	2019.08.06
형사제6부장검사	전준철	2019.10.22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전현민	2019.08.06
공공수사부장검사	이건령	2019.08.13
강력부장검사	김명운	2019.08.06
공판부장검사	김정진	2019.08.06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검사	고필형	2019.08.06
(부부장)검사	양중진	2019.08.06
〃	조재빈	2019.08.06
〃	김경수	2019.08.06
〃	박현주	2019.08.06
〃	홍보가	2019.08.06
〃	최인상	2018.07.19
〃	황우진	2018.07.19
〃	용성호	2019.08.01
〃	정재훈	2018.03.02
〃	박조민	2019.03.01
〃	양현세	2019.03.01
〃	박연주	2019.05.08
〃	김재남	2018.02.05
〃	이선녀	2019.02.11
〃	장진영	2018.02.05
〃	최혜경	2019.02.11
〃	장유강	2018.02.05
〃	류경환	2019.02.11
〃	최재현	2019.02.11
〃	장아량	2017.08.17
〃	이지은	2019.02.11
〃	고은실	2017.02.20
〃	이주현	2019.02.11
〃	황재동	2018.02.05
〃	김정선	2019.02.11
〃	민수영	2019.02.11
〃	김하영	2018.02.05
〃	조영주	2019.02.11
〃	김윤식	2019.02.11
〃	조운형	2019.02.11
사무국장	이영철	2019.10.28
총무과장	정규열	2019.09.30
사건과장	강석인	2019.01.28
집행과장	강신영	2019.09.30
수사과장	이익희	2018.07.09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우현	2019.07.31
검사	위성운	2019.03.01
〃	김영태	2019.08.06
〃	이선훈	2019.08.06
〃	김 훈	2019.03.01
〃	이용민	2019.03.01
〃	손준호	2019.03.0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 우	2019.02.11
〃	김태운	2019.08.06
〃	이유진	2019.08.06
〃	김수민	2018.07.19
〃	안성희	2019.08.06
〃	김 중	2019.08.06
〃	임삼빈	2019.08.06
검 사	이재표	2018.02.05
〃	김대철	2019.02.11
〃	이종민	2019.02.11
〃	허세진	2018.02.05
〃	이종광	2019.02.11
〃	조소인	2018.02.05
〃	김경태	2018.02.05
〃	봉진수	2018.02.05
〃	박규남	2018.02.05
〃	서아람	2018.02.05
〃	송보형	2019.02.11
〃	주영선	2019.02.11
〃	하지수	2019.02.11
〃	고은진	2018.02.05
〃	천재영	2019.03.01
〃	김성진	2019.03.01
〃	박은석	2019.08.01
〃	윤상훈	2019.08.01
〃	김정화	2018.03.02
〃	공소정	2018.03.02
〃	배성재	2019.03.01
〃	정영지	2019.03.01
〃	박상준	2019.03.01
〃	홍유정	2019.03.01
〃	양경문	2019.05.08
〃	김광제	2019.05.08
〃	안태영	2019.05.08
〃	정윤경	2019.05.08
〃	박기태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권찬혁	2018.02.05
〃	송정은	2019.02.11
〃	이정민	2018.02.05
〃	이병주	2019.02.11
〃	허 훈	2019.02.11
〃	이상혁	2018.02.05
〃	이유현	2019.02.11
〃	남수연	2019.02.11
〃	고은별	2016.01.27
〃	정영서	2018.02.05
〃	김정환	2019.02.11
〃	윤국권	2019.02.11
〃	장진성	2017.02.20
〃	곽금희	2017.08.17
〃	임풍성	2019.02.11
〃	김경목	2019.02.11
〃	박상용	2019.02.11
〃	서혜선	2019.02.11
〃	박영식	2019.02.11
〃	이재원	2019.02.11
〃	김치훈	2017.02.20
〃	김지아	2016.08.31
〃	김대현	2019.02.11
〃	김진영	2018.02.05
〃	현동길	2019.02.11
〃	한주동	2018.02.05
〃	윤성호	2018.02.05
〃	최명수	2018.02.05
〃	박한나	2017.02.20
〃	강현욱	2019.02.11
〃	신병우	2019.02.11
〃	김서현	2019.02.11
〃	송민주	2019.02.11
〃	이성화	2018.02.05
〃	김현지	2019.02.11
〃	송현탁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유호원	2019.08.01
〃	노우석	2019.08.01
〃	정성욱	2017.04.27
〃	이영주	2018.03.02
〃	탁광진	2019.03.01
〃	서지혜	2019.03.01
〃	정세연	2019.03.01
〃	염준범	2019.05.08
〃	정수진	2019.05.08
〃	조진희	2019.05.08
〃	어인성	2018.02.05
〃	윤나라	2017.02.20
〃	여경진	2017.02.20
〃	최지현	2018.02.05
〃	정미란	2019.02.11
〃	손아지	2019.02.11
〃	유새롬	2015.08.27
〃	김민정	2019.02.11
〃	김현우	2018.02.05
〃	김지훈	2019.02.11
〃	오승은	2017.02.20
〃	여재영	2019.02.11
〃	이영호	2019.04.01
〃	김연중	2018.02.05
〃	김홍도	2019.02.11
사 무 국 장	이연성	2019.10.28
총 무 과 장	김용관	2019.01.28
사 건 과 장	기용도	2019.01.28
집 행 과 장	이재성	2019.01.28
수 사 과 장	김용욱	2019.09.30
검 사 직 무 대 리	이후석	2019.09.30
(여 주 지 청)		
지 청 장	김춘수	2018.09.04
부 장 검 사	임대혁	2018.07.19
검 사	정유리	2018.02.05.
〃	유병국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지수	2019.02.11
〃	조재익	2019.02.11
〃	류수헌	2019.02.11
〃	한윤석	2018.04.01
〃	남도현	2019.04.01
〃	권예리	2018.02.05
〃	박상우	2019.02.11
사 무 국 장	권태균	2019.01.28
총 무 과 장	김한영	2018.07.09
사 건 과 장	현문정	2019.01.28
집 행 과 장	윤재원	2018.07.09
조 사 과 장	최원서	2019.01.28
수 사 과 장	박영범	2019.01.28
공 판 송 무 과 장	김혜경	2018.07.09
검 사 직 무 대 리	김권태	2019.09.30
검 사 직 무 대 리	장종철	2019.09.30
검 사 직 무 대 리	조병민	2019.09.30
(성 남 지 청)		
지 청 장	이노공	2019.08.06
차 장 검 사	김형근	2019.08.06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장동철	2019.08.06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진정길	2019.08.06
형 사 제 3 부 장 검 사	우기열	2019.08.06
형 사 제 4 부 장 검 사	단성한	2019.08.06
(부 부 장) 검 사	김제성	2019.08.06
〃	서지현	2018.07.19
〃	장윤영	2019.08.06
〃	조용우	2019.08.06
〃	박지용	2019.08.06
검 사	이호재	2019.02.11
〃	정민희	2018.02.05
〃	최지은	2019.02.11
〃	김민아	2018.02.05
〃	박진덕	2019.02.11
〃	문동기	2019.02.11
〃	김다현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승주	2015.02.25.
〃	조현웅	2017.02.20.
〃	김서현	2017.02.20.
〃	조진용	2018.02.05.
〃	박노산	2018.02.05.
〃	정종헌	2017.02.20.
〃	신주희	2017.02.20.
〃	원경희	2018.02.05.
〃	이휘소	2018.02.05.
사무과장	홍승모	2018.07.09
수사과장	오홍석	2019.09.30
(평택지청)		
지청장	구자현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김락현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이준범	2019.08.06
검사	임재웅	2019.02.11
〃	최재호	2018.02.05
〃	최혜민	2018.02.05
〃	하보람	2018.02.05
〃	양서원	2018.02.05
〃	허성호	2019.02.11
〃	오정은	2019.02.11
〃	김도희	2019.02.11
〃	김형섭	2019.02.11
〃	김동직	2018.02.05
〃	박건태	2018.02.05
〃	김한준	2018.02.05
〃	박병인	2019.02.11
〃	권영우	2019.02.11
〃	김소영	2018.02.05
〃	신지원	2019.02.11
사무과장	김규하	2018.08.27
수사과장	김선조	2019.09.30
(안산지청)		
지청장	임관혁	2019.08.06
차장검사	고경순	2019.08.06

직 위	성명	발령일
형사제1부장검사	장성훈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임창국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임세호	2019.08.06
형사제4부장검사	김은미	2019.08.06
(부부장)검사	이지윤	2019.08.06
〃	강세현	2019.08.06
〃	김현아	2019.08.06
〃	정영수	2019.08.06
〃	임선화	2019.08.06
검사	박선영	2017.02.20
〃	이정환	2019.02.11
〃	심강현	2018.02.05
〃	성인욱	2019.02.11
〃	조 혁	2018.03.02
〃	김찬우	2019.03.01
〃	박혜진	2017.03.01
〃	전원영	2019.08.01
〃	이아람	2018.03.02
〃	허강녕	2018.03.02
〃	김시현	2019.03.01
〃	박수영	2019.03.01
〃	남연진	2019.05.08
〃	민경찬	2019.05.08
〃	김한솔	2019.05.08
〃	심형석	2018.02.05
〃	홍상철	2019.02.11
〃	이주현	2018.02.05
〃	김형아	2018.02.05
〃	진경섭	2019.02.11
〃	박일규	2019.02.11
〃	강명훈	2018.02.05
〃	황영섭	2018.02.05
〃	권영주	2017.02.20
〃	송수연	2017.02.20
〃	유제민	2019.02.11
〃	송선민	2018.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	정영주	2018.07.19
〃	윤원일	2019.02.11
〃	손명지	2019.02.11
〃	최수경	2018.02.05
〃	최우혁	2019.02.11
〃	김현수	2018.02.05
〃	나소라	2018.02.05
〃	정윤정	2018.02.05
〃	성찬용	2018.04.01
〃	유소영	2018.02.05
〃	이충용	2019.02.11
사 무 국 장	박순우	2019.01.28
총 무 과 장	이대열	2019.01.28
사 건 과 장	김현호	2019.01.28
집 행 과 장	박준	2018.07.09
수 사 과 장	조성길	2019.01.28
(춘 천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박성진	2019.07.31
차 장 검 사	황현덕	2019.08.06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김명수	2019.08.06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임종필	2019.08.06
(부 부 장) 검 사	신종곤	2019.08.06
〃	허 준	2019.08.06
〃	정보영	2019.08.06
검 사	임병일	2018.02.05
〃	김상순	2019.03.01
〃	김지혜	2018.03.02
〃	백지은	2019.03.01
〃	강다롱	2019.05.08
〃	박은혜	2019.02.11
〃	최희정	2017.02.20
〃	조은수	2018.07.19
〃	이승학	2019.02.11
〃	한상윤	2019.08.06
〃	이자경	2018.02.05
〃	황나영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라영	2019.02.11
〃	김춘성	2018.02.05
〃	김은정	2018.02.05
〃	장 진	2019.02.11
〃	이소현	2019.02.11
〃	이동우	2019.02.11
〃	김예은	2019.02.11
〃	김선태	2019.04.01
〃	조한이	2019.02.11
사 무 국 장	이강윤	2018.07.09
총 무 과 장	전효수	2018.07.09
사 건 과 장	이동진	2019.09.30
집 행 과 장	장지섭	2019.09.30
수 사 과 장	정진수	2018.07.09
검 사 직 무 대 리	이기우	2019.09.30
(안 양 지 청)		
지 청 장	유병두	2019.08.06
차 장 검 사	이성규	2019.08.06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우남준	2019.08.06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김세한	2019.08.06
형 사 제 3 부 장 검 사	하신욱	2019.08.06
(부 부 장) 검 사	김원지	2019.08.06
〃	최 혁	2018.07.19
검 사	송가형	2018.02.05
〃	원세정	2019.02.11
〃	정세연	2018.02.05
〃	임성열	2019.08.01
〃	조하림	2017.04.27
〃	이형우	2019.03.01
〃	가혜리	2019.03.01
〃	조예림	2019.03.01
〃	박성환	2019.05.08
〃	손상희	2019.02.11
〃	손정숙	2018.07.19
〃	조윤철	2018.02.05
〃	이윤희	2019.02.11

직위	성명	발령일
〃	문정신	2019.02.11
〃	장유나	2017.02.20
〃	안동찬	2018.04.01
사무국장	양우덕	2019.10.28
총무과장	손동섭	2018.07.09
사건과장	조민호	2019.01.28
수사과장	전병후	2018.07.09
집행과장	이승호	2019.09.30
(강릉지청)		
지청장	오현철	2019.08.06
형사부장검사	황정현	2019.08.06
검사	구승기	2018.02.05
〃	서민우	2018.02.05
〃	민경원	2018.02.05
〃	박재성	2018.02.05
〃	김수길	2018.02.05
〃	장태원	2019.02.11
〃	박동준	2018.02.05
〃	최완영	2019.02.11
사무과장	이창환	2019.09.30
수사과장	최병선	2019.01.28
(원주지청)		
지청장	손준성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김종현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정지영	2019.08.06
검사	이현진	2018.02.05
〃	전성환	2019.02.11
〃	김동민	2018.02.05
〃	최혜진	2019.02.11
〃	이강우	2016.01.27
〃	정종원	2017.02.20
〃	남상오	2018.02.05
〃	권준택	2019.02.11
〃	김해슬	2018.02.05
〃	김다락	2018.02.05
〃	강인선	2018.02.05

직위	성명	발령일
사무과장	전명관	2019.09.30
수사과장	노진철	2018.07.09
(속초지청)		
지청장	이만흠	2019.08.06
검사	김규완	2019.02.11
〃	김세관	2016.01.27
〃	권오장	2018.02.05
〃	최선희	2018.02.05
사무과장	이경태	2019.01.28
(영월지청)		
지청장	류국량	2019.08.06
검사	박형철	2019.02.11
〃	안홍균	2018.02.05
〃	김지웅	2019.02.11
〃	김동휘	2018.02.05
사무과장	김재주	2019.01.28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노정환	2019.07.31
검사	이학성	2018.07.19
〃	신은철	2018.07.19
〃	고석홍	2018.07.19
〃	윤영준	2019.08.06
〃	최용석	2019.08.06
〃	박석재	2018.07.19
〃	김덕길	2019.08.06
〃	김용빈	2017.08.17
사무국장	김진우	2018.01.26
총무과장	이운연	2019.03.01
사건과장	이동근	2019.09.30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장영수	2019.07.31
차장검사	강지식	2019.08.06
인권감독관	전미화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양보승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이종구	2019.08.06
〃	이기선	2019.08.06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형원	2019.02.11
〃	이규원	2018.02.05
〃	배철성	2019.02.11
〃	호승진	2017.02.20
〃	최재순	2019.02.11
〃	김정화	2017.02.20
〃	송민경	2019.02.11
〃	김수민	2019.02.11
〃	최근영	2018.07.19
〃	장려미	2018.02.05
〃	고아라	2017.02.20
〃	조아라	2019.02.11
〃	김한민	2018.02.05
〃	이주훈	2018.02.05
〃	김정은	2015.02.25
〃	김지은	2019.02.11
〃	임은정	2017.02.20
〃	김태희	2017.02.20
〃	김해밝은	2018.02.05
〃	정윤식	2018.02.05
〃	박재훈	2018.02.05
〃	김은혜	2018.02.05
〃	국양근	2018.02.05
〃	윤효정	2017.02.20
〃	이승훈	2018.02.05
〃	김유완	2018.04.01
〃	김봉수	2019.04.01
〃	정고운	2018.02.05
〃	오영민	2019.02.11
사무국장	김묵진	2019.10.28
총무과장	김동휘	2018.07.09
사건과장	김용대	2019.01.28
집행과장	이승재	2019.01.28
조사과장	윤병득	2018.07.09
수사과장	양인식	2019.01.28
검사직무대리	김재영	2018.07.09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종칠	2018.07.19
형사제1부장검사	옥성대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정유미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윤진용	2019.08.06
형사제4부장검사	김형석	2019.10.22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영현	2019.08.06
공공수사부장검사	서인선	2019.08.13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하영	2019.08.06
공판부장검사	장소영	2019.08.06
(부부장)검사	권현유	2019.08.06
〃	김기훈	2019.08.06
〃	조석규	2019.08.06
〃	박기환	2019.08.06
〃	이준호	2019.08.06
검사	이승우	2019.02.11
〃	현승록	2018.02.05
〃	정종헌	2019.02.11
〃	안화연	2019.02.11
〃	오광일	2018.02.05
〃	김구열	2019.08.01
〃	황종현	2017.04.27
〃	신종화	2019.03.01
〃	정성용	2019.05.08
〃	안수진	2019.05.08
〃	원현호	2019.05.08
〃	조영희	2018.02.05
〃	오미경	2018.02.05
〃	정 현	2019.08.06
〃	안창주	2019.02.11
〃	김정국	2018.02.05
〃	이동원	2017.08.17
〃	정희선	2019.08.06
〃	임연진	2017.02.20
〃	이주희	2017.02.20
〃	김지언	2018.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홍 성 지 청)		
지 청 장	김현수	2019.08.06
형 사 부 장 검 사	강석철	2019.08.06
검 사	이수행	2018.02.05
〃	박영우	2018.02.05
〃	김정화	2018.02.05
〃	심기하	2019.02.11
〃	함덕훈	2019.02.11
〃	최지윤	2019.02.11
〃	석수민	2016.01.27
〃	김윤진	2018.02.05
사 무 과 장	이상돈	2018.07.09
수 사 과 장	유효상	2019.09.30
(공 주 지 청)		
지 청 장	김 현	2019.08.06
검 사	정소영	2018.02.05
〃	윤기선	2017.02.20
〃	신기창	2018.02.05
〃	홍석원	2019.02.11
사 무 과 장	안문용	2019.01.28
(논 산 지 청)		
지 청 장	김지완	2019.08.06
검 사	이성직	2019.02.11
〃	임진철	2018.02.05
〃	이종민	2019.02.11
사 무 과 장	이규사	2019.01.28
(서 산 지 청)		
지 청 장	박길배	2019.08.06
형 사 부 장 검 사	김남훈	2019.08.06
검 사	노영진	2018.02.05
〃	양효승	2019.02.11
〃	오슬기	2019.02.11
〃	이혜원	2019.02.11
〃	정성두	2017.02.20
〃	차병곤	2018.02.05
〃	김민수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정우	2019.02.11
	강민정	2018.02.05
사 무 과 장	백상홍	2019.01.28
수 사 과 장	진성창	2019.01.28
(천 안 지 청)		
지 청 장	나찬기	2019.08.06
차 장 검 사	김종근	2019.08.06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정경진	2019.08.06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이곤형	2019.08.06
형 사 제 3 부 장 검 사	이 춘	2019.08.06
(부 부 장) 검 사	신태훈	2019.08.06
〃	홍성준	2019.08.06
검 사	이동원	2018.03.02
〃	류정인	2019.02.11
〃	정혜라	2019.02.11
〃	김효준	2019.08.01
〃	심동선	2018.03.02
〃	이대희	2019.03.01
〃	김민영	2019.03.01
〃	임헌준	2019.05.08
〃	우승민	2019.05.08
〃	정지선	2019.05.08
〃	신금재	2019.02.11
〃	박종선	2019.02.11
〃	유종건	2019.02.11
〃	김민정	2019.02.11
〃	김연주	2017.02.20
〃	박배희	2016.08.31
〃	강현정	2018.02.05
〃	김유나	2019.02.11
〃	신지나	2019.02.11
〃	김우중	2019.02.11
〃	이병래	2019.02.11
〃	온정훈	2019.02.11
〃	이평화	2018.02.05
〃	김한나	2019.02.11

직위	성명	발령일
사무국장	이인주	2019.02.08
총무과장	이종학	2019.02.08
사건과장	정근휘	2019.02.08
집행과장	이상민	2018.07.09
수사과장	김유창	2019.01.28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최경규	2019.07.31
차장검사	이철희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곽규홍	2018.07.19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김기준	2018.07.19
형사제1부장검사	양인철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조홍용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김윤선	2019.08.06
(부부장)검사	이영화	2018.07.19
〃	유정호	2019.08.06
〃	이완희	2019.08.06
〃	김도연	2019.08.06
검사	최세윤	2019.02.11
〃	최희선	2018.02.05
〃	김해중	2017.02.20
〃	기노성	2019.02.11
〃	정가진	2018.02.05
〃	장영일	2018.02.05
〃	김정훈	2019.02.11
〃	김정옥	2019.08.06
〃	장욱환	2016.01.27
〃	김창섭	2019.02.11
〃	김가람	2019.02.11
〃	최용보	2019.02.11
〃	김지숙	2019.02.11
〃	최하연	2017.02.20
〃	강화연	2017.02.20
〃	최현주	2018.02.05
〃	탁동완	2019.02.11
〃	신주희	2019.02.11
〃	김원재	2018.02.05

직위	성명	발령일
〃	설제민	2019.02.11
사무국장	정동진	2019.01.28
총무과장	김득호	2018.07.09
사건과장	이창희	2019.01.28
집행과장	홍흥표	2019.01.28
수사과장	박시우	2018.01.26
검사직무대리	곽강순	2019.09.30
(충주지청)		
지청장	김도균	2019.08.06
형사부장검사	장준호	2019.08.06
검사	김필수	2017.02.20
〃	김민수	2018.02.05
〃	전화정	2019.02.11
〃	김진영	2019.02.11
〃	강현호	2018.02.05
〃	이경환	2019.02.11
사무과장	정태운	2019.03.27
(제천지청)		
지청장	박혁수	2019.08.06
검사	송형진	2018.02.05
〃	박대한	2019.02.11
〃	김기왕	2019.02.11
사무과장	한재영	2019.01.28
(영동지청)		
지청장	용성진	2019.08.06
검사	신의호	2018.02.05
〃	이동형	2019.02.11
사무과장	신익수	2019.01.28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주형	2019.07.31
검사	신배식	2018.07.19
〃	손순혁	2018.07.19
〃	정성윤	2017.08.17
〃	류원근	2018.07.19
〃	고병민	2019.08.06
〃	이철희	2019.08.06

직 위	성명	발령일
〃	양요안	2019.08.06
사 무 국 장	정연익	2019.01.28
총 무 과 장	김태경	2019.01.28
사 건 과 장	박무선	2019.09.30
(대 구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여환섭	2019.07.31
제 1 차 장 검 사	최기식	2019.08.06
제 2 차 장 검 사	김남우	2019.08.06
인 권 감 독 관	박기종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강여찬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이재덕	2017.08.17
〃	심재계	2017.08.17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박억수	2019.08.06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양재혁	2019.08.06
형 사 제 3 부 장 검 사	박태호	2019.08.06
형 사 제 4 부 장 검 사	한태화	2019.08.06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양선순	2019.08.06
공 판 부 장 검 사	이정렬	2019.08.06
공공수사부장검사	진현일	2019.08.13
반부패수사부장검사	김민형	2019.10.22
강력부장검사검사	문영권	2019.08.06
(부 부 장) 검 사	손석천	2018.12.26
〃	김승호	2018.07.19
〃	정원두	2019.08.06
〃	홍완희	2019.08.06
〃	황보현희	2019.08.06
〃	진혜원	2019.08.06
검 사	금명원	2017.02.20
〃	장준혁	2017.02.20
〃	김영석	2017.02.20
〃	배석희	2018.02.05
〃	김슬아	2018.02.05
〃	이경아	2019.02.11
〃	구재연	2019.02.11
〃	안제홍	2018.03.02

직 위	성명	발령일
〃	박상환	2019.03.01
〃	오정헌	2018.02.05
〃	김필수	2017.04.27
〃	황성규	2019.03.01
〃	하연지	2019.03.01
〃	안동건	2017.02.20
〃	최나영	2015.08.27
〃	유효제	2018.02.05
〃	송영인	2017.02.20
〃	신재홍	2019.02.11
〃	이상목	2019.02.11
〃	정현주	2017.08.17
〃	이상훈	2018.02.05
〃	인 훈	2019.02.11
〃	신기련	2019.08.06
〃	국 진	2018.07.19
〃	곽계령	2019.02.11
〃	강용묵	2019.02.11
〃	정대희	2016.08.31
〃	이동근	2018.02.05
〃	이경석	2018.02.05
〃	차경자	2018.02.05
〃	황진아	2017.02.20
〃	김석훈	2017.02.20
〃	권영필	2018.02.05
〃	김민정	2018.02.05
〃	유시동	2019.02.11
〃	김도형	2019.02.11
〃	허정은	2017.02.20
〃	이진희	2017.02.20
〃	권경호	2019.02.11
〃	신헌섭	2018.02.05
〃	이나경	2019.02.11
〃	김정훈	2018.02.05
〃	이주연	2016.01.27
〃	장지영	2018.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미은	2019.02.11
〃	이지연	2016.08.31
〃	김준호	2017.02.20
〃	최윤경	2018.02.05
〃	임지수	2018.02.05
〃	박은혜	2019.02.11
〃	서소희	2017.02.20
〃	이한종	2019.02.11
〃	박철량	2018.02.05
〃	문지원	2019.02.11
〃	안희경	2019.02.11
〃	윤지언	2019.02.11
사무국장	박원길	2019.10.28
총무과장	주영호	2019.01.28
사건과장	김동욱	2018.07.09
집행과장	정재기	2019.09.30
수사과장	노한열	2019.09.30
(안동지청)		
지청장	최성필	2019.08.06
검사	김정현	2019.02.11
〃	이재원	2018.02.05
〃	박종호	2019.02.11
〃	박기태	2019.02.11
〃	윤오연	2018.02.05
사무과장	김재홍	2019.01.28
수사과장	권재영	2018.07.09
(경주지청)		
지청장	김찬중	2019.08.06
형사부장검사	곽영환	2019.08.06
검사	고려진	2017.02.20
〃	이자희	2018.02.05
〃	홍등불	2018.02.05
〃	정인혜	2019.02.11
〃	이종원	2017.02.20
〃	박중화	2018.02.05
〃	정주희	2018.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	문태권	2018.02.05
〃	조혜민	2018.02.05
〃	송성광	2018.02.05
〃	김서영	2019.02.11
〃	나혜윤	2019.02.11
〃	최정훈	2018.04.01
〃	이상윤	2019.04.01
사무국장	권상일	2018.07.09
총무과장	구영한	2019.09.30
사건과장	강태수	2019.01.28
집행과장	마재익	2018.01.26
수사과장	박문규	2019.09.30
조사과장	이창우	2019.01.28
공판과장	이태득	2019.01.28
검사직무대리	김진룡	2019.09.30
검사직무대리	금광식	2019.01.28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이용일	2019.08.06
차장검사	주상용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강남수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정재현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박순배	2019.08.06
(부부장)검사	조지은	2019.08.06
검사	서강원	2019.02.11
〃	남지민	2017.02.20
〃	한승훈	2019.02.11
〃	최민준	2018.02.05
〃	채필규	2018.02.05
〃	최진우	2018.03.02
〃	어원중	2019.08.01
〃	안창인	2017.04.27
〃	정은경	2019.03.01
〃	김대성	2019.05.08
〃	최예지	2019.05.08
〃	정민섭	2019.05.08
〃	이수진	2018.02.05

직위	성명	발령일
사무과장	이문규	2018.07.09
수사과장	정준화	2019.01.28
(포항지청)		
지청장	송강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이방현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하재무	2019.08.06
검사	양근욱	2018.02.05
〃	이웅희	2019.02.11
〃	원상환	2018.02.05
〃	유승진	2018.02.05
〃	김범준	2019.02.11
〃	장우혁	2019.02.11
〃	박경남	2018.02.05
〃	조지현	2018.02.05
〃	석동현	2018.02.05
〃	김승미	2017.02.20
〃	오세진	2018.02.05
사무과장	이상준	2019.09.30
집행과장	김재곤	2018.07.09
수사과장	강동배	2019.01.28
(김천지청)		
지청장	정영학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추혜윤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이정우	2019.08.06
검사	박성현	2019.02.11
〃	김아연	2017.02.20
〃	원민영	2018.02.05
〃	최자윤	2019.02.11
〃	김종민	2019.02.11
〃	정수희	2019.02.11
〃	차민형	2019.02.11
〃	박진섭	2018.02.05
〃	박광호	2018.02.05
〃	양준열	2019.02.11
〃	김현창	2018.02.05
사무과장	이태언	2019.09.30

직위	성명	발령일
수사과장	김익근	2019.09.30
(상주지청)		
지청장	이영규	2019.08.06
검사	임성수	2018.02.05
〃	도윤지	2018.02.05
〃	김정원	2019.02.11
사무과장	김정호	2018.07.09
(의성지청)		
지청장	손진욱	2019.08.06
검사	유광선	2018.02.05
〃	이동훈	2019.02.11
사무과장	조상범	2019.01.28
(영덕지청)		
지청장	이곤호	2019.08.06
검사	신영삼	2016.01.27
〃	임성환	2019.02.11
〃	박승균	2018.02.05
사무과장	김희철	2019.01.28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양부남	2019.07.31
검사	최영권	2018.07.19
〃	정병대	2018.07.19
〃	박종기	2018.07.19
〃	김용주	2019.08.06
〃	박용호	2019.08.06
〃	박규은	2018.07.19
〃	최인호	2018.07.19
〃	박찬일	2016.01.13
〃	윤중기	2016.01.13
〃	박철완	2019.08.06
〃	신교임	2018.07.19
사무국장	김정욱	2019.10.28
총무과장	윤성진	2019.10.28
사건과장	장문찬	2019.09.30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고기영	2019.07.31

직 위	성명	발령일
제1차장검사	신성식	2019.08.06
제2차장검사	박종근	2019.08.06
인권감독관	최성국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제관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박동진	2018.07.19
〃	노상길	2019.08.06
〃	배성효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정대정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신형식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윤중현	2019.08.06
형사제4부장검사	황금천	2019.10.22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김원호	2019.08.06
공판부장검사	고진원	2019.08.06
공공수사부장검사	최지석	2019.08.13
강력부장검사	이영창	2019.08.06
외사부장검사	김희경	2019.08.06
(부부장)검사	류장만	2013.04.23
〃	윤경원	2019.08.06
〃	이일규	2019.08.06
〃	권나원	2019.08.06
〃	민병권	2019.08.06
〃	손정현	2019.08.06
〃	최재아	2019.08.06
검사	박찬영	2019.02.11
〃	문민영	2015.02.25
〃	김현웅	2018.02.05
〃	박경세	2018.02.05
〃	송윤상	2018.02.05
〃	김나영	2017.03.01
〃	이동현	2019.08.01
〃	홍영기	2018.03.02
〃	최형욱	2019.03.01
〃	주혜진	2017.02.20
〃	신승희	2016.01.27
〃	김재화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희영	2015.08.27
〃	김창희	2018.07.19
〃	박상수	2018.07.19
〃	한상형	2019.02.11
〃	정일권	2019.02.11
〃	송규영	2018.02.05
〃	박인우	2019.02.11
〃	김용제	2019.02.11
〃	신미량	2018.02.05
〃	이지영	2019.02.11
〃	이정훈	2018.02.05
〃	김민정	2019.02.11
〃	서민석	2017.02.20
〃	이경민	2019.02.11
〃	박성진	2017.02.20
〃	이창희	2018.02.05
〃	오상연	2018.02.05
〃	김세희	2019.02.11
〃	오지석	2019.02.11
〃	임홍석	2015.02.25
〃	이자영	2018.02.05
〃	김영식	2018.02.05
〃	조종민	2018.02.05
〃	진종규	2018.02.05
〃	김미선	2018.02.05
〃	김정연	2017.02.20
〃	이주형	2019.02.11
〃	차동호	2019.02.11
〃	조현웅	2019.02.11
〃	변준석	2019.02.11
〃	최지예	2019.02.11
〃	최주원	2018.02.05
〃	이정규	2018.02.05
〃	황해철	2019.02.11
〃	박종현	2018.04.01
〃	박종환	2019.04.0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태영	2018.02.05
〃	김태헌	2019.02.11
사무국장	신현성	2019.01.28
총무과장	이의열	2019.09.30
사건과장	정상훈	2019.09.30
집행과장	조승래	2019.08.20
조사과장	유동호	2019.01.28
수사과장	원용주	2019.09.30
조직범죄수사과장	김영진	2019.09.30
마약수사과장	신동일	2019.09.30
공판과장	장문옥	2019.09.30
검사직무대리	주웅일	2019.09.30
검사직무대리	강철중	2019.01.28
검사직무대리	최환경	2019.01.28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이수권	2019.08.06
차장검사	이준엽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나창수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신지선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유경필	2019.08.06
(부부장)검사	박봉희	2019.08.06
〃	김병문	2019.08.06
〃	박진성	2019.08.06
검사	김현곤	2019.02.11
〃	이용정	2018.02.05
〃	이고은	2016.03.02
〃	박상희	2018.03.02
〃	홍철의	2019.03.01
〃	박슬기	2019.03.01
〃	김한민	2019.05.08
〃	강가람	2019.05.08
〃	최진석	2019.05.08
〃	이동현	2017.02.20
〃	김은경	2018.02.05
〃	최유리	2018.02.05
〃	송혜숙	2018.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	이수진	2018.07.19
〃	김봉경	2015.02.25
〃	이현석	2018.02.05
〃	홍해숙	2019.02.11
〃	신지원	2018.02.05
〃	길선미	2019.02.11
〃	이희욱	2018.04.01
〃	김지원	2019.02.11
사무국장	김종일	2018.07.09
총무과장	신창우	2019.09.30
사건과장	성원석	2019.01.28
집행과장	김대윤	2019.09.30
수사과장	정병옥	2019.01.28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김지용	2019.08.06
차장검사	박상진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김경우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김선문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하동우	2019.08.06
(부부장)검사	정지은	2019.08.06
〃	최형원	2019.08.06
검사	진아름	2018.02.05
〃	박민경	2019.02.11
〃	이재영	2018.02.05
〃	장혜수	2018.03.02
〃	강정은	2019.03.01
〃	박효정	2019.05.08
〃	이윤정	2019.05.08
〃	김다혜	2019.05.08
〃	서영배	2017.03.01
〃	장형수	2017.03.01
〃	조미경	2019.02.11
〃	김성현	2019.02.11
〃	양진선	2019.02.11
〃	문선주	2019.02.11
〃	최은미	2017.03.01

직 위	성명	발령일
〃	신상우	2019.02.11
〃	이주희	2019.02.11
〃	장송이	2019.02.11
〃	김소현	2017.02.20
〃	하일수	2019.02.11
〃	임아랑	2018.02.05
〃	전효곤	2018.02.05
〃	이선화	2017.02.20
〃	임기웅	2019.02.11
〃	김영민	2019.02.11
〃	진세언	2019.02.11
〃	김준엽	2019.02.11
〃	정정화	2018.02.05
〃	김대근	2017.02.20
〃	김보경	2017.02.20
〃	박성현	2018.02.05
〃	장영롱	2019.02.11
〃	김희진	2019.02.11
〃	임정빈	2019.02.11
〃	이안나	2019.02.11
〃	김민희	2019.02.11
〃	장현구	2018.04.01
〃	박진형	2019.04.01
〃	김마로	2018.02.05
사무국장	박상욱	2019.01.28
총무과장	이종흔	2018.07.09
사건과장	김붕배	2019.09.30
집행과장	이동희	2018.07.09
공공수사지원과장	윤두한	2018.07.09
수사과장	허준영	2018.07.09
검사직무대리	남우채	2019.01.28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순철	2019.07.31
차장검사	정순신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정광일	2019.08.06

직 위	성명	발령일
〃	나상돈	2019.02.11
〃	이은우	2018.02.05
〃	전종택	2019.02.11
〃	김민주	2019.02.11
〃	조경민	2019.02.11
사무과장	최정철	2019.09.30
수사과장	김두원	2019.09.30
집행과장	정인석	2019.09.30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고 흥	2019.07.31
차장검사	김석우	2019.08.06
인권감독관	김원학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중제	2018.07.19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최현기	2018.07.19
〃	임은정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이형관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강승희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최원석	2019.08.06
형사제4부장검사	김승언	2019.08.06
공공수사부장검사	이상현	2019.08.13
공판송무부장검사	김공주	2019.08.06
(부부장)검사	김은심	2019.08.06
〃	신대경	2017.08.17
〃	최대건	2019.08.06
〃	유옥근	2019.08.06
검사	최갑진	2018.02.05
〃	손유빈	2018.02.05
〃	박지연	2019.02.11
〃	양재헌	2019.02.11
〃	강지원	2018.03.02
〃	김태완	2019.03.01
〃	박성민	2016.01.27
〃	서경원	2018.02.05
〃	김상준	2018.02.05
〃	김희영	2019.02.11
〃	김미수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이수철	2018.07.19
〃	윤춘구	2018.07.19
형사제1부장검사	채석현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윤원상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박광현	2019.08.06
공공수사부장검사	최우영	2019.08.06
공판송무부장검사	차범준	2019.08.13
(부부장)검사	박정의	2019.08.06
〃	신승우	2019.08.06
검사	임길섭	2019.08.06
〃	김경완	2017.02.20
〃	한은지	2018.02.05
〃	이준석	2018.02.05
〃	김동욱	2019.03.01
〃	김용선	2018.03.02
〃	김수현	2019.03.01
〃	주재현	2019.05.08
〃	류남경	2019.02.11
〃	이희찬	2018.02.05
〃	손은영	2017.02.20
〃	한연규	2018.02.05
〃	김희영	2016.01.27
〃	한강일	2018.02.05
〃	김성훈	2019.02.11
〃	김희연	2019.02.11
〃	유병국	2019.02.11
〃	조정복	2019.02.11
〃	김지연	2019.02.11
〃	함재원	2019.02.11
〃	이승필	2018.02.05
〃	김태엽	2019.02.11
〃	김수겸	2019.02.11
〃	김은오	2017.02.20
〃	이홍열	2019.02.11
〃	도용민	2019.02.11
〃	정일두	2019.02.11

직 위	성명	발령일
〃	김용휘	2019.04.01
〃	안덕중	2018.02.05
사무국장	박공우	2019.03.01
총무과장	김명규	2019.01.28
사건과장	김천교	2019.09.30
집행과장	김호성	2019.01.28
조사과장	서문윤	2019.09.30
수사과장	이재호	2019.09.30
검사직무대리	남대우	2019.09.30
(마산지청)		
지청장	박윤석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김진호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권방문	2019.08.06
검사	배관성	2018.02.05
〃	이한별	2019.02.11
〃	박윤상	2018.02.05
〃	정재연	2018.02.05
〃	반영기	2018.02.05
〃	박대웅	2019.02.11
〃	장성훈	2019.02.11
〃	최인성	2019.02.11
〃	김청아	2019.02.11
사무과장	김재복	2019.09.30
수사과장	성주경	2019.09.30
(진주지청)		
지청장	정진우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이장우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최명규	2019.08.06
검사	고병무	2019.02.11
〃	정거장	2019.02.11
〃	김지혜	2018.02.05
〃	정지희	2019.02.11
〃	박원영	2019.02.11
〃	박선하	2019.02.11
〃	박혜진	2019.02.11
〃	이재인	2018.02.05

직 위	성명	발령일
〃	박원석	2019.02.11
〃	이재원	2019.02.11
사무과장	노행수	2019.01.28
집행과장	강정봉	2019.09.30
수사과장	동훈	2019.09.30
(통영지청)		
지청장	최호영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김봉준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민경호	2019.08.06
검사	이형석	2018.02.05
〃	고두성	2018.02.05
〃	이혜진	2019.02.11
〃	박준석	2019.02.11
〃	정성욱	2019.02.11
〃	박아름	2018.02.05
〃	임명환	2019.02.11
〃	강민욱	2019.02.11
〃	조윤영	2019.02.11
사무과장	하재근	2019.01.28
수사과장	채주현	2019.09.30
(밀양지청)		
지청장	반종욱	2019.08.06
검사	조범진	2017.02.20
〃	오재준	2018.02.05
〃	조재학	2018.02.05
〃	김미선	2019.02.11
사무과장	박준형	2019.09.30
(거창지청)		
지청장	이응철	2019.08.06
검사	배한진	2018.02.05
〃	김남용	2019.02.11
사무과장	김영환	2019.01.28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조종태	2019.07.31
검사	백순현	2019.08.06

직 위	성명	발령일
〃	송승섭	2018.07.19
〃	오규진	2018.07.19
〃	홍효식	2013.04.23
〃	임용규	2018.07.19
〃	김동주	2019.08.06
〃	김 환	2019.08.06
〃	신현성	2019.08.06
〃	박영준	2019.08.06
〃	김완규	2018.07.19
사무국장	이성범	2019.10.28
총무과장	신범수	2019.10.28
사건과장	김형관	2018.07.09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문찬석	2019.07.31
차장검사	전성원	2019.08.06
인권감독관	윤대영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철완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송연규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정연헌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신은선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김훈영	2019.08.06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유상민	2019.08.06
공공수사부장검사	최재봉	2019.08.13
반부패수사부장검사	최임열	2019.10.22
강력부장검사	신준호	2019.08.06
공판부장검사	채수양	2019.08.06
(부부장)검사	조민우	2019.08.06
〃	강민정	2019.08.06
〃	강상묵	2019.08.06
〃	허성환	2019.08.06
〃	윤원기	2019.08.06
검사	홍동기	2018.02.05
〃	김형철	2018.02.05
〃	권인표	2018.02.05
〃	고기철	2018.03.02

직 위	성명	발령일
〃	정지원	2017.03.01
〃	김용석	2019.08.01
〃	이성호	2019.02.11
〃	김경회	2018.03.02
〃	최윤미	2019.03.01
〃	김태훈	2019.05.08
〃	김익수	2018.07.19
〃	김보성	2019.02.11
〃	홍승표	2019.08.06
〃	홍용화	2018.02.05
〃	황성민	2018.02.05
〃	장인호	2018.02.05
〃	김은미	2018.02.05
〃	김주현	2019.02.11
〃	장은희	2018.07.19
〃	신도욱	2018.02.05
〃	김상문	2019.02.11
〃	김형걸	2018.02.05
〃	최소연	2019.02.11
〃	박선민	2019.02.11
〃	방지형	2019.02.11
〃	방준성	2018.02.05
〃	신현만	2018.02.05
〃	이정민	2018.02.05
〃	이선기	2019.02.11
〃	선현숙	2016.01.27
〃	김 건	2019.02.11
〃	조재철	2017.02.20
〃	최은영	2017.02.20
〃	문지연	2019.02.11
〃	이영진	2018.02.05
〃	이주현	2018.02.05
〃	최한얼	2018.02.05
〃	이진순	2015.02.25
〃	오승환	2019.02.11
〃	장재정	2015.02.25

직 위	성명	발령일
〃	오연택	2018.02.05
〃	박영수	2018.02.05
〃	김지혜	2019.02.11
〃	전우진	2019.02.11
〃	김연수	2019.02.11
〃	김수현	2019.02.11
〃	이정훈	2019.04.01
〃	서민욱	2018.02.05
사무국장	김정호	2019.10.28
사건과장	김중근	2019.01.28
집행과장	김희곤	2018.07.09
조사과장	이문학	2019.09.30
수사과장	주기환	2019.01.28
공판과장	박춘광	2018.07.09
검사직무대리	박종섭	2019.01.28
(목포지청)		
목포지청장	위성국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한진희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원형문	2019.08.06
검사	우세호	2018.02.05
〃	이하영	2018.02.05
〃	조상규	2018.02.05
〃	윤기형	2018.02.05
〃	김영준	2018.02.05
〃	박상훈	2019.02.11
〃	박세혁	2019.02.11
〃	김상이	2017.02.20
〃	한두현	2019.02.11
〃	윤지윤	2019.02.11
〃	김신혜	2019.02.11
사무과장	김상철	2019.01.28
수사과장	오윤대	2019.01.28
(장흥지청)		
지청장	박규형	2019.08.06
검사	김승곤	2018.02.05
〃	허창환	2019.02.11

직위	성명	발령일
사무과장	김은열	2019.01.28
(순천지청)		
지청장	김욱준	2019.08.06
차장검사	서성호	2019.08.06
형사제1부장검사	정효삼	2019.08.09
형사제2부장검사	김형주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유진승	2019.08.06
(부부장)검사	유일석	2019.08.06
〃	조영찬	2019.08.06
검사	안인수	2019.02.11
〃	천안문	2018.08.01
〃	이경준	2019.05.08
〃	최미화	2017.02.20
〃	천대원	2018.07.19
〃	임두환	2018.02.05
〃	한대웅	2018.02.05
〃	김미지	2018.02.05
〃	김지연	2017.02.20
〃	황성아	2018.02.05
〃	오흥세	2016.01.27
〃	안지영	2017.02.20
〃	김상범	2018.02.05
〃	김남엽	2019.02.11
〃	장기영	2018.04.01
〃	김병희	2019.04.01
〃	김문주	2018.02.05
사무국장	위형량	2019.01.28
총무과장	신승휴	2019.01.28
사건과장	김영석	2019.09.30
집행과장	박노중	2019.09.30
수사과장	김재정	2019.09.30
(해남지청)		
지청장	조남철	2019.08.06
검사	오신환	2018.02.05
〃	민경재	2018.02.05
〃	양세동	2019.02.11

직위	성명	발령일
사무과장	서영욱	2019.09.30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권순범	2019.07.31
차장검사	최용훈	2019.08.06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임채원	2018.07.19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	정지영	2018.07.19
형사제1부장검사	조석영	2019.08.06
형사제2부장검사	노진영	2019.08.06
형사제3부장검사	최행관	2019.08.06
(부부장)검사	이찬규	2019.08.06
〃	임세진	2019.08.06
〃	오세문	2019.08.06
검사	박동주	2019.02.11
〃	손재용	2018.03.02
〃	강병하	2018.02.05
〃	왕은진	2018.03.02
〃	천대우	2019.03.01
〃	최순호	2016.08.31
〃	안광현	2016.01.27
〃	장대규	2019.02.11
〃	정지영	2017.02.20
〃	김현우	2019.02.11
〃	서성광	2019.02.11
〃	이경선	2015.02.25
〃	이선영	2018.02.05
〃	김벼리	2018.02.05
〃	최준환	2018.02.05
〃	최영준	2018.02.05
〃	최대호	2018.02.05
〃	정다은	2019.02.11
〃	오흥식	2019.02.11
〃	신재성	2019.04.01
〃	장민수	2019.02.11
사무국장	윤권호	2019.10.28
총무과장	김동현	2019.01.28
사건과장	양헌규	2019.09.30

직 위	성명	발령일
집 행 과 장	명관호	2019.07.22
수 사 과 장	정택률	2018.07.09
검 사 직 무 대 리	송희	2019.09.30
(군 산 지 청)		
지 청 장	박재휘	2019.08.06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백수진	2019.08.06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손찬오	2019.08.06
검 사	박기웅	2018.02.05
〃	박민희	2017.02.20
〃	김동현	2019.02.11
〃	박정선	2017.02.20
〃	김현경	2017.02.20
〃	유희경	2018.02.05
〃	최예원	2018.02.05
〃	이지은	2019.02.11
〃	임현철	2018.02.05
〃	강정욱	2018.02.05
〃	나광윤	2019.02.11
〃	김인선	2018.02.05
〃	강재하	2019.02.11
사 무 과 장	김영한	2018.07.09
집 행 과 장	이영천	2019.09.30
수 사 과 장	송재영	2019.01.28
(정 읍 지 청)		
지 청 장	김우석	2019.08.06
검 사	박형건	2018.02.05
〃	고현욱	2018.02.05
〃	나상현	2019.02.11
〃	정현욱	2018.02.05
사 무 과 장	김승호	2019.01.28
(남 원 지 청)		
지 청 장	이지형	2019.08.06
검 사	박가희	2018.02.05
〃	김준영	2019.02.11
사 무 과 장	채진수	2019.09.30
(제 주 지 방 검 찰 청)		

직 위	성명	발령일
검 사 장	조재연	2019.07.31
차 장 검 사	박소영	2019.08.06
형 사 제 1 부 장 검 사	김재하	2019.08.06
형 사 제 2 부 장 검 사	정태원	2019.08.06
형 사 제 3 부 장 검 사	박대범	2019.08.06
(부 부 장) 검 사	최준호	2019.08.06
〃	박준영	2019.08.06
검 사	하용만	2018.02.05
〃	현승학	2019.08.01
〃	김주현	2018.03.02
〃	박동진	2019.03.01
〃	전정우	2019.05.08
〃	최청호	2019.02.11
〃	최선경	2019.02.11
〃	박양호	2018.02.05
〃	이호석	2018.02.05
〃	송인호	2017.02.20
〃	정수정	2018.02.05
〃	이준희	2019.02.11
〃	이환우	2019.02.11
〃	박채원	2019.02.11
〃	정광병	2017.02.20
〃	박금빛	2018.02.05
〃	한승진	2019.02.11
〃	김수민	2018.02.05
〃	윤장훈	2018.04.01
〃	금성호	2019.04.01
사 무 국 장	정순철	2019.01.28
총 무 과 장	정희섭	2019.01.28
사 건 과 장	이원형	2019.01.28
집 행 과 장	오장수	2019.09.30
수 사 과 장	정남수	2019.09.30
(사 법 연 수 원)		
부 원 장	이영주	2019.07.31
교 수	전윤경	2017.08.17
〃	정재신	2019.08.06

4.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 보호관찰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이형재	2019. 11. 13.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장	배종상	2019. 1. 21.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황철주	2018. 1. 22.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장	이정민	2019.01.21.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정장면	2018. 1. 22.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장	공 석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공 석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양봉환	2018. 1. 22.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임기제 4급)	공 석		수원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	2019. 7. 22.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관찰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태원 심경보 이국희	2019. 7. 22. 2019. 2. 11. 2019. 1. 21.	춘천보호관찰소 소장	김태호	2018. 8. 27.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소장	송인선	2019. 10. 2.	대전보호관찰소 소장 행정지원과장 관찰과장	이법호 이성칠 정기조	2019. 12. 9. 2019. 1. 21. 2018. 1. 22.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	최종철	2019. 7. 22.	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민근기	2018. 1. 22.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최우철	2019. 7. 22.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지소장	심선옥	2019. 7. 22.
행정지원과장	장재원	2019. 7. 22.			
관찰과장	전상호	2019. 7. 22.			
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이동환	2018. 1. 22.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박동식	2019. 1 .21.
행정지원과장	천원기	2019. 7. 22.			
관찰과장	김달곤	2019. 1. 21.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권을식	2018. 1. 22.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지소장	홍정원	2019. 10. 2.
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조성민	2019. 1. 21.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지소장	정성수	2019. 1. 21.
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이동환	2019. 7. 22.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지소장	김상록	2019. 1. 21.
행정지원과장	신원식	2019.07.22.			
관찰과장	유주숙	2019.07.22.			
전주보호관찰소 소장	김양곤	2019. 7. 22.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지소장	이영호	2019. 7. 22.
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강종모	2019. 1. 21.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김시종	2019. 1. 21.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장	김정렬	2019. 1. 21.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지소장	김세훈	2019. 7. 22.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지소장	박준재	2018. 4. 9.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장	배점호	2019. 4. 15.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지소장	김원진	2019. 1. 21.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소년원			청주소년원		
원장	성우제	2019. 7. 22.	원장	노일석	2019. 1. 21.
행정지원과장	이영일	2019. 4. 15.			
교무과장	김택수	2019. 1. 21.	안양소년원		
의무과장	공석		원장	이용호	2019. 7. 22.
			의무과장	최원석	2015. 7. 30.
부산소년원			춘천소년원		
원장	권기한	2019. 1. 21.	원장	권영효	2019. 7. 22.
교무과장	김용현	2019. 1. 21.	의무과장	공석	
분류보호과장	김택준	2019. 7. 22.			
의무과장	시현욱	2019. 2. 18.			
대구소년원			제주소년원		
원장	황계연	2018. 8. 27.	원장	김태섭	2019. 1. 21.
교무과장	김종말	2019. 2. 11.			
분류보호과장	김송수	2019. 1. 21.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의무과장	조태욱	2018. 1. 1.	원장	고영종	2019. 7. 22.
			교무과장	이승욱	2019. 7. 22.
광주소년원			분류심사과장	김용수	2019. 1. 21.
원장	이은한	2019. 7. 22.	의무과장	박정환	2011. 4. 8.
교무과장	김영갑	2019. 7. 22.			
분류보호과장	황남례	2019. 1. 21.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의무과장	정길영	2001. 2. 28.	센터장	안 흡	2019. 1. 21.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주소년원			센터장	유병택	2018. 1. 22.
원장	김행석	2019. 7. 22.			
교무과장	변병귀	2019. 7. 22.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의무과장	김학성	2019. 7. 1.	센터장	이영미	2019. 7. 22.
대전소년원			치료감호소		
원장	윤일중	2019. 7. 22.	소장	조성남	2019. 2. 11.
교무과장	이헌구	2019. 7. 22.	의료부장	장소영	2019. 4. 1.
분류보호과장	김경렬	2019. 1. 21.	행정지원과장	이형섭	2019. 1. 28.
의무과장	장재호	2012. 11. 1.	감호과장	유상운	2019. 7. 22.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4급 이상)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보 존 소 장	김 정 열	2019. 08. 06.
검 찰 수 사 서 기 관	이 정 국	2019. 08. 06.

6.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서울지방교정청		
청 장	유병철	2019. 1. 28.
총 무 과 장	서호영	2018. 12. 17.
보 안 과 장	남준락	2018. 12. 17.
사 회 복 귀 과 장	김도형	2018. 12. 17.
분 류 센 터 장	최찬희	2016. 9. 12.
대구지방교정청		
청 장	정유철	2018. 8. 27.
총 무 과 장	김문태	2019. 8. 2.
보 안 과 장	김철민	2019. 1. 28.
사 회 복 귀 과 장	채완식	2019. 7. 15.
대전지방교정청		
청 장	박병용	2019. 1. 28.
총 무 과 장	황의호	2018. 7. 15.
보 안 과 장	이승철	2019. 1. 28.
사 회 복 귀 과 장	정영진	2018. 8. 27.
광주지방교정청		
청 장	윤재흥	2019. 1. 28.
총 무 과 장	박삼재	2018. 12. 17.
보 안 과 장	최국진	2019. 7. 15.
사 회 복 귀 과 장	장종선	2019. 7. 15.
서 울 구 치 소		
소 장	김천수	2019. 1 .28.
부 소 장	이홍연	2019. 1 .28..
총 무 과 장	김현우	2019. 1. 28.
보 안 과 장	조관성	2019. 7. 15.
의 료 과 장	이병연	2019. 8. 1.
분 류 심 사 과 장	김경화	2019. 7. 15.
시 설 과 장	정병택	2018. 7.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대 전 교 도 소		
소 장	권민석	2019. 01. 28.
부 소 장	양원동	2018. 12. 17.
총 무 과 장	박종관	2019. 04. 29.
보 안 과 장	차광식	2019. 07. 15.
의 료 과 장	이준호	2009. 2. 17.
분 류 심 사 과 장		
논 산 지 소 장	최종수	2019. 07. 15.
대 구 교 도 소		
소 장	류기현	2019. 1. 28
부 소 장	박원흠	2019. 1. 28
총 무 과 장	김영광	2019. 1. 28
보 안 과 장	서보균	2019. 1. 28
의 료 과 장	공석	
분 류 심 사 과 장	민낙기	2019. 1. 28
광 주 교 도 소		
소 장	박호서	2019. 9. 12.
부 소 장	김학봉	2019. 9. 12.
총 무 과 장	허휘	2019. 4. 15.
보 안 과 장	김종곤	2018. 8. 27.
의 료 과 장	박일웅	2006. 8. 16.
안 양 교 도 소		
소 장	신용해	2019. 1. 28.
부 소 장	최진규	2018. 8. 27.
총 무 과 장	김종관	2019. 4. 15.
보 안 과 장	배경석	2019. 7. 15.
의 료 과 장	최광섭	2005. 11. 7.
부 산 구 치 소		
소 장	신경우	2019. 4. 29.
부 소 장	한천용	2018. 8. 27.
총 무 과 장	육근우	2019. 7. 15.
보 안 과 장	주정민	2019. 1. 28
의 료 과 장	안재진	2019. 9. 2.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수원구치소		
소장	이영희	2019. 1. 28.
부소장	류동수	2018. 8. 27.
총무과장	유기용	2019. 7. 15.
보안과장	안영삼	2019. 1. 28.
의료과장		
평택지소장	차재성	2019. 1. 28.
서울동부구치소		
소장	김진구	2019. 4. 29.
부소장	임채화	2019. 1. 28.
총무과장	이효선	2019. 1. 28.
보안과장	장원재	2019. 4. 29.
의료과장	윤재영	2019. 7. 1.
인천구치소		
소장	구지서	2019. 12. 12.
부소장	손용대	2019. 7. 15.
총무과장	이정용	2019. 4. 29.
보안과장	이민열	2019. 7. 15.
의료과장	공석	
서울남부구치소		
소장	오홍균	2019. 1. 28.
부소장	박진홍	2019. 7. 15.
총무과장	박동수	2019. 7. 15.
보안과장	박진성	2019. 1. 28.
의료과장	박종민	2016. 9. 26.
천안개방교도소		
소장	김평근	2019. 1. 28.
의료과장	윤완중	2019. 1.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소장	오세홍	2019. 1. 28.
의료과장	곽연우	2016. 10. 5.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장	정병헌	2016. 1. 25.
부소장	최철경	2019. 7. 15.
총무과장	윤영주	2019. 1. 28
보안과장	최재우	2019. 7. 15.
의료과장	한주섭	2002. 1. 21.
시설과장	강동헌	2019. 7. 1.
전주교도소		
소장	김동현	2019. 1. 28.
총무과장	유철흠	2019. 7. 15.
보안과장	서호성	2019. 7. 15.
의료과장	공석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여주교도소		
소장	김일환	2019. 1. 28.
의료과장	김득종	2018. 11. 26.
부산교도소		
소장	성맹환	2018. 8. 27.
의료과장	윤종철	2015. 7. 14.
의정부교도소		
소장	김승만	2019. 1. 28.
의료과장	주재호	2001. 5. 21.
창원교도소		
소장	최병록	2019. 1. 28.
의료과장	이승기	2006. 8. 16.
순천교도소		
소장	정봉수	2019. 7. 15.
의료과장	박경철	1996. 9. 1.
서울남부교도소		
소장	이언담	2019. 7. 15.
의료과장	이종기	2014. 7. 1.
포항교도소		
소장	정창헌	2019. 1. 28.
의료과장	우재택	2019. 8. 7.
진주교도소		
소장	남상오	2019. 7. 15.
의료과장	이진철	2007. 12. 13.
목포교도소		
소장	김춘오	2019. 7. 15.
의료과장	강 철	1990. 6. 26.
대구구치소		
소장	김태수	2019. 7. 15.
의료과장	이재광	2005. 11. 7.
군산교도소		
소장	김영식	2018. 8. 27.
의료과장	장성용	2006. 4. 17.
청주교도소		
소장	김응분	2019. 7. 15.
의료과장	박현우	2018. 8. 27.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천 안 교 도 소		
소 장	윤길현	2018. 8. 27.
의 료 과 장	신준식	2016. 9. 12.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소 장	김진석	2019. 7. 15.
의 료 과 장	최창학	2011. 1. 1.
춘 천 교 도 소		
소 장	강기천	2019. 1. 28.
의 료 과 장	이중구	2015. 1. 19.
원 주 교 도 소		
소 장	오광운	2018. 12. 17.
의 료 과 장	김영진	2015. 6. 18.
안 동 교 도 소		
소 장	이동희	2019. 7. 15.
의 료 과 장	이석균	2017. 9. 18.
경북북부제2교도소		
소 장	류동백	2019. 1. 28.
의 료 과 장	계영남	2019. 7. 22.
청주여자교도소		
소 장	홍순철	2019. 1. 28
의 료 과 장	박병철	2018. 3. 13.
김천소년교도소		
소 장	양동석	2019. 7. 15.
의 료 과 장	최인환	2008. 1. 24.
공 주 교 도 소		
소 장	금용명	2019 7. 15.
의 료 과 장	송혜정	2011. 7. 11.
경북북부제3교도소		
소 장	서민	2019. 1. 28.
의 료 과 장	정만진	2011. 12. 5.
울 산 구 치 소		
소 장	도재덕	2019. 1. 28.
의 료 과 장	김종원	2009. 7. 20.
정 읍 교 도 소		
소 장	홍정기	2018. 12. 17.
의 료 과 장	임흥배	2019. 1. 7.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제 주 교 도 소		
소 장	강군오	2018. 12. 17.
의 료 과 장	박재홍	2018. 8. 20.
홍 성 교 도 소		
소 장	김재익	2019. 7. 15.
의 료 과 장	윤성로	1994. 11. 12.
서 산 지 소 장	박융우	2019. 1. 28.
경 주 교 도 소		
소 장	송상기	2019. 7. 15.
의 료 과 장	조윤철	2013. 12. 12.
통 영 구 치 소		
소 장	노영길	2019. 7. 15.
의 료 과 장	정원석	2017. 2. 6.
밀 양 구 치 소		
소 장	정재열	2019. 1. 28.
의 료 과 장	전윤식	2014. 5. 12.
상 주 교 도 소		
소 장	박경선	2018 8. 27.
의 료 과 장	박순록	2017. 8. 21.
강 릉 교 도 소		
소 장	신동윤	2018. 12. 17.
의 료 과 장	김일환	2017. 1. 1.
영 월 교 도 소		
소 장	이희정	2019. 7. 15.
의 료 과 장	김건도	2015. 6. 23.
장 흥 교 도 소		
소 장	박병일	2019. 7. 15.
의 료 과 장	공석	
해 남 교 도 소		
소 장	한성주	2019. 4. 15.
의 료 과 장	최영기	2017. 4. 10.
충 주 구 치 소		
소 장	박상용	2019. 1. 28.
의 료 과 장	공 석	

7.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외국인보호소/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청장	장세근	2018. 8. 6.
지원국장	박재완	2019. 8. 19.
심사1국장	류인성	2019. 3. 8.
심사2국장	이기흠	2019. 8. 22.
총무과장	김기영	2019. 3. 18.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장	손홍기	2018. 8. 6.
총무과장	강성환	2019. 1. 7.
관리과장	이문한	2019.10. 10.
이민특수조사대장	윤상용	2019. 1. 7.
출입국정보화센터장	주양근	2018. 7. 1.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청장	안규석	2019. 10. 7.
관리과장	공석	
이민특수조사대장	이상수	2019.10. 10.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청장	이재유	2019.10. 10.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청장	이동휘	2019. 2.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	최영길	2019.10. 10.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공석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강수근	2019. 1. 7.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구본준	2019. 1. 7.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황택환	2018. 1.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홍혁표	2019. 7. 8.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김수남	2019. 1. 7.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이춘용	2018. 1. 1.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이덕룡	2019. 7. 8.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김진영	2019. 2. 27.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백석현	2018. 9. 3.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김진성	2019. 7. 8.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고동기	2018. 1. 1.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	심준섭	2019. 1. 7.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	윤종석	2019.10. 10.
청주외국인보호소		
소장	이종국	2019. 7. 8.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	이인숙	2019. 1. 28.

제6절 인사

•총 괄

(2019. 1 ~ 12월)

구 분		계	승 진	전 보	신규임용	면 직
계		12821	3199	7202	1591	829
검 사		1,498	0	1,268	118	112
일반직	소 계	11,323	3,199	5,934	1,473	717
	본 부 (연 수 원)	464 (50)	79 (9)	311 (37)	46 (3)	28 (1)
	검 찰 청	3,795	646	2,665	217	267
	보 호 기 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1,618	354	1,010	224	30
	지 방 교 정 청 (구 치 소 , 교 도 소)	4,227	1,583	1,573	780	291
	출 입 국 · 외 국 인 기 관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1,219	537	375	206	101

제 7 절 국외훈련·출장

• 검 사

(2019. 1 ~ 12월)

직급 \ 기간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350	57	18	275
검찰총장	2	-	-	2
검사	348	57	18	273

• 일반직

(2019. 1 ~ 12월)

기관 \ 기간	계	장 기 (6월 이상)	단 기 (6월 이하)	출장·연수
계	569	11	9	549
본부	148	-	-	148
검찰청	272	3	3	266
교정기관	22	2	1	19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20	1	3	16
출입국·외국인기관	94	5	2	87
법무연수원	13	-	-	13

제8절 국제교류 현황

1. 외국 주요인사 법무부 방문 현황

(2019. 1. 1. ~ 12. 31.)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1. 20.	네덜란드	주중 네덜란드대사관 이민연락관	미쉘	• 다양한 출입국관련 사례 및 정보 교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 21.	일본	법무성 시설과장	사토 아츠시 등 5명	• 양국 간 협력 및 우호증진 등	교정본부
2. 11.	스페인	미주개발은행 총재특별자문관	안토니 등 3명	• 한국의 이민정책 및 국경관리 현황 사례 공유 등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2. 21.	몽골	주한 부산몽골대사관 영사	바자르자브	• 신임영사 부임 인사 및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3. 14.	요르단	주한 요르단대사관 대사	아델 등 2명	• 요르단인의 한국비자 신청 및 난민관련 업무협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3. 20.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대리대사	남스라이 등 3명	• 국내 몽골인 불법체류 감소 관련 협의 등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3. 21.	독일	주한 독일대사관 영사	톨스텐 등 3명	• 영사 귀임인사 및 후임자 소개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4. 1.	베트남	법무부장관	레 타잉 롱 등 12명	• 한-베 법무분야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양국 법무부 간 旣체결 양해각서의 효율적 이행 방안 논의	법무실
4. 2.	러시아	주한 러시아대사관 1등서기관	블라디미르 등 1명	• 러시아 단기연수 협조 요청 및 관련 정보 파악 등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4. 11.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시라토리 등 2명	• 승격된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대한 정보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자료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4. 24.	캄보디아	차관	르 까웃	• 한-캄 형사사법공조조약, 수형자 이송조약 협력방안 논의	검 찰 국
4. 24.	필리핀	필리핀외교부 이주국장	아리올라 등 7명	• 출입국 관련 양자관계 협의 및 한국 내 필리핀인 불법체류 현황 파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5. 8.	몽골	몽골외교부 영사국장	뭉크투시그	• 한국 국무총리-몽골 총리 배석한 공식 회담 시 논의된 의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 사안 검토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5. 8.	몽골	법무부 법정책부과장·울란바토르 민사법원 판사	Sainzorig P.·Munkhzul A. 외 4명	• 몽골 도산법제 개선을 위해 한국 도산관련 법제 및 관련 경험 공유	법무실
5. 21.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시라토리	• 일본의 사전등록제 소개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5. 23.	중국	사법부 고급 고문	펑리쥔	• 형사사법공조 및 수형자 이송 등 양국간의 형사사법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정(MOU)체결	검 찰 국
6. 14.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국제법무협력과장·주한 우즈베키스탄 부대사	노디르 주마노초프·조키르 사이도프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초청 교육 프로그램 관련 세부사항 협의 및 차기 법무협력사업 방향 논의	법무실
7. 30.	벨라루스	주한 벨라루스 대사관 참사관	올가 오지갈로	• 한-벨라루스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 관련 논의	검 찰 국
8. 2.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시라토리	•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8. 5.	카자흐스탄	법무부장관	마랏 베케타예프	• 한-카자흐스탄 법무협력방안 논의	법무실
8. 28.	우크라이나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 영사	데니스	• 한-우크라이나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요청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9. 6.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시라토리 등 2명	• 한-일본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추진 계획 등 논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9. 16.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외교부 영사국장	웁벳바예프 등 3명	• 불법체류 문제 해결 및 출입국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위한 논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9. 20.	중국	중앙기율검사위 부주임	한야오위안	• 한-ICC 협력 및 한인 진출 증대 방안 논의	검 찰 국
9. 23.	캐나다	주일 캐나다대사관 영사	코리 등 3명	• 국외단기연수 협조요청 및 진행 위한 정보 교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예방일	국 명	직책	성 명	예방목적	비 고
9. 25.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시라토리	• 강제송환 절차에 관한 정보 교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9. 25.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법무부장관	테레사 청	• 법무협력 MOU 체결	법무실
9. 27.	카자흐스탄	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 대사	듀센바예프 등 4명	• 뱅소니범 신병 인도 관련 협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0. 23.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이민청장	막심 등 4명	• 사증면제협정체결 요구에 따른 논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0. 30.	ICC	사무국장	피터 루이스	• 반부패기관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논의	검 찰 국
11. 6.	일본	외무성 영사국장	미즈시마 등 7명	• 재한 일본인 보호를 위한 정부간 협조 방식 등 논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2. 23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시라토리	• 한-일본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추진관련 논의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2. 중요 국제회의 참가 현황

(2019. 1. 1. ~ 12. 31)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13.~1.17	태국 (방콕)	•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주관 실무자 워크숍 참석	검사 김보성 외 1명	검 찰 국
1.14.~1.16.	일본 (도쿄)	• 제9회 한-일 형사사법 협력회의	국제형사과장 구승모 외 2명	검 찰 국
1.20.~1.27.	니우에	• 반부패협약(UNCAC) 이행점검 회의	검사 김남수 외 1명	검 찰 국
1.21.~1.23.	일본 (도쿄)	• 제1차 G20 반부패 실무회의 참석	검사 김명옥	검 찰 국
1.21.~1.25.	태국 (방콕)	• UN Crime Congress 아시아.태평양 지역 실무회의	검사 이승현	검 찰 국
1.22.~1.25.	대만 (타이페이)	• 대만 법무부 주최 범죄예방 포럼 참석, 발표	보호관찰과장 이영면 외 2명	범죄예방 정 책 국
1.22.~1.25.	인도네시아	• 2019 발리프로세스	주진선 출입국관리 주사보	출입국· 외 국 인 정책본부
1.25.~1.31	중국(북경), 베트남(하노이)	• 중국·베트남 법집행기관 방문 검찰세미나 및 학술교류 MOU 체결	검찰총장 문무일 외 3명	검 찰 국
2.4.~2.8.	미국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 회의	사무관 박주현 외 1명	법 무 실
2.18.~2.23.	이집트(카이로) 중국(베이징) 태국(방콕)	• 제1회 국제검사협회 중동·아프리카 지역회의 참석	부산고검장 황철규 외 1명	검 찰 국
2. 21.~3.1.	칠레	• 2019년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MG 회의	박송배 출입국관리주사	출입국· 외 국 인 정책본부
2.24.~3.1.	인도네시아	• 제25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박병건 출입국관리주사 외 1명	출입국· 외 국 인 정책본부
2.25.~3.2.	일본 (동경)	• 제24차 아태지역 약물단속회의(ADEC) 참석	대검 마약과장 천기홍 외 1명	검 찰 국
2.25.~3.2.	캄보디아 (프놈펜)	• 한국·캄보디아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 및 실무협의, 수형자이송조약 체결 협의	부장검사 이원석 외 4명	검 찰 국
2.25.~3.3.	칠레 (산티아고)	• APEC 고위관리회의(SOM) 산하 반부패 실무회의 참석	검사 허윤희	검 찰 국
3.4.~3.8.	프랑스 (파리)	•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점검 회의	검사 박성진	검 찰 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3.4.~3.9.	스위스 (제네바)	• 제40회 UN 인권이사회 및 국제 인권단체 방문	대검 인권부장 권순범 외 2명	검 찰 국
3.9.~3.17.	오스트리아 (비엔나)	• UN 마약위원회 각료급 회의 참석	검찰국장 윤대진 외 2명	검 찰 국
3.13.~ 3.18.	이탈리아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118차 정기총회 참석	검사 최용보 외 1명	법 무 실
3.17.~3.21.	호주 (퍼스)	• 美 마약청 주관 마약단속 지역회의 참가	검사 김성훈 외 1명	검 찰 국
3.17.~3.23.	오스트리아 (비엔나) 스페인 (마드리드)	• 제62차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및 스페인 마약특별검찰청 방문	대검 마약과장 천기홍 외 1명	검 찰 국
3.17.~ 3.22.	케냐	• "Towards a Global Pact for the Environment" 세계환경협약 실무작업반 제2차 실질회기	전문위원 임세영	법 무 실
3.18.~3. 22.	스위스	• 정부간 이민정책 협의체(IGC) 실무자회의	송욱성 출입국관리 주사보	출입국· 외 국 인 정책본부
3.24.~3.28.	이라크 (바그다드)	• 우리나라 반부패 수사기법 전수 및 수사기관 교육을 위한 강의 참석	검사 조주연 (오스트리아 법무협력관)	검 찰 국
3.25.~3.28.	태국 (방콕)	• UNODC 아세안 국제형사사법 협력 지역회의 참석	검사 홍상철	검 찰 국
3.25.~3.30.	태국 (방콕)	• UNODC 아세안 지역 국제 형사사법협력 제고에 관한 지역회의 및 형사사법공조 현안사건 관련 수형자 면담	검사 오진세	검 찰 국
3.25.~3.29.	미국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 회의	국제법무과장 외 1명	법 무 실
3.26.~3.31.	오스트리아 (비엔나)	• UNODC 제5차 사이버범죄 전문가 회의 참석	검사 김영미 외 1명	검 찰 국
3.26.~3.29.	영국	• 국제해사기구(IMO) 제106차 법률위원회 회의	사무관 박주현	법 무 실
3.27.~3.29.	태국	• 제6차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개발포럼	전문위원 한아인	법 무 실
4.1.~4.5.	미국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실무작업반 회의	검사 신동환 외 1명	법 무 실
4.2.~4.6.	태국 (방콕)	• ASEAN 2025를 위한 무역 및 안보정책 조율 고위급 역내회의	국제형사과장 외 3명	검 찰 국
4.2.~4.6.	네덜란드 (헤이그)	• 글로벌역량구축포럼(GFCE)의 사이버범죄 실무그룹회의	부장검사 서상환 외 1명	검 찰 국
4.2.~4.7.	노르웨이 (오슬로)	• 제47회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회 참석	부산고검장 황철규 외 1명	검 찰 국
4.6.~4.10.	미국	• ICSID 중재규칙 개정 관련 2차 회의	검사 신동환	법 무 실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4.7.~4.14.	에콰도르 (키토)	• 에콰도르 해외도피사범 송환 및 에콰도르 대검과의 MOU 체결를 위한 협의	대검 국제협력단장 손영배 외 1명	검 찰 국
4.8.~4.12.	미국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 제58차 회의	검사 김상현 외 2명	법 무 실
4.9.~4.11.	일본	• 제15차 한-중-일 FTA 협상	박병건 출입국관리주사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4.9.~4.11.	일본 (도쿄)	• 리플 피싱 사건 관련 한.미.일 공조회의 참석	부장검사 이덕진 외 2명	검 찰 국
4.14.~4.19.	아제르바이젠 (바쿠)	• 2019년 국제마약단속회의(IDEC) 총회 참석	검사 소창범 외 1명	검 찰 국
4.15.~4.19.	프랑스	• 제36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검사 이혜미	법 무 실
4.20.~4.28.	미국 (코네티컷주)	• 초국가적 조직범죄 및 테러리즘 대응 국제회의(ICTOCT) 참가	부장검사 김호삼 외 2명	검 찰 국
4.28.~5.4.	오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오만 등 법집행기관 방문 및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검찰총장 문무일 외 3명	검 찰 국
5.7.~5.9.	중국 (북경)	• 한·중 형사사법협력회의 참석	차관 김오수 외 5명	검 찰 국
5.10.~5.17.	콜롬비아	•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총회	검사 신동환	법 무 실
5.12.~5.19.	멕시코 (멕시코씨티)	• G20 반부패그룹 실무회의	검사 호승진	검 찰 국
5.13.~5.17.	미국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 제35차 회의	국제법무과장 한창완 외 1명	법 무 실
5.19.~5.25. 5.19.~5.27.	오스트리아 (비엔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크)	• UN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 참석	검사 김남수 외 2명	검 찰 국
5.19.~5.24.	케냐	• "Towards a Global Pact for the Environment" 세계환경협약 실무작업반 제3차 실질회기	전문위원 임세영	법 무 실
5.20.~5.24.	오스트리아 (비엔나)	• UN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 제28차 연례회의 참석, 발표	보호정책과장 정소연 외 3명	범죄예방 정 책 국
5.22.~5.26.	중국 (홍콩)	•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주관, 제7회 반부패 심포지엄 참석	검사 최종혁	검 찰 국
5.26.~6.1.	오스트리아 (비엔나)	• UN 부패방지협약(UNCAC) 제10차 이행점검그룹회의 및 제13차 자산회복작업반회의	검사 박성진 외 1명	검 찰 국
5.26.~6.2.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오스트리아 (비엔나)	• 제76차 유럽평의회 국제공조 담당자 회의(PC-OC) 참석 • 유엔국제협력전문가회의 패널 토론자 참석	검사 오진세	검 찰 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5.27.~5.31.	스위스	• 정부간 이민정책 협의체(IGC) 실무자회의	용창식 출입국관리주사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5.28.~5.31.	미국	• UN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5실무작업반(도산) 제55차 회의	사무관 김효선	법 무 실
6.3.~6.7.	프랑스	•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작업반회의	검사 김상현 외 1명	법 무 실
6.3.~6.7.	폴란드	• 정부간 이민정책 협의체(IGC) 실무자회의	이태훈 출입국관리 주사보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6.7.~6.17.	미국 (워싱턴D.C. 뉴욕)	• NAGTRI 주관 쇼설 미디어 시대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검사의 대응전략 회의 참석	검사 김상현	검 찰 국
6.8.~6.16.	미국 (워싱턴D.C.)	• 한·미 형사사법 등 실무회의	국제형사과장 구승모 외 3명	검 찰 국
6.9.~6.12.	미국	• 한.미 범죄예방협력(PCSC) 협정 이행 실무회의	윤철민 출입국관리 사무관 외 1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6.10.~6.12.	필리핀 (마닐라)	• 필리핀 당국과 논의중인 범죄인 인도 현안관련 실무협의	검사 김남수 외 1명	검 찰 국
6.10.~6.14.	태국 (방콕)	• 태국 사법당국과 국제공조 협의	부장검사 이원석 외 3명	검 찰 국
6.15.~6.23.	미국 (올란도)	• FATF(국제자금방지기구)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정관정책보좌관 이종근 외 2명	검 찰 국
6.16.~6.19.	인도	• 한-인도 CEPA 제8차 개선협상	박병건 출입국관리주사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6.17.~6.22.	네덜란드	•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외교회의	검사 김상현 외 1명	법 무 실
6.22.~6.27.	인도네시아	• 한-인도네시아 CEPA 제9차 개선협상	박병건 출입국관리주사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6.24.~6.29.	프랑스	• 제43차 OECD 이주작업반 회의	김현채 서기관 외 2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6.24.~6.29.	스위스(제네바)	•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	황희석 인권국장 외 3명	인 권 국
6.24.~6.29.	프랑스 (파리)	• OECD 뇌물방지작업반 제2차 전체회의 참석	검사 박성진	검 찰 국
6.24.~6.30.	멕시코 (멕시코시티)	• OECD 경쟁법위원회 카르텔 워크숍 참석	부장검사 김윤후	검 찰 국
6.25.~6.28.	러시아 (모스크바)	• 제3회 한-러 검찰세미나 참석	대검 국제협력단장 손영배 외 2명	검 찰 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6.25.~6.29.	네덜란드 (헤이그)	• 아태지역 범죄수인환수 네트워크 회의 참석	검사 홍상철 외 1명	검 찰 국
6.29.~7.4.	호주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제26차 협상	박병건 출입국관리주사	출입국· 외 국 인 정책본부
6.30.~7.5.	네덜란드 (헤이그)	• 제9회 세계 송무포럼(WLF) 회의	대검 공판송무과장 정유미 외 3명	검 찰 국
7.6.~7.14.	우루과이	• 한-메르코수르 FTA 제3차 협상	김명훈 출입국관리 사무관	출입국· 외 국 인 정책본부
7.9.~7.10.	대한민국 (부산)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국제회의 참석	검사 최용보 외 1명	법 무 실
7.14.~7.18.	미국 (뉴욕)	• 검사 독립성 관련 국제포럼 참석	부산고검장 황철규 외 1명	검 찰 국
7.15.~7.19.	싱가포르 (싱가포르)	• 제6회 ASEAN+3 사이버범죄 회의 참석	부장검사 김태은 외 1명	검 찰 국
7.15.~7.19.	오스트리아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	국제법무과장 한창완 외 1명	법 무 실
7.17.~7.20.	중국 (장춘시, 연길시)	• 한.중 수사협의체 2019년 실무회의(제7차) 참석	대검 국제협력단장 손영배 외 3명	검 찰 국
7.21.~7.24.	필리핀 (마닐라)	• 필리핀 당국과 범죄인 인도 실무 협의	국제형사과장 구승모 외 1명	검 찰 국
7.24.~7.27.	미얀마 (네피도)	• 아세안 SOMTC+3 회의 참석	국제형사과장 구승모 외3명	검 찰 국
7.24.~7.2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인도네시아 당국과 범죄인 인도 실무 협의	검사 김남수 외 3명	검 찰 국
8.13.~8.21.	칠레	• 2019년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MG 회의	김시화 출입국관리 주사보 외 1명	출입국· 외 국 인 정책본부
8.16.~8.23.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	• APEC 반부패 투명성 위원회 참석	검사 이종원	검 찰 국
8.18.~8.24.	호주 (캔버라)	• APG 총회 및 실무그룹회의 참석	검사 오진세	검 찰 국
8.19.~8.23.	중국 (장춘)	• 2019년 한.중 국제학술대회 참가	검사 김은정	검 찰 국
8.28.~9.3.	캄보디아 (시엠립) 태국(방콕)	• 아세안+3 고위급 마약관계관 회의 및 APICC 마약퇴치 지원사업 종료식 참석	대검 마약과장 원지애 외 2명	검 찰 국
9.1.~9.8.	오스트리아 (비엔나)	•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실무회의	검사 김남수	검 찰 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9.2.~9.6.	오스트리아 (비엔나)	• 스포츠 부패방지 전문가 회의 참석	검사 남철우	검 찰 국
9.2.~9.4.	스위스	• 세계지식재산기구 집행자문위원회 회의	사무관 최초	법 무 실
9.7.~9.13.	영국 (런던)	• 2019년 국제조세협회(IFA) 연례 총회 참석	검사 정유리 외 1명	검 찰 국
9.12.~9.22. 9.14.~9.2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24회 국제검사협회(IAP) 집행위원회 및 연례총회 참석	법무연수원 검사장 황철규 외 2명	검 찰 국
9.15.~9.22.	스위스(제네바)	• UN 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영주 외 3명	인 권 국
9.20.	한국	• 제8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법무부차관 김오수 외 4명	법 무 실
9.20.~9.26.	베트남	• 제28차 RCEP 및 한-인니 CEPA 양자협상	김지연 출입국관리 주사보	출입국· 외 국 인 정책본부
9.21.~9.27.	몽골 (울란바토르)	• 제6회 ARIN-AP 연례총회 및 워크숍 참석	검사 나욱진 외 2명	검 찰 국
9.22.~10.2.	파나마 (파나마시티) 에콰도르 (키토)	• 파마나, 에콰도르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 협의를 통한 해외불법재산환수	차장검사 예세민 외 3명	검 찰 국
9.22.~9.26.	몽골 (울란바토르)	• 제39차 아태교정본부장회의	최강주 교정본부장 외 8명	교정본부
9.22.~9.27.	한국	• 2019년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	법무부차관 김오수 외 4명	법 무 실
9.23.~9.27.	오스트리아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 회의	사무관 박주현	법 무 실
9.25.~10.3.	캐나다	• 제40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손흥기 출입국관리 사무관 외 1명	출입국· 외 국 인 정책본부
9.29.~10.3.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 제28회 독립국가연합(CIS) 검찰총장협의회 및 제17회 상하이협력기구(SCO) 검찰총장회의	법무연수원 검사장 황철규	검 찰 국
9.30.~10.6.	영국 (런던)	• VIRUSBULLETIN 2019(바이러스 및 해킹) 컨퍼런스 참석	검사 박영식 외 2명	검 찰 국
10.5.~10.13.	브라질 (포스두이구아수)	• ICN(국제반독점네트워크) 정기회의	검사 김남수	검 찰 국
10.5.~10.13.	스위스	• 제70차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이사회	이호철 출입국관리주사 외 1명	출입국· 외 국 인 정책본부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0.6.~10.11.	인도네시아	• 제10차 한-인니 CEPA 협상	김명훈 출입국관리 사무관 외 1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0.7.~10.12.	프랑스 (파리)	• OECD 뇌물방지협약 작업반 회의	검사 박성진	검 찰 국
10.7.~10.13.	오스트리아 (비엔나)	• 유엔 초국가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 이행점검 전문가 회의 참석	대검 마약과장 천기홍 외 1명	검 찰 국
10.9.~10.14.	이탈리아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120차 정기총회 참석	서기관 한경태 외 1명	법 무 실
10.11.~10.19	미국 (라스베가스)	• 제43회 전미교정의료학술회의	신준식 기술서기관 외 4명	교정본부
10.12.~10.20.	프랑스 (파리)	•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총회	검사 오진세	검 찰 국
10.14.~10.18.	오스트리아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 회의	검사 신동환 외 1명	법 무 실
10.20.~10.27.	스위스	• 정부간 이민정책 협의체(IGC) 실무자회의	염기동 출입국관리주사 외 1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0.21.~10.26.	태국 (방콕)	• 제43차 아태지역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 참석	부장검사 천기홍 외 1명	검 찰 국
10.25.~11.4.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 제21차 국제교정협회 연례회의	이경식 교정연수과장 외 4명	교정본부
10.26.~11.3.	스위스 (제네바)	• 제337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참가	부장검사 최재봉 외 1명	검 찰 국
10.26.~11.8.	미국 (워싱턴D.C등)	• 미 국무부 주관 국제 방문자 리더쉽 프로그램(IVLP) 참가	검사 최재아 외 1명	검 찰 국
10.27.~10.31.	그리스 (아테네)	• OECD 뇌물방지작업반 3단계 이행평가 현장실사 시행	검사 박성진 외 1명	검 찰 국
10.27.~10.31.	프랑스	• 제37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검사 이혜미	법 무 실
10.27.~11.1.	아이슬란드	• 제26차 ICAO PKD 이사회	김현정 출입국관리 주사보 외 1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0.30.~11.1.	네덜란드 (헤이그)	• 범죄인인도절차 협의 윤영식(데이비드 윤)	검사 김남수	검 찰 국
11.2.~11.6.	프랑스	• OECD 경쟁위원회 작업반회의 및 정기회의	검사 김상현 외 1명	법 무 실
11.4.~11.8.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 제16회 유럽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CARIN) 연례총회 참가	검사 나욱진	검 찰 국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1.4.~11.8.	미국	• 국제공정거래 회의	검사 신동환	법 무 실
11.4.	홍콩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 Judicial Summit	사무관 최승은, 외 1명	법 무 실
11.11.~11.15.	미국	• ICSID 중재규칙 개정 관련 3차 회의	검사 신동환	법 무 실
11.11.~11.21.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미국 (워싱턴DC)	• 유럽평의회 국제공조담당자 회의(PC-OC) 및 한미 형사사법공조 현안회의 참석	검사 오진세	검 찰 국
11.17.~11.21.	미국 (워싱턴DC)	• 미국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 사항 협의	검사 김창섭	검 찰 국
11.17.~11.24.	미국 (뉴욕)	• 미국 법무부와 범죄인인도 현안 협의 및 반독점국 형사재판 절차 참관	검사 서원익 외 1명	검 찰 국
11.17.~11.26.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 사이버범죄협약위원회(T-CY)총회 및 사이버수사 공조강화 기관방문 등	대검 과학수사부장 이두봉 외 3명	검 찰 국
11.18.~11.22.	오스트리아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 제38차 회의	국제법무과장 한창완 외 1명	법 무 실
11.24.~11.30.	스위스	• 제110차 국제이주기구 IOM 총회	이은경 출입국관리 사무관 외 1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1.24.~11.29.	스위스	• UN 제8회 기업과 인권 국제포럼	서기관 강혜정 외 3명	법 무 실 인 권 국
11.25.~11.29.	오스트리아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 제59차 회의	검사 김상현 외 2명	법 무 실
11.25.~11.29. 11.26.~11.29.	태국 (방콕)	• 제1차 ASEAN+한국 장관급 회의 신설 및 제10차 ASEAN+3 초국가범죄 장관급 회의(AMMTC) 등 참석	국제형사과장 이동언 외 6명	검 찰 국
11.28.~12.8. 11.30.~12.8.	네덜란드 (헤이그) 미국 (뉴욕)	• 국제검사협회(IAP) 사무국, 국제형사재판소(ICC) 총회 및 검사 전문가 회의 참석	법무연수원 검사장 황철규 외 1명	검 찰 국
11.30.~12.6.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 FATF 상호평가 대면회의 및 벨리에 자산몰수청 방문	검사 오진세 외 1명	검 찰 국
12.1.~12.8.	네덜란드 (헤이그)	•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 총회 참석	검사 박억수 외 1명	검 찰 국
12.1.~12.15.	스페인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5)	전문위원 임세영	법 무 실
12.2.~11.6.	오스트리아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 제56차 회의	사무관 조규현 외 1명	법 무 실

기 간	국 가	회 의 명	참가자	비 고
12.2.~12.5.	스위스(제네바)	• UN 인권과 2030 의제 회의	인권국장 황희석 외 3명	인 권 국
12.4.~12.6.	필리핀 (마닐라)	• 필리핀 당국과 범죄인인도 세부방안 협의	검사 김남수	검 찰 국
12.7.~12.12.	스위스	• IGC 총회	이정미 서기관 외 1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2.9.~12.12.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	• 사우디 총장과의 양자회담 등 IAP 회장 직무수행	법무연수원 검사장 황철규	검 찰 국
12.9.~12.13.	싱가포르 태국(방콕)	• 아.태지역 사이버 동향 및 역량강화 회의 참석	부장검사 김윤후 외 2명	검 찰 국
12.9.~12.14.	프랑스 (파리)	• OECD 뇌물방지작업반회의 2019년도 제4차 전체회의 참가	검사 박성진	검 찰 국
12.14.~12.20.	스위스	• 제1차 글로벌 난민 포럼	조신 출입국관리주사 외 1명	출입국·외 국 인 정책본부
12.15.~12.22.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 UNCAC(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및 협약 이행점검 회의 참석	검사 조주연 (오스트리아 법무협력관)	검 찰 국

제9절 상훈

1. 총 괄

• 검사 및 일반직

(2019. 1 ~ 12월)

상훈 \ 직급	계	정무직(등)	검사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722	-	52	6	40	61	162	472	696	226	7
청조근정훈장	0	-	-	-	-	-	-	-	-	-	-
황조근정훈장	3	-	3	-	-	-	-	-	-	-	-
홍조근정훈장	35	-	5	4	26	-	-	-	-	-	-
녹조근정훈장	90	-	-	-	-	28	62	-	-	-	-
옥조근정훈장	140	-	-	-	-	-	-	119	20	1	-
근 정 포 장	103	-	4	2	12	10	37	19	19	-	-
대 통 령 표 창	62	-	2	-	1	16	16	16	10	1	-
국무총리표창	45	-	3	-	1	4	21	7	9	-	-
모 범 공 무 원	172	-	-	-	-	-	-	158	14	-	-
법무부장관표창	1,072	-	35	-	-	3	26	153	624	224	7
유관기관표창	0	-	-	-	-	-	-	-	-	-	-

• 기 관

(2019. 1 ~ 12월)

상훈 \ 기관	계	법무부	검찰청	보 호 관찰소	소년원	교정기관	출입국·외국인기관
법무부장관표창	81	4	19	18	8	22	10

2. 훈장·포장·표창자 명단

• 법무부소속 공무원(훈장 이상)

(2019. 1 ~ 12월)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황조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배성범	2019. 1. 29.	검찰업무 수행 유공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이금로	〃	〃
	대검찰청	검사	이성윤	2019. 4. 15.	법의 날 기념 유공
홍조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강신엽	2019. 1. 29.	검찰업무 수행 유공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이성희	〃	〃
	법무부	부이사관	이재유	2019. 1. 29.	우수공무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박찬호	2019. 4. 15.	법의 날 기념 유공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강지식	〃	〃
	법무연수원	일반직고위공무원	이경식	2019. 10. 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대구보호관찰소	부이사관	이우권	2019. 6. 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부이사관	김태수	〃	〃
	법무부	부이사관	김두락	〃	〃
	법무부	부이사관	이석재	〃	〃
	대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삼술	〃	〃
	인천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영일	〃	〃
	춘천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위재홍	〃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정만진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박천섭	〃	〃
	대구고등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윤영우	〃	〃
	광주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고이주	〃	〃
	제주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신종근	〃	〃
	대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정기성	〃	〃
	수원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창수	〃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도균	2019. 12. 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이사관	윤용범	〃	〃
	서울고등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최장수	〃	〃
	부산고등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이철수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장 복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정병수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소 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유재섭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강신광	〃	〃
	대구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임경진	〃	〃
	대구고등검찰청	검찰부이사관	한상임	〃	〃
	전주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한재영	〃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조의곤	〃	〃
	부산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조재화	〃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찰부이사관	김병선	〃	〃
녹조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윤성진	2019. 1. 29.	우수공무원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서기관	이상운	2019. 6. 30.	상반기퇴직자유공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윤성식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김호중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위용석	〃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서기관	임병수	〃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기관	임진택	〃	〃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기관	정수동	〃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기관	김민수	〃	〃
	원주교도소	교정관	정병석	〃	〃
	영월교도소	서기관	민현기	〃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이춘남	〃	〃
	대전교도소	교정관	임남형	〃	〃
	청주여자교도소	서기관	주점숙	〃	〃
	전주교도소	교정관	심기호	〃	〃
	정읍교도소	교정관	박종식	〃	〃
	대구교도소	교정관	채희봉	〃	〃
	서울구치소	교정관	김흥만	〃	〃
	여주교도소	교정관	정명동	〃	〃
	포항교도소	교정관	채순식	〃	〃
	서울동부구치소	교정관	허만실	〃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김종철	〃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권천락	〃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이병철	〃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박을균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대검찰청	기술서기관	김치규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안병근	〃	〃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사무관	오윤종	〃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이종현	〃	〃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은희견	〃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사무관	정병훈	〃	〃
	대구보호관찰소	서기관	남두화	2019. 12. 31.	하반기퇴직자유공
	제주소년원	서기관	김일환	〃	〃
	청주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연병인	〃	〃
	의정부보호관찰소	서기관	장재영	〃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김효제	〃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김준겸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기관	고석곤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권태수	〃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서기관	이하성	〃	〃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기관	김상규	〃	〃
	안양교도소	교정관	성기휘	〃	〃
	원주교도소	교정관	원봉재	〃	〃
	원주교도소	교정관	이학원	〃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박종덕	〃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관	이호경	〃	〃
	서울동부구치소	서기관	임채화	〃	〃
	경주교도소	서기관	이경우	〃	〃
	부산구치소	교정관	박대영	〃	〃
	울산구치소	교정관	이석명	〃	〃
	포항교도소	교정관	최광영	〃	〃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관	박위범	〃	〃
	대전교도소	교정관	김보헌	〃	〃
	청주교도소	전문경력관 가군	최명호	〃	〃
	청주교도소	교정관	정용선	〃	〃
	청주교도소	간호사무관	백화성	〃	〃
	광주교도소	교정관	신명원	〃	〃
	대구교도소	교정관	김재덕	〃	〃
	공주교도소	교정관	오영호	〃	〃
	서울구치소	교정관	장병철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서울구치소	교정관	유하영	〃	〃
	서울구치소	교정관	이철원	〃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서기관	이현철	〃	〃
	수원구치소	교정관	김재학	〃	〃
	의정부교도소	교정관	이재순	〃	〃
	원주교도소	전문경력관 가군	최승유	〃	〃
	인천구치소	교정관	안갑수	〃	〃
	여주교도소	교정관	이형천	〃	〃
	여주교도소	전문경력관 가군	문홍현	〃	〃
	충주구치소	교정관	임창섭	〃	〃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보호사무관	조선진	〃	〃
	천안교도소	교정관	왕성철	〃	〃
	경북북부제1교도소	기술서기관	김창섭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관	손대일	〃	〃
	서울남부교도소	전문경력관 가군	이규오	〃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관	박관식	〃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서기관	안복영	〃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송정배	〃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장태주	〃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관	김형욱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박형채	〃	〃
	전주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이성순	〃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찰사무관	김태영	〃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이문규	〃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찰수사서기관	김영규	〃	〃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황인재	〃	〃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	김천수	〃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신승휴	〃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찰수사서기관	최선규	〃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찰사무관	이종철	〃	〃
옥조근정훈장	서울소년원	보호주사	이 완	2019. 6. 30.	상반기퇴직자유공
	춘천소년원	보호주사	문형도	〃	〃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노달용	〃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김기재	〃	〃
	전주소년원	보호주사	이보형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제주소년원	방호주사보	임성수	〃	〃
	강릉교도소	교감	송근남	〃	〃
	강릉교도소	교감	김영택	〃	〃
	강릉교도소	교위	김 신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신중균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천승택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채정현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이영대	〃	〃
	영월교도소	교감	김성태	〃	〃
	영월교도소	교감	권영학	〃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정정호	〃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장상수	〃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신준식	〃	〃
	서울남부구치소	교위	반 용	〃	〃
	대구구치소	교감	이덕수	〃	〃
	부산구치소	간호주사	홍옥희	〃	〃
	밀양구치소	교감	임경수	〃	〃
	경북북부제1교도소	기계운영주사	금태진	〃	〃
	창원교도소	교감	양영준	〃	〃
	창원교도소	교감	옥광련	〃	〃
	창원교도소	교위	이종교	〃	〃
	대전교도소	교감	유충열	〃	〃
	대전교도소	교감	신현수	〃	〃
	대전교도소	전화상담운영주사보	최병애	〃	〃
	청주교도소	교감	이기화	〃	〃
	천안개방교도소	교위	주동린	〃	〃
	공주교도소	교감	김세환	〃	〃
	공주교도소	교감	김남관	〃	〃
	충주구치소	교감	최병관	〃	〃
	제주교도소	교감	윤영섭	〃	〃
	장흥교도소	교감	진학준	〃	〃
	장흥교도소	교위	이 진	〃	〃
	정읍교도소	교감	이동현	〃	〃
	대구교도소	교감	김종철	〃	〃
	대구교도소	교감	최세갑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광주교도소	교감	강경호	〃	〃
	광주교도소	교감	박균열	〃	〃
	광주교도소	교감	최형중	〃	〃
	광주교도소	교감	서용열	〃	〃
	진주교도소	교감	조성구	〃	〃
	안동교도소	교감	손이원	〃	〃
	서울구치소	교감	박연옥	〃	〃
	수원구치소	교감	양성국	〃	〃
	수원구치소	교감	김철호	〃	〃
	울산구치소	교위	천재찬	〃	〃
	울산구치소	기계운영주사	박대현	〃	〃
	의정부교도소	교감	정명희	〃	〃
	원주교도소	교감	김옥희	〃	〃
	화성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주사	김남철	〃	〃
	통영구치소	교감	양홍도	〃	〃
	포항교도소	교감	최광환	〃	〃
	포항교도소	교감	박석준	〃	〃
	김천소년교도소	교감	백승해	〃	〃
	김천소년교도소	교위	이흥식	〃	〃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감	심재근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박진서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이재두	〃	〃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남금희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장기덕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이은숙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김정욱	〃	〃
	서울고등검찰청	공업주사	이용우	〃	〃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주사	김영수	〃	〃
	춘천지방검찰청	방송통신주사	이해봉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정수민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지재화	〃	〃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박상재	〃	〃
	청주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김산우	〃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열관리운영주사보	전해명	〃	〃
	인천지방검찰청	방송통신주사	이기섭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대구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임명숙	〃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운전서기	이관호	〃	〃
	안양교도소	교감	문상학	2019. 12. 31.	하반기퇴직자유공
	안양교도소	교감	이정현	〃	〃
	안양교도소	교감	이용득	〃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교감	문종성	〃	〃
	영월교도소	교감	박병준	〃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고영길	〃	〃
	부산구치소	교감	임채원	〃	〃
	포항교도소	교감	손수호	〃	〃
	광주교도소	교감	이인자	〃	〃
	광주교도소	공업주사	채상율	〃	〃
	제주교도소	교위	한대식	〃	〃
	대구교도소	교감	윤송용	〃	〃
	대구교도소	교감	박광택	〃	〃
	대구교도소	교감	구헌모	〃	〃
	대구교도소	식품위생주사	금법연	〃	〃
	전주교도소	교감	이성열	〃	〃
	대구구치소	교감	전규삼	〃	〃
	대구구치소	교감	서상수	〃	〃
	진주교도소	운전주사	강동섭	〃	〃
	공주교도소	교감	김철상	〃	〃
	경주교도소	교감	박순화	〃	〃
	홍성교도소	교감	황상식	〃	〃
	서울구치소	교감	탁하철	〃	〃
	서울구치소	교감	김선민	〃	〃
	서울구치소	교감	김점호	〃	〃
	서울구치소	식품위생주사	이호택	〃	〃
	서울구치소	운전주사보	배택주	〃	〃
	수원구치소	교감	최인순	〃	〃
	원주교도소	교감	강호영	〃	〃
	강릉교도소	교감	정연준	〃	〃
	인천구치소	교감	이진모	〃	〃
	화성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주사	전남형	〃	〃
	여주교도소	교감	권익선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여주교도소	공업주사	김동철	〃	〃
	여주교도소	공업주사	박관섭	〃	〃
	충주구치소	교감	서동두	〃	〃
	김천소년교도소	교감	여상용	〃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감	손경목	〃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감	김기진	〃	〃
	창원교도소	시설주사	이해진	〃	〃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유지홍	〃	〃
	법무부	사무운영주사	지승희	〃	〃
	서울동부구치소	교감	이영노	〃	〃
	서울동부구치소	교위	김종연	〃	〃
	서울동부구치소	시설주사	이춘식	〃	〃
	대검찰청	운전주사보	윤영빈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오명철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황규임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운전주사보	남용우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최영기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조영순	〃	〃
	대전고등검찰청	방송통신주사	심양진	〃	〃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송광하	〃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방호주사보	이근영	〃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방송통신주사	이명곤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방송통신주사	이상봉	〃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진방기	〃	〃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주사	노희술	〃	〃
	부산지방검찰청	방송통신주사	박휘주	〃	〃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허병녕	〃	〃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임용순	〃	〃
	부산지방검찰청	사무운영주사	김은숙	〃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방호주사보	정상철	〃	〃

• 외부인사 및 단체

(2019. 1 ~ 12월)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국민훈장무궁화장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고제철	2019. 7. 1.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국민훈장모란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윤세리	2019. 4. 15.	법의 날 기념 유공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조상범	2019. 7. 1.	범죄예방자원봉사유공
홍조근정훈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중권	2019. 4. 15.	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동백장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	노용성	2019. 4. 15.	법의 날 기념 유공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	김혜린	〃	〃
	인천구치소	교정위원	서명섭	〃	〃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류영호	2019. 7. 1.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대전교도소	교정위원	김향선	2019. 10. 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국민훈장목련장	법사랑위원 서산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이천복	2019. 7. 1.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위원	박재숙	2019. 11. 8.	갱생보호사업 지원 유공
국민포장	법사랑위원 천안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배성윤	2019. 7. 1.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소년보호위원 대전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	양길모	〃	〃
	보호관찰위원 순천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신대우	〃	〃
	인천구치소	교정위원	연 광	2019. 10. 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안현수	〃	〃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김정래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	부회장	홍창부	2019. 11. 8.	갱생보호사업 지원 유공
	(사)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정근재	2019. 11. 27.	범죄피해자 지원 유공
근정포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병일	2019. 4. 15.	법의 날 기념 유공
대통령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지부장	백기영	2019. 4. 15.	법의 날 기념 유공
	천주교 안동교구	주교	DUPONT RENE MARIE ALBERT	2019. 5. 20.	외국인 정착 지원 유공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사무국장	이은하	〃	〃
	한국소비자원			〃	〃
	법사랑위원 청주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권오석	2019. 7. 1.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법사랑위원 고양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피성권	〃	〃
	법사랑위원 안양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이창기	〃	〃
	법사랑위원 제주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오순자	〃	〃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김동환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법사랑위원 안산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이동전	〃	〃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김동석	〃	〃
	소년보호위원 제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	강정필	〃	〃
	조선대학교	부교수	권해수	2019. 7. 1.	법질서 확립 지원 유공
	주식회사 에듀윌			〃	〃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위원	이용규	2019. 10. 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장흥교도소	교정위원	정종훈	〃	〃
	안동교도소	교정위원	임동화	〃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	정문교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회장	이덕현	2019. 11. 8.	갱생보호사업 지원 유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고문	김명달	〃	〃
	(사)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전문위원	이정민	2019. 11. 27.	법죄피해자 지원 유공
	(사)통영거제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장욱	〃	〃
국무총리표창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위원	문영재	2019. 4. 15.	법의 날 기념 유공
	(사)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신경구	2019. 5. 20.	외국인 정착 지원 유공
	서정대학교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원장	조경자	〃	〃
	한림성심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소장	박복덕	〃	〃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윤연한	〃	〃
	(사)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			〃	〃
	한서대학교			〃	〃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	〃
	법사랑위원 서울동부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진명덕	2019. 7. 1.	범죄예방 자원봉사 유공
	법사랑위원 마산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박점자	〃	〃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이광수	〃	〃
	법사랑위원 서울중앙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이정길	〃	〃
	법사랑위원 부산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송유일	〃	〃
	법사랑위원 의성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배응부	〃	〃
	법사랑위원 서울북부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	박완재	〃	〃
	보호관찰위원 인천보호관찰소부천지소	보호관찰위원	이덕용	〃	〃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정판복	〃	〃
	공주치료감호소	자문위원	허영재	2019. 7. 1.	법질서 확립 지원 유공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

훈 격	소 속	직급	성명	수여일	비 고
	주식회사 현대케피코			〃	〃
	춘천교도소	교정위원	유원표	2019. 10. 28.	교정의 날 기념 유공
	군산교도소	교정위원	송월당	〃	〃
	수원구치소	교정위원	최선덕	〃	〃
	부산교도소	교정위원	강형식	〃	〃
	울산구치소	교정위원	김민호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부회장	신원호	2019. 11. 8.	갱생보호사업 지원 유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회장	공재면	〃	〃
	(사)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문	김용수	2019. 11. 27.	범죄피해자 지원 유공
	(사) 남원순창장수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곽성주	〃	〃
	(사)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최용희	〃	〃
	(사)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법보좌분과위원	황인환	〃	〃

제10절 위원회 현황

1. 총 괄

(2019. 12월 현재)

소 관 별	계	장관실	기 획 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 예방 정책국	감찰관실	인권국	교정 본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운 영 지원과
위원회 수	63	2	18	8	13	3	1	6	2	6	4

2. 위원회 개요

연번	위 원 회 명	근 거	설 치 목 적	구 성		소관 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1	법무부정책위원회 (분과위 : 법무시설건축협위, 중앙급식관리위, 외국인인권보호및권익증진협위)	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훈령 제841호)	법무행정운영에 관한 장관 자문	김혜숙 (교수)	14명	정책 기획단	장관실
2	제2기 법무·검찰 개혁 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규정 (훈령 제1114호)	법무·검찰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제안	김남준 (변호사)	15명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	
3	법무부 직장방위협의회	예비군법 14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3조	정규전 대비 작전활동 및 예비군 법무부 직장분대 운영의 유기적 협조 조정	법무부 장관	13명	비상 안전	기획조정실
4	법무부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규정(훈령 제1096호)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기획 조정 실장	11명	기획 재정	
5	법무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305호),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훈령 1249호)	법무부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기획 조정 실장	15명	기획 재정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6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	상훈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추천 심사	법무부 차관	9명	혁신행정	기획조정실
7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5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14명		
8	법무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 법무부소속 공무원평가 등 업무처리지침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조정	장관이 임명	5명 이상		
9	법무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3조	공무원의 고충 심사	인사과장	7명 이상 15명 이하		
10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	공무원의 승진 심사	장관이 임명	3명 이상		
11	법무부 성과급심사위원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	성과급 심사	장관이 임명	3~7명		
12	법무부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조의3	위탁교육 훈련대상자 선발, 심의 등	법무부 차관	5명 이상		
13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1250호)	법무부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14명		
14	법무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1210호)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규제 범위·대상·존속기한 등에 대한 심사 및 입안부서(각 실·국·본부)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의 타당성 심사	법무부 차관, 최정진(변호사)	10명 ~ 14명	행복민원	
15	법무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훈령 1077호)	법무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장관 자문	이선우(교수)	12명		
16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평가계획·평가결과 그밖에 당해 기관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윤종설(연구위원)	24명	정책성과	
17	법무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기획조정실장	5명		
18	법무정보화 자문위원회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4조의4	법무정보화 업무 및 정보기술을 활용한 발전방향 등 자문	김현곤(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	8명	정보화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19	법무정보화 추진위원회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 제6조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주요사항을 심의	기획조정실장	15명 내외		
20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법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훈령 1221호)제14조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기획조정실장	5명	양성평등	
21	법무자문위원회(특별분과위 : 형사법개정, 형사소송법개정, 남북법령연구, 국제법무자문, 집단소송제개선)	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1조, 제2조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윤진수(교수)	14명	법무심의관실	법무실
22	주택임대차위원회(주택임대차실무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우선변제를 받는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심의	법무부차관	9명		
23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제92조, 제94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변호사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심의	법무부장관	8명	법무과	
24	공증인징계위원회	공증인법 제85조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법무부차관	6명		
25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제38조, 제40조	비위 행위를 저지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	법무부장관	9명	국제법무과	
26	본부배상심의회	국가배상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결정	법무부차관	6명	국가송무과	
27	공익신탁자문위원회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	박준(교수)	6명	상사법무과	
28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제14조	변호사시험시행 관련 주요사항 심의	법무부차관	14명	법조인력과	
29	검사 징계위원회	검사징계법 제4조, 제5조	검사에 대한 징계 사건 심의 및 의결	법무부장관	6명	검찰과	검찰국
30	검찰인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5조,	검찰인사 등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변호사	10명		
31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검찰청법 제39조 검사적격심사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2조, 제3조, 제4조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변호사	8명		
32	검사파견심사위원회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령 제11조의10)	검사 외부기관 파견의 필요성 및 3개월을 초과하는 검사 직무대리 승인여부 등 심의	법무부차관	6명		
33	검사직무성과금심의위원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	직무성과금 지급등급·지급인원·지급액 심의	법무부차관	4명		
34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제6조	마약류보상금지급 신청인의 자격, 지급액,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 심의	검찰국장	4명	형사기획과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35	사면심사위원회	사면법 제10조의 2	법무부 장관의 사면 상신권 행사의 적정성 심사·자문	법무부 장관	8명		
36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훈령 제1257호)	특정경제사범의 관리 업무에 관한 심의·자문	법무부 차관	10명		
37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	국가보안법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4조	상금·보로금지급 및 보상대상자 심의·결정	검찰 국장	6명	공공형사과	
38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보안관찰법 제12조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6명	공공형사과	
39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제271호) 제3조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관리	검찰 국장	10명		
40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부령 제603호) 제8조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 신고·제보 활성화 유도	검찰 국장	4명		
41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 규정 (훈령 제947호)	범죄수익 환수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	검찰 국장	4명	국제형사과	
42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고검 차장 검사	각 8명	보호관찰과	범죄예방정책국
43	법교육위원회	법교육지원법 제4조	법교육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차후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정재황 (교수)	16명	보호정책과	
44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및 보호감호 가출소·취소 등 심사·결정	법무부 차관	8명	치료처우과	
45	법무부감찰위원회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조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	박영림 (변호사)	8명	감찰관실	감찰관실
46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	법무부 차관	7명	인권정책과	인권국
47	인권정책자문단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 (훈령 제1152호)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	인권 국장 (주재)	30명		
48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실무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법무부 장관	17명	인권구조과	
49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법무부 차관	14명		

연번	위원회명	근거	설치목적	구성		소관부서	비고
				위원장	위원수		
50	범죄피해구조본부 심의회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사건 심의·의결	법무부 차관	6명		
51	법무부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훈령 제1076호)	법무행정분야의 여성, 아동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조정	노혜련 (교수)	14명	여성아동인권과	
52	가석방심사위원회	형집행법 제119조	수형자의 가석방자 적격여부 심사 및 결정	법무부 차관	8명	분류심사과	교정본부
53	교화방송 자문위원회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8조 1호	교화방송 전문성강화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	강재형 (방송인)	8명	사회복귀과	
54	법무부 투자이민협의회	투자이민협의회규정 (훈령 제896호) 제1조	투자이민제도 운영관련 법무부 장관 자문	법무부 차관	10명	체류관리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55	법무부이민정책 자문위원회	법무부이민정책자문위원회규정(훈령 제1068호) 제1조	중요 이민정책의 입안 등에 있어 전문가 의견 청취	정인섭 (교수)	14명	외국인정책과	
56	국적심의위원회	국적법시행령 제28조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 및 대한민국 국적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31명	국적과	
57	법무부 사회통합자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4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관련 법무부장관 자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5명	이민통합과	
58	난민위원회	난민법 제25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 제12조	난민불인정결정 및 취소·철회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법무부 차관	14명	난민과	
59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규정(훈령 제1160호) 제1조	출국금지·정지 및 그 연장 결정과, 그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에 앞서 그 적정성을 심의	법무부 차관	6명	출입국심사과	
60	법무부 보안심사위원회	법무부보안업무시행세칙(훈령 제1223호) 제3조	제반 보안대책의 수립 및 제규정 제정	법무부 차관	8명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61	법무부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산자부 고시 제2015-195호)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향상	법무부 차관	5명		
62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14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획조정실장	5명		
63	법무부 기록물평가 심의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법무부 기록물평가 심의회운영지침	폐기 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의 적정 여부 평가,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보존기간 재책정 등 필요한 사항을 평가 심의	기획조정실장	10명		

제11절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 소속기관

(2019.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265개 기관	33,076
법 무 부	2실 3국 2본부	697
검 찰 청	대검찰청 1, 고등검찰청 6, 지방검찰청 18, 지청 41	10,785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1, 용인분원1	130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	30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18, 지소 39, 위치추적관제센터 2	1,681
치료감호소	치료감호소 1, 약물중독재활센터 1	419
소 년 원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6	920
교정기관	지방교정청 4, 구치소 11, 교도소 38, 지소 3	15,963
출입국·외국인기관	출입국·외국인청 6,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 출장소 24, 외국인보호소 2,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1	2,439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12

• 소속단체

(2019. 12. 31. 현재)

구 분	기 관	정 원
계	3개 단체	1,108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1, 지부 18, 출장소 41, 지소 73, 법문화교육센터 1	74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1, 지부 17, 지소 7, 교육원 1	242
정부법무공단	본부 1	124

法務年鑑



부 록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오리꼬미 접지)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오리꼬미 접지)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오리꼬미 접지)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오리꼬미 접지)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오리꼬미 접지)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오리꼬미 접지)

법무연감 편집위원

편 집 위 원 장

기획조정실장	검사장	심우정

편 집 위 원

기획조정실	부이사관	천정훈
법무실	검사	김향연
검찰국	검사	최수은
범죄예방정책국	부이사관	이형섭
감찰관실	검사	박은정
인권국	부이사관	김수아
교정본부	부이사관	우희경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이사관	배상업
장관정책보좌관	검사	조두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운영지원과	부이사관	최정석
법무연수원	검사	김성동

편 집 실 무 위 원

기획조정실	사무관	김용갑
법무실	사무관	설기석
검찰국	사무관	이동영
범죄예방정책국	사무관	신한헌
감찰관실	사무관	이기용
인권국	서기관	김에오
교정본부	교정관	이도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관	박주현
대변인실	서기관	송세시리아
법무연수원	사무관	차유진

法 務 年 鑑

발 행 일 2020년 5월

발행기관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TEL : (02) 2110-3765
FAX : (02) 2110-031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 (02) 786-2999

〈비매품〉